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73-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19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9)

2012. 9.

- 목 차 -

1. 중종실록 기사자료집	1
2. 인종실록 기사자료집	359
3. 명종실록 기사모음집	431

1. 중종실록 기사자료집

중종실록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2일(무인) 2 번째기사	홍청의 생계는, 1천 인에게는 유기(鑪器)를 주고, 9천 인에게는 잡기(雜器)를 주었는데, 해사(該司)로 하여금 팔도에 나누어 정하여 민간에서 징발하게 하였다	興淸生計，一千人則鑪器皿，九千人則雜器皿，令該司分定八道，使徵于民間。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1 번째기사	여러 내역소(內役所)는 아울러 모두 혁파하고, 쓰던 잡물(雜物)은 모두 해사(該司)에 돌려줄 것이며, 전관(箭串)의 목장은 옛날대로 다시 설치하소서. 나인 가운데 전전비(田田非)·장녹수(張綠水)와 같은 무리 및 취홍원·청환각·회사각의 나인으로서 총애를 받던 자는 내관으로 하여금 분별하여 서계(書啓)하게 하고, 사패(賜牌)가 있는 공사천(公私賤)은 아울러 본역(本役)에 쇄환(刷還)할 것이며, 또 억매(抑買)하였거나 빼앗아 사는 집과 전민(田民)은 조사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소서. 연은전(延恩殿)을 회복하고, 혜안전(惠安殿)을 파하여 그 신주는 묘소에 묻어 능호(陵號)를 부르지 말게 하소서. 수리·축성 등 도감을 파하되, 그 목석 철물을 아울러 해사(該司)로 옮기게 하고, 공사천으로 나인의 족친이라 일컬어 내수사(內需司)에 소속하였던 자는 각각 그 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諸內役所，竝皆罷革，所用雜物，悉還該司，箭串牧場，依舊復設。內人中如田·張之類及聚紅院、淸歡閣、繪絲閣內人經幸者，令內官分別書啓，其賜牌公私賤，竝刷還本役，且其抑買、或據奪家舍田民，覈還其主。復延恩殿，罷惠安殿，埋其主于墓所，勿稱陵號。罷修理、築城等都監，其木石、鐵物。竝移該司，公私賤稱內人族親，投屬內需司者，各還其役。
중종 1권, 1년(1506)	전교하기를,	○傳曰：“下書于京畿、全羅、黃海、

<p>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7 번째기사</p>	<p>“경기·전라·황해·경상도 등에 글을 내려, 금후로 승검초를 봉진하지 말게 하라.”</p> <p>하였다. 또 전교하기를,</p> <p>“사용원(司饗院)의 물선(物膳)은 이미 수를 감하게 하였다. 소일차(小日次)40)로 봉진하는 물건 및 어부(漁父)41) 들이 바치는 것도 아울러 헤아려서 감하게 하라.”</p>	<p>慶尙等道，今後勿封進辛甘菜。”又傳曰：“司饗院物膳，則已令減數矣。如小日次封進之物及漁父，竝令量減。”</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5 번째기사 쇠고기 봉진을 금하다</p>	<p>팔도에 글을 내려서 쇠고기를 봉진하지 말게 하였다. 【폐왕 말년에 각도의 상공(上貢)하는 물건이 오히려 입에 맞지 않는다 하여, 각도에 글을 내려서 쇠고기를 봉진하게 하였는데, 각 지방의 수령들이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하루에 아홉 마리의 소를 잡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p>	<p>○下書于八道，令勿封進牛肉。【廢王末年，以各道上貢物膳，猶爲不適於口，馳書于各道，令封進牛肉，各官守宰畏罪，一日之內，有殺九牛者。】</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6일(임오) 4 번째기사</p>	<p>영의정 유순 등이 아뢰기를,</p> <p>“신설된 광혜서(廣惠署)·추혜서(追惠署)·영혜실(永惠室)·보염사(補艷司)·호화고(護花庫)·서강(西江)의 빙고(氷庫)·한강(漢江)의 빙고는 모두 혁파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가하다.’ 전교하였다.</p>	<p>○領議政柳洵等啓曰：“新設廣惠署、追惠署、永惠室、補艷司、護花庫、西江氷庫、漢江氷庫，請竝革罷。”傳曰：“可。”</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7일(계미) 6 번째기사 심순경 등이 폐왕을 교동에 안치하고 보고</p>	<p>안치한 곳에 이르니, 위리(圍籬)한 곳이 몹시 좁아 해를 볼 수 없었고, 다만 한 개의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 겨우 음식을 들여보내고 말을 전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p>	<p>至安置所，則圍籬處甚狹窄，不見天日，但有一小戶，僅通饌物傳語而已。</p>

하다	<p>전교하기를, “어제 전왕의 일을 듣고 슬픈 감회를 이기지 못하였다. 내가 종사의 경위(傾危)와 생민의 도탄 때문에 권고에 못이겨, 사양하다 못해 이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왕에게는 한편으로는 군신이고 한편으로는 형제이니, 정의의 간절함이 저절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다. 지금 날씨가 차가워지니 의복과 물膳(物膳)을 사람을 시켜 실어보내는 것이 어떠한가?”</p> <p>하니, 정승 등이 아뢰기를, “신 등으로 말하면 대의가 이미 끊어져 감히 마음을 기울일 수 없으나, 전하의 하교가 지극한 마음에서 나오신 것이니, 건물(乾物) 2바리[馱]와 의복 1바리를 실어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p> <p>하였다. 또 명하여 가서 울타리를 처마에서 10자쯤 거리를 두어 둘러치게 하였다.</p>	<p>○甲申/傳曰：“昨聞前王之事，不勝愴懷。予以宗社傾危、生民塗炭，迫於衆情，辭不獲已，以至於此。然於前王，一則君臣，一則兄弟，情義之切，自由於中。今天氣漸寒，衣服物膳，遣人馱送何如？”政丞等啓曰：“如臣等大義已絕，不敢向心，殿下之教，出於至情，以乾物二馱、衣服一馱，賜送爲當。”又命退排棘圍，距簷十尺許。</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15일(신묘) 1번째기사</p>	<p>정승 및 정원이 모두 아뢰기를, “폐왕 때 정사가 번거롭고, 무거워 백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사를 펴는 처음에 먼저 힘써야 할 바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니, 마땅히 어루만져서 사랑하는 도리로써 각도에 선유(宣諭)하여 궁벽한 시골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고, 또 포흠(逋欠)75) 및 아직 거두지 않은 공물(貢物)은 호조로 하여금 마련(磨鍊)하여 건감(鑷減)해서 백성의 소망을 위안하소서. 황해도 의착어전(捉魚箭)76)은 전왕 때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켰기 때문에 각 관가에서 상공(上供)하는 물건을 구비할 길이 없으니, 이제 마땅히 각 관가에 돌려주도록 하고, 함경도도 또한 이 예에 의하게 하소서.</p>	<p>○辛卯/政丞及政院僉啓曰：“廢王時，政煩、賦重，民不堪其苦。今新政之初，所當先務者，在卹民，宜以撫字之道，宣諭各道，使窮村、僻巷，無不周知。且凡逋欠及未收貢物，今戶曹磨鍊鑷減，以慰民望。黃海道捉魚箭，前王時，皆屬內需司，各官上供之物，無由得備。今宜還各官，以供國用，咸鏡道亦依此例。前王時，忽於軍政，咸鏡道本宮屬數外處干，盡屬內需司，</p>

	<p>전왕 때 군정(軍政)이 소홀하여, 함경도 본궁(本宮)에 소속된 수 외의 처간(處干)77은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켰었으니, 이제는 마땅히 도로 군정(軍丁)에 소속시켜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소서. 전왕 때 임승재·이계동이 채홍준(採紅駿)으로 있으면서 상으로 받은 노비는 본사(本司)에 도로 소속시킬 것을 청합니다.”</p> <p>하니, 아울러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今宜還屬軍丁，以實邊鄙。前王時，任崇載、李季全。以採紅駿受賞奴婢，請還屬本司。”傳曰：“竝依啓。”</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23일(기해) 2번째기사 폐주가 좋아하던 먼 지방의 특산물 무역을 금하다</p>	<p>우부승지 이우가 아뢰기를, “사탕(沙糖)·용안(龍眼)·여지(荔枝)는 폐주가 좋아하던 물품이었기 때문에 무역하게 하여 지금까지는 무역해 왔으나, 금후로는 이와 같은 먼 지방의 색다른 물품은 무역하지 말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좋다.’ 전교하였다.</p>	<p>○右副承旨李堦啓曰：“沙糖、龍眼、荔枝，廢主所好之物，故令貿易，令既貿易，今後如此遐方異味，請勿貿易。”傳曰：“可。”</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일(무신) 1번째기사</p>	<p>유승조가 아뢰기를, “폐조 때 신이 강원도에 귀양가 있으면서 민폐를 목도하였는데, 모두 아뢰지는 못하였고, 특별히 두어 가지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조 때 진상(進上)하는 물건의 수는 전일보다 백배나 되었고 사슴 꼬리나 사슴 혀 한 개의 값이 면포(綿布) 20~30필(匹)에 이르렀습니다. 신유년(132) 큰 눈이 있는 뒤부터 노루나 사슴이 거의 없어져 미처 생장되지 못하였으니 비록 두어 고을의 백성을 몰아 깊은 산에서 사냥하게 하더라도 어디에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못하여 그 값을 가지고 사옹원(司饔院)의 각 색장(色掌)의 집에 와서 사야 했으니, 백성들의 받는 해가 이렇게 혹심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진상할 물건을 사옹원에 상납할 때 하인들이 뇌물을 주지 않음을 성내어, 빛</p>	<p>崇祖曰：“廢朝時 臣謫在江原道，目覩民弊，不可盡啓，特以數事言之。廢朝時，進上之數，百倍前日，鹿尾鹿舌一箇，價至緜布二·三十四。自(辛酉) [辛酉] 年大雪後，獐鹿殆盡，未及生長。雖驅數邑之民，獵于深山，何從而捉得乎？不得已持其價，來買于司饔院各色掌之家，民之受害，於此尤甚。不特此也，進上之物，納于司饔院時，下人等，怒其不賄，諉以色惡點退，若優賄，則雖色味不好，必先納之，</p>

	<p>같이 나쁘다고 핑계하여 퇴짜를 놓았으며, 만약 넉넉히 뇌물을 주면 비록 빛깔이나 맛이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먼저 수납하니, 이는 매우 심한 폐단이었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이미 지난 일은 뒤따라 징계할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는 사용원 제조(提調)로 하여금 이 폐단을 통절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此甚弊事。 臣意以謂 ‘已往之事， 不可追懲’， 自今以後， 令司饗院提調， 痛禁此弊何如？</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4일(기유) 3번째기사 폐왕에게 갓옷과 음식을 보내다</p>	<p>정승에게 하문하기를, “시서(時序)가 추워지니, 갓옷을 교동(喬桐)에 보내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승들이 회계하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식물(食物)도 잇따라 내려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존송할 때 집사 및 신씨 족친의 가자는 정직(正職)에 있는 사람 외는 모두 개정하고, 혜안전 집사 및 추송 집사의 가자는 재상 외에는 아울러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下問于政丞曰：“時序向寒， 意欲送裘于喬桐何如？” 政丞等回啓曰：“上教允當。” 傳曰：“食物亦連續下送可也。” 傳曰：“尊崇時執事及愼氏族親加， 則正職人外， 盡改正， 惠安殿執事及追崇時執事加， 宰相外竝改正可也。”</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7일(임자) 1번째기사</p>	<p>정언 박광영이 아뢰기를, “그 보지 않은데서 한 일을 밖의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불시에 궁궐로 명소하여 술을 내리되 반드시 취하도록 하였으며, 또 관직의 차서를 게교치 않고 상작(賞爵)을 주니, 어찌 까닭없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당시 쓸만한 사람이 유독 이들만이 아니었는데, 폐왕은 그들이 뜻을 맞추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여, 무릇 나들이가 있을 적에 만약 이들 두어 사람이 없으면 팔다리를 잃은 듯하였으니, 사홍과 무엇이 다릅니까?”</p>	<p>正言朴光榮曰：“其隱微之間， 所爲之事， 外人焉得以知之？ 然不時命召于內， 賜之以酒， 期在必醉， 又不計職次賞爵， 豈無緣而致此乎？ 當時可用之人， 非獨此輩， 而廢王喜其迎合、順旨， 凡有出入， 若無此數人， 則如失股肱， 其與土洪， 何異哉？” 上曰：“當與大臣議之。”</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p>	<p>예조가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가 한 소반에서 같이 삼혈(歃血)하는 것은 미안하니, 청컨대 두</p>	<p>○禮曹啓曰：“君臣共一盤歃血未安， 請用二盤。” 政院啓曰：“歃血所以誓</p>

<p>1년) 10월 18일(계해) 2번째기사 임금과 신하가 한 소반에서 삼혈하게 하다</p>	<p>개의 소반을 쓰소서.” 하고, 정원은 아뢰기를, “삼혈하는 것은 천지에 맹세하여 여러 마음을 통일하는 것이니, 비록 한 소반에서 같이 한들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하니, ‘정원의 의논이 옳다.’ 전교하였다.</p>	<p>天地，而一衆心，雖共一盤何妨？”傳曰：“政院議是。”</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19일(갑자) 7번째기사 음복연에서 개국 공신의 맏아들께 잔을 올리게 하다</p>	<p>대신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음복연(飲福宴) 뒤에 당대의 친공신(親功臣) 및 옛날 공신의 맏아들께 모두 한 자금을 더하되, 맏아들 가운데 침체하여 조용(調用)되지 못한 자는 당상관 이상 품계를 친히 제수받도록 하고, 친공신으로 당하에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자에게도 역시 친히 제수되어야 하며, 또 음복연에서는 개국 공신의 맏아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잔을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렇게 하라.’ 전교하였다.</p>	<p>○大臣議啓曰：“飲福宴後，當代親功臣及舊功臣嫡長，皆加一資，而嫡長中沈滯未調者，則堂上以上階親授之，親功臣資窮者，亦宜親授。且於飲福宴，令開國功臣嫡長一人進爵何如？”傳曰：“可。”</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3일(무진) 2번째기사</p>	<p>상이 금잔(金盞) 4부(部)와 칠보대구(七寶臺具) 1부를 박원종에게 하사하고, 그 나머지 것은 유순정·성희안·유자광에게 내렸다. 【자광이 이를 받자 손바닥 가운데 놓고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여러 재상에게 전하여 보이고 이르기를, ‘집에 돌아가서 마땅히 시험하리라.’ 하니, 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비웃었다.】 또 은병(銀瓶)을 각각 하나씩 내렸다.</p>	<p>○內出金盞四部、七寶臺具一部，賜朴元宗，其餘分賜柳順汀、成希顏、柳子光。【子光得之，置掌中。玩弄不已，傳示諸宰相曰：“歸家當試之，見者竊笑。】又賜銀瓶各一。</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3일(무진) 3번째기사 봉성위 정원준에게 쌀과 콩을 내리다</p>	<p>정원이 아뢰기를, “그 곤궁함을 가없이 여겨 내리고자 하시니, 상의 전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녹봉은 관수자(官守者)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헛되이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따로 쌀과 콩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원준은 나의 매부이고 집이 가난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 말이다. 경들의 말이 과연 옳으니, 따로 쌀과 콩을 내려주어라.” 하였다.</p>	<p>政院啓曰：“憐其窮而欲賜之，上教至當。然祿俸爲官守者設，不可虛施，別賜米太何如。”傳曰：“鄭元俊予之同生，審知家貧故云爾。卿等之言，果是其別賜米太。”</p>
<p>중종 1권, 1년(1506)</p>	<p>평안도와 함경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p>	<p>○下書平安道、咸鏡道觀察使曰：</p>

<p>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4일(기사) 3번째기사</p>	<p>“근래 민력이 피폐하니 납수(臘獸)170) 를 봉진(封進)하지 말라. 만약 진상을 평계하고 연호군(煙戶軍) 및 군사를 뽑아 난잡하게 산을 해매는 자는 적발하여 치계(馳啓)하라.” 하였으니, 삼공의 아뢰에 인한 것이었다.</p>	<p>近來民力困弊，今年(臘)〔獵〕獸勿封進。如有依憑進上，抄發烟戶軍及軍士，亂雜山行者，摘發馳啓。</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5일(경오) 7번째기사</p>	<p>또 김수경(金壽卿)·신은운(辛殷尹)은 모두 사류로서 오랫동안 조열(朝列)에 끼어 당상관이 되기에 이르렀는데, 수경은 어머니 상을 당한 지 두어 달이 지나지 않아 병조 참지(兵曹參知)가 되어 남들과 담소하고 농담하기를 평일과 다름없이 하였고, 육적(肉炙)이 익지 않았다고 재부(宰夫)에게 성을 내기까지 하였습니다.</p>	<p>且金壽卿、辛殷尹皆以士類，久齒朝列，至爲堂上，而壽卿遭母喪未數月，爲兵曹參知。談笑戲謔，無異平日，肉炙不熟，發怒宰夫，</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7일(임신) 2번째기사</p>	<p>간원이 아뢰기를, “의원(醫員) 김공저(金公著)·고세보(高世輔) 등은 폐주의 비위를 맞추어 풀벌레와 뱀을 진상, 그 양기를 도와 음욕(淫慾)을 방자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외방에서 그 물건을 공헌(貢獻)하느라고 소요스럽게 하였으니, 청컨대 죄를 다스리소서.”</p>	<p>○諫院啓曰：“醫員金公著、高世輔等，逢廢主，進草蟲虺蛇，以爲助陽之物，恣其淫慾，至今外方貢獻，以致騷擾，請治罪。”</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일(정축) 2번째기사</p>	<p>윤대(輪對)하였다. 종묘서 영(宗廟署令) 김충장(金忠長)은 금표 안에 사는 백성의 금년분 전조(田租)를 감해줄 것을 청하였고, 사직서 영(社稷署令) 강옥견(姜玉堅)은 그 지방의 토산물로 공물을 배정할 것을 청하였고, 사온서 영(司醞署令) 정기(鄭琦)는 수군(水軍)을 무휼(撫恤)할 것을 청하였고, 사온서 주부(主簿) 우행언(禹行言)은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반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강송(講誦)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소격서 영(昭格署令) 이윤희(李允亨)은 수문제(隋文帝) 때의 일에 의하여 의창(義倉)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다.</p>	<p>○聽輪對。宗廟署令金忠長，請減禁標內人民，今年田租，社稷署令姜玉堅請貢物，各以土產分定，司醞署令鄭琦請撫恤水軍，司醞署主簿禹行言請頒布《三綱行實》，使民講誦，昭格署令李允亨請依隋文帝時，設義倉。</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일(정축) 8번째기사</p>	<p>“김수경이 육적(肉炙)이 익지 않아 재부(宰夫)에게 성낸 일,</p>	<p>“金壽卿肉炙不熟，發怒宰夫，</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6일(신사) 2번째기사 매월 홍문관에 짓 1항 아리와 쾌포 30조를 내리게 하다</p>	<p>사용원에 전교하기를, “성종조 고사에 의하여 매월에 짓[肉醬]205) 1항아리와 쾌포(快脯)206) 30 조(條)를 홍문관에 내리라.” 하였다.</p>	<p>○傳于司饗院曰：“依成宗朝故事，每一朔醢一缸。快脯三十條，賜弘文館。”</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9일(갑신) 1번째기사 정원에서 소선 진어를 반대하니 불허하다</p>	<p>정원이 아뢰기를, “연산군의 장례를 왕자군의 예로 치르니 소선을 진어할 수 없습니다. 무릇 일은 반드시 정례에 맞은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체가 편안치 못하신데 어찌 소선을 진어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흘동안 소선하는 일도 하지 말 것인가?” 하였다.</p>	<p>○甲申/政院啓曰：“燕山君葬之以王子君禮，則不可進素膳。凡事必合於情禮，然後可爲也。上體未安，豈可進素膳(呼) [乎] ?” 傳曰：“三日素膳，其亦不爲乎?”</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1일(병술) 5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죽은 안양군·봉안군은 계성군(桂城君)·전성군(全城君) 예에 의하여 각각 쌀·콩 50석, 종이 1백 권, 정포(正布) 30필, 백저포(白苧布), 목면(木綿) 5필, 석회(石灰) 30석, 진유(眞油) 7두 5승, 청밀(淸蜜) 5두를 제공하고,</p>	<p>○傳曰：“卒安陽君、鳳安君，依桂城君、全城君例，各米·太并五十石、紙一百卷、正布三十四、白苧布五匹、木綿五匹、石灰三十石、眞油七斗五升、淸蜜五斗題給。</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9일(갑오) 3번째기사</p>	<p>헌부가 아뢰기를, “사어전(私魚箭)229) 은 세금을 거두어 관에 납부하는 것이고 관어전(官魚箭)230) 은 진상품을 봉진(封進)하는 것으로 모두 국용에 관계되는데, 이제 재상에게 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명하여 도로 거두소서. 또 폐조에서 각도 어전을 대부분 내수사에 소속시켜 내수사 위차(委差)231) 등이 왕래하며 작폐가 심히 많았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본도 관찰사에 소속시</p>	<p>○憲府啓曰：“私魚箭則收稅納官，官魚箭，則進上封進，皆關於國用，今賜與宰相，甚不可也。請命還收。且廢朝，各道魚箭，多屬內需司，內需司委差等，往來作弊甚多。請令并屬本道觀察使，考察封進。</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9일(갑오) 6번째기사</p>	<p>켜 봉진하는 것을 고찰하게 하소서 호조에 전교하기를, “기전(畿甸)236)의 백성은 근래 몹시 곤란하여 살 곳을 버리고 떠돌아 다녔는데 아직도 편안히 모여 살지 못하고 있다. 본관(本官)237)의 조미(糶米)238)와 전세(田稅)는 말할 것도 없고, 계해(239)·갑자(240) 양년의 경창(京倉)의 조미도 가까운 시일에는 아직 독촉하지 말고 정묘년(241) 추수를 기다려 납부하게 하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畿甸之民，近甚困弊，流離失所，時未安集。本官糶米、田稅則已矣，癸亥、甲子兩年京倉糶米，近姑勿督，以待丁卯年秋成納之。”</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1일(병신) 4번째기사</p>	<p>헌부가 아뢰기를, “어전(魚箭) 일은 내수사 관원을 불러 물어보니 ‘평안·황해도 어전은 9월, 충청도 어전은 10월에, 아울러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키지 말라는 전지(傳旨)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 등이 다시 아뢰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전 국용(國用)의 긴요한 것이고 또 군자를 보충하는 것이니, 가볍게 사여(賜與)해서는 안됩니다. 또 나희 구경하는 것은 비록 옛 풍속이라고 하나 무익할 뿐만 아니라 무례하기 짝이 없고, 현수 등은 더욱 친근히 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나희 구경하는 것은 곧 잡희입니다. 신 등은 처음에 헌부의 아뢰는 뜻을 듣고, 반드시 곧 청납(聽納)하리라 여겼는데 지금까지 보류하니, 신 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또 현수의 무리는 더욱 궁금에 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인심을 유탕(遊蕩)하게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하루만 하는 일이라 행해서는 안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전(魚箭)은 국용 어전이 아니다. 당양위(唐陽尉)243)가 성종조에 사여받은 것인데, 폐왕이 신씨(愼氏)에게 주었던 것을 이제 다시 당양위에게 준 것이다. 박원종이 받은 것은 곧 임광재(任光載)의 어전이었다. 또 나희 구경하는 것은 비록 잡희라 하나 역시 옛 풍속이며, 더구나 이를 보는 자가 어찌 모</p>	<p>○憲府啓曰：“魚箭事，招內需司官員問之則曰：‘平安、黃海道魚箭，則九月，忠清道魚箭，則十月，竝皆勿屬內需司，有傳旨。’云，故臣等不更啓。但魚箭，則國用之緊，而又補軍資，不可輕易賜與也。且觀儺，雖曰古風，非徒無益，而褻慢莫甚，絃手等尤不可親也。”諫院啓曰：“觀儺乃是雜戲。臣等初聞憲府啓之意，謂必卽聽納，而至今留難，臣等未知其故。且絃手之輩，尤不可出入宮禁。使人心流蕩，莫此爲甚，不可以一日之事，而爲之也。”傳曰：“魚箭，則非國用魚箭也，乃唐陽尉，在成宗朝受賜，而廢王奪給愼氏，今可還給唐陽尉也。朴元宗所受，乃任光載魚箭也。且觀儺，雖曰雜戲，亦是古風，況見之者，豈皆爲流蕩乎？歲時索寞，故自古爲之，非是貪</p>

	두 유탕하여지겠는가? 세시(歲時)가 쓸쓸하므로 예로부터 한 것이지 탐완(貪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땅히 삼공에게 의논해서 처리하여야겠다.” 하였다.	玩也。然當議諸三公處之。”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5일(경자) 4번째기사	“악미(惡米)250) 범금(犯禁)한 일은 본률에 혹 태(笞) 50이나, 혹 장(杖) 80으로 되어 있는데, 온 집안이 들어가 사는 것은 과중하니, 이제 도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惡米犯禁，本律則或(笞) [笞] 五十，或杖八十，全家入居過重，今可還放。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25일(경자) 8번째기사	악미 범금으로 인해 온 집안이 변방에 옮겨진 자 및 전오손 등을 명하여 놓아주게 하였다.	○命放惡米犯禁全家徙邊者及田鰲孫等。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2월 3일(정미) 4번째기사	길가의 역자(驛子)가 열집 가운데 아홉은 없어져서, 무릇 진상하는 물膳(物膳)을 묵혀두고 제때에 운반하지 못하니, 그 소복(蘇復)할 계책을 금방 마련하여, 조호(助戶)를 더 지급하고 또 전세(田稅)를 면제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路傍驛子，十室九亡，凡進上物膳，留滯不即轉輸，其蘇復之策。今方磨鍊，請加給助戶，且除田稅。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2월 14일(무오) 4번째기사	입직한 군사에게 어물(魚物) 내리기를 차이가 있게 하였다.	○賜入直軍士魚物有差。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2월 17일(신유) 5번째기사 승정원·홍문관·병조·도총부의 입직원에게 재	승정원·홍문관·병조·도총부(都總府)의 입직원에게 녹비(鹿皮)와 각궁(角弓)을 내리고, 또 술과 고기를 내렸다. 그날은 곧 경신일(庚申日)이었으므로 예에 내린 것이다.	○賜鹿皮、角弓于承政院、弘文館、兵曹、都總府入直員，且賜酒肉。是日乃庚申，循例賜之。

<p>물과 음식을 내리다</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2월 21일(을축) 2번째기사</p> <p>성균관 전적 김승조가 어전을 백성들에게 주라 하다</p>	<p>윤대(輪對)하였다. 성균관 전적 김승조(金崇祖)가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어전(魚箭)을 가난한 백성에게 주어 3년마다 교체하게 한 것.’은 곧 선왕이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을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는 뜻입니다. 지난날 국가의 비용이 많이 들게 되자 대신이 저축이 허갈(虛渴)될까 염려하여 각도의 어전을 임시로 무포(貿布)하는 법을 입법하였는데, 서울의 세력있고 교활한 무리가 앞을 다투어 이권을 오로지하여 본관으로 하여금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릇 진상하는 어물을 갖춰 들일 길이 없어 민간에 분정(分定)하니, 가난한 백성만 그 이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고을이 모두 그 괴로움을 받습니다. 원컨대 어전은 역시 《대전》에 실려 있는대로 가난한 백성에게 주고, 무포(貿布)하는 법을 혁폐(革廢)하소서.” 하였다.</p>	<p>○聽輪對。 成均館典籍金崇祖曰：《大典》以魚箭給貧民，三年而遞，卽先王山林、川澤， 與民共之之意也。向者國家用度浩繁， 大臣慮儲畜虛竭，以各道魚箭， 權立貿布之法， 京中豪猾之徒， 爭先專利， 使本官不得與焉。凡進上魚物， 備納無由， 分定民間， 非特貧民， 未蒙其利， 一邑竝受其苦。臣願魚箭， 亦依《大典》， 給貧民， 以革貿布之法。”</p>
<p>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2월 30일(갑술) 2번째기사</p> <p>승정원·홍문관·병조·도총부 입직원에게 재물과 음식을 내리다</p>	<p>승정원·홍문관·병조·도총부의 입직원에게 대녹비(大鹿皮)·저피(猪皮)·별조궁(別造弓)·대전(大箭)을 내리고, 또 술과 고기를 차등 있게 내렸다.</p>	<p>○下大鹿皮、猪皮、別造弓、大箭于承政院、弘文館、兵曹、都總府入直員， 又賜酒肉有差。</p>
<p>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월 5일(기묘) 1번째기사</p>	<p>어사 권홍(權弘)·이맥(李陌)·최연손(崔連孫)·조순(趙舜)·황필(黃瑋)·정침(鄭沈)을 각각 경기·황해·충청도로 보내며, ‘촌향(村巷)에 출입하며 백성의 고통을 묻되, 각 고을에서 음식 대접을 받지 말고 각자 말린 식량[乾餼]를 가지고 가 번폐(煩弊)를 덜도록 힘쓰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선운(宣醞)322 을 내려 위로해 보냈다. 이보다 앞서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p>	<p>○己卯/分遣御史權弘、李陌、崔連孫、趙舜、黃瑋、鄭沈于京畿、黃海、忠清道， 命出入村巷， 問民弊瘼， 除各邑支供， 自齎乾餼， 務除煩弊。仍下宣醞以慰遣之。 初大臣等議啓曰：“外方貢賦雜徭， 已令蠲減， 庶祛民弊，</p>

	<p>“외방에 공물(貢物), 부세와 잡종 요역(徭役)을 건감(蠲減)하여 거의 민폐를 제거하게 되었는데, 수령이 침탈하고 독책(督責)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예전과 같으니, 청컨대 먼저 경관(京官)을 3도에 보내어, 민간의 질고(疾苦)를 묻게 하옵소서.” 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 와서 보내게 된 것이다.</p>	<p>而守令侵督，百姓流亡如舊。請先分遣京官于三道，問民疾苦。”至是遣之。</p>
<p>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월 16일(경인) 2번째기사 홍문관 교리 김세필 등이 어주 내림을 사례하다</p>	<p>. 예원(藝院)의 휴가를 주시어 힘써 토론을 하게 하시며 어주[天廚]의 찬수를 가져다 취하고 배부르게 하시니, 이러한 영광과 은총은 예전에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제 주상 전하께서 마음을 빛나는 덕화(德化)에 두시고, 정사는 교육을 먼저 하시며 앞으로 신이 들어와 힘쓸 것을 책비(責備)344 하시므로, 신은 이에 극진한 영광을 입었습니다. 신(臣) 세필 등은 감히 완악한 자질을 면려하고 평소의 뜻을 격양하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과분한 이름에 부응할 것을 생각하며, 땅이 오래고 하늘이 길듯 만수무강하심을 축수합니다.” 하였다. 이것은 이보다 하루 앞서, 독서당에 술을 하사하였기 때문이었다.</p>	<p>賜藝院之休暇，俾專討論，撤天廚之膳羞，亦既醉飽，光寵至此，前古所稀。茲蓋伏遇主上殿下，心存緝熙，政先教育，蓋將責臣之來效，故茲被臣以極榮。臣世弼等，敢不勉勵頡資，激仰素志，夙興夜寐，思稱過實之名；地久天長，倍祝無疆之壽。” 蓋以前一日宣醞于讀書堂也。</p>
<p>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월 16일(경인) 5번째기사</p>	<p>대마 도주(對馬島主) 종익성(宗杳盛)이 나연(羅延)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헌납하였다.</p>	<p>○對馬島主宗杳盛遣羅延，來獻方物。</p>
<p>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7일(신해) 6번째기사 사용원에서 바치는 큰 생선을 폐하고 중간 생선을 폐하고 중간 생선으로 할 것을 정</p>	<p>사용원(司饗院)에서 바치는 큰 생선을 폐하고 중간 생선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바치는 민가에서 척수(尺數)에 맞는 것을 준비하기 어려워서 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명이 내린 것이다.</p>	<p>○減司饗院供上大鮮，以中鮮爲式。應納之戶，難備准尺，受弊不貲，故有是命。</p>

하다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9일(계 해) 2번째기사 정원에 술을 내리다	정원에 술을 내리며 이르기를, “술을 금하였지만, 오늘은 비가 오고 기후가 아직 차므로 대접하는 것이다.” 하였다.	○宣醞于政院曰：“雖禁酒，今日天雨，日氣尚寒，故饋之。”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2월 21일(을미) 1번째기사 사직에 제사하고 음복 례를 정지하다	상이 친히 사직에 제사드리고, 음복례(飲福禮)를 정지하였다. 【고원위(高原尉) 신항(申沆)이 졸(卒)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사(頒赦) 여부에 관한 문제를 삼공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회계(回啓)하기를, “친히 사직 제사를 거행하면, 대사령을 반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다만 옛말에 이르기를, ‘대사령은 자주 행하면 안된다.’ 하였습니다. 이 달 초9일 중묘 제사 때에 이미 큰사를 반포하였으니, 어찌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은사를 베풀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乙未/上親祭于社稷， 停飲福禮。 【以高原尉申沆卒也。】頒赦當否，命議諸三公，回啓曰：“親行社稷祭，頒赦，例也。但古云：‘赦不可數行。’本月初九日祭宗廟時，已頒大赦，豈可一朔之間，再施恩宥乎？”傳曰：“可。”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3월 9일(임자) 5 번째기사	유순(柳洵)·유순정(柳順汀)이 의논드리기를, “살찰(撒察)이 이미 잘못을 뉘우쳤으니, 다시 효유할 만한 말은 없습니다만, 다만 홍진(洪珍)을 놓아 주어 그로 하여금 사사로이 사례하게 하고, 이어 살찰의 무례함을 개유(開諭)하게 한 뒤에 배사(拜辭)하게 하며, 음식 궤향(饋餉)과 관교(官敎)는 처음 규례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柳洵、柳順汀議：“撒察已悔過，今無可更諭之語，但放洪珍，令珍私謝，因開諭撒察之無禮，使之更拜辭，其饋餉與官敎，依初例給之。”上從之。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3월 11일(갑인)	상이 건원릉(健元陵)503) 과 현릉(顯陵)504) 에 참배하러 하면서 전교하기를, “이미 금주법(禁酒法)을 세웠으니 대소 주정(晝停)505) 과 종실 재신[宗宰]의 공궤(供饋)를 어떻게 할 것인가?”	○甲寅/上將拜健元陵、顯陵， 傳曰：“已立酒禁，大小晝停，宗宰供饋，何以爲之？”政院啓曰：“近來公私俱竭，

1번째기사	하니,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공사 재물이 모두 모자라기 때문에 금주법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절용을 하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금령을 군상에게까지 시행할 것은 아니니, 전례대로 쓰게 하소서.”	故立酒禁，俾民節用，不必以此禁，施之於君上，請依前例用之。”上從之。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3월 20일(계해) 3번째기사 독서당에 술을 내리다	중사(中使)511) 를 보내어, 독서당(讀書堂)에 선운(宣醞)하였다	○遣中使，宣醞于讀書堂。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3월 30일(계유) 2번째기사	왜인(倭人)이 석과옥(石菓玉)·불사약(不死藥)을 헌납하니, 전교하기를, “약방에 두어 두고, 값은 적당히 주게 하라.” 하였다.	○倭人獻石菓玉不死藥，傳曰：“置諸藥房，而其價則隨宜給之。”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4월 11일(갑신) 6번째기사	이에 곧 명하여 팔도 감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모든 것이 쇠잔하고 피폐한 후여서 수령이 된 자는 마땅히 백성들의 고통을 구휼하여야 할 것인데, 간혹 맡은 일에 근면하지 않고 탐람함을 거리낌없이 하며, 전에 견감(蠲減)한 공물(貢物)을 그대로 거두어 들여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정하지 못하게 하는 예가 있다. 경은 더욱 규찰하여 민폐를 크게 개혁하고, 그 중에도 심한 자는 적발해서 치계(馳啓)하라.” 하였다.	卽命下書八道監司曰：“今當殘弊之餘，爲守令者，當勤恤民隱，而間有不勤職事，貪饕無忌，前所蠲減貢物，因循收斂，使民不得安業。卿其益加糾察，痛革民弊，其中尤甚者，摘發馳啓。”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4월 18일(신묘) 1번째기사	장령 한급(韓汲)은 아뢰기를, “자광의 죄는 사홍보다도 심합니다. 일찍이 어미 복을 벗고 인군의 복 입기를 청하였으며, 함경도 감사가 되었을 때에는 봉진하고 남은 생복(生鰯)을 먹으면서, 이런 특이한 것을 신하로서 차마 목에 넘길 수 없다.’ 하며 곧 봉진(封進)하였습니다.	掌令韓汲曰：“子光之罪，浮於士洪。嘗請服君喪，及爲咸鏡道監司時，當食封餘生鰯曰：‘如此異味，人臣不忍下咽。’卽以封進。

<p>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4월 18일(신묘) 2번째기사</p>	<p>또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에, “자광의 아들 유방(柳房)이 사명을 받들고 남해(南海)에 나갔는데, 여러 고을 원이 소와 개를 잡아 날마다 돌아가며 지공(支供)하였습니다. 방이 친히 가죽과 고기를 토색하여, 시령을 매고 포(脯)를 말려서 공인(工人)을 시켜 제조하는가 하면, 스스로 녹반(綠礮)570) 을 꾸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러 고을에 분부하여 목화(木花)를 팔게 하니, 공납하는 사람들이 백여 명이었으며, 한달 동안 방한(放閑)하다가 생마(生麻) 40속(束)을 능정(勒定)하고 한결같이 공문을 내어 거두어 들이기를 성화보다 급히 해서, 한 지역이 소란하였습니다.</p>	<p>又進筭，其略曰： 子光之子房，奉使南海州縣，宰殺牛狗，輪日支供。房親索皮肉，設架乾脯，聚工製造，自齎綠礮。分付列邑，販賣木花，應供之人，其麗百餘，放閑一朔，勒定生麻四十束，一以公文徵督，急於星火，一方騷擾。</p>
<p>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4월 23일(병신) 4번째기사</p>	<p>생복과 굴[石花]을 드려 인군을 호렸으니[狐媚], 그 죄가 셋이요,</p>	<p>獻生鰻、石花，狐媚君上，罪三也。</p>
<p>중종 3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5월 28일(경오) 5번째기사 대간과 홍문관에 홍소주 네 병을 내리다</p>	<p>대간과 홍문관에 전교하기를, “날씨가 몹시 더운데 작은 일로 수고하므로 홍소주(紅燒酒) 네 병을 내리니, 마셔보라.” 하였다.</p>	<p>○傳于臺諫、弘文館曰：“日氣(暑) [暑] 甚，以小事勤困，賜紅燒酒四瓶，其飲之。”</p>
<p>중종 3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7월 4일(을사) 2번째기사</p>	<p>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어제의 하교에, ‘내수사는 성종께서 없앴다가 다시 두었다.’ 하셨는데, 성종 때에 대간이 아뢰기를, ‘임금은 마땅히 재물의 이익을 증식시키지 않아야 되며 또 백성과 이(利)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하므로 성종께서 곧 혁파하셨습니다. 아뢴 말이 이에 그쳤는데도 성종께서 오히려 곧 혁파하셨으니, 만약 성종 때에 근년 같은 폐해가 있었다면 성종께서 어찌 다시 세우셨겠습니까?</p>	<p>○臺諫合司啓曰：“昨日教曰：‘內需司，成宗廢而復設之’ 成宗朝，臺諫啓曰：‘人君當不殖貨利，且不可興與民爭利’ 成宗卽革之。所啓止此，而成宗猶卽革罷，若成宗朝，有近年之弊，成宗豈宜後立乎？願殿下計子孫萬世之弊，斯速革之。韓恂、李茁亦不可不痛治其</p>

	<p>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자손 만세의 폐단을 헤아려 곧 속히 혁파하시고, 한순 이줄도 통렬히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으나, 윤험하지 않았다.</p>	<p>罪。”不允。</p>
<p>중종 3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7월 6일(정미) 1 번째기사</p>	<p>정원이 사정전(思政殿) 대문 밖에 나아가 대전·중궁전에 하례를 올리니, 【중궁의 탄일. 이 때 아직 책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례는 없었다.】 승정원 전원과 도총부·병조의 입직한 당상 및 입직한 제장, 홍문관·예문관과 경연에 입번(入番)한 양사의 관원들에게 빈청에서 술을 내리었다. 【이 때 대간은 일을 말하려 대궐에 나갔기 때문에 역시 참여하였다.】</p>	<p>○丁未/政院詣思政殿門外，進賀于大殿、中宮殿。【中宮誕日。時未冊封，故無賀禮。】賜酒承政院全數、都摠府、兵曹入直堂上及入直諸將、弘文館、藝文館、經筵番兩司之員于賓廳。【時臺諫以言事詣闕，故亦與焉。】</p>
<p>중종 3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7월 19일(경신) 3번째기사</p> <p>대간이 영웅 대군 부인에게 내린 미태의 부당함을 논하다</p>	<p>대간(臺諫)이 지난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p> <p>“영웅 대군 부인(永膺大君夫人)은 국중의 거부(巨富)입니다. 그 부가 일국과 견줄 수 있는데도, 지금 들건대, 미태(米太)를 많이 주었다 하니 그 주게 된 이유를 신 등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폐조(廢朝)에서도 주는 것이 절도가 없어서 나라의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 등은 주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p> <p>“영웅 대군 부인은 나이가 늙고 은공이 있으니 폐조의 예와는 다르다. 또 작위로는 상줄 수 없기 때문에 미태로 준 것이다. 난들 어찌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p> <p>하였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윤험하지 않았다.</p>	<p>○臺諫啓前事。又啓：“永膺大君夫人，國之巨富也，其富可擬一國，而今聞優賜米太，其所以賜之之由，臣等未詳知也。在廢朝，賜與無節，國廩虛竭。臣等以爲賜給未便。”傳曰：“永膺大君夫人，年老有恩，非如廢朝之例。且不可以爵位賞之，故以米太賜給耳。予亦豈不計賜與之濫乎？此則不得已也。”餘亦不允。</p>
<p>중종 3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7월 26일(정묘)</p>	<p>정원이 아뢰기를,</p> <p>“들으니 위에서 소膳(素膳)762) 을 드신다 하니, 이것은 반드시 대방 부인(帶方夫人)의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즉 영웅 대군(永膺大君) 부인 송씨(宋氏)】</p>	<p>○丁卯/政院啓曰：“聞上御素膳，此必爲帶方夫人之卒也。【卽永膺大君夫人宋氏。】然禮典所無，請進肉膳。”</p>

<p>1번째기사 정원이 고기 반찬을 드시도록 청하다</p>	<p>).】 그러나 예전(禮典)에 없는 일이니, 육선(肉膳)763) 을 드시기 바랍니다.”</p>	
<p>중종 3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8월 4일(을해) 5 번째기사</p>	<p>2품 이상 관원과 승정원·대간·홍문관, 그리고 모든 집사와 입직(入直)한 인원(人員) 등에게 특별히 잔치와 음악을 하사하였다.</p>	<p>○二品以上員及承政院、臺諫、弘文館及諸執事與入直人員等， 特賜宴賜樂。</p>
<p>중종 3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8월 14일(을유) 1번째기사</p>	<p>상이 소선(素膳)842) 을 들었다. 정원이 아뢰기를, “대신을 위하여 소찬을 드시는 것[行素]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나 소선을 오래 드실 수는 없으니, 청컨대 육선(肉膳)을 드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처음에는 오랫동안 하고자 했으나 아뢰는 바가 이와 같기 때문에 윤허한다.” 하고, 쌀·배 등을 부의(賻儀)하도록 명하였다.</p>	<p>上御素膳。 政院啓曰：“爲大臣行素，甚盛美也。 然不可久御素膳， 請於明朝， 進肉膳。” 傳曰：“初欲久爲， 所啓如此， 故依允。” 命賻米布等物。</p>
<p>중종 3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8월 27일(무술) 6번째기사</p>	<p>그 뒤에 또 사람을 시켜서 배[梨]를 보내면서 다시 청하기에, 내가, ‘되지 않는 일을 어찌 이같이 번거롭게 하는가?’ 하며, 마침내 노하여 꾸짖어 돌려보내었는데, 무릇 이같이 왕래하면서 부탁한 것이 대여섯 번이나 되었습니다.”</p>	<p>其後又使人將梨子更請之， 余曰：‘不可爲之事， 何至煩瀆如是耶?’ 遂怒噴而送之， 凡如此往來通囑者， 五六度耳。”</p>
<p>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9월 2일(임인) 3 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기를, “진성군이 성밖에 나가 있는데, 공궤(供饋)는 어떻게 하는가? 하자, 도승지 홍경주가 아뢰기를, “진성군은 죄인이므로, 국고의 곡식으로 먹이는 것은 불가하며, 또 돌아올 기한이 없으니, 그 가권(家眷)도 데리고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6일 머물러서 행장을 꾸리게 하고, 지나가는 곳 각관(各官)으로 호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진성군의 일은 아뢰는 것이 옳다. 내가 어제 내사(內使)를 시켜 음식을 보냈</p>	<p>傳于政院曰：“甄城君出在城外， 其供饋何以爲之?” 都承旨洪景舟啓曰：“甄城罪人也。 不可以國廩饋之， 且來還無期， 其家眷宜可帶率。 許留五六日， 使之治任， 而使所經各官， 護送何如?” 傳曰：“甄城事所啓是矣。 予於昨日， 遣內使， 遺其食物。 今可許留五六日， 使之治任而後， 發送可矣。 其發行之時， 亦令內官， 護送道路。” 政院啓</p>

	다. 이제 5~6일 머물게 하여 행장을 꾸리게 한 뒤에 보내는 것이 옳다. 떠날 때에 또한 내관으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라.” 하였는데, 정원은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아뢰었다.	曰：“上教允當。”
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9월 9일(기유) 1 번째기사 노현을 모아 대접하고, 승지 안당 등에게 술을 하사하다	기영회(耆英會)944) 를 모화관(慕華館)945) 에서 베풀고, 승지 안당(安瑯)·이계복(李繼福)에게 명하여 선온(宣醞)946) 을 특별히 하사하고, 또 녹비(鹿皮) 2장과 특별히 제조한 활 2정, 말의 장식품 1부, 호피 1장을 하사하여, 투호(投壺)947) 놀이를 하게 하였다.	○己酉/設耆英會于慕華館， 命承旨安瑯、李繼福， 別賜宣醞， 又賜鹿皮二張、別造弓二丁、馬裝一部、虎皮一張， 命投壺以賭之。
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9월 9일(기유) 2 번째기사 경연연을 예조에서 베풀고, 승지 홍경주에게 술을 하사하다	경연연(經筵宴)948) 을 예조에서 베풀고, 승지 홍경주(洪景舟)에게 명하여 특별히 선온(宣醞)을 하사하고 또 녹비 2장, 특별히 제조한 활 2정을 하사하고, 투호놀이를 하게 하였다.	○賜經筵宴于禮曹， 命承旨洪景舟， 別賜宣醞， 又賜鹿皮二張、別造弓二丁， 命投壺以賭之。
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9월 20일(경신) 4 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소임이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논계한다면 진실로 마땅히 사임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특은을 베푸는 일로 논계하는 것이니, 사임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술을 대접하도록 명하고, 또한 대간에게도 술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傳曰：“以所任不合啓之， 則固當辭之， 今以特恩啓之， 其勿辭。” 遂命饋酒， 又命饋酒于臺諫。
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0월 19일(기축) 3 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종사 대의(宗社大義) 때문에 천륜(天倫)의 친족을 구하지 못했으니, 그 비통(悲慟)함을 참을 수 없다. 진성군 처자는 의탁할 곳이 없으니, 해마다 봄·가을에 쌀 20석을 주도록 하라.”	○傳曰予以宗社大義， 不得救天倫之親， 不勝悲慟甄城妻子， 無所依托， 每年春秋給米二十碩。”

<p>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1월 15일(갑인) 2번째기사</p>	<p>하였다.</p> <p>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납시어 유생들의 강(講)을 받았는데, 영의정 유순(柳洵)이 아뢰기를, “지금 조정 대신들이 다 모였으니, 《중용(中庸)》의 구경(九經)1087) 으로 정사하는 도(道)를 논란하되, 김응기(金應箕)로 하여금 묻게 하고 안윤덕(安潤德)·이유청(李惟淸)으로 답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좋다.’ 하였다. 대사헌 이유청이, ‘재물을 천히 여기고 덕을 귀히 여긴다.’ [賤貨貴德]는 말을 듣고 나와 아뢰기를, “삼대(三代)1088) 이상에는 임금에게 사재(私財)가 없었는데, 한(漢)의 환제(桓帝)·영제(靈帝)와 당(唐)의 덕종(德宗)이 처음으로 두었었고, 또 전조(1089) 때에는 충혜왕(忠惠王)이 후전(後殿)에 사축(私蓄)을 하였었습니다. 전에 대간이 내수사(內需司)의 혁파를 청한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요즈음 기후가 불순한데,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것과 일이 없으니, 경연(經筵)과 정사보살피심을 쉬지 마소서. 또 들으니, 형조 상복사(刑曹詳覆司)에서 형결(刑決)이 매우 적은 것은 의정부에서 지체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사인(舍人)과 검상(檢詳)이 직무는 돌보지 않고 날마다 기녀(妓女)를 끼고 풍악이나 일삼으며 술에 취해 있으면서 매양 고풍(古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왕께서 법을 만드심은 반드시 이러한 것이 아니니 앞으로는 이와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또 즉위하신 후로 불필요한 벼슬아치가 늘어나 녹을 먹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가설(加設)한 선전관(宣傳官), 선공 감역관(繕工監役官), 공조·호조의 가랑관(假郎官)은 모두 혁파 하소서. 서총대(瑞葱臺)의 감역(監役)도 따라서 녹을 먹고 있으니, 이것도 혁파하셔야 됩니다. 요즈음 순경(巡更)1090) 을 근실히 하지 않아 도둑이 어고(御庫)를 침범하도록 하였으니, 이보다 어 큰 번고가 없습니다. 이는 금병(禁兵)을 맡은 관원이 조심하지 않은 소치입니다. 병조에 명령하시어 주야로 파</p>	<p>○上御思政殿，講儒生，領議政柳洵曰：“今朝廷大臣畢會，以《中庸》九經，論難治道，使金應箕問之，安潤德、李惟淸答之。”上曰：“可。”大司憲李惟淸，因賤貨貴德之語，進啓曰：“三代以上人，君無私貨，漢桓·靈、唐德宗，始有之。在前朝，則忠惠王聚儲於後殿，前者臺諫請，革內需司，此言甚當。近日時令不順，莫如謹天戒，宜不輟經筵視事。且聞刑曹詳覆司刑決甚少，議政府留滯故也。舍人、檢詳不顧職事，日以率妓張樂爲事，長醉不醒，每以古風爲言。先王設法，不必如此，今後勿令如是。且卽位以後，冗官數多，食祿者衆。加設宣傳官、繕工監役官、工曹、戶曹假郎官，并可革之。瑞葱臺監役，因在受祿，此亦可革。近日巡更不勤，致令盜犯御庫，變莫大焉。此任禁兵之官，不謹所致也。令兵曹晝夜把直，嚴加考察，則無此患也。”柳洵曰：“大司憲所啓甚當。且內需司，雖祖宗朝所設，革廢甚當。今後內需之財，雖不足，勿令加聚。”朴元宗曰：“外</p>
---	---	---

수를 보고 엄중하게 살피도록 한다면 이런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유순은 아뢰기를,
 “대사헌이 아뢴 바가 매우 타당합니다. 내수사(內需司)는 비록 조종조에서 설립한 것이지만, 폐지하는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앞으로 내수사의 물자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더 모아 들이지 마소서.”

하고, 박원중은 아뢰기를,
 “외방의 장리(長利)를 서제(書題)1091)가 진상할 때 민폐가 심히 많습니다.”

하고, 유순과 박안성(朴安性)은 아뢰기를,
 “장리(長利)란 명칭은 성상의 밝으신 덕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노공필(盧公弼)은 아뢰기를,
 “국가에서 장리를 두는 것은 백성과 함께 이익을 다투는 것입니다. 수납할 때 억지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백성의 원성이 많습니다.”

하고, 홍숙(洪淑)은 아뢰기를,
 “함경 감사(咸鏡監司) 고흥산(高荊山)이 내수사 장리를 감해 줄 것을 청하자, 곧 그 문제를 내수사에 내려 별좌(別坐)·서제(書題)를 시켜 계산하게 하였으니, 신의 생각에는 공사(公事)란 내수사에 맡길 수 없는 것이요, 만약 부득이하다면 유사(有司)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유순은 아뢰기를,
 “승지(承旨) 1인이 맡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경주(洪景舟)는 아뢰기를,
 “내수사의 장리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어 성종(成宗)께서도 혁파하지 못하셨지마는, 대개 국가에서 대법이 있어 때에 따라 개혁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이러한 일이겠습니까? 성종께서 이를 혁파하셨어야 하나, 자손이 많아 갑자기 혁파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조종조에서는 대군(大君)과 왕자군(王子君)의 집·토지·노비가 모두 규정이 있어 그 예에 따라 주었었는데, 성종 때에

方長利，書題進上，病民甚多。” 柳洵、朴安性曰：“長利之名，非聖明美事也。” 盧公弼曰：“國之有長利，與民爭利也。收納之時，抑勒之事甚多，由是民怨實多。” 洪淑曰：“咸鏡監司高荊山請減內需司長利，卽下內需司，令別坐書題計之，臣意以謂公事不可付內需司，若不得已則付之有司可也。” 柳洵曰：“承旨一員掌之何如?” 洪景舟曰：“內需長利，其來已久，成宗不能革矣，大抵國有大法，因時沿革，況此事乎? 成宗可革此事，而螽斯繁衍，不能遽革。 祖宗朝大君、王子君，家舍、田民，皆有規模例給，成宗朝，諸宮家制，踰於宮掖，凡財產亦多賜給。以此士大夫，謂之過制。 近日百姓流離，尙未蘇復，今後勿遣委差。 雖未永革，姑革似可。” 宋軼曰：“景舟之言然矣。 臣親見，成宗朝王子君數多，故不得革之，然非成宗之意也。” 柳洵曰：“大司憲所言刑決，檢詳掌之，而果未畢矣。” 元宗曰：“檢詳數遞，故未得決之。 政府移政院，政院啓之，三覆乃決，由是久滯。” 惟淸曰：“今後舍人司，令憲府摘奸何如?” 柳洵等

	<p>는 모든 왕족들의 집 제도가 궁궐보다 지나치고 재산 역시 많이 사급(賜給)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사대부들이 지나친 제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사이 백성들이 유리(流離)되어 아직까지 복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금후는 위차(委差)를 보내지 마소서. 비록 영원히 혁파하지는 못하더라도 차차 혁파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하고 송일(宋軾)은 아뢰기를, “홍경주(洪景舟)의 말이 옳습니다. 신이 직접 살피건대, 성종 때는 왕자군(王子君)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혁파(革罷)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성종의 본의는 아니었습니다.”</p> <p>하였다. 유순은 아뢰기를, “대사헌이 말한 바대로, 형결(刑決)은 검상(檢詳)이 말았는데, 과연 끝내지 못하였습니다.”</p> <p>하고, 원종은 아뢰기를, “검상이 자주 갈리기 때문에 판결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政府)에서 정원(政院)으로 이첩하면 정원에서 아뢰는데, 세 번 심리한 뒤에 판결을 하므로 오랫동안 지체하게 됩니다.”</p> <p>하고, 유청(惟淸)은 아뢰기를, “금후는 사인사(舍人司)를 헌부로 하여금 조사[摘奸]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유순은 아뢰기를, “사인(舍人)은 특별히 하는 일은 없으나, 그들이 칭하는 고풍(古風)은 갑자기 고칠 수 없습니다.”</p> <p>하고, 유청은 아뢰기를,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시키는 일은 입시 대신(入侍大臣)으로 하여금 의정(議定)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曰：“舍人別無所爲之事，然其稱古風，不可遽改。” 惟淸曰：“汰冗官事，令入侍大臣議定，何如？” 元宗曰：“講武數，則宣傳官不得不多，今則不然，加設宣傳官，革之爲便，監役及假郎官竝革之。 若有不得已事，則以軍職人員差之， 畢後還遞可也。” 柳順汀曰：“瑞葱臺監役，今則無之， 如有之， 不可遽革， 故付於無祿耳。” 景舟曰：“有祿遞兒則無之， 無祿遞兒則果有之。 宣傳官， 以子弟差下事有教， 故加設矣。 若宣傳官之任， 則有武才驍勇者差之， 今無講武之事實， 宣傳官及文臣宣傳官足矣。 以元勳子弟加設， 而一朝遽革， 則彼必失心， 仍差西班牙職何如？” 惟淸曰：“內需司長利革廢事， 元宗之言甚當， 景舟之言甚非， 請速革之。 非祖宗所立， 始於世祖， 永革甚當。” 上曰：“內需司長利， 成宗朝革之， 而爲大妃殿還設， 今不可遽革。 舍人等若有過誤， 則政丞當糾舉。” 柳洵曰：“舍人等事， 其來久矣。 不可遽革。” 惟淸曰：“政廳無史官， 甚不便。 若傳教及政事間事， 不可不記。” 柳洵等曰：“雖無古例， 入參何害？”</p>
--	--	---

하였다. 원종은 아뢰기를,
“강무(講武)를 자주한다면 선전관(宣傳官)이 많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가설(加設)한 선전관은 폐하는 것이 편리하고, 감역(監役) 및 가랑관(假郎官)도 아울러 폐지하소서.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군직(軍職)의 인원을 차출했다가 일이 끝난 뒤 도로 교체하셔도 될 것입니다.”

하고, 유순은 아뢰기를,
“서충대 감역(瑞慈臺監役)이 지금은 없지만, 있을 때에는 갑자기 폐할 수 없기 때문에 봉록(俸祿)이 없는 데 붙여 두었습니다.”

하고, 경주는 아뢰기를,
“녹(祿) 있는 체아(遞兒)1092) 는 없고, 녹 없는 체아는 과연 있습니다. 선전관은 제자(子弟)로 차하(差下)하라는 하교가 계셨기 때문에 가설한 것입니다. 선전관의 소임은 무재(武才)가 있고 용맹스러운 자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강무(講武)하는 사실이 없으니, 선전관은 무신 선전관이라도 족합니다. 그래서 원훈(元勳)의 자제로 가설한 것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혁파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낙심할 것이니, 그대로 서반직(西班牙職)에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유청은 아뢰기를,
“내수사 장리(長利) 혁파의 일은 원종의 말이 매우 타당하고 경주(景舟)의 말은 부당하니, 속히 혁파하소서. 조종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세조 때에 처음 설치한 것이니, 영원히 혁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수사의 장리는 성종 때 혁파하셨는데, 대비전(大妃殿)께서 다시 설치하신 것이니, 지금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 사인(舍人) 등이 과오가 있다면 정승이 감독하고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는데, 유순은 아뢰기를,

	<p>“사인 등의 일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갑자기 혁파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유청은 아뢰기를, “정청(政廳)에 사관(史官)이 없어 매우 불편합니다. 전교(傳敎) 및 정사 등의 일을 기록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유순 등은 아뢰기를 “고례(古例)는 없지만 들어와서 참여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p>	
<p>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1월 22일(신유) 3번째기사</p>	<p>거탄(炬炭)·소목(燒木) 등의 물건을 수납할 때 감봉(監封)하는 관리의 침해를 입어 혹은 본 수량의 배를 들이기도 하고 혹은 단 물건을 줌으로써 독촉을 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금후에는 감찰이 3일에 한 차례씩 자문 선공감(紫門繕工監)에 나아가, 각전(各殿)에 드리는 거탄과 소목을 각 전의 해장(該掌) 내관과 함께 앉아 감시하여 받아 나누어 보내고, 승정원(承政院)·사옹원(司饗院)·사약방(司鑰房)·궁방(弓房)·내의원(內醫院) 등 궐내 각사(各司)에서 소용되는 것은 각사 사령(使令)으로 하여금 받아 가게 하면 침독(侵督)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며, 수납도 과중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p>	<p>如炬炭、燒木等物輸納時，爲監封之吏所侵虐，或倍本數而納，或贖物以免侵督，以此尤不能支當。今後監察，三日一次，到紫門繕工監，如各殿(洪)〔供〕進炬炭、燒木，則與各殿該掌內官同坐，監捧分送。如承政院、司饗院、司鑰房、弓房、內醫院，一應闕內各司所用，令各司使令受去，則侵督之弊除，而所納不至於多重。</p>
<p>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12월 15일(갑신) 5번째기사</p>	<p>안윤덕은 속은 음험하고 겉은 부과(浮誇)하며, 욕심 많고 일내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기세를 부리고 은연중 남을 중상하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그에게 빌붙고 감히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서울로 올 때는 물건을 실은 바리가 잇닿았고, 타도 열읍에서 주는 뇌물이 그가 가는 길로 모여 들었지만, 일행의 경비에는 조금도 나눠 쓰지 않았습다. 한 묶음의 포육과 한 말의 쌀이라 할지라도 모두 물화(物貨)와 바꾸었으니, 평안도(平安道)의 백성들이 그것을 운반하는 데 지쳐 말하기를, ‘비록 상당(上黨) 한명회(韓明澮)의 행차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가 경조(京兆)1143 에 있을 적에는 사사로운 일로 법을 굽히고 공사의 처리를 불공평하게 하였으며, 낭료(郎僚)들이 겁을 먹고 꺼려 감히 사정하려고 항쟁하지 못</p>	<p>安潤德，其中險害，其外浮誇，貪冒喜動，加之詭辨，使氣張焰，陰行中傷，人皆畏附，莫有言者。其赴京也，所賚之物，馱載連絡，他道列邑，賂遺輻集於道，而未嘗分與一行之費。雖束脩斗米，盡買物貨，而平安一路之民，困於轉輸，以爲：‘雖上黨韓明澮之行，無以過此。’其在京兆也，徇私枉法，聽理不公，郎僚畏忌，莫敢矯爭。其提調司饗也，各道進上雜物，必行賄於</p>

	하였습니다. 그가 사옹원(司饗院)에 제조로 있을 때에는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건을 반드시 자기 집에 뇌물을 바치게 한 뒤에 진상케 하였으니, 그의 욕심과 더러운 행동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其家，然後納之，貪鄙之行，難可盡舉。
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1월 13일(신해) 5번째기사 사신의 소용 잡물은 내탕에 있는 것을 미루어 쓰게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나올 때의 일체 용도(用度)의 잡물(雜物)은, 내탕(內帑)에 있는 것을 미루어 쓰게 하고, 내탕에 없는 물건은 외방(外方)에 행문 이첩(行文移牒)하게 하라.”	○傳于政院曰：“天使時一應用度雜物，以內帑所有推用，以內帑所無之物，行移外方可也。”
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1월 16일(갑인) 2번째기사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조익(趙翊)은 부상(父喪)을 입었을 때에 술 마시고 고기먹기를 평일과 다름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 때문에 사복시(司僕寺)에 갔을 때, 그 관원이 술을 주고 소찬(素饌)으로 접대하니, 조익(趙翊)은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먹으니 좋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 하였습니다. 또 일찍이 황해도(黃海道) 연안부(延安府)에 가서 연회(宴會)에 참석하여, 음식을 먹고 즐겁게 놀기를 다른 손들과 다름없이 하였으니, 또한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承文正字趙翊持父喪，飲酒食肉，無以平日。常以事，到司僕寺，其官員飲之酒，以素饌饋之。翊曰：‘我食肉，特好肉來。’又常往黃海道延安府，參於宴會，飲食歡樂，無異他客，亦請改正。”
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1월 28일(병인) 2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성종조(成宗朝)에는 어필(御筆)로 써서 내리기를, ‘당언(讜言)1293)의 깊은 공로를 살펴보며, 동방의 선비가 많은 것을 즐긴다.’ 하였으며, 또 특별히 신중호(申從濩)·정성근(鄭誠謹)·김응기(金應箕)에게 가자(加資)하고, 또 수정(水精) 술잔을 내렸으며, 또 자주 내사(內使)를 보내어 술을 내리기도 하고, 혹은 사옹원(司饗院)에 명하여 밥을 지어 대접하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그 후하게 대접한 대개입니다.” 하였다.	政院啓曰：“在成宗朝，以御筆書下曰：‘觀讜言之深功，樂東方之多士。’又特加申從濩、鄭成謹、金應箕，又賜水精盃，又數遣內使賜酒，或令司饗院炊食食之：此其重待之概也。”
중종 5권, 3년(1508	계중에게 전교하기를,	傳于繼重曰：“爾言甚是，予則喜之。

<p>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2월 1일(기사) 2 번째기사 임계중에게 술을 내려 주다</p>	<p>“그대의 이 말이 매우 옳으니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나 조종의 성헌(成憲)을 지금 고칠 수는 없다.” 하고, 이내 빈청(賓廳)에서 술을 내려 주었다.</p>	<p>然祖宗成憲，今不可變。”仍賜酒于賓廳。</p>
<p>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2월 1일(기사) 3 번째기사</p>	<p>비록 지금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여위고 나라는 텅 비어 고갈됨을 걱정하고 있지만, 세족(世族)과 부유한 백성들은 더러 폐풍(弊風)을 그대로 따르고, 예전 버릇을 고치지 아니하여 수레와 말[輿馬], 의복과 장식[服飾]에 사치하고 화려함을 힘써 숭상하고, 안주와 반찬[肴羞]이나 술 따위를 모두 극도로 향기롭고 진귀하게 하니, 평상시더라도 오히려 옳지 못한 일인데, 더구나 오늘날에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비록 예전의 나쁜 풍습을 갑자기 고치기가 쉽지 않겠지만 또한 바로잡는 방법이 지극하지 못한 바 있기로 내가 매우 근심되어 낮이나 밤이나 생각하게 된다. 오직 나의 도리에 맞추어 가는 대신(大臣)들과 법을 지키는 백관(百官)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백성에게 앞장을 서서, 무릇 손님 접대, 혼인에 쓰는 용품과 의복·음식의 자봉(自奉)을 오직 사치를 버리고 검약하기를 힘써, 나의 검소를 숭상하는 것으로 풍속을 이루려는 뜻에 부응(副應)하도록 하라.” 하였다.</p>	<p>縱今民困餓羸，國虞虛耗，而世族富民，則或有因循弊風，不革舊習，輿馬服飾，務尚奢麗，肴羞酒醴，皆極香珍。在平時，且猶不可，矧今日安可忍爲是？雖舊染之習，未易卒變，亦有矯枉之方，有所未至，予用甚軫，早夜興懷。惟我道揆大臣，法守百僚，自今伊始，率先于民，凡賓婚之需，衣食之奉，惟務去奢從約，以副予崇儉成俗之意</p>
<p>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2월 1일(기사) 4 번째기사</p>	<p>대마 도주(對馬島主) 종익성(宗杳盛)이 여시라(余時羅)를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對馬島主宗杳盛，遣余時羅，來獻方物。</p>
<p>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2월 3일(신미) 1 번째기사</p>	<p>선주(船主)·대관(代官)과 사송반인(使送伴人)은 모두 섬들 위로 나아오게 하여, 풍악을 갖추고 술을 내렸으며, 각기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p>	<p>船主、代官使送伴人，皆令入就階上。張樂、賜酒，各賜物有差。</p>
<p>중종 5권, 3년(1508</p>	<p>주문사(奏聞使) 성희안·신용개(申用漑)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위에서 승지</p>	<p>○奏聞使成希顔、申用漑還自京師。</p>

<p>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2월 3일(신미) 3 번째기사</p>	<p>한세환(韓世桓)을 시켜 모화관에서 맞아 위로하게 하되 술과 풍악을 내렸다.</p>	<p>上命承旨韓世桓，迎慰于慕華館，賜酒樂。</p>
<p>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3월 1일(무술) 1 번째기사</p>	<p>그러나 그가 가지고 간 부채[扇子]와 마른 노루고기[乾獐]를 중국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으니 그가 한명회와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p>	<p>然其所持扇子及乾獐，多散於華人，華人至今稱之，其不與明澮同明矣。</p>
<p>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3월 6일(계묘) 3 번째기사 경연관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다</p>	<p>경연관 유순(柳洵) 등 36인에게 옛 동궁(東宮) 앞뜰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술과 음악 1등(等)을 하사했다.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과 동지사(同知事)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대간이 방금 신 등을 논박하고 있으므로 오늘 잔치에 참여하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일은 경연관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니 대간이 논박하고 있더라도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각각 자리에 나아가 술을 마시고 한껏 즐겼다. 장차 잔치가 끝나려는 즈음에 중관(中官)1451) 이 명(命)을 받들어 별도로 술과 안주를 하사하고, 이내 한 장의 종이를 펴 상교(上敎)를 전하므로 좌중이 청하여 보니 곧 어서(御書)였다.</p>	<p>○命賜宴經筵官柳洵等三十六人于古東宮前庭，賜酒樂一等。領事成希顔、同知事申用漑啓曰：“臺諫方論臣等，今日參宴未安。”傳曰：“今日之事爲經筵官設也，雖臺諫論之，其無辭焉。”於是各就位飲權甚，將罷，中官將命別賜酒饌，仍披一紙，傳上敎，坐中請觀，乃御書也。</p>
<p>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3월 14일(신해) 4번째기사</p>	<p>정조사(正朝使) 이운거(李云柜)가 복명(復命)하기를, “신이 북경(北京)에 가서 방물(方物)을 바칠 때, 태감(太監)1479) 등이 정수(定數) 이외에 인삼(人蔘) 5근을 납부하기를 독촉하면서 말하기를, ‘성절사(聖節使)도 3근을 바쳤다.’고 하기에, 신도 마지못하여 납부했습니다.”</p>	<p>○正朝使李云柜復命曰：“臣赴京獻方物時，太監等督納數外，人蔘五斤曰：‘聖節使亦納三斤。’臣不得已納之。</p>
<p>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p>	<p>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김극휼(金克幅)이 원종 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에 대하여 논계하고, 또 아뢰기를,</p>	<p>○壬子/御朝講。掌令金克幅，論啓原從族親加，且：“司饗院官員等減三等</p>

<p>3년) 3월 15일(임자) 1번째기사</p>	<p>“사용원(司饗院) 관원들에게 3등을 감해서 형벌을 정한 것을 신 등은 관대한 법을 적용함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는데, 정승들은 도리어 현임(現任)을 체직하지 말도록 청했으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p> <p>하니, 영사(領事) 유순(柳洵)이 아뢰기를, “신 등도 또한 그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술과 찬이 있는 것을 보고 감히 먹기는 하였지만 실상 별다른 정실(情實)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명(明)나라 사신이 올 시기가 임박한데 갑자기 구관(舊官)을 바꾸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므로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장령의 말이 또한 어찌 그르겠습니까?”</p> <p>하였다. 김극뽕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근래 백관들이 다 공경하고 근신하게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없으니, 마땅히 엄중하게 논박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근밀(近密)한 곳에 앉아 함부로 떠들고 또 서로 술과 찬을 빼앗아 자못 관리의 위의(威儀)를 잃었으니, 더욱 중하게 죄를 다스려서 그 나머지를 징계해야 하겠습니까.”</p>	<p>論罪，臣等以爲用寬典太過，政丞等，反請勿解見任，是何意耶？”領事柳洵曰：“臣等亦知其非矣。但右人等，見其有酒餐，而敢飲食之，事涉無情。加以天使期迫，遽遞舊官未便，故敢啓耳。掌令之言亦豈非乎？”克幅曰：“臣見近來百官，皆無敬謹持心者，所宜重論。況在近密之地，坐肆喧譁，又相攘奪酒餐，殊失官人之儀。尤當重治，以懲其餘。”</p>
<p>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3월 16일(계축) 5번째기사 좌의정이 북경에 가므로 전별연을 베풀도록 하다</p>	<p>승정원이 아뢰기를, “내일 충훈부(忠勳府)에서 좌의정을 전별하게 되는데, 전에 창산 부원군(昌山府院君) 성희안(成希顔)이 북경에 갈 때 재신(宰臣)과 추신(樞臣)이 전별연을 베풀었고, 특별히 술과 음악을 하사하였으며, 지금도 한 시대의 원훈(元勳)들이 다 모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좌의정이 곧 만릿길을 가게 되니 술과 음악 각 일등(一等)을 하사하라.”</p> <p>하였다.</p>	<p>○政院啓曰：“明日忠勳府餞左議政。前昌山府院君成希顔赴京，宰樞設餞宴，特賜酒樂。今亦一時元勳皆會，故敢啓。”傳曰：“左議政將有萬里之行，其賜酒樂各一等。”</p>
<p>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4월 8일(을해) 2 번째기사</p>	<p>명하여, 죽은 한산 군수(韓山郡守) 송연손(宋演孫)에게 쌀과 포목을 부의(賻儀)하도록 했다.</p>	<p>○命賻故韓山郡守宋演孫米布。</p>

중종 5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4월 28일(을미) 1번째기사	천사를 위해 사정전(思政殿)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乙未/宴天使于思政殿。
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5월 11일(무신) 1번째기사	경회루(慶會樓) 밑에서 두 천사(天使)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戊申/宴兩天使于慶會樓下。
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5월 16일(계축) 4번째기사	대간이 부름을 받고 오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술을 공궤하라.’ 하였는데, 또 정사(呈辭)하고서 물러갔다	○臺諫承召而來，傳于政院曰：“饋酒”，又呈辭而退。
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6월 10일(병자) 1번째기사 천사가 구봉과 구아, 당고를 바치다	천사(天使)가 구봉(毬棒) 2조(條)와 구아(毬兒) 4개와 당고(唐苽) 1기(器)를 바치니, 전교하기를, ‘구봉·구아는 해사(該司)에 내리라.’ 하였다.	○丙子/天使獻毬棒二條、毬兒四箇、唐苽一器，傳曰：“毬棒、毬兒，下該司。”
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6월 25일(신묘) 2번째기사	명하여 빈청(賓廳)에서 정원(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및 입직(入直)한 제장(諸將)을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政院、弘文館、藝文館及入直諸將，命饋于賓廳。
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6월 26일(임진) 1번째기사	두 천사가 각각 서책(書冊)·도화(圖畫)·채단(彩段) 따위 물건을 바쳐 오자, 명하여 동빈청(東賓廳)에서 가지고 온 두목(頭目)에게 공궤(供饋)하게 하고 승지한세환(韓世桓)을 보내어 치사(致謝)하게 하였더니, 상사가 세환에게 몰래 말하기를,	○壬辰/兩天使各獻書冊、圖畫、彩段等物，命饋貴來頭目于東賓廳，遣承旨韓世桓致謝，上使潛語世桓曰：“別贈物件，勿令西邊頭目知之。”

	“별증 물건을 서변(西邊)1649) 두목이 알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6월 30일(병신) 1번째기사	(전략) 또 봉상시(奉常寺)의 제포(祭脯)는 노루 3마리로 장포(長脯) 2조(條)를 만드는데, 근년에는 평안도에 짐승이 희귀하여, 각 고을이 혹 다른 고기를 섞어서 정결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쾌포(快脯)로 아주 정하게 만들어 들이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조종조(祖宗朝)의 구전(舊典)이므로 신의 말로 가버이 고칠 수 없으니, 마땅한가를 널리 의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말의 수를 줄이는 일은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와 병조(兵曹)가 함께 의논하고, 제포를 쾌포로 장만하여 들이는 일은 봉상시 제조와 예조(禮曹)가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且奉常寺祭脯，以獐三口。作長脯二條，近年則平安道禽獸稀貴，故各官或雜以他肉，不爲精潔，今後以快脯，精究造納何如？然祖宗朝舊典，不可以臣言輕改，請廣議當否。”傳曰：“馬匹減數事，司僕寺提調。與兵曹同議，祭脯以快脯備納事，奉常寺提調，與禮曹同議，可也。”
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7월 7일(계묘) 4번째기사	상천사(上天使) 이진(李珍)이 단자(段子) 따위 물건을 바치고 이르기를, “본국인 태감(太監)이 본국의 토산물을 얻으려고 나에게 부탁하여 보냈습니다. 그 회봉(回奉)1663) 은 모물(毛物)·백저포(白苧布)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上天使李珍，獻段子等物曰：“同僚本國人太監，欲得本國土產，付我以送。其回奉請以毛物、白苧布計給。”
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7월 9일(을사) 1번째기사	내약방 제조(內藥房提調) 유순(柳洵)·권균(權鈞) 및 승지(承旨)·사관(史官) 등이 대전(大殿)에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마침 가벼운 병이 있어 가야흐로 약을 먹는다.” 하고, 이어서 명하여 술을 내리게 하였다.	○乙巳/內藥房提調柳洵、權鈞及承旨、史官等，問安于大殿，傳曰：“適有微恙，方服藥。”仍命賜酒。
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7월 14일(경술) 1번째기사	경회루(慶會樓) 밑에서 천사에게 잔치하였는데, 술이 세 번 돌고서 파했다.	○庚戌/宴天使于慶會樓下，酒三巡而罷。

<p>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7월 17일(계축) 5번째기사</p>	<p>홍문관(弘文館)이 아뢰기를, “이제 대간이 직을 잃고 공론이 행해지지 않는데도 지나친 가자를 도로 제수한다면 장차 어떻게 천재(天災)를 그치게 하겠습니까? 이제 비록 감선 철악(減膳撤樂)1674) 하고 직언을 구하는 분부를 내리시더라도 다 헛된 문식(文飾)입니다.</p>	<p>○弘文館啓曰：“今臺諫失職，公論不行，而還授濫加，將何以弭天災乎？今雖減膳撤樂，下求言之教，皆爲虛文也。</p>
<p>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7월 20일(병진) 1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서계(書啓)한 말은 지당하나, 이미 중외에 반포하였으니 개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육조(六曹)에는 사중(司中)에 어찌 밀린 일이 없겠는가? 참판(參判) 이하는 다 물러가서 일을 보살피라. 특별히 술을 내리니, 경 등은 실컷 마시라.”</p>	<p>傳曰：“書啓之言至當矣，已頒布中外，似難改正。六曹則司中豈無滯事？參判以下，皆退而治事。別賜酒，卿等其劇飲。”</p>
<p>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8월 16일(신사) 1번째기사</p>	<p>순정이 아뢰기를, “폐조 때에 피물(皮物)은 반드시 야인에게서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면 수령이 또한 중죄(重罪)를 입으므로, 비록 그 폐해를 알지라도 금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호송군(護送軍)이 도둑을 만났다고 핑계하여 그 타던 말을 도리어 팔고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듣건대, 북도(北道)1726)의 백성은 흉년이 너무 심하여 바닷가에서 소금을 구하고 소를 야인에게 파는데, 관리가 금지하는 것을 꺼려서 반드시 밤을 타서 가기 때문에 야인에게 사로잡혀 심처(深處)1727)의 야인에게 옮겨 팔린다고 합니다. 이러하면, 마소뿐 아니라 사람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p>	<p>順汀曰：“廢朝時皮物，必求於野人，不得則守令亦被重罪，雖知其弊，而不能禁止，且護送軍，托以逢賊，以其所騎馬，必反賣而還云。又聞北道人民，饑荒太甚，求鹽海邊，以牛隻反賣於野人，憚官吏禁止，必乘夜以往，因爲野人所擄，轉賣於深處野人云。如此則非徒牛馬，人物亦甚可慮。”</p>
<p>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8월 19일(갑신) 3번째기사 문소전·연은전의 제향에 쓸 과동저(過冬菹)에 관해 전교하다</p>	<p>전교하기를,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의 제향(祭享)에 쓸 과동저(過冬菹)를 성종조(成宗朝)에서는 대내(大內)에서 담갔는데, 폐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제 성종조의 전례를 따름이 옳겠다..”</p>	<p>○傳曰：“文昭殿、延恩殿祭享所用過冬菹，成宗朝沈造於內，而至廢朝不然。今依成宗朝例可也。</p>

<p>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9월 10일(을사) 1번째기사</p>	<p>판윤(判尹) 전임(田霖)이 아뢰기를, “신이 응방 제조(鷹坊提調)가 되었는데, 매[鷹]의 수가 아주 적어서 잡는 평이 많지 않으므로 혹 진상(進上)을 꾀하는 수가 있으니, 청컨대 함경남도 및 강원도로 하여금 매를 얻는 대로 봉진(封進)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새를 잡는 사람의 원수(元數)가 20인인데, 많이 모자라니, 충차(充差)하소서.”</p>	<p>○乙巳/判尹田霖啓曰: “臣爲鷹坊提調, 鷹數至少, 捕雉不多, 或闕進上。請令咸鏡南道及江原道, 鷹子隨所得封進何如? 且捉鳥人元數二十, 多有闕者, 請充差。”</p>
<p>중종 6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9월 18일(계축) 1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독제(蠹祭)1799) 의 음복(飲福)1800) 때에 사악(賜樂)하지 말라. 태백(太白)이 사라지기 전에는 모든 연향(燕享)의 일을 일체 멈추어서 하늘의 재변에 응하라.” 하였다.</p>	<p>○癸丑/傳曰: “蠹祭飲福, 其勿賜樂。太白不滅之前, 凡燕享事, 一切停之, 以應天變。”</p>
<p>중종 7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10월 10일(갑술) 7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내가 즉위하고부터 국고가 부족할까 염려하여 친족에게 돈독하게 하는 뜻을 미처 행하지 못하였다. 제군(諸君)1845) 과 부마(駙馬)에게 쌀과 콩 각 15석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남편이 죽었으면 그 처에게, 그 처가 죽었으면 그 남편에게 지급하라.” 하였다.</p>	<p>○傳曰: “予自卽位, 慮國庫竭虛, 未行敦族之義。其賜諸君、駙馬米豆各十五石, 夫死則給其妻, 妻死則給其夫。”</p>
<p>중종 7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12월 9일(임신) 6번째기사</p>	<p>의금부가 첩지중추부사 이줄의 초사(招辭)를 가지고 아뢰기를, “밀계(密啓)한 지 며칠이 지나 오촌질 이장길(李長吉)에게 말하기를, ‘밀계한 뒤에 술을 하사(下賜)하셨다’고는 하였으나, 이를 자부(自負)하여 남에게 자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p>	<p>○義禁府, 以僉知中樞府事李茁招辭, 啓曰: “密啓後有日, 與五寸姪李長吉相語曰: ‘密啓後賜酒’云, 而無自負誇言等事。</p>
<p>중종 7권, 3년(1508) 무진 / 명 정덕(正德) 3년) 12월 21일(갑신) 1번째기사</p>	<p>예조 판서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야인(野人) 망합(葬哈)이 전일 올라왔을 때에, 국가에서 공이 있다 하여 궤향(饋餉)을 후대하고, 안마(鞍馬)와 단의(段衣) 등 물건을 하사(下賜)하였습니다. 지금은 변장(邊將)이 다른 일에 의하여 올려 보낸 것이므로, 만약 우대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차지 않을 듯합니다. 망합은 추장(酋長) 중에서도 가장 겐오(桀驁)2020) 한 자이므로, 비록 전일과 같은 후대는 못한다 해도 면포를</p>	<p>○甲申/禮曹判書鄭光弼啓曰: “野人葬哈, 前者上來時, 國家以爲有功, 厚待饋餉, 賜鞍馬段衣等物。今則邊將, 依他上送, 若不優待, 恐未滿其心也。葬哈, 酋長中最桀驁者, 縱不如前日之厚, 量給絁布, 又饋餉於本曹, 以示優</p>

	<p>참작하여 지급하고, 또 본조(本曹)에서 궤향을 주어 우대함을 보이는 것이 어떠할는지, 수의토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에게 수의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待何如? 請收議爲之。” 傳曰: “收議于政丞。”</p>
<p>중종 7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1월 19일(임자) 1번째기사</p>	<p>지평 신상(申鎰)이 아뢰기를, “사사의 세가 무엇이 부득이합니까? 기신재(忌晨齋)에 내수사(內需司)에서 모 든 것을 장만하여 주니, 지금은 부득이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께서는 학문 이 고명하시니 좌도(左道)2080) 의 일은 마땅히 물리치셔야 하며, 군자를 보 충하는 일은 국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니, 모름지기 주저할 것이 아닙니다.”</p>	<p>持平申鎰曰: “寺社之稅, 何有不得已也? (忌晨齋) [忌辰齋] 內需司供備, 今無不得已之事。 上學問高明, 左道之事, 在所當斥, 補軍資之事, 可裨益於國家, 不須留難。”</p>
<p>중종 7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1월 24일(정사) 1번째기사</p>	<p>왜료(倭料)2091) 도 또한 경상도 성주(星州) 이하의 곡식을 보내 주고, 또 그 선척(船隻)의 대소(大小)를 참작하여 보내는 것도 적지 아니하여, 그 도에 비 축한 곡식은 거의 다하였습니 다.</p> <p>금후로는 부득이 성주(星州) 이상의 곡식을 전수(轉輸)하여 주어야 하겠는데, 제포(濟浦)에는 백여 석이며, 부산포(釜山浦)도 또한 6백여 석이 못되지 아니 하니, 신은 장차 유지하지 못할 듯합니다.</p>	<p>倭料, 亦以慶尙道星州以下穀輸給, 又量其船隻大小, 所遺不貲, 其道所儲之穀殆盡。 今後則不得已轉給星州以上之穀, 齊浦七百餘石, 釜山浦亦不下五百餘石, 臣恐將不能支矣。</p>
<p>중종 7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1월 24일(정사)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도승지 성몽정(成夢井)이 아뢰는 염분(鹽盆)의 일과, 경성의 군졸이 모두 영(營)에 속하였다는 등의 일은 체찰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문신시사(文 臣試射)에는 잘 쏘는 자를 선택하되 많이 뽑지 말라.”</p> <p>하였다.</p>	<p>○傳曰: “都承旨成夢井所啓鹽盆事, 與鏡城軍卒, 皆屬營等事, 令體察使措 置。 文臣試射, 擇其善射者耳, 不須 多也。”</p>
<p>중종 7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2월 8일(경오) 4 번째기사</p>	<p>특송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관으로 돌아가겠다. 또 할 말이 있으면 명 일에 와서 만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여기서 자고 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궤향(饋餉)할 때에 말하는 것이 가하고, 또 이 곳은 상국 사신(上國使臣)2125) 을 유접(留接)하 는 곳이라 너희들이 유숙해서는 안된다.’ 하고 반복하여 타이른 뒤에야 관소</p>	<p>特送等曰: ‘然則我等當還本館, 且有所言, 明日須來見。 不然則我等當留宿于此, 而不還館。’ 臣答曰: ‘汝有所言, 則當於饋餉時言之可也。 且此處, 乃上國使臣留接之所, 爾等不宜留</p>

	로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宿。’ 反覆開諭，然後乃還館所。”
중종 7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2월 12일(갑술)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안당(安瑯)과 사간 윤경(尹耕)이 아뢰기를, “염분(鹽盆)과 어전(漁箭)에 세를 징수하는 일은 비록 국용에 관계된다 해도, 이 역로(驛路)가 조잔한 때를 당하여 재리(財利)의 일 때문에 경차관(敬差官) 을 파견하면, 한갓 불가할 뿐만 아니라 폐 또한 많을 것입니다.”	○甲戌/御朝講。 大司憲安瑯、司諫 尹耕以爲：“鹽盆漁箭收稅事，雖關國 用，當此驛路凋殘之時，爲此財利之 事，遣敬差官，非徒不可，弊亦多 矣。”
중종 7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2월 16일(무인) 1번째기사 황감 2통을 승정원에 내리며 노친께 나누어 주고 율시를 지어 올 리라 하다	황감(黃柑) 2통을 승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예전에 육적(陸績)이 꿀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에게 바쳤거니와, 경들도 또한 노친(老親)에게 나누어 주라. 사은(謝恩)하지 말고, 율시(律詩)를 지어서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戊寅/賜黃柑二柄于政院曰：“昔有陸 績懷橘遺母，卿等亦分與老親，其勿謝 恩，製律詩以進。”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3월 16일(무신) 4번째기사	신이 이르기를, ‘가덕도의 변은 11월 초2일에 있었다. 그 때 너희들 관하에서 바다 가운데에 출입한 자를 철저히 찾아 추문하면 찾아내기가 무엇이 어려우 냐?’ 하니, 대답하기를, ‘11월과 12월 사이는 곧 청어(靑魚)·대구어(大口魚)를 잡는 때로서, 이 기회를 잃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포구에서 낚시질하고 그물질하기에 겨를이 없는데, 누가 짐을 떠나 멀리 나가겠습니까? 그 때는 본디 출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臣曰：‘加德之變，在十一月初二日。 其時爾等管下，有出入海中者，根尋推 問，則得之何難?’ 答曰：‘十一月(十) 初二日間，則乃捕靑魚、大口魚之時， 失此機，則不得爲生理。 方在浦口， 釣網不暇，何人離家遠出乎? 其時固無 出入之人。’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3월 19일(신해)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도주의 특송 상관 정장이 본조(本曹)에서 궤향(饋餉)할 때 전례를 이끌	○禮曹啓曰：“對馬島主特送上官貞長， 本曹饋餉時，援前例請職曰：‘雖小職， 願除授。’ 其副官而羅，亦請曰：‘願承

<p>3번째기사</p>	<p>어 관직을 청하기를, ‘비록 작은 관직이라도 제수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 부관 이라(而羅)도 또한 청하기를 ‘아비의 상호군(上護軍)을 계승하기를 원한다.’ 하기에, 본조에서 공이 없다고 말하였더니, 정장이 이르기를 ‘이 앞서의 특송은 공이 없었어도 으레 모두 관직을 주었습니다.’ 하므로, 신 등이 전례를 참고하여 보니, 간혹 공이 없어도 관직을 준 자도 있고 또한 주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p> <p>이라는 불손한 말을 발하여 ‘지금 관직을 올려 주지 않으면 전에 준 관직을 장차 무엇에 쓰겠는가? 관을 벗어 도로 반납하고자 한다.’ 하니, 배사(拜辭)할 때 궁전 뜰에서 관대(冠帶)를 벗고 감히 무례한 일을 행할까 두려웠습니다. 왜노가 처음에는 작은 관직에 제수되지만, 여러 차례 나와서 점차 올라 부호군(副護軍)에 이른 뒤에는 별도로 조공선(朝貢船)이라 일컬어 양료(糧料)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배[船]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그 미비(糜費)2216) 되는 양료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p>	<p>父上護軍。’ 而本曹辭以無功， 貞長云： ‘前此特送， 雖無功， 例皆授職。’ 臣等考前例， 間有無功而授職者， 亦有不授者。 而羅發不遜之言以爲， ‘今不陞職， 前所授職， 將何用乎？ 欲脫冠還納。’ 云。 恐拜辭時， 於殿庭， 脫其冠帶， 敢行無禮之事也。 倭奴初授小職， 累次出來， 漸陞至副護軍。 而後別稱 ‘朝貢船’， 以受糧料， 以此船數漸多， 其糜費糧料， 亦不少。” 傳曰： “授職當否， 議于三公。” 柳順汀議曰： “倭人職至副護軍， 則稱 ‘朝貢船’ 受料。 今者受料船數， 比舊倍多， 將來之弊， 不可不慮。</p>
<p>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3월 23일(을묘) 1번째기사</p>	<p>정원이 아뢰기를,</p> <p>“근자에 태백(太白)2231)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릇 연향(燕享)을 명하여 다시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신 등은 재변이 겨우 풀리자마자 즉시 연음(燕飲)을 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이 때문에 즉시 승전(承傳)을 봉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또 주금(酒禁)을 하는데, 연향 등의 일을 어찌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p> <p>“전자에 연향을 정과(停罷)하였던 것은 성변(星變)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태백이 보이지 않고, 감사·병사 등의 연향을 정원에서 모두 거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그러나 급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지금 금주령을 행하고 있으니 아울러 정과하는 것이 옳다.”</p>	<p>○乙卯/政院啓曰： “近者太白不見， 故凡燕享， 命復設。 臣等以爲災變纔弭， 不可卽行燕飲， 以此未卽捧承傳。 今又酒禁， 燕享等事， 何以爲之？” 傳曰： “前者停罷燕享者， 以有星變也。 今則太白不見， 監司、兵使餞宴等燕享， 政院皆當舉行， 故言之耳。 然事非汲汲， 而今行酒禁之令， 竝停可也。”</p>

	하였다.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4월 24일(을유) 3번째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각 고을의 미면(米麪)2354) 과 잡물(雜物)을 관청(2355) 에 쌓아둔 것을 어사가 모두 ‘범법’(犯法)으로 서계(書啓)하였으나, 마침내 좌험(左驗)2356) 이 없이 관리가 죄를 입었으니, 어사로 하여금 그 대강(大綱)을 철회하고 심핵(審覈)하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니, ‘좋다.’ 하였다.	○政院啓曰：“各官米麪雜物，儲于官廳，御史皆以犯法書啓，卒無左驗，官吏被罪。其令御史，撤其大綱，審覈爲便。”傳曰：“可。”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4월 26일(정해) 2번째기사 대비가 감선을 명하다	대비(大妃)가 감선(減膳)2368) 을 명하였다. 대전에서 감선하면 여러 전에서도 감선하는 것이 전레이나 해관(該官)이 계청(啓請)하기를 어려워하였더니 이에 이르러 대비가 듣고 또한 감선을 명한 것이다.	○大妃命減膳。大殿減膳，則諸殿亦減之，例也，而該官難於啓請。至是大妃聞之，亦命減。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4월 29일(경인) 3번째기사	유순정 등은 의논드리기를, “염분(鹽盆)2383) 을 더 설치하지 말 일과, 용성사(龍城社)를 계속하여 덕원부(德源府)에 소속시킬 일 및 육진의 황모(黃毛)·고모(羔毛) 등 소소한 공물을 관찰사가 수합하여 함께 상납할 일은, 아울러 아뢴 대로 하소서. 그리고 문어(文魚)·대구어(大口魚) 등을 옮겨 정할[移定] 일과 지난 해 환상(還上) 견감(鑷減)할 일 및 토표피(土豹皮)·낭미(狼尾)는 이호피(狸狐皮)의 예에 의하고, 수년을 한하여 곡식을 무역할 일은 해조(該曹)에서 본도 관찰사가 아뢴 바에 의하고, 문어는 이미 산출되는 고을에 옮기어 정하고, 대구어는 산출되는 바연어(鱧魚)로 대납하며, 토표피·낭미는 5년을 한하고, 곡식을 무역하여 군자(軍資)를 보충하고, 환상은 독촉하여 징수하지 말도록 해서 해의 풍흉(豐凶)을 보아 점차 수납할 일은 하교를 받아 행이(行移)2384) 하였으니, 이제 다시 의논할 것은 없습니다. 생리(生梨)와 사향(麝香)은 그 수가 많지 않으니, 또한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해를 한정해서 임시로 감하여 주게 하소서.”	柳順汀等議：“鹽盆勿加設事，龍城社，德源府仍屬事，六鎮黃毛、羔毛等小小貢物，觀察使收合都納事，竝依所啓。文魚、大口魚移定事，往年還上鑷減事，土豹皮、(狼) [狼] 尾，依狸、狐皮例，限數年貿穀事，則該曹曾依本道觀察使所啓。文魚已於產出官移定，大口魚以所產鱧魚代納。土豹皮、狼尾，限五年貿穀，補軍資。還上勿令督徵，視歲豐凶，漸次收納事，受教行移，今不必更議。生梨麝香，其數不多，亦令該曹磨鍊，限年權減。”皆從之。

	하니, 모두 따랐다.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5월 1일(임진) 3 번째기사 대간이 어살을 백성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호조의 이문(移文)2404) 을 보니, 방생 어살[放生魚箭]이 있기에2405) 어제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상교에 ‘어살은 조종조의 일이므로 고치지 못한다.’ 하셨으나, 신 등은 비록 조종조의 일이더라도 이제 이미 폐단이 된다면 인순(因循)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하물며 국록을 먹는 집에서 백성과 이를 다툰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일이 모두 선왕조에 나온 것은 아니요 폐조에서 어지럽게 정사하던 때에 사급(賜給)한 것이 대부분이니, 청컨대 속히 도로 주어 가난한 백성에게 업을 삼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방생 어살은 내수사 소유가 아니라, 새 본궁(本宮)에 소속되어 봉보 부인(奉保夫人)2406) 에게 준 것인데, 대간이 상세히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다만 종재(宗宰)와 각사에게는 조종조로부터 예대로 반사(頒賜)한 것이니, 추탈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	○臺諫啓曰：“見戶曹移文，有放生魚箭，【咸興魚箭】故昨日啓之。”因啓曰：“上教以爲：‘魚箭，祖宗朝之事，不可改。’臣等以爲，雖祖宗朝事，今既爲弊，不可因循。況食祿之家，與民爭利乎？且此事，非皆出於先王朝，其於廢朝亂政之時，賜給居多。請速還輸，以業貧民。”傳曰：“放生魚箭，非內需司所有，乃屬于新本宮，因給奉保夫人，臺諫不詳察言之。但宗宰各司，則自祖宗朝例頒賜，不宜追奪。”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5월 1일(임진) 5 번째기사	1. 각도의 응자(鷹子)2414) 진상하는 사람이 각역에 묵으면서 그 공궤 및 매의 먹이를 빙자하여 닭이나 개를 함부로 죽이기까지 하며, 또 각 명일 진상(名日進上)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역리를 침독하니, 금후로는 응마(鷹馬) 진상하는 사람은 연로의 각관으로 하여금 초료(草料) 및 매 먹이를 준비하여 지급토록 한다.	一，各道鷹子進上人，各驛止宿，憑其供饋及鷹食，以至濫殺鷄犬。且各名日進上持來人，侵督驛吏。今後鷹馬進上人，使沿路各官，草料及鷹食備給。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연창 부원군(延昌府院君) 김감(金勘)이 죽었으므로 명하여 소선(素膳)2422)을 올리게 하였다.	○延昌府院君金勘卒。命進素膳。

<p>4년) 5월 6일(정유) 7 번째기사</p>		
<p>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5월 7일(무술) 4 번째기사 상이 김감의 죽음으로 삼시를 소선하니 정원이 미편함을 아뢰다</p>	<p>상이 김감 죽은 것을 듣고 삼시(三時)를 소선(素膳)으로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오늘 김감을 위하여 소선을 진어하시오니, 대신 대우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심은 성덕(盛德)의 일이라고 하겠사오나, 다만 임금이 어찌 신하의 죽음을 위하여 소(素)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명일은 육선(肉膳)을 올리라.” 하였다.</p>	<p>○上聞金勘卒，素膳三時。 政院啓曰：“殿下今日爲金勘進素膳，待大臣如此，可謂盛德事。 但人君，何可爲臣死行素乎？” 傳曰：“明日進肉膳。”</p>
<p>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5월 10일(신축) 4번째기사 명년에 한하여 경기의 공물 압자 90수를 감하게 하다</p>	<p>명하여, 명년에 한하여 경기의 공물 압자(鴨子)2428) 90수(首)를 감하게 하니, 호조의 계청을 따른 것이다.</p>	<p>○命限明年減京畿貢鴨子九十首，從戶曹啓請也。</p>
<p>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5월 25일(병진) 1번째기사 조강에서 최숙생이 사복시와 홍원곶의 말을 감하고 각사의 물소를 버리자 하다</p>	<p>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최숙생·지평 유운이 앞의 일을 아뢰었다. 숙생이 또 아뢰기를, “기전(畿田) 백성은 생곡초(生穀草)를 납품하느라 매우 괴로와합니다. 사복시(司僕寺)의 말 및 홍원곶(洪原串) 말을, 청컨대 그 수를 헤아려 감하게 하소서. 각관(各官)에서 기르는 수우(水牛)도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 해만 있으니, 또한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 도의 각 목장 말은 군사에게 내어 주어 조습(調習)하게 하여 길이 잘 든 것이 있으면 나라에서 쓰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주어 위급할 때 쓰게 하소서.” 하였다.</p>	<p>○丙辰/御朝講。 大司諫崔淑生、持平柳雲，論啓前事。 淑生又曰：“畿甸之民，納生穀草甚苦。 司僕馬及洪原串馬，請量減其數，各官所養水牛，無益於國，有害於民，亦宜去之。 諸道各場馬，出給軍士，俾之調習，有馴良者則國用，其餘仍給之，以備緩急之用。”</p>

<p>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5월 25일(병진) 2번째기사</p>	<p>정원에서 최숙생이 아뢰, 사복시의 말 및 홍원곶 말을 헤아려 감할 것과, 여러 목장의 말을 군사에게 나누어 주어 조습할 것, 수우(水牛)를 버려야 할 것 등의 일을 가지고 취품(取稟)하니, 전교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p>	<p>○政院將崔淑生所啓司僕馬及洪原串馬，量減，諸牧場馬，分給軍士調習，水牛宜去等事，取稟。傳曰：“令該曹磨鍊以啓。”</p>
<p>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5월 27일(무오) 3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도적이 창덕궁(昌德宮) 내탕고(內帑庫)에 들어 자물쇠를 제거하고 봉함을 깨어 금·은기(金銀器) 및 채단 등 물건을 훔쳤다. 이는 외간 사람의 소위가 아니며, 또 조종조에 없던 일이다. 4월 20일 이후 궁을 지키는 환관 등을 모두 의금부에 내려 추문하라. 그리고 지상고 환관(知廂庫宦官) 조익(趙翊)은 그에게 순심(巡審)이 무사하다고 와서 아뢰었으니, 아울러 금부에 내려 추문하라.” 하였다.</p>	<p>○傳曰：“盜入昌德宮內帑庫，去鑰割封，偷取金銀器及綵段等物。此非外間人所爲，祖宗朝所無之事。自四月二十日以後，守宮宦官等，皆下義禁府推之。且知廂庫宦官趙翊，昨昨以巡審無事來啓，并下禁府推問。”</p>
<p>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6월 8일(무진) 4번째기사</p>	<p>헌부가 아뢰기를 “전월 그믐 때 일기청(日記廳) 낭관 등이 장악원(掌樂院)에서 회음(會飲)하여 풍악을 벌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어선(御膳)을 감하고 풍악을 거두는 때에 조금 명망이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하였으니, 청컨대 파직하여 추고 하소서.” 하고, 간원도 또한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였다.</p>	<p>○憲府啓曰：“前月晦時，日記廳郎官等，於掌樂院會飲，以至動樂。今方減膳撤樂之時，稍有名望者，有如此事，請罷職推考。”諫院亦啓之，依允。</p>
<p>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6월 16일(병자) 3번째기사 정원이 감선을 그만하 시라 청하니 농사를</p>	<p>정원이 아뢰기를, “전에 한재로 인하여 정전을 피하고 어선(御膳)을 감하셨으나, 이제 이미 정전에 돌아오셨으니 청컨대 감선(減膳)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비록 정전에 돌아왔으나 농사를 보아 복선(復膳)2522) 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p>	<p>○政院啓曰：“前因旱災，避殿減膳，今既復殿，請勿減膳。”傳曰：“今雖復殿，觀農事復膳，猶未晚也。”</p>

보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하다	하였다.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6월 18일(무인) 2번째기사	승정원·홍문관에 선운(宣醞)2523) 하니, 비내린 것을 기뻐한 까닭이었다	○宣醞于承政院、弘文館，以喜雨故也。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6월 18일(무인) 3번째기사 비가 흠족하여 남문을 열고 저자를 환원하며 왕·왕비·대비전의 어선을 회복시키다	예조가 아뢰기를, “우택(雨澤)이 점차 흠족하니, 청컨대 남문을 열고 북문을 닫을 것이며, 북을 쳐서 저자를 환원케 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 정원이 어선(御膳) 회복할 것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삼전(三殿)2524) 의 어선을 모두 회복하게 하라.” 하였다.	○禮曹啓：“雨澤稍洽。請開南門閉北門，擊皮鼓還市肆。”從之。政院啓復膳，傳曰：“三殿皆復膳。”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7월 6일(병신) 1번째기사	승정원·홍문관·병조·도총부에 선운(宣醞)하니, 중궁 탄일인 때문이었다.	○丙申/宣醞于承政院、弘文館、兵曹·都總府，以中宮誕日也。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7월 11일(신축) 4번째기사	고양 부원군(高陽府院君) 신준(申浚)이 죽었다. 부의를 내리고 또 소찬(素饌)을 올렸다. 준은 신숙주(申叔舟)의 아들로 오랫동안 승반(崇班)을 차지하였으나, 용렬하게 녹을 보전하고 한 가지 일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다. 소안(昭安)이라 시호하였다.	○高陽府院君申浚卒。賜賻，且進素饌。浚，叔舟之子，久據崇班，庸庸保祿，無一事可稱。諡昭安。
중종 8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7월 20일(경술)	폐조에 상납된 백저포(白苧布)·흑마포(黑麻布) 및 잡물(雜物)의 값을 총계하면, 10만 1천 6백 91필(匹)이니, 수대로 제급(題給)2640) 하면 국저가 넉넉하지 못하고, 또 주지 않으면 정상이 애매합니다. 전설사(典設司)의 장막은	廢朝所納白苧布、黑麻布及雜物之價，總計之則十萬一千六百九十一匹。若依數題給，則國儲不裕，不給則情涉曖

<p>8번째기사 호조 판서 장순손이 재상 경차관의 파견· 베값과 잡물 값의 부 족 문제 등을 아뢰다</p>	<p>홀것과 겹것, 크고 작은 것 아울러 7백 22건(件)을 모두 유실하였습니다. 그 때 관원에게 물으니, 폐조에 남김없이 궁궐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합니 다. 이제 만약 그 전수(典守) 관원에게 추정하자면 전수 관원이 근거가 없고, 회계를 감하고자 하면 그 수가 작지 않으니, 아울러 모두 의논을 거두소서. 그리고 오래 묵은 장(醬)과 술은, 청컨대 군사(軍士) 및 각 관사의 노비에게 나누어 주소서.” 하니, 모두 이를 좇았다.</p>	<p>味。典設司帳幕單袂大小并七百二十二 件，盡數遺失。問于其時官員，則 廢朝無遺入內不出云。今若推徵其典 守官員，則無據，欲減會計，則厥數不 小，并須收議。且久陳醬酒，請分給 軍士及各司奴婢。”皆從之。</p>
<p>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8월 6일(병인) 1 번째기사</p>	<p>주금(酒禁)을 폐지하고, 【이른 곡식이 이미 익었기 때문이다.】 공신(功臣)에 게 중삭(仲朔) 잔치를 베풀었다.</p>	<p>○丙寅/罷酒禁。【早穀已熟故也。】 行功臣仲朔宴。</p>
<p>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8월 21일(신사) 3번째기사 임금이 고기를 드실 것을 청하다</p>	<p>정원이 아뢰기를, “위에서 지금 대신의 부음을 들으시고 세 때나 소선(素膳)을 드셨는데, 내일 은 고기 반찬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政院啓曰：“上今聞大臣之訃，至三 時御素膳，請於明日，進肉膳。”傳 曰：“當如所啓。”</p>
<p>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8월 28일(무자) 2번째기사 박중근이 장원서 포도 를 따먹은 죄로 벌주 다</p>	<p>도류(道流)2683) 박중근(朴中根)의 집에 포도(葡萄)가 있으므로 장원서(掌苑 署)에서 봉하여 두고 그 집으로 하여금 잘 지키도록 하였는데, 중근이 모두 따 버리고 도리어 장원서 관원에게 욕하니 장원서에서 형조에 보고하므로 형 조에서 죄주려고 아뢰었는데, 전교하기를, “마땅히 50대로 속(贖五十) 바치도록 하라. 다만 원(苑) 안의 과일을 진상하 면 되는 것인데, 지금 사가(私家)의 물건을 봉진(封進)하려 한 것은 바로 폐조 때의 남은 버릇이니 이 뒤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p>	<p>○道流朴中根家，有葡萄，掌苑署封 之，使其家謹守，中根盡摘，而反辱掌 苑署官員。署報刑曹，曹擬罪而啓。 傳曰：“當贖五十。但苑中果實進上可 矣。今以私家之物封進，此廢朝之餘 風，後勿如是。”</p>
<p>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p>	<p>춘추관(春秋館)이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의 찬집(撰集)을 끝냈다. 정원이 아뢰기를,</p>	<p>○春秋館畢撰《燕山君日記》。政院 啓曰：“已前《實錄》奉安翌日，堂上</p>

<p>4년) 9월 12일(신축) 2번째기사</p>	<p>“그 전에는 실록(實錄)을 봉안(奉安)한 이튿날이면 의정부(議政府)에서 당상(堂上)·낭관(郎官)에게 술과 음악을 내리셨고, 차일암(遮日巖)의 세초(洗草) 때에도 또한 잔치를 내리셨습니다. 지금은 실록의 예는 아니오나, 옛 예가 이러하므로 취품(取稟)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 예대로 술과 음악을 내리라.” 하였다.</p>	<p>郎官，賜酒樂於議政府，洗草於遮日巖時，亦賜宴。此非《實錄》例也，然古例如此，取稟。” 傳曰：“依古例賜酒樂。”</p>
<p>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9월 17일(병오)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오는 19일 차일암(遮日巖)에서 세초연(洗草宴)을 할 때, 전례와 같이 단지 술만 내리고 음악은 내리지 말라.” 하였다.</p>	<p>○傳曰：“來十九日，洗草遮日巖時，依前例，只賜酒，勿賜樂。”</p>
<p>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9월 26일(을묘)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공신(功臣)들의 중삭연(中朔宴) 뒤에 은수(恩數)가 있었는지와 한 해의 네 중삭마다 모두 잔치를 거행하고 또한 은수가 있었는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p>	<p>○傳曰：“功臣仲朔宴後，有恩數乎？一年四仲朔，並皆行宴，亦有恩數乎，相考以啓。”</p>
<p>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윤9월 5일(갑자) 1번째기사</p>	<p>밀원 부원군(密原府院君) 박건(朴楗)이 졸(卒)하였다. 부고(訃告)를 듣게 되자 소선(素膳)을 들이도록 명하였다.</p>	<p>○甲子/密原府院君朴楗卒。訃聞，命進素膳。</p>
<p>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윤9월 5일(갑자) 3번째기사 부고로 성체가 해로울 것을 들어 육선을 들 게 하다</p>	<p>정원이 아뢰기를, “대신의 부고로 성상께서는 놀라고 슬프실 것이오나 세 때를 소선(素膳)하시면 성체(聖體)에 해로우실까 염려스럽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육선(肉膳)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겠다.” 하였다.</p>	<p>○政院啓曰：“大臣之訃，聖心震悼，三時素膳，恐妨聖體，明朝請進肉膳。” 傳曰：“可。”</p>

<p>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윤9월 12일(신미) 1번째기사 광릉에 친제하고 다례 등을 행하다</p>	<p>위에서 광릉(光陵)에 친제(親祭)하고 또 봉선전(奉仙殿)2731) 에 이르러 다례(茶禮)를 거행하였다. 환궁(還宮)할 때에 대주정(大晝停)2732) 에 이르러, 종재(宗宰) 이품(二品) 이상 및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제장(諸將)에게 술을 내리도록 명하고, 좌위(左衛)의 별시위(別侍衛) 황순(黃順)이 노루를 쏘아 잡아 바치니, 술을 내리고 또 대전(大箭) 1부(部)를 주었다.</p>	<p>○辛未/上親祭于光陵， 又至奉先殿， 行茶禮。 還宮時， 至大晝停， 命賜酒宗宰二品以上及臺諫、弘文館諸將。 左衛別侍衛黃順， 射獐以獻， 賜酒， 又給大箭一部。</p>
<p>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10월 16일(갑진) 9번째기사 우상이 잡은 짐승을 종묘에 올리지 말게 하다</p>	<p>우상(右廂)이 큰 돼지 한 마리와 사슴 세 마리를 사냥하여 가져다 바치니, 전교하기를, “종묘(宗廟)에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 짐승은 정당한 도리로 잡은 것이 아니니, 종묘에 올리기가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바른 길로 사냥하여 잡은 것이 아니면, 종묘에 올리지 말라.” 하였다.</p>	<p>○右廂獲大猪一口、鹿三口進獻。 傳曰：“薦於宗廟。” 政院啓曰：“此獸不以正道獲之， 薦廟深未安。” 傳曰：“果不以正道獵得， 其勿薦廟。”</p>
<p>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10월 27일(을묘) 1번째기사 정원에서 고기 반찬 드시기를 청하니 윤허치 않다</p>	<p>정원이 고기 반찬 드시기를 계청하니, 전교하기를, “연안 부부인(延安府夫人)의 기일(忌日)이며 또 완원군이 죽은 지가 얼마 안되므로 차마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p>	<p>○乙卯/政院請進肉膳。 傳曰：“延安府夫人忌日， 且完原君之卒未久， 故不忍也。”</p>
<p>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10월 28일(병진)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궐내(闕內)에 술이 한 병도 없으니, 내섬시(內贍寺)·사운서(司醞署)로 하여금 각각 30병씩 들이도록 하라.” 하매, 【주금(酒禁) 때문에 술이 없었다.】 아뢰기를,</p>	<p>傳曰：“闕內酒無一瓶。 其令內贍、司醞各進三十瓶。” 【以酒禁無酒。】 啓曰：“以陳酒， 請饋用杖使令。 傳曰：“雖非陳酒， 以此六十瓶， 可推移饋</p>

	<p>“묵은 술로 형장 쓰는[用杖] 사령들을 먹이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묵은 술이 아니라도 이 60병으로 변통해서 먹일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p>	<p>之。”</p>
<p>중종 10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11월 13일(신미) 8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입직 군사들에게 데운 술을 제급(題給)하라.”</p>	<p>○傳曰：“入直軍士，題給煮酒。”</p>
<p>중종 10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11월 23일(신사) 3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상고(廂庫)에 납입하는 지방의 심황색(深黃色) 동유(桐油)와 동백유(冬柏油)는 모두 긴절히 쓰는 것이 아니니, 모두 견감(蠲減)하라.”</p>	<p>○傳曰：“廂庫所納，鄉深黃桐油、冬栢油，皆不切於用，並蠲減。”</p>
<p>중종 10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1월 27일(갑신)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내가 우연히 《여지승람(輿地勝覽)》을 보니,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존경각기(尊經閣記)》에 이르기를, ‘상3051) 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지금 조정 에 벌여 있는 자가 모두 비단 옷 입은 집 자제로서 배우지 않고 재주가 없다. 학생 중에 반드시 경사(經史)에 통달하여 정치의 체모를 알고 재주가 쓸 만한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본관(本館)3052) 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매, 본 관에서 진사 안양생(安良生)을 천거하니, 상이 높은 관질(官秩)로 등용하고, 또 매달 초하루·보름에 성균관의 관원과 유생들을 내전에 인견(引見)하여 경 전의 뜻을 강론하고 상을 넉넉히 주었으며, 임진년3053) 에는 상이 재상들에 게 명하여 날마다 돌아가면서 본관에 나아가 경사를 회강(會講)하여 여러 생 도들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자주 군신들을 보내어 술을 하사하였다.’ 하였다. 이 일을 지금 거행하여야 하겠다.”</p>	<p>○傳曰：“予偶覽《輿地勝覽》，徐居正所製《尊經閣記》云：‘上語左右曰：「今布列朝著者，皆綺紈子弟，不學無術。學生必有通經史識治體，才堪任用者，令本館薦舉。」本館薦進士安良生，上優秩用之。又每月朔望，引館官員儒生于內殿，講論經義，優加褒獎。壬辰，上命宰相輪日仕本館，會講經史，訓誨諸生，屢遣近臣賜酒。’此事今可舉行矣。”</p>
<p>중종 10권, 5년(1510</p>	<p>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천(李堧)이 상소하였다. 모두 5개 조항인데, 첫째 본주</p>	<p>○濟州牧使李堧上疏，凡五條。其一</p>

<p>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2월 19일(을사) 3번째기사 이전이 굴 진상 감면 등 5개항을 상소하다</p>	<p>의 교수를 가려서 보낼 것, 둘째 과해량(過海糧)3121) 을 넉넉히 줄 것, 세째 산물(酸物)3122) 이 수확되지 않았으니 진상을 감면할 것, 네째 해남(海南) 해변에 역원(驛院)을 지을 것, 다섯째 쓰지 못할 수말[雄馬]을 도태해 버릴 것이었다.</p>	<p>曰, 本州教授, 宜擇差遣; 其二曰, 過海糧宜優給; 其三曰, 酸物未收, 宜蠲免; 其四曰, 海南海邊, 宜構院; 其五曰, 雄馬不可用者, 宜汰去。</p>
<p>중종 10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2월 27일(계축) 2번째기사</p>	<p>술을 금하였다. 민간의 빈궁이 심하기 때문이다.</p>	<p>○禁酒, 以民間貧甚故也。</p>
<p>중종 10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3월 4일(기미) 1번째기사 헌릉에 제사드리다</p>	<p>임금이 친히 헌릉(獻陵)3152) 에 제사드렸다. 돌아올 때에, 잠시 대주정(大晝停)3153) 에 머물러 명하여 종재(宗宰) 2품 이상과 여러 장수와 시신들에게 술을 공궤(供饋)하였다.</p>	<p>○己未/上親祭獻陵, 還時少留大晝停。 命饋宗宰、二品以上諸將、侍臣等酒。</p>
<p>중종 10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3월 5일(경신) 1번째기사 술과 고기를 관아와 군사에게 나누어 주다</p>	<p>명하여 술과 고기를 대궐 안에 있는 각 관아와 입직(入直)한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상의 탄일이기 때문이었다.】</p>	<p>○庚申/命頒酒肉于闕內各衙門及入直軍士。 【上之誕日故也。】</p>
<p>중종 10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3월 6일(신유) 1번째기사</p>	<p>영의정 박원종이 병으로 굳이 사직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상의 진퇴를 어찌 가볍게 처리하라? 과연 병이 있다면, 조리하여 낫기를 기다려서 도로 사진(仕進)하게 하라.” 하였다. 원종이 아뢰기를, “한명회(韓明澮)가 두 번 정승이 되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사직을 허락하였다</p>	<p>○辛酉/領議政朴元宗, 以疾力辭, 上曰: “首相進退, 安得輕易? 果有病, 則當調理, 待差還仕。” 元宗曰: “韓明澮再爲政丞, 此必許辭, 病愈還拜也。” 上曰: “首相進退非輕。 但今雖</p>

	<p>가 병이 나으매 도로 임명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상의 진퇴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다만 지금 체임(遞任)하더라도 뒤에 다시 될 수 있으므로, 우선 물러가 보양(保養)할 것을 허락한다.” 하고, 승지를 시켜서 술을 하사하여 보냈다.</p>	<p>遞之，後可復爲，故姑許退養。”令承旨賜酒而遣。</p>
<p>중종 10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3월 7일(임술) 2 번째기사</p>	<p>영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신으로 수상을 삼으시니, 상은이 매우 중합니다. 신이 별로 공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전에 외람하게 천은을 입어 위가 극품(極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저 정승의 직책은 매우 중한데, 수상은 더욱 중합니다. 신도 스스로 합당치 않음을 알고, 여론이 또한 반드시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비록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도 정승 직책을 감당할 사람이 드문데, 더구나 신과 같은 자이리까? 신은 상중에 상례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여러 의논이 또한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 상례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상(短喪)할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인가? 시왕(時王)의 제도를 준행(遵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무슨 허물이 되랴? 경이 수상에 합당하므로 전조(銓曹)3157)에서 천망한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니, 또 아뢰기를, “수상의 직은 신하의 최고 직입니다. 진실로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옛날에도, 금술잔·옥사발에 개똥을 담은 것으로 비유한 일3158)이 있었습니다. 신이 비록 상은에 감격하여 애써 취직한다 해도, ‘옥 사발에 개똥’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라.”</p>	<p>○領議政金壽童啓曰：“以臣爲首相，上恩深重，臣別無功能，前時濫蒙天恩，位至極品。大抵相職甚重，而首相尤重，臣亦自度不合，物論亦必以爲不可。雖無痕咎之人，堪任相職者鮮矣，況如臣者乎？臣居喪不能盡喪禮，物議亦以爲不可。請辭。”傳曰：“所啓不能盡喪禮者，指短喪時事乎？時王之制，不可不遵，有何咎焉？卿合首相，故銓曹注擬耳，勿辭。”又啓曰：“首相之職，人臣之極，苟非其人，古有比之，‘金杯玉椀，盛以狗矢。’臣雖欲感激上恩，黽勉就職，玉椀狗矢之誚，恐未免也。”傳曰：“勿辭。”令內侍與承旨，賜酒而遣。</p>

	하고, 내시와 승지를 시켜서 술을 하사하여 보냈다.	
중종 10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3월 12일(정묘) 1번째기사 친히 공릉 순릉에 제 사드리다	상이 친히 공릉(恭陵)3168) 및 순릉(順陵)3169) 에 친히 제사드리고, 돌아오 다 대주정(大晝停)에 이르러, 명하여 종재신(宗宰臣) 2품 이상과 대간·홍문관· 병조·도총부(都摠府)·선전관 등에게 술을 공궤하였다.	○丁卯/上親祭恭陵及順陵。 還至大 晝停, 命饋宗宰二品以上、臺諫、弘文 館、兵曹、都摠府、宣傳官等酒。
중종 11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4월 10일(을미) 2번째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평상시에는 비록 작은 재변이 있어도 진하(陳賀)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에 왜노가 난을 선동하여 변장(邊將)이 피살되었으니, 오늘의 방방(放榜)에 어찌 반드시 하례를 강행하겠습니까. 진하를 행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아뢴 바를 정부에 물으라.” 하자, 정부가 아뢰기를, “평시에 만일 재변으로 피전 감선(避殿減膳)하시면 하례를 행하기 어렵기 때 문에 정지하지마는, 지금은 태평하여서 하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진 사람을 얻었으므로 행하는 것이니,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하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정부가 아뢴 것이 이와 같으므로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 등이 어찌 이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하례는 참으로 행할 수 없습 니다.” 하므로, 권정례(權停禮)로 행하라고 명하였다. 【친히 예를 받지 않았다.】	○臺諫啓曰：“常時雖小有災變，不受 陳賀。 今者倭奴煽亂，邊將見殺，今 日放榜， 何必強行賀禮乎？ 請勿行陳 賀。” 上曰：“以臺諫所啓， 問於政 府，” 政府啓曰：“平時若以災變， 避殿 減膳， 則賀禮難行， 故停之矣。 今則 非爲太平而受賀也， 乃爲其得賢而行之 也， 行之無妨。” 傳于臺諫曰：“政府 啓如是， 故不允。” 臺諫又啓曰：“臣 等豈不知是意？ 賀禮則固不可行也。” 命以權停禮行之。 【不親受禮。】
중종 11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4월 11일(병신)	대간이 아뢰기를, “전 함경 감사(咸鏡監司) 고흥산(高荊山)은 오랫동안 그 지방을 맡아 적의 정 상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그대로 맡겨서 북도를 편안하게 하소서.”	○臺諫啓曰：“咸鏡前監司高荊山， 久 任地方， 細知敵情， 使之仍任， 以靖北 道。” 仍啓南弼元等事。 憲府獨啓曰：

<p>7번째기사 경상·전라의 해물 진상을 감하고 왜적에 대해 많이 아는 고흥산은 잉임하다</p>	<p>하고, 인하여 남필원(南弼元) 등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독계(獨啓)하기를, “경상(慶尙)·전라(全羅)의 해물(海物)을 진상하는 것은 이미 준비한 것은 할 수 없으나 지금은 정지를 명하시고 긴급하지 않은 경비 또한 감생(減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고형산은 병이 있으므로 이미 약을 보내었다. 비록 적정(敵情)을 안다고는 하나 한 사람에게 오래도록 한 도를 맡길 수는 없다. 또 긴급하지 않은 해물의 진상은 해사(該司)로 하여금 양을 감하게 하였다.”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양사(兩司)가 또 아뢰니, 형산의 직책은 잉임(仍任)하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p>	<p>“慶尙、全羅海物進上，已備者則已矣，今則請命停之。經費不急事，亦請減省。” 答曰：“高荊山身有疾病，已送藥物。雖知敵情，不可以一人，久任一道。且海物不緊進上，令該司量減。餘皆不允。” 兩司又啓之，命仍荊山之職。餘皆不允。”</p>
<p>중종 11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4월 19일(갑진) 1번째기사</p>	<p>상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순정을 인견(引見)하니, 순정이 아뢰기를, “부산포 왜인들의 반란이 이와 같으니, 염포(鹽浦)의 왜인은 지금 먼저 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만일 군사를 합하면 그 형세가 또 치성(熾盛)해질 것이니, 염포의 왜인은 후일에 도모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가서 형세를 보아 처치하라.” 하고, 상이 친히 옥배(玉盃)를 들어 유순정에게 주니, 순정이 또한 상께 잔을 올리었다.</p>	<p>上引見順汀于思政殿。順汀曰：“釜山浦倭人等，叛亂如此，鹽浦倭人，今不可先攻。彼若合兵，則其勢又熾，鹽浦倭人，則可圖後日。” 上曰：“卿其往哉，度勢善處。” 上親執玉盃，賜順汀，順汀亦進爵于上。</p>
<p>중종 11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5월 11일(을축) 3번째기사 가뭄으로 인해 정전을 피하고 수라를 감할 것 등을 전교하다</p>	<p>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여 정전(正殿)을 피하고 수라를 감하고 풍악을 철폐하였으니, 대비전(大妃殿) 외에는 모두 향온(香醞)을 바치지 말라.” 하였다.</p>	<p>○傳于政院曰：“今旱氣太甚，避殿減膳撤樂，大妃殿外，并勿進香醞。”</p>

<p>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8월 15일(무술) 2번째기사</p>	<p>홍문관에 선운(宣醞)3256) 하고 ‘옥당 완월’(玉堂玩月)이란 어제(御題)로 칠언 율시(七言律詩)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황여헌(黃汝獻)의 글이 가장 우수하였으므로 녹비(鹿皮) 한 벌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p>	<p>○宣醞于弘文館，御題‘玉堂翫月’七言律詩，使之製進。黃汝獻之作爲最，命賜鹿皮一領。</p>
<p>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9월 9일(임술) 2번째기사</p>	<p>기영연(耆英宴)을 훈련원(訓練院)에 내리고, 경연관연(經筵官宴)을 모화관(慕華館)에 내렸다. 처음에 상이 주악(酒樂) 1등을 경연관, 2등을 기영회(耆英會)3267) 에 내릴 것을 명하니, 도승지 송천희(宋千喜)가 아뢰기를,</p> <p>“신이 임자·계축 연간에 주서(注書)로 있을 때에 보니, 기영의 재상에게는 훈련원에서 사연(賜宴)하고 홍문관·예문관의 관원에게는 보제원(普濟院)에서 사연하였는데, 삼공(三公)은 기영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다만 그때는 간혹 기영과 경연관이 한 곳에 회합하였는데, 이것은 노소가 다 모인다는 뜻이라고 그때의 정승이 말하였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내가 처음에는 정승은 마땅히 경연의 연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1등악을 내려 주고자 하였으나, 만약 기영회에 참석한다면 마땅히 고쳐서 기영회에 1등악을 내리고 경연관에게 2등악을 내려야 하겠다.”</p>	<p>○賜耆英宴于訓練院，經筵官宴于慕華館。初，上命賜酒樂一等于經筵官，二等于耆英會。都承旨宋千喜啓曰：“臣於壬子、癸丑年間，爲注書時，見賜宴耆英宰相於訓練院，弘文、藝文官員，則賜宴於普濟院，三公則參耆英會。但此時，或有耆英及經筵官，會于一處之時，此乃少長咸集之義。其時政丞所言如此。”傳曰：“予初以謂政丞，當參經筵宴，故欲賜一等樂，若參耆英會，則當改賜一等于耆英，二等于經筵官。”</p>
<p>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9월 16일(기사) 4번째기사</p>	<p>금년은 풍우가 매우 사나와서 바닷물이 날려서 벼와 곡식이 말라 손상되어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구휼할 길이 없으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은 수량에 한계가 있고 인구는 매우 많은데, 긴요한 군량을 먼저 풀어 줄 수도 없으니 구휼이 어렵습니다.”</p> <p>하니, 명하여 방어청에 내렸다.</p>	<p>其八曰：今年風雨甚惡，鹹水飛灑，禾穀樵損，大爲凶荒，救恤無由，誠爲可慮。軍資倉穀食有數，人口甚衆，關緊軍糧，不宜先散，賑恤爲難。</p>
<p>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p>	<p>조강에 나아갔다. 《시경(詩經)》 신공(臣工)을 진강하면서 전경(典經) 유돈(柳墩)이 아뢰기를,</p>	<p>○辛未/御朝講。講《詩》《臣工》篇。典經柳墩曰：“此篇專爲農事而</p>

<p>5년) 9월 18일(신미) 1번째기사</p>	<p>“이 편은 오로지 농사를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훈계하여 일찍이 농사에 대하여 힘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서경(書經)》 무일편(無逸篇)에서는 먼저 농사의 어려움을 알라고 첫머리에 말하였고, 《시경》 빈풍(邠風) 칠월편(七月篇)에서는 생민(生民)의 사시(四時)의 근로(勤勞)를 서술하여 곤충·초목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풀어 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왕(成王)이 주나라[周室] 수성(守成)의 군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저 환과 고독(鰥寡孤獨)이 농상(農桑)에 힘을 다하건만, 벼가 아직 마당에 들어오기 전에, 짚은 벼가 아직 벼틀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부잣집으로 들어가며, 조세를 바칠 때가 되면 부잣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市井)의 일정한 직업도 없는 무리가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쌀밥과 고기를 먹으며 비단 옷을 입으면서도 오히려 가난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중 궁궐(九重宮闕) 안에 단정하게 앉아서 높이 팔짱 끼고 있으시니 어찌 옷과 밥이 우리 백성의 고흥(膏血)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성상께서는 좋은 옷과 흰 쌀밥을 진어하실 때에 백성의 근고(勤苦)함을 잊지 마소서.”</p> <p>하였다.</p>	<p>言。 周公戒成王， 未嘗不倦倦於農事。 故於《無逸》， 首言先知稼穡之艱難，《邠風七月》， 敍生民四時之勤勞， 以至於昆蟲、草木， 莫不備陳， 故成王爲周家守成之主。 今夫鰥、寡、孤、獨， 竭力於農桑， 而禾未登場， 織未下機， 已輸入於富家， 及其納稅， 與富家無異， 故富益富貧益貧。 非徒此也。 市井無賴之徒， 遊手而食粱肉， 衣紈袴， 尙不知小民之艱難。 況乎九重之內， 端居高拱， 安知衣食之自吾民膏血中來乎？ 伏願聖上， 御珍衣玉食之時， 毋忘民事之勤苦焉。”</p>
<p>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9월 19일(임신) 6번째기사</p>	<p>제8조. 진휼(賑恤)에 대한 일은 호조로 하여금 3읍의 면포(綿布)로써 적당한 수량을 내주게 하여 곡식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p>	<p>第八條， 賑恤事， 令戶曹以三邑絁布， 量給買穀何如？” 上可之。</p>
<p>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9월 29일(임오) 5번째기사</p>	<p>도설리(都薛里) 박경례(朴敬禮)를 금부(禁府)에 내리라고 명하니, 그가 진상 생물(進上生物)을 감시하여 받아들일 때에 어부(漁夫)를 침탈하여 작폐(作弊)하였기 때문이다.</p>	<p>○命下都薛里朴敬禮于禁府， 以監納進上生物時， 侵刻漁夫作弊故也。</p>

<p>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10월 2일(을유) 2번째기사</p>	<p>삼공과 부원군과 육조의 당상관을 명소(命召)하여 호초(胡椒)·단목(丹木)의 경비에 관한 일과 미을관(彌乙串)에 설보(設堡)하는 일과 왜인(倭人) 처치(處置)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하자, 삼공 등이 아뢰기를, “호초를 약에 쓰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나머지 음식에 조미(調味)하는 것은 천초(川椒)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목(丹木)은 본국 소산(本國所產)이 아니니, 만약 왜인과 절화(絶和)한다면 구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종묘(宗廟)에 쓸 홍초(紅綃)는 중국에서 사와야 하겠지만 의장보(儀仗袱)·잡과보(雜褻袱) 같은 것은 마땅히 아청(鴉靑)의 염색물(染色物)로써 대응해야 하겠습니다.</p>	<p>○命召三公、府院君、六曹堂上，議胡椒、丹木經費事及彌乙串設堡倭人處置等事。三公等啓曰：“胡椒爲藥用者則已矣，其餘調私食物者，可代以川椒。丹木則非本國所產，若與倭人絕和，則無從得之。宗廟所用紅綃，當貿諸中朝，如儀仗袱、雜褻袱，當代以鴉靑之染。</p>
<p>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10월 3일(병술) 1번째기사</p>	<p>상이 전관(箭串)의 목장(牧場)에 거둥하여 습진(習陣)하고 이어 좌·우상(左右廂)에 명하여 사냥하여 포획물을 바치게 하였다.</p>	<p>○丙戌/上幸箭串牧場習陣，仍命左右廂，踏獵獻禽。</p>
<p>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10월 7일(경인) 1번째기사</p>	<p>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근래에 오래도록 사냥을 폐지하여, 사람과 곡식을 해침이 많습니다. 다만 천참(泉站)으로 가는 길은 큰 냇물을 건너는 곳이 많아서 다리를 놓지 않을 수 없으니, 경기 백성들의 노곤(勞困)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청컨대 청계산(淸溪山)에서 사냥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청계산에 거둥하자면 한강을 건너야 할 것이니, 그 노고함이 천참(泉站)과 무엇이 다른가?” 하자, 장령 유인귀(柳仁貴)가 아뢰기를, “풍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서후(徐厚)는 아뢰기를, “반드시 친히 거둥하실 것은 없고, 장수를 명하여 강무(講武)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庚寅/御朝講。領事成希顔曰：“近來久廢打圍，禽獸害人田穀。但泉站之路，多涉大川，不得已成橋梁。京畿之民，勞困益甚，請打圍于淸溪山。”上曰：“若幸淸溪山，當渡漢江。其勞民與泉站何異？掌令柳仁貴曰：“可待豐年。”侍講官徐厚曰：“不須親幸，命將講武爲當。”</p>

	하였다.	
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10월 7일(경인) 2번째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사냥은 비록 종묘(宗廟)에 짐승을 바치기 위한 것이지만, 금년은 흉년이 들어 백성이 살아갈 수 없으며 또 천변(天變)이 있으니, 정지하소서.” 하였다.	○臺諫啓前事，不允。 憲府啓曰：“打圍雖爲薦禽，今年凶荒，民不聊生，又有天變，請停之。”
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10월 27일(경술) 2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유온 등의 일은, 대간이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기에 이미 체임하라고 명하였더니, 정부가 동몽을 가르칠 만하다고 아뢰므로 체임하지 말라 하였다. 대신이 어찌 사체(事體)를 헤아리지 않고 아뢰었겠는가? 내가 이미 대신의 아뢰는 뜻을 잘 알고 있다.” 하고, 이어 선온(宣醞)3291) 하였다.	傳曰：“允溫等事，臺諫以爲不合師儒，故已令遞之，而政府啓以可訓童蒙，故命勿遞。 大臣豈不計事體而啓之乎? 予已悉大臣所啓之意。” 仍宣醞。
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11월 6일(무오) 2번째기사	전교하였다. “근래에 경연(經筵)에서 강을 마친 것이 두어 가지 서종(書種)이니, 경연관을 연향(宴餉)해야 하겠다.”	○傳曰：“邇來經筵畢講者數書。 宜宴餉經筵官。”
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11월 16일(무진) 1번째기사	경연관(經筵官)들을 근정전(勤政殿) 뜰에 사연(賜宴)하고 【《시경》·《논어》·《맹자》·《대학》의 강을 마쳤기 때문이다.】 주악(酒樂) 각 1등을 하사하였다	○戊辰/宴經筵官于勤政殿庭。【以畢講《詩》、《論語》、《孟子》、《大學》故也。】賜酒樂各一等。
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1월 1일(임자) 1 번째기사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망궐례(望闕禮)3368) 를 거행하고, 이어 대비전(大妃殿)에 하례드리고, 평명(平明)에 본조(本朝)의 하례를 받았다. 예식이 끝난 다음 2품 이상 및 경연관(經筵官)과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를 전정(殿庭)에 모아 주악(酒樂)을 내렸다.	○壬子朔/上率百官，行望闕禮，因賀大妃殿，平明受本朝賀禮。 禮訖，會二品以上及經筵官入直諸將于殿庭，賜酒樂。
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1월 9일(경신) 2	대간에 합사(合司)하여 전의 일을 두 번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臺諫合司，將前事再啓，不允。 又啓曰：“近日臺諫所啓，一不聽納，拒諫之漸，於此兆矣。 魚箭非獨延平也，

<p>번제기사</p>	<p>“근일 대간이 아뢰는 것을 하나도 들어 주지 않으시니, 간함을 거절하는 조짐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어전(魚箭)은 연평(延平)만이 아니라 함경도 말응도(末應島)도 대군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섬에는 해산물이 많이 나서 진상하는 어물을 모두 여기서 마련하는데, 그 근처 거민(居民)들이 대군 집의 간활한 종에게 겁박당하여 감히 가까이하지 못하니, 또한 폐해가 큼니다.”</p>	<p>咸鏡道末應島，亦爲大君之有。此島多產海錯，進上魚物，皆辦於此。傍近居民，爲大君家猾奴所劫，不敢近，亦弊之大者也。”</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1월 16일(정묘) 1번째기사</p>	<p>특진관 이손(李蓀)이 아뢰기를, “대관과 시종이 이미 논하였으니, 신이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금년엔 흉황(凶荒)이 심했거니와, 전일 도목정(都目政)에 수령(守令)을 제수하였으나 아직도 서경(署經)을 받지 못하여, 그들 각 고을에서 와 맞이하는 인마[從馬]가 기다리며 서울에 머물러 있으므로 지극히 간고(艱苦)하고 폐해 또한 적지 않으니, 속히 윤휴를 내리소서. 지난 을사년 흉황에는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제하였으니 청컨대 상평창(常平倉)3390 고사(故事)에 의하여 창고를 열어 구제하고, 가을 수확 후에 햇곡식으로 대납(代納)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p>	<p>特進官李蓀曰：“臺諫、侍從已論矣，臣無復可言。今年凶荒已甚，前日都目政除授守令，未得署經，其各官來迎從馬，待候留京，至爲艱苦，其弊不貲。可速俞允。去乙巳年間凶荒，則開倉以賑貧民，請依常平倉故事，開倉賑濟，秋成後以新穀代納何如?”</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1월 26일(정축) 1번째기사</p>	<p>순정이 아뢰기를, “민간에서는 사슴 꼬리와 사슴 혀를 얻기가 쉽지 않고 평안도가 더욱 심하니, 얻는 대로 봉진(封進)하게 하소서.” 하였다.</p>	<p>順汀曰：“民間未易得鹿尾、鹿舌，平安道尤甚。請令隨所得封進。”</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1월 29일(경진) 4번째기사</p>	<p>8. 술을 내릴 때, 시강관·강서관·시신 등이 마시기를 끝내면, 아래서부터 차례로 내려가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9. 반수(班首)가 잔을 드릴 때 내시가 전하여 받드는 것이 미편하니 반수로 하여금 바로 드리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p>	<p>八曰：賜酒時，侍講官、講書官、侍臣等飲訖，自下以次降復位何如？九曰：班首進爵，內侍傳奉未便。請令班首直進。</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2월 2일(계미) 2 번째기사</p>	<p>비록 임금의 높음으로도 감히 사부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이니, 그대로 좌석을 설치하여 스승을 높이는 뜻을 붙인 것입니다. 하물며 그 글에 ‘무릇 어좌 및 태자 이하의 좌석은 상사(尙舍)가 설치하고, 강담은 감사(監司)가 주관한다.’ 했으니, 그것이 어용 기물(御用器物)이 아님이 또한 분명합니다. 신 등</p>	<p>，雖以人主之尊，不敢當師傅之位，仍設其座，以寓隆師之意爾。況其文，凡御座及太子以下之座，令尙舍設之，而獨於講榻，監司主之，則其非進御器</p>

	<p>이 또 송조 및 황명(皇明)의 《시학의(視學儀)》를 보니, 다만 어좌를 설치한 다 하였고 강담에 대한 글은 없으며, 고려의 제도도 그러합니다. 그런즉 제왕(帝王)이 때에 따라 손익(損益)함이 같지 않은 것이니, 반드시 한 가지 예에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이번 강담의 설치는 끝내 일정한 의논이 없으니, 삭제하여 버리더라도 불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의주(儀注)에 이르기를 ‘시강관 이하는 술 다섯 잔을 돌리고 그친다.’ 하였는데, 바야흐로 문난할 때에 있어서 서로 일어나, 예를 행하는 것이 이미 번거롭고 소란하며, 용선(饗膳)이 나오면 반드시 떠들게 될 것이니, 이야말로 성리(性理)에 잠심하여 지성으로 도를 구하는 큰 뜻이 아닙니다. 성상께서 사도(斯道)를 높이 받드시며, 폐하였던 전례(典禮)를 널리 찾아서 일대의 이목(耳目)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 한 가지 일에 있어서만은 다 선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술 돌리는 예의를 삭제하고 논란이 다 끝나기를 기다려서, 차[茶]만 하사하여 마시게 함이 의주에는 어그러지지만 사체에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p>	<p>物亦明。 臣等又按宋朝及皇明《視學儀》，只設御座，而無講榻之文，高麗之制亦然，則帝王因時損益不同，不必拘於一例。 今次講榻之設，終無一定之論，則雖刪而去之，似無不可。 但今《儀註》云：‘侍講官以下，行酒五爵而止。’方問難之際，迭起而行禮，已爲煩擾，饗膳之進，必至喧聒，甚非所以潛心性理，至誠求道之盛意也。 聖上宗主斯道，蒐求曠典，以新一代之耳目，而獨此一事，有未盡善。 臣等竊謂刪去行酒之禮，俟論難既畢，只賜茗飲，雖違《儀註》，允合事體。”</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2월 10일(갑신) 1번째기사</p>	<p>예조 및 사옹원(司饗院)에 명하여 공상(供上)하는 사슴 꼬리와 사슴 혀를 감한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p>	<p>○(辛卯) [甲申] /命禮曹及司饗院，議減供進鹿尾、鹿舌。</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2월 25일(병오) 4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문묘(文廟)의 별제(別祭)를 초야흐렛날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하니, 초닷셋날이 탄일(誕日)이라 하례(賀禮)가 있어야 하니, 재계를 못하겠습니다. 11일에 거행하게 하소서. 또 3월 3일은 기영회(耆英會) 및 경연관에게 사연(賜宴)하는 것이 전례(前例)입니다. 지금 주금(酒禁)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난해 9월 9일에는 주금 중이었지만, 특별으로 거행하였습니다.”</p>	<p>○禮曹啓曰：“文廟別祭，初九日當行，然今更思之，初五日乃誕日，當有賀禮，不能齋戒矣。請於十一日行之。且三月三日耆英會及經筵官賜宴，乃前例也。今方酒禁，何以爲之？去年九月九日，則雖酒禁，特命行之矣。”傳曰：“文廟別祭，則十一日退行可也。耆英會等事，雖酒禁可行。”</p>

	<p>하니, 전교하기를, “문묘의 별제는 11일로 물려 거행하고 기영회 등의 일은 주급 중이라도 행해야 한다.” 하였다.</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2월 28일(기유) 2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 송천희(宋千喜)가 아뢰기를, “본도에 흉년이 들어, 좌도(左道)에서는 무명 반 필의 값이 쌀 7~8되요, 우도에서는 겨우 한 말입니다. 부방(赴防)하는 군사들이 모두 무명으로 쌀을 바꾸니, 이래서 남방 백성들의 식량이 더욱 모자랍니다. 공물(貢物) 중 건감(蠲減)할 것이 있으면 해조(該曹)에서 방어사(防禦使)와 함께 의논하여 감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또 들으니 본도 역호(驛戶)3440)가 많이 도망하여 흩어졌으므로 잔폐(殘弊)가 배나 더한데 여기에 다시 지난해에는 콩이 잘 여물지 않았으므로 말을 기르는 자가 칩줄기를 썰어서 보리에 섞어 먹이니, 말이 충실히 살찌지 않는다 합니다. 변방의 경보(警報)가 있더라도 형세가 치보(馳報)하기 어려우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도내에서 함부로 타고 다니며 작폐하는 자는 신이 마땅히 엄금하겠지만 금년 가을 추수까지는 역마 타는 관원을 감하여 소복(蘇復)시켜야 하겠습니까. 또한 해조와 방어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하겠다.’ 하였다.</p>	<p>○慶尙道觀察使宋千喜啓曰：“本道失農，左道則縣布半匹直米七八升，右道則僅一斗，赴防軍士，皆以縣布換米。以此南民之食益乏，貢物有可蠲減者，令該曹與防禦使，同議以減何如？又聞本道驛戶，多有逃散，以此殘弊倍甚。加以去年黃豆不實，故立馬者，剉葛莖雜牟麥飼之，馬不得充肥。雖有邊警，勢難馳報，誠爲可慮。道內濫騎作弊者，臣當嚴禁。限今年秋成，減損乘駟之人，使之蘇復，亦令該曹與防禦使，同議施行。”傳曰：“當議之。”</p>
<p>중종 13권, 6년(1511</p>	<p>신이 대답하기를, ‘고형산이 전에 내섭 첨정(內贍僉正)이 되었을 때, 술 10여</p>	<p>臣答曰：‘荊山前爲內贍僉正時，釀酒</p>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2월 29일(경술)
1번째기사

섬을 걸렀는데, 양조의 소임을 맡은 자가 훔쳐 먹고는 물을 많이 섞어서 술 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政院)이 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형산이 이러한 폐단을 알고 친히 양조하는 것을 지켜 보았는데, 그때가 한창 성서(盛署)였습니다. 고흥산이 전일 견책(譴責)당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우물가에 앉아 쌀 씻는 것을 감시하고, 또 부엌에 앉아 친히 술밥 찌는 것을 감시하고서 술밥을 식혀 누룩을 섞어 독에 넣은 후, 다시 연이어 3일 간을 숙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못하였으며, 술 맛이 향그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의 근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성준 등이 말하기를 ‘능히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였으니, 과연 쉽지 않은 일이다.’ 하고, 드디어 가자(加資)하여 종사관을 삼아 보내기를 청하였습니다. 형산이 복도에 가서 지형을 살펴 길을 닦을 때 혹 한식 경의 거리를 걷기도 하니, 그 도의 인민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보고는 모두들 어렵게 여겼으며, 성준·이극균 등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걸치레만 하여 남의 훼손(毀譽)을 두려워하는 자의 소위가 아니며, 지금 양곡을 무역할 일 또한 무리하게 만들어서 작위(爵位)를 노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고흥산이 후에 사복 정(司僕正)이 되었을 적에 시(寺)중에 말을 기르는 콩이 매우 많았지만 거의가 도둑을 맞아 말이 살찌지 못하였습니다. 고흥산이 그 폐단을 알고 자신이 직접 말을 사육하였는데 말이 한껏 배부른 후에 노끈으로 말의 배 둘레의 크고 작음을 재어 노끈 두 끝에 표를 하여 상자 속에 간직하였다가 수시로 뽑아 비교해 보고, 만일 둘레가 감소 되었으면, 반드시 말 기르는 자를 형장으로 때렸습니다. 이러므로 두어 달이 못 되어 말이 모두 살찌고 건강해졌으니, 이것은 모두 그의 본성이 근검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함경도 병사에 제수되었다가, 갈려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내어보냄을 가지고 어렵게 여겼습니다. 신이 그 때 이조 판서로 있

多至十餘石。 掌釀者偷食， 多和水， 以酒味不佳， 故政院請罪。 荊山知此弊， 親見以釀。 時方隆(署) [暑]， 荊山憾前日之得譴， 坐于井頭， 監洗米訖， 又坐于廚， 親見蒸之， 待冷和麴， 入甕而後， 連三日直宿。 以此人不得盜， 而酒味香烈。 此雖小事， 其勤儉可知。’ 成俊等云： ‘能爲人不能爲之事， 果爲不易。’ 遂請陞加， 爲從事官以遣之。 荊山至北道， 審地形開道之時， 或步行一息程。 其道人民及所同往者見之， 皆以爲難， 而成俊、 李克均等， 亦皆許之。 此皆非外飾， 而畏人毀譽者所爲也。 今此質穀事， 亦非強作邀爵位而然也。 荊山後爲司僕正， 寺中養馬豆菽甚多， 而率被盜竊， 馬未充肥。 荊山知此弊， 親自飼馬， 馬極飽腹後， 以繩較馬腹圍大小， 而繩之兩端， 着標藏之篋中， 有時抽牲較之， 若減圍， 則必杖飼馬者。 以故不數月， 而馬皆肥健， 此皆本性勤儉故也。 其後除咸鏡道兵使， 遞來未幾， 又授監司。 朝廷皆言甚當， 而以纜來旋去， 難之。 臣時爲吏曹判書， 聞北道之人， 不能聊生， 特啓請差遣， 赴任之後， 事多有功。 且質穀事， 亦以六鎮軍馬俱困， 穀數甚少， 雖軍官從事之徒， 不能饋餉， 故設此計也。 臣問於辛允武， 允武曰： ‘營重記付物一邑， 有大口魚一百尾， 則荊山減半， 但取五十尾， 一介直粟五升， 則荊山減捧三四升。’ 必

	<p>으면서 북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계청하여 차견하였으며, 부임한 후에는 일에 공이 많았습니다. 또 양곡을 무역한 일은 육진(六鎭)의 군마가 다 지치고 양곡의 수량이 매우 적어서, 군관·종사(從事)의 무리도 궤향(饋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책을 낸 것입니다. 신이 신윤무(辛允武)에게 물어보니 신윤무의 말이 ‘영중기(營重記)에 붙인 물건 중, 한 고을에 대구어(大口魚) 1백 마리가 있으면 형산이 절반을 감하여 50마리만을 취하였으며, 한 개의 값이 조[粟] 5되[升]하는 것이면 형산이 감하여 3~4되를 받았으니, 반드시 이것을 말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히 취렴(聚斂)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군자(軍資)를 보충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시의 착오된 일로 논한다면 가하겠지만, 종신(終身)의 허물로 삼는다면 뒷날에는 사람을 권려할 수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안처성(安處誠)이 또 아뢰기를, “옛날 염철(鹽鐵)·주다(酒茶)를 전매한 자도 제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었지만, 마침내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행산이 처음 취렴의 일을 열어 놓았으니, 그 번저감을 예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행산의 일이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들으니 북도의 감사(監司)·절도사·수령들이 군사에게 상을 주고 야인(野人)을 접대할 때에는, 영(營)에 쌓아 둔 어물(魚物)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데, 만일 어물로 양곡을 무역한다면, 논상(論賞)하고 접대할 때에는 어떤 물건을 썼겠습니까? 이것은 이름을 얻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들으니, 고행산이 우마(牛馬)와 부정(釜鼎)을 사서 입거(入居)하는 자에게 주었다 하는데, 이것은 그런대로 가하다 하겠지만, 어물로 양곡을 무역하여 회계에 기록함은 모리(謀利)와 같은 것이니 매우 불가합니다.”</p> <p>하였다.</p>	<p>謂此也，然非敢聚斂，乃爲國家補軍資耳。今若論以一時錯誤之事則可矣，若以爲終身之咎，則後無勸勵之人。”</p> <p>安處誠又啓曰：“古之推鹽鐵酒茶者，亦非爲身也，皆爲國也，厥終或有亡其國者。今荊山初啓聚斂之事，其漸不可不預防。且荊山之事，又有乖戾者。聞北道監司、節度使、守令等，當論賞軍士，接待野人之時，以營儲魚物分給。若以魚物貿穀，則其於論賞接待之時，當用何物耶？是鈞名明矣。且聞荊山買牛馬鼎釜，以與入居者，此則猶或可矣，以魚物貿穀，錄于會計，似乎謀利，甚不可。”</p>
<p>중종 13권, 6년(1511)</p>	<p>훈련원에서 기영연(耆英宴)을 사연하고 주악(酒樂) 1등을 내렸다. 반송정(盤松)</p>	<p>○賜耆英宴于訓諫院，賜酒樂一等，賜</p>

<p>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3월 3일(계축) 2 번째기사</p>	<p>亭)에서 경영관(經筵官)들의 연회를 내리고 주악 2등을 내렸다.</p>	<p>經筵官宴于盤松亭，賜酒樂二等。</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3월 12일(임술) 2번째기사</p>	<p>조종의 시학(視學)하는 제도를 따르고, 한(漢)·주(周)의 배로(拜老)하던 규범(3475) 을 힘써 행하십니다. 서직(黍稷)의 향그러운 제수를 드리니 예의가 흠족하고 정성이 감동되며, 성리의 깊은 뜻을 강구하니 충심으로 깨닫고 몸소 행하시어, 높을손 공이 있고, 빛날손 사이가 없습니다. 하물며 주효(酒肴)의 좋은 음식을 반사(頒賜)하시어 우로(雨露)를 청아(菁莪)(3476) 에 고루 적시니, 뼈와 살에 깊이 젖고 하늘과 덕을 함께 하십니다. 실로 반궁(泮宮)(3477) 에서의 연음하는 은혜 융숭하고, 기자(箕子)를 방문하는 성의(3478) 와도 잘 부합합니다. 또 학전(學田)을 하사하시니 생각밖의 은택이요, 준수한 인물들을 발탁(拔擢)하시니 역시 비상한 영광으로서, 예전에도 드문 일이요 이 세상의 성대한 일입니다.</p>	<p>遙追祖宗視學之制，遠邁漢、周拜老之規。祇薦黍稷之馨，禮洽誠感，講劘性理之奧，心得躬行，巍乎有功，煥焉無間。矧頒酒肴之多旨，均霑雨露於菁莪，浹骨淪肌，與天同德。實隆在泮之飲，妙契訪箕之誠。</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3월 26일(병자) 2번째기사</p>	<p>경연(經筵) 당상관이 소분(掃墳)(3576) 할 때에는 명하여 요전상(澆奠床)(3577) 을 주게 하였다.</p>	<p>○經筵堂上掃墳時，命給澆奠床。</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3월 29일(기묘) 1번째기사</p>	<p>사인(舍人) 한효원(韓效元)이 삼공(三公)의 뜻으로 아뢰기를, “오는 4월 초엿새날에 춘향 대제(春享大祭)를 거행하니, 초이튿날은 산제(散齋)(3578) 입니다. 친히 짐승 죽이는 것을 보시는 것이 매우 미편하니, 청컨대 제사 후로 물러 행하게 하소서.” 하니, ‘정지하라.’고 전교하였다.</p>	<p>○己卯/舍人韓效元，以三公意啓曰：“來四月初六日行夏享大祭，初二日乃散齋也。親閱殺禽，甚爲未便。請於祭後退行。”傳曰：“其停之。”</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3월 29일(기묘) 2번째기사</p>	<p>대간이 한형운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지난 11일 친히 문묘(文廟)에 제사드릴 때에, 누가 내수사(內需司)를 빙자하고 ‘고사(告祀)한다’고 하며, 양현고(養賢庫) 안 동산에서 제사드렸다 합니다. 선성 선사(先聖先師) 묘정(廟庭) 근처에서 음사(淫祀)(3579) 를 배설하여 설만</p>	<p>○臺諫啓韓亨允等事，又啓曰：“去十一日親祀文廟時，有人憑藉內需司，托稱告祀，設祭于養賢庫內東山云。先聖先師廟庭近處，不可設淫祀，以肆褻</p>

	<p>(褻慢)한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신 등은 경악하여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고사에 대한 일은 내가 아는 바 아니다. 대비전에 물으니, 양현고 안에 부근당(付根堂)3580)이 있어, 전례에 반드시 제사를 베풀므로 그렇게 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다른 일들은 윤택하지 않는다.”</p> <p>하였다.</p>	<p>慢。 臣等驚愕， 不知其由。” 傳曰：“告祀事非予所知， 問于大妃殿， 則養賢庫內有付根堂【付根者， 官府設祠祈祝， 國俗也。】， 例必設祭， 故然矣云。 他事不允。”</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4월 3일(임오) 1 번째기사 장령 안처성이 진홀에 대해 아뢰니 답하다</p>	<p>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안처성(安處誠)이 한형윤·조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안처성이 아뢰기를,</p> <p>“경기(京畿)의 흉작이 다른 곳에 비하여 배나 더하므로 이미 관찰사의 계청에 따라 군자창(軍資倉) 및 경창(京倉)의 양곡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듣건대, 경기만이 아니라 다른 도도 그러하니, 진대(賑貸)를 급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파종 시기이니 농량만 핍절(乏絕)할 뿐 아니라, 종자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도 관찰사에게 하유(下諭)하여 사가에 저장된 곡식도 모두 봉해 두었다가 적당히 풀어 주게 함이 어떨까 합니다.”</p> <p>하고, 특진관 이계남(李季男)이 아뢰기를,</p> <p>“경기·충청·경상 좌도가 모두 심한 흉년이 들었으니, 속히 진홀 구제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풀어 주는 비용이 많고 국가 경용(經用)도 이 때문에 군색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따로 아주 궁핍하여 자력으로 보전할 수 없는 자를 기록하여 특별히 풀어 주어 진홀 구제하게 하되, 관찰사의 자세한 보고를 기다린 뒤에 처리함이 어떨까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빈민을 진홀 구제하는 일은 급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방면의 소임(3585)을 맡은 자는 마땅히 백성 구휼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 반드시 계청해서 진급(賑給)하여야 할 것이요, 호조(戶曹) 또한 잘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p>	<p>○壬午/御朝講。 掌令安處誠， 啓韓亨允、趙演等事， 不允。 處誠曰：“京畿凶歉， 視他爲倍， 故已從觀察使啓請， 命給軍資倉及京倉之穀。 然臣聞之， 非但京畿， 他道亦然， 賑貸不可不急。 況今方付種， 非但農糧乏絕， 種子亦難備。 請下諭諸道觀察使， 竝封私藏穀食， 量宜散給何如?” 特進官李季男曰：“京畿、忠淸道及慶尙左道， 皆甚凶荒， 當速賑救。 然散給多費， 而國用因此亦窘。 臣欲別錄甚窮不能自存者， 特散給賑濟以救之， 然待觀察使具報， 然後處之。” 上曰：“賑濟貧民， 不可不急。 受方面之任者， 當以恤民爲先， 必啓請賑給， 戶曹亦宜措置。”</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4월 3일(임오) 4 번째기사 팔도 관찰사에 진휼을 치서하다</p>	<p>하였다. 팔도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전에는 구황(救荒)할 때에 관창(官倉) 곡식이 부족하면 사삿집에 저장된 곡식도 함께 봉하여 백성들이 꾸어 먹게 하였다. 도내의 흉년이 아주 심한 곳은, 관곡만으로 진휼하기가 어려우면 사삿집에 저장된 곡식도 함께 봉하여, 적당하게 진휼 구제하라.” 하였다.</p>	<p>○馳書于八道觀察使曰： 在前救荒時，官倉穀食不足，則竝封私藏，許民貸食。道內凶荒尤甚處，只以官穀，有難賑濟，則竝封私藏穀食，量宜賑濟。</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4월 8일(정해) 3 번째기사 부안 현감 김개가 군무·어전·변상 등의 일로 상소하니 정원에 내리다</p>	<p>국가가 연해 지방의 백성에게 어전(魚箭)을 세워 고기를 잡아서 그 이를 얻게 하고, 또 세납 고기를 사재감(司宰監)에 바치게 한 것이 옛 규례였는데, 지난 폐조(廢朝) 신유년(3591)에는, 각도의 어전세를 모두 포목으로 바꾸어 사섬시(司贍寺)에 바쳐, 국가 경비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어전이 과연 이익이 많은 것이라면, 빈민에게 주어 그 생계로 삼게 함이 마땅합니다. 국가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계량하여 비용을 삼고, 또 함부로 쓰지 않는다면 상례로 공납(貢納)하는 수량으로도 경상비에 부족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어전에서 거두어 들여 백성들과 이익을 다툼 후에 쓰기에 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 상정(詳定)할 때 황폐한 어전에 절반을 추가 과세하였으니, 세납을 산출하는 잔재주가 심합니다. 대저 백성이 고기를 잡는 데는, 자진하여 나가서 이(利) 얻은 것을 허가하고 거기에 따라 세를 받는 것은 그런대로 가하지만, 힘이 혹 미치지 못하고 혹은 사고로 황폐하게 되었는데도 그대로 그 절반을 세 받는 것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신이 맡은 부안현 서해에 활도(狷島)가 있는데, 옛날부터 청어(靑魚)가 많이 나서 서민(庶民)들 중 전답 없는 자들이 섬을 의지하여 어전을 매고 이를 보는데, 예전에는 15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상정할 때, 이 섬 어전의 이가 다른 곳의 배나 된다 하여 청어의 수량을 많이 정하니 관에 바치는 수량이 많다고 하겠으나 전일 많이 잡힐 때에는 백성들이 그런대로 어전 설치하기를 즐겨워했습니다. 지난 을축년(3592) 뒤로는 청어가 나지 않고 세납은 전과 같아, 어전 설치자들의 소득</p>	<p>國家於沿海，聽民結箭捉魚，以資其利，且令納稅魚于司宰監，古也。頃在廢朝辛酉年間，各道魚箭，竝收貿布，納于司贍，以備國用。臣謂魚箭，果曰多利，當給貧民，以資其生可也。國家苟量入爲用，且無橫費，則常貢之數，其於經用，亦非不足也，不必收取於魚箭，與民爭利而後足用也。其初詳定時，於陳荒魚箭，追稅其半，甚矣算稅之巧也。夫民之取魚，聽其自就資利者，從而征之，猶可也，力或不能，或因事故，以致陳荒，而又從以稅其半，是甚無謂。臣所守扶安縣西海，有狷島，自古靑魚多產，齊民之無田畝生業者，依島結箭資利。舊不下十五餘所，詳定時，以此島魚箭，取利倍他，多定靑魚之數，納官之數，可謂多矣。而前日興產時，民猶樂於結箭矣。自乙丑年以後，靑魚不產，而稅貢如前，結箭者所得，不能充其所納之數。去丁卯年間，國家約知其弊，丙寅年以上陳荒魚箭，則竝勿收稅，丁卯年以後陳荒魚箭，則詳加覈實免稅，德至渥也。</p>

	<p>이 바치는 수량을 충당하지 못하니, 지난 정묘년(3593) 간에 국가에서 그 폐를 분명히 알고, 병인년 이전의 황폐한 어전은 모두 세를 거두지 말게 하며, 정묘년 이후의 황폐한 어전은 자세히 실지를 캐어 세를 면하게 하니, 덕이 지극히 넉넉합니다. 그러나 병인년 이전의 것은 실지 황폐했어도, 경차관(敬差官)3594) 이 어전 설치한 준례대로 문서를 만들었으니, 세납 공물의 징수를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묘년에 세안을 마련하는 도회관(都會官)이, 수교(受教)의 본의는 해아리지 않고 황폐한 어전에 대하여 절반을 더 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시행하니, 국가에서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가 지극하지 않음이 아니나 백성으로서 은택을 입지 못함이 이러하니, 역시 통렬히 개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기사년(3595) 가을 본 임지에 와서 세공(稅貢)의 미납을 상고하니, 그 수가 매우 많았으므로 그 연유를 물으니 ‘전에 어전 설치한 자가 태반이나 도망가고 이웃 백성들도 따라 도망갔으며, 현재 있는 자도 재산이 없어 여러 해를 납입하지 못한 것이다.’ 합니다. 신이 곧 그 세공의 수량을 구획(區劃)하여 인리 죽천에게 나누어서, 일시에 독촉 징수하지 않고 수년을 기한하여 준비되는대로 납입하게 하였는데도, 지금까지 3년 동안 징수된 것이 아직 절반이 못 되며, 민생이 궁핍하여 다시 징수할 형편도 되지 못하므로 신이 그욕이 생민을 위해서 매우 아깝게 여깁니다. 두어 고을 백성의 황폐한 어전 세납을 감할 수 있을 때가 없고, 전일 세 받지 말라는 전지(傳旨)는 허문(虛文)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선왕의 구법을 따르시어, 빨리 어전세로 포목을 사서 바치는 것을 없애고 어물만을 거두어서 백성들과 이를 다투지 않는 뜻을 보이소서. 그리고 활도같은 데는, 병인년 이후 3년 간의 묵은 어전세를 역시 해조에 명하시어, 그 미납된 수량을 상고해서 우선 임시로 절반을 감하여 고을 인민의 걱정을 풀어주소서.</p>	<p>然丙寅年以上，則雖實陳荒，而敬差官依結箭例，既已成案，則稅貢何得以免徵乎？丁卯年，則稅案磨鍊都會官，不究受教本意，於陳荒箭，以半稅施行。國家恤民之政，非不至也，而民不蒙其澤者，類如是，亦不可痛革者耶？臣於己巳年秋，到本任，考其稅貢之未納者，其數甚多。詢問其由，則前之結箭者，大半逃亡，隣氓又從而逃之，見存者又無貲資，以致累年不納者云云。臣卽加區畫，乃以稅貢之數，分諸隣里族親，不於一時督徵，期以數年，冀得隨備隨納。而到今三載，徵之者猶未半。民生既窘，無復有可徵之勢，臣竊爲生民痛惜焉。數郡之民，陳箭之稅，無時可減，而前日勿稅之旨，特虛文耳。伏願殿下，遵先王故典，亟除魚箭買布，只收魚物，以示不與民爭利之義，至如猾島，丙寅年以後，三年陳箭之稅，亦願命該曹，考其未納之數，姑且權減其半，以解數郡人民之愁怨。</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p>	<p>사인(舍人) 한효원(韓效元)이, 삼공(三公)의 뜻으로 아뢰기를, “봉상시(奉常寺)에게 바칠 제향 공물(祭享貢物)이 미수된 각 고을 수령을, 전</p>	<p>○舍人韓效元，以三公意啓曰：“奉常寺所納祭享貢物未收各官守令，前者皆</p>

<p>6년) 4월 11일(경인) 5번째기사</p>	<p>에 모두 파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 등이 그것은 농사철에 영송(迎送)에 폐가 된다 하여, 계청해서 자급(資級)을 강등하여 잉임(仍任)하려 하였는데, 위에서 ‘이미 수교(受教)하였으니 번거롭게 고칠 것이 없다.’고 분부하시므로, 신 등이 재차 계청하지 못하였습니다.</p>	<p>令罷職，而臣等以其農時迎送有弊，啓請，欲降資仍任。上教以業已受教，不可紛更，故臣等未得再啓矣。</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4월 20일(기해) 2번째기사</p>	<p>도승지를 보내어, 성균관의 윤차 당상(輪次堂上) 및 학관(學官)·유생 등에게 술을 내렸다.</p>	<p>○遣都承旨，宣醞于成均館輪次堂上及學官儒生等。</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4월 20일(기해) 5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가 장계하였다. “칠원(漆原) 장교 저자(諸者)3604) ·일수(日守)3605) 최효동(崔孝同)·학생 정한명(丁漢明)이 왜적에게 잡혀갔다가 대마도에서 제포(齊浦)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략에 ‘우리들이 진상하는 홍합(紅蛤)을 따러 배를 마아도(麻兒島)에 대었다가 왜인 15명을 만나 산으로 올라가 도망하려 했으나, 왜에게 사로잡혀 결박된 채 배안으로 끌려가니 짚 거적[草蓆]을 씌웠습니다.</p>	<p>○慶尙道觀察使狀啓曰： 漆原將校諸者【姓名。】日守崔孝同、學生丁漢明，爲倭賊所虜，自對馬島還齊浦。其言略曰：“吾等因進上紅蛤採取事，泊船麻兒島。逢倭十五名，登山欲逃，爲倭所虜，縛致船中。</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4월 22일(신축) 2번째기사</p>	<p>정전을 피하고 찬수(饌需)를 감하며, 풍악을 철폐하고 긴하지 않은 경비를 절감하였다.</p>	<p>○避正殿，減膳撤樂，省冗費。</p>
<p>중종 13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5월 1일(경술) 4 번째기사</p>	<p>명하여, 단오절에 바치는 물선(物膳)을 감하게 하였다.</p>	<p>○命減端午所進物膳。</p>
<p>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6월 10일(무자) 2번째기사</p>	<p>영의정 김수동·예조 판서 신용개·참판 김봉(金崙)이 아뢰기를, “신 등이 어제 봉중(弼中)에게 예조에서 연회(宴會)를 베풀 때에 술이 두어 순배[酒牛] 둘자 봉중이 서계(書契) 한 장을 내어서 신 등에게 주었는데, 내</p>	<p>○領議政金壽童、禮曹判書申用漑、參判金崙等啓曰：“臣等昨日押宴弼中于禮曹時，弼中於酒半，出書契一章，傳與臣等。其辭大概，乃日本國，罪</p>

	용이 대개 ‘일본국이 대마도를 죄준 말과 화해를 청한말’이었습니다.	對馬島之辭，而欲請和解也。
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6월 26일(갑진) 1번째기사	비 때문에 객인(客人)의 접견을 정지하고, 좌의정 유순정을 보내어 일본 사신 봉중(弼中)을 위한 잔치를 예조에서 베풀고, 도승지에게 명하여 선운(宣醞)케 하여 접견할 때 주는 물건을 내렸다.	○甲辰/因雨停客人接見，遣左議政柳順汀，宴日本使弼中于禮曹。命都承旨宣醞，賜以接見時贈與之物。
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6월 29일(정미) 1번째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성절사(聖節使)의 행기(行期)가 가까왔으나 지금 주금(酒禁)3718) 이 있으니, 사연(賜宴)을 차려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주금이 있지만 전례대로 사연함이 옳다.” 하였다.	○丁未/禮曹啓曰：“聖節使行期已近。今有酒禁，其賜宴否？”上答曰：“雖酒禁，可依例賜宴。”
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8월 5일(임오) 2 번째기사	경기 관찰사 성몽정(成夢井)이 아뢰기를, “도내에 구황(救荒)3760) 하고 남은 소금과 황각(黃角)3761) 을 저장해 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구황하고 남은 것을 각 고을의 향교에 지급하여 서책을 갖추도록 하고, 또 수군(水軍)이 나누어 방어하고 있는 교동(喬桐)의 월관(月串)은, 마땅히 그 고을이나 부근 고을의 수군이 수자리살게 하며, 강화의 정포(井浦)도 이와 같이하면, 수군들이 멀리까지 수자리 사는 폐단이 없을 것이니, 적군(籍軍)할 때 각각 그 부근 사람들을 나누어 수자리 살게 하소서.	○京畿觀察使成夢井啓曰：“道內所儲救荒餘鹽及黃角甚多。請以此救荒之餘，給各官鄉校，以備書冊。且水軍分防喬桐之月串，則當以其官及附近官水軍戍之，江華之井浦，亦如之，則軍士無遠戍之弊，請令籍軍之時，各以附近分戍。
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8월 15일(임진) 2번째기사	승정원·홍문관·예문관에 선운(宣醞)3764) 하였다. ‘분정망월’(湓亭望月)이라 어제(御題)하고 7언 율시 3수씩 지어 바치도록 하였으며,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宣醞于承政院、弘文館、藝文館。御題湓亭望月，令各製七言律詩三首以進，賜物有差。
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8월 17일(갑오)	의정부가 정향(丁香)과 배[梨]를 삼전(三殿)에 바쳤다.	○甲午/議政府進丁香、梨于三殿。

<p>1번째기사 의정부가 정향과 배를 삼전에 바치다</p>		
<p>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10월 1일(무인) 5번째기사</p>	<p>중학(宗學)과 문·무신 시사(文武臣試射)를 권과(權籠)3785) 하고, 사학 유생(四學儒生)과 독서당(讀書堂)의 공궤(供饋)를 줄이도록 명하니, 이는 흉년 때 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다.</p>	<p>○命權罷宗學及文、武臣試射，減四學儒生及讀書堂供饋，以年凶省經費也。</p>
<p>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10월 23일(경자) 6번째기사</p>	<p>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 김수동·김응기가 아뢰기를, “상의원의 오래 묵은 중품 솜 1천 5백 근과 정포(正布)3821) 5백 필을 제용감(濟用監)으로 옮기고, 본감(本監)에서 금년에 받아들일 것은 곡식으로 대신 받아들여서 국용(國用)에 편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尙衣院提調金壽童、金應箕啓曰：“請以尙衣院久陳中絁子一千五百斤，正布五百匹，移于濟用監，本監今年所納，代之以穀，以便國用。”從之。</p>
<p>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11월 20일(병인) 1번째기사</p>	<p>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동지사(同知事) 신용개가 아뢰기를, “독서당의 사가 문신(賜暇文臣)은 뒷날 쓰기 위해서 당상관의 예로 공궤하여 은총을 유달리 하는 것인데, 요즈음 절약을 이유로 당하관의 지공으로 고치니, 은총으로 대우하는 뜻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조가 절약을 이유로 독서당의 지공을 전감(全減)할 것을 청하였는데, 내가 전감은 부당하다고 여겨 당하관의 지공으로 공궤토록 한 것이나 과연 당상의 예로써 공궤함이 옳다.”</p>	<p>○丙寅/御朝講。臺諫啓前事，不允。同知事申用漑曰：“讀書堂賜暇文臣，將以爲後日之用，饋以堂上之供，所以寵異之也。今以減省，改以堂下之供，殊無寵待之意。”上曰：“戶曹以減省，請全減讀書堂之饋，予以爲不當全減，使饋以堂下之供耳。果以堂上例供饋，可也。”</p>

	하였다.	
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11월 25일(신미) 6번째기사	소(疏) 끝에 어서(御書)하기를, “부덕한 내가 일국에 군림하여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렵게 여기건만 하늘의 꾸짖음이 없는 해가 없으며, 금년에는 온갖 재앙이 함께 나타나니 답할 바를 모르겠다. 경 등이 나열하여 아뢴 두어 가지 일은 나의 병통을 바로 맞추었으니, 내 마땅히 두고 살필터이며, 또 경 등은 각각 계심잠(戒心箴)을 올리라. 내 항상 좌우에 두고 관람(觀覽)에 대비하겠다.” 하고, 이어 승지를 보내 주육(酒肉)을 내리었다.	御書疏尾曰: 予以否德, 君臨一國, 夙夜兢惕, 天之譴怒, 無歲無之, 今年則衆災俱見, 罔知攸答。 卿等陳列數事, 正中予病, 予當留省焉。 且卿等, 其各上《戒心箴》。 予常置座右, 以備觀覽焉 因遣承旨, 賜酒肉。
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12월 27일(계묘) 3번째기사	남부 광통방(南部廣通坊)에 불이 나 잇달아 60여 집을 태웠으므로, 쌀을 내려 진휼(賑恤)할 것을 명하였다.	○南部廣通坊失火, 延燒六十餘家。 命賜米以賑之。
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12월 28일(갑진) 2번째기사	남부 광통방에 불이 나서 잇달아 60여 집을 태웠으므로, 명하여 유위군(留衛軍) 1백 인을 보내어 구조하고 또 쌀을 주어 진휼하였다.	○南部廣通坊失火, 延燒六十餘家。 命送留衛軍一百人以救之, 因給米賑之。
중종 15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월 1일(정미) 1 번째기사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망궐례(望闕禮)를 거행하고, 대비전(大妃殿)에 하례하고, 표리(表裏)3886) 를 드리고서,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명하여, 2품(品) 이상 및 경연관(經筵官)과 대간(臺諫)과 입직(入直)한 제장(諸將)을 대궐 뜰에서 공궐(供饋)하되 주악(酒樂) 일등(一等)을 내리도록 하였다.	○丁未朔/上率百官, 行望闕禮, 賀大妃殿進表裏。 御勤政殿, 受賀禮。 命饋二品以上及經筵官、臺諫、入直諸將等于殿庭, 賜酒樂一等。
중종 15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월 16일(임술) 8번째기사	내수사 계목(內需司啓目)에, “이번에 함경도와 황해도 등지의 어전(漁箭)을 서로 바꾸는 일은 이미 전지(傳旨)를 받았으니, 고기 잡을 때의 생갈(生葛)·재목(材木)·침염(沈鹽)·선척(船隻)을 제급(題給)하여 주소서.” 하였는데, 상이 그대로 따랐다.	○內需司啓目節該: “咸鏡、黃海等道魚箭相換事, 已捧傳旨矣。 捉魚時生葛、材木、沈鹽、船隻, 請題給。” 上從之。

<p>중종 15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월 17일(계해) 1번째기사</p>	<p>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정언(正言) 최중연(崔重演)이 아뢰기를, “해주(海州) 어전(漁箭)을 내수사에 주도록 명하시는 까닭을 알지 못하여 지극히 놀랐는데, 자세히 듣고 보니, 함경도에 사는 내수사 노비(奴婢)들의 신공(身貢)을 군자(軍資)에 충당하고, 그 값을 헤아려 어전으로 주었다 합니다. 노비들의 신공이나 어전의 이익이 어느 것인들 국가의 것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공도(公道)로 해야지 사사롭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니, 내수사에 주는 것을 허가하지 말고 도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전을 영구히 내수사에 준 것이 아니라, 군자에 보충할 곡물 수량을 헤아려 기한을 정하여 준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p>	<p>○癸亥/御朝講。 臺諫啓前事。 正言崔重演曰：“海州魚箭， 命給內需司， 未知其由， 至爲驚駭， 及詳聞之， 以威鏡道居內需司奴婢身貢， 充補軍資， 計其價而給魚箭。 奴婢之貢， 魚箭之利， 誰非國家之物乎？ 當以公道， 不可以私也， 請勿許內需司， 還給貧民。” 上曰：“魚箭非永給內需司也， 計補軍資穀數， 而定限給之耳。 餘竝不允。”</p>
<p>중종 15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월 17일(계해) 5번째기사</p>	<p>좌의정 유순정(柳順汀)·우의정 성희안(成希顔)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의 생일(生日)에 특별히 술과 물품(物品)을 내리시니, 세상에 드문 영광과 총애가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 등이 받기가 미안하니, 다음부터는 내리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생일에 물품을 내림은 옛적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조종(祖宗) 때에는 원훈(元勳)들을 중히 대우한 것이 이런 정도뿐이 아니었으니, 지금은 옛날만 못하다. 이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였다.</p>	<p>○左議政柳順汀、右議政成希顔等啓曰：“臣等生日， 特賜酒物， 稀世榮寵， 莫此爲甚。 然臣等受之未安， 自今後請勿賜焉。” 傳曰：“生日賜物， 古有其例。 祖宗朝重待元勳， 不止如此， 今則不如古矣。 此一年一度， 有何妨焉？”</p>
<p>중종 15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월 19일(을축)</p>	<p>전교하였다. “습항(濕項) 어전(漁箭)을 내수사(內需司)에 주지 말고, 장림(張琳)은 도로 가</p>	<p>○傳曰：“濕項魚箭， 勿給內需司。 張琳還囚。 鄭叔垠勸學事， 其問沈貞。”</p>

2번째기사	두며, 정숙은의 학문을 권장한 일을 심정에게 물으라.”	
중종 15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월 27일(계유) 7번째기사	전교하기를, “근래에 열무(閱武)하는 일을 오래 폐하였기 때문에 과연 소루하였을 것이다. 먼 곳에서 돌아왔으니 수고롭지 않겠는가. 술을 내려 위로하라,” 하였다. 유순정이 사냥한 범 2, 곰 1, 사슴 5, 멧돼지 1, 노루 30마리를 올리니, 상이 정원에 명하여 제사에 바칠 만한 큰 사슴 두 마리를 가리도록 하여, 주서(注書) 김응벽(金應璧)으로 하여금 종묘(宗廟)에 바치게 하였다.	傳曰: “近來閱武事久廢, 故果有疎漏矣。 遠地歸來, 得無勞乎?” 賜酒以慰之。 順汀進所獲禽獸虎二、熊一、鹿五、猪一、獐三十。 上命政院擇可薦者大鹿二口, 令注書金應璧, 往薦宗廟。
중종 15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월 27일(계유) 8번째기사 예조가 쌀과 술을 방 원보 등에 보내 백성 을 위로할 수 있도록 청하다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북도(北道)의 각보(各堡)와 성저 야인(城底野人)들에게 술과 쌀을 주는 것은 모두 국고(國庫)에서 나가지만, 방원보(防垣堡) 등은 유독 나오는 데가 없어 술을 주지 못하니, 저들이 혐의를 가지게 될까 깊이 염려됩니다. 두 보의 술과 쌀을 다른 진(鎭)의 예에 따라 회계(會計)를 감하여 주도록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바라건대, 충청도 관찰사가 계문(啓聞)한 것에 의하여, 나이 백 세에 찬 사 람들에게 각각 쌀을 내리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曰: “北道各堡城底野人等所饋酒米, 皆出於國庫。 防垣等堡, 獨無出處, 不得饋酒, 深恐彼人之懷嫌也。 兩堡酒米, 請依他鎭例, 減會計以給。” 又啓曰: “請依忠清道觀察使啓聞, 年滿百歲人, 各賜米。” 皆從之。
중종 15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2월 1일(병자) 5 번째기사	전교하였다. “이 뒤로 타위(打圍)할 때는 나무[柴]를 예비하고 술을 준비하여 주림과 추위를 막도록 함이 가하다.”	○傳曰: “今後打圍時, 積柴置酒, 以救飢凍可也。”
중종 15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4월 12일(병술) 2번째기사	주장에 나아갔다. 대간이 오보 등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신 등이 들으니 내수사(內需司)의 기은(祈恩) 때에 목장(牧場)의 말 35필로 의물(儀物)을 받들었는데, 기은 뒤에 모두 돌려보내지 않고 혹 사사로이 팔기	○御書講, 臺諫啓吳堡等事。 憲府又啓曰: “臣等聞內需司祈恩時, 以牧場馬三十五匹, 奉持儀物, 祈恩後皆不還放, 或私相放賣, 仍致牧馬耗損, 前年趙昆玉爲點馬, 欲除其弊, 以報監司,

	<p>도 하였으므로 목마가 손실되었습니다. 전년에 조곤옥(趙昆玉)이 점마사(點馬使)가 되어 그 폐단을 없애려고 감사에게 보고하였고 감사가 계문(啓聞)하였는데, 국가에서 해조(該曹)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니, 병조가 함경도 안에 있는 내수사(內需司)의 노(奴) 2백여 호에서 각각 말을 내어 의물을 받들고 함흥 목장(咸興牧場)의 말로 하는 것은 허가하지 말도록 계청(啓請)하여, 아뢴 대로 윤희되었습니다. 근자에 본궁(本宮)의 별차(別差)가 다시 기은할 때에 함흥 목장의 말로 의물을 받들도록 계청하되 해조에 보하지 않고 곧바로 정원(政院)에 올렸는데, 색승지(色承旨)가 또한 잘 살피지 않고 입계(入啓)하였으니, 부당합니다. 또 기은이라는 것은 신(神)에게 복을 비는 간사한 일인데, 그 이른바 청홍개(靑紅蓋)·홍량산(紅涼傘)·좌·우표기(左右標旗)·징[錘]·북[鼓] 같은 의물이 임금의 행행(行幸) 때의 의장(儀章)들과 비슷하니, 보고 듣기에 놀랍습니다. 또, 북방을 방어하는 일에 긴요한 것은 마정(馬政)이 우선이니, 기은의 폐단을 아주 개혁하되, 마정의 일은 병조가 전에 계청한 대로 따르소서. 내수사 관원(內需司官員)은 헌부가 지금 추문하는 중이거나 잡아와서 매우 다스리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기은의 일은 전례를 상고하니, 태조조에 기은을 위하여 함흥 목장에서 말을 길렀고, 성종조에 다시 말을 길렀으니 이제는 많이 번식하였을 것이다. 말이 여윈 것은 목자(牧子)를 문책해야 한다. 의물의 일은 내가 감히 알 바 아니다. 기은은 개국 이래로 해온 일이니, 이제 와서 시비할 수 없다. 별차 또한 직임을 받아서 간 것이니 잡아올 수 없다. 나머지도 다 윤희하지 않는다.”</p> <p>하였다.</p>	<p>監司啓聞，而國家令該曹區處。兵曹以咸鏡道內內需司奴二百餘戶，各出馬匹，奉持儀物，咸興牧場馬勿許事啓請，依允。近者本宮別差，復以祈恩時，咸興牧場馬儀物奉持事啓請，而不報該曹，直呈政院，色承旨亦不詳察入啓，不當。且祈恩邀福於神，邪媚之事也。其所謂儀物，如靑、紅蓋、紅涼傘、左右標旗、錘、鼓之類，與人主行幸之儀章等，其觀聽駭愕莫甚。且北方防禦事繁，馬政爲先，請痛革祈恩之弊，馬政事，一從兵曹前所啓請。內需司官員，憲府時方推問矣，請拿來痛治。”傳曰：“祈恩事，考其前例，太祖朝爲祈恩，放馬於咸興牧場，成宗朝再放馬，今必蕃息矣。馬之瘦困，當責牧子也。儀物事，予未敢知也。祈恩自開國以來爲之，今不可是非也。別差亦受任以去，不可拿來也。餘皆不允。”</p>
<p>중종 15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4월 20일(갑오)</p>	<p>승지(承旨) 김극휼(金克福)을 명하여, 성균관(成均館)에서 선은(宣醞)4016) 하게 하였다. 그리고 유생(儒生)에게 시제(試製)하여 생원(生員) 윤임(尹任) 등 13인이 합격하였는데, 각각 차등을 두어 종이를 하사하였다.</p>	<p>○命承旨金克福，宣醞于成均館，試製儒生。生員尹任等十三人入格，賜紙有差。</p>

3번째기사		
중종 15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5월 11일(갑인) 3번째기사	돌아오는 행차에 연희궁(延禧宮)을 지나다가 농사하는 것을 보고 농부들에게 술을 먹여 혹 취한 자도 있었다.	○還駕時，路由衍禧宮，觀稼，饋酒農人，或有醉者。
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윤5월 15일(무자) 3번째기사	살구[杏子]를 정원에 내렸다.	○賜杏子于政院。
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윤5월 18일(신묘) 2번째기사	일본국 사신 봉중이 숙배(肅拜)하니, 우승지 김세필(金世弼)에게 명하여 선은(宣醞)하여 위로하였다.	○日本國使臣弼中肅拜。命右承旨金世弼，宣醞以慰。
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6월 3일(을사) 1번째기사	경회루(慶會樓)에 나아가 일본국 사신 봉중(弼中) 등에게 잔치를 내렸다. 술잔이 일곱 순배 돌고 잔치가 파하려 하자 봉중이 섬돌로 내려가 땅에 엎드리니, 승지에게 명하여 물건을 차등있게 내리게 하였다.	○乙巳/御慶會樓下，宴日本國使弼中等。爵七巡，宴將罷，弼中下階伏地。命承旨賜物有差。
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6월 16일(무오) 2번째기사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신 등이 복합(伏閣)하여 일을 논한 지 벌써 두 달이나 되었고, 아뢴 바가 좌도(左道)를 물리치는 것과 경연관(經筵官)을 선택하는 것 등으로서 모두 쾌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토록 윤택하지 아니하시니, 더욱 실망됩니다. 올해 한재(旱災)는 경기와 서·북도(西北道)가 더욱 심합니다. 비록 정전(正殿)을 피하고 찬[膳]을 감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바른말을 구하여, 통절히 스스로 꾸짖고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으심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臺諫合司啓曰：“臣等伏閣論事，今浹時月。所啓黜左道、擇經筵官等事，皆當夫納，而不允至此，尤爲缺望。今年旱災，京畿西北道尤甚。雖避殿、減膳，然罪己求言，痛自刻責，側身修行甚當。”傳曰：“祈恩其來久矣，不可卒革也。處誠豈不得爲經筵官乎？邇來雖求言，上封事者，亦無可用之言。

	“기은(祈恩)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고칠 수 없다. 안처성(安處誠)이 어찌 경연관(經筵官)이 되지 못하겠는가. 그 동안 비록 구언(求言)하였으나, 올린 봉사(封事)4206) 가운데 쓸 만한 말이 없었다.	
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6월 17일(기미) 2번째기사	유순정이 또 세 차례나 아뢰어 굳이 사양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진퇴(進退)는 진실로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재삼 굳게 사양하므로 내가 지금 애써 따른다.” 하고, 이어서 사의(簑衣)를 내리고, 또 선온(宣醢)을 내려 위로하였다.	順汀又三啓固辭，傳曰：“大臣進退，固非輕事。然再三辭之甚固，故予今勉從。”仍賜簑衣，又賜醢，慰飲之。
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6월 17일(기미) 3번째기사	지금 정전(正殿)을 피하고 찬[膳]을 감하는 이외에, 몸소 책임을 느끼고 무릇 하늘을 감동시켜 비가 오도록 하는 일에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 없으시니,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아 하늘에 대하는 성의가 성탕(成湯)과 인종(仁宗)보다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今方避殿、減膳之餘，躬自刻責，凡於感天致雨之事，無所不盡其誠。其側身修行應天以實之意，誠無讓於成湯、仁宗，
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6월 19일(신유) 1번째기사	압연관(押宴官) 송일(宋軼)·예조 판서 신용개(申用漑)·참판 황맹헌(黃孟獻) 등이 아뢰기를, “어제 처음 잔치가 시작되자 먼저 선온(宣醢)을 내리고서 ‘상께서 한재(旱災)를 당하여 친히 접견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달하니, 봉중(弼中) 등의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辛酉/押宴官宋軼、禮曹判書申用漑、參判黃孟獻等啓曰：“昨初開宴，先賜宣醢，教以上當旱災，不親接見之意，則弼中等所言，非一端也。”
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6월 21일(계해) 1번째기사	적변이 잠잠할 때까지는 생물(生物)의 진상(進上)도 요량하여 감하기를 바랍니다. 신의 우매한 소견으로는 방략을 알지 못하겠으니, 여러 의논을 채택하여 시행하시기 바라거니와, 적변이 날로 심하여 조금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賊變寢息間，請量減生物進上。以臣愚計，莫知方略，請採群議施行。賊變日甚，不可少緩，故敢啓。”
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6월 23일(을축) 1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흥천(興天)·흥덕(興德) 두 절의 대종(大鐘)을, 공조(工曹)로 하여금 총통(銃筒)을 주조하게 하였으나, 지금 들으니 대비전(大妃殿)에서 그릇[器皿]을 주조하기 위하여 이미 내수사(內需司)로 옮겼다 하니, 이 뜻을 공조에 말하라.”	○乙丑/傳于政院曰：“興天、興德兩寺大鍾，已令工曹，鑄銃筒，而今聞大妃殿，欲鑄器皿，已移于內需司。此意言于工曹。”

<p>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6월 26일(무진) 1번째기사</p>	<p>또 아뢰기를, “북도(北道)는 가뭄이 심하여 들판에 굶어 죽은 시체가 많고, 공廩(公廩)마저 고갈되었는데, 지금 순찰사(巡察使)를 보내고 종사관(從事官)과 군관(軍官)들을 거느리게 하니, 온 도(道)의 공궤(供饋)하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병사(兵事)를 조처하는 것은 본도 절도사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하며, 기민(飢民)을 구제하는 일은 감사(監司)로 하여금 실시하게 함이 무방한데, 재상을 많이 보내어 왔다갔다 하며 지공(支供)하는 데 주식(酒食)을 허비하게 되니, 이는 도리어 그 궁곤(窮困)만 더하게 되고 돌보아 구제하는 의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순찰사를 보내는 것은 곧 대신의 의논으로서, 잘못된 계책이 아니다.” 하고,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p>	<p>又啓曰：“北道燠甚，野多飢殍，而公廩告匱，今遣巡察使，率從事官軍官等，一道供億之弊不費。且措置兵事，則本道節度使當任其責，而飢民賑恤之事，令監司設施不妨，多送宰相，往來支供，靡費酒食，是反益其窮困，而無撫恤之意。”傳曰：“遣巡察使，乃大臣之議，非謬策也。皆不允。”</p>
<p>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7월 8일(기묘) 1 번째기사 정원이 영의정의 죽음 에 소선하는 것을 멈 추고 육선을 들기를 간청하다</p>	<p>정원이 아뢰기를, “영의정이 졸(卒)하자 소선(素膳)을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육선(肉膳)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갓 죽었는데, 행소(行素)4247) 를 어찌 그만두겠는가.” 하였다.</p>	<p>○己卯/政院啓曰：“詮聞領議政之卒，御素膳，請進肉膳。”傳曰：“大臣初卒，行素何以止此?”</p>
<p>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7월 8일(기묘) 2 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기를, “대신이 죽었을 때 승지를 보내어 조상(弔喪)하는 것은 어찌 전례가 없겠는가. 속히 상고하여 아뢰라.” 하고, 또 분부하기를, “정원에서, 대비전(大妃殿)을 위하여 육선(肉膳)을 들어야 한다고 하므로, 그 청에 따르겠다.”</p>	<p>○傳于政院曰：“大臣之卒，遣承旨弔喪，豈無其例？速考以啓。”又教曰：“政院以爲，爲大妃殿進肉膳，故當依其請。”政院啓曰：“遣承旨弔喪之例，當代無之。當遠考祖宗朝古例。”傳曰：“弔喪事，於當今無例，則勿考古</p>

	<p>하자, 정원이 아뢰기를, “승지를 보내어 조상한 예가 당대(當代)에는 없으니, 마땅히 멀리 조종(祖宗) 때의 옛 예를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상한 일이 당금(當今)에 예가 없다면 옛 예를 고찰할 것이 없다.” 하였다.</p>	<p>例。”</p>
<p>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8월 30일(신미) 1번째기사 압연관 송일 등이 봉 중에게 잔치를 베풀고 봉중의 말을 보고하다</p>	<p>압연관(押宴官) 송일(宋軼)과 예조 참의(禮曹參議) 이전(李堧)이 아뢰기를, “신 등이 어제 봉중에게 예조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 며 재삼 사례하였고, 이어 청하기를 ‘포구에 있는 도선주(都船主)를 상경(上 京)하도록 하여 함께 하직하고 돌아가도록 하여 달라’고 청하였는데, 그의 생 각에, 화친을 언약하는 일을 허락한다고는 해도, 도선주가 서울에 오는 일에 대해서는 대마도의 죄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화친을 허락하지 아니할까 의심 하여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세사미[歲賜]와 선척(船隻) 등 물건 을 재감하는 수량을 알고 싶었기 때문인데, 이 일로 재차 청하기를 ‘종인(從 人)들은 모두 먼저 보내고, 나는 홀로 여기에 머물렀다가 도선주가 오기를 기 다려 함께 돌아가겠다.’고 하기에, 신이 응답하기를 ‘화친을 허락하는 일에 대 해 너희들이 이미 분부를 듣고도 국가에 다시 미답지 못한 것이 있는가? 또 일기가 점차 바람이 높아져 오래 머물 수가 없고, 너희들이 국왕(國王)에게 복명하는 것도 시급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니, 너희들이 미답지 못한 마음 을 가짐은 진실로 잘못이다. 그런 일은 전달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례(常例)의 연향(宴享)은 단지 궤향(饋餉)만 하였습니다. 어제 봉중이 ‘노승(老僧)이 만 리 길을 하직하고 돌아가면 다시 만나기를 기 약하기 어려우니, 보답하는 인사를 차리기 청합니다.’ 하였고, 그의 부사[副</p>	<p>○辛未/(狎) [押] 宴官宋軼、禮曹參 議李堧啓曰：“臣等昨日，宴弼中于禮 曹，喜形於色，再(再) [三] 謝禮，仍 請曰：‘在浦都船主，請令上京，同時辭 還。’云。其意以爲約和事，雖云許 之，都船主來京，則以馬島罪惡極大， 不許通好爲疑而然也。且欲知歲賜船 隻等物裁減之數故耳。以是再請曰： ‘從人盡令先送，予獨留此，待船主上 來而偕還。’云。臣答曰：‘許和事， 爾既聞教，而復不信於國家乎？且日漸 風高，不可久留，爾等復命於國王，亦 不可不速也。爾等有未信之心，固爲 非也。如此之事，不可轉達。’云。 且常例宴享，則但饋餉而已，昨日弼中 曰：‘老僧萬里辭歸，再會難期，請行酬 禮。’其副价亦請酬酒。臣等許之， 皆極醉而罷。仍呈謝禮書契于禮 曹。”傳曰：“知道。”</p>

	价] 또한 수작(酬酌)하기를 청하므로, 신 등이 허락하여 모두 몹시 취하게 마시다가 파하였는데, 이어 사례하는 서계(書契)를 예조에 바쳤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9월 6일(정축) 2 번째기사	전교하였다. “이번 9월 9일의 기영회(耆英會)4292) 및 경연관(經筵官)들에게 사연(賜宴)할 때에 선온(宣醞)과 사악(賜樂)을 역시 구례(舊例)대로 하라.”	○傳曰: “今九月九日, 耆英會及經筵官賜宴時, 宜醞賜樂, 亦依古例。”
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9월 9일(경진) 3 번째기사 기영회 잔치를 훈련원 에 경연관 잔치를 반 송정에 내리다	기영회(耆英會) 잔치를 훈련원(訓練院)에, 경연관(經筵官) 잔치를 반송정(盤松亭)에 내렸다	○賜耆英宴于訓練院, 經筵官宴于盤松亭。
중종 16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9월 15일(병술) 2번째기사	가주서(假注書) 장흡(張洽)으로 하여금 사냥한 노루 세 마리를 먼저 종묘에 바치도록 하였다.	○令假注書張洽, 將所獲獐三口, 先薦于宗廟。
중종 17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0월 19일(기미) 1번째기사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사간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기를, “조종(祖宗) 때로부터 제사를 중히 여겨 왔는데, 근자에는 석전제(釋奠祭)의 치재(致齋) 날에도 제관이 모두 치재하지 아니합니다. 재계란, 정돈되지 못한 사려(思慮)를 정돈하여 신명(神明)과 통하는 것인데, 지금의 제관은 재숙(齋宿)하는 밤에 술마시기를 끊임없이 하고, 이튿날 제사 뒤에는 음복(飲福)도 하지 않고 모두 다 바빠 흩어져 버립니다. 성종조(成宗朝)에서는 제사 때 음복을 중히 여겼는데, 지금은 버릇이 쌓여 풍속이 되었으니, 재계하는 날 함부	○己未/御朝講。 大司諫趙元紀曰: “自祖宗朝, 以祭祀爲重, 近者如釋奠祭致齋之日, 祭官皆不致齋。 齋者, 齊其思慮之不齊, 以交於神明, 今之祭官, 齊宿之夕, 飲酒不輟, 及翌日祭後, 不爲飲福, 皆盡馳散。 成宗朝以祭祀飲福爲重, 而今乃積習成風。 致齋之

	<p>로 술 마시지 못하게 하고, 제사 뒤에 음복하는 절목(節目)을 마련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단속하여 거행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日，勿縱酒，祭後飲福節目，請令磨鍊。”上曰：“當糾舉也。”</p>
<p>중종 17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0월 23일(계해) 5번째기사</p>	<p>대간이 방운 등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사용원(司饗院)의 설리(薛里) 박경례(朴敬禮)·김극중(金克宗)이, 진상(進上)한 생선의 숫자를 외람되이 예조(禮曹)에 보(報)한 죄를 장(杖) 80에 탈고신 삼등(奪告身三等)으로 조율(照律)하여 입계(入啓)하였는데, 태(笞) 50에 현직을 해임하고 따로 서용(敍用)하도록 판하(判下)하였습니다.</p>	<p>○臺諫啓方輪等事。憲府又啓曰：“司饗院薛里朴敬禮、金克宗，以進上生鮮濫報禮曹之罪，杖八十奪告身三等，照律入啓，而以笞五十解見任別敍判下。</p>
<p>중종 17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0월 30일(경오) 10번째기사 성균관의 식사에 대해 논하다</p>	<p>성균관(成均館)에서 먹여 주는 유생(儒生)의 수가 과다하여 반찬을 대지 못했다. 쇠고기를 공궤(供饋)한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인데, 이때 생원(生員) 정자견(丁自堅)이 홀로 먹지 않자, 박훈(朴薰)·윤자임(尹自任) 등이 금하는 고기를 학궁(學宮)에서 씹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의논이 먹지 않기로 하였는데, 제생(諸生)이 재(齋) 안 및 명륜당(明倫堂)에서는 먹고, 오직 식당(食堂)의 일제히 모이는 곳에서는 먹지 아니하므로, 식자(識者)들이 특이한 체하는 것을 우려했다.</p>	<p>○成均館所餉儒生數夥，不能繼饌，以牛肉供饋，其來已久。是時生員丁自堅獨不食，朴薰、尹自任等倡言：“禁肉不可用於學宮。”群議不食，而諸生於齋中及明倫堂食之，唯食堂齋會處不食，識者憂其矯激。</p>
<p>중종 17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1월 4일(갑술) 1번째기사</p>	<p>영사(領事) 유순정이 아뢰기를, “경기(京畿) 지방이 실농(失農)하였는데, 각 고을이 혹 사자(使者)를 정하여 경저(京邸)에 와서 봉납(捧納)하게 하고는, 사자가 백성에게 배(倍)나 되게 징수(徵收)하여 비록 한 말을 바쳐야 하는 것이라도 더러는 두 말을 징수하며, 인정(人情)으로 증여(贈與)하는 물건에 있어서도 또한 배를 징수하니, 이 때문에 백성이 더욱 곤궁하고 고통받게 됩니다.”</p> <p>하고, 윤탕은 아뢰기를, “민간(民間)이 공물(貢物) 바치는 것 때문에 더욱 생활을 지탱하지 못하게 됩</p>	<p>領事柳順汀曰：“京畿失農，各官或定使者，來京邸捧納，而使者倍數徵之。雖納一斗之物，或徵二斗，至於贈遺人情之物，亦倍數徵之。以此百姓，尤至於困苦。”宥曰：“民間以貢物之納，而其利甚重，故禁不能止，本府時方推之矣。”順汀曰：“防納之弊，固非偶</p>

	<p>니다. 법에 방납(防納)하는 자는 전가 입거(全家入居)하게 되어 있으나, 그 이득이 매우 많기 때문에 금하여도 방지되지 않으므로, 본부(本府)에서 지금 바야흐로 조사하고 있습니다.”</p> <p>하고, 순정은 아뢰기를, “방납의 폐단은 진실로 우연(偶然)한 것이 아닙니다. 신이 듣건대, 약재(藥材)는 달[月]에 따라 채취(採取)하여 그때그때 가져다 바치는 것인데, 근래에는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양의사(兩醫司)4348)의 하인(下人)들이 오래 묵어 버려 둔 약재를 모아 씻어서 방납하고, 각 고을에서 올려 보낸 새 약재는 바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약이 또한 효험이 없으며, 방납하는 자들이 물건 값을 외람하게 받아냅니다. 이와 같은 간사한 일이 수다하니, 마땅히 엄중하게 경계해야 합니다.”</p>	<p>然。 臣聞之， 藥材隨月採取， 以時齎納， 而近不如法。 兩醫司下人等， 拾取久陳棄置藥材， 洗淨以防納， 各官上送新藥材， 使不得納， 故藥亦無效， 而防納者濫徵價物。 如此奸僞之事數多， 宜痛懲。”</p>
<p>중종 17권,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12월 15일(을묘)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연산군을 이장(移葬)할 때에 쓸 쌀과 콩 아울러 1백 석과 면포 1백 50필, 정포(正布) 1백 필, 청밀(淸蜜) 2석(石), 참기름 2석, 밀가루 4석, 황랍(黃蠟) 28근을 제급(題給)하도록 하라.”</p>	<p>○乙卯/傳于政院曰： “燕山君移葬時， 所用米豆并一百石， 縣布一百五十(匠) [匹]， 正布一百(匠) [匹]， 淸蜜二石， 眞油二石， 眞末四石， 黃蠟二十斤， 可題給。”</p>
<p>중종 17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월 1일(신미) 1번째기사 종실·재상 2품 이상과 입직 제장 등에게 음식 대접을 명하다</p>	<p>종실(宗室)·재상(宰相) 2품 이상과 대간·홍문관·승정원·사관(史官) 및 입직(入直)한 제장(諸將)을 전정(殿庭)에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p>	<p>○辛未朔/命饋宗宰二品以上、臺諫、弘文館、承政院、史官及入直諸將于殿庭。</p>
<p>중종 17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월 14일(갑신)</p>	<p>성희안(成希顔)이 의계(議啓)하기를, “1. 진상하는 곤포(昆布)·다시마[塔士麻] 【모두 해채(海菜)이름.】 를 군인들로</p>	<p>○成希顔議啓： “其一曰： 進上昆布塔士麻， 【皆海菜名。】 令軍人入海採取， 其來已久， 今若移定他邑， 則他邑亦受</p>

3번째기사	하여금 바다에 들어가서 채취하게 한 유래가 이미 오래인데, 지름 다른 고을로 옮겨 배정한다면 다른 고을이 또한 폐단을 받게 되고, 또 지금은 변방에 큰 일이 없으니, 예대로 둬서 순편하겠습니다.	弊。且今無大邊事，因舊爲便。
중종 17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월 15일(을유) 2번째기사	동서(東西)에 진제장(賑濟場)4453) 을 설치하여 기민(飢民)을 구제하도록 명하고,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직전(職田)4454) 의 쌀과 콩을 반사(頒賜)하지 못하도록 명했는데, 흉년이 들어 국용(國用)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命設東西賑濟場，以賑飢民。命勿頒功臣田、別賜田、職田米豆，以年饑國用不裕也。
중종 17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월 21일(신묘) 5번째기사	대사헌 남곤(南袞) 등이 아뢰기를, “오늘 경연관을 공궤(供饋)할 때에는 신 등도 잔치에 참여할 것이니 영행(榮幸)이 작지 않으나, 바야흐로 큰 일을 간쟁(諫爭)하며 복합(伏閣)하므로, 한 몸의 영행만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大司憲南袞等啓曰：“今日經筵官供饋時，臣等亦當參宴，榮幸不小。然方論大事伏閣，不暇計一身之榮幸，故不參也。”
중종 17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2월 1일(경자) 2번째기사 백층을 정원에 내리다	백층(栢層)을 정원에 내렸다. 나라 풍속이 2월 1일이면 내자시(內資寺)에서 실백자(實栢子)4477) 를 솔잎 끝에 꽂아 【한 잎에 각각 잣 한 알씩을 꿰는다.】 붉은 종으로 동여 묶어 장식하고 자루가 있는데, 【자루 끝에 연꽃 받침을 새겨 소나무 가지를 받치는데, 길이가 한 자쯤이며 주색(朱色)을 바른다.】 이름하여 백층이라 한다. 해마다 진상(進上)하는데 대내(大內)에서 정원 및 척완(戚畹)4478) 에게 반사(頒賜)하였다.	○下栢層于政院。國俗於二月一日，內資寺以實栢子，插於松葉之端，【一針各貫栢子一箇。】以紅紙纏束，以飾之有柄。【柄頭刻蓮花萼，以承松枝，長一尺許塗朱。】名曰栢層，每歲進之，自內卽頒諸政院及戚畹。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3월 1일(경오) 1번째기사 피전 감선하다	피전 감선(避殿減膳)4521) 하였다.	○庚午朔/避殿減膳。
중종 18권, 8년(1513)	경기(京畿)의 도계 진상(到界進上)4561) 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정원(政院)에	○命減京畿到界進上。政院啓以民飢，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3월 7일(병자) 3 번째기사	서 백성들이 굶주린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이런 분부가 있는 것이다.	故有是命。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3월 11일(경진) 6번째기사 함경도 진휼 경차관 한효원이 기민에 대한 치계를 올리다	함경도 진휼 경차관(咸鏡道賑恤敬差官) 한효원(韓效元)이 치계(馳啓)하였다. “흉년을 당한 각 고을에는 유리 결식(流離乞食)하는 자가 많고, 그대로 남아 있는 자도 온 집안이 부종(浮腫)이 났으며, 혹은 온 집안 식구가 다 굶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쌀과 염장(鹽醬)을 많이 실어다가 구제하였고, 이미 초식(草食)을 장만 하였으나 겨울철에 거의 다 먹어 없어지고, 지금은 유목피(楡木皮)·추목피(楸木皮)·가려손목피(加呂遜木皮)·목적초(木賊草)·토사자(兔絲子)·명회목(明灰木)·창이자(蒼耳子)·마자(麻子)·산삼(山蔘)·갈근(葛根)과, 바다에서 나는 홍채(紅菜)·황곽(黃藿) 등을 썰어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 섞어 먹고 있는데, 창이자·가려손목·마자 등의 물건은 먹기만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현기증이 나게 하는데도 배를 채우기 위해 먹으므로 상하게 되는 자가 많습니 다.”	○咸鏡道賑恤敬差官韓效元馳啓曰：“失農各官，流離行乞者多，其存接居生者，或闔門浮腫，或舉家餓死，故米食鹽醬，多數載行以救之。雖已備草食，冬節幾已喫破，今則以楡木皮、楸木皮、加呂遜木皮、木賊草、免絲子、明灰木、蒼耳子、麻子、山蔘、葛根、海產紅菜、黃藿等物，細切炮末交食之。蒼耳子、加呂遜木、麻子等物，則食之令人迷眩。然欲充腸而食，致傷者多矣。”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3월 15일(갑신)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현덕 왕후(賢德王后)를 부묘(祔廟)한 뒤에 다만 전문(箋文)으로 진하(陳賀)할 것이요, 방물(方物)과 결채(結綵)4582) ·가요(歌謠) 등은 정지하라.” 하였다. 이는 재변을 만나 근신하기 때문이었다.	○甲申/傳曰：“顯德王后祔廟後，只令進箋陳賀，停方物及結綵歌謠等事。”以遇災修省也。”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4월 3일(신축) 4 번째기사	예조 판서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천릉(遷陵)은 국상[國恤]과 다르기 때문에 조식 상식(朝夕上食)과 주다례(晝茶禮) 등은 처음부터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건대 영릉(英陵)을 옮길 때에는 상식 등의 의식이 있었으니 지금도 여기에 준하여 칠우(七虞)를 지내는 동안까지 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判書申用漑啓曰：“遷陵非如國恤，故朝夕上食、晝茶禮等事，初不磨鍊矣。然更思之，英陵遷陵時，有上食等事。今亦依此例，至七虞祭間行之。”從之。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4월 10일(무신) 2번째기사 정원이 홍상의 죽음에 육선을 청하다</p>	<p>정원이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홍상의 죽음으로 해서 소선(素膳)을 드린다 하는데, 이는 예문(禮文)에 없는 일이니 육선(肉膳)을 드리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왕실의 지친이라 차마 육선을 먹지 못하겠다.” 하였다. 세 번 거듭 아뢴 뒤에 윤허하였다.</p>	<p>○政院啓曰：“臣等聞上以洪常卒，進素膳。此禮文所無，請進肉膳。”傳曰：“王室至親，不忍進肉膳。”至三啓乃允。</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4월 13일(신해) 5번째기사 예조에서 망합에게 잔 치를 내리다</p>	<p>송일(宋軼)·신용개(申用漑)·이사균(李思鈞) 등을 보내어 예조에서 망합(莽哈)4649)에게 잔치를 내렸다.</p>	<p>○遣宋軼、申用漑、李思鈞等，賜莽哈宴于禮曹。</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4월 16일(갑인) 1번째기사</p>	<p>상이 효증의 졸(卒)함을 듣고 소선(素膳)을 들여오게 하였으나, 정원(政院)이 육선(肉膳) 들이기를 청하였는데, 두 번 아뢰어서야 윤허하였다.</p>	<p>上聞孝曾之卒，進素膳。政院請進肉膳，再啓乃允。</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4월 30일(정묘) 2번째기사</p>	<p>함경도의 구황 경차관(救荒敬差官)4667) 한효원(韓效元)이, 인근 강원도 등의 미곡 수만 석을 옮겨서, 올 곡식이 익을 동안 구제하도록 청하였다.</p>	<p>○咸鏡道救荒敬差官韓效元，請移轉隣近江原等道米穀數萬石，早穀成熟間，使得賑救。</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5일(임신) 3 번째기사</p>	<p>상이 망묘례(望廟禮)를 행하고 재궁으로 돌아왔다.</p>	<p>○上行望廟禮，還齋宮。</p>
<p>중종 18권, 8년(1513)</p>	<p>상이 종묘에 나아가 부모제(祔廟祭)을 차등있게 하였다.</p>	<p>○癸酉/上幸宗廟，行祔廟祭。</p>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6일(계유) 1 번째기사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6일(계유) 3 번째기사 근정전에 나가 음복례를 행하고 소릉 추복의 일을 반교하다	상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여러 신하들의 축하를 받고, 【팔도의 감사(監司)도 전문(箋文)으로 축하를 드렸다.】 이어 음복례(飲福禮)를 행한 다음 중외에 반교(頒敎)하였다.	○上御勤政殿，受群臣賀。【八道監司，亦進箋陳賀。】仍行飲福禮，頒敎于中外曰：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6일(계유) 4 번째기사 궐정에서 음식을 베풀다	궐정(闕庭)에서 음식을 베풀어 여러 집사들을 먹이는데, 주악일등(酒樂一等)을 내렸다.	○饋諸執事于闕庭，賜酒樂一等。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6일(계유) 5 번째기사	정광필(鄭光弼)이 우상(右相)을 사직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이어 아뢰기를, “길주(吉州) 이남은 기근이 너무 심하여 사망자가 반이나 되는데, 지금 또 가뭄이 심하니 곡식을 수운(輸運)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번 수운하지 않은 경상좌도의 곡식과 충청도의 곡식 수만 석을 양운(兩運)으로 나누어, 1운은 망종(芒種) 후에 수운하고 1운은 가을에 수운하는 것이 마땅하옵습니다만, 사공이 대부분 흩어져 토착민이 없는 데다가, 수로(水路)의 일이 과중하여 감내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자가 속출하니, 신은 청하옵건대 사공 1인에게 쌀 1석씩을 그 댓가로 주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모집하게 한다면, 곡식	○鄭光弼辭右相，不允。仍啓曰：“吉州以南，飢饉太甚，死亡相半，今又旱甚，輸粟勢不得已也。慶尙左道前年未輸穀及忠清道各數萬石，分兩運，一運則待芒種後輸之，一運則待秋入之爲當。但蒿工率皆流離，無土着人也，而水路役重，不能堪支，逃者相繼。臣請蒿工一人，償米一石，許令自募，則穀米雖費，蒿工等不失其業，已爲運漕，北道飢民，庶可救活。端川留庫

	<p>은 소모되나 뱃사공들은 그 본업을 잃지 않고 조운(漕運)하여 북도의 기민이 구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천(端川) 창고에 유치된 곡식 수량이 5월까지는 기민을 구제할 수 있으나, 한효원(韓效元)의 조사에 의하면 진토(塵土)가 섞여 못쓰겠다고 합니다. 그 고을 원을 강등시켜 징계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정부(政府)·부원군(府院君)·해조 당상(該曹堂上)에게 물으리라.”</p> <p>하였다.</p>	<p>穀數，可至五月救荒，而韓效元看審，則塵土相雜，不可用云，其郡守請降資示懲。” 傳曰：“當問于政府、府院君、該曹堂上。</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10일(정축) 1번째기사</p>	<p>유순(柳洵)·홍경주(洪景舟)가 의논드리기를,</p> <p>“길주(吉州) 이남 고을에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이 많으니, 곡식을 수운하여 급히 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도와 충청도 각관의 곡식을 수운하여 들이는 일과, 사공을 모집하여 부리는 일과, 단천 군수(端川郡守)를 강등시켜 징계하는 일을 모두 정광필의 아뢰 바에 따라야 됩니다.”</p> <p>하고, 성희안(成希顔)이 의논드리기를,</p> <p>“미곡의 수운과 사공에게 주는 댓가는 호조(戶曹)로 하여금 전운사(轉運使)와 함께 상세히 살펴 마련하되, 사세가 난처하거든 다시 의논하여 시행할 것이며, 단천 군수 박침(朴琛)은 아뢰 바에 의하여 강등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고, 송일(宋軼)이 의논드리기를,</p> <p>“하삼도(下三道)에서 북도로 곡식을 수운하는 일은 전에 없었던 일이라, 그 일이 중대합니다. 이제 기근과 한재가 너무 심하므로 그 구제의 방책이 부득이하여 나온 것이나, 농사일이 한창이라 서둘러 행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니, 가을에 농사 형편을 본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사공에게 쌀로 댓가를 주는 것은 마땅한 것 같으나, 단 30석을 수운하는</p>	<p>○丁丑/柳洵、洪景舟議：“聞吉州以南郡邑失農乏食，民多餓死，輸穀賑救，不可不急。慶尙、忠淸道各官穀，分運輸入及蒿工募人役使，與端川郡守降資懲戒事，當依光弼所啓。”成希顔議：“米穀輸運及蒿工償役事，令戶曹同轉運使，詳悉磨鍊，而如遇事勢難處，更議施行。端川郡守朴琛，姑依所啓，降資爲當。”宋軼議：“自下三道輸穀北道，前此無有，其事重大，今則饑旱太甚，其救恤之策，出於不得已也。然今方農務，不宜遽行此役，竝待秋觀農事，更議處之爲當。且蒿工償米似當，然只運三十石，六名各給一石，糜費不貲，且不可開例。此等事，策在本道。端川穀食，塵土相雜，其來已久，今郡守朴琛，赴任未久，似不可降資。”金應箕議：“吉州以南，飢饉太甚，運米之事，不可緩也。但今</p>

6명에게 1석씩을 주게 되면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도 적지 않으려니와, 또한 이러한 관례를 만들 수 없고 이러한 일의 그 계획은 본도에 있습니다. 단천 곡식에 진토(塵土)가 섞인 것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군수 박침은 부임한 지 오래지 않았으니, 강등시켜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김응기(金應箕)가 의논드리기를,

“길주 이남에 기근이 너무 극심하니 곡식 수운하는 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농사일이 한창 급한 때라 백성을 부려 곡식을 수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본도 각관에 저축한 것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않는 않았으니, 전의 수교(受敎)에 따라 군자(軍資)를 무시하고 변통하여 구제하다가, 제초(除草)의 일이 끝나거든 경창(京倉) 및 근도(近道) 각관 곡식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적절히 수운하게 하고, 먼 도는 추수 후 얼음이 얼기 전에 마련하여 수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상 좌도는 곡식을 수운하였고 우도는 성을 쌓았으니, 이 도의 곡식도 다 없앨 수 없는 실정이라, 충청·전라 두도의 곡식을 마련하여 실어들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사공에게 쌀 1석씩을 댓가로 준다는 것은 그 비용이 너무 많으니 노정을 따져 주는 것이 마땅하며, 단천 군수는 아된 바에 의하심이 옳습니다.”

하고, 이손(李蓀)이 의논드리기를,

“전에도 곡식을 운반하여 그 폐가 남쪽 백성들에게 미쳤던 일을 사람마다 말합니다. 신의 생각에도 곡식을 수운하는 일은 매우 어려우니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가을에 경외(京外) 각처의 호조 회계(戶曹會計)에 붙인 면포(綿布)를 많이 들여보내게 하여 그것을 각도 각읍에 나눠 주어 곡식을 무역하여 서서히 비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할 듯합니다. 지금 광필의 계사(啓辭)를 보건대 기민이 반이나 죽게 되어 사세가 매우 급박하니, 편리한 대로 곡식을 옮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사철이니 남쪽 백성들이 본업을 버리고 이동하기가 또한 어렵고, 도내에서 옮길 때 쌀 30석당 6석을 덜어내어 사공

農務方急，役民運米爲難。 本道各官所儲，不至乏絕，依前受敎，不計軍資，推移賑救，待除草事畢，京倉及近道各官米太，令該曹量宜輸入，遠道則秋收後冰凍前，加磨鍊輸轉爲當。 但前年慶尙左道則運米，右道則築城，此道米太，亦不可罄竭，當以忠淸、全羅兩道米太，磨鍊輸入矣。 且蒿工償米一石，糜費甚多，計程給料爲當。 端川郡守，可依所啓。” 李蓀議：“前年運米之舉，弊及南民事，人人皆言，臣亦竊謂輸米甚難，不應再舉。 可於秋成，京外各處戶曹會計付緜布，多數入送，分授各道各邑，使之貿穀，漸次儲畜，猶可也。 今觀光弼啓辭，民飢半死，事勢甚急，不可不從便移穀。 然今當農務，南民之棄本業轉移亦難， 而道內推移時，米每三十石，除出六石，給償船人，耗損甚多，事亦未便。 且吉城以南之民，爲半死亡，則遠道之米，安能及期輸入，以活垂死之民乎？ 臣意本道之穀，不計軍資倉，全數分給賑救可也。 朴琛前年下去，似非身犯，推考後定罪似當。” 張順孫、任由謙、李陌議：“咸鏡道餓孳相望，輸穀賑救之策，出於不得已。 但今農月，用民力甚重，本道軍資及漕轉之米，今未絕乏，姑令撙節救恤，待秋初農事，審定輸入，實合事勢。 蒿工亦是飢民，償役似當、人給一石，是則太多，固宜裁減。 朴琛降資似當。” 上從軼議。

	<p>의 댓가로 주면 손실이 너무 많고 일도 온편치 못합니다. 또 길성(吉城) 이남 백성이 반이나 사망하였다니, 먼 도의 곡식을 어떻게 제때에 수입하여 거의 죽게 된 백성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도 본도의 곡식은 군자창(軍資倉)을 따질 것 없이 전수 분배하여 구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박침은 지난해 내려간 사람이라 자신의 범행이 아닌 듯하니, 추고한 뒤에 죄를 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고, 장순손(張順孫)·임유겸(任由謙)·이맥(李陌)이 의논드리기를, “함경도는 굶어 죽는 자가 즐비하게 널렸으니, 곡식을 수입하여 구제하는 방책은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왔으나 지금은 농사철이라 민력(民力)을 이용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본도의 군자와 조전미(漕轉米)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으니 그것을 적절히 구제하게 하였다가, 초가을에 농사를 살펴 수입하는 것이 실로 사세에 합당하겠습니다. 사공 역시 기민이라 댓가를 주는 것은 당연하나 1인당 1석씩을 주게 된다면 이는 너무 과다한 것이니 실로 재감하여야 되며, 박침은 강등시키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송일의 의논을 따랐다.</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11일(무인) 2번째기사</p>	<p>송일·김응기에게 전교하기를,</p> <p>“근일에 가뭄이 너무 심하니 기우제(祈雨祭)가 비록 문구(文具)이기는 하나 또한 그만둘 수 없다. 오늘 열무(閱武)를 대간·시종은 정지하라고 청하나, 나는 관가도 겸하려고 하여 강행(強行)했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위로 하늘의 경계를 삼가고 아래로 백성의 괴로움을 구제하겠는가?”</p> <p>하매, 송일이 아뢰기를,</p> <p>“함경도는 기근이 너무 심하여 사망하는 백성이 많으나, 그 도의 백성을 다른</p>	<p>○傳于宋軼、金應箕曰：“近日旱氣太甚，祈雨雖文具，亦不可廢也。今日閱武，臺諫、侍從，請停之，予兼欲觀稼，故強行耳。何以則上謹天戒，下恤民隱乎？”宋軼啓曰：“咸鏡道飢饉太甚，人民多死。其道之民，勢不得就食他道也。今又旱劇，京畿亦旱荒。上既謹天戒，百官奉承，無怠職事，則庶乎可矣。”傳曰：“近觀災變，無歲無之，今又旱甚，實予否德之故也。</p>

도에 옮겨 먹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또 가뭄이 극심하니 경기 역시 흉년이 들 것입니다. 상께서는 이미 하늘의 경계를 삼가시니 백관들이 이를 받들어 직사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잘 되오리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자에 보면 재변이 없는 해가 없는데, 이제 또 가뭄이 심하니 실로 내가 부덕하기 때문이다. 함경도의 구황(救荒)을 어찌면 좋겠는가?”

하였다. 송일이 아뢰기를,

“이제 농사일이 한창이니, 만약 수운(輸運)으로 인해 농사를 폐하게 되면 남·북도가 다 같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신이 ‘정지하였다가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자.’고 의논드렸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함경도 백성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백성들의 폐농(廢農)을 고려하여 앉아서 굶어죽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남방의 곡식은 갑자기 운반할 수 없으니, 급히 경창곡(京倉穀) 7~8천 석을 풀어 농사짓지 않는 백성으로 때맞추어 수운하여 구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진휼(賑恤)의 일을 실로 늦출 수 없으니, 만약 오늘 진휼하지 못하면 내일 죽게 된다. 곡식을 운반하는 일은 남·북이 모두 실농(失農)할까 몹시 염려하였기 때문에 정승의 의논을 좇아 정지하였으나, 농사짓지 않는 사람으로 운반한다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또 구황의 일은 현저히 나타나 보기가 쉬운

咸鏡道救荒，何以則可？”宋軼曰：“今農務方殷，若因轉輸廢農，則南北俱困，故臣議請停之，以待秋成矣。今而更思，則咸鏡之民，至於餓死，何顧民之廢農，坐而見其餓死乎？南方之穀，則不可卒轉也，急發京倉穀七八千石，以民之不干農事者，及時運轉，救活何如？”傳曰：“賑恤之事，誠不可緩也。若今日未及賑之，則明日死矣。運米事，深慮南北皆失其業，故從政丞之議，停之耳。若以不干農作之人運之，則不亦可乎？且救荒之事，著而易見耳，弭災之道，隱而難知，朝廷百官，其於應災之道，可不以實乎？”【畿甸旱荒，咸鏡饑饉。上避殿減膳，至二十二日，乃雨。咸鏡道北青等處八邑，荒饑尤甚，有賣子鬻妻者。野有死人，輒取其肉，以充其飢，未幾亦死。有一女，其母老且盲，扶携丐食，度不得兩全，携上一嶺，令暫休息，女則痛哭而返，其母顛仆崖谷而死。聞者惻嗟。】

	<p>데, 재앙을 그치게 하는 도는 은미하며 알기가 어려우니, 조정 백관은 재변에 응하는 도를 성실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p> <p>하였다. 【경기도는 한재가, 함경도는 기근이 들었는데, 상이 피전 감선(避殿減膳)한 지 23일 만에 비가 내렸다. 함경도 북청(北靑) 등 8읍에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처자를 파는 자가 있으며, 들에 죽은 자가 있으면 그 고기를 먹어 굶주린 배를 채우다가 얼마 안 되어 그 역시 죽곤 하였다. 한 여인은 그 어미가 늙고 또한 눈이 멀었는데, 부축하고 다니면서 결식을 하다가 두 사람 다 온전하지 못할 줄 알고 그 어미를 고개 위에 끌고 올라가 거기서 잠깐 쉬게 한 다음에 그 여자는 통곡을 하면서 돌아왔고, 그 어미는 벼랑에 굴러 죽었는데, 이를 듣는 사람들이 측은히 여기었다.】</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14일(신사) 1번째기사</p>	<p>성희안이 의논드리기를,</p> <p>“함경도의 구황(救荒)을 느슨히 할 수 없습니다. 도에 곡식이 없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 그를 구제하는 방법은 다만 곡식을 수운하는 데 있습니다. 수운의 폐단은 노비(勞費)에 있으나, 이미 굶어 죽은 뒤에는 다시 살려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남도는 전에 풍년이 들었으니 그 백성은 곡식을 수운하는 데 부릴 수 있겠습니까만 농사일이 한창이라 짐바리가 왕래하면 제때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것이니, 실로 양전(兩全)의 계책이 아닙니다. 예부터 구황에는 권술(權術)을 썼습니다. 지금 남도 백성 중 포실한 자에게 얼마의 전결(田結)에 한하여 목면(木綿) 1필씩 내게 하여 그 전수를 호조에 수납하고, 호조에서는 바리당 태가(駄價)가 얼마라는 것을 약정한 다음에, 군자창의 곡식을 풀어 놓고, 혹은 사람을 모집하여 안변(安邊)에 수입하게 하고 혹은 결채인(結彩人)을 시켜 각각 1석씩 수송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동·서 양강(兩江)의 마부(馬夫)를 시켜 각각 2석씩 수송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시정 사람 3명씩</p>	<p>○辛巳/成希顏議：“咸鏡救荒，不可緩也。道無米穀，民方餓死，救活之策，只在輸運。輸運之弊，雖有勞費，已餓死之後，不可復生。南方在前豐稔，其民可役以輸米。但農務方劇，駄馬往來，廢業失時，固非兩全之計。自古荒政，當用權術，今宜令南民之有實者，限田若干結，出木綿一匹，總數輸納戶曹。戶曹酌定一駄馬價若干，發軍資穀食，或募人輸入于安邊，或令結彩人，各輸一石，或令東西兩江馬夫，各輸二石，或以市里人三人爲一駄，各輸一石，皆給價，俾無生怨。如留衛步軍，皆可役，各給木綿一匹，爲裹糧</p>

을 한 바리로 만들어 각각 1석씩 소송하게 하기도 하되, 모두 그 댓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지 않게 할 것이며, 유위(留衛)하는 보군(步軍) 같은 것은 모두 부릴 수 있으니, 각각 목면 1필씩을 주어 노자로 쓰게 하면 기뻐하여 부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속수무책으로 한 도의 백성을 다 죽게 하는 것보다는 어찌 잡다한 일을 일소하고 억지로라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남도 백성이 목면 납입하기를 기다리자면 늦어져 제때에 미치지 못하리니, 곧 해조(該曹)로 하여금 사섬시(司贍寺)에 간직한 목면을 쓰게 하되, 그 수운하는 절목(節目)은 전운사(轉運使)와 함께 급히 작성해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송일·김응기·이손·장순손·임유겸·이맥이 의논드리기를,

“함경도 백성이 무수히 굶어죽으니 부득이 농업에 관계없이 사람으로 곡식을 수운하여 구제해야 되겠는데 그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정한 수가 있으니 6~7일 길의 험로를 발섭하여 곡식을 운반함에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폐단을 논하여 중지할 수 없는 것이니, 병조로 하여금 당번 보병(當番步兵)·유위(留衛) 전수와, 기병(騎兵)으로 숙위(宿衛)하는 자를 제외하고 경기·황해·강원도 등의 당령 수군(當領水軍)에서 요량해 뽑아서 계획을 짜고 서계(書啓)한 뒤에 경창미를 풀어 기병은 매인당 20두씩 맡기고 보군은 매인당 10두씩 맡기되, 전운청(轉運廳)의 낭관(郎官)이나 부장(部將)이 인솔하여 오는 6월 초순에 안변부(安邊府)에서 두량하여 교부하게 할 것이며, 황해도와 강원도는 번을 서는 수군이 경창으로 올라오려면 폐단이 있으리니, 각각 그 머물러 지키고 있는 포소(浦所) 근처 고을에 있는 군자미를 두량해 나누어 맡기되 차사원(差使員)이 인솔하여 역시 안변부에 교부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之資，悅而使之似便。 與其束手無策，使一道民生，死亡殆盡，曷若掃除雜故，勉強而行之乎？ 且必待商民所納木絲，則緩不及事，卽令該曹，用司贍寺所藏木絲，其輸運節目，同轉運使，作急磨鍊施行。” 宋軼、金應箕、李蓀、張順孫、任由謙、李陌議：“咸鏡之民，餓死者數多，不得已以不干農作者，輸穀救活，其不事農業之人有數，六七日程途，涉險運米，豈無其弊？ 然此事不可論弊而止之。 令兵曹當番步兵，留衛全數，騎兵宿衛外，量抄京畿、黃海、江原等道，當領水軍，劃卽書啓後，發京倉米，騎兵則人授二十斗，步軍則人授十斗，轉運廳郎官部將押領，來六月初旬前，安邊府斗量交付。 黃海道、江原道立番水軍，京倉上來有弊，各其留防浦所近官所在軍資米，斗量分授，差使員押領同府交付何如？” 上從軼等議。

	하니, 상이 송일 등의 의논을 좇았다.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15일(임오) 2번째기사 피전 감선하다	피전 감선(避殿減膳)하였으니, 함경도의 기근과 경기의 한재 때문이다.	○避殿、減膳，以咸鏡饑、京圻旱也。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18일(을유) 1번째기사	<p>희수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9년 동안 농사 지으면 3년 먹을 양식이 남고, 3년 동안 농사 지으면 1년 먹을 양식이 남았습니다. 이제 북도가 한 해 가뭄을 당했는데 백성이 이처럼 굶어 죽으니 이제 곡식을 운반하여 구제하고자 한들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상께서 이처럼 진념하시니 대신들도 진실로 힘을 다해 조치해야 마땅합니다. 군(軍)을 뽑아서 쌀을 운반하고자 하나, 양식을 준비하여 운반할 동안 어찌 구제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조정의 녹을 먹는 사대부는 공경(公卿)에서부터 백집사(百執事)에 이르기까지 다 쌀을 운반하게 한다면 거의 구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경림이 아뢰기를, “백관의 품계에 따라 쌀을 운반하는 것은 옛날에도 하지 못하였던 일인데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희수가 아뢰기를, “경창의 곡식은 국용(國用)으로 비축한 것입니다. 지금 경창의 쌀을 운반한다고 하나, 다음에 무엇으로 대충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편 들건대 경창의 곡식이 모두 진토(塵土)가 섞였다고 하니, 경기가 계속 가문다면 무엇으로 구제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바가 몹시 타당하다. 경기가 재변을 당하면 또한 장차 무엇으로 구제하</p>	<p>希壽曰：“古者九年耕，餘三年之食，三年耕，餘一年之食。今者北道一年遇旱，民之餓死者如此，今欲運米賑恤，其何能及？上意軫念至此，大臣固當盡力措置。欲簽軍運米，備糧運轉之際，何能及事？臣意以爲，朝中食祿士大夫，上自公卿，下至百執事，皆令運米，則庶可以及賑矣。”景霖曰：“百官從品運米，雖昔時所不爲事，今可爲之。”希壽曰：“京倉穀食，備國用也。今者轉運京倉之米，不知終何以充數？廁聞京倉穀食，皆塵土相雜，京畿若連旱，則何以賑之？”上曰：“所言甚當，京畿遇災，亦將何以爲之？咸鏡道救荒事，轉運使、兵曹豈偶然計之？”同知事張順孫曰：“京倉穀食，在祖宗朝，五萬餘石，而成宗朝四萬餘石加入庫。今則功臣數多，別賜田所費太多，故無以補軍資。”特進官李長坤</p>

	<p>겠는가? 함경도 구황의 일을 전운사와 병조가 어찌 우연히 계획하였겠는가!”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경창 곡식이 조종조에는 5만여 석, 성종조(成宗朝)에는 4만여 석이 더 입고(入庫)되었는데, 지금은 공신의 수효가 많아 별사전(別賜田)의 소비가 많기 때문에 군자(軍資)를 보충하지 못합니다.”</p> <p>하고, 특진관(特進官) 이장곤(李長坤)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평안도에 입거(入居)한 사람을 그들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방면하는 것은 부당하나, 조그마한 죄로 입거한 자는 곡식을 들고 속죄하기를 허락하여 방면함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영사(領事)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대간이 아뢴 구수영·고안정 등의 일을 따르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p>	<p>曰：“臣觀平安道入居人，雖不當以其上言放之，然犯微罪入居者，許令入穀贖罪，放之何如？”領事金應箕曰：“請從臺諫所啓，具壽永、高安正等事。”上不答。</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18일(을유) 4번째기사</p>	<p>송일(宋軼)·김응기·홍경주(洪景舟)·장순손·임유겸(任由謙)·이맥(李陌)이 의논드렸다.</p> <p>“함경도 인민의 기아가 너무 심하니 백관으로 하여금 품종을 내어 운반하여 구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남 7읍(邑)으로 온 나라가 소요하는 것은 대체가 온편치 못하나, 다른 묘책이 없으면 이를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운사 종사관 윤세림(尹世霖)이 아뢰기를 ‘6월 초에 이미 경상·강원도 등으로 하여금 조선(漕船) 73척으로 실어 들이게 하였다.’ 하니, 그 실어 들인 수량이 대개 6천여 석에 밀돌지 않을 것입니다. 금월 20일 내에 종사관 윤세림</p>	<p>○宋軼、金應箕、洪景舟、張順孫、任由謙、李陌議：“咸鏡道人民飢餓太甚，使百官出品從輸穀，救恤似當。但以南道七邑，舉國(輕)〔經〕擾，大體未便。若無他策，不暇顧此。今者轉運使從事官尹世霖啓曰：‘六月初，已令慶尙、江原等道，漕船七十三隻輸入矣，其輸入數，大概不下六千餘石。’今月二十日內，分遣從事官尹世</p>

	과 김세우(金世瑀)를 양도에 나눠 보내서 오는 6월 보름께 곧바로 길주 이남의 기근이 든 각 고을에 운반하여 차차 구제하도록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霖、金世瑀于兩道，來六月望時，直輸吉州以南飢饉各官，次次賑救宜當。”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19일(병술) 5번째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비록 피전 감선(避殿減膳)할 때를 당하여서도 조참(朝參)을 받았던 전례가 있는데, 명일의 조계(朝啓)를 어떻게 하리까? 또 성종조 임인년의 전례를 상고하면, 피전(避殿)할 때에도 조계를 들었는데, 산선(緘扇) 및 육조 낭관(六曹郎官)과 군사를 제외하고 당상관과 경연관만 참여하여 듣게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일 조계할 때 정부·육조·대간·홍문관·승정원 등이 입참하라.” 하였다.	○政院啓曰：“雖當避殿減膳之時，受朝參，有前例。明日朝啓，將何以爲之？且考成宗朝壬寅年例，則雖避殿時，亦聽朝啓，除緘扇及六曹郎官與軍士，只令堂上官與經筵官參聽。”上曰：“明日朝啓時，政府、六曹、臺諫、弘文館、承政院等入參。”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24일(신묘) 1번째기사 정원이 정전으로의 환어를 청하다	정원이 전교하기를, “지금 비가 이미 흡족히 내렸으며, 함경도가 비록 기근이 들었으나 양맥(兩麥)은 이미 성숙하였으니, 정전(正殿)으로 환어(還御)하소서. 어찌 가을을 기다리겠습니까! 빨리 정전에 나아가서 선찬(膳饌)을 회복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가 흡족히 내렸으나 얼른 정전으로 돌아가기는 몹시 미안하다. 팔도에 하서(下書)하여 비가 두루 흡족히 내렸는지, 밀보리가 익었는지, 벼는 어찌 되어 가는지를 물으라.” 하였다.	○辛卯/政院啓曰：“今雨澤，既已周足，咸鏡道雖飢饉，兩麥已熟，復正殿，可待秋成？請亟御正殿復膳。”傳曰：“雨澤雖足，遽復正殿，予甚未安。其下書于八道，問雨澤周足，兩麥成熟，禾稼形止。”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6월 6일(계묘) 1번째기사	함경도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여 이르기를, “지금 어사의 아뢰는 말을 들으니, 도내의 기근이 너무 심하다고 한다. 경은 각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순행하여 구제하게 하되 불시로 적간하여 엄히 규찰할 것이며, 만약 백성이 굶어 죽음을 보면서도 구제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포폄(褒貶)4702) 때를 기다리지 말고 장계하여 과직하라. 만약 검거하지	○癸卯/下書于咸鏡道觀察使曰：今聞御史所啓之言，道內饑荒太甚，卿其令各官守令，親巡救荒，不時摘奸，嚴加糾察。如有視民飢死而不救者，不待褒貶，狀啓罷黜。如不能檢舉，則卿亦不饒。

	<p>못하면 역시 용서하지 않으리라.”</p> <p>하고, 또 정부(政府)·진휼청(賑恤廳)·전운청(轉運廳) 및 호조(戶曹) 등에 전교하기를,</p> <p>“어사의 아뢰는 말이 이와 같으니, 경차관 한 사람만 보내서는 미처 구제하지 못할 것 같다. 더 보내어서 조치할 방법이 있겠는가?” 하였다.</p>	<p>又傳于政府、賑恤廳、轉運廳及戶曹等曰：“御史所啓之言如是，只遣一敬差官，似不及救荒。其有加措置之策乎？”</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6월 6일(계묘) 3번째기사 전부 등을 불러 함경도 구황의 계책을 논의하다</p>	<p>정부, 부원군, 육조 판서, 호조와 진휼청의 당상, 한성부, 판윤을 불러 함경도 구황(救荒)의 계책을 의논하고 아울러 김양언(金良彦)의 일을 의논하였는데, 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 유순(柳洵)·좌의정 송일(宋軼)·우의정 정광필(鄭光弼)·영중추부사 김응기(金應箕)·병조 판서 신윤무(辛允武)·공조 판서 정광세(鄭光世)·형조 판서 홍숙(洪淑)·호조 판서 장순손(張順孫)·참의(參議) 이맥(李陌) 등이 의논드리기를,</p> <p>“지난해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안변(安邊)에 수입(輸入)한 곡식이 거의 1만 2~3천여 석에 달하는데, 작은 배로만 실어 나르기 때문에 수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미처 수입하지 못한 곡식 2천~3천여 석은 안변·덕원(德源)의 군자(軍資) 5천석과 아울러 현명한 경차관으로 하여금 수륙(水陸) 양로로 차차 운송하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 도(道)의 곡식은 수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폐가 적지 않으니, 경차관 한 사람을 더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도를 나누어 구제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p> <p>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p>	<p>○命召政府、府院君、六曹判書、戶曹·賑恤廳堂上、漢城府判尹、議咸鏡道救荒之策，并議金良彦事。文城府院君柳洵、左議政宋軼、右議政鄭光弼、領中樞府事金應箕、兵曹判書辛允武、工曹判書鄭光世、刑曹判書洪淑、戶曹判書張順孫、參議李陌等議啓曰：“自前年秋，至今年春，所輸入安邊穀數，幾至一萬二三千餘石。但以小船載運，故未易輸入。且未及輸入之穀二三千餘石，併安邊、德源軍資五千石，使賢明敬差官，水陸次次運送，則猶可及救也。若遠道之穀，非徒輸入爲難，其弊不少。若命加出敬差官一人，使之分道救荒，則庶可也。”鄭光弼曰：“鏡城以北，則貢進生文魚，其運輸者，非盡男丁，或女子</p>

“경성(鏡城) 이북은 생문어(生文魚)를 공진(貢進)할 때 운반하는 자가 다 남정(男丁)이 아니라, 혹은 여자가 배로 운반하여 그 폐가 적지 않으니, 지금부터 8월까지 우선 정지하소서. 이 도의 구황하는 일에 대한 조치는 과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집의 기근도 마음 아픈 일인데 하물며 한 도가 다 기근이 들에랴! 애초부터 조치하였더라면 이처럼 극심한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조정의 여러 의견에도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였으나, 나 역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구황하고자 할진대, 아된 바와 같이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곡식을 운반하는 것은 사람이니, 좋은 사람을 얻도록 하라. 이 도는 나라의 북문(北門)으로 호지(胡地)가 가까우니, 저들이 만약 우리 나라의 기근을 알고 틈을 탄다면 그 환난이 적지 않으리라. 문어는 비록 진상에 관계되는 것이나 어찌 그 폐단을 생각하지 않으랴!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유순(柳洵) 등이 사복 정(司僕正) 윤희인(尹希仁)을 경차관으로 삼기를 청하매, 이를 허락하였다. 유순·송일·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김양언의 사간(事干)4705) 이 죄 없이 형을 입었으니 애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시추(時推)4706) 로 조율(照律)4707) 할 수 있지만, 장오(贓汚)4708) 는 큰 죄이니 한두 사람이 형을 받더라도 끝까지 추문하여 그 실정을 밝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에 따랐다.

以反車柁運，其弊不小。請自今限八月姑罷之。此道救荒之事，措置果難。”上曰：“一戶飢饉，已爲可痛，況合一道飢餓乎？若自初措置，則不至已甚。今朝廷僉議，而未得其宜，予亦未知何如而可也。若欲救荒，不得不如所啓矣。然輸運在人，須得善人。此道國之北門也，而切近胡地，彼若知我國飢荒而乘釁，則其患不細。文魚雖關進上，安可不計其弊也？其姑罷之。”柳洵等請以司僕正尹希仁，爲敬差官，許之。柳洵、宋軼、鄭光弼議啓曰：“金良彥事干，無罪而被刑，可謂曖昧。然小罪則或可以時推照律，贓汚大罪，雖一二事干受刑，不可不窮推得情也。”上從之。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7월 28일(갑오) 1번째기사 수상의 졸에 소선을 올리라 명하다</p>	<p>상이 수상(首相)이 졸(卒)하였으므로, 소선(素膳)을 올리라 하였었는데, 정원이 육선(肉膳)으로 회복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p>	<p>○甲午/上以首相卒，命進素膳。 政院請復肉膳，不允。</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8월 1일(병신) 1 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졸(卒)한 영의정 성희안에 대한 정조시(停朝市)의 기한은 오늘로 끝나는데, 내일 석전제(釋奠祭)의 음복 때 정부·육조가 으레 참여하는 법이나, 수상의 초상에 음복은 미안한 일이니, 의정부와 육조는 참여하지 말게 하고 제관만 음복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정원이 아뢰기를, “예조가 대신의 졸(卒)로 인해 음복 정지하기를 청하니 인정으로 보아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석전제의 음복은 연음(宴飲)의 예가 아니요 신(神)의 은혜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음복이 정조시 3일 안에 들었다면 혹 거론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정조시가 이미 끝난 음악과 형륙(刑戮) 등의 일을 다 거행하는 터이니, 음복레만을 권폐(權廢)4725)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변동하게 되면 곧 관례가 되니, 예를 변동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널리 조정의 의논을 모으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丙申朔禮曹啓曰：“卒領議政成希顏停朝之限，則盡於今日，明日釋奠祭飲福時，議政府、六曹例當進參。然首相初卒，飲福未安。議政府、六曹則勿令進參，只令祭官飲福何如？”政院啓曰：“禮曹爲大臣卒，而請停飲福，於情可矣。然釋奠飲福，非宴飲例，以神惠爲重也。若飲福，在停朝三日之內，則猶或可議，今則停朝市已過，音樂刑戮等事，亦皆舉行，飲福之禮，獨不可權廢也。一變其禮，則仍成例事，變禮之事非輕。請須博採朝議。”傳曰：“其收議于政府及府院君、六曹判書以上、漢城府判尹。”</p>

	<p>“정부 및 부원군·육조 판서 이상과 한성부 판윤에게 수의하라.” 하였다.</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8월 2일(정유) 1 번째기사</p>	<p>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p> <p>“무릇 길제(吉祭)4726) 에 음복을 하는 것은 신(神)의 은혜를 머물러 두려는 것이 아니니 제관만 참여할지라도 족합니다. 석전 뒤에 제관이 이미 음복하고 나서 또 정부·육조로 하여금 음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문(斯文)을 중시하는 특별한 성전(盛典)으로 생각되나, 고례(古例)에도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희안은 원훈 대신(元勳大臣)이므로, 그가 졸하매 대신들이 그 집에 모여 겨우 염빈(斂殯)을 끝냈는데, 이튿날 음복연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이 차마 못할 일입니다. 지금 정부·육조의 음복을 그만둔들 무엇이 옳지 않겠습니까!”</p> <p>하고, 송일·이손·박열이 의논드리기를,</p> <p>“음복은 생각건대 변동할 수 없는 예법이 아닌 듯합니다. 조종조에서도 대신이 졸하면 비록 강무(講武) 중에도 정지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으니 어찌 뜻이 없었겠습니까! 예란 인정을 말미암는 것이라 임시 변동한 적도 간혹있었습니다.”</p> <p>하고,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p> <p>“종묘 사직을 제사함에는 정부·육조의 음복례가 없는데 유독 석전에만 있는 것은 본조에서 사문을 중시하는 별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연음(宴飲)의 예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상의 초상에 온 조정이 성대히 모여 마음 놓고</p>	<p>○丁酉/柳洵議：“凡吉祭有飲福，是不欲留神惠也，雖祭官獨參足矣。釋奠後，祭官既行飲福，又令政府、六曹行之，疑是我朝，重斯文別例盛典也。未知古例，亦有之否。希顏元勳大臣。其卒也，大臣會其家，見殯歛纔畢，翌日進參飲福宴，不忍於情。今停政府、六曹飲福，有何不可？”宋軼、李蓀、朴說議：“飲福恐非經常不可易之禮。祖宗朝大臣卒，雖在講武之中，或停而還宮，豈無意耶？禮緣人情而權變者，容或有之。”鄭光弼議：“祀宗廟社稷，無政府、六曹飲福禮，而獨於釋奠有之，意本朝重斯文別例也。雖非宴飲之例，首相初卒，舉朝盛會，放意飲酒，情甚未安，故曾與禮官議之，廢釋奠飲福。豈是廢古禮也？”盧公弼、尹珣、鄭光世、張順孫、金詮、姜渾議：“凡大臣卒，停朝日數，定爲法制。如有朝廷大禮，不得已之舉，在停朝已盡之後，則固不可廢也。釋奠後飲福，亦是大禮，且非宴樂，停朝已盡，恐不可廢禮。臣意</p>

술을 마시는 것은 인정에 몹시 미안합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예관과 의논하여 석전제의 음복을 폐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고례를 폐하는 일이겠습니까!”

하고, 노공필·윤순·정광세·장순손·김전·강훈이 의논드리기를,

“대신이 졸하였을 적에 정조하는 일수는 법제에 정해 있으니 만약 조정의 대례(大禮)로서 부득이 거행할 일이 정조시가 이미 끝난 뒤에 있다면 진실로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석전제 뒤의 음복은 역시 대례요 또한 연락(宴樂)이 아닙니다. 정조(停朝)도 이미 끝났으니 예를 폐할 수 없는 것이라, 신의 생각이 이와 같으므로 어제 희안의 집에 가 예조가 아뢴 말을 듣고 옳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고, 홍경주가 의논드리기를,

“수상의 상사는 나라의 큰 연고입니다. 정조가 끝난 이튿날 바로 음복례를 행하는 것이 인정에 미안하기 때문에 예조가 예관만 음복하게 하고 정부·육조는 참회(參會)하지 말게 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인정으로 보아 임시로 폐하는 것이지 관례를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복은 예회(禮會)이니 정조가 이미 끝난 뒤에는 그 예회를 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경중(輕重)하는 뜻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유순 등의 의논을 따르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의논을 보건대 그 의논이 일치하지 않는다. 원훈 대신의 죽음에 대신이

如是，故昨往希顏家，聞禮曹所啓，不以爲然。” 洪景舟議：“首相之卒，國之大故也。 停朝之翼日，卽行飲福之禮，於情未安，故禮曹請只使祭官飲福，而政府、六曹，則勿令參會。 是緣情而權廢，非以爲恒例之事也。 若謂飲福禮會也，不可以停朝已盡之後，而廢其禮會，則自有輕重之意。” 上從柳洵等議。 仍傳于政院曰：“今觀議得，議論不一。 元勳大臣之卒，大臣不可會飲，此言當矣。 釋奠後祭官飲福，則不可謂留神惠也。 此特權宜，不必爲恒例也。” 遣左副承旨趙元紀，弔成希顏家。

	<p>회음(會飲)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온당한 말이다. 석전 후에 제관이라도 음복하면 신(神)의 은혜를 유체(留滯)했다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특별히 임시적 방편이니 반드시 관례를 삼을 것은 아니다.”</p> <p>하고, 좌부승지(左副承旨) 조원기(趙元紀)를 보내어 성희안의 집에 문상하였다.</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8월 8일(계묘) 1 번째기사</p>	<p>시강관(侍講官) 한효원(韓效元)이 아뢰기를,</p> <p>“신이 전에 함경도 각관을 보건대, 군자(軍資)만 있고 별창(別倉)이 없으니 금년 공적(公糴)을 수납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군량은 폐할 수 없는 것이라, 부득이하여 거둬들이더라도, 일정한 숫자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 혜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그 도는 식염(食鹽)이 가장 귀한데 각관 역시 동이 나서 바닷물을 길어다 마시며, 바닷물로 잇기가 어려운 곳은 해채(海菜)를 달여서 먹고 있습니다. 만약 소금이 있으면 비록 곡식이 없더라도 나물에다 섞어 먹어 연명할 수 있으므로, 신이 일찍이 염분(鹽盆)을 설치하여 소금을 구으려 하였으나 시목(柴木)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염분을 많이 설치하고 산직(山直)을 정하여 벌목(伐木)을 금하게 하면 몇 해 안 가서 반드시 그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도는 철물(鐵物)이 귀한 데다가 요즈음 흉년으로 인해 불리지 못하였으므로, 그 농기(農器) 및 창문에 꾸민 쇠붙이를 다 관(官)에 바치니, 더욱 고초를 받습니다. 만약 각관에 저축한 철물이 수년을 지탱할 수 있다면 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p> <p>하였다.</p>	<p>侍講官韓效元曰：“臣往見咸鏡道各官，徒有軍資，而無別倉。今年公糴，恐未可收納也，軍糧不可廢也。雖不得已收之，然不可如其常數，令該曹磨鍊何如？且其道食鹽最貴，而各官亦乏，汲海水而飲。海水難繼處，則燒海菜而食之矣。若有鹽，則雖無穀，與〔采〕〔菜〕和食而〔連〕〔延〕命，不至於遽死。臣曾欲設鹽盆煮取，而無柴木未果矣。令該司磨鍊，多設鹽盆，定山直禁伐木，則不過數年，必有所資矣。且其道鐵物稀貴，故近因凶荒，未能吹鍊，而其農器及窓戶粧鐵，盡納于官，亦甚苦之。若各官所儲之鐵，可支數年，則減之可也。”</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8월 10일(을사)</p>	<p>야대(夜對)에 나아갔다. 시독관 유관(柳灌)이 아뢰기를,</p> <p>“신이 경기 도사(京畿都事)가 되었을 때 보건대 백성이 피폐한 것이 모두 진</p>	<p>○御夜對。侍讀官柳灌曰：“臣爲京畿都事時見之，百姓疲弊，此由進上多重故也。沿邊則魚物，山郡則陸物，皆</p>

<p>5번째기사</p>	<p>상(進上)이 과중한 때문이었습니다. 연변은 어물(魚物), 산군(山郡)은 육물(陸物)로 하여 모두 전결(田結)에 의해 분정하였는데, 승어 같은 것은 모두 척촌(尺寸)으로 재어 들이기 때문에 그 값이 배나 많고, 산 노루[生獐] 한 마리 값이 역시 목면 7~8필에 이르므로, 백성이 심한 고초를 받습니다. 손순효(孫舜孝)가 경기 감사가 되었을 때 ‘임금을 어버이처럼 섬긴다.’ 하여 비로소 일차 진상(日次進上)의 법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성종 때 이를 재감(裁減)하려 하였으나 사송(賜送)할 곳이 많아 재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쓰는 곳이 많지 않으니 일차 진상을 재감하여 민력을 휴식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였다.</p>	<p>以田結分定，而如秀魚，則皆以尺寸量納，故其價倍重，生獐一口之價，亦幾至於木絲七八匹，民甚苦之。孫舜孝爲京畿監司時曰：‘事君如事親。’始定日次之法，故如此其有弊也。成宗朝欲除之，而賜送處多，未能除也。今則用處不多，裁減日次進上，使民力休息何如?”</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8월 29일(갑자) 3번째기사 궐정에서 잔치를 베풀다</p>	<p>궐정(闕庭)에서 종재(宗宰)4747)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승지(承旨)·주서(注書)·사관(史官)·입직제장(入直諸將)·병조(兵曹)·도총부 당상(都摠府堂上)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1등 주악(酒樂)을 하사하였다.</p>	<p>○宴宗宰、臺諫、弘文館、承旨、注書、史官、入直諸將、兵曹、都摠府堂 [上]，上箋于闕庭，賜酒樂一等。</p>
<p>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9월 26일(신묘)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지난해 사냥의 일을 이미 정했는데 재변으로 인해 사냥을 행하지 못하였다. 위로는 천금(薦禽)4770) 을 하는 것이요, 아래로는 열무(閱武)4771) 를 하는 것이니 행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행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적시이니, 동교(東郊)나 서교(西郊)에서 관가(觀稼)4772) 및 사냥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 정승에게 물어 아뢰어라.” 하매, 좌의정 송일이 아뢰기를, “근래 흉년이 계속되어 근도가 피폐하니 강무(講武)는 불가하나, 사냥은 조종</p>	<p>○傳曰：“前年打圍事已定，而因災變，不行打圍。上以薦禽，下以閱武，不可不爲也。若欲行之，則今其時也，東西郊觀稼及打圍便否，問于政丞以啓。”左議政宋軼曰：“近來凶歉相仍，近道疲弊，講武則不可。如打圍，則祖宗亦爲薦禽而行之，不當廢也。臣常以爲展謁諸陵已畢，新顯陵卽當往拜。而會因有事，遷延未行，今拜顯</p>

	<p>께서도 천금을 위해 행하였으니 폐해서는 안 됩니다. 신은 항상 ‘모든 능(陵)의 전알(展謁)이 이미 끝났으니 새 현릉(顯陵)에도 곧 가서 참배해야 할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일이 있어 지체되었으니, 이제 현릉을 전알한 뒤 사냥하심이 어떠하리까?”</p> <p>하고, 우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금년 농사가 풍년들지 못하였으나, 사냥은 천금을 위함이니 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과 서에 교량을 만들려면 민폐가 있을 듯하니, 신의 생각에는 사냥을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배릉(拜陵)을 의당 먼저해야 하는데 과연 일이 많아서 지체하였다. 신 현릉을 배알하면 구현릉(舊顯陵)과 건원릉(健元陵)을 배알하지 않을 수 없으니, 택일하여 아뢰어라.”</p> <p>하였다.</p>	<p>陵後，卽打圍何如？”右議政鄭光弼曰：“今年農事，不至大有。然打圍所以爲薦禽，不可廢也。然治橋梁於東西，則恐有民弊，臣意以爲，止打圍一面或一圍，或再圍何如？”傳曰：“拜陵當先，而果因多事遷延。若拜新顯陵，則舊顯陵、健元陵，不可不拜，其擇日以啓。”</p>
<p>중종 19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0월 19일(계축) 2번째기사 천변이 있어 계속 술을 금하게 하다</p>	<p>전교하기를, “근래에 술을 금하는 법을 시행한 지 8년이 되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봄이면 금하였다가 여름이면 과하였다. 지금 술을 금하기는 하나 어리석은 백성이 법을 범하므로 도리어 폐단이 있으니, 조종조의 일에 따라 금지를 과하는 것이 어떠한가?”</p> <p>하매, 승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천변(天變)이 있는데, 곧 금지를 과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합니다.”</p> <p>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p>	<p>○傳曰：“近來設酒禁，已八年矣。祖宗朝春則禁，夏則罷。今雖禁酒，愚民觸法，反有其弊。依祖宗朝罷禁何如？”政院啓曰：“今有天變，卽罷禁未便。”上從之。</p>
<p>중종 19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0월 20일(갑인) 5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기를, “지난날에도 번개의 변괴가 있었으나 오늘과 같이 심하지는 않았으니, 내가 매우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늘이 위에서 진노(震怒)하는데 거만스</p>	<p>○傳于政院曰：“頃者有雷變，然不如今日之甚。予甚恐懼，罔知攸措。天震怒於上，而不可踞坐聽講，故停夕講。大抵人事失於下，則天變應於上。有天變，而下不能思所以答天譴</p>

하늘의 재변이 심하여
임금이 피전 감선하기
로 하다

레 앉아서 진강(進講)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석강(夕講)을 정지하였다. 대저 아래에서 인사(人事)가 잘못되면 위에서 천변(天變)이 응하는 것인데, 아랫사람이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할 도리를 생각하지 못하면 재변을 그치게 하지 못한다.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이므로 이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니, 사람이 화평하면 천지의 기(氣)도 화평해진다. 그러므로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형은 형, 아우는 아우로서의 각기 그 도(道)가 있어서, 그 도를 다하면 천지가 화평해질 것이다. 내가 선하지 못하여 임금된 도리를 잃어 재변이 생기게 된 것이고, 여러 신하들이 재변에 관한 말은 하더라도 한 가지 일을 드러내서 폐를 구제하지 못하니, 이는 신하의 도를 잃은 것이다. 풍속을 보면, 요사이 불효(不孝)하는 자식이 있고, 또 형제간에 종하나, 밭 하나를 다투어 송사하는 자가 많으니, 이는 부자나 형제가 각각 그 도를 잃은 것이다. 감선 피전(減膳避殿)4822) 과 같은 것은 형식인 듯하나 행하려 한다. 또,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 재변을 그치게 할 도리를 강구하고자 하는데, 정원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매, 정원이 회계(回啓)하기를,

“오늘의 재변은 신 등도 매우 놀랍습니다. 상께서 힘써 행하시려는 뜻을 외신(外臣)은 알지 못할지라도, 신 등은 시종(侍從)의 반열에 있으니 어찌 알지 못하리까! 지금 전지(傳旨)를 보니, 감격되어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이 후설(喉舌)4823) 의 자리에 있어 왕명의 출납을 착실히 하는 것이 직분인데도 신 등은 모두 변변치 못하니, 하늘의 재변이 또한 신들 때문인가 합니다. 대저 옛사람들이 나라 다스리는 근본을 임금의 한 몸에 돌려, 몸을 바로잡음으로써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음으로써 백관(百官)을 바로잡았으니, 책임이 임금과 대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하(殿下)께서 제가(齊家)하시는

之道，則災不能弭矣。天人一理，吾心即天之心也。人和則天地之氣亦和，故君君臣臣，父父子子，兄兄弟弟，各有其道，能盡其道，則天地和矣。予以不穀，失爲君之道，致災變之來。群臣雖以災變爲言，而不能建一事救弊，是失爲臣之道也。以風俗觀之，近者有不孝之子，又兄弟爭一奴一田，致訟者多，是父子兄弟，各失其道也。如減膳避殿，似乎文具，然欲行之。且欲訪群臣，講求弭災之道，於政院意何如?” 政院回啓曰：“今日之變，臣等亦甚駭愕。自上勵精之意，外臣雖不知之，臣等在侍從之列，豈不知之? 今觀傳旨，不勝感激。臣等居喉舌之地，以出納惟允爲職，而臣等皆無狀，恐天災亦由臣等矣。大抵古之人，以治國之本，歸之於人主之一身。正身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則其責在於人君與大臣耳。殿下齊家之事，臣等未知之也，當益嚴內治。古之大臣，國有大事，則雖在疾病之中，或上書言事，或扶持入闕，今則不然。國有大事，但見三公來議而已。其餘府院君等宰相，皆稱疾不至。豈以針灸微恙，辭國家之事乎? 今之百官，惰慢奉職，臣等每欲啓之，而非臺諫未果。上既嚴內治，而百官亦勤謹奉職，則似可矣。上教延訪群臣，講求弭災之道甚

	<p>일을 신 등은 알 수 없습시다마는 마땅히 더욱 내정(內政) 다스리시기를 엄하게 하셔야 합니다. 옛 대신은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병중이라도 글을 올려 일을 말하기도 하고 부축받으며 입궐(入闕)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삼공(三公)만 와서 의논하는 것이 보일 뿐이요 그 나머지 부원군(府院君) 등 재상(宰相)은 모두 아프다는 핑계로 오지 아니하니, 어찌 침이나 맞고 뜸이나 뜯 하찮은 병 때문에 국가의 일을 회피할 수 있으리까! 지금 백관이 봉직(奉職)에 태만하므로 신 등이 매양 아뢰고 싶었으나 대간이 아니어서 하지 못하였는데, 성상께서 내정 다스리시를 엄하게 하시고, 백관들 또한 봉직에 삼가고 부지런히 하면 될 것입니다. 성상의 분부에, 신하들에게 연방(延訪)하여 재변을 그치게 할 도를 강구하라 하시니, 매우 지당합니다. 또 옛사람도 감선 철약(減膳徹樂)하여 실지로 응하였으니, 이 두 가지를 행하시면 안팎이 다 갖추게 되리이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내일부터 피전 감선하고, 또 의정부·육조의 참판 이상과, 한성부의 당상과, 부원군(府院君)·시종(侍從)·대간 등에게 연방하리라.”</p> <p>하였다.</p>	<p>當。且古人以減膳徹樂，而以實應之，則表裏兼該矣。” 上曰：“當自明日，避殿、減膳，又欲延訪議政府、六曹參判以上、漢城府堂上、府院君、侍從、臺諫等。”</p>
<p>중종 19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1월 7일(신미) 1번째기사</p>	<p>조강에 나아갔다. 사간(司諫) 이현보(李賢輔)가 아뢰기를,</p> <p>“군사(軍士)가 부실하고 군수(軍需)가 넉넉지 못한 것이 지금의 큰 문제입니다. 군사와 보인(保人) 4981의 액수(額數)는 《대전(大典)》에 실려 있지만, 그 수에 차는 것이 거의 없고, 그 중에 혹 액수를 채울 호(戶)가 있더라도 모두 과리하고 잔약해서 그 호수(戶首)를 받들기에 부족합니다. 군량도 부족해서 일읍(一邑)의 곡식이 수만 석 되는 곳이 별로 없는데, 그 민호(民戶)를 참</p>	<p>○辛未/御朝講。 司諫李賢輔曰：“軍士不實，軍需不裕，此當今之大憂也。凡軍士及保人額數，載在《大典》，而充數者無幾。其中雖有充額之戶，皆疲癯殘疾，而不足以奉其戶首。且軍糧不足，一邑之穀，有數萬石者無幾，</p>

	<p>작해서 계산하면 과반수가 부족한 셈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사(寺社)의 노비(奴婢)의 공포(貢布)와 어염세(魚鹽稅)를 마련해 바칠 수 없는 자는, 작미(作米)하여 대납(代納)하게 하여 군수(軍需)에 보충하도록 하소서. 옛사람이 이르기를 ‘먹을 것을 넉넉히 하고 군사를 넉넉히 하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이 평소에 진달하고자 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뢰는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먹을 것을 넉넉히 하고 군사를 넉넉하게 한다는 것은 과연 중대한 일이다. 해조(該曹)와 의논해서 처리하라.”</p> <p>하였다.</p>	<p>而以其民戶參計，則過半不足矣。 臣意寺社奴婢貢布及魚鹽稅， 未能備納者， 請作米代納， 以補軍需。 古人云： ‘足食足兵。’ 此臣之平日所願陳者也， 故啓之。” 上曰： “足食足兵， 事果重大。 當與該曹議處之。”</p>
<p>중종 19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1월 8일(임신) 1번째기사</p>	<p>조강에 나아갔다. ‘당(唐)나라 말기에 정사를 엄윤(嚴尹)4986) 이 좌우해서 세금 거두는 것만 가혹했을 뿐 아니라, 온갖 물품을 판매해서 백성의 이(利)를 남김없이 침탈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강관(侍講官)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식화(食貨)4987) 는 백성의 명맥인데, 차와 술, 소금과 철(鐵)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탈취하였으니, 망하지 않으려 한들 될 수 있으리까!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임금된 사람은 백성과 더불어 이(利)를 함께 하여 나라의 근본을 배양(培養)해야 하는 것입니다.”</p>	<p>○壬申/御朝講。 至唐之季世， 政出嚴尹， 不惟賦歛割剝， 復販鬻百物， 盡奪民利。 侍講官尹殷輔曰： “食貨民之命脈， 至如茶、酒、鹽、鐵， 皆盡奪取， 雖欲不亡， 其可得乎？ 民者， 邦之本， 爲人君者， 當與民同利， 以培植邦本。”</p>
<p>중종 19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2월 4일(무술) 1번째기사 날씨가 추워 승정원·홍문관·입직한 군사에게 술을 내리다</p>	<p>승정원과 홍문관에 선은(宣醞)과 감귤(柑橘)을 내리고, 또 입직(入直)한 군사에게도 술을 나누어 주었는데, 날씨가 춥기 때문이었다</p>	<p>○戊戌/賜宣醞及柑橘于承政院、弘文館。 又以酒， 分賜入直軍士， 以日寒也。</p>
<p>중종 19권, 8년(1513</p>	<p>주서(注書) 이정호(李挺豪)와 검열(檢閱) 박명손(朴命孫)을 동·서빙고(東西氷</p>	<p>○命分遣注書李挺豪、檢閱朴命孫于</p>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2월 9일(계묘) 3번째기사 이정호·박명손을 동·서 빙고에 보내어 얼음 저장 실태를 살피게 하다	庫)에 나누어 보내어 얼음 저장의 근태를 적간(摘奸)5016) 하게 하였다.	東、西氷庫，摘奸藏氷勤慢。
중종 19권, 8년(1513) 12월 12일(병오) 2번째기사	홍문관이 유자광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고 술을 하사하였다.	○弘文館啓柳子光事，不允。仍賜酒。
중종 19권, 8년(1513) 12월 14일(무신)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이손은 의득(議得)하여 말한 것이니, 그르다 할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 하매, 양사(兩司)가 또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고, 술을 하사하였다.	傳曰：“李蓀則議得所言，不須非之。餘皆不允。”兩司又啓，不允。因賜酒。
중종 19권, 8년(1513) 12월 19일(계축) 1번째기사	대간이 유자광·신한·최항·정막개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고 술을 하사하였다.	○癸丑/臺諫啓柳子光、申瀚、崔沆、鄭莫介等事，不允。仍賜酒。
중종 19권, 8년(1513) 12월 19일(계축) 3번째기사	좌찬성(左贊成) 이손이 대간의 논계로 인해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고 이어 술을 하사하였다.	○左贊成李蓀，仍臺諫論啓，辭其職，不許。仍賜酒。
중 19권, 8년(1513) 12월 20일(갑인)	상이 호(灑)의 뜻으로 조정에 물으라 명하고, 이어 선온(宣醞)5035) 하였다.	上命以灑意，問於朝廷，因宣醞。

4번째기사		
중종 19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2월 29일(계해) 1번째기사 윤목 던지는 놀이에서 범을 잡은 재상에게 술을 내리다	상이 사정전(思政殿) 처마 밑에 나아가 나례(儺禮)를 보고, 입시한 재상으로 하여금 윤목 던지는 놀이[擲輪木戲]를 하게 하여 범을 잡은 자에게 술을 하사하되 차등을 두었다.	○癸亥/上御思政殿簷下，觀儺。使入侍宰相，擲輪木戲，得虎者，賜酒有差。
중종 19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2월 30일(갑자) 1번째기사	상이 대비전(大妃殿)에 곡연(曲宴)을 드리고 인하여 승정원에 선은(宣醞)하였다.	○甲子/上進曲宴于大妃殿，因宣醞于承政院。
중종 19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월 6일(경오) 1 번째기사	시독관(侍讀官) 소세양(蘇世讓)이 아뢰기를, “자광의 일에 대해 그 공죄를 참작한다면 그 죄는 나라를 그르친 죄이니, 그 공이 그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공을 삭탈하고 멀리 귀양보냈는데, 이제 어찌 일개 대신의 그릇 아된 것을 가지고 다시 녹공하리까! 내농작은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무릇 비·잠·동·식(飛潛動植)5060) 을 모두 의식에 따라 진설(陳設)하는데, 이것으로 어찌 농사의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더구나 월식의 변을 당하여 어찌 하늘의 경계를 삼가지 않고 희완(戲玩)의 일을 하겠습니까!”	侍讀官蘇世讓曰：“子光事，若參酌功罪，則其罪乃誤國之罪也，其功不足以掩其罪，故既已削功遠竄。今豈可以一大臣謬啓，還錄其功乎？內農作，其弊不少。凡飛潛動植之類，皆儀設陳之，豈以此知稼穡之艱難乎？況當月食之變，豈可不謹天戒，而爲戲玩之事乎？”
중종 19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월 14일(무인) 4번째기사 내농작의 모든 기구를	내농작(內農作)의 모든 기구를 후원에 배설하였는데, 왼편은 경회지(慶會池) 북쪽 첫 섬돌로부터 북쪽 담장 소문(小門) 안까지 이르렀고, 오른편은 충순당(忠順堂) 앞 섬돌로부터 취로당(翠露堂) 앞까지 이르렀다. 모두 《빈풍(邠風)》 《칠월편(七月篇)》을 모방하여 오른편에는 주공(周公)이 《무일편(無逸篇)》 5081) 을 드리는 형상을 만들고, 왼편에는 주공이 《칠월편(七月篇)》을	○內農作諸具，排設於後苑。左邊自慶會池北邊初階，抵于北牆小門內，右邊自忠順堂前階，抵于翠露堂前，皆依倣《邠風七月》篇，而右則象周公進《無逸》之狀，左則象周公進《七月》

<p>후원에 배설하다. 승지·감조관 등에게 술을 내리다</p>	<p>드리는 형상을 만들었으며, 그 글씨를 써서 건 족자는 해태(海苔)로 종이를 만들고 빗나무 껍질로 조각하여 글자를 만들었으며, 기산(岐山) 사시의 경치를 만들었는데, 모든 기화(奇花)·이초(異草)·충어(蟲魚)·금수(禽獸)·인물(人物)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다. 상이 중사(中使)5082)에게 명하여 승지(承旨) 및 감조관(監造官) 등에게 선은(宣醢)하였다.</p>	<p>篇之狀。其所書簇子，以海衣爲紙，以樺皮鏤刻爲字。又象岐山四時山色，凡奇花異草、蟲、魚、禽、獸、人物，靡不備具。上命中使，宣醢于承旨及監造官等。</p>
<p>중종 19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월 16일(경진) 1번째기사</p>	<p>사신(史臣)은 논한다. 자광은 천얼(賤孽) 출신으로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고, 또 남이(南怡)의 난을 고변하여 공적(功籍)에 참여하여 승반(崇班)에 올랐으며, 친상(親喪)을 버리고 임금의 복을 입으려 하였는가 하면, 사사로이 복어(鰓魚)를 바쳐 잘 보였으니, 이 모두가 인정으로 하지 못할 일이거늘 자광은 스스로 좋은 계책이라 생각하였다.</p>	<p>【史臣曰：“子光起身賤孽，遂登科第，又告南怡之亂，得參功籍，獲躋崇班。(經) [徑] 釋親喪，欲服君服，又私獻鰓魚以媚之，皆人情所不敢爲者，子光自以爲得計。</p>
<p>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3월 10일(계유) 5번째기사</p>	<p>대마 도주(對馬島主) 종성순(宗盛順)이 경실(經實)을 보내어 토산물[壤奠]을 바쳤다.</p>	<p>○對馬島主宗盛順遣經實，來獻壤奠。</p>
<p>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3월 14일(정축) 1번째기사 대궐 안의 채소밭에 분뇨 쓰는 것을 금하게 하다</p>	<p>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영사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분뇨(糞尿)를 모아다 채소를 심기도 하고, 또 궐내에 조금이라도 빈 땅이 있으면 모두 경종(耕種)을 하니, 이는 지난날 공궐(空闕) 때에 하던 짓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궐정(闕庭)에는 모두 벽돌을 깔았거니와, 궐정에 비록 작은 공지가 있다 한들 어찌 경종을 할 것이며, 하물며 제향(祭享)하는 근처에는 더욱 부당한 일이니 일절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미처 알지 못하였다.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丁丑/御朝講。領事金應箕曰：“文昭殿切近處，聚糞種蔬。又闕內少有曠地，亦皆耕種，此曩者空闕時所爲，至今因循。中原闕庭，皆布之以磚。闕庭雖少有空曠，何可耕種？況祭享近處，尤不當也，請一切禁之。” 上曰：“予未及知之，其禁之。”</p>
<p>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p>	<p>이자화(李自華)가 ‘궐내의 채소밭이 15개처나 된다.’고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p>	<p>○李自華書啓闕內蔬田凡十五處，傳曰：“自前耕種，有何害焉？”</p>

<p>9년) 3월 14일(정축) 3번째기사 대궐 안의 15개 채소 밭을 그대로 두기로 하다</p>	<p>“전일부터 경종(耕種)하던 것이니, 어찌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p>	
<p>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4월 14일(정미) 1번째기사</p>	<p>밤 5경(更)에 문소전(文昭殿) 헌관(獻官) 익양군(益陽君) 이회(李懷)가 빈청(賓廳)에 나아가 아뢰기를, “대궐 안에서 입직(入直)하던 충의위(忠義衛) 홍택(洪澤)이 밤중에 갑자기 죽어서 신이 이미 범염(犯染)5200) 했으므로 아침 수라를 올리는 일이 미안하기 때문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밖에 있어서 재계(齋戒)하지 않은 자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범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대로 제사를 거행하여도 된다. 또 내일 기신제(忌晨齋)와 문묘제(文廟祭)를 지낼 것인지를 예관(禮官)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매, 예조가 아뢰기를, “충의위가 죽은 곳은 정전(正殿)에서 멀고 음식도 이미 익혀서 마련하였으니,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떠하리까? 문묘 별제(文廟別祭)는 물려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문소전 제사는 아뢴 대로 하고, 문묘 별제를 물려서 지내는 것은 삼공(三公)에게 물으라.” 하였다.</p>	<p>○丁未/夜五更， 文昭殿獻官益陽君懷詣賓廳啓曰：“殿內入直忠義衛洪澤，夜中暴死。 臣既犯染， 朝水刺進爵未安， 故敢取稟。” 傳曰：“在外不戒者， 參祭未當。 若不干， 則可仍行祭也。 且明日忌辰齋及文廟祭行否， 問于禮官以啓。” 禮曹啓曰：“忠義衛死處， 遠於正殿， 且物膳已熟設， 仍用之何如? 文廟別祭， 可退行也。” 傳曰：“文昭殿祭事， 依啓， 文廟別祭退行事， 其問于三公。”</p>
<p>중종 20권, 9년(1514)</p>	<p>윤대(輪對)를 들었다. 사도시 정(司禦寺正) 김송조(金崇祖)가 아뢰기를,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은 국사(國祀)5203) 인데, 먼 지방의 어리석은 백</p>	<p>○聽輪對。 司禦寺正金崇祖曰：“羅州錦城山， 乃國祀也。 荒裔愚民惑於巫覡， 每當春秋， 遠近男女， 聚集雜沓，</p>

<p>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4월 21일(갑인) 2번째기사 금성 산신당의 쌀바치는 일을 금하게 하다</p>	<p>성이 무당에게 혹해서, 봄가을이 될 때마다 원근의 남녀들이 시끄럽게 모여들어 남에게 뒤질세라 기도하여 양운을 면하려고 밤을 지내기까지 하여 추한 소문이 많으니, 풍속을 손상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조 수교(戶曹受敎)에는 퇴미(退米)를 거두어 귀후서(歸厚署)로 나르되 1년에 받아들이는 양을 60석(石)으로 항규(恒規)를 삼았으므로, 수령(守令)이 능히 금하지 못하니, 빨리 쌀을 받아들이라는 영을 거두시어 음사(淫祀)의 폐해를 엄하게 금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금성산(錦城山) 신당(神堂)에서 바치는 쌀이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 풍속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엄하게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p> <p>하였다.</p>	<p>祈禱恐後，求免災厄，以至經宿，多有醜聲，傷風敗俗，莫此爲甚。但戶曹受敎，收斂退米，輸之歸厚署，一年所納，至六十石，以爲恒規，故守令莫能禁斷。請亟罷納米之令，痛禁淫祀之弊。” 傳曰：“錦城山神堂責納之米，不知所以然也。如此有關風俗之事，痛禁爲當。”</p>
<p>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5월 7일(기사) 2번째기사</p>	<p>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이철균(李鐵鈞)이 동료와 유생(儒生)들을 거느리고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謝恩)했다. 【상이 시학(視學)하던 날 하련대(下輦臺) 앞에서 유생들에게 음식을 내리고, 승지로 하여금 이를 보살피 주게 했기 때문에 전문을 올려 사은한 것이다.】</p>	<p>○成均館大司成李鐵鈞，率僚屬與儒生，上箋謝恩。【上視學日，饋儒生于下輦臺前，令承旨監饋，故上箋謝恩。】</p>
<p>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5월 17일(기묘) 2번째기사 홍문관에서 한재가 심하니 조정의 잔치를 정지할 것을 청하다</p>	<p>홍문관이 아뢰기를, “전후 경연관(經筵官)에게 음식을 내리되 악(樂)은 쓰지 말라고 명하셨으나, 한재(旱災)가 너무 심하여 재앙을 삼가는 이때에, 온 조정이 잔치를 여는 것이 마음에 매우 미안하니, 정지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강목(綱目)》과 《송감(宋鑑)》의 강을 마쳤으니, 공궤(供饋)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전후의 경연관이 너무 많으니,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공궤하는 것이 가하다.”</p> <p>하매, 홍문관이 또 아뢰기를, “잔치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며, 공궤라고 하지만 잔치를 내리</p>	<p>○弘文館啓曰：“命饋前後經筵官，而勿令用樂。然旱災太甚，當此謹災之時，舉朝赴宴，心甚未安，請停之。” 傳曰：“《綱目》、《宋鑑》畢講，不可不饋。但前後經筵官太多，只饋時在官可也。” 弘文館又啓曰：“宴飲，不在於人之多少，雖曰供饋，與賜宴何異？請停之。” 傳曰：“經筵官，不可不饋。但旱氣日甚，徐觀雨勢供饋。”</p>

	<p>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까! 정지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경연관은 공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가뭄이 날로 심하니 서서히 비오는 형세를 보아서 공궤하라.”</p> <p>하였다.</p>	
<p>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5월 19일(신사) 2번째기사</p>	<p>한재(旱災) 때문에, 정전(正殿)을 피하고 찬수(饑需)를 감하고 악(樂)을 정지했다.</p>	<p>○以旱災，避正殿，減膳、徹樂。</p>
<p>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6월 8일(기해) 2 번째기사</p>	<p>요사이 들으니 왕자와 부마(駙馬)의 생계가 어렵다 하나,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완원군(完原君)의 부인 같은 이는 완원군이 죽은 뒤에 기한(飢寒)을 면치 못한다 하오니, 어찌 이런 가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왕자나 부마가 죽었더라도 품계에 따라 녹(祿)을 주어야 하고, 혹 안된다면 해마다 쌀과 콩을 주어 가난을 구제하시면, 전하의 우애하시는 덕이 드러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듣고, 오랫동안 측은(惻然)해 하다가 이르기를, “왕자나 부마의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듣고 보니 마음이 편치 못하다.”</p> <p>하였다.</p>	<p>近聞，王子、駙馬，計活艱難，然未知其詳也。如完原君夫人，完原君身死後，不免飢寒，安有如此惻然之事乎？臣意以謂，王子、駙馬，雖身沒，當隨其品給(錄) [祿]，如或不可，歲賜米太，以周貧乏，則上之友愛之德著矣。” 上聞之，惻然良久曰：“王子、駙馬，計活之艱難，予何知也？聞之，未安於心也。”</p>
<p>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6월 15일(병오) 2번째기사</p>	<p>졸(卒)한 계성(桂城)·안양(安陽)·완원(完原)·회산(檜山)·전성(全城) 등 군(君)의 부인에게 각각 쌀 15석(石)씩을 하사했는데, 견성군(甄城君)의 부인에게는 봄가을로 으레 주는 것이 있으므로 이 예에는 들지 않았다. 견성군은 죄없이 죽었기 때문에 상이 항상 불쌍히 여겨, 특별히 명하여 봄가을로 주도록 한 것이</p>	<p>○賜米各十五石于卒桂城、安陽、完原、檜山、全城等君夫人。甄城君夫人，以有春秋例賜，故不在此例。甄城，死非其罪，故上常憐之，特命春秋</p>

<p>졸한 계성군·안양군 등의 부인에게 각각 쌀 15석씩 하사하다</p>	<p>었다.</p>	<p>賜之。</p>
<p>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6월 15일(병오) 3번째기사</p>	<p>명하여, 쌀 1백 석을 대비전(大妃殿)에 특별히 바치게 했다.</p>	<p>○命別進米百石于大妃殿。</p>
<p>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9월 16일(을해) 1번째기사 사슴·노루 진상에 대해 논의하다</p>	<p>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연구령(延九齡)이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는 상정(常定)으로 진상하는 산 사슴·사슴 꼬리·사슴 혀가 너무 많습니다. 그 도에는 토착민(土着民)이 적고 단지 입거인(入居人)이 있을 뿐인데, 사슴 잡는 일 때문에 밤낮으로 산에 오르게 되니 간고(艱苦)가 막심하며, 혹 잡지 못하면 처자를 옥에 가두니, 백성이 매우 괴로와합니다. 사슴 꼬리·사슴 혀는 제주도에서 나니, 모름지기 대신에게 물으시어 이정(移定)하심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도의 진상은 해사(該司)에서 봉납(捧納)하고 있으니, 내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황해도뿐 아니라 팔도(八道)의 산물이 옛날과 다른 것이 많으니, 마땅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처치해야 한다.” 하매, 영사 김응기가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각도에 노루·사슴이 번식(蕃殖)하지 못한다 합니다. 예문(禮文)에 ‘어린 짐승은 제향에 바치지 않는다.’는 예가 있는데, 어린 사슴을 천신(薦新)하는 것이 예에 합당하리까? 신의 생각으로는, 어린 사슴을 잡지 않으면 거의 번식하여 제포(祭脯)에 공례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에서는 새끼 뱀 노루를 진상한 일이 있는데, 배를 가르고 새끼를 꺼내어 쟁반에 담아서 진상하였으니, 이 같은 일은 더욱 금단해야 합니다.”</p>	<p>○乙亥/御朝講。持平延九齡曰：“黃海道常定進上生鹿、鹿尾、鹿舌甚多。彼道土着之民少，而只有入居人，以捉鹿之事，日夜登山，艱苦莫甚，或不得捕獲，則繫累其妻子，民甚苦之。鹿尾、鹿舌，產于濟州，須問于大臣，移定何如？”上曰：“各道進上，該司捧納，予安能知之？非獨黃海道也，八道產物，多異於昔，當僉議處置，可也。”領事金應箕曰：“臣聞，各道獐鹿不蕃。禮文有，不成禽不獻，之禮，兒鹿薦新，於禮何如？臣意不捉兒鹿，則庶幾蕃息，而得供祭脯矣。京畿則有孕獐進上，其腹裏兒獐，剖而發之，盛盤而進，如此事，尤當禁斷也。”九齡曰：“兒鹿兒獐之薦，雖爲先王，百姓嗷嗷，專在於此。以民怨而獻之，先王其有歆享乎？”</p>

	<p>하고, 구령이 아뢰기를, “어린 사슴과 어린 노루를 천신하는 것이 선왕(先王)을 위하는 것이기는 하나, 백성이 원망하며 수군거리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으니, 백성의 원망이 담긴 물건으로 제향하는 것을 선왕이 흠향하시리까?” 하였다.</p>	
<p>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9월 28일(정해) 1번째기사 사슴·노루를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천신의 예를 그치지 않게 하다</p>	<p>예조 판서 김전(金詮) 등이 아뢰기를, “사용원(司饗院)이 받아들이는 사슴 고기 포·사슴 꼬리·사슴 혀는 여러 번 감하였으므로 공용(供用)이 넉넉지 못하니, 더 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천신(薦新)하는 새끼 사슴이 모자랄 때에는 권도로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 쓰기도 한 것이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니 번식되지 않았을 리가 없으며, 또 《예경(禮經)》의 ‘짐승이 성장하지 않으면 제향에 바치지 않는다.’는 글에도 맞습니다.” 하고, 사용원 제조 운수군(雲水君) 효성(孝誠) 등이 아뢰기를, “새끼 사슴과 새끼 노루를 얻지 못하면 다른 물건으로 대신 쓰는 것이 곧 고례(古禮)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법을 정한다면 얻을 수 있더라도 반드시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고, 봉진(封進)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른 물건으로 대신한다면, 도리어 온당치 못한 것 같으니, 진실로 작은 폐단 때문에 봉진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슴 고기 포 등 물건은 과연 개정할 수 없으며, 새끼 사슴이 모자랄 때에는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천신하는 예(禮)를 오래도록 그치는 것은 미안하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사신(史臣)은 논한다. 새끼 사슴과 뱃속에 든 노루 새끼를 바치게 하는 것은</p>	<p>○丁亥/禮曹判書金詮等啓曰：“司饗院所納鹿脯、鹿尾、鹿舌，累經裁減，供用不裕，不可更減。但薦新兒鹿乏絕之時，權代他物，積歲既久，則不無繁息之理，且合禮經：‘不成禽不獻。’之文。” 司饗院提調雲水君孝誠等啓曰：“兒鹿、兒獐未得，則以他物代用，乃其古禮也。若如此立法，則雖有可得之勢，必以他物代用，而不封進矣。且我國所產，而代以他物，反似未穩，固不可以小弊，廢封進也。” 傳曰：“鹿脯等物，果不可更改。如兒鹿乏絕之時，則代以他物，似可矣。然薦新之禮亦久，改之未安，仍舊可也。”</p>

	임금이 사람을 사랑하는 인덕(仁德)을 매우 상(傷)하는 것이니, 임금은 마땅히 이를 깨달아 특별히 감해야 할 것인데도, 상이 고례(古例)을 빙자하여 생각을 움직이지 않았으니, 시의(時議)가 애석하게 여겼다.	
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9월 29일(무자) 2번째기사 독서당에 술을 내리니, 김안로·소세양 등이 사은하다	독서당(讀書堂)에 선은(宣醞)5270) 하였다. 사인(舍人) 김안로(金安老)·이조 정랑(吏曹正郎) 소세양(蘇世讓)·공조 좌랑(工曹佐郎) 신광한(申光漢) 등이 전(箋)을 올려 사은(謝恩)하였다.	○宣醞于讀書堂。舍人金安老、吏曹正郎蘇世讓、工曹佐郎申光漢等，上箋謝恩。
중종 21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0월 21일(경술) 2번째기사	정광필·김응기 등이 아뢰기를, “정전을 피하는 것은 재변에 근신하는 까닭입니다. 만약 경연(經筵)에 나오신다면 월랑(月廊)이 매우 차가우며, 또 자전(慈殿)께서 감선(減膳)하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빨리 정전으로 돌아가소서.” 하니, 상이 이에 따랐다.	○鄭光弼、金應箕等啓曰：“避殿，所以謹災變也。若御經筵，則月廊甚寒，且慈殿減膳既久，請亟復正殿。”上從之
중종 21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0월 21일(경술) 4번째기사	유미(柳湄)의 평안도에서 진헌(進獻)하는 인삼(人蔘)은 관찰사가 해사(該司)에 전송(轉送)해야 된다는 일과,	柳湄平安道進獻人蔘；觀察使轉送該司事
중종 21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0월 25일(갑인) 1번째기사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참판(參判) 이유청(李惟淸)이 각사(各司)가 축낸 잡물(雜物)을 서계(書啓)하기를, “미면(米麪)·잡곡(雜穀)이 모두 5만 7천 5백여 석(石)이고, 사라(紗羅)·능단(綾段)이 모두 2백 50여 필(匹)이고, 포화(布貨)가 3만 4천 6백 40여 필이고, 철	○甲寅/戶曹判書高荊山、參判李惟淸，以各司虧欠雜物書啓，米淸雜穀并五萬七千五百餘石，紗羅、綾段并二百五十餘匹，布貨三萬四千六百四十餘匹，鐵

<p>호조 판서 고흥산 등이 각사가 축낸 잡물을 추징하도록 아뢰다</p>	<p>(鐵)이 14만 1천 2백 90여 근이고, 지지(紙地)가 5만 1백 70여 권(卷)이나 됩니다.”</p> <p>하고, 이어 아뢰기를, “전일 번고(反庫)할 때에 그 축낸 것을 징수하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은 까닭으로, 더욱 두려워하거나 꺼리지를 아니해서 축낸 것이 이와 같으니 후일의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관리들에게 모두 추징(追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군자창(軍資倉)·광흥창(廣興倉) 두 창고를 번고를 다 마치지 못했으니, 내년 봄을 기다려서 번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이전의 관리들에게 추징한다면, 삼공(三公)과 육경도 모두 징수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니 사체에 온당치 못하다. 마땅히 조정에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라.”</p> <p>하였다.</p>	<p>十四萬一千二百九十餘斤，紙地五萬一百七十餘卷。仍啓曰：“前反庫時，其所虧欠，不徵不罪，故益不畏忌，虧欠如此，後弊不可不慮。前等官吏，盡令追徵，何如？且軍資、廣興兩倉，反庫未畢，請待來春反庫，何如？”傳曰：“若退徵於已前官吏，則三公六卿，皆不免徵，於事體不當。當廣議朝廷而處之。”</p>
<p>중종 21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0월 25일(갑인) 3번째기사</p>	<p>8. 술은 마땅히 이를 쓰는 데 시기가 있어야 하고 절제없이 허비해서는 안 되니, 곡식만 낭비할 뿐 아니라 또한 재화(災禍)를 빚어냅니다. 지금의 사대부들은 술로써 일을 폐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데, 하물며 그 아랫사람이겠습니까? 옛날 우리 선왕(先王)께서는 일찍이 주계(酒戒)를 지어 중외에 널리 알렸는데, 그 말씀이 매우 간절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경계가 없으니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때지어 술을 마시는 것을 어찌 괴이히 여기겠습니까? 남상(濫觴)을 금하지 않으면 장차는 걷잡지 못하게 될 것인데, 하물며 재변을 만나 하늘을 공경하는 날과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거리는 시기를 당하였음에리까? 금주령(禁酒令)을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밖에만 금하고 쥬내에서는 쓰게 된다면 금지시키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무릇 내정(內庭)의 선은(宣醞)에서도 마땅히 일체 정과(停罷)시켜 근본을 끊어 버린</p>	<p>其八，酒者，固宜用之有時，不可費之無節。非徒糜穀，亦以釀禍。今之士大夫，以酒廢事者尚多，況其下乎？昔我先王，嘗作酒戒，播告中外，其言甚切。今則已無戒矣，酣歌朋飲，何足怪哉？濫觴不禁，將至滔天，況當遇災敬天之日，民生阻飢之時，禁酒之令，不可不嚴。若禁之於外，而行之於內，則非所以爲禁也。自今以後，凡內庭宣醞，亦宜一切停罷，以絕根本，自然觀感，糜費可省。</p>

<p>중종 21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1월 11일(기사) 1번째기사</p>	<p>다면, 자연 보고 감동하여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p> <p>지제교(知製敎) 이행(李荇)이 《주고(酒誥)》를 지어 바쳤는데, 그 글[詞]에 이르기를,</p> <p>“아, 술의 유화(流禍)는 빠지기 쉬워도 구제하기는 어려우니, 나라를 망치고 몸을 망치는 것이 항상 이 때문이다. 예로부터 술을 경계하여 금한 사람은 보존하였고 술에 빠진 사람은 멸망하였는데, 방책(方策)5346)에서 상고해 보면 득실(得失)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오히려 능히 알고 있을 것이다. 옛날에 의적(儀狄)이 술을 만들때 맛이 감미롭자 대우(大禹)가 먼 장래를 염려하여 소원(疏遠)시켜 끊어 버렸으며, 또한 매방(妹邦)이 술에 탐닉(耽溺)하매 무왕(武王)이 걱정하여 주고(酒誥)를 지었으니, 성인(聖人)이 세상을 근심하고 재화(災禍)를 염려함이 깊었던 것이다. 내가 지금 대소 신민(大小臣民)을 보건대 술을 경계하는 사람은 적고 마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아서 차츰차츰 빠져들어 이것이 풍속을 이루었고 덕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며, 술에 빠져 본성을 잃게 되어도 스스로 뉘우칠 줄을 모르니, 이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말류(末流)에 가서는 어찌되겠는가? 나의 덕으로 능히 감화시키지 못하니 매우 슬퍼할 뿐이다. 이에 선왕(先王)의 일을 상고해 보니, 처음 주례(酒禮)를 만들 적에 한 번 술잔을 올리고는 백 번 절하게 하였으므로 종일토록 마셔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술을 마시는 자는 반드시 난잡한 지경에 이르러, 사무를 폐지하고 위의(威儀)를 잃어서 그것이 덕의(德義)를 그르치는데도 함부로 마시면서 그치지 않아 마침내 그 몸을 망친다. 그 몸도 스스로 아끼지 않는데 덕행과 예절을 돌볼 여지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세종(世宗)께서 술을 경계하는 글을 지어 알아듣게 친절히 타이르셨으니, 술의 재화(災禍)를 방지하는 뜻이 아주 깊고도 간절하였다. 너희들이 비록 내 말을 귀담지 않더라도 우리 조종(祖宗)의 유의(遺意)</p>	<p>○己巳/知製敎李荇製酒戒以進。 其詞曰： 嗚呼！酒之流禍，易溺難救。 亡國喪身，恒由於此。 自古戒禁者存，沈酗者滅。 稽之方策，得失俱載。 予雖不言，人尙克知之。 昔有儀狄，造酒而甘，大禹慮遠，疎而絕之。 亦有妹邦，荒腆于酒，武王憂之，《酒誥》是作，聖人之憂世慮禍，深矣。 予觀今之大小臣庶，戒酒者少，崇飲者多。 浸淫成俗，罔有德將。 沈湎伐性，不自知悔。 此厥不戒，末流奈何？ 予德不能化，深用爲悼。 粵稽先王，肇制酒禮，一獻百拜，終日不得醉。 今之用酒，必及於亂。 廢事失儀，而敗其德，縱飲不止，終喪厥身。 厥身且不自愛，違恤德禮？ 故我世宗戒酒有書，曉諭丁寧。 其所以防酒禍者，至深且切。 汝雖不有予言，其不念我祖宗遺意乎？ 會飲抵罪，著在令甲，禁酒之制，亦非不密。 雖然，禁人以法，不若禁之於心。 予今有命，禁在汝心。 汝心不</p>
---	--	--

	<p>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죄를 받는 것은 법령에 기록되어 있으니 금주(禁酒)의 법이 또한 세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비록 그렇지만 사람을 법으로써 금지시키는 것이 마음을 금지시키는 것만 못하므로 내가 지금 명을 내리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금지하는 데 있다. 너희가 마음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지위가 있고 직책이 있는 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능히 경계하여 그치겠는가?</p> <p>이것을 일변시키는 기틀은 실로 조정에 있으니, 여러 관원들은 각각 제 마음을 제재(制裁)하여 술에 빠지지 말고 위의(威儀)를 잃지도 말며, 사무도 폐지하지 말고 몸도 망치지 말아서 내 말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또한 사서인(士庶人)으로 하여금 보고 감동하여 경계할 줄을 알게 하여, 구습을 고쳐 인수(仁壽)의 지경에 함께 이르게 함으로써 나의 명덕(明德)이 향기나는 정치룰 이루게 하라.”</p> <p>하니, 전교하기를, “이 글로써 중외(中外)에 효유하라.”</p> <p>하였다.</p>	<p>禁，何所不至？在位有職，尙或如是，況在愚民，其能戒戢？變移之機，寔在朝廷。凡厥庶官，各制乃心，無酗于酒，無失汝儀，無廢汝事，無喪汝身，思無負予言。亦令士庶，觀感知戒，革其舊習，同臻仁壽之域，以成我馨香之治。</p>
<p>중종 21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1월 11일(기사) 2번째기사 헌부에서 폐조 때 내 폐에 진공한 유기를 유용한 낭관을 탄핵하다</p>	<p>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p> <p>“폐조(廢朝) 때에 내폐(內嬖)5347) 의 여러 원(院)에 시정인(市井人) 등이 진공(進供)한 유기(鑰器)를 반정(反正)한 후에 공조(工曹)로 하여금 본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으나, 그때 낭관 등이 모두 외람되이 스스로 사용(私用)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랑(正郎) 오한상(吳漢相)은 중화분(中火盆) 1부(部)를, 좌랑(佐郎) 남포(南褒)는 개구분(蓋具盆) 1부(部)와 대소(大小) 세수대야 각 1부와 요강 1부를 각각 스스로 가지고 갔으며, 심의(沈義)는 무쇠로써 동철(銅鐵) 5백 근(斤)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러나 심의와 남포의 일은 전리(典吏)5348)</p>	<p>○臺諫啓前事。憲府啓曰：“廢朝內嬖諸院所供市裏人等鑰器，反正後，令工曹還給本主。其時郎官等，頗皆泛濫，多自私用。正郎吳漢相，中火盆一部，佐郎南褒，蓋具盆一部、大小洗臉盆各一部、溺器一部，各自占持去，沈義以水鐵，換取銅鐵五百斤。然沈義、南褒，則典吏雖服，而事干時未歸一，漢相則該匠、典吏等，皆已承服，罪干臧</p>

	<p>가 비록 승복(承服)했지마는 사간(事干)5349) 의 말이 아직 귀일(歸一)되지 않았으며, 오한상은 해당 공장(工匠)과 전리들이 모두 이를 승복하여, 죄가 장오(贓汚)를 범했는데도 지금 풍천 부사(豐川府使)가 되었으니 잡아다가 추문하고, 남포와 심의도 장오를 범했으므로 관직에 있을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p>	<p>汚, 而今爲豐川府使, 請拿來推之。</p>
<p>중종 21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1월 15일(계유) 1번째기사</p>	<p>제 8조의 금주령에 대하여는 송일·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재변(災變)을 만나 하늘을 공경할 때에는 비록 위에서 술을 금지하지마는 아래사람은 술을 마시니, 엄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p>	<p>至第八條禁酒事, 宋軼、光弼等曰: “遇災敬天之時, 雖自上禁酒, 然下人則飲之, 不可不禁也。”</p>
<p>중종 21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2월 10일(무술) 1번째기사 조강에서 지평 연구령이 황해도에 아록을 진상하는 폐단을 아뢰다</p>	<p>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연구령(延九齡)이 아뢰기를, “지금 진강한 《예기(禮記)》에 이른바 ‘채 자라지 않은 것을 베어 죽이지 않고 새집을 뒤엎지도 않는다.’고 한 것은 일상 성인(聖人)이 생물(生物)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황해도에서 아록(兒鹿)을 진상하는 폐단은 신이 전에 이미 아뢰었는데도 해당 관사에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원망과 고통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신이 눈으로 직접 본 바이므로 감히 다시 아뢰입니다.” 하고, 동지사 남곤은 아뢰기를, “신도 또한 일찍이 본 바인데,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치란(雉卵)과 아록을 분주하게 찾아 잡으며, 수령(守令)도 또한 함부로 징수하니, 성상의 만물을 생성(生成)시키는 인덕(仁德)에 있어서 어찌 큰 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바치는 공물이 아니니 마땅히 짐작하여 감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다만 진상 뿐 아니라 천신(薦新)5394) 하기 위한 것이므로 즉시 폐지할 수 없으니, 다시 의논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특진관 강징(姜澂)은 아뢰기를, “신이 전에 전주 부윤(全州府尹)이 되었을 때 보니 진상하는 소은구어(小銀口</p>	<p>○戊戌/御朝講。持平延九齡曰: “今進講《禮記》所云: ‘不夭殀, 不覆巢。’ 聖人愛物之心, 豈偶然乎? 黃海道進上兒鹿之弊, 臣前已啓之, 而該司防啓。 民之怨苦莫甚, 臣所目擊, 故敢復啓。” 同知事南袞曰: “臣亦嘗見, 農務方劇之時, 如雉卵及兒鹿, 奔走求捕, 守令亦甚濫徵, 於聖上生物之仁, 豈非大欠? 此非惟正之供, 固宜裁減也。” 上曰: “此非止進上, 爲薦新, 故未能即廢。 更議爲之, 可也。” 特進官姜澂曰: “臣前爲全州府尹時, 見進上小銀口魚, 甚爲稀貴, 或值雨水, 則全未得捉, 其弊亦甚不少。 此亦下問該司, 而裁減可也。” 領事宋軼曰: “如此之事, 不須議之。 若知有弊, 則雖薦新之物, 亦當裁減。 大抵近來百</p>

	<p>魚)는 매우 드물어서 진귀(珍貴)한데 혹시 비라도 오게 되면 전혀 잡을 수가 없어 그 폐단이 또한 매우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해당 관사에 하문하시어 짐작하여 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영사 송일은 아뢰기를, “이와 같은 일은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폐단이 있는 것을 안다면 비록 천신하는 물건일지라도 또한 마땅히 짐작하여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온갖 물건이 쇠잔해졌는데 수령들이 또한 함부로 징수하게 되니, 백성의 원망과 고통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p> <p>하였다.</p>	<p>物彫殘，守令亦甚濫徵，民之怨苦，何可勝言?”</p>
<p>중종 21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2월 18일(병오) 1번째기사 천둥 번개의 이변으로 정전을 피하고 감선 철약하도록 하다</p>	<p>전교하기를, “지금 관상감(觀象監)의 아뢰 바를 보고 대단히 놀랐다. 겨울철의 천둥과 번개가 어찌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부터는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 철약(減膳撤樂)하는 것이 좋겠다.”</p> <p>하매, 승정원이 아뢰기를, “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전자의 재변으로 인하여 이미 여러 번 불러서 물었으니, 지금 비록 다시 물어본들 어찌 특별한 계책이 있겠는가? 대신들이 만약 할 말이 있다면, 비록 불러서 묻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p>	<p>○丙午/傳曰：“今見觀象監所奏，至爲驚愕。 冬月雷電，豈非可懼之甚乎？自今避殿、減膳、撤樂，可也。” 政院啓曰：“幸召大臣，延訪何如？” 傳曰：“前因災變，已累爲延訪。 今雖復爲，亦何有別策乎？ 大臣等若有所言，則雖不延訪，自當言矣。”</p>
<p>중종 21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2월 21일(기유) 3번째기사 사용원 제조 운수군</p>	<p>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 운수군(雲殊君) 효성(孝誠) 등이 의논드리기를, “어린 사슴은 황해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매우 드물고 진귀한 물건입니다. 하물며 이것은 천신(薦新)5418) 하는 물건이니, 감(減)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司饗院提調雲水君孝誠等議啓曰：“兒鹿，非徒黃海道，他道亦爲稀貴。 況此薦新之物，不減爲當。” 傳曰：“他道皆限三年蠲減。”</p>

효성이 사슴의 진상을 감하도록 의논드리다	“다른 도는 앞으로 3년을 한하여 견감하라.” 하였다.	
중종 21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1월 9일 (정묘) 1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 홍숙(洪淑)이 어머니가 늙었다고 해서 두 번 사직했으나 윤희 하지 않고, 술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丁卯/慶尙道觀察使洪淑以母老再辭, 不允, 命賜酒。
중종 21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2월 8일 (병신) 3번째기사	또 함경도의 진상이 모두 역로를 경유하여 수송되기 때문에 더욱 잔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폐해가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생문어(生文魚)의 진상입니다. 겨울철에는 관계없지만 여름철에는 얼음에 채워 오더라도 부패하여 쓰지 못합니다. 청컨대 3월에서 8월까지의 견감함이 어떠하리까? 이 역시 역로를 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북도의 마필에 표를 붙이고, 거산도 각역에 말을 주는 일은 아뢴 대로 함이 마땅하겠다. 생문어 역시 아뢴 대로 연한을 정하여 견감하라.”	且咸鏡道進上, 皆由驛路轉輸, 故益爲殘弊。 以最爲有弊者言之, 生文魚進上, 冬節則可矣, 夏月則雖照冰而來, 腐敗不用。 請自三月至八月, 蠲減何如? 此亦蘇復驛路之事也。” 傳曰: “南北道馬匹著標及居山道各驛給馬事, 依啓爲當。 生文魚亦以所啓之意, 限年蠲減。”
중종 21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2월 22일(경술) 2번째기사	이렇게 하여 틀려지게 된 후에야 신 등으로 의논하게 하시니, 신 등이 감히 그 시비를 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고, 선운(宣醞)하라 명하였다.	如此而至於乖戾然後, 使臣等議之, 臣等未敢論其是非也。” 傳曰: “知道。” 仍命宣醞。
중종 21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3월 4일 (신유) 1번째기사 정원에 일러 왕후의 상사 때 몇날 만에 육선을 들었는지 하문하	정원에 이르기를, “조종조에서 왕후의 상사를 당하여 몇 날 만에 육선(肉膳)을 들었느냐? 상고 하여 아뢰라.” 하니, 정원이 공혜왕후의 승하 후 16일 만에 육선을 들인 예를 써서 들고 아뢰기를, “육선을 들인 것은 16일째 날이었지만 대신이 육선 들이기를 권한 것은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辛酉/傳于政院曰: “祖宗朝, 遭王后之喪, 第幾日進肉膳耶? 其考以啓。” 政院書恭惠王后昇遐第十六日, 進肉膳之例, 入啓曰: “其進肉膳, 則在第十六日, 而大臣之勸進肉膳, 其前已累請啓耳。” 傳曰: “令考以啓者, 非爲予而言也, 上殿累日進素膳, 故問之

<p>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상고하여 아뢰게 한 것은 나를 위하여 한 말이 아니다. 상전(上殿)5502) 께서 여러 날 동안 소찬을 드시기 때문에 물었다.” 하였다.</p>	<p>耳。”</p>
<p>중종 21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3월 8일 (을축) 1번째기사 좌의정 정광필 등이 합사하여 육선을 들도록 아뢰다</p>	<p>좌의정 정광필·우의정 김응기·우찬성 장순손·병조 판서 신용개·예조 판서 김전 등이 합사(合辭)로 아뢰기를, “대행 왕비께서 승하하신 지 이미 7일이 지났으니, 육선을 들이게 하소서. 대비전(大妃殿)은 춘추가 이미 높으신데 여러 날 소찬을 드시니 건의(愆宜)5515) 가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고, 승정원(承政院)이 또한 이 뜻으로 계청하니, ‘천천히 답하겠습니다’고 전교 하였다. 좀 있다가 전교하기를, “상전(上殿)5516) 께 아뢴즉 하교하기를 ‘아직 삼칠(三七)일이 지나지 않아 애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들일 것이라.’ 하셨다.” 하였다.</p>	<p>○乙丑/左議政鄭光弼、右議政金應箕、右贊成張順孫、兵曹判書申用漑、禮曹判書金詮等合辭啓曰：“大行王妃昇遐，已過七日，請進肉膳。大妃殿春秋已高，累日素膳，恐致愆宜。”承政院亦以此啓請，傳曰：“徐當答之。”俄而傳曰：“啓之上殿則教曰：‘時不過三七，哀痛之情尚未殄，何以敢進乎?’</p>
<p>중종 21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3월 16일(계유) 1번째기사 아침에 육선을 대전 및 대비전에 올리다</p>	<p>아침에 육선을 대전(大殿) 및 대비전에 올렸다.</p>	<p>○癸酉/朝進肉膳于大殿及大妃殿。</p>
<p>중종 21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3월 27일(갑신) 2번째기사</p>	<p>또 말하기를 ‘상이 애통해 하시어 특별히 백의 소찬을 하기까지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문에 의함이 아니니, 제도에 지나친 일이라 하여 의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백의 소찬을 하였다는 것은 실지의 일이다. 이 뜻으로 대제학 및 제진관(製</p>	<p>又曰：‘上哀慟，特至御白衣素膳’此非禮文，則恐爲過制之事，而有議也。”傳曰：“御白衣素膳云者，乃實事也。其以此意，議于大提學及製進官，可</p>

	<p>進官)에게 의논함이 가하다.” 하였다.</p> <p>사신은 논한다. 백의 소찬을 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이미 지난 일이요,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어지럽다는 것 또한 이미 전교한 말이다. 사관이 이미 사책(史冊)에 기록하였으니, 모두가 실지 사실이다. 그런데 허지가 지문(誌文)에서 삭제하여 후세의 기룡을 면하려 한 것이다. 비록 지문에서는 삭제할 수 있다 해도 사책에야 삭제할 수 있겠는가?</p>	<p>也。</p> <p>【史臣曰：“御白衣素膳，乃是已行之事；神迷心亂，亦是已教之言。史官已記史冊，皆是實事。許遲乃欲削於誌文，要免後世之譏。縱可削於誌文，其能又削於史冊乎？”】</p>
<p>중종 21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4월 2일 (기축) 2번째기사</p>	<p>좌의정 정광필·우의정 김응기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의 자제를 부르시어 육식을 권하게 하시었습니다. 신 등은 별로 질병이 없고, 나이 또한 아직 쇠로(衰老)하지 않았습니다. 현능(賢能)함은 없지만 표솔(表率)하는 직책이 되어 감히 고기를 먹지 못하겠으니 사양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늙고 병든 대신이 오래도록 육식을 폐지함은 불가하므로 명하게 권하게 한 것이다. 들은즉 세종조에서도 7일 내에 육식을 권하였지만 그 때 대신들이 또한 사양하였는데, 세종께서 강권하였기 때문에 대신이 고사(固辭)하지 못하였다. 지금 정원이 또한 말하기를 ‘좌·우상이 쇠로하지는 않았지만 지위가 중지(重地)에 있으니 오래도록 육식을 폐할 수 없다.’ 하는데, 이 말이 지당하다. 또 내가 이미 복이 다하였으니 경들은 고사하지 말라.” 하고, 이어 주육(酒肉)을 하사하였다.</p>	<p>○左議政鄭光弼、右議政金應箕等啓曰：“命召臣等子弟，使勸肉。臣等別無疾病，年又未至衰老，雖無賢能，得爲表率之職，不敢食肉，請辭。”傳曰：“老病大臣不可久廢肉食，故命勸之耳。聞，世宗朝亦於七日內勸肉，而其時大臣亦辭，世宗強勸之，故大臣未得固辭。今政院亦云：‘左右相，雖非衰老，而位在重地，不可久廢肉食’此言至當。且予既服盡，卿等不宜固辭也。”仍賜酒肉。</p>
<p>중종 21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4월 24일(신해) 1번째기사 유순 등이 의궤에 관해 논의하다</p>	<p>영의정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소방상(小方床) 안에 실과(實果)·생물(生物)을 진설함은 송종(送終)하는 데 정의를 다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전의 의궤(儀軌)를 시행하는 일은 전대로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소소한 절목(節目)의 예문을 어찌 다 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정광필의 의논도 같았으며, 우의정 김응기는 의논드리기를,</p>	<p>○辛亥/領議政柳洵議：“小方床內，設實果、生物，是欲送終盡意也。且前《儀軌》施行事，依前似當。小小節目禮文，豈能盡載乎？”左議政鄭光弼議同。右議政金應箕議：“依禮文勿設，何如？”左參贊李繼孟議：“前《儀軌》內‘果物安于小方床內。’按《周禮》《虎賁氏》‘及葬，從遣車而哭。’</p>

	<p>“예문에 의하여 진설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좌참찬 이계맹(李繼孟)이 의논드리기를, “전의 의례 중에 ‘과물을 소방상 안에 놓는다.’ 하였습니다. 살펴보면 《주례(周禮)》 호분씨(虎賁氏)에는 ‘장사 때가 되면 견거(遣車)5608) 를 따르며 곡한다.’하고, 주에 이르기를 ‘견거는 왕의 혼백이 의빙(依憑)하는 데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禮記)》 잡기(雜記)에는 ‘견거는 뇌구(牢具)를 따르다.’ 하고, 주에는 ‘천자(天子)의 태뢰(大牢)5609) 에 포(包)5610) 가 9개, 견거가 9승(乘)이고, 제후(諸侯)의 태뢰에는 포가 7개, 견거가 7승이며, 포육(包肉)은 모두 대견전(大遣奠)5611) 의 생체(牲體)를 취한다.’ 하였습니다. 본조(本朝)의 견전에는 생(牲)5612) 을 쓰지 않고 또 견거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물을 씌운 이 뜻을 의방(依倣)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소방상 아래에 과일 그릇을 진설함은 설만 모독(褻慢冒瀆)이 될 것 같으며 또 견거의 끼친 뜻에도 불합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진설하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하니, 유순의 의논을 좇았다.</p>	<p>註云: ‘遣車, 王之魂魄所依憑.’ 《禮記雜記》‘遣車視牢具.’ 註云: ‘天子大牢, 包九箇, 遣車九乘; 諸侯大牢, 包七箇, 遣車七乘, 包肉皆取大遣奠之牲體, 本朝遣奠, 不用牲, 又無遣車之制, 故用果物, 恐倣此義。 然小方床下設果器, 似涉褻瀆, 亦不合遣車遺意。 臣意以爲, 不設爲便。’ 從柳洵議。</p>
<p>중종 22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正德) 10년) 윤4월 17일(갑술) 2번째기사 손중돈 등이 사용원에서 면포로 위어를 사는 일로 인해 피험을 청하다</p>	<p>도승지 손중돈(孫仲墩)·좌승지 김근사(金謹思)·우승지 방유령(方有寧)·좌부승지 조순(趙舜)·우부승지 이항(李沆)·동부승지 허굉(許碁)이 아뢰기를, “사용원이 위어를 잡을 때에 본원에서 면포(綿布)로 이것을 사다가 것을 담그는 것은 연례(年例)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서리(書吏)가 ‘전례가 있다.’하고 사기를 청하였는데, 신 등이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니 피험(避嫌)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피험하지 말라.” 하였다.</p>	<p>○都承旨孫仲墩、左承旨金謹思、右承旨方有寧、左副承旨趙舜、右副承旨李沆、同副承旨許碁啓曰: “司饗院捉葦魚時, 院以縣布貿易沈醢, 已有年例, 故掌務書吏以爲有例, 請買之。 臣等不能詳察, 請避嫌。” 傳曰: “勿避。”</p>
<p>중종 22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正德) 10년) 윤4월</p>	<p>병조·도총부(都摠府)·승정원·홍문관에 술과 고기를 하사하였다.</p>	<p>○丙子/賜酒肉于兵曹、都摠府、承政院、弘文館。</p>

<p>19일(병자) 1번째기사</p> <p>중종 22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윤4월 28일(을유) 4번째기사 정표받은 사람들을 구 출하도록 전교하다</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지금 경연관이 아뢰기를, 정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결식하는 자가 있다 하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그들을 찾아서 식물(食物)을 공급하게 하라. 허물어진 모 든 정문도 수리하는 것이 가하다.”</p>	<p>○傳于政院曰：“今經筵官言曰：‘有旌表之人，行乞而食。’令該司，推尋給物，可也。凡旌表墜毀者，亦可修改也。”</p>
<p>중종 22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5월 4일 (경인) 1번째기사</p>	<p>특진관(特進官) 임유겸(任由謙)이 아뢰기를,</p> <p>“새끼 사슴을 봉진(封進)하는 것은 이미 감하였으나, 새끼 노루와 잉태한 노루의 봉진은 아직 감하지 않았습니다. 태(胎)를 찢어 어린 새끼를 죽이는 일은 어진이로서는 차마 못할 일이므로 감히 아뢰니다.”</p> <p>하였다.</p>	<p>特進官任由謙曰：“兒鹿則已減矣，兒獐、孕獐尙未減焉。剝胎胎殺夭，仁者所不忍，故敢啓。”</p>
<p>중종 22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5월 4일 (경인) 2번째기사 새끼 뱀 노루를 진상 하는 것을 금하도록 전교하다</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전일에 전관(箭串)에서 습진(習陣)할 때에 새끼 뱀 노루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것을 보매 마음에 차마 견딜 수 없었다. 이런 일은 인자(仁者)의 도에 관계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봉진하지 말고 새끼 배지 않은 다른 것으로 대납하게 하고, 또 다른 노루가 없을 때에는 다른 포획물(捕獲物)로 대납하여도 무방하니, 이 뜻을 사옹원(司饗院)에 말하라.”</p>	<p>○傳于政院曰：“前日於箭郊習陣時，獲一孕獐，見之，不忍於心。此事關仁術，今後其勿封進，以他不孕者代納，又無他獐，則以他物代納不妨。此意言于司饗院。”</p>
<p>중종 22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6월 23 일(무인) 3번째기사</p>	<p>제주(濟州)에서 별공(別貢)으로 백랍(白蠟) 24근(斤)을 바쳤으므로 상고(廂庫)5724) 에 들이라고 명하였다.</p>	<p>○濟州別貢白蠟二十四斤，命納廂庫。</p>
<p>중종 22권, 10년</p>	<p>1. 기전(畿田)의 가난한 백성은 시탄(柴炭)·판자(板子)나 생곡초(生穀草)나 생</p>	<p>一，畿甸貧民等，或柴炭板子，或生穀</p>

<p>(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7월 9일 (갑오) 1번째기사</p>	<p>어물(生魚物)과 닭·꿩이나 나물·과일 등 잡물(雜物)을 신고 와서 판매하여 조석 비용에 이바지하는데, 이와 같이 자질구레한 물건까지도 저화를 가지고 서로 무역(貿易)하게 되면 원망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이상 잡물은 쌀이나 저화 중에 원하는 대로 매매하도록 하되, 만일 혹 백성이 원하는 것을 어기고 강제로 매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사(法司)로 하여금 규거(糾舉)하게 하여 중하게 논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p>	<p>草, 或生魚物、雞雉, 或菜果等雜物, 載來而賣, 以供朝夕費, 則如此細碎之物, 亦以楮貨相貿, 怨咨必興。 右雜物, 或米、或楮貨中, 從願買賣, 而如有或違民願, 勒令買賣之人, 令法司糾舉重論, 何如?</p>
<p>중종 22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7월 27일(임자) 3번째기사</p>	<p>호조 판서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이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되어, 은구어(銀口魚)5780) 는 진상(進上)뿐만 아니라 천신에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임을 알고, 고기를 잡을 때 시험삼아 어전을 엮고자 도제조(都提調)와 상의하여 아뢰는 것인데, 대간이 죄를 신에게 돌리니 신은 행공(行公)하기 미안하여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피혐하지 말라’ 전교하였다</p>	<p>○戶曹判書高荊山啓曰: “臣爲司饗提調, 而見銀口魚非止進上而已, 薦新亦不可廢也。 而捕魚之時, 欲試結箭, 與都提調同議啓之, 臺諫歸罪於臣, 臣行公未安, 請避嫌。” 傳曰: “勿避嫌。”</p>
<p>중종 22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8월 19일(계유) 1번째기사</p>	<p>상이 문묘(文廟)에 행행하여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다스리는 도리를 책문(策問)하였다. 명하여 쌀과 콩 1백 석을 하사하여 유생들을 공궤(供饋)하는 비용에 보태게 하였다.</p>	<p>○癸酉/上幸文廟, 行酌獻禮, 御明倫堂, 策問治道。 命賜米豆一百碩, 以補儒生供饋之費。</p>
<p>중종 22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8월 27일(신사) 1번째기사</p>	<p>조강에 나아갔다. 정언(正言) 표빙(表憑)이 아뢰기를, “금년은 풍년이라 하여 외방의 유밀(油蜜) 및 모든 공물(貢物)을 모두 쌀로 납입하게 하고, 폐조 때에 작폐(作幣)한 사람의 포화(布貨)와 재물을 몰수하여 각 고을에 묻었다가 백성에게 돌려주었던 것을 모두 작미(作米)로 받아들이고, 또 관곡(官穀) 10석 이상을 대부받고 납입하지 않은 자들은 죄를 주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생산을 헤아리지 않고 모두 팔아서 납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국고가 고갈되어서 마지못하여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p>	<p>○辛巳/御朝講。 正言表憑曰: “今年謂之豐年, 而外方油蜜及凡貢物, 皆令以米納之。 且廢朝作弊人等布貨財物, 皆沒入各官, 而今皆散給民間, 作米納之。 又以受官穀十石以上不納者, 有抵罪之令。 故聞民間不計生產, 而盡賣以納矣。 此則國庫虛竭, 不得已如是也。 作米事, 當定限年數, 以次納之。 古云: ‘豐年不如凶年’, 請上察</p>

	<p>다. 작미에 대한 일은 마땅히 헛수를 한정하여 차례로 납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옛적에 이르기를 ‘풍년이 흉년만 못하다.’ 하였으니, 상계서는 살피소서.”</p> <p>하고, 설경(說經) 임권(任權)이 또 박상 등을 죄주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p>	<p>之。” 說經任權又啓朴祥等不可罪之意，不允。</p>
<p>중종 23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9월 20 일(계묘) 3번째기사 대비에게 진풍정하고 여러 대신에게 공궤하다</p>	<p>대비(大妃)가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상의 진풍정(進豐呈)6039) 을 받았다. 명하여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2품 이상인 종재(宗宰)6040) , 홍문관(弘文館)·대간(臺諫)·승정원(承政院)·예문관(藝文館)의 관원,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의 당상(堂上), 입직(入直)한 제장(諸將)에게 공궤(供饋)6041) 하였다.</p>	<p>○大妃御宣政殿，上進豐呈，命饋二品以上宗宰、弘文館、臺諫、承政院、藝文館、兵曹、都摠府堂上、入直諸將于仁政殿庭。</p>
<p>중종 23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9월 30 일(계축) 7번째기사 대간이 천둥의 이변에 행사 등을 줄일 것을 건의하다</p>	<p>대간이 아뢰기를,</p> <p>“접때 날마다 천둥의 이변이 있었습니다. 대저 겨울 천둥이란 것은 이변 중에서 큰것인데, 오늘 대궐에 들어올 때에도 천둥소리를 들었으니, 상계서 예사로 여기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므로 하늘이 또 재변으로 꾸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전(正殿)을 피하여 찬선(饌膳)을 줄이고 자신을 죄책하고 직언(直言)을 구하는 따위의 절목(節目)6096) 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26일에 천둥의 이변이 일어난 것은 워낙 우연한 일이 아니므로, 이미 미안한 마음을 정원(政院)과 대신들에게 말하였는데, 이제 또 크게 천둥하니 놀랍고 두렵기 그지없다. 또 위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고 반성하여야 하겠으나 아래에 있는 자도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되니, 서로 경계하기를 ‘직위에 있는 자가 마땅한 사람이 못되는 것이 아닌가, 백성의 원망이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p>	<p>○臺諫啓曰：“頃者連日有雷變。夫冬雷者，異之甚者。今日詣闕，亦聞雷聲，無乃自上以爲尋常，不加敬畏，故天又譴以災變耶？如避殿、減膳、罪己、求言節目，亦未聞也。” 傳曰：“二十六日雷變之作，固非偶然。故已將未安之心，言于政院及大臣處耳。今又大雷，驚惶曷已？且在上者，當修省恐懼；在下者，亦不可不謹，當相與儆戒曰：‘無乃在位者，非其人乎？民怨起於下乎？詞訟牽制，而或未得分明處決乎？’ 嘗聞，應天以實，不以文。如避殿、減膳等事，似乎不求諸實，而</p>

	<p>왔는가, 송사가 견제되어 분명하게 처벌되지 못하지 않았는가?’하여야 할 것이다. 일찍이 듣건대 하늘에 응답하는 것은 실질로 하고 겉치레로 하지 않는다 하였거니와, 정전을 피하고 찬선을 줄이는 따위 일은 실지에서 구하지 않고서 겉치레를 먼저 행하는 것인 듯하므로, 미처 거행하지 않았다.” 하였다.</p>	<p>先行文具，故未及舉行耳。”</p>
<p>중종 23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10월 13일(병인)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사옹원(司饗院)에 주물(晝物)6166) 은 넉넉하거니와, 종재(宗宰)에게 공궤(供饋)할 생선을 더 정하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p>	<p>○傳曰：“司饗院晝物則有數矣。宗宰供饋鮮魚加定事，始於何時?”</p>
<p>중종 23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10월 24일(정축) 1번째기사 홍문관에 술을 내리고 민농이란 제목으로 시를 짓도록 명하다</p>	<p>홍문관(弘文館)에 술을 내리고 민농(悶農)6189) 이란 제목으로 배율십운(排律十韻)6190) 을 짓도록 명하면서 전교하기를, “오늘은 실컷 마시고 내일 지어 바치라.” 하였다.</p>	<p>○丁丑/賜酒于弘文館，命製‘《悶農》’排律十韻，仍傳曰：“今日宜極飲，明日製進。”</p>
<p>중종 23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11월 2일(갑신) 1번째기사 헌부가 봉상시 말장의 문제를 건의하다</p>	<p>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제향(祭享)에 쓰는 봉상시(奉常寺)의 말장(末醬)을 전에는 관원이 친히 감독하여 짜서 만들었는데, 요즈음 듣건대 본시(本寺)의 제조(提調)가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말장을 스스로 장만해서 바치게 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합니다. 당초 법을 만들 때에 어찌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 외방에서 바치는 것이 아주 정결하지 못하므로 봉상시로 하여금 친히 감독하여 만들게 하였을 터이니, 관원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제조가 된 자가 관원의 태만을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외방으로 하여금 장만해 바치게 하는 것은 지극히 그롭니다. 예전 규례대로 만들도록 하소서.”</p>	<p>○甲申/臺諫啓前事。 憲府又啓曰：“奉常寺祭享所用末醬，前則官員親監燻造。近聞，本寺提調啓請，令外方自備末醬以納云。其初立法，豈不商度?必慮外方所納，未盡精潔，故令奉常寺親監燻造。若官員不用心，則爲提調者，糾官員之慢，而反令外方備納，至爲非矣。請依舊例，燻造。”傳曰：“末醬事，前於經筵，奉常寺提調以不能精潔之意言之，左議政亦以爲</p>

	<p>하니, 전교하기를, “말장의 일은, 전에 경연(經筵)에서 봉상시 제조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뜻을 말하였고, 좌의정도 말하였다. 나는, 이것이 쌓인 폐단의 소치일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봉상시로 하여금 특별히 마땅한 방법을 의논하게 하였다. 나머지는 다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p>	<p>言。予意以爲，是必積弊之所致，故令奉常寺別議其宜耳。餘皆不允。”</p>
<p>중종 23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11월 5 일(정해) 1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말장(末醬)의 일은 제조(提調) 및 대신에게 물어야 하리라.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p>	<p>傳曰：“末醬事，可問于提調及大臣。餘不允。”</p>
<p>중종 23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11월 7 일(기축) 1번째기사 사용원에서 홍문관이 사기로 원리를 구타한 것에 대해 상소하다</p>	<p>사용원(司饗院)이 도제조(都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일 각처에 나누어 내린 사기(沙器)는 모두 전에 진배(進排)하였던 것인데, 홍문관(弘文館)이 ‘어찌 전에 진배하였던 것을 본관(本館)에 나누어 내리느냐.’ 하고 드디어 원리(院吏)6215) 를 때렸으니, 임금이 내린 것이 작은 것일 지라도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체가 지극히 매몰(埋沒)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이 그런 줄 몰랐을 것이다. 알았다면 어찌 감히 그랬겠는가?” 하였다.</p>	<p>○己丑/司饗院以都提調意，啓曰：“前日頒賜各處沙器，皆是前排，而弘文館以爲：‘豈以前排，頒賜本館乎?’ 遂打院吏。君賜雖微，豈宜如是? 事體至爲埋沒。” 傳曰：“弘文館必不知其然也。若知之，則豈敢如是乎?”</p>
<p>중종 23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11월 8 일(경인) 2번째기사</p>	<p>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김안로(金安老). 응교(應教) 홍언필(洪彦弼)·부응교(副應教) 최명창(崔命昌)·교리(校理) 유인숙(柳仁淑) 민수천(閔壽千)·수찬(修撰) 이청(李清)·부수찬(副修撰) 윤지형(尹止衡). 박세희(朴世熹)·박사(博士) 윤자임(尹自任)·저작(著作) 임권(任權)·정자(正字) 기준(奇遵) 등이 아뢰기를,</p>	<p>○弘文館直提學金安老、應教洪彦弼，副應教崔命昌、校理柳仁淑·閔壽千、修撰李清、副修撰尹止衡·朴世熹、博士尹自任、著作任權、正字奇遵等啓曰：“前日司饗院沙器及酒樽等</p>

	<p>“전일 사옹원의 사기 및 주준(酒樽)6222) 등의 물건을 본관에 내리라고 명하셨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록 주지 않다가 찾게 되어서야 주었으며, 또 신 등이 처음에는 전에 진배하였던 것인 줄 모르고서, 그 사기가 다 깨어진 물건이었으므로 바꾸어 준 것인 줄로 의심하여 잠시 그 서리를 때렸습니다.</p>	<p>物，命賜本館，累日不給，至於推尋，然後給之。且臣等初未知爲前排，而其沙器，皆是破物，故疑其換給，暫打其吏，</p>
<p>중종 23권, 10년 (1515 을해 / 명 정덕 (正德) 10년) 11월 9일(신묘) 1번째기사</p>	<p>김응기가 따로 아뢰기를, “신이 들건대 ‘시탄(柴炭)·어물(魚物) 및 모든 사들이는 여러 물건을, 각사(各司) 사람이 다들 저화로 장수(張數)를 계산하여 던져 주고는 빼앗아 가니, 이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아서 지극히 원망스럽고 안타깝다.’ 합니다. 호조(戶曹)가 처음에 수교(受敎)한 것을 보면 ‘무릇 잔단 물건을 다 저화로 매매(賣買)하면 원망이 일어날 것이니, 쌀로도 매매하고 저화로도 매매하라.’ 하였으니, 법을 세운 것이 이처럼 상세한데도 오히려 폐단이 있거니와, 법사(法司)는 금지하여야 마땅한데 법사도 오히려 그렇다고 합니다.</p>	<p>應箕別啓曰：“臣聞：‘柴炭、魚物及一應買雜物，各司人皆以楮貨，計張數，投擲攘取。以此商賈不通，至爲怨悶。’云。見戶曹初受敎，則乃云：‘凡細瑣之物，皆以楮貨買賣，則怨咨必興，或以米、或以楮貨買賣。’立法詳悉如此，尙有弊焉，法司當禁止，而法司尙如此云。</p>
<p>중종 23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1월 3일(을유) 2번째기사</p>	<p>경세장이 아뢰기를, “근자에 이성군 부인(利城君夫人)이 졸(卒)하였기 때문에 진풍정(進豐呈)을 그만두었습니다. 신 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물(晝物)【별례(別例)로 진상(進上)하는 것이다.】 같은 일을 말하면 성종조(成宗朝)에도 여러 번 거행하였는데, 이제 자전(慈殿)께서 폐해가 있다고 하실 것이므로 그만두었으나, 아랫사람으로서는 효성을 극진하게 해야 하는 것이니, 어버이를 위한 일은 융례(隆禮)6301)를 따르더라도 안 될 것이 없는데, 어찌 한 나라가 봉양하는 일에 작은 폐해를 염려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수(歲首)에 진풍정을 행하려 하였으나, 자전께서 이성군 부인이 졸하였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므로, 감히 굳이 청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청이 아뢰기를,</p>	<p>世昌曰：“近者進豐呈，以利城君夫人之卒，而停之。臣等竊念，如晝物【別進上也。】等事，在成宗朝亦屢爲之，今必慈殿以爲有弊，故停之，然在下，則當曲盡誠孝。爲親之事，雖從隆禮，未爲不可。豈可以一國奉，而慮小弊哉？”上曰：“歲首，將進豐呈，慈殿以利城君夫人之卒，爲未安，故不敢強請耳。”李清曰：“閭巷小民，雖至窮寒者，如遇俗節，猶且會親舊，飲食相樂，使父母歡欣焉。殿下卽位，今已累年，奉養之具，無所不至，常使</p>

	<p>“여염 백성은 곤궁한 자까지도 속절(俗節)을 당하면 오히려 친구를 모아서 음식을 먹으며 서로 즐겨서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이제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봉양하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다하여 늘 자전께서 기뻐하시게 하셨습니다.”</p> <p>하고, 임권이 아뢰기를,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몸을 봉양하는 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니, 옛말에 ‘날마다 삼생(三牲)의 봉양(6302) 을 하더라도 오히려 불효(不孝)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섬기는 데에는 양지(養志)(6303) 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근자에 진풍정을 거행하지 않은 것을 신은, 전하께서 양지를 유념하신 것이니 이는 미덕이지 잘못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말이 끝나니, 술을 내리고서 파하였다.</p>	<p>慈殿歡喜也。” 任權曰：“人子事親，不在口體。 古云：‘雖日用三牲之養，猶爲不孝’，故事親莫大乎養志。 日者不行進豐呈，臣則以爲殿下以養志爲念也。 斯爲美德，非失舉也。” 語竟，賜酒而罷。</p>
<p>중종 23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正德) 11년) 1월 8일 (경인) 1번째기사 정원과 홍문관에 술·글을 내리고 칠언 율시를 바치게 하다</p>	<p>정원과 홍문관에 술과 글을 내리고서, 상원황감(上元黃柑)이라는 제목으로 칠언 율시(七言律詩)를 지어 바치라고 명하였다.</p>	<p>○庚寅/宣醞及柑子于政院、弘文館，仍命製上元黃柑七言律詩以進。</p>
<p>중종 23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正德) 11년) 1월 10일(임진) 2번째기사</p>	<p>대비(大妃)가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상(上)의 진풍정(進豐呈)을 받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쌀 1백 석(碩)을 대비전 본궁(大妃殿本宮) 【곧 자전(慈殿)의 사장(私藏)이다.】 에 실어 보내라.”</p> <p>하고, 명하여 여기(女妓)·악공(樂工)에게 면포(綿布)(6320) 를 차등을 두어서</p>	<p>○大妃御宣政殿，上進豐呈，傳于政院曰：“其以米一百碩，輸送于大妃殿本宮。” 【卽慈殿私藏。】 命給妓工綿布有差。 是日，饗宗宰二品以上，弘文館、臺諫、承政院及入番史官二員、入番兵曹、都摠府堂上、諸將于仁政殿庭。</p>

	<p>내려 주게 하였다. 이날 종재(宗宰)·2품 이상·홍문관(弘文館)·대간(臺諫) 및 입번(入番)한 사관(史官) 2원(員), 입번한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의 당상(堂上)과 제장(諸將)에게 인정전(仁政殿)에서 잔치를 베풀었다.</p> <p>사신은 논한다. 상이 본디 변화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전도 검약(儉約)하므로 자주 수연(壽宴)을 거행하지 않는 것이요, 효심(孝心)이 지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p>	<p>【史臣曰：“上本不喜紛華，慈殿儉約，不頻舉壽宴，非孝心不至也。”】</p>
<p>중종 23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1월 25 일(정미) 5번째기사 대마 도주 종성순이 토산물을 바치다</p>	<p>대마 도주(對馬島主) 종성순(宗盛順)이 오랑구라(五郎仇羅)를 보내와서 토의(土宜)6384) 를 바쳤다.</p>	<p>○對馬島主宗盛順，遣吾郎仇羅，來獻土宜。</p>
<p>중종 24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2월 27 일(무인) 5번째기사 강원도의 백어 봉진을 감하도록 명하다</p>	<p>명하여, 강원도의 백어(白魚) 봉진(封進)을 감하게 하였다.</p>	<p>○命減江原道封進白魚。</p>
<p>중종 24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3월 3일 (갑신) 1번째기사</p>	<p>훈련원(訓練院)에서 기영연(耆英宴)을 내리고 모화관(慕華館)에서 경연관 잔치를 내리고서, 승지(承旨)를 나누어 보내어 술을 하사하였다.</p>	<p>○甲申/賜耆英宴于訓練院； 經筵官宴于慕華館，分遣承旨宣醕。</p>
<p>중종 24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3월 12</p>	<p>왜인(倭人) 사정(司正) 윤차(胤次)가 토산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p>	<p>○倭人司正胤次來獻土宜。</p>

<p>일(계사) 2번째기사 왜인 사정 윤차가 토 산물을 바치다</p>		
<p>중종 24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3월 27 일(무신) 6번째기사</p>	<p>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요사이 재변이 있는 데다 가뭄의 조짐이 있어, 지금 바야흐로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때이니, 오는 4월 초나흘날 종묘에서 친제(親祭)하신 뒤에, 음복연(飲福宴)은 거행하지 말고 단지 음복하는 절차만 거행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답하기를, “음복연은 나 역시 거행하지 않으려 한다.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만일 음복연을 거행하지 않을 양이면 음복하는 절차까지 폐할 수 없는지 예조에 물으라.” 하였다.</p>	<p>○臺諫啓前事，又啓：“近有災變，旱氣已兆，今方謹天戒。來四月初四日，宗廟親祭後，勿行飲福宴，只行飲福節次，何如？”答曰：“飲福宴，予亦欲不行耳。餘皆不允。”傳于政院曰：“若不舉飲福宴，則不得竝其飲福節次，而廢之歟？其問于禮曹。”</p>
<p>중종 24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3월 28 일(기유) 2번째기사</p>	<p>영의정 유순이 세 차례를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고, 술을 내려 돈유(敦諭)하였다.</p>	<p>○領議政柳洵辭職至三，不允，賜酒敦諭。</p>
<p>중종 24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3월 28 일(기유) 5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에게 친제(親祭)한 뒤 음복연을 거행함은, 예문에 있는 것이어서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曰：“宗廟親祭後飲福宴，在禮文，不可不行。”從之。</p>
<p>중종 24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4월 6일 (정사) 1번째기사</p>	<p>영의정 유순이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늙고 병약한 몸으로 번번이 와서 사직하기를 고하니, 내가 실로 마음에 미안하다. 이래서 윤택하는 것이다.” 하고, 이어 선은(宣醞)6453) 하니, 유순이 위의 전교를 듣고 기쁜 기색을 띠</p>	<p>○丁巳/領議政柳洵辭職，傳曰：“以老病之身，每來告辭，予實未安，玆用允之。”仍宣醞。柳洵聞上教，喜形於色曰：“今蒙上恩，雖死亦安心矣。”</p>

	며 아뢰기를, “이제 성상의 은혜를 입으니, 비록 죽더라도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중종 24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4월 26 일(정축) 4번째기사	한재 때문에 정전(正殿)을 피하고, 음식을 감하며 무악(舞樂)을 치웠다.	○以旱災，避正殿，減膳、撤樂。
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5월 4일 (갑신) 2번째기사	대마 도추(對馬島酋) 종성순(宗盛順)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물(土物)을 바쳤다.	○對馬島酋宗盛順遣人來獻土宜。
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5월 11 일(신묘) 5번째기사 경성 안에서 사삿집에 서 양을 기르지 못하 도록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政院)에 전교하였다. “좌의정이 말하기를 ‘경성 안에서 양(羊)을 기르는 자가 자못 많이 방목하여 왕래할 즈음에 벌에 말리는 여염의 곡물을 떼지어 죄다 먹고 성밖의 벼도 많이 먹어 없앤다.’ 한다. 대저 국가에서는 제사에 쓰기 때문에 부득이 길러야 하나, 사삿집에서는 길러서 어디에 쓰는가? 이 뒤로는 성 안에서 못 기르게 하고, 성밖에서 기르게 하되 춘분(春分) 후 추분(秋分) 전에는 놓아 먹이지 못하도록 엄하게 금하라.”	○傳于政院曰：“左議政以謂：‘京城內畜羊者頗多，放牧往來之際，閭閻間曝乾穀物，群聚盡食，城外禾穀，亦多喫損。’大抵國家則以用於祭祀，不得已畜之，私處則畜之何用？今後城內，使不得畜養，許令城外畜養，春分後秋分前，則痛禁毋得放牧。”
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5월 21 일(신축) 3번째기사	광필이 아뢰기를, “대구어(大口魚)로 말하면 강원도에서 나지 않는 것인데도 공진(供進)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다른 물건으로 대납(代納)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光弼曰：“如大口魚，江原道所不產，使供進不當。以他物代納，何如？”
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5월 22	정광필(鄭光弼)이 아뢴 바와 같이 향리(鄉吏)의 예(例)에 따라 세 장정 중의 한 아들을 벼슬하게 하는 일 및 강원도에서 진상(進上)하는 대구어(大口魚)를 현재 나는 다른 어물로 대납하게 할 것인지를 예조(禮曹) 및 사옹원 제조(司饗	其如鄭光弼所啓，依鄉吏例，三丁一子，許令入仕事及江原道進上大口魚，以時產他魚物，代納與否，禮曹及司饗

일(임인) 4번째기사	<p>饗院提調)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마련해서 아뢰게 하라.”</p>	院提調, 同議磨鍊以啓.”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6월 4일 (갑인) 3번째기사 박원종의 처 윤씨의 상언을 내리고, 어렵을 금하도록 한 사옹원의 관원을 추고하라 하다</p>	<p>박원종(朴元宗)의 처 윤씨(尹氏)의 상언(上言)을 내리고 전교하기를, “산림(山林)·천택(川澤)의 이(利)는 임금이 백성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난지포(難地浦)는 월산 대군(月山大君)이 생존했을 때부터 입안(立案)을 받아서 고기를 잡았고, 대군이 죽은 뒤에는 부인(夫人)과 박원종의 처 윤씨가 다시 입안을 받아서 이제까지 고기를 잡았다. 김포(金浦)·통진(通津)·교하(交河)·양천(陽川) 등에서도 위어(葦魚)를 잡아서 진상(進上)에 충당할 수 있는데, 이제 입안을 받아서 오래도록 사렵(私獵)하는 포(浦)에 대하여 진상을 핑계삼아 어렵을 금하도록 넌지시 계청(啓請)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사옹원(司饗院)의 관원을 추고하라.”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분부하신 백성과 함께 나눈다는 뜻은 지당하시나, 사옹원이 고기잡이를 금하도록 청한 것이, 소민(小民)의 물건인데도 이렇게 하면 백성과 함께 나누는 뜻에 어긋나는 데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것은 월산 대군이 생존했을 때에 성종께서 내려 주신 것인데 박원종이 죽은 뒤에 부인이 계속 차지한 것이며, 사옹원의 뜻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사옹원의 관원을 추고하라고 명하신 것은 사체에 온편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옹원이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 진상에 채우고자 하니 이것을 내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상언에 대해서는 생전에 허가한다는 뜻으로 판부(判付)하라.” 하였다.</p>	<p>○下朴元宗妻尹氏上言而, 傳曰: “山林、川澤之利, 人君當與民共之。 難地浦, 自月山大君生存時, 始受立案, 而漁獵, 大君死後, 夫人及朴元宗妻尹氏更受立案, 至于今捉魚。 金浦、通津、交河、陽川等地, 猶可捉葦魚, 以供進上, 而今以受立案久遠私獵之浦, 托進上, 隱然啓請禁獵, 甚不當。 司饗院官員, 其推之。” 政院啓曰: “上教與民共之之意, 至當。 然司饗院之請禁獵者, 若其小民之物, 而如是, 則有違於與民共之之意也。 此則必月山大君生存時, 成宗 賜給, 而朴元宗死後, 夫人仍執者, 司饗院之意, 爲是故也。 今命推司饗院官員, 於事體似未便。” 傳曰: “司饗院欲奪人之物, 以補進上, 此予意以爲不可者也。 其上言, 可判付以生前特許之意。”</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6월 6일 (병진) 1번째기사</p>	<p>정원이 정전(正殿)에 다시 기거하고 찬선(饌膳)을 줄이지 말 것을 계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丙辰/政院啓請復正殿、勿減膳, 從之。</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6월 9일 (기미) 1번째기사</p>	<p>당상 종친(堂上宗親)이 문안 들일 때에 공궤(供饋)하는 것을 다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전에 가뭄 때문에 없었었는데, 종부시(宗簿寺)가 다시 시행할 것을 청하매 그대로 따른 것이다.</p>	<p>○己未/命復堂上宗親，問安時供饋。曾以旱災減省，宗簿寺請復，從之。</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6월 12일 (임술) 2번째기사</p>	<p>정원(政院)·홍문관·독서당(讀書堂)에 선운(宣醞)6807 하되 각각 중사(中使)를 보내어 권하고, 사람마다 각각 호초(胡椒) 2승(升)과 붓·먹을 내리고, 희우(喜雨)·영칠월편(詠七月篇)·사무일(思無逸)·분지저한천(盆池貯寒泉)이란 시제(詩題)로 칠언율(七言律)을 짓게 하고 이르기를,</p>	<p>○宣醞于政院、弘文館、讀書堂，各遣中使勸之，賜胡椒，人各二升及筆墨，使製喜雨，詠《七月》篇、思《無逸》，盆池貯寒泉七言律曰</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6월 14일 (갑자) 1번째기사</p>	<p>복전의 일은, 정원(政院)이 청하매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정원이 다시 청하고 또 상전(上殿)6812 께서 감膳(減膳)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을 들어 말하므로 부득이 따랐는데, 그 뒤에 홍문관이 ‘복전이 너무 빨랐다’고 하기에 나도 생각해 보니 너무 빨랐다.</p>	<p>復殿事，政院請之，予意以爲未安，政院再請，又舉上殿，【大妃殿也。】不當減膳事而言，故不得已從之。其後弘文館以爲：‘復殿太速。’予亦思之，果太速矣。</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6월 14일 (갑자) 2번째기사 우부승지 김안국을 성균관에 보내어 선운하니, 성균관 지사 등이 전문을 올려 사례하다</p>	<p>우부승지(右副承旨) 김안국(金安國)을 성균관에 보내어 관원 및 유생에게 선운(宣醞)하고, 안국이 상지(上旨)로 유생에게 주선왕중흥송(周宣王中興頌)을 짓게 하매, 성균관 지사(成均館知事) 남곤(南袞)·동지사(同知事) 이점(李沾)·대사성(大司成) 최숙생(崔淑生) 등이 유생을 거느리고 전문(箋文)을 올려서 사례하기를, “성상의 밝은 정치가 두루 비추어 교화가 만물에 고루 미치매, 기다리던 비가 내려 아랫백성에게까지 널리 흠족하니, 기쁨이 태학에 넘치고 빛이 학궁(學宮)에 더합니다. 생각하건대, 신(臣) 남곤 등은 지식이 사리를 분별하기에 모자라고 학술이 글을 해득하기에 부족한데, 마침 성명(聖明)의 세상에서 진중한 인물에 섞여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녹(祿)만 먹으니, 관청(觀聽)하는 자가 교문(橋門)을 둘러싸는 것은 한(漢)나라의 임금이 유(儒)를 숭상하는 교화를 하던 때와 같은 때를 만났으나 너그럽고도 엄하게 태학생을 교양하는 것</p>	<p>○遣右副承旨金安國，宣醞于成均館官員及儒生。安國將上旨，命儒生製周宣王中興頌，成均館知事南袞、同知事李沾、大司成崔淑生等率儒生上箋稱謝曰： 離明旁燭，陶甄不間於洪纖；需澤下流，汪濊普及於韋布，喜溢槐市；光增杏壇。伏念，臣南袞等，識劣窺斑，術荒佔畢，偶混珍於聖代；遂尸祿於賢關。環橋門而觀聽，雖遭漢帝崇儒之化，教胄子以寬粟，曷稱虞庭典樂之官？祇速伐檀之譏，寧逃倚席之諺？何圖異數，誤加庸資？宮壺灑流，霞分上</p>

	<p>은 어찌 순(舜)임금의 조정의 전악(典樂)6813)의 관원만 하리까! 벌단(伐檀)6814)의 책망을 재촉할 뿐이니, 의석(倚席)6815)의 비평을 어찌 피할 수 있으리까! 그런데도 특별한 은수(恩數)가 이 용렬한 자에게 내려지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궁호(宮壺)6816)에 가득한 술은 상준(上樽)6817)의 향기로운 술에서 나누어 왔고, 상서(祥瑞)로운 기운을 머금은 선과(仙果)는 어주(御廚)의 진기한 음식에서 나왔으니, 뼈에 사무치고 살에 스미는 은총을 절로 알아, 모르는 사이 손발이 춤을 춥니다.</p>	<p>樽之香醞; 仙果含瑞, 露出御廚之珍奇, 自知挾骨而淪肌, 不覺舞手而蹈足。</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6월 27일(정축) 2번째기사</p>	<p>문소전 참봉(文昭殿參奉) 정희령(鄭希齡)이 아뢰기를, “간밤에 전내(殿內)에 도둑이 들어, 제사실(第四室)의 자물쇠를 빼서 부수고 장순 왕후(章順王后)의 신위판(神位版)과 독(櫝) 위의 부건(覆巾) 따위 물건을 훔쳐 갔습니다.”</p>	<p>○文昭殿參奉鄭希齡啓曰: “去夜盜入殿內, 抽破第四室鑰金, 竊章順王后神位版及櫝上覆巾等物而去。”</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6월 27일(정축) 4번째기사 원묘에 소선을 올리라고 정원에 전교하다</p>	<p>정원에 전교하기를, “예전에 태묘에 화재가 있으면 소복·소선(素膳)하고 곡림(哭臨)까지도 한 일이 예문에 실려 있으나, 원묘(原廟)6839)는 고사(古事)가 어떠한지 모르는데, 대신이 오기를 기다려서 의논하면 늦을 듯하다. 승지들도 역대의 일을 알거니와, 어찌해야 하는가?” 하매, 정원이 함께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지당하십니다. 비록 고사는 없으나 태묘의 일로 미루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禮)에 매우 합당합니다.” 하니, 소선을 올리라고 명하였다</p>	<p>○傳于政院曰: “古有太廟災, 則素服、素膳, 至於哭臨事, 載在禮文, 原廟則未敢知古事之何如也。 俟大臣之來, 而議之, 則恐其緩也。 承旨等亦知歷代之事矣, 其何以爲之乎?” 政院僉啓曰: “上敎至當。 雖未有古事, 然以太廟事推類, 則如是爲之, 甚合於禮。” 命進素膳。</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p>	<p>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 등이 당초에 ‘내일 관원을 보내어 안신제를 거행하고 신위판을 만든 뒤에</p>	<p>○大臣等議啓曰: “臣等初意, 當於明日, 遣官行安神祭, 造神位版後, 初一</p>

<p>(正德) 11년) 6월 27 일(정축) 7번째기사</p>	<p>초하룻날쯤 친행(親幸)하시면 마침 맞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소복(素服)하는 일은 차차 의논하겠으나, 의논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 【남곤(南袞)·안당(安瑒) 등의 의논이다.】 들은 ‘오늘 안으로 저녁 수라(水刺)6840) 때에 맞추어 친행하여 분향 전배(焚香展拜)하여 선령(先靈)을 위안하시어 황급하고 애통한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하고, 김詮(金詮)은 ‘오늘 미처 친행하지 못하시면 내일 친행하셔야 한다.’고 하니, 대의는 예문(禮文)이 엄매이지 말고서 황급하고 놀라는 뜻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피전(避殿)·변복(變服)하는 일은 사흘에 한하는 것이 옳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지당하다. 일이 매우 중대하므로 곧 친제해야 하겠다. 다만, 여기 있을 때와 행행(行幸)할 때에는 소복을 입어야 하겠으나, 전내(殿內)에 가서 잔을 올릴 때에도 소복해야 할 것인가?”</p> <p>하매, 대신들이 아뢰기를, “전내에서는 길복(吉服)을 입으셔야 하고, 백관도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p> <p>하였다.</p>	<p>日間, 親幸則適中矣。 素服事, 徐將議之。 但議者或以爲: ‘【南袞、安瑒等議。】 雖今日內及夕水刺, 【即進御膳之稱。】 當親幸, 焚香展拜, 慰安先靈, 以示蒼黃哀遽之意爲當。’ 金詮則以爲: ‘今日未及親幸, 則明日當親幸。’ 大意欲不拘禮文, 以示違遽驚動之意耳。 避殿、變服事, 則限三日爲可矣。” 傳曰: “所啓至當。 事甚重大, 當即親祭。 但在此及行幸時, 當着素服, 詣殿內奠爵時, 亦當爲素服乎?” 大臣等啓曰: “殿內當御吉服, 百官皆當如是。”</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6월 27 일(정축) 9번째기사 대신이 저녁 수라 때 에 친행할 것을 아뢰 니 따르다</p>	<p>대신들이 아뢰기를, “오늘 저녁 수라 때에 친행(親幸)하시는 것이 매우 합당하나, 만약에 늦어서 미처 못하다면 분향 전배(焚香展拜)만 하고 내일 관원을 보내어 별제(別祭)를 거행하게 해야 하며, 또 저녁 수라 때에 행여 미처 친제하지 못하면 내일 지방독(紙榜讀)을 만들어서 친제하시는 것이 어떠합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저녁 수라 때에 맞추어 친제하겠다.”</p> <p>하였다.</p>	<p>○大臣等啓曰: “今日夕水刺親幸, 甚合, 若晚而未及, 則只焚香展拜而已, 明當遣官行別祭。 且今夕水刺, 幸未及親祭, 則明日爲紙榜讀而親祭, 何如?” 傳曰: “予當及夕水刺親祭。”</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6월 27</p>	<p>이날부터 감선 철악(減膳撤樂)하였다.</p>	<p>○自是日, 減膳、撤樂。</p>

일(정축) 13번째기사	<p>광필 등이 아뢰기를, “요즈음 날씨가 아주 더워서 상체(上體)6848) 가 매우 초로(焦勞)하시므로 문안합니다. 또, 지존(至尊)의 몸으로 여러 날 소선(素膳)을 드셔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자전(慈殿)이 계시니 더욱 소선을 그만두고, 먼저 드시고서 웃전[上殿]에 권하셔야 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신주를 찾고 싶을 뿐인데, 기운에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소선을 그만두는 일은, 소복(素服)하는 날이 오래 남지 않았으니, 소복하는 동안을 소선하는 기한으로 삼고자 한다. 친국하는 일은 지금 소복하는 중이므로 할 수 없으며, 이레 뒤에 어그러진 꼬투리가 있는 사람은 친히 추문하고자 하나, 옥사(獄辭)를 보아서 하겠다.”</p> <p>하매, 광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소복하는 일은, 고사(古史)를 보면 사흘 또는 닷새에 지나지 않는데, 닷새도 오랜 날짜이거니와, 지금은 이레까지 기한하였으나 이미 사흘을 지냈으니, 웃전을 위하여 상께서 먼저 소선을 그만두셔야 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이레를 소복의 기한으로 하고자 하나, 자전이 계시므로 이레까지 소선할 수 없으니, 닷새로 기한하는 것이 옳겠다.”</p> <p>하매, 광필 등이 다시 소선을 그만두기를 청하였으나, 전교하기를, “바야흐로 신주를 찾는 중인데, 어찌 차마 육선(肉膳)을 들겠는가!” 하였다.</p>	<p>光弼等更啓曰：“近者日候極熱，上體甚焦勞，故問安。且以至尊之體，不宜多日行素，況有慈殿，宜先除素，先進以勸上殿。”傳曰：“此事甚重大，欲得神主而已，氣有何不平乎？開素事，素服之日未久，意欲以素服，爲行素之期也。親鞫事，今在素服，不可爲也。七日後，有違端之人，則欲親問也。當見獄辭而爲之。”光弼等更啓曰：“素服事，以古史見之，不過三日，或五日，而五日已久矣。今則至限七日，而已過三日，請爲上殿，須自上先開素。”傳曰：“予欲以七日，爲素服之限，以有慈殿，不可至七日行素，限五日可也。”光弼等更請開素，傳曰：“方索神主，豈忍進肉膳乎？”</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正德) 11년) 7월 2일 (경진) 1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가 육조(六曹)를 거느리고 문안하고서, 소선(素膳)을 그만두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천고에 없던 변을 당하였으니, 내 애통한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p>	<p>○辛巳/議政府率六曹問安，仍請開素，傳曰：“今遭千古未有之變，予心何極？身則尚安。予初意，素服之間，欲行</p>

<p>(신사)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소선을 그 만두기를 청하다</p>	<p>몸은 아직 편안하므로, 내가 처음에는 소복하는 동안 소선하려 하였는데, 어제 대신이 먼저 소선을 중지하여서 옷전[上殿]에 권하라고 청하므로, 이미 닷새로 기한하였으니 옷전이 계시더라도 닷새의 기한은 고칠 수 없다.” 하였다.</p>	<p>素也，昨大臣請先開素，以勸上殿，故既以五爲限矣。雖有上殿，五日之限，不可改也。”</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7월 3일 (임오) 2번째기사</p>	<p>윤은보(尹殷輔)가 의금부(義禁府)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명견(命堅)은 어그러진 꼬투리가 있기는 하나, 기운이 매우 지쳤으므로 오늘은 구태여 더 신문할 수 없습니다. 전에 문소전에서 두번째로 은향함(銀香奩)을 잃은 것은 숙석(叔石)이 훔친 것이라 하여, 그 아내의 아버가 은장(銀匠)이므로 하품은(下品銀)으로 만들어 바쳤으니, 이것도 중대한 일이며, 향함을 잃었을 때에 문에 구멍을 뚫었던 곳이 바로 지금 뚫려 깨진 곳이므로 형적이 매우 의심할 만하니, 형추(刑推)하기를 청합니다. 또, 문소전의 저녁 수라(水刺) 뒤에는 은기(銀器)를 다 장(櫥)에 넣어 봉폐(奉閉)하니, 수라 뒤에는 참봉(參奉) 및 상의원(尙衣院)의 관원과 장인(匠人)으로 하여금 향함 등 은품(銀品)을 간심(看審)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숙석의 일은, 매우 의심할 만하니, 끝까지 추문(推問)해야 하리라. 명견은 아주 지쳤다면 그 정상을 알아내지 못할 듯하니, 극진히 구료(救療)해야 하리라. 은함을 간품(看品)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p>	<p>○尹殷輔自義禁府來啓曰：“命堅，雖有違端，氣甚困憊，故今日未敢加訊。曩於文昭殿，再失銀香奩，乃謂叔石所盜，而其妻父乃銀匠，故以下品之銀造納，此亦重事。且失香奩時，所穿戶穴，乃今穿破之處，形跡甚可疑焉，請刑推。且文昭殿夕水刺後，則銀器皆入櫥封閉，水刺後，請令參奉及尙衣院官員、匠人，看審香奩銀品。”傳曰：“叔石事，甚可疑焉，可窮推。命堅，若極困憊，則恐未得其情，須極救療，可也。銀奩看品事，依啓。”</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7월 4일 (계미) 1번째기사</p>	<p>숙석(叔石)은 어제 형추하여도 승복하지 않았으나, 전에 관원과 동료에게 화를 낸 일이 매우 명백하고 은향함(銀香奩)을 훔쳤던 일도 매우 명백한데도 바른 대로 공초(供招)하지 않으니, 일차에 엽매이지 말고 형추하기를 청합니다.”</p>	<p>叔石則昨日刑推，不服，曾與官員及同僚守僕發怒之事甚明，而盜銀香奩事，亦甚明白，猶不直招，請不拘日次刑推。”</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7월 10</p>	<p>전교하였다. “열 이튿날 뒤로는 길복(吉服)을 해야 할 것이나, 지금 아직 옛 신주(神主)를 찾지 못하였고 근래 재변도 거듭되므로, 길복을 한 뒤일지라도 도로 정전(正</p>	<p>○己丑/傳曰：“十二日後，當卽吉，然時未得舊神主，而近來災變亦疊。雖卽吉之後，當不復正殿，亦令減膳撤</p>

<p>일(기축) 1번째기사</p>	<p>殿)에 거처하지 않고 또한 감선 철악(甘膳撤樂)하게 해야 할 것이니, 친제(親祭) 뒤에 환궁(還宮) 할 때는 악기(樂器)를 벌여 두되 연주하지 말도록 하라. 또, 문소전 참봉(文昭殿參奉)은 일에 익숙하고 오래 복무한 자로 차임(差任)하라.”</p>	<p>樂，親祭後還宮時樂器，其令陳而不作。且文昭殿參奉，其以諳鍊久仕者，差之。”</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7월 12 일(신묘) 1번째기사</p>	<p>상이 문소전에 친제하고, 시위(侍衛)하는 장사(將士)와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승정원(承政院) 관원들에게 외정(外庭)에서 음복(飲福)하도록 명하였다.</p>	<p>○辛卯/上親祭于文昭殿，命侍衛將士、兵曹、都摠府、承政院，飲福於外庭。</p>
<p>중종 25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7월 21 일(경자) 4번째기사</p>	<p>삼공(三公)이 아뢰기를, “상께서는 백성을 지극히 돌보시나, 수령(守令) 중에는 삼가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들건대, 금천 현감(衿川縣監) 정희(鄭喜)는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마구 거두되, 진상(進上)하는 고기를 잡는 그물에 숙마(熟麻)가 필요하다 하여 매호(每戶)에 분정(分定)해서 거두고, 또 진상하는 채소를 관(官)에서 장만해서 바친다 하여 그 가물(價物)을 백성에게 분정해서 거두고, 또 공탄(貢炭)을 빙자하여 민호(民戶)에 숫 한 말에 대하여 쌀 한 말을 분정해서 거둔다고 하니, 추고(推考)하여 정죄(定罪)해서, 한 사람의 징벌이 백 사람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p>	<p>○三公啓曰：“上之恤民至矣，而守令不謹者多。聞，衿川縣監鄭喜，不恤民隱，多般橫斂。稱進上捉魚綱罟，熟麻分徵於每戶。且進上菜蔬，以官中備納，其價物，分斂於民。且依憑貢炭，分定民戶，每炭一斗，斂米一斗云，請推考定罪，懲一警百。</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8월 1일 (경술) 2번째기사 재변으로 인해 감선 철악하는 것은 마땅하 나 시학을 위해 정전</p>	<p>삼공이 아뢰기를, “이즈음 재변으로 인하여 감선 철악(減膳撤樂)하여 행실을 닦는 실지를 보이시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학(視學)6878) 과 책사(策士)는 모두 국가의 대사이니, 얼마 후에는 이 성례(盛禮)를 행해야 하는데, 상(上)께서 정전(正殿)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전을 피하는 것은 기한이 없을 수 없고, 신하들을 접견하고 정사를 살피시는 것도</p>	<p>○三公啓曰：“近因災變，減膳、撤樂，以盡側修之實，至當矣。但視學策士，皆國家大事，近將舉此盛禮，不復正殿，則不可爲已。且避殿不可無期，接群臣、視事，亦不可避殿而行之，請復正殿。且既授臣等以三公之職，而常未聞朝廷之事，使錄事聞見。錄事</p>

<p>으로 돌아가기를 삼공이 아뢰다</p>	<p>정전을 피하여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정전으로 돌아가소서. 그리고 신 등에게 이미 삼공의 직책을 주시었는데도 항상 조정의 일을 직접 듣지 못하고 녹사(錄事)를 시켜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녹사라는 자들은 모두가 용렬한 무리들이고 국가의 대사를 매양 남보다 늦게 들으니, 이것은 지극히 미편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한림(翰林)으로 사록을 겸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전과 같이 할 수는 없겠으나, 한림과 주서(注書)는 모두 춘추관의 일을 겸하였고 신 등 역시 이를 겸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국가에 관계되는 일은 주서와 한림이 본부(本府)의 사록을 불러서 말을 전해 보내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피전(避殿)하고 감膳(減膳)하는 것은 비록 문소전(文昭殿)의 대변(大變) 때문이지만 그러나 요즈음 평안·황해·경상도에 풍수재(風水災)가 있다 하니, 이 또한 피전 감膳해야 할 일이다. 정전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시학할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피전할지라도 시학은 할 수 있는 것이니 시학과 재변은 경중이 서로 다를 것이다. 또 시학은 급급한 일이 아니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조정의 일은 마땅히 대신이 먼저 알아야 하는데 맨 뒤에야 듣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한림·주서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라.”</p> <p>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p> <p>“한림·주서로 하여금 정부에 통보하게 하라.”</p> <p>하매, 정원이 아뢰기를,</p> <p>“삼공이 조정의 큰일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신 등 역시 미편한 일로 압니다. 그러나 주서는 정원의 낭관이니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한림은 전일에 사록을 겸했던 예가 있습니다만 글로 써서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녹사를 불러서 말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글로 베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방할</p>	<p>類皆庸劣，國家大事，每聞於人後，至爲未便。古則以翰林兼司錄。今雖不可如古事，但翰林、注書皆兼春秋，臣等亦兼春秋，今後凡關國事，請令注書、翰林，招本府錄事，傳說而送。”</p> <p>傳曰：“避殿、減膳，雖因文昭殿大變，然近日平安、黃海、慶尙道報風水災，此亦可避殿、減膳。若不復殿而不得視學則已矣，雖避殿，可視學，則視學與災變，輕重不侔，視學又非汲汲，其更議而啓之。朝廷之事，大臣宜先知之，而最後得聞不可也。當使翰林、注書通說。”</p> <p>傳于政院曰：“令翰林、注書，通于政府。”</p> <p>政院啓曰：“以三公未聞朝廷大事，臣等亦以爲未便。但注書爲政院郎官，不可爲也。翰林則前日亦兼司錄，已有前例。但不可書送，招錄事傳說，使之謄書以歸，則似無妨矣。”</p>
-------------------------	--	--

	<p>것 같습니다.” 하였다.</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8월 5일 (갑인) 3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정전을 피하여 계시니, 조정에서는 음복(飲福)할 수 없고 다만 성균관의 관원들만 음복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 하라’고 전교하였다.</p>	<p>○禮曹啓曰：“今方避正殿，朝廷不可飲福，只令成均館官員飲福，何如？” 傳曰：“可。”</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8월 11일(경신) 3번째기사 호조에서 내의원의 술 빛는 쌀을 감량하기를 청하다</p>	<p>호조가 아뢰기를, “내의원(內醫院)의 술 빛는 쌀은 횡간(橫看)6891)에 적혀 있는 것이 1백 석(碩)이었는데, 병진년(6892)에 80석을 더하고, 을해년(6893)에 또 영경전(永慶殿)과 희릉(禧陵)을 위하여 1백 석을 더해서 모두 2백 80석이 되었습니다. 성종조(成宗朝)에는 삼전(三殿)께서 임어(臨御)하시고 금지옥엽(金枝玉葉)이 번성하였는데도 횡간에 적힌 1백 석으로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조(廢朝) 병진년의 가수(加數)와 을해년의 별가(別加) 1백 석까지 쓰고 있으니, 참작하여 감량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경전과 희릉의 소용은 3년 후면 없어도 되는 것이니, 병진의 가수 80석만 감량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p>	<p>○戶曹啓曰：“內醫院釀酒米，橫看所載一百碩，而丙辰年加八十碩，乙亥年又爲永慶殿、禧陵而加一百碩，共二百八十碩。成宗朝三殿臨御，而金枝玉葉亦繁，以橫看一百碩亦可支用。今則用廢朝丙辰年加數及乙亥年別加一百碩，請量減。”上曰：“永慶殿、禧陵所用，則三年後自可無矣。丙辰年加數八十碩，減之可也。”</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9월 5일 (계미) 1번째기사</p>	<p>동부승지 김안로가 병모(病母)가 있다 하여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승지의 직임은 매우 중한 것이라 경솔히 체직할 수 없으나, 사장(辭狀)을 보니 정상이 매우 절박하다. 내가 바야흐로 효로써 나라를 다스리려 하고 있으니, 윤택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체직하여 한관(閑官)으로 삼을 것을 명하고, 병모에게 약이(藥餌)와 주육(酒肉)을 특사하였다.</p>	<p>○癸未/同副承旨金安老以有病母辭，傳曰：“喉舌之任甚重，不可輕遞，但觀辭狀，情甚迫切。予方以孝理國，不可不允。”命遞爲閑官，仍特賜病母藥餌酒肉。</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9월 8일 (병술) 1번째기사 대간이 흉년으로 인해 주악을 내리지 말기를 청하다</p>	<p>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이어 아뢰기를, “내일 대비전의 곡연(曲宴)6932) 은 일국(一國)에서 봉양하는 것이라 풍악을 써도 가하지만, 들으니 기영회(耆英會)와 궐정 사연(闕庭賜宴)에도 풍악을 쓰도록 명하시었다 하니, 올해는 농사가 크게 흉년이 들었고 재변이 잦아 이제 겨우 정전으로 돌아오시었는데 주악(酒樂)을 내리심은 불가한 듯합니다.”</p> <p>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유생(儒生)으로서 패행자(悖行者) 37인 【시장[試圍]에서 빈공 유생(賓貢儒生)을 난타하고 소란을 피워서 시취(試取)하지 못하게 했던 일을 말한다.】 은 이미 조율(照律)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문경동(文敬全) 【그때 시관(試官).】 이 그 읍의 유생들을 많이 이끌고 갔기 때문에 다른 유생들이 정실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감히 분풀이를 하여 그 누(累)가 시장에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중대한 일인데 문경동이 변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파직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기영회와 사연에는 풍악을 내리지 말고 술만 내리도록 하라. 신거이(愼居易)는 역시 《대전(大典)》의 법에 따라서 환차(換差)6933) 하지 말게 하라.”</p> <p>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p>	<p>○丙戌/臺諫啓前事，仍啓曰：“明日大妃殿曲宴，則以一國奉養，雖用樂，猶可也。聞於耆英會及闕庭賜宴，亦命用樂。今歲歉甚，而災變疊見，今才復殿，而賜酒與樂，似不可也。”憲府啓：“慶尙道儒生悖行者三人，【謂試圍亂打賓貢儒生，相喧闐，使不得試也。】已照律矣。然此皆由文敬全【其時爲試官。】多率其邑儒生而往，故儒生等以爲有情，敢肆其憤，累及試場。夫科舉重事，而敬全使之生變，請罷。”傳曰：“耆英會及賜宴，其勿賜樂，而只賜酒。愼居易，亦依《大典》之法，勿令換差，餘皆不允。”</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9월 9일 (정해) 1번째기사</p>	<p>후원(後苑)에서 곡연을 베풀고, 또 종친 1품과 재상 2품 이상 및 대간·입직 제장(諸將) 등을 대궐 뜰에 모이게 해서 1등 선운(宣醞)을 내렸다. 훈련원에서는 기영(耆英)을, 모화관에서는 경연관을 연향하였다.</p>	<p>○丁亥/設曲宴于後苑。又會宗親一品、宰相二品以上、臺諫及入直諸將等于闕庭，賜以一等宣醞。宴耆英于訓練院；經筵官于慕華館。</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9월 14일(임진) 1번째기사</p>	<p>용개가 아뢰기를, “유미(柳湄)의 말을 듣건대 ‘평안도 강변(江邊)의 여러 고을에서 공상(貢上)하는 인삼(人蔘) 중에, 정향(丁香)이라고 하는 생기 있는 인삼을 가지고 서울에 오면, 방납(防納)6940) 하는 사람이 으레 물건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자기</p>	<p>用漑曰：“聞柳湄之言：‘平安江邊列邑貢人蔘，名其有生氣者曰丁香，人蔘齋持人到京，防納之人指爲品惡，例以其家私備者代納，徵本價于各官，持來人</p>

<p>조강에서 새 잠실 혁파와 평안도 강변 지역의 공상하는 인삼의 방납문제를 논의하다</p>	<p>집에 사사로이 비축한 것을 대신 바치고는 본가(本價)를 각 고을에서 받으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 폐해를 끼침이 너무도 심하다.’ 하니, 감사로 하여금 수합(收合)하고 진상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해조(該曹)에 묻도록 명하였다.</p>	<p>貽弊已甚.’ 請令監司，收合封進。” 上命問于該曹。</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9월 30일(무신) 1번째기사 흉년으로 인한 평안도와 황해도의 구휼문제를 논의하다</p>	<p>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이유·문경동의 일을 아뢰었다. 지사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지금 평안도에 흉년이 극심하니, 무릇 시급하지 않은 일은 모두 제폐해야 하는데 제용감(濟用監)·상의원(尙衣院)의 당물(唐物)6980) 무역도 운반하는 데 폐단이 있으니 또한 제감해야 하고, 국가에서 비록 표리(表裏)6981) 를 쓰는 일이 있지만 토산(土産)으로 대신하고 당물을 쓸 것이 없습니다. 또, 평안도는 군졸이 점차로 줄어저 조종(祖宗) 때와 다르니, 회복시킬 방도를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영사 신용개는 아뢰기를, “황해도가 흉년이기 때문에 이미 곡식을 옮기라는 분부가 계셨는데, 또한 듣건대 평안도 역시 흉년이라니, 곡식을 옮겨 흉년 구제하는 일을 마땅히 황해도 구제하듯 해야 하겠으나, 지경이 잇닿은 두 도가 모두 다 흉년이 들었으니 구제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충청도에 저장한 군자(軍資)도 모두 고갈되고 회계에 헛숫자만 늘어 놓았으니, 마땅히 호조로 하여금 다른 데 곡식 수효를 헤아려보아 수로(水路)로 평안도에 조운(曹運)하여 구제하도록 하소서.” 하고, 순손은 아뢰기를, “군자가 민간에 흩어져 있는데 만일 흉년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흉년 구제하기가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해도는 이미 곡식을 옮겨 흉년을 구제하게 하였지만, 평안도가 황해도와 다름이 없다 하니, 모두 곡식을 옮겨 구제해야 한다. 당물 무역하는 일은 이</p>	<p>○戊申/御朝講。 臺諫啓李瑠、文敬全事。 知事張順孫曰：“今平安道，凶荒莫甚，凡不急之事，可盡除之。 濟用監、尙衣院唐物貿易，馱載有弊，亦可減也。 國家雖有進表裏之事，代以土産，不須用唐物。 且平安道軍卒漸耗，與祖宗朝有異，蘇復之方，不可不盡。” 領事申用漑曰：“黃海道飢歉，故已有移粟之教。 又聞，平安道亦饑，移粟救荒之事，當如救黃海道也。 二道連境，竝皆凶荒，無相救之理。 且於忠清道，所儲軍資皆乏，會計虛張其數，宜令戶曹，計他處穀數，沿水路，漕運于平安道，以賑之。” 順孫曰：“軍資散在民間，若以爲凶歉，不爲徵還，則於救荒亦難矣。” 上曰：“黃海道則已令移粟救荒，而平安道與黃海道無異，則皆可移粟以賑也。 唐物貿易事，已教該司，隨宜減之耳。” 用漑曰：“今正朝使之行，正值中原有聲息，凡所貿易，宜盡除，以便往來。” 上</p>

	<p>미 해사(該司)로 하여금 적당하게 감하도록 했다.”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이번 정조사(正朝使)6982) 의 길이 마침 중국에 성식이 있는 때에 가게 되었으니, 무릇 무역할 것을 마땅히 모두 제폐하여 갔다오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는 서책도 무역하지 말 것을 호조가 아뢰기에, 내가 ‘서책은 국가의 보물이니 무역하지 않을 수 없다.’ 했다.” 하매, 순손이 아뢰기를, “평안도에 흉년이 심하여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무릇 폐단있는 일은 반드시 먼저 그 근본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였다.</p>	<p>曰：“前日竝不貿書冊事，戶曹啓之。予謂 ‘書冊，國家之寶，不可不貿也。’” 順孫曰：“平安道飢甚，馱載甚難，凡弊事，必先除其根本。”</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11월 15일(임진) 7번째기사 정원·홍문관에 선운하다</p>	<p>정원·홍문관에 선운(宣醞)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임금이 시(詩)를 좋아함은 진실로 불가하다. 그러나 글제를 내려 제술(製述)하도록 한 조종조의 고사(故事)가 있으니, 희설시(喜雪詩)를 지어 올리고 또한 각자 아주 취하게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내관(內官) 김경(金瓊)이 취하여 누웠다는 것을 듣고, 다시 중사(中使) 박인손(朴仁孫)을 시켜 효유하기를, “술과 안주는 마땅히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고, 옛적에 금련촉(金蓮燭)을 내린 고사가 있으므로 지금 납촉(蠟燭) 스무 자루를 내리니, 촛불을 밝히고 밤이 새도록 마셔라.” 하였다.</p>	<p>○宣醞于政院、弘文館，仍傳曰：“人君好詩，固不可也。然命題製述，有祖宗朝故事，其製喜雪以進，且各極醉。” 上聞內官金瓊醉臥，更命中使朴仁孫，往諭曰：“酒肴當使繼之。古有賜金蓮燭事，今賜蠟燭二十柄，其明燭達夜以飲。”</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11월 19일(병신) 1번째기사</p>	<p>홍문관과 승정원에 선운(宣醞)하고, 이어 백납촉(白蠟燭) 스무 자루를 승정원에 내렸다.</p>	<p>○丙申/宣醞于弘文館、承政院，因賜白蠟燭二十柄于政院。</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11월 20 일(정유) 1번째기사</p>	<p>몽정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제사에 쓰는 황우(黃牛)와 흑우(黑牛)를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도회관(都會官)을 정하여 상납하게 하는데, 다만 민간에 흑우는 희소하고 황우는 그래도 쉽게 구득할 수 있다 하지만, 소값으로 거두어 모으는 면포(綿布)가 7~8동(同)이나 되어 【50필이 1동이 된다.】 해마다 이러하므로 폐단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어느 사람의 말에 ‘국가에서 만일 마장(馬場)을 놓아 먹일 만한 곳을 가리어 다수 놓아 먹인다면, 몇 해 안 되어 그런 폐단이 제거될 것이다.’ 하였는데, 그 말이 합당한 듯하니, 수의(收議)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다.</p>	<p>夢井曰：“臣見祭用黃牛黑(生) [牛] , 令外方定都會官, 以供上納。 但民間, 黑牛本稀貴, 黃牛猶可易得, 而收合綿布, 其價至七八同。【五十匹爲一同。】 每年如是, 爲弊不貲。 言者有曰: ‘國家若依馬場, 擇可放處, 多數放牧, 不出數年, 其弊可除。’ 此言似當, 請收議處之。”</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11월 21 일(무술) 3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제사에 쓰는 황우와 흑우는, 목장(牧場)을 설치하고 나누어 키우는 일을 삼공(三公)에게 의논하라.”</p>	<p>○傳曰：“祭用黃、黑牛, 設場分畜事, 議于三公。”</p>
<p>중종 26권,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 (正德) 11년) 11월 29 일(병오) 1번째기사</p>	<p>상이 교성군의 별세로 소찬(素饌)을 드니, 정원이 육선(肉膳) 들기를 청하여 재차 아뢰매, 윤허하였다.</p>	<p>○丙午/上以交城君卒, 進素饌, 政院請用肉膳。 再啓, 乃許。</p>
<p>중종 27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1월 1일 (정축) 1번째기사</p>	<p>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망궐례(望闕禮)7297) 를 거행하였다. 드디어 대비전(大妃殿)에 진하(進賀)7298) 하고, 선정전(宣政殿)에서 하례를 받으며 진풍정(進豊呈)을 차렸고,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종재(宗宰)7299) 2품(品) 이상과 승정원·홍문관·대간 및 입번(入番)한 제장(諸將)과 사관(史官) 등을 대접하였다.</p>	<p>○丁丑朔/上率百官, 行望闕禮, 遂進賀于大妃殿, 受賀, 設進豊呈于宣政殿, 餉宗宰二品以上、承政院、弘文館、臺諫及入番諸將、史官等于仁政殿庭。</p>
<p>중종 27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1월 6일 (임오) 3번째기사</p>	<p>대마 도주(對馬島主) 종성순(宗盛順)이 오도음포(吾都音浦)를 보내어 양전(壤奠)7306) 을 바쳐 왔다</p>	<p>○對馬島主宗盛順遣吾都音浦, 來獻壤奠。</p>

<p>중종 27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1월 15 일(신묘) 1번째기사</p>	<p>조하(朝賀)를 받고서 선은(宣醞)7327) 과 글을 정원과 홍문관에 내리며, 이어 육적 회골(陸續懷橘)7328) 로 칠언 율시(七言律詩)를 지어 바치도록 하였다.</p>	<p>○辛卯/受朝賀， 下宣醞及柑子于政院、弘文館，仍命製進陸續懷橘七言律詩。</p>
<p>중종 27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1월 20 일(병신) 3번째기사</p>	<p>우리 나라는 종묘(宗廟) 외에 따로 문소(文昭)·연은(延恩) 두 전(殿)을 세우고 평시에 하루 세 번 상식(上食) 올리는 예에 따라 진실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라면 모두 올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비록 선왕(先王)들께서 조상 받 들기를 효성으로 하고 돌아간 분 섬기기를 생존한 분같이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부터 종묘에는 소략하고 두 전에만 번독스러운 폐단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중히 여길 정묘(正廟)에는 소홀하고 원묘(原廟)에 만 번독스러워, 하루에 세 번 상식을 올릴 뿐만 아니라 별도로 올리는 일이 또한 잦아, 겨우 차렸다가 도로 거두고 거두자마자 다시 차리며 환시(宦侍)와 재관(齋官)들이 전 안을 잡답(雜踏)하면서 때없이 여닫고 절차없이 드나드니, 청결하고 정숙하게 신(神)과 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p>	<p>我國家，於宗廟之外，別立文昭、延恩兩殿，以象平時日三上食，凡所可供，罔不畢薦。 此雖出於先王奉先思孝，事亡如事存之意，然當時之弊，亦已略於廟，而瀆於殿矣。 忽於所當重之正廟，而瀆於原廟，一日之內，不唯三上食而已，其所別供亦數，纔設復徹，已徹復設，宦寺、齋官雜沓於殿內，開闔不以時，出入不以節，甚非所以清靜交神之道也。</p>
<p>중종 27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1월 25 일(신축) 3번째기사 실농이 심한 각도의 진상과 생선을 감하도 록 조치하다</p>	<p>전교하기를, “올해는 제도(諸道)가 바야흐로 흉년 구제 정사에 급한데, 실농(失農)이 더욱 심한 각 고을의 진상하는 잡물(雜物)을 전대로 공납하게 하면 백성이 더욱 곤궁할 것이다. 경기(京畿)에서 진상하는 생선도 규정에 구애되어 조금만 차지 않아도 일체 퇴해 보내거나 혹은 배로 받아, 쉽사리 마련해 바치지 못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긴다. 각도의 실농이 더욱 심한 각 고을의 진상을 5월까지 임시 변통하여 감하는 일과 생선 길이를 요량해서 감하는 일을 해조(該曹)와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같이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曰：“今年諸道，方急荒政。 其失農尤甚各官，進上雜物，依舊供納，則民益困窮。 京畿進上生鮮，拘於尺寸，少或不准，一切點退，或以倍納，未易備供，民甚苦之。 各道失農尤甚各官，限五月， 進上權減事、生鮮尺寸量減事，該曹與司饗院提調，同議以啓。”</p>
<p>중종 27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2월 1일</p>	<p>또한 낙동강은 바다와 연해져 상선(商船)이 통행할 수 있는데, 하류 사람들이 그 이득을 독점하려고 서로 낭설을 퍼뜨리기를 ‘소금배가 만일 낙동강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다.’ 하여, 이 때문에 어염(魚鹽)이 극히 귀하여</p>	<p>且洛東江，與海相連，商船可以通行，而下流之人欲專其利，胥動訛言以謂：‘鹽船若上洛東江，則不利於人。’ 以</p>

<p>(정미) 1번째기사</p>	<p>흉년 구제에 크게 방해되니, 각별히 유시(諭示)를 내려 통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p>	<p>此，魚鹽極貴，其於救荒，大有所妨，請各別下諭，使之通行。”</p>
<p>중종 27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2월 16 일(임술) 1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익양군(益陽君) 이회(李懷)7434) 가 삼년상(三年喪)을 당하였을 적에 두 차례 쌀과 콩을 내리고 또 녹(祿) 일과(一科)7435) 를 주었었으니, 지금 상중(喪中)에 있는 이성군(利城君) 이관(李慣)7436) 과 영산군(靈山君) 이전(李愔)에게도 또한 이 예에 따라 내림이 가하다.”</p>	<p>○壬戌/傳曰：“益陽君懷，遭喪三年，再賜米太，又給祿一科。今在喪利城君慣、靈山君愔，亦依此可賜也。”</p>
<p>중종 27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2월 23 일(기사) 5번째기사</p>	<p>야대에 나아갔다. 검토관 유용근이 아뢰기를, “충서(忠恕)7466) 는 가장 큰 도리이니, 모름지기 체념(體念)해야 되는 법입니다. 임금이 사냥할 적에 금수(禽獸)의 새끼나 알을 해치지 아니함은 인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 진상하는 아장(兒獐)7467) 은, 배를 가르고 속에 든 것을 끌어내어 반찬으로 공상(供上)하니, 그 잔인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으로선 마땅히 하지 못할 일인 듯합니다.”</p>	<p>○御夜對。檢討官柳庸謹曰：“忠恕之道最大，須可體念。人君須於蒐狩之間，不害禽獸之胎卵者，所以養仁也。兒獐之獻，以其在腹中者，折而出之，以供膳羞，其殘忍可勝言哉？在人君，似不當爲也。”</p>
<p>중종 27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2월 29 일(을해) 4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이 뒤부터 아장(兒獐)·아록(兒鹿)·평알 등 물건은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하라.”</p>	<p>○傳曰：“今後兒獐、兒鹿、雉卵等物，勿令封進。”</p>
<p>중종 27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4월 3일 (무신) 5번째기사</p>	<p>헌부에 전교하였다. “요사이 위로는 천재가 일고 아래로는 흉년이 드니, 바로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해야 할 때이다. 궐내(闕內)에서는 무릇 잔치하며 술 마시는 일을 일체 하지 않는데, 사대부들이 더러 기녀를 끼고 놀이하는 데도 법사가 전연 단속하지 않으면서 단지 민간에서 한 병 술이라도 범하면 다스리니, 전도(顛倒)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뒤로는 사대부들이 잔치하며 술 마시는 것을 통엄하게 금하라.”</p>	<p>○傳于憲府曰：“近日上有天災，下有飢荒，正恐懼修省，以答天譴之時也。闕內凡宴飲之事，一切不爲，而士大夫則或挾妓遊戲，法司全不糾舉，只治民間瓶酒之犯，不其顛倒乎？今後凡士大夫宴飲者，其痛禁。”</p>

중종 27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4월 14 일(기미) 1번째기사	전교하였다. “단오(端午) 때 진풍정(進豊呈)할 것을 대비전(大妃殿)에 품하였더니, 연사가 흥년이라고 굳이 사양하시니 하지 말라.”	○己未/傳曰：“端午進豊呈事，稟于大妃殿，則以年歎固辭，其勿爲之。”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5월 5일 (기묘)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사신 대음 화상(大陰和尚) 등 20여 인이 와서 방물(方物)을 바쳤다.	○己卯/日本國使臣大陰和尚等，二十餘人來獻方物。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5월 10 일(갑신) 1번째기사	대비가 미령한 뒤로 상이 친히 음식상을 살피고 약(藥)을 올리며 또한 미리 맛을 보았다.	○甲申/自大妃未寧之後，進膳，上親視；進藥，亦先嘗。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5월 17 일(신묘) 4번째기사	상이 자전의 음식을 보살폈다.	○上視膳。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5월 30 일(갑진) 1번째기사	묘시(卯時)에 상이 이어소(移御所)에 문안하여 친히 찬수를 보살피고 미시에 환궁하였다.	○甲辰/卯時，上問安于移御所，視膳，未時還宮。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6월 1일 (을사) 6번째기사 사용원 제조 등이 육 선을 들도록 청하니	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상께서는 유순(柳詢)의 죽음 때문에 지금까지 소선(素膳)을 드신다하니,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요즈음 자주 이어소(移御所)에 나아가 문안하시느라 상께서는 피로할 때도 없지 않으실 것이니 육선(肉膳)을 들이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司饗院提調等來啓曰：“臣等聞上以柳詢之卒，至今進素膳，至爲未安。近日，數幸移御所問安，上體不無勞倦矣，請進肉膳。”傳曰：“予哀大臣之逝，而不忍遽進肉膳。今卿等累請如是，當勉從之。”

따르다	“내가 대신의 서거를 슬퍼하여 차마 육선을 들지 못하겠으나, 이제 경들이 이렇듯이 자주 청하니 힘써 따르겠다.” 하였다.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6월 13 일(정사) 2번째기사	아침에 상이 이어소(移御所)에 나아가 음식을 살폈다.	○朝, 上詣移御所視膳。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6월 18 일(임술) 2번째기사	대비가 이어(移御)한 뒤로부터 상은 더위와 비를 피하지 않고 나가 자며 시약(侍藥)도 하고, 또 하루 걸러 안부를 묻거나 친히 식사를 돌보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자전의 병세는 나았고 또 상께서 더위로 몸이 불편하여 자전이 자주 말리므로 상은 비록 하루 세 번씩 할 생각이 있었지만, 자전의 분부를 어기기 어려워 감히 그러하지 않고 하루 네 번씩 중사(中使)7640) 를 보내어 문안하고 음식을 돌보게 하였다.	○自大妃移御後, 上不避暑雨, 或經宿侍藥, 或間日問候視膳。而今則慈候康寧, 且緣上體適罹暑患, 慈殿屢數止之, 故上雖有日三之志, 而重違慈旨不敢焉, 而每日四遣中使, 問安兼視膳焉。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6월 19 일(계해) 2번째기사	대비전(大妃殿)에서 약방 제조(藥房提調) 등에 선온(宣醞)하고 또 차등 있게 물품을 내렸다.	○大妃殿, 宣醞藥房提調等, 賜物有差。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7월 3일 (정축) 1번째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요즈음 사운서(司醞署)의 비자(婢子)가 쌀말을 가지고 대궐문을 나가므로 병조가 내고(內庫)의 물건을 훔쳐내는 것이라 하여 잡아서 구류하였더니, 별감(別監)이 병조에 두 번 놓아 주기를 청하였고, 이튿날 사알(司謁)이 승지에게 전하여 놓아 보냈습니다. 이는 사소한 일이라 상께서 아셔야 할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아랫사람들이 한 것일 것이니 극히 외람된 일입니다. 설사 정말로 상교(上敎)가 있었다 해도 승지는 왕명(王命)을 맡은 사람이니, 출납(出納)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군덕(君德)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	○丁丑/臺諫啓前事。 憲府又啓曰：“頃者司醞署婢子, 持米斗出闕門, 兵曹以偷出內物, 執捉拘留。別監再度請放于兵曹, 翌日司謁, 傳于承旨而放之。此細瑣之事, 非自上所當知, 此必下人所爲, 至爲汎濫。假令真有上敎, 而承旨在喉舌之地, 非徒出納而已, 若有此等有關君德之事, 則當及其未著於外, 論啓以止之, 可也。只因

	<p>타나기 전에 논계(論啓)해서 그만두게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단지 사알의 말만 들었을 뿐 사관(史官)도 듣지 못한 일인데 문득 병조의 낭관을 불러서 말하였으니 과직시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양인(良人) 홍중근(洪仲根)은, 차비(差備)가 없는 까닭으로 병조에 잡혔으므로 조율(照律)하여 아뢰었는데, 특별히 내버려 두라고 명하시니 신 등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비록 사송(賜送)하시는 물건이라 해도 원래 내관(內官)이 있는데 별감(別監)이 어찌 차비없는 양인을 시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양인이 대궐에 드나드는 것은 더욱 불가하니 율(律)에 따라서 단죄(斷罪)하소서.”</p> <p>하니, 헌부에 전교하기를,</p> <p>“요즈음 아기(阿只)의 처소에서 와서 말하기를 ‘오늘 대궐에서 내보내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병조의 금란(禁亂)7678)에게 잡혀서 구류되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 하므로 내가 알고 전교한 것이다. 별감은 추고(推考)를 해야겠지만 승지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리고 홍중근(洪仲根)은 공주(公主)의 집에서 얼음을 받으러 온 자이니, 차비(差備)가 없다 해서 죄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나머지도 아울러 율(律)하지 않는다.”</p> <p>하였다.</p>	<p>司謁之言，史官亦不得預聞，而遽招兵曹郎官言之，請罷。且良人洪仲根，以無差備，被捉兵曹，照律以啓，特命棄之，臣等未知其然也。雖賜送之物，自有內官，別監豈宜使無差備良人，送之乎？良人交通闕內，尤爲不可，請依律斷罪。”傳于憲府曰：“頃日有自阿只處來言：‘今日內送物齎持者，爲兵曹禁亂所捉，拘留不來’云，故知而教之耳。別監則當推之，承旨有何罪也？且洪仲根，公主之家受冰者也。以無差備罪之，不當，故乃令棄之，非有他意也。餘竝不允。”</p>
<p>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7월 4일 (무인) 4번째기사</p>	<p>소대(召對)를 명하매 대사헌 최숙생(崔淑生)이 아뢰기를,</p> <p>“사온서의 비자와 홍중근의 일은 지극히 자질구레하고 지저분한 일입니다. 비록 ‘들깨 2승(升)을 사송(賜送)하였다.’ 하였으나, 이를 사송하는 물건이라 할 수는 없으며, 또 이렇게 외쇄(猥瑣)7681) 한 말이 궁중에까지 들어가서는 안</p>	<p>○命召對。大司憲崔淑生曰：“司醞署婢子及洪仲根事，至微細暗濁。雖云：‘賜送荏子二升’，不可謂賜送之物，而猥瑣之言，且不宜入於宮禁。</p>

	되는 것입니다.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7월 7일 (신사) 3번째기사	요즈음 사운서(司醞署)의 비(婢)에 관한 일은, 내가 당초에는 그 시말을 몰랐고, 단지 아기(阿只)7698)의 처소로 사송(賜送)하는 물건이라고만 들었었다. 그런데 뒤에 병조 낭관(兵曹郎官)의 말을 들으니, 그 종은 쌀말만 가지고 있었고 사송하는 물건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 대체 사송하는 물건은 대궐 안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 옳지, 어찌 외간 사람에게 주어서 그의 사물(私物) 속에 섞어 놓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내가 매우 미워하는 터이니 그 나인(內人)은 마땅히 내보내야 한다.	近日司醞署婢子事，予當初不知其首尾，而只聞阿只【方言小兒之稱。】處，賜送之物。後聞兵曹郎官之言則曰：‘婢子只持米斗而賜送，則他人持去也’云。凡賜送之物，以闕內之人送之，可也，而給付外間之人，雜置於私持之物，豈爲可乎？予甚惡之，其內人當黜之。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7월 7일 (신사) 4번째기사 정원에 자전이 완쾌되었으니, 대군에게 쌀과 콩 등을 하사하도록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자전(慈殿)께서 대군(大君)의 집으로 이어(移御)하시었다가 결국 완쾌되시었으니, 나의 기쁘고 경하스런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대군에게 쌀과 콩 아울러 50석(碩)과 면포(綿布) 2백 필, 정포(正布) 2백 필, 숙마(熟馬) 1필을 내려라.”	○傳于政院曰：“慈殿移御大君第，終至永寧，予之喜慶之心，其有涯乎？其賜大君米太并五十碩、絁布二百匹、正布二百匹、熟馬一匹。”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7월 9일 (계미) 2번째기사	정부에 전교하였다. “평안·황해 양도(兩道)는 지난해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금년에도 흉년들 기미가 있어서 공물(貢物)과 소소한 진상물(進上物)들을 이미 견감(蠲減)하게 하였다. 옛일을 보면 ‘전조(田租)를 감하였다.’는 등의 말이 있으니, 이제 전조를 감하여 백성들이 큰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傳于政府曰：“平安、黃海兩道，前年大凶，今又有凶荒之兆，若貢物、進上小小之物，已令蠲減矣。以古事觀之，有曰：‘減田租’等語。今減租，使民得蒙大惠，無乃可乎？”
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7월 10	이어소(移御所) 근방 네 집에 쌀 각각 4석(碩)씩을 내리도록 명하고, 그 집을 공해(公廩)로 쓸 때에 허물어진 장벽(牆壁)도 해사(該司)로 하여금 수축하게 하였다.	○命賜移御所傍近四家，米各四碩，其家用爲公廩時，所毀牆壁，亦令該司修築。

일(갑신) 7번째기사	<p>종묘 봉사(宗廟奉事) 김한(金瀚)이 헌관(獻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망제(望祭)7722) 에 쓸 시생(豕牲)7723) 을 전생서(典牲署) 관리가 직접 진배(進排)하지 않고서 노자(奴子)를 시켜 받아 놓게 하였다가 종묘 안에서 놓쳐 버렸는데, 한 마리는 찾아내었으나 곧 죽었고, 또 한 마리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으므로 시생을 본서(本署)로 하여금 다시 진배하게 하였습니다. 일이 매우 미안하므로 감히 아뢰옵니다.”</p>	<p>○宗廟奉事金瀚以獻官意啓曰：“望祭豕牲，典牲署官吏，不躬親進排，而只使奴子領納，在廟內放逸，一口尋覓卽斃一口窮搜不得，豕牲則令本署，更進排矣。 事甚未安，敢啓。”</p>
<p>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7월 14 일(무자) 3번째기사</p>	<p>영의정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어저께 종묘의 망제(望祭)에 쓸 시생(豕牲)을 놓쳐 버렸다 합니다. 이것이 비록 사람의 태만으로 그렇게 되었으나 큰 변고(變故)입니다. 전하께서는 사사(祀事)7724) 에 이미 정성을 다하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더욱 공경하여 성효(誠孝)를 다할 것을 힘쓰셔야 하니, 종묘 제향은 자주 친행(親行)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 또한 시생을 놓쳤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매우 놀랐다. 전수 관리(典守官吏)를 모두 금부에 내려 추고(推考)하라. 대저 우리 나라의 제향(祭享)은 너무도 해이해졌다. 이번에도 친제(親祭)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연고가 있어서 그리하지 못하였다. 연고가 없으면 마땅히 친행할 것이다.” 하였다.</p>	<p>○領議政鄭光弼等啓曰：“臣等聞，昨日宗廟望祭，牲豕放逸。 此雖人之緩慢所致，而其爲變故則大也。 殿下於祀事，雖已盡誠，猶當更加恭敬，務盡誠孝，宗廟祭享，宜數親行。” 傳曰：“予亦聞豕牲放逸，心甚驚駭。 典守官吏，皆下禁府推之。 大抵我國祭享事，王爲解弛。 今次亦欲親祭，而適有故未果，若無故則自當親行矣。”</p>
<p>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7월 15 일(기축) 4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 이자(李耜)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종묘 망제에 쓸 시생을 하나는 놓쳐 버린 채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는 찾기는 하였으나 또한 죽어 버리고 말았다 합니다. 이는 고금에 없는 변이(變異)입니다. 설사 수직하는 자가 잘못하였다고는 해도, 다른 곳이 아니고 하필 종묘에서 그리되었으니 더욱 큰 변고입니다. 아마도 요즈음 전사(典祀)7725) 에 관한 일들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 조종(祖宗)께서 견고(謹告)矣。 上當自責曰：‘予之誠敬不足</p>	<p>○弘文館副提學李耜等啓曰：“臣等聞，宗廟望祭豕牲，一則放逸不得，一則雖得而亦死。 此，古今所無之變異也。 假令謂之典守者不謹，而不於他所，必於宗廟，此尤莫大之變異也。 大抵近日典祀諸事，必有未盡，而祖宗謹告明矣。 上當自責曰：‘予之誠敬不足</p>

	<p>告)7726)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상께서 마땅히 자책(自責)하시기를 ‘나의 정성과 공경이 모자라는 것이다.’ 하시고, 지나간 허물을 생각하시며 속히 친제를 행하심이 옳습니다.”</p> <p>하였다.</p>	<p>也。’ 追思曩愆，速行親祭，可也。”</p>
<p>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7월 15 일(기축) 6번째기사 홍문관과 승정원이 선운을 중지하도록 하다</p>	<p>대간이 또 아뢰기를,</p> <p>“종묘의 변고는 근래에 없던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 아래위가 마땅히 놀라고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이제 듣건대 정원과 홍문관에 선운(宣醞)하신다 하니, 이는 재변을 만나 두려워하는 뜻이 없는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절일(節日) 같은 때는 진실로 특별한 음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중지하는 것이 옳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대간이 아뢴 선운에 관한 일은, 사옹원(司饗院)에서 오늘은 절일이라고 하기에 미리 재가를 하였고 또 이것은 연향(宴享)이 아니니, 자전(慈殿)께만 음식을 드리고 홍문관과 승정원의 선운은 속히 중지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臺諫又啓曰：“宗廟之變，近來所無也。 遇如此之事，則上下當驚惶恐懼也。 今聞宣醞于政院、弘文館，是似乎從容無遇災驚惶之意也。 如節日則固當有別膳，而若遇如此之事，則停之爲是也。” 傳曰：“所啓宣醞事，司饗院，以今日爲節日，而前期啓下，且非宴享，只進膳于慈殿而已。 若弘文館、承政院宣醞，則可速止之。”</p>
<p>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7월 17 일(신묘) 2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대비전(大妃殿)의 진상미(進上米) 50석(碩)과 면포(綿布)·정포(正布) 각 4동(同)은 본궁(本宮)으로 실어들이게 하라.”</p>	<p>○傳于政院曰：“大妃殿進上米五十碩、緜布·正布各四同， 其令輸入本宮。”</p>
<p>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7월 28 일(임인) 7번째기사 (민족문화추진회 한역</p>	<p>혼례를 치른 다음날 아침 자전을 뵈고 술잔을 받들어 올리면서 상수(上壽)7815) 하면 자전께서 직접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이 유유(怡怡愉愉)7816) 하시는데, 이때를 당하여 유독 비궁(?宮)7817) 에 밝게 척강(陟降)7818) 하시는 <선조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醮醕翌日，朝見慈殿，稱觴上壽，慈殿親手撫之，怡怡愉愉，當此時，獨不念闕宮之陟降？</p>

<p>본에는 7월 29일로 표기되어 있음)</p>		
<p>중종 28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7월 29일(계묘) 3번째기사 (민족문화추진회 한역본에는 7월 30일로 표기되어 있음)</p>	<p>정원에 전교하기를,</p> <p>“오늘의 경연(經筵)은 전일의 경연에 비겨보니 더욱 늦었다. 서로 중용히 강론하는 것이 진실로 좋으나, 내가 겨우 대내(大內)에 들어와 아침밥을 먹을 때에 곧 오고(午鼓)7827) 가 울렸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반드시 늘 이와 같을 것이니 시간이 너무 늦으면 상하가 경연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중용히 강론하는 것이 어떠한가? 만일 불가하다면 식사한 뒤에 진강(進講)하는 것이 어떠한가? 음식에 때를 잃는 것은 상하 모두 불가하며, 노 재상(老宰相)도 또한 입시(入侍)하였으므로 마음에 미안하여 말하는 것이다.”</p> <p>하매, 정원이 회계(回啓)하기를,</p> <p>“【원(院)에서 비록 모두 의논하였으나 이자(李?)의 말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근래 여러 날 동안 경연을 늦게 파하게 되니, 신 등도 마음에 미안합니다. 경연하는 때와 수라(水刺)를 올리는 때는 조종조로부터 이미 일정한 시간이 있으니, 당기고 물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근래 오랫동안 폐하였다가 지금 처음으로 나아오셨기 때문에, 입시(入侍)한 신하가 모두 새로 들어와 각각 품은 바를 펴고자 하므로 시간이 늦는 줄을 모른 것입니다. 만약 자주 경연에 나아오신다면 어찌 매양 이러하셨습니까? 의논이 상의 뜻에 미진한 것이 있다면 다시 불러 대답하게 하셔야 합니다.”</p> <p>하였다.</p>	<p>○傳于政院曰：“今日經筵，視前日經筵，尤晚矣。相與從容講論，固好矣，然予才入內，朝食之時，乃啓午鼓。非獨今日，後必常如此，日若太晚，則上下俱食於經筵，從容講論，何如？如不可，食後進講，何如？飲食失時，上下皆不可，而老宰相亦入，故未安於心而言之耳。”政院回啓曰：“【院雖僉議，而取決於李籽之言。】近來累日，經筵晚罷，臣等亦未安於心。經筵時及水刺時刻，自祖宗朝已有一定之時，似難進退。且近者久廢經筵，而今始復御，故入侍之臣皆新入，各欲展布懷抱，故不知日晚也。若數御經筵，則豈每如是乎？若議論有未盡於上意，則當更召對。”</p>
<p>중종 29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8월 1일 (갑진) 5번째기사</p>	<p>간원(諫院)7844) 이 아뢰기를,</p> <p>“물선(物膳)7845)을 위해서는 이미 상공(常貢)7846) 이 있는데도, 함경도에 위차(委差)7847) 를 따로 보내어 물선을 채취(採取)해서 봉진(封進)하게 하여 어전(魚箭)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각 고을의 물선은 도리어 기인(其人)7848)</p>	<p>諫院啓曰：“物膳已有常貢，咸鏡道別遣委差，取物膳封進，以專魚箭之利。各官物膳，反借其人，其人憑公作弊。人君私遣委差，采取物膳，有累聖德，</p>

	<p>의 힘을 빌므로 기인이 공무를 빙자하여 폐단을 짓습니다. 임금이 사사로이 위차를 보내어 물건을 채취하면 성덕(聖德)에 누가 있게 되니 이제부터는 보내지 마소서.”</p> <p>하였으나, 상이 다 윤택하지 않았다.</p>	<p>請自今勿遣。”上皆不允。</p>
<p>중종 29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8월 4일 (정미) 2번째기사</p>	<p>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근사(金謹思)가 장계(狀啓)7876) 하기를,</p> <p>“올해는 다른 해와 달라서, 지난해에 흉년 든 끝에 밀보리가 여물지 않아서 백성이 굶주리므로 봄부터 가을까지 공사곡(公私穀)을 빌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p>	<p>○忠淸道觀察使金謹思狀啓曰： 今年非他歲之比。 去年凶歉之餘，兩麥不實，人民饑饉，自春至秋，稱貸公私，艱難苟活</p>
<p>중종 29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8월 12일(을묘) 1번째기사</p>	<p>조방언이 아뢰기를,</p> <p>“근래 수재(水災)·한재(旱災)는 팔도가 다 같으나 황해도가 더욱 심하여 공사(公私)가 궁핍하니 한심하다 하겠는데, 수령(守令)은 사냥을 즐기니 죄다 잡게 되면 짐승도 한정이 있는데 어찌 항상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상(進上)할 즈음에 녹미(鹿尾)·녹설(鹿舌) 같은 것을 민간으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사오게 하는데, 만약에 사지 못하면 반드시 면포(綿布)를 거두어서 서울에 와 사니, 서울은 어디에서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상에서 물린 물건을 얻어서 도로 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종조의 제도는 갑자기 고치기 어렵겠으나 짐작해서 해야 합니다. 또 황해도에 상수리가 많이 있는데 구황(救荒)에는 아주 요긴하니, 군현(郡縣)을 시켜 각각 2~3백 석을 저장하되 따로 창고를 만들어서 흉년에 대비하게 하면 어찌 백성에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여러 해 목으면 썩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로(父老)에게 물었더니, 다들 ‘잘 익으면 30여 년 뒤에도 쓸 수 있다.’ 합니다. 이는 작은 일이기도 하나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p> <p>하였다.</p>	<p>邦彦曰：“近來水旱之災，八道皆然，而黃海道尤甚，公私匱竭，可爲寒心。守令好畋獵，至於窮盡，則雖禽獸，亦有其數，豈恒有之？是以進上之際，如鹿尾、鹿舌，使民間轉質他處，若不得質，必聚斂縣布，來京質之，不知京城從何得之。無乃得其進上退物，以還納耶？祖宗朝制，雖難卒變，亦須斟酌爲之。且黃海道，橡實多在，而於救荒至要，若使郡縣，各貯二三百碩，別築倉以備凶年，則豈不有利於民乎？臣恐年久腐朽，問諸父老，皆云：‘若其太熟，則雖三十餘年之後，亦可用之。’此雖事之微細，其令大臣，議處何如？”</p>

<p>중종 29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8월 25 일(무진) 4번째기사</p>	<p>검상(檢詳)이 삼공(三公)의 뜻으로 아뢰기를, “노산 부인(魯山夫人) 송씨(宋氏)의 처소에 소찬(素饌)을 진배하는 것이 지당 하며, 또 시비(侍婢)가 먹을 것도 신씨(愼氏)의 예에 따라 주어야 하겠습니 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p>	<p>○檢詳以三公意啓曰：“魯山夫人宋氏 處，素饌進排事至當。且侍婢所食， 亦依愼氏例給之。”傳曰：“可。”</p>
<p>중종 29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9월 9일 (임오)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에 선은(宣醞)8075)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우리 나라에는 예전부터 절일(節日)에 근신(近臣)에게 주식(酒 食)과 진선(珍膳)을 내리고, 때로는 제목을 정해서 시(詩)을 짓게 하는 일이 있는데, 성종이 더욱 이를 즐겨하였고 상도 여러 번 하였다. 이때 조광조(趙 光祖) 등이 이학(理學)을 귀하게 여기고 사장(詞章)을 천하게 여겨, 매양 경연 (經筵)에서 ‘임금은 시를 지어서는 안 되고, 신하에게 지어 바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였으므로, 절일에 옛일에 따라 주찬(酒饌)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시 를 짓게 하지는 않았다.</p>	<p>○宣醞于承政院、弘文館。 【史臣曰：“國朝古事，節日賜酒食、 珍膳于近臣，有時命題製詩。成廟尤 好之，上亦屢爲之。時，趙光祖等， 貴理學，賤詞章，每於經筵，論人主不 可作詩，亦不可令臣下製進，故節日雖 依故事賜酒羞，而不令作詩。”】</p>
<p>중종 30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10월 22 일(갑자) 2번째기사</p>	<p>대전(大典)과 중궁(中宮)에서 승정원(承政院)과 홍문관(弘文館)에 선은(宣 醞)8133) 을 내렸다.</p>	<p>○大殿中宮賜宣醞于承政院、弘文 館。</p>
<p>중종 30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11월 4 일(병자) 2번째기사</p>	<p>상이 안으로 들어가 전교하기를, “경 등(卿等)은 함문(閤門) 밖으로 물러가 점심을 먹은 뒤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라.” 하매, 정광필 등이 나오니 어선(御膳)과 선은(宣醞)8153) 을 내렸다.</p>	<p>上入內傳曰：“卿等可退閤門外，晝飯 後復入。”光弼等出，賜御膳宣醞。</p>
<p>중종 31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12월 15 일(병진) 4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기를, “홍화(紅花) 40두(斗), 매실(梅實) 10두, 상품초피(上品貂皮) 2백 영(令), 옷감 백목면(白木綿) 20필을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궐내에 들이게 하라.” 하였다.</p>	<p>○傳于政院曰：“紅花四十斗、梅實十 斗、上品貂皮二百令、衣襦次白木綿 二十四等，令尙衣院入內。”</p>

<p>상의원으로 하여금 홍화 40두, 매실 10두 등을 궐내에 들이라고 전교하다</p>		
<p>중종 31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12월 27일(무진) 3번째기사</p>	<p>예조·호조·한성부가 아뢰기를, “추위에 떨고 굶주린 사람은 《대전》에 의해 1인당 유의(襦衣) 한 벌과 매일 쌀 1승(升)씩 주도록 하소서.”</p>	<p>○禮曹、戶曹、漢城府啓曰：“凍飢人，請依《大典》，人給襦衣一領，日米一升。”</p>
<p>중종 31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윤12월 13일(갑신) 1번째기사</p>	<p>세호가 아뢰기를, “진상(進上)하는 편포(片脯)를, 다른 도에서는 그 고기를 가늘고 얇게 만들어서 근수를 계산해서 상납합니다. 그런데 황해도에서는 이름은 비록 편포라 하나 육(肉)은 원포(圓脯)이오니, 그것도 근수를 정해서 상납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녹미(鹿尾)와 녹설(鹿舌)은 그 도의 여러 고을이 서울에서 사다가 상납하니 그 폐단이 큼니다. 전년에는 감해주었으니 명년에도 역시 감하여 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녹미와 녹설은 그 폐단이 이와 같으니 역시 더 감해야 할 것이다. 유사에 물어보라.” 하였다.</p>	<p>世豪曰：“進上片脯，他道則以細薄其肉，量其斤數而納之；黃海道則名雖(夫) [決] 脯，而體則圓脯也。竝以斤數酌定而納，可也。鹿尾、鹿舌，則其道各官貿諸京中而納之，其弊亦大矣。前年則鑷減矣，明年亦可量減也。”上曰：“鹿尾、鹿舌，其弊如此，則亦可更減之。當問于有司也。”</p>
<p>중종 31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윤12월 13일(갑신) 2번째기사 대사헌이 말한 황해도</p>	<p>정원에 전교하기를, “대사헌이 말한 황해도 군사의 방수(防戍)와 역졸(驛卒)의 휴식(休息)과 녹미(鹿尾)·녹설(鹿舌)·편포(片脯) 등의 일은 그 편리 여부를 해조에 물으라.”</p>	<p>○傳于政院曰：“大司憲所言黃海道軍士防戍，驛卒休息，鹿尾、鹿舌、決脯等事。其便否問于該曹。”</p>

<p>군사의 방수와 역졸의 휴식과 녹미·녹설·편포 등의 일을 해조에 묻다</p>		
<p>중종 31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윤12월 16일(정해) 1번째기사</p>	<p>상이 곡연(曲宴)을 베풀어 자전에게 헌수(獻壽)하고 나서 홍문관과 승정원에 선운(宣醞)하고, 이어 승지에게 명하여 홍문관에 가서 함께 들도록 하였다.</p>	<p>○丁亥/上設曲宴，上壽于慈殿。宣醞于弘文館、承政院，仍命承旨，往弘文館以饋。</p>
<p>중종 31권, 12년 (1517 정축 / 명 정덕 (正德) 12년) 윤12월 25일(병신) 1번째기사 제용감에 명하여 목면 4동, 정포 4동, 중면자 40근, 호초(胡椒) 1석, 단목(丹木) 1백 근, 백단향(白檀香) 1백 근 등을 쉼내로 들어게 하였으니, 대개 세시(歲時)에 쓰기 위한 것이요, 연례로 들이는 것은 아니다.</p>		<p>○丙申/命納濟用監木縣四同、正布四同、中縣子四十斤、胡椒一石、丹木一百斤、白檀香一百斤等物于內。蓋爲歲時所用，非年例也。</p>
<p>중종 32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3월 9일 (무신) 1번째기사 조강에서 적서의 분별을 엄격히 할 것과 제주 공물을 감하는 문제를 논의하다</p>	<p>상이 이르기를, “제주가 근래에 와서 몹시 피폐하니 의당 소복해야 할 것이나, 과실의 진상은 일정한 수가 있다. 사물(私物)을 싣는 폐단은 진실로 좋지 않다.” 하매, 양진(楊震)이 아뢰기를, “제주의 전복(全鰓) 생산이 지금은 예전만 못합니다. 다만 상정(詳定)할 때 대·중·소의 분별이 있기 때문에 해사(該司)에서 전례에 의해 받으나, 그 중 갖추기 어려운 대전복은 다소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복을 대·중·소로 분별할 필요는 없다. 백성에게 폐가 있으면 마땅히 조처</p>	<p>上曰：“濟州近來至爲疲弊，當使之蘇復，而果實進上，則有常定之數矣。其載私物之弊，則固不可也。”楊震曰：“濟州全鰓之產，今則不如古矣。但於詳定，有大中小之分，故該司依例而受之，其中大全鰓，所難備者。量減何如？”上曰：“全鰓不必分其大中小也。百姓有弊，則當有以處之也。”</p>

	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중종 32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3월 10 일(기유) 3번째기사	병조 판서(兵曹判書) 장순손(張順孫)이 사직하고 돌아가 노모를 봉양하겠다고 청하니, 전교하기를, “즉시 해직하고 돌아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는 심정은 과연 간절한 것이고, 나도 지금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만큼 경(卿)의 뜻을 이루어주어야 하겠지만, 지금 병조의 일이 긴급하니 체직할 수 없다. 경은 사직하지 말라.” 하고, 곧 술을 내려 위로해 보냈다.	○兵曹判書張順孫，請辭職歸養老母，傳曰：“卽欲解職養親，其情果切矣。予方以孝理國，欲遂卿意，第以兵曹事繁，不可遞也。卿其勿辭。”仍命賜酒，慰諭以遣之。
중종 32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4월 5일 (계유) 1번째기사	상이 허락하지 않고 감선 철악을 명하고 향은(香醞)을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	上不許，命減膳、撤樂，勿進香醞。
중종 33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5월 7일 (을사) 3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공신 옹주(恭愼翁主)는 성묘(成廟)의 따님으로 폐조(廢朝) 때 귀양간 뒤로부터 살림이 흩어졌기 때문에 매우 간고하여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는데도 절의(節義)가 더욱 엄하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쌀과 콩 아울러 50곡(斛)을 하사하라.”	○傳于政院曰：“恭愼翁主以成廟之女，自廢朝奔竄之後，資計蕩散，契闊甚艱，無以自存，節義愈厲，予甚嘉之。賜米太并五十斛。”
중종 33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5월 18 일(병진) 2번째기사(민 추변역서5월17일)	또 민간에서 보건대 한 가지 폐가 있으니, 백성들이 바치는 앵두·자두·황도·능금과 같은 것이 곧 그것입니다.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고 있으니 감할 만한 것은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외방(外方)에서 바치는 과물(果物)은 다만 천신(薦新)에만 쓰는 것뿐이니, 이는 반드시 민간에다 많이 배정할 것은 없다.” 하였다.	又見民間有一弊焉，如櫻桃、紫桃、黃桃、林檎等物，乃其弊也。民甚苦之，可減則減之何如?”上曰：“外方所進果物，止以薦新而已，此未必多定於民間也。”
중종 33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시강관 한충(韓忠)이 아뢰기를, “송주가 태묘(太廟)에 제사를 드릴 때에 변두(籩豆)와 보례(籩簋)를 보고서는	侍講官韓忠曰：“宋主享太廟，則籩豆籩簋，卽令撤去，蓋無學識，不知禮故

<p>(正德) 13년) 5월 26일(갑자) 1번째기사(민추번역서5월23일)</p>	<p>곧 치워버릴 것을 명하였는데8478) , 이는 그가 학식이 없고 예(禮)를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p>	<p>也。</p>
<p>중종 34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8월 7일 (갑술) 1번째기사</p>	<p>상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 종친(宗親)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승지 김정국이 아뢰기를, “근일에 오래도록 종친을 접견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음식 대접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조정에 있는 신하들도 윤대(輪對)하여 회포를 진달하게 하는데, 하물며 나라와 휴척(休戚)을 같이 해야 하는 종친이겠습니까? 전교하였다.</p>	<p>○甲戌/上御慶會樓下，餉宗親。承旨金正國曰：“近日久不接見宗姓，今日之餉，眞盛事。在朝之臣，亦令輪對，以陳懷抱，況宗姓，宜與國同休戚者乎？”</p>
<p>중종 34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9월 16일(계축) 2번째기사</p>	<p>“요즈음 재변(災變)이 거듭 생김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공신중삭연(功臣仲朔宴)8848) 을 폐하여 내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지금 이것을 행하려고 하나 재변 때문에 잔치를 베풀지 못하니, 양로례(養老禮)에 의하여 친공신(親功臣)8849) 의 집에 술과 고기를 반사(頒賜)하고, 친공신은 죽었더라도 그의 아내가 있는 자에게는 아울러 주라.” 전교하였다.</p>	<p>○傳曰：“近因災變疊出，久廢功臣仲朔宴，予心甚未安。今欲行之，但因災變，不得設宴。依養老之禮，其頒賜酒肉於親功臣之家。親功臣雖已歿，而其妻存者，竝給之。”</p>
<p>중종 34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9월 20일(정사) 4번째기사</p>	<p>“소격서의 은·눗쇠·사기 그릇들을 호조로 하여금 성균관·사학(四學)·독서당(讀書堂)에 나누어 주게 하라.”</p>	<p>○傳曰：“昭格署銀、鍮、沙器皿，其令戶曹，分給于成均館、四學、讀書堂。”</p>
<p>중종 34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11월 8일(갑진) 1번째기사</p>	<p>이계맹이 혼자 아뢰기를, “경상도 남해(南海)에서 바치는 천신(薦新)에 쓰이는 녹포(鹿脯)는 만약 장쾌포(獐快脯)로 대신 봉진(封進)하게 하면 천신하는 의미가 없으며, 또 그 군에서 봉진하는 수량도 적으니 어떻게 처리하리까? 대신과 함께 의논하게 하소서.”</p>	<p>繼孟獨啓曰：“慶尙道南海薦新鹿脯，若以獐快脯代封，則無薦新之意。且本郡所封，其數亦尠，何以處之？請與大臣同議。”</p>
<p>중종 34권, 13년</p>	<p>정부·예조가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p>	<p>政府、禮曹同議以啓曰：“南海進上鹿</p>

<p>(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11월 8 일(갑진) 3번째기사</p>	<p>“남해에서 진상(進上)하는 녹포(鹿脯)를 장포(獐脯)로 대신 봉진(封進)하는 일은 포에 장포와 녹포의 구별이 있으니 써서는 불가함이 하나입니다. 만약 진상하는 공포(貢脯)가 납포(臘脯)8921) 라면 그만이지만, 제포(祭脯)라면 일이 제향(祭享)에 관계되니 대신 봉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김안국(金安國)이 아뢴 의견도 반드시 제포까지 대신 봉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p>	<p>脯，以獐脯代封事，脯有獐、鹿之別，用之不可一也。若進上貢脯，臘脯則已，祭脯則事關祭享，恐難代封。且金安國所啓之意，亦非必欲竝祭脯代封也。”</p>
<p>중종 34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11월 10 일(병오) 1번째기사</p>	<p>상이 망궤례를 거행하고, 이어서 대비전(大妃殿)에 하례를 드렸으며, 평명(平明)에 하례를 받고 또 대비전에 풍정(豐呈)을 올렸다. 동짓날이기 때문이다. 명하여 종실·재신(宰臣) 2품 이상과 승정원·홍문관·대간(臺諫)과 입번(入番)한 한림(翰林)·도총부(都摠府)·병조의 제장(諸將) 등에게 궤정에서 음식을 먹였다.</p>	<p>○丙午/上行望闕禮，仍賀大妃殿。平明受賀，又進豐呈于大妃殿。以至日也。命餉宗宰二品以上、承政院、弘文館。臺諫、入番翰林、都摠府、兵曹諸將等于闕庭。</p>
<p>중종 34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11월 14 일(경술) 2번째기사</p>	<p>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경상도 병사(慶尙道兵使) 성세정(成世貞)은 본디 탐독(貪黷)한 사람입니다. 전에 전라도 감사로 있을 적에 개·피물(皮物)·어물(魚物)·기름·꿀 등을 각 고을에 요구하여 남석보(南碩輔)【남석보는 성세정이 감사 때 데리고 간 사람이다.】의 집에 배로 실어 보내어 판매하여 취리(取利)한 일을</p>	<p>○臺諫啓前事。憲府又啓：“慶尙兵使成世貞，本貪瀆之人，前爲全羅監司時，求索荏子、皮物、魚物、油蜜等物于各官，船輸于南碩輔家，【碩輔，監司時帶行者。】反賣取利事</p>
<p>중종 35권,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 (正德) 13년) 12월 17 일(임오) 2번째기사</p>	<p>정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이같으시니 종사(宗社)의 복입니다. 강학(講學) 뿐 아니라 역시 위아래의 뜻을 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해가 정오가 되도록 권태로움을 잊으시고 조강(朝講)을 계속하시니, 신 등은 지극히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더러 경연(經筵)에 간단한 음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진 사대부를 자주 대하는 것이 함양(涵養)하고 훈도(薰陶)하는 데에 이익됨이 어찌 작겠는가? 근일 경연을 정지한 것은 언론(言論)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전일 조강을 과하자마자 정오를 알렸는데, 늙은 재상들이 먹지도 못하고</p>	<p>淨曰：“上敎如是，宗社之福。非徒講學，亦可以通上下之情。近者朝講，日晏忘倦，以至亭午，臣等至爲未安。或於經筵進小膳何如?” 上曰：“頻接賢士大夫，涵養薰陶，所益豈少? 近以停經筵者，非厭言論也。前日纔罷朝講，已報午鼓。老相未食而失時，是所未安。果於經筵進饌，使上下皆不失時則可也。前以此意問於政院，則以爲</p>

	끼니때를 놓치게 되어 미안해서였다. 경연에 음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은 위아래로 하여금 끼니때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나, 전에 이러한 뜻으로 정원(政院)에 물었더니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이라 하여 못했다.”	舊所不爲之事云, 故未也。”
중종 35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1월 26 일(신유) 1번째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진천(鎭川)에 사는 노산(魯山)의 후궁 권씨(權氏)를 혜양(惠養)하도록 청하자, 정원이 이를 가지고 아뢰기를, “듣건대 경성 안에도 노산 후궁 김씨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 80세가 지났으니 권씨의 예에 따라 혜양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권씨는 외방에서 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혜양하도록 명하였는데 김씨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 서울에 살고 있는 자도 모두 혜양해야겠는가. 삼공(三公)에게 물으라.” 하매, 정광필·신용개가 의논드리기를, “당상관의 처도 70세가 지나면 오히려 매월 주육(酒肉)을 보내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김응기(金應箕)는 의논드리기를, “서울에 거주하는 김씨는 궤양(餽養)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후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여, 광필 등의 의논을 따랐다.	○辛酉/忠淸道觀察使請惠養鎭川居魯山後宮權氏。 政院因此啓曰: “詮聞京城之內, 亦有魯山後宮金氏, 今年過八十歲。 依權氏例, 亦令惠養。” 傳曰: “權氏則窮居外方, 故命惠養矣。 金氏則在京, 在京者, 亦皆可以惠養乎? 其問三公。” 鄭光弼、申用漑議: “堂上官妻年過七十者, 猶月致酒肉。 況此人乎?” 金應箕議: “在京金氏, 不必餽也。” 上曰: “厚之可也。” 從光弼等議。
중종 35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2월 1일 (을축) 1번째기사	석강을 정지하도록 명하고 자전에게 수상(壽觴)을 올렸다.	○乙丑朔/命停夕講, 以壽觴于慈殿也。
중종 35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2월 19	명하여, 중사(中使)를 보내어 타위(打圍)8995) 주장(主將)에게 선은(宣醞)하였다. 【주장은 좌상(左相) 신용개(申用漑)이다.】	○癸未/命遣中使, 宣醞于打圍主將。 【主將, 左相申用漑。】

일(계미) 1번째기사		
중종 35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3월 2일 (을미) 2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특별히 미태(米太)·유청(油淸)·진말(眞末)·황밀(黃蜜)·백면포(白緜布)·정포(正布)·관곽(棺槨)·석회(石灰) 등의 물품을 부의로 보내라.”	傳曰: “特賻以米、太、油淸、眞米、黃蜜、白緜布、正布、棺槨、石灰等物。”
중종 35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3월 15 일(무신) 4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듣건대, 조광조가 말에서 떨어져 입을 다쳤다는데, 이 사람은 시종(侍從)의 직에 있었으며 또 재상(宰相)이었다. 의원(醫員)을 보내어 병을 위문하고 약(藥餌)을 내리라.”	○傳于政院曰: “聞趙光祖墜馬傷口, 此人職在侍從, 且宰相也。 其遣醫問疾, 賜藥餌。”
중종 36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6월 7일 (기사) 1번째기사	당은 아뢰기를, “창시(創始)하신 뜻을 신이 미처 잘 알지 못하나 늘 세종조에 창건한 것이라 여겼었는데, 요사이 춘추관이 《실록(實錄)》을 고찰하건대 태종조에 문소전에 제사한 일이 있으니, 어느 때 창건하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종조의 일을 경솔하게 고치기를 의논할 수는 없지만, 삼시(三時) 제사를 차리기는 매우 번거로와 겨우 철상(撤床)했다 도로 차리게 되니, 비록 용인(甕人)9214)·선부(膳夫)9215) 라 한들 날마다 되풀이하는 것을 어찌 능히 한결같이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하는 사람이 과연 많기는 하나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瑋曰: “創始之意, 臣未及詳知, 常以爲世宗朝所創。 近日考春秋館實錄, 則太宗朝, 有祭于文昭殿之事, 不知何時創制也。 祖宗朝事, 不可輕議改之, 然設祭三時甚煩數。 才撤而復奠, 雖甕人膳夫, 日復日日, 豈能鑄潔如一哉?” 上曰: “言之者果多矣, 然不可輕議。”
중종 36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6월 13 일(을해) 1번째기사	주렴(朱簾) 30부와 당분(唐粉) 60근을 대내(大內)에 들이도록 하였다.	○乙亥/命納朱簾三十部, 唐粉六十斤于內。
중종 36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임이 또 말하기를, “무릇 산물(產物)이 예와 지금은 다르니, 대록피(大鹿皮)9244) 및 녹포(鹿	霖又曰: “凡物產, 古與今異。 大鹿皮及鹿脯等物, 請自今蠲除, 只令濟州三

<p>(正德) 14년) 6월 13일(을해) 2번째기사</p>	<p>脯)9245) 등의 물품을 지금부터는 재감하고 다만 제주(濟州)의 세 고을로 하여금 대신 공상(貢上)하게 하기 바랍니다.”</p>	<p>邑代貢。”</p>
<p>중종 36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7월 3일 (갑오) 4번째기사 (민추번역서 7월5일)</p>	<p>명윤이 아뢰기를, “김종직(金宗直)·김광필(金宏弼) 등이 모두 세상에 뜻이 있으면서도 마침내 해놓은 일이 없이 죽었지만, 지금 광조는 한 시대에 분발하여 퇴폐한 풍속을 진작(振作)시켰습니다. 이는 광필 등이 하지 못한 일을 광조는 실행한 것이니 그의 공이 또한 크지 않습니까?” 하였다. 이어 선은(宣醜)을 내려 좌우 사람들이 모두 취하게 마셨다.</p>	<p>明胤曰：“金宗直、金宏弼等，皆有志於世，終不能有爲而死。今光祖奮發於世，使頹靡之俗振起。是宏弼等之所不能，而光祖乃行之，其功不亦大乎？”仍宣醜，左右皆醉。</p>
<p>중종 36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7월 7일 (무술) 3번째기사</p>	<p>의원을 보내 대사헌 조광조를 문병하고 이어 약물(藥物)과 음식을 내렸다.</p>	<p>○遣醫問大司憲趙光祖之疾，仍賜藥餌。</p>
<p>중종 36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8월 9일 (경오) 2번째기사</p>	<p>상이 제안 대군 이현(李瑁)의 집에 행행하여 문병하고, 이어 쌀과 콩 50석과 면포(綿布)와 정포(正布)를 각각 10동(同)씩 내렸다. 헌부가 아뢰기를, “오늘 대군에게 친림하여 문병하시어 장차 옛 도리를 회복하게 되었으니 듣는 사람이 누군들 반갑게 여기지 않겠습니까마는, 다만 지금 듣건대 쌀과 콩 등의 물품을 내래셨다 합니다. 대저 임금은 명분없는 하사를 할 수 없는 것이인데 이 사람은 공후(公侯)의 부(富)를 지니고 있습니다. 약품 같은 것은 좋지만 쌀과 콩을 하사함은 곧 이득의 발단을 열어 놓는 일이니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득의 발단을 보임은 과연 불가하다. 그러나 조종조(祖宗朝)에도 쌀과 콩을 내린 적이 있었고, 이미 내린 물건을 도로 거둔다면 의리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매,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p>	<p>○上幸齊安大君瑁第，問疾，仍賜米豆五十石、絺布正布各十同。憲府啓曰：“今日臨問大君之疾，將復古道，聞者孰不喜感？但今聞有賜米豆等物。大抵人君，不可有無名之賜，而此人則有公侯之富。如藥餌則可，以米太爲賜，則是開利端。請還收成命。”上曰：“示以利端，果不可，然祖宗朝，亦有賜以米豆之時。還收已賜之物，於義，何？”再啓，不允。</p>
<p>중종 36권, 14년</p>	<p>특진관 민상안(閔祥安)은 아뢰기를,</p>	<p>特進官閔祥安曰：“各官輸納於掌苑署</p>

<p>(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9월 25일(병진) 1번째기사</p>	<p>“각 고을에서 장원서(掌苑署)에 수납(輸納)하는 과일 중에 비자(榧子) 같은 것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아, 매양 그 수량을 감하도록 아뢰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조(濟調)가 짐작하여 수량을 감하면 되는데, 어찌 꼭 승전(承傳)을 받아서 해야만 하는가?” 하였다.</p>	<p>實果，如榧子等物，厥數甚多，每欲啓減其數。”上曰：“提調酌減其數則可矣，何必捧承傳而後爲之乎?”</p>
<p>중종 37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10월 2일(임술) 3번째기사</p>	<p>보통 품질의 사기(沙器)를 대내(大內)에 들이도록 명하였다.</p>	<p>○命納常品沙器于內。</p>
<p>중종 37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10월 7일(정묘) 1번째기사</p>	<p>대비전(大妃殿)에 주물(晝物)9512) 을 올렸다.</p>	<p>○丁卯/進晝物于大妃殿。</p>
<p>중종 37권,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 (正德) 14년) 11월 22일(임자) 2번째기사</p>	<p>정원(政院)에 선은(宣醞)9610) 하였다.</p>	<p>○宣醞于政院。</p>
<p>중종 38권,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 (正德) 15년) 3월 5일(계사) 2번째기사</p>	<p>권정례(權停例) 로 탄일(誕日)의 하례를 받고, 궐내 각사에 주찬을 하사하였다.</p>	<p>○以權停例，受誕日賀禮，賜酒饌于闕內各司。</p>
<p>중종 38권,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 (正德) 15년) 3월 14일(임인) 1번째기사</p>	<p>이빈이 아뢰기를, “근년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기아(飢餓)에 허덕이는데, 수령이 비록 진휼(賑恤)하려 해도 창고 곡식이 바닥이 나서 조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p>	<p>蘋曰：“近來連年凶歉，人民飢餓。守令雖欲賑恤，而倉穀已盡，故不能措置。且坡州倉所儲黃豆，僅二百斛而已，不能貸民，民不能畜養農牛。請</p>

	<p>주창(坡州倉)에 저장된 황두(黃豆)는 겨우 2백 곡(斛) 뿐이어서, 백성에게 대여(貸與)할 수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농우(農牛)를 기를 수가 없으니, 경창(京倉) 황두로 구제해 주소서. 경기 지방도 혹 이러한데 하물며 보고 들을 수 없는 먼 외방이리까? 관찰사가 비록 규검(糾檢)한다 해도 수령 중에는 혹시 태만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수시로 여사를 보내 살펴계 한다면 태만한 자로 하여금 근면하게 할 수 있고, 백성 역시 조정에서 항상 염려한다는 뜻을 알게 될 듯합니다.”</p>	<p>給京倉黃豆以濟之。畿甸之內，尙或如此。況遠方不能聞見之處乎？觀察使雖加檢糾，守令或有慢不致意者。臣意以爲，時遣御史察之，則庶可使慢懦者勤謹，而小民亦知朝廷常有憂念之心也。”</p>
<p>중종 39권,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 (正德) 15년) 4월 14 일(신미) 1번째기사</p>	<p>정원(政院)이 아뢰기를, “선릉(宣陵)의 전사관(典祀官) 윤시호(尹時豪)가 급사(急死)하였는데 제물(祭物)과 숙수(熟手)9922) 가 다 곁에 있었으므로 범염(犯染)되었으니, 그 전물(奠物)을 쓰기가 매우 미안합니다. 곧 사관(史官)을 보내어 예관(禮官)과 대신(大臣)에게 수의(收議)하게 하고 다시 전수(奠需)를 장만하여 보내어 제사지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능참봉(陵參奉)도 다 범염되었으므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니, 입번(入番)한 충의위(忠義衛) 2인에게 말을 주어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사관의 연고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다. 곧 예조 낭관(禮曹郎官)을 불러 본조의 당상(堂上)에게 묻게 하라.” 하매, 정원이 또 아뢰기를, “전사관은 치재(致齋)9923) 하지 않은 자를 차출하여 보낼 수 없으니, 향실(香室)에 입직한 관원에게 말을 주어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전자에 문소전(文昭殿)9924) 에 입직한 충의위가 급사하였으나 친제(親祭)하지 않았는데, 돼지가 공릉(恭陵)9925) 의 영토(塋土)를 뺏을 때와 종묘(宗廟)의 우양(牛羊)이 죽었을 때에는 반드시 경계를 보인 것이리라고 생각하여 다</p>	<p>○辛未/政院啓曰：宣陵典祀官尹時豪急死。祭物及熟手，皆在傍犯染，以其奠物，用之甚爲未安。以其意製文，徐徐退行其祭可矣。然明日乃大祭，闕祭亦未安，卽遣史官，收議于禮官及大臣，更備奠需而送，行祭何如？且陵參奉，皆已犯染，勢難參祭。入番忠義衛二人，給馬以送何如？”傳曰：“不可以典祀官緣故闕祭。卽召禮曹郎官，問于本曹堂上。”政院又啓曰：“典祀官，不可以不致齋者差送。香室入直官員，給馬以送何如？”上曰：“然。”傳曰：“前者文昭殿入直忠義衛急死，而不親祭，至於猪掘恭陵塋上及宗廟牛羊之死，意必示警，而皆親祭。此事雖與彼不同，親祭何如？改備奠需，止行明日祭耶？遣史官，并問于大臣。”其議云：“明日之祭，改備奠物而行爲當。但上陵之禮，行之於平時，則固當矣，若以人之偶然而死，非如犧牲示譴之類，而特爲此別祭，則恐歸怪誕也。”禮曹判書議云：“典祀廳亦犯染，</p>

	<p>친제하였다. 이번 일은 저번 일과 같지는 않으나 친제하는 것이 어떠한가? 전수를 다시 장만하고 내일의 제사는 멈출 것인지를, 사관을 보내어 대신에게 아울러 묻게 하라.”</p> <p>하매, 대신이 의논드리기를, “내일의 제사는 전물을 다시 장만하고서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상릉(上陵)의 예(禮)는 평시에 행하는 것이라면 워낙 마땅하겠으나 사람이 우연히 죽은 것 때문이라면 희생으로 경계를 보인 것과 같은 유가 아닌데, 특별히 이 때문에 별제(別祭)한다면 괴탄(怪誕)한 것이 될 듯합니다.”</p> <p>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가 의논드리기를, “전사청(典祀廳)도 범염되었으므로 전물을 장만할 수 없으니, 따로 전사청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p> <p>하니, 전교하시기를, “괴탄하다는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능에 참배하는 것은 상시의 예이며 이제 이 변을 당하여 마음에 미안하므로 묻은 것이다. 사람은 과연 희생과 다르니, 대신의 의논도 마땅하다.”</p> <p>하였다.</p>	<p>不可備奠物，姑別設典祀廳何如？”傳曰：“怪誕事，未之知也。非但以人死，故欲行之，拜陵乃常時之禮，今遭此變，心所未安，故問之耳。人物果與犧牲有異，大臣之議，亦當也。”</p>
<p>중종 39권,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 (正德) 15년) 5월 18 일(을사) 5번째기사</p>	<p>대마도(對馬島) 주(主) 종성순(宗盛順)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土宜)10062) 를 바쳤다.</p>	<p>○對馬島主宗盛順遣人，來獻土宜。</p>
<p>중종 39권,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 (正德) 15년) 6월 8일 (갑자) 4번째기사</p>	<p>가뭄이 심하므로 술을 금하고, 대신을 종묘(宗廟)에 보내어 비를 빌었다.</p>	<p>○以(早) [旱] 甚，禁酒，遣大臣禱雨於宗廟。</p>
<p>중종 40권,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p>	<p>독서당(讀書堂)에 선운(宣醞) 하였다.</p>	<p>○宣醞于讀書堂。</p>

<p>(正德) 15년) 7월 2일 (무자) 3번째기사</p>		
<p>중종 40권,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 (正德) 15년) 7월 10 일(병신) 1번째기사</p>	<p>날마다 잇따라 큰 비가 내려서 강가에 사는 백성이 많이 표몰(漂沒)당하고 집이 쓰러지고 산기슭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과 가축이 매우 많았는데, 경중(京中)과 광주(廣州)가 더욱 심하므로 인구를 헤아려서 쌀과 베를 내려 주었다.</p>	<p>○丙申/連日大雨，沿江居民，多被漂沒，家舍頽壓，山岸沙汰，人畜死者甚多。京中及廣州尤甚，計口賜米布。</p>
<p>중종 40권,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 (正德) 15년) 8월 28 일(계미) 1번째기사</p>	<p>상이 동교(東郊)에서 관가(觀稼)10217) 하고 지나는 곳의 농부에게 술과 고기를 내렸으며, 시신(侍臣)에게 명하여 제천정(濟川亭)이란 글제로 오언 율시(五言律詩)를 짓게 하고, 이어서 무사(武士)의 재예(才藝)를 시험하였다.</p>	<p>○癸未/上觀稼于東郊。賜所過農夫酒肉，命製侍臣以濟川亭五言律詩，仍試武士才。</p>
<p>중종 40권,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 (正德) 15년) 윤8월 12일(정유) 2번째기사</p>	<p>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또 아뢰기를, “신이 시학(視學)의 의주(儀註)10229) 를 보니, 시강관(侍講官)부터 아래로 유생(儒生)까지는 다 작(爵)10230) 을 내리나 시신(侍臣)은 계(階)에 오르는 절차가 있을 뿐이고 술을 내리는 의식이 없는데, 전일 습의(習儀) 때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마실 수 없다 하고 예관(禮官)은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대저 시학은 중한 일이고 스승을 높이는 중한 도리인데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례(盛禮) 때에 이 의식이 정해지지 않아, 시신이 마시지 않아야 할 것을 마시고 상께서 내리지 않아야 할 것을 내리신다면 다 예에 맞는 일이 아니니, 대신·예관과 의논하여 그 의식을 정해서 후세의 항규(恒規)로 삼으소서. 또 명륜당(明倫堂)이 좁은데, 삼공(三公)은 부득이 들어가야 하겠으나 2품의 재상(宰相)이라면 반드시 들어갈 것 없으며, 시학하고 작을 내리는 것은 중한 예(禮)이고 큰 뜻은 스승을 높이고 선비를 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에 있는데, 시강관이 어지러이 들어간다면 엄숙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p>	<p>○臺諫啓前事。憲府又啓曰：“臣觀視學儀註，自侍講官，下及儒生，皆賜爵，而侍臣則但有上階節次，而無賜酒之儀。前日習儀時，或以爲可飲，或以爲不可飲，禮官以爲飲之爲當。夫視學重事，尊師重道，豈偶然哉？如此盛禮之時，此儀不定，侍臣之不當飲而飲，上之不當賜而賜，皆非合於禮也。請與大臣、禮官，議定其儀，以爲後世之恒規。且明倫堂窄小，三公則不得已入矣，若二品宰相，則不必皆入。視學而賜爵，重禮也，而大意存乎尊師重儒之兩端。若侍講官亂入，則似不嚴肅。”上曰：“侍臣賜酒事，當令大臣、禮官議之。侍講官入侍多小得中事，令更磨鍊。餘皆不允。”</p>

	<p>“시신에게 술을 내리는 일은 대신과 예관을 시켜 의논하게 하겠다. 시강관이 입시하는 수를 알맞게 하는 일은 다시 마련하게 하라. 나머지는 다 윤택하지 않는다.”</p> <p>하였다.</p>	
<p>중종 40권,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 (正德) 15년) 윤8월 16일(신축) 2번째기사</p>	<p>삼공과 예관(禮官)이 시신(侍臣)에게 술을 내리는 의주(儀註)를 의논하여 아뢰기를,</p> <p>“예문(禮文)을 보면 강서관(講書官) 이하와 유생(儒生)에게 술을 내리고 시신에게도 술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정(情)으로 말하면 작(爵)을 올리기 전에 먼저 시신에게 술을 내리는 것이 이상하나, 예문에 실려 있는 대로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p> <p>하니, 상이 그대로 따라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시강관(侍講官) 이하에게 술을 내렸다.</p>	<p>○三公及禮官， 議賜侍臣酒儀註曰：“以禮文觀之， 則賜講書官以下及儒生酒， 侍臣亦當賜酒。 但以情而言， 則進爵前， 先 賜侍臣酒爲異， 然從禮文所載可也。” 上從之， 御明倫堂， 賜侍講官以下酒。</p>
<p>중종 40권,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 (正德) 15년) 10월 2 일(병술)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과 홍문관(弘文館)에 선온(宣醞)을 내리고 특별히 명하여 취하고 배부르도록 먹게 하고 이어서 ‘이변 만국(籬邊晚菊)’·‘상강 추월(湘江秋月)’·‘동정 황감(洞庭黃柑)’이란 글제로 칠언 율시(七言律詩)를 각각 지어 바치게 하였다.</p>	<p>○賜宣醞于承政院、弘文館， 特命從容醉飽， 仍御題 ‘籬邊晚菊、湘江秋月、洞庭黃柑’ 七言律詩， 使各製進。</p>
<p>중종 41권,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 (正德) 15년) 12월 19 일(계묘) 1번째기사</p>	<p>풍정(豐呈)10435 을 대비전(大妃殿)에 올리게 하고 전교하였다.</p> <p>“지금 백미(白米) 40곡(斛)과 관목면(官木綿)·마정포(麻正布) 각각 5백 필(匹)을 즉시 어의동(於義洞)에 있는 본궁(本宮)으로 수송(輸送)하라.”</p>	<p>○癸卯/進豐呈于大妃殿， 傳曰：“今獻白米四十斛、官木綿、正布各五百匹， 其卽輸送于於義洞本宮。”</p>
<p>중종 41권, 16년 (1521 신사 / 명 정덕 (正德) 16년) 2월 3일 (병술) 3번째기사</p>	<p>경기도 관찰사 성운(成雲)이 염장(鹽醬)을 공급하여 백성 구제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p>	<p>○京畿觀察使成雲， 請給鹽醬賑民， 從之。</p>

중종 41권, 16년
(1521 신사 / 명 정덕
(正德) 16년) 3월 10
일(임술) 4번째기사
제주 목사 이운이 치
계하여 유망하거나 죽
은 사람의 공채의 견
감 등 제반에 관해 아
뢰다

제주 목사 이운이 치계하기를,
“본주(本州)는 민호(民戶)가 사망하면 공채(公債)의 독촉이 친족과 절린(切隣)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모두들 떠나 흩어져 반은 폐허가 된 실정이니, 공물(貢物)을 견감시켜 주소서. 이곳에서 많이 나는 토산물이라면 모르겠지만, 수채(首鬣) 같은 것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도로 옮겨 분정(公定)하소서. 목장(牧場)의 말이 죽으면 그 가죽으로 곡물을 사서 겨울에 말을 기를 용도에 대비해 왔는데, 근래 이를 혁파하였습니다. 때문에 눈이 쌓이면 기를 수가 없어 죽는 말이 많았습니다. 전례(前例)에 따르게 해 주소서. 과거에는 해마다 민마(民馬)를 사서 관(官)의 목장에 놓아 길렀으므로 숫자가 1만 필(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그 반수가 없어졌고 민마도 값이 배로 뛰었음은 물론, 관에 팔기조차 즐겨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비(奴婢)의 공포(貢布)10546) 를 더 지급하여 사들이게 하여 주소서. 갑술년(10547) 에 큰 풍채(風災)가 있어 과목(果木)이 많이 말라 죽었습니다. 아직 바치지 못한 청귤(靑橘) 등과 우모(牛毛)·노비 신공(奴婢身貢)도 아울러 견감하여 주소서. 육지로 옮겨 가 사는 노비는 모두 쇄환(刷還)하게 하고, 쇄환하지 못하는 노비는 있는 곳에서 신공(身貢)을 거두게 하소서. 제사에 쓸 검은 소는 민간에서 가려 뽑아 오래도록 관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기에 알맞지 않은 것도 있어 늪료(廩料)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감귤(柑橘)은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 옮겨 심어 보았으나 끝내 열매가 맺지 않았으니, 아울러 정파하소서. 전복(全鰓) 등의 물품은 공포(貢布)로 대납(代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복을 이미 견감하였으니, 공포도 연수(年數)를 한정하여 반으로 견감시켜 주소서. 정의(旌義)의 목자(牧子)·어호(漁戶)로 배정된 공천(公賤)·사천(私賤) 가운데 도망하여 흩어진 자가 많습니다. 이들을 쇄환하여 생업이 안정될 때까지 복호(復戶)10548) 시켜 주소서. 이 고을은 여름과 가을로는 늘 음산하고 흠비가 내리므로 각궁(角弓)을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물(貢物)인 마

○濟州牧使李耘馳啓曰：“本州死亡民戶公債之督，及於族隣，竝皆離散，半爲丘墟，請蠲減貢物。頗多土產，則已，如首鬣，無處無之，請移定他道。牧場馬斃，以皮質穀，備冬月別養之用，近來革罷，雪深無養，多致故失，請依前例。年年買民馬，放養官場，故數至萬匹，今耗其半，民馬亦價倍，不喜官買，請以奴婢貢布，加給買買。甲戌年大風爲災，果木多枯，其未納靑橘等及牛毛、奴婢身貢，請并蠲減，奴婢移居陸地者，請皆刷還，其未還者，令所在收貢。祭用黑牛，擇取民間，久養于官，或不中用，虛費廩料。且柑橘移種沿海各邑，終不結實，請竝停罷。全鰓等物，以貢布代納，而全鰓既減，貢布請限年減半。旌義牧子、漁戶公賤，多逃散，請刷還，限安業復戶。其邑夏秋陰霾，難用角弓，以貢物馬筋，着諸木弓，以備不虞。大靜，人物流亡殆盡，請割本州今勿、岳里，屬之。且元居私賤，以公賤換爲牧子。校生識字者三、四人，請權革訓導，擇學長教之。竝革軍官，而擇縣人有武才者，帶率何如？”啓下戶曹，

	<p>근(馬筋)10549) 을 목궁(木弓)에 접촉시켜 뜻밖의 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정(大靜)은 인물이 거의 다 유망(流亡)되었으니, 본주의 금물(今物)·악리(岳里)를 떼어서 예속시키게 하소서. 또 원래부터 살던 사천에 대해서는 공천으로 바꾸어 목자(牧子)를 삼게 하소서. 교생(敎生) 가운데 글자를 아는 사람이 3~4인에 불과하니, 임시로 훈도(訓導)를 혁파하고 학장(學長)을 선택하여 가르치게 하소서. 아울러 군관(軍官)도 혁파하고 무재(武才)가 있는 고을 사람을 가려 통솔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호조에 계하(啓下)하였다. 호조가 회계(回啓)하기를, “유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공채를 견감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호(人戶)와 받아갔던 곡식의 숫자를 기록하여 올리게 하소서. 그런 뒤에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소와 말 가족으로 곡물을 사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소와 말 가족값으로 군자(軍資)에 보충하게 하였으니 경솔히 고칠 수 없습니다. 거행하지 마소서. 또 아직 바치지 않은 청굴 등과 우모(牛毛)는 아뢴 대로 견감시키소서. 또 연해에 사는 노비의 신공을 반으로 견감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뢴 대로 2년을 한정하여 반으로 견감시키소서.”</p> <p>하였다.</p>	<p>回啓曰：“流亡、物故人公債蠲減事，請令開錄其人戶及所受穀數以啓後，更議施行。牛馬皮所質穀，則已令補軍資，不可輕改，請勿舉行。且其未納青橘等及牛毛，則請依啓蠲減。且沿海居奴婢身貢半減事，請依所啓，限二年半減。”</p>
<p>중종 41권, 16년 (1521 신사 / 명 정덕(正德) 16년) 3월 21일(계유) 2번째기사 조지서 사지 이종이 꿀의 진공의 폐단을 들어 이를 면제시켜 줄 것을 청하다</p>	<p>윤대(輪對)를 들었다. 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 이종(李縱)이 아뢰기를, “신이 수령으로 있을 때 보건대, 각 고을에 벌통을 설치하고 해마다 꿀 뜨는 양(量)을 매기고 있는데 그 매긴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관(官)에서는 한 통도 치지 않고 벌을 치는 촌민(村民)으로 하여금 진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저 농지세(農地稅)로 진공하는 것으로도 국용(國用)에 쓰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벌을 치게 해서 꿀을 충족시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벌통에서 거둔 꿀은 군읍(郡邑)에 저장한 채 상납(上納)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색깔과 맛이 변해서 쓸 수 없게 된 뒤에야 그 꿀로 곡식을 사서 군자(軍資)에 보충하게 합니다. 곡식을 무역할 때는 강제로 농민들에게 사게</p>	<p>○聽輪對。造紙署司紙李縱曰：“臣爲守令時見之，各官設蜂桶，逐年課蜜，厥數猥多，而官不畜一桶，令村民畜蜂者供之。大抵，田賦所貢，足以供國用，何必畜蜂，然後爲足蜜哉？其蜂桶所取，則藏之郡邑，不曾上納。歲月漸久，色味俱變，至於不可用，然後令質穀，以補軍資。終必抑賣農民，以充其穀，名爲換賣，而實強取之，豈無</p>

	<p>해서 그 곡식으로 보충하고 있으니, 명칭만 환매(換賣)지 실은 강제로 뺏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찌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면제시켜 궁한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소복시키소서.”</p> <p>하였다.</p>	<p>冤抑? 請使蠲除, 少蘇窮民。”</p>
<p>중종 41권, 16년 (1521 신사 / 명 정덕 (正德) 16년) 4월 28 일(기유) 6번째기사</p>	<p>우부승지 김희수가 아뢰기를,</p> <p>“황제가 붕했으니 사목(事目)대로 한다면 대사(大祀)와 소사(小祀)를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또 벽제에서는 선위연(宣慰宴)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변복(變服)을 얹고 태연 자약하게 고기와 술을 먹을 수도 있으니 이 연회도 정지해야 합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예관(禮官)에게 물으라.”</p> <p>하매, 판서 권균이 아뢰기를,</p> <p>“대사와 소사는 예문대로 하자면 의당 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종묘기우제(宗廟祈雨祭)·능전제(陵殿祭)는 아울러 정지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압니다. 또 저들이 선위연을 베풀 때 태연 자약하게 술과 고기를 먹게 된다면 연회를 베풀 수 없습니다. 단지 연회에 쓸 물膳(物膳)만 단자(單子)에 쓰고 정지시켜야 합니다.”</p> <p>하였다.</p>	<p>○右副承旨金希壽啓曰: “帝崩, 若依事目, 大小祀, 皆可停之。且於碧蹄, 當設宣慰宴, 然彼若不變服、食肉自如, 則是宴, 亦可停耶?” 傳曰: “其問于禮官。” 判書權鈞曰: “大小祀, 在禮文宜停也。臣意以爲, 宗廟、祈雨祭, 陵、殿祭, 竝令勿停爲當。且彼食肉、飲酒自如, 宣慰宴不可設。但以宴用物膳, 書諸單子, 停之而已。”</p>
<p>중종 42권, 16년 (1521 신사 / 명 정덕 (正德) 16년) 5월 20 일(신미) 4번째기사</p>	<p>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p> <p>“이 일을 가지고 3~4일에 이르도록 결정을 보지 못하고 어제 두목을 친견(親見)하게 되었으니 통심(痛心)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선왕의 성례(成禮)를 결코 훼손(毀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세가 이러하니 석자(席子)·포자(布子)·인삼 등 물품은 수를 더하여 보내도 좋겠습니다.</p>	<p>○三公議啓曰: “以此事, 至于三四日不決, 而昨日至於親見頭目, 痛心莫甚。先王成禮, 決不毀之, 然事勢如此, 至於席子、布子、人參等物, 加數而送, 亦當。”</p>
<p>중종 42권, 16년</p>	<p>전교하기를,</p>	<p>○傳曰: “魯山夫人宋氏別賻, 以完山</p>

<p>(1521 신사 / 명 정덕 (正德) 16년) 6월 6일 (병술) 5번째기사</p>	<p>“노산 부인 송씨의 별부(別賻)는 완산군 부인(完山君夫人)의 예(例)로 하되 다만 역청(瀝靑)·칠관곽(漆棺槨) 1부씩을 더하여 제급(題給)하며, 3년 안의 제소(祭所)에는 소선(素膳)으로 공상(供上)하라.”</p>	<p>君夫人例，只加瀝靑、漆棺槨各一部題給，三年內祭所，以素膳供上。”</p>
<p>중종 42권, 16년 (1521 신사 / 명 정덕 (正德) 16년) 6월 26일(병오) 1번째기사</p>	<p>양사(兩使)를 청하여 경회루(慶會樓)에서 연회를 베푸니, 양사가, “어제 도감 낭관이 모두 체직되었다 하는데 무슨 연고입니까?” 하니, 임금이, “황제의 상중에 고기를 먹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불가불 추고해야겠기에 다른 낭관을 바꾸어 차정하였습니다.” 하매, 양사가, “이는 긴급한 일이 아니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 임금이, “두 대인과 나와 그리고 온 나라가 최복을 하고 소식(素食)을 하는데, 유독 저들이 고기를 먹었다 하니, 내가 매우 놀라왔습니다. 의(義)에 문죄(問罪)해야 합니다.” 하매, 양사가, “우리들도 황제의 상을 듣고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지난 5월 초1일부터 기복(起服)하여 행상(行喪)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대의(大義)에 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소한 일이니 관대한 은혜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 임금이, “고기를 먹었다는 말은 아직 그 진위를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가볍게 용서를 허락하겠습니까?” 하매, 양사가, “우리들은 머문 지 오래되어 돌아가야 할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낭관의 노고가 지극하여 은전(恩典)을 내려주기 원하였는데, 이제 도리어 체직하여 추고</p>	<p>○丙午/請兩使，設宴于慶會樓。兩使曰：“昨日，都監郎官盡遞之，爲因何故?”上答曰：“聞，帝喪食肉，不可不推，故換差他郎官矣。”兩使曰：“是乃不緊之事，請饒他。”上曰：“兩大人與予及一國，服衰行素，而彼獨肉食，予甚驚訝，義當問罪。”兩使曰：“俺等亦聞帝喪食肉。自五月初一日起服行喪，是豈害大義?此乃小事也，請寬恩赦他。上曰：“食肉之言，時未知真偽，何能輕許赦乎?”兩使曰：“俺等留日已久，歸期已迫。勞苦郎官既極，願賜恩典，而今反有遞、推之事，心甚未安。”上曰：“方推之事，不可輕赦。當問情由，然後乃可饒也。”兩使曰：“唯。”</p>

	<p>한다는 사건이 있고 보니 마음이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임금이, “바야흐로 추고하고 있는 일을 가벼이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연유를 물어본 뒤에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하매, 양사는 ‘예, 예,’ 하였다.</p>	
<p>중종 42권, 16년 (1521 신사 / 명 정덕 (正德) 16년) 7월 15 일(갑자) 2번째기사</p>	<p>묘시에 임금이 양사(兩使)가 출발했다는 말을 듣고 경회문(慶會門) 안에 나아가 기다렸다. 양사가 우달문(右達門) 밖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문 안에 이르자, 임금이 나아가 맞이하고 서로 먼저 들어가기를 사양하면서 들어왔다. 경회루 아래에 이르자 자리를 바꾸어 예 행하기를 청했고, 술은 의식대로 들었다. 연회를 끝내려는데 큰 비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양사에게 누에 오르기를 청했다. 그리고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 두목(頭目)으로 하여금 당악(唐樂)을 연주케 하였다. 해가 저무는데도 비가 멈추지 않자 양사가 배사(拜辭)하므로 서로 사양하며 누를 내려왔다. 그리고 임금에게 먼저 환궁하게 하고 편리한 대로 우구(雨具)를 갖추겠다고 청하니, 임금이 그러도록 하였다. 양사는 석교(石橋)에서 의복을 바꾸어 입고 우구를 갖춘 다음 가마를 타고 갔다. 비가 물을 들어붓듯이 내렸다.</p>	<p>○卯時，上聞兩使登道，出待慶會門內。兩使至右達門外，下輜，步至門內，上出迎，相讓而入，至樓下，請換坐行禮，行酒如儀。宴將罷，大雨不止，上請兩使登樓，設小酌，令頭目奏唐樂。日晏，雨不止，兩使拜辭，相讓下樓。請上先入內，欲從便具雨具，上從之。兩使在石橋，改衣服、具雨具，乘輜以出，雨下如注。</p>
<p>중종 42권, 16년 (1521 신사 / 명 정덕 (正德) 16년) 7월 26 일(을해) 1번째기사</p>	<p>명나라 사신을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향연하였다. 두 잔씩을 돌리고 임금이 두 사신을 청하여 후원(後苑)을 유관(遊觀)하였는데, 임금과 두 사신이 모두 걸어서 서현정(序賢亭) 취로당(翠露堂)에 이르러 모두 작은 술자리를 마련하였다.</p>	<p>○乙亥/宴天使于慶會樓下。行二爵，上請兩使遊觀後苑，上與兩使，俱步至序賢亭、翠露堂，竝設小酌，</p>
<p>중종 42권, 16년 (1521 신사 / 명 정덕 (正德) 16년) 9월 10 일(무오) 1번째기사</p>	<p>서교(西郊)에 거둥하여 농사를 살피고, 길가의 남녀 농민(農民)에게 모두 술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p>	<p>○戊午/幸西郊，觀稼。路傍農人男女，皆命賜酒。</p>
<p>중종 43권, 16년 (1521 신사 / 명 정덕</p>	<p>또한 신이 젊었을 때 보면, 장인(丈人) 이의무(李宜茂)가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적에 더러는 각촉(刻燭)하고 제술(製述)을 시키되 호초(胡椒)·유둔(油</p>	<p>且臣少時，見妻父李宜茂爲弘文校理時，或燭刻製述，而如胡椒、油菴等物</p>

(正德) 16년) 10월 1일(기묘) 1번째기사	菴)10667) 같은 물품으로 자주 상을 주어 권장하는 뜻이 지극했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함이 좋겠습니다.”	數數賞賜，其勸獎之意至矣。今亦可行也。”
중종 43권, 16년 (1521 신사 / 명 정덕 (正德) 16년) 11월 26일(갑술) 2번째기사	등극사(登極使) 이유청(李惟淸) 등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오자, 인견하고 술을 내렸다.	○登極使李惟淸等回自京師，上引見賜酒。
중종 43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1월 1일(기유) 1번째기사	대비전(大妃殿)께 풍정(豐呈)을 올리고 종재(宗宰)·2품(品)이상과 홍문관·대간(臺諫)·승지·사관(史官)에게 정전(庭殿)에서 1등(等) 주악(酒樂)10806) 을 내렸다.	○己酉朔/進豐呈于大妃殿，賜宗宰二品以上、弘文館、臺諫、承旨、史官，一等酒樂于殿庭。
중종 43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1월 7일(을묘) 1번째기사 귤을 내리면서 시를 짓게 하다	귤[黃柑] 4백 개를 승정원·홍문관·예문관·시강원(侍講院)에 분배하여 내리면서, 각기 시를 지어 올리도록 하였다.	○乙卯/以黃柑四百箇，分賜于承政院、弘文館、藝文館、侍講院，令各賦詩以進
중종 43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1월 10일(무오) 2번째기사	부제학 김안로(金安老)·동부승지 유여림(兪汝霖)·사서(司書) 권예(權輓)·대교(待敎) 송순(宋純) 등에게 별조궁(別造弓) 1장(張)씩을 내렸는데, 전일 귤[黃柑]을 내린 시(詩)에 장원했기 때문이다.	○賜副提學金安老、同副承旨兪汝霖、司書權輓、待敎宋純等別造弓一張，以前賜黃柑詩居首也。
중종 43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1월 10일(무오) 4번째기사	권승(權勝)의 집에 쌀·콩·면포(縣布)·정포(正布)·관판(棺板)·지지(紙地)·유석(油席)·석회 등의 물건을 부의했다.	○賻贈權勝家米太、縣布、正布、槨板、紙地、油席、石灰等物。
중종 43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승지 서후(徐厚)가 예조(禮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정묘년에 사직제(社稷祭)를 친행(親行)할 때, 주금(酒禁) 때문에 음복(飲福)을	○己巳/承旨徐厚以禮曹意，啓曰：“丁卯年親行社稷祭時，以酒禁，只行飲福

(嘉靖) 1년) 1월 21일 (기사) 1번째기사	단지 한 잔씩만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리까?”	一爵。今年則何以爲之。”
중종 44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2월 30일 (정미) 3번째기사	좌의정 남곤이 명을 받고 빈청(賓廳)으로 나아가니 【영상은 아파서 부소(赴召)하지 못하였다.】 전교하기를, “중궁(中宮)이 요사이 감기 때문에 식사를 들지 않으려 하는데, 자전(慈殿)께서 분부하시기를 ‘이번의 증세가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상시(常時)와는 같지 않는데다 이미 탄월(誕月)10891) 이 임박했으므로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하다.’ 하신다.	○左議政南袞承命詣賓廳，【領相病不赴召。】傳曰：“中宮近因感寒，不肯進食。慈旨以爲，此證雖不緊，不似常時，已臨誕月，心甚未安。
중종 44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3월 24일 (신미) 1번째기사	다만 청구하는 일로 온 사람에게는 5일에 한 차례의 주봉배(晝捧杯)10929)와 두 차례의 별하정(別下程)10930) 을 주는 예가 있는데, 이번에 만일 별하정만 두 차례를 주게 된다면 그들이 박대한다고 여길까 싶으니, 바라건대 정묘년에 한 대로 시행함이 어떠하리까?	但以求請而來者，亦有五日一次晝捧杯，二次別下程之例。今若但行別下程二次，則亦慮彼人以爲薄待也，請依丁卯年施行何如?
중종 44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4월 25일 (신축) 1번째기사	상이 창덕궁에 행행(行幸)하여 【이때 중궁(中宮)이 이곳으로 이어(移御)했었다.】 시위(侍衛)한 대소의 신료(臣僚)들을 모두 인정전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입직(入直)한 장수 및 군졸들도 모두 대접하였다.	○辛丑/上幸昌德宮，【時，中宮移御于此。】侍衛、大小臣僚，竝饋餉于仁政殿庭，入直將士及軍卒，竝餉之。
중종 44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5월 11일 (병진) 2번째기사	대궐 뜰에서 시위(侍衛)하는 제장(諸將)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饋侍衛諸將于闕庭。
중종 44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5월 12일 (정사)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과 소이전(小二殿)의 사송(使送) 및 대마도(對馬島) 특송(特送) 등을 접견하고, 술을 일곱 잔씩 내렸다.	○丁巳/御勤政殿，接見日本國王使臣、小二殿使送、對馬島特送等，賜酒七爵。
중종 44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서후가 아뢰기를, “3도(道)의 진상(進上)이 모두 양재역(良才驛)을 경유하여 오므로 장차 지탱	徐厚曰：“三道【忠淸、全羅、慶尙等道。】進上，皆由良才而來，將不能

<p>(嘉靖) 1년) 5월 30일 (을해) 1번째기사</p>	<p>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물(生物) 같은 것은 부득이 시기에 미쳐 봉진(封進)해야 하므로 역마(驛馬)로 수송해야 하나, 건물(乾物) 같은 경우는 경상도의 진상은 충주(忠州)에서 수로(水路)로 배에 싣고 옴이 가하고, 충청도의 건물도 모두 충주에 모으면 아울러 수로로 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묘군(造墓軍) 및 교군(驍軍)도 많이 역(驛) 사람을 쓰므로 폐단이 많으니 금단하기 바랍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역로(驛路)를 소복(蘇復)하는 일은 이미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했다.”</p> <p>하였다.</p>	<p>支。如生物則不得已及期封進，載輸驛馬可也，如乾物則慶尙道進上。由忠州水路，載船而來可也。忠淸道乾物亦都會於忠州封進，則并可以由水路載來也。今者，造墓軍及驍軍，多借驛人，其弊不貲，請禁之。” 上曰：“驛路蘇復事，已令兵曹磨鍊矣。”</p>
<p>중종 45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6월 2일 (정축) 1번째기사</p>	<p>정원이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 성세창(成世昌)이 지난달 21일에 길을 떠나려고 했었기 때문에 도계(道界)에 도착한 진상(進上)할 물건들을 모두 원주(原州)에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논박을 받게 되어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비록 독촉하여 부임하게 되더라도, 말린 물건[乾物]은 봉진(封進)할 수 있겠지만, 날것[生物]은 반드시 모두 상했을 것인데, 생산하는 곳의 길이 또한 멀어 때맞춰 봉진하지 못하게 되겠다고 생각되기에 감히 취품(取稟)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말린 물건들은 전대로 봉진하고, 날것들은 봉진하지 말도록 하여 민폐가 제거되게 하라.”</p> <p>하였다.</p>	<p>○丁丑/政院啓曰：“江原道觀察使成世昌，欲於前月二十一日發程，故到界進上，皆會原州以待，而適被駁未發。今雖督赴，如乾物則可以封進矣；生物則必皆腐爛，而其產處，程途亦遠想未能及時封進，敢取稟。” 傳曰：“乾物依舊封進，生物勿令封進，以除民弊。”</p>
<p>중종 45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6월 6일 (신사) 8번째기사</p>	<p>한재 때문에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 철악(減膳撤樂)하고, 남문(南門)은 닫고 북문을 열고 천시(遷市)10992) 하였으며, 피고(皮鼓)를 치지 않았다.</p>	<p>○以旱災，避正殿、減膳、撤樂，閉南門、開北門、遷市，不擊皮鼓。</p>
<p>중종 45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p>	<p>남곤은 아뢰기를, “그 도의 무재(武才)있는 사람들을 뽑아 굳게 지킨다면, 비록 대마도를 통틀</p>	<p>南袞曰：“抄其道有武才者，堅守則對馬島雖捲土而來，恐未得長驅也。且</p>

<p>(嘉靖) 1년) 6월 26일 (신축) 3번째기사</p>	<p>어 온다 해도 오랫동안 버티지는 못하리라 싶습니다. 또 거주하는 백성들이 바다에서 어채를 할 때 의복과 식량을 약탈당하게 되는 폐단이 없지도 않지만, 만일 진상(進上)하는 삭선(朔膳)을 감하지 않는다면, 수령들이 반드시 일체 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니 공상을 감해주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지당한 말이다.” 하였다.</p>	<p>如居民海採之時，標掠衣糧之弊，亦不無也。進上朔膳若不蠲減，則守令必不得一切禁之，請蠲減其貢獻也。”上曰：“此言當矣。”</p>
<p>중종 45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7월 4일 (무신) 5번째기사</p>	<p>전라도 낙안현(樂安縣)에 큰 비가 내려 산곡이 무너지고 인가가 파묻혔으며, 사망자 7인과 부상자 4인이 발생하였다. 수해민에게 쌀 1섬씩과 정포(正布) 1필씩을 주도록 명하였다.</p>	<p>○全羅道樂安縣大雨，山谷崩頽，人家漂沒，死者七人，傷者四人。命賜米各一石，正布各一匹。</p>
<p>중종 45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7월 5일 (기유) 2번째기사 이유청이 복전하기를 청하다</p>	<p>이유청이 아뢰기를, “요즈음 비가 흠족히 내렸고 피전(避殿)하신 지도 이미 한 달 남짓 되었으니, 복전(復殿)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비가 흠족히 내렸다고는 하나 전국이 두루 흠족하게 내렸는지도 알 수 없거니와 한재뿐 아니라 재변의 보고가 잇달아 들리는데, 비가 조금 왔다고 해서 피전하는 일을 어찌 풀 수가 있겠는가? 피전은 비록 문식(文飾)에 불과한 일이나 역시 공구 수성(恐懼修省)하려는 뜻에서이다. 대간도 오히려 하늘의 경계에 대해서 삼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들으니 금년에도 흉년이 들 조짐이 보인다 하니, 곡식의 결실을 보고 복전하겠다.” 하였다.</p>	<p>○李惟清啓曰：“近者，雨澤優洽，而避殿已經月餘，請復殿。”傳曰：“近來，雖云雨澤饒洽，而亦不知遍雨也。非徒旱災，災變之報，絡繹不絕，豈可以小雨，而自弛避殿之事？雖似文飾，亦欲恐懼修省也。臺諫，猶以不謹天戒爲言。又聞，今年亦有凶歉之漸，見西成，而復殿也。”</p>
<p>중종 45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8월 23일 (병신) 1번째기사</p>	<p>정원이 아뢰기를, “대비전께서 ‘직미(稷米)와 붕어(鮪魚)를 들이지 말라.’ 명하셨는데, 지금 의녀(醫女)에게 들으니, 대비전께서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만두게 하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붕어는 곧 사복시(司僕寺)에서 6~7인을 동원해 잡는 것</p>	<p>○丙申/政院啓曰：“大妃殿命勿進稷米及鮪魚。今聞於女醫，則自內，慮其有弊，而止之矣。然鮪魚乃司僕寺六、七名之所捉；稷米乃司藥寺素所收</p>

<p>정원이 대비전에서 직미와 붕어를 들이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아뢰다</p>	<p>이고 직미는 곧 사도시(司樂寺)에 본래 저장되어 있는 것이니, 모두가 조금도 폐단이 없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은 필시 대비전의 뜻일 것이니 나는 잘 모르겠다.” 하였다.</p>	<p>儲，皆無小弊。” 傳曰：“此必大妃殿意也，予所不知。”</p>
<p>중종 45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嘉靖) 1년) 8월 23일 (병신) 3번째기사</p>	<p>정원이 아뢰기를, “대비전께서 편찮으시니, 오는 9월 9일에 있을 양로연(養老宴)과 기영회(耆英會)의 일을 어떻게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양로연은 큰 일인데 자전(慈殿)이 편찮으시니 행할 수 없다. 주식(酒食) 내려 주는 일을 마련해 아뢰라. 남녀 노인에게 내려 줄 때에는 사천(私賤)을 따지지 말고 주육(酒肉)을 차등 있게 내려 주라.” 하였다.</p>	<p>○政院啓曰：“大妃殿未寧，來九月九日養老耆英會事，何以爲之？” 傳曰：“養老大事，慈殿未寧，不可行也。酒食賜給事，磨鍊以啓。” 賜老人男女，勿論私賤，酒肉有差。</p>
<p>중종 45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嘉靖) 1년) 8월 29일 (임인) 2번째기사</p>	<p>정원이 아뢰기를, “대비전께서 드시는 생련자(生蓮子)를 장원서(掌苑署)로 하여금 진상에게 하였으나 제때가 아니므로 진상할 수 없다 하오니, 청컨대 경기(京畿)로 하여금 진상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폐단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자전에서 강녕하실 때까지만 진상하게 하라.” 하였다.</p>	<p>○政院啓：“大妃殿進御生蓮子，令掌苑署進排，而非時，故不能進，請令京畿供進。” 傳曰：“無乃成弊耶？只令慈殿康寧間，進排。”</p>
<p>중종 45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嘉靖) 1년) 8월 30일 (계묘) 2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기를, “평안 감사 장계에 ‘서울 장사치와 안악(安岳) 사람 등 13명이 유기(鑰器)와 인삼(人蔘)을 몰래 가지고 나가 요동(遼東) 지방에서 팔고 돌아오다가 선천(宣川)에서 붙잡혔다.’ 하였으니, 상국(上國) 지경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p>	<p>○傳于政院曰：“平安監司狀啓云：‘京商及安岳人十三輩，挾鑰器、人蔘，販質於遼東地面，而回來時，見捉於宣川。’云。擅入上國地方，已是大罪。況以水路相通，尤爲駭愕。拿來</p>

	이미 큰 죄인데, 하물며 수로로 통행했음에랴? 더욱 놀랄 일이다. 그들을 잡아와야 될지 공문을 보내서 추고해야 될지, 그것을 해조(該曹)에 물어보라.”	與行移推考，其問于該曹。”
중종 46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9월 5일 (무신) 1번째기사 대비의 병세가 나아지 자 약방들에게 상을 준다	대비전(大妃殿)의 증세가 나아지자, 상이 약방(藥房)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제조(提調) 김詮(金詮)·장순손(張順孫)과 승지 조순(趙舜)에게는 말안장 20부(部)·활 1정(丁)·전죽(箭竹) 1부(部), 의원 하종해(河宗海)에게는 말 한 필과 쌀·콩 각 10석, 김순몽(金順蒙)에게는 말 1필, 의녀 신비(信非)와 장금(長今)에게는 각각 쌀·콩 각 10석씩을 주고, 내관(內官)·반감(飯監)·별감(別監)에게도 모두 하사가 있었다.】 전교하기를, “요사이 오래 일을 보지 않아 군신(群臣)들을 접하지 못하게 되니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그러나 자전(慈殿)께서 완전히 쾌차하지 못하시니, 아직 2~3일을 기다렸다가 경연(經筵)에 나아가겠다.” 하였다.	○戊申/大妃殿證候向愈， 上賞藥房有差。【提調金詮·張順孫、承旨趙舜，馬糒一部、弓一丁、箭一部，醫員河宗海馬一匹、米太十石， 金順蒙馬一匹，醫女信非、長今各米太十石，內官、飯監、別監亦皆有賜。】傳曰：“近日，久不視事， 不得接群臣， 心甚未安。然慈殿猶未永差， 姑待數日， 當御經筵。”
중종 46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10월 25 일(정유) 2번째기사	왕세자가 입학할 때 왕을 수행하여 참여한 삼공, 배종(陪從)한 빈객(賓客)·요속(僚屬), 익위사(翊衛司) 및 여러 집사(執事), 문묘(文廟)의 집사, 유생(儒生)과 생원(生員) 이경장(李敬長) 등 1백 15인을 근정전(勤政殿) 뜰에서 배향(饋餉)하였는데, 승지에게 명하여 술을 하사하고 장식하지 않은 활 한 자루씩을 하사하였다.	○饋王世子入學時隨參三公， 陪從賓客、僚屬， 翊衛司及諸執事， 文廟執事、儒生、生員李敬長等一百十五人于勤政殿庭， 命承旨宣醢， 各賜不粧弓一張。
중종 46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10월 28 일(경자) 3번째기사	명하여 종묘(宗廟)에 천금(薦禽)하고 신시에 환궁(還宮)하였다.	○命薦禽于宗廟。 申時， 還宮。
중종 46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11월 14 일(병진)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보고 난 뒤에 인출하게 해야겠다.” 하고, 희인에게 대전(大箭) 1부(部)와 술을 하사하였다.	傳曰：“覽後， 當令印出。” 遂賜希仁大箭一部及酒。
중종 46권, 17년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거둥하여 대비전에 문안하고 시위(侍衛)·종재(宗宰)·장	○辛酉/上幸昌德宮， 問安于大妃殿，

<p>(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11월 19일(신유) 1번째기사</p>	<p>사(將士) 및 승정원·대간·홍문관·양궁(兩宮)11172) 의 입직 장사들에게 인정 전(仁政殿)의 뜰에는 주찬(酒饌)을 하사하고 미시(未時)에 환궁하였다.</p>	<p>賜侍衛、宗宰、將士及承政院、臺諫、弘文館、兩宮【昌德、昌慶。】入直將士，酒饌于仁政殿庭，未時還宮。</p>
<p>중종 46권, 17년 (1522 임오 / 명 가정 (嘉靖) 1년) 12월 14일(병술) 2번째기사</p>	<p>오늘 아침에 내가 또한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 음식 드시는 것을 보니, 반 숟갈이나 되는 죽도 들지 못하시기에 내가 강권(強勸)하기를 ‘오래 음식을 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처럼 기운이 없으신 것이니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자, 자전께서 역시 억지로 죽을 반 숟갈쯤 드시다가 도로 토해 버려 내가 차마 볼 수가 없었다.</p>	<p>今朝予又侍側，見其進膳粥水，雖半匙，未能進御。予強勸曰：“久不進膳，故氣困如是，進膳最重。”慈殿亦勉強進粥水半匙，而還嘔，予不忍見之。</p>
<p>중종 47권, 18년 (1523 계미 / 명 가정 (嘉靖) 2년) 2월 13일(갑신) 9번째기사</p>	<p>상이 영상이 졸했다는 말을 듣고 소찬(素饌)을 들이게 하는 등 비통해 마지않다가, 밤중이 되어서야 내전으로 들어갔다.</p>	<p>○上聞頷相卒，令進素膳，悲慟不已，至夜分還內。</p>
<p>중종 47권, 18년 (1523 계미 / 명 가정 (嘉靖) 2년) 윤4월 13일(계축) 2번째기사</p>	<p>궐정(闕庭)에서 종실(宗室) 재신(宰臣) 2품(品) 이상과 시종(侍從)·대간(臺諫)·입직(入直) 장사(將士)에게 잔치를 내렸다.</p>	<p>○賜宴宗、宰二品以上及侍從、臺諫，入直將士于闕庭。</p>
<p>중종 47권, 18년 (1523 계미 / 명 가정 (嘉靖) 2년) 윤4월 20일(경신) 2번째기사</p>	<p>심언경이 인하여 아뢰기를, “회음(會飲) 등의 일은 본부가 항상 금하는 일입니다. 근래 한재(旱災)가 극심하니, 병술이라도 일체 금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발이 심하니, 나도 진념(軫念)하겠다. 병술이라도 일체 금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노병(老病)·구약(救藥) 및 사후(射候)하는 곳은 금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니, 분간해서 금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p>	<p>彦慶仍啓曰：“會飲等事，本府常時禁之。近來，旱災太甚，請一禁瓶酒。”傳曰：“旱氣太甚，予亦軫念。一禁瓶酒，固當然。老病救藥及射候處勿禁有例，分揀禁之可也。”</p>
<p>중종 48권, 18년</p>	<p>지난번에 한재로 인하여 피전(避殿)하고 감선(減膳)하려 하자, 대신들의 의논</p>	<p>頃因旱災，避殿、減膳，而大臣之議以</p>

<p>(1523 계미 / 명 가정 (嘉靖) 2년) 5월 24일 (계사) 1번째기사</p>	<p>이 ‘일본 사신이 지금 바야흐로 나오고 있어, 접대하는 예를 폐할 수가 없으니, 피전하심은 곤란하다.’ 하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었다. 사신이 전에는 반드시 4월 무렵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비록 여기서 오래 머물렀다 가라 해도 반드시 8월에 바람이 세어지면 즉시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오랑캐 접대하는 일은 우리 나라의 일 처리하는 것과 같지 않아 마땅히 접견해야 하는데, 이처럼 몹시 더울 적에는 혹 경회루 아래서 할 수도 있다. 이 일을 예조의 제향(饋餉) 다음에 마땅히 차례로 거행하겠으니, 예조에 말하라.”</p>	<p>爲: ‘日本使臣今方出來, 接待之禮不可廢, 而避殿則爲之亦難.’ 云, 故未果爲也。 使臣, 前則必於四月間出來, 而今則雖久留于此, 必於八月風高後, 卽欲入歸。 待夷之事, 非如處置我國之事, 所當接見, 如此酷熱之時, 則或爲之於慶會樓下。 此事, 禮曹饋餉後, 當以次舉行矣, 其言于禮曹。”</p>
<p>중종 48권, 18년 (1523 계미 / 명 가정 (嘉靖) 2년) 6월 26일 (을축) 5번째기사</p>	<p>남곤은 아뢰기를, “수군에 대한 일은, 이것이 곧 근본인데 그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경기도·황해도의 경우 소금을 굽고 해물(海物)을 수채(水採)하는 것을 모두 수군이 하고 있으므로 하루도 진(鎭)에 있을 때가 없는데, 또 경기도의 수군은 부득이 서울의 역사(役事)에까지 부역(赴役)합니다. 물선(物膳)에 관한 일 또한 중대한테 각포의 수군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김극성(金克成)은 아뢰기를, “수군이 바치는 물선은 스스로 수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값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사서 바치므로 그 폐단이 더욱 심하니, 이 또한 염려스럽습니다.”</p>	<p>袁曰: “水軍事, 乃是根本, 而恐不能行其事也。 如京畿、黃海兩道煮鹽及海採, 皆水軍所事, 無一日在鎭之時矣。 且京畿水軍則不得已赴役於京。 役事則已, 物膳之事, 亦且重大, 而非各浦水軍, 不能事矣。” 克成曰: “水軍所納物膳, 非所自採。 以其價, 來京貿納, 其弊尤甚, 此亦可慮。”</p>
<p>중종 49권, 18년 (1523 계미 / 명 가정 (嘉靖) 2년) 9월 6일 (계유) 1번째기사</p>	<p>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전경 문신(專經文臣)을 강(講)11679) 하고 입시(入侍)한 인원에게 선은(宣醞)11680) 하였다.</p>	<p>○癸酉/御思政殿, 講專經文臣, 宣醞入侍人員。</p>
<p>중종 49권, 18년 (1523 계미 / 명 가정 (嘉靖) 2년) 9월 9일 (병자) 1번째기사</p>	<p>대비전(大妃殿)에 풍정(豐呈)11682) 을 올리고, 또 종재(宗宰) 2품 이상과 대간·홍문관·승정원 및 입직(立直)한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사관(史官) 등에게 궐정(闕庭)에서 사악(賜樂)하고 선은(宣醞)하였다.</p>	<p>○丙子/進豐呈于大妃殿, 且宗宰二品以上, 臺諫、弘文館、承政院及入直兵曹、都摠府、史官等於闕庭, 賜樂宣醞。</p>
<p>중종 49권, 18년</p>	<p>전교하기를,</p>	<p>傳曰: “此事, 書諸史以垂後矣, 若只</p>

<p>(1523 계미 / 명 가정 (嘉靖) 2년) 9월 15일 (임오) 4번째기사</p>	<p>“이 일은 사책에 찍어 후세에 전해질 것인데, 이대로 계하(啓下)11700) 하면 범연(泛然)할 것이다. 작은 죄이기는 하나 분명히 승전(承傳)을 바쳐서 해야 할 것이니, 승전을 바쳐 종부시에 계하하여 떠날 날의 기한을 정하도록 하라. 쌀·콩을 1년에 40석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대저 조관(朝官)의 녹봉(祿俸)에도 정포(正布)11701) 와 주(紬)11702) 가 있으니 정포와 주를 적당히 주도록 하고, 봄·가을로 각각 쌀 30석과 콩 15석을 주도록 하라.”</p> <p>하매, 삼공 등이 봄·가을로 각각 쌀 30석과 콩 15석, 면주(綿紬)11703) 3필과 정포 5필을 주도록 하는 일을 표를 붙여 입계하였다.</p>	<p>以此啓下則泛然矣。雖小罪，當分明捧承傳爲之，其卽捧承傳，啓下宗簿寺，發送日定限可也，米豆一年只給四十石不可也。大抵，朝官祿俸，正布及紬亦有之矣。布紬量數許給，春秋各給米三十石、豆十五石可也。”三公等以春秋各米三十石、豆十五石、絺紬三匹、正布五匹許給事，付標入啓。</p>
<p>중종 49권, 18년 (1523 계미 / 명 가정 (嘉靖) 2년) 9월 18일 (을유) 1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영산군이 다른 곳에 가 사는 동안 식물(食物)·염장(鹽藏)을 장만하여 주도록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라.</p>	<p>○乙酉/傳曰：“寧山君新接間，食物鹽醬備給事，下書于觀察使。</p>
<p>중종 50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 (嘉靖) 3년) 1월 2일 (정묘) 1번째기사</p>	<p>궐정에서 종재에게 궐향하였는데, 온(醢)11807) 1등을 내리고 음악은 내리지 않았다.</p>	<p>○丁卯/餉宗宰于闕庭，賜醢一等，不賜樂。</p>
<p>중종 50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 (嘉靖) 3년) 1월 2일 (정묘) 2번째기사</p>	<p>대마 도주(對馬島主) 종성장(宗盛長)의 사송(使送)11808) 삼보라(三甫羅)가 와서 방물(方物)을 바쳤다.</p>	<p>○對馬島主宗盛長使送三甫羅，來獻方物。</p>
<p>중종 50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 (嘉靖) 3년) 1월 27일 (임진) 3번째기사</p>	<p>금궤(金橋) 10과(顆)를 정원(政院)에 내리고, 입직(入直)한 승지(承旨)·주서(注書)·한림(翰林)11864) 과 홍문관(弘文館)의 입직한 관원들에게 명하여 궤에 대하여 부(賦)를 짓게 하였다</p>	<p>○下金橋十顆于政院，命入直承旨、注書、翰林、弘文館入直官員賦橋。</p>

<p>금궐 10과를 정원에 내리다</p>		
<p>중종 50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 (嘉靖) 3년) 3월 3일 (무진) 2번째기사</p>	<p>남곤이 이어서 아뢰기를, “세자빈이 조현(朝見)할 때에 쓸 단수(殿脩)는 전례로는 다 전라도 병사(全羅道兵使)가 봉진(封進)하는 것을 썼으므로 이 일을 전에 이미 행이(行移)11925) 하였으나, 날을 당겨 정한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니 미처 올려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옹원(司饗院)에 있는 것으로 우선 만들어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袁仍啓曰：“世子嬪朝見時所用殿脩，前例皆以全羅道兵使所封進用之。此事，前已行移矣，然進定之事不得知矣，必不及上送，請以司饗院所在，先造用之何如?”</p>
<p>중종 50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 (嘉靖) 3년) 3월 21일 (병술) 1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 “올해는 가뭄이 심하여 중외(中外)가 흉년입니다.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은 상례(常例)로 궤양(饋養)하는 것이 1백 인이기는 하나, 늘 그 액수에 차지 않으므로 공궤(供饋)하는 수가 50~60에 불과하였을 뿐이었는데, 올해는 마침 별시(別試) 때문에 많이 모였으니, 그 궤양의 경비가 어찌 우연하겠습니까? 사학(四學)의 유생은 반점심(半點心) 【반 되 밥이다.】 을 먹이소서. 대저 올해는 심한 흉년이므로 잇가로 면포(綿布) 한 필의 값이 쌀 예닐곱 되일 뿐이니, 을사년(11970) 이 흉년이기는 하였으나 어찌 올해와 같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종학(宗學)과 교서관(校書館)에 서책을 막아내는 데에 낭비가 적지 않으니, 다 일시 폐지하소서.”</p>	<p>戶曹判書安潤德曰：“今年旱甚，中外凶荒。成均館儒生，常養雖百人，而常不滿其數，故供饋之數，不過五十、六十而已。今年，適以別試多聚焉，其饋養經費，豈偶然哉？請四學儒生，饋以半點心。【半升食。】大抵，今年凶甚，市價絳布一匹直米六七升而已。乙巳年雖凶，豈如今年乎？臣意以謂，宗學及校書館印冊，糜(備) [費] 不貲，請皆權罷。”</p>
<p>중종 50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 (嘉靖) 3년) 4월 5일 (기해) 1번째기사</p>	<p>영사(領事)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올해에는 경외가 다 굶주리는데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대저 상평창(常平倉)은 만세(萬世)의 이(利)가 되는 것이고 또한 국가의 법이니, 이 일을 부중(府中)이 의논 하였는데 거행하기 어려울 듯하나 우선 쌀 2~3천 석을 내어 상평창을 설치하여 먼저 빈곤한 과부에게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領事南袞曰：“今年京外皆飢饉，而救之無由。夫常平倉乃萬世之利，而亦國家之法也。此事府中議之，似難舉行，然姑出米二三千石，設爲常平倉，先給貧窮寡婦何如?”</p>
<p>중종 50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p>	<p>정광필·남곤·이유정·권균·이행 등이 의논 아뢰기를, “상평창의 일은, 조종조에서 이미 설립했었으나 거행할 수 없는 형세이므로</p>	<p>光弼、袞、惟淸、鈞、苻等議曰：“常平倉事，祖宗朝曾已設立，而勢不能</p>

<p>(嘉靖) 3년) 4월 5일 (기해) 3번째기사</p>	<p>뒤에 다시 폐지하였으니 다시 거행하기 어려울 듯하나, 이제 백성이 매우 곤핍하니 우선 쌀 2~3천 석을 내어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안윤덕 등 【육조와 한성부이다.】 이 의논 아뢰기를, “상평창의 일은, 경자년(11993) 사이에 박송질(朴崇質)이 건의하여 시행하였는데, 그때 들인 면포(綿布) 4백 60여 동(同)이 관고(官庫)에 있었으나 곡식을 사지 못하였으니, 이제 다시 시행한다면 군자창(軍資倉)의 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 흉년으로 말미암아 경창(京倉)의 곡식을 내어 경기 안의 백성에게 진대(賑貸)하였다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4만여 석이니, 이제 쌀을 내어 면포를 사들였다가 도로 곡식을 사들이지 못하게 되면 국고의 곡식만 잃고 말는지도 모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호조 당상(戶曹堂上) 등의 의논은 비용을 덜려고 아뢰는 것이겠으나, 해마다 흉년이 드는데 백성을 구제할 다른 계책이 없으니, 우선 정부의 의논대로 거행하는 것이 옳다. 너희 호조는 절목(節目)을 상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p>	<p>行, 故後更廢之, 似難復行。 然今民甚困乏, 姑出米二三千石, 以試之何如?” 潤德等【六曹、漢城府。】議曰: “常平倉事, 於庚申年間, 朴崇質建議行之。 其時所納縣布四百六十餘同, 在官庫而未得貿穀。 今若復行, 當以軍資倉米爲之也。 但近因年凶, 散京倉, 賑畿內民, 而不得納者, 四萬餘石矣。 今若散米, 貿縣布, 而不得還貿穀, 則恐徒失國廩而已。” 傳曰: “戶曹堂上等議, 欲省費而啓也。 然連年凶荒, 救民無他計, 姑依政府議, 行之可也。 其爾戶曹, 詳議節目以啓。”</p>
<p>중중 50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 (嘉靖) 3년) 5월 26일 (경인) 4번째기사</p>	<p>영경전 설리(永慶殿薛里) 전숙명(全淑命)을 추문하라고 명하였다. 두모포(豆毛浦)에서 진상(進上)할 잔 고기를 잡을 때에 각색장(各色掌) 신세영(申世永)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도 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p>	<p>○命推永慶殿薛里全淑命, 以捕進上小魚于豆毛浦時, 見各色掌申世永之溺死, 而不能拯救也。</p>
<p>중중 51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 (嘉靖) 3년) 6월 9일 (임인) 1번째기사</p>	<p>정원(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시강원(侍講院)에 별선운(別宣醞)12132) 을 내리고, 무릉춘만(武陵春晚)·태액상련(太液賞蓮)을 글제로 한 칠언율(七言律)12133) 과 서원완월(西園翫月)·남관백설(藍關白雪)을 글제로 한 오언율(五言律)12134) 을 지으라고 명하였는데, 어제(御題)12135) 였다.</p>	<p>○壬寅/下別宣醞于政院、弘文館、藝文館、侍講院, 命製武陵春晚, 太液賞蓮七言律; 西園翫月、藍關白雪五言律, 乃御題也。</p>
<p>중중 51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p>	<p>간원(諫院)이 또 아뢰기를, “경명군은 외람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준(磁樽)·자기(磁器) 같은 매우 귀한</p>	<p>諫院又啓曰: “景明君多有猥濫。 磁樽磁器至貴之物, 雖進上, 亦難備, 況私</p>

<p>(嘉靖) 3년 6월 27일 (경신) 2번째기사</p>	<p>물건은 진상(進上)하는 것일지라도 장만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사사로이 주구(誅求)하는 것이 한도가 없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청하면 문득 주어 마지않으니 그 폐해가 매우 많습니다.</p>	<p>自誅求，無有紀極，私厚請乞，輒與無已，其弊甚多。</p>
<p>중종 51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 (嘉靖) 3년) 8월 1일 (계사) 1번째기사</p>	<p>“요즈음 민간의 폐해를 보면, 의식(衣食)이 부족한 까닭은 모여서 술마시는 것이 그 해가 되는데, 소주(燒酒)를 만들기 위하여 미곡(米穀)을 낭비하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 신래(新來)를 침학(侵虐)하는 자가 소주를 장만하여 내게 하므로 가산(家産)을 팔아서 힘을 다하여 장만하고, 외방의 관부(官府)에서는 이것으로 손[客]을 대접하여 마치 물처럼 쓰며, 민가에서도 이를 본뜨므로, 중외(中外)가 버릇되면 폐해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따로 금지하는 법을 세워서 법사(法司)를 시켜 엄하게 금지시켜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래를 침학하는 폐단은 이미 매우 금하게 하였으나 날날이 금할 수 없거니와, 무릇 모여서 술마시는 사람도 법사가 여러번 죄를 다스렸으나 유연(遊宴)하는 자가 아직도 그치지 않는데, 유연하는 자를 금하면 낭비의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p>	<p>又曰：“近見民間之弊，所以衣食不足者，崇飲爲之害，而燒酒之糜費米穀，尤有甚焉。侵虐新來者，徵辦燒酒，轉賣家産，盡力備辦，外方官府，以此飲客，用之如水。民家效之，中外成習，弊將不已，宜別立防禁，令法司嚴禁也。”上曰：“侵虐新來之弊，已令痛禁，然不可一一禁之矣。凡會飲之人，法司亦屢治罪，而遊宴者尙不止，若禁其遊宴者，則糜費之弊可無矣。”</p>
<p>중종 51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 (嘉靖) 3년) 8월 14일 (병오) 3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예전부터 왕자(王子)의 병에는 중사(中使)를 보내어 묻는 법이므로 중사는 대내(大內)에서 보낼 것이니, 먹을 것은 사옹원(司饗院)을 시켜 마련하고, 또 병조(兵曹)를 시켜 그 기마(騎馬)와 복마(卜馬)12369) 를 주라.”</p>	<p>○傳曰：“自古，王子病，則遣中使問之。中使自內遣之，食物則令司饗院磨鍊，且令兵曹，給其騎卜馬。”</p>
<p>중종 52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 (嘉靖) 3년) 11월 25일(을유) 1번째기사</p>	<p>대궐 안 서너 곳에서 생갈(生蝸)12633) 을 기르라고 명하였다. 【생갈은 약용(藥用)인데 완화(緩和)에 매우 요긴하므로 성종 때에 명하여, 중국에서 사다가 금내(禁內)에서 길러 급한 소용에 대비하게 하였다.】</p>	<p>○乙酉/命養生蝸于闕內三四處。【生蝸，藥用，甚繫在緩。成廟朝命質于中原，畜養于禁內，以備緩急之用。】</p>
<p>중종 52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p>	<p>황감(黃柑)을 승정원·홍문관·예문관·시강원에 각각 1반(盤)씩 내리고, 설중 황감(雪中黃柑)·금원 동백(禁苑冬柏)·함장 홍매(含章紅梅)12685) 라는 세 제목의</p>	<p>○丁未/下黃柑各一盤于承政院、弘文館、藝文館、侍講院，命製雪中黃柑、</p>

(嘉靖) 3년) 12월 17일(정미) 1번째기사	율시(律詩)12686) 를 지어 바치라고 명하였다.	禁苑冬栢、含章紅梅，三律以進。
중종 52권, 19년 (1524 갑신 / 명 가정 (嘉靖) 3년) 12월 29일(기미)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호조(戶曹)가, 왜인들이 가져온 호초(胡椒)를 포(浦)에 머물러 두고 올려보내지 말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장차 영영 가져오기 않을 폐단이 없겠는가? 호조에 다시 물으라.” 하매, 호조가 아뢰기를, “왜인이 가져온 호조를 죄다 날라 오면 역로(驛路)에 폐단이 있으니, 포에 머물러 두고 무역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己未/傳曰：“戶曹請倭人等齋來胡椒，令留浦勿上送云。如此則將無永不持來之弊耶？其更問于戶曹。”戶曹啓曰：“倭人所齋胡椒，盡數輸來，則於驛路有弊，請留浦貿易。”傳曰：“知道。”
중종 52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월 3일(임술) 1번째기사	정원(政院)에 전교하였다. “세전(歲前)·세후(歲後) 3일은 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지 않으며 초엿셋날 이전은 대제(大祭)의 치재일(致齋日)이고 초이렛날은 대비전(大妃殿)에 주물(晝物)12719) 을 올리는 날이므로 경연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니, 이 뜻을 알라.”	○壬戌/傳于政院曰：“歲前後三日，皆不御經筵，而初六日以前，則大祭致齋，初七日乃大妃殿晝物也。故不御經筵，此意其知之。”
중종 52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월 5일(갑자) 2번째기사	오는 초이렛날 대비전(大妃殿)에 주물(晝物)을 올리는 일을 멈추라고 명하였다. 【영원위 옹주가 죽었기 때문이다.】	○命停來初七日 大妃殿晝物。【鈴原尉翁主卒故也。】
중종 52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월 6일(을축) 1번째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소선(素膳)을 드시니 매우 미안하고, 대비전에서 여러 때 소선을 드셨으니 더욱 미안합니다.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선을 회복하겠다.” 하였다.	○乙丑/政院啓曰：“自上行素，至爲未安。大妃殿累時素膳，尤爲未安，請復常膳。”傳曰：“當復常膳。”
중종 52권, 20년	정응린이 아뢰기를,	應麟曰：“平安道有災變，自上謹災恤

<p>(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월 10일 (기사) 1번째기사</p>	<p>“평안도에 재변이 있으므로 상께서 재변을 삼가고 백성을 돌보는 뜻을 극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으시나, 본도(本道)에서는 음악을 연주하고 술잔치를 벌이는 것이 여느 때와 다름 없으니, 일체 금단하고 상께서는 찬선(饌膳)을 줄이고 음악을 철폐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집에 관한 일은 과연 상소(上疏)에 말하였으니, 빨리 일을 끝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접때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등이 중지할 수 없다고 아뢰었고, 이것은 유사(有司)가 하는 일이다. 평안도의 각 고을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술잔치를 벌이는 일은 매우 그르다. 전에도 재변 때문에 정전(正殿)을 피하고 또 찬선을 줄이고 음악을 철폐하였는데, 대신이 오래 시사(視事)를 폐지할 수 없다고 하므로 지금은 정전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평안도의 여역이 이렇게 극심하게 되었으니, 과연 어찌 잠시라도 안심하겠는가?”</p>	<p>民之意，無所不用其極，而但本道動樂燕飲，無異常時，請一切禁斷、自上亦減膳、撤樂何如?” 上曰：“第宅事，果於上疏言之。當速畢役，而未果耳。頃者，繕工監提調等，以不可中止啓之。此，有司所爲之事也。平安道各官，動樂宴飲之事，至爲非矣。前者，亦因災變，爲避正殿，又爲減膳、撤樂，而大臣以爲，不可久廢視事，故今則復正殿矣。然平安道癘疫，至於此極，果豈斯須安心乎?”</p>
<p>중종 52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월 10일 (기사) 2번째기사</p>	<p>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p> <p>“평안도의 진상(進上) 등 물건은 햇수를 한정하여 감면하라. 경연관(經筵官) 중에 정전(正殿)을 피하고 찬선(饌膳)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 자가 있는데 이 말이 매우 마땅하다마는, 평안도의 여역은 근일 비로소 성한 것이 아닌데 이제 정전을 피하면 어그러지는 일인 듯하다. 또, 접때 재변 때문에 정전을 피하였다가 이제 겨우 정전을 회복하였는데, 이제 또 정전을 피하면 일이 매우 번요(煩擾)하여 부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물의가 어떠한 지 모르겠으니, 영의정과 우참찬에게 물어서 아뢰라.” 【남곤(南袞)·김극휼(金克幅)이 경연에서 물러나 빈청(賓廳)에 있었으므로 이렇게 전교하였다.】</p>	<p>○傳于政院曰：“平安道進上等物，其限年蠲減。經筵官有言，當避殿，減膳者，此言至當。但平安道癘疫，非近日始盛，今乃避殿，似爲異矣。且頃者，因災變避殿，而今纔復殿。若又避殿，則事甚煩擾，近於不實耳。雖然，未知物議如何？其問于領議政及右參贊以啓。” 【南袞、金克幅，自經筵退在賓廳，故傳之。】 南袞、金克幅啓曰：“自上禦災警懼之心，發於至</p>

	<p>하매, 남곤·김극필이 아뢰기를,</p> <p>“상께서 재변을 막으려 경계하고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지성(至誠)에서 나와 모든 음악을 철폐하고 찬선을 줄이는 일들을 다 하고자 하시나, 세전(歲前)에 여러 달 정전을 피하여 오래 못신하를 대하지 않고 형정(刑政)을 결단하지 않으셨으므로, 이 때문에 조정이 계청(啓請)하여 도로 정전을 회복하셨는데, 몇 달 안에 어찌 또 정전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시종(侍從)들은 다 영선(營膳)하는 일들을 멈추어야 마땅하다고 아뢰나, 어찌 일체 멈추겠습니까? 백성의 힘을 아끼고 제도를 넘게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양계(兩界)에서 전세를 감면하는 일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나, 도내의 재해를 입은 고을들에는 특별히 은휙(恩恤)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대저 재변에 응답하는 도리는 걸치레에 있지 않고 지극한 정성에 있는 것이며 또 요즈음 회례연(會禮宴)·진풍정(進豊呈)을 다 멈추라 명하셨으니 음악을 철폐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데, 평안도에서 술잔치를 벌여 낭비하는 일이 거의 그전과 다름 없으니, 금지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알았다. 평안도에서 술잔치를 벌여 낭비하는 일은 하서하여 금지하겠다. 찬선을 줄이고 음악을 철폐하는 일은 해조(該曹)에 묻겠다.”</p> <p>하였다.</p>	<p>誠。凡撤樂，減膳等事，皆欲爲之，然歲前累月避殿，久未臨群臣、決刑政。以此，朝廷啓請還復正殿，數朔之內，豈可又避殿耶？且侍從，皆啓以當停營繕等事，然豈一切停之乎？愛惜民力，不爲過制，則可矣。兩界減稅事，雖不可輕議，然道內被災各郡，別施恩恤爲當。大抵，應災之道，不在文具，在於至誠。且今者會禮宴、進豊呈，皆命停之，不可謂不撤樂也。而平安道宴飲浮費之事，略無異於前時，使之禁戢何如？”傳曰：“知道。平安道宴飲浮費事，當下書禁之。減膳、撤樂事，當問于該曹。”</p>
<p>중종 52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庚午/傳于政院曰：“大臣議云：‘避殿、減膳，非禦災之實。’予意禦災之</p>

<p>(嘉靖) 4년) 1월 11일 (경오) 1번째기사</p>	<p>“대신의 의논에는, 정전을 피하고 찬선을 줄이는 것은 재변을 막는 도리가 아니라 하였는데, 나는 재변을 막는 도리는 실속으로 해야 하고 겉치레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저 내가 정전을 피하면 오래 시사(視事)하지 못하므로 정전은 피하지 않더라도 찬선을 줄이고 음악을 철폐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객인(客人)에게 제향(饋享)하는 외에는 모든 연향(宴享)을 멈추라.”</p>	<p>道當以實，不以文也。大抵，予避正殿，則久未視事。雖不避殿，減膳、撤樂，不可不爲也。客人饋享外，凡宴享，舉皆停之。”</p>
<p>중종 52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월 14일 (계유) 4번째기사</p>	<p>또, 백성이 인삼(人蔘)의 공납(貢納)에 괴로와하므로, 전에 유담년(柳聃年)이 감사이었을 때에 폐단을 없애려고 각 고을에서 바친 것을 친히 감독하여 봉해서 보냈더니, 제용감(濟用監)에서는 인정(人情)이 없다 하여 물리쳤다 합니다. 대저 큰 인삼은 얻기가 매우 어려워서 한 개의 값이 쌀 한 말이므로 각 고을에서는 물에 담갔다가 돌에 갈아서 그 빛을 아름답게 하는데, 도리어 빛이 나쁘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니, 그 폐단이 큼니다. 진헌(進獻)은 부득이 하겠으나 국용(國用)이라면 크지 않더라도 약의 효력에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정하고 좋은 것이 중요하고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 김극성(金克成)이 이미 그 폐단을 아나 형세가 구제하기 어렵다 합니다.”</p> <p>하고, 유담년이 아뢰기를, “진헌 이외의 것은 적당히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환이 아뢰기를, “상원(祥原)의 민호(民戶)는 4백 8호 뿐인데 기관(記官)·서원(書員)이 13가(家)이고 관노비(官奴婢)가 30여 가라 합니다. 전일 부실(富實)하던 때에는 생록(生鹿)의 진상도 배정하였으나, 이제 잔폐하였는데도 감면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원의 군사 13호(戶)를 구축 때의 죄로 노강(老江)·광량(廣梁)·선사포(宣沙浦)에 충군(充軍)12731 하였으나, 그 군사들이 현신(現身)한 뒤에 곧 집으로 돌아가 중간에서 한가히 놀고, 상원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군사라고는</p>	<p>且百姓困於人蔘之貢，故前者柳聃年爲監司時，欲除弊，各官所納，親監封送，則濟用監以無人情，退之云。大抵，人蔘大者得之甚難，一箇直米一斗。各官浸水磨石，以美其色，而反以色惡不納云，其弊重矣。進獻雖不得已，如國用則雖不大，何妨？藥力，在於精好，不在於大小也。今監司金克成，既知其弊，勢難救之云。”聃年曰：“進獻外，量減何如？”玆曰：“祥原民戶，只四百八戶，而記官、書員十三家，官奴婢三十餘家云。前日富實時，生鹿進上，亦定矣，而今雖殘弊，尙不減焉。且聞，祥原軍士十三戶，以驅逐時罪，充軍於老江、廣梁、宣沙浦，而其軍士現身後，卽還家，中間閑遊，而祥原不得使用矣。雖曰軍士，而衙前數少，故常以衙前使喚，則姑爲祥原殘弊，勿充軍何如？前年申命義遞來後，</p>

	<p>하나 아전(衙前)이 적으므로 늘 아전으로 부리니, 우선 상원이 잔폐할 동안은 충군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지난해에 신명희(申命羲)가 갈려온 뒤로 그 고을의 공채(公債)를 지금까지 바치지 않으니, 장차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그 고을 백성이 말하기를 ‘녹설미(鹿舌尾)와 녹흉(鹿胸)의 진상을 감면하였으나, 수령은 다 잔폐한 것을 싫어하여 오래지 않아서 정사(呈辭)하므로 아권(衙眷)을 영송(迎送)하기가 어려우니, 혹 희천(熙川)의 예에 따라 가족을 거느리지 말고 3년 만에 교체하면 수령도 고생을 견딜 것이고 혹 정사 하더라도 영송하기가 쉬울 것이니, 그렇게 하면 아마도 소복(蘇復)할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합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조치하여 소복시켜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평안도의 녹설미 등의 일은 이미 해조(該曹)를 시켜 적당히 줄이게 하였으나, 아직 회계(回啓)가 없다. 토병이 모자라므로 공천·사천을 뽑아서 방어하는 일과 의주(義州)에 보(堡)를 설치하는 일과 상원이 소복할 동안 아권을 거느리지 말게 하는 일은, 오늘 대신이 다 모이니 모두 물으라.”</p> <p>하였다.</p>	<p>其郡公債，至今不納，勢將難支矣。其郡百姓曰：“鹿舌尾及鹿胸進上蠲減，而守令皆厭殘弊，未久呈辭，衙眷迎送爲難。幸依熙川例，勿挈家，三年相遞，則守令亦當耐苦，雖或呈辭，迎送便易，則庶有蘇復之望云。國家當多般處置，使之蘇復。”傳曰：“平安道鹿舌尾等事，已令該曹量減，而時未回啓耳。土兵不足，公私賤抄出防禦事、義州設堡事、祥原蘇復間，不率衙眷事，今日大臣皆會，竝問之。”</p>
<p>중종 52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월 18일 (정축)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평안도에서 진상하는 녹설(鹿舌) 따위 물건은 3년 동안에 한하여 봉진(封進)하지 말라.”</p>	<p>○傳曰：“平安道進上，如鹿舌等物，限三年勿封進。”</p>
<p>중종 52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월 24일 (계미)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마포(麻浦)의 불탄 인가를 신미년(12745)의 전례【각각 쌀 3두(斗)를 내렸다.】에 따라 진휼(賑恤)하라.”</p>	<p>○傳曰：“麻浦失火人家，依辛未年例，【各賜米三斗。】賑恤。”</p>
<p>중종 52권, 20년</p>	<p>삼공이 또 아뢰기를,</p>	<p>三公更啓曰：“近以謹天戒，撤樂減膳，</p>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월 29일
(무자) 3번째기사

“요사이 하늘의 경계를 삼가서 감선 철악(減膳徹樂)하고 오래 못신하를 대하지 않으시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예전의 철악이라는 것은 재변·흉황(凶荒)이 있을 때이면 이현(弛縣)12750) 하고 임금이 불거(不舉)하는데 거(舉)라는 것은 성찬(盛饌)이니, 이것은 다 술잔치를 베풀어 환락하는 일이며, 조하(朝賀)12751) 를 받을 때에 전후로 고취(鼓吹)하는 것과 전정(殿庭)의 현악(縣樂)을 말하는 것이 아닐 듯하니, 이제 철악하였을지라도 못신하를 대하실 때에 쓰는 것은 무방할 듯합니다. 이것을 미안하게 여기신다면 벌여놓고 연주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영선(營繕)하는 일을 시종(侍從)·대간(臺諫)이 여러 번 상소하여 논하였으나, 그만둘 수는 없을 듯합니다. 다만 바야흐로 봄이므로 민간이 괴로운데 굶주린 백성을 일에 나아가게 하면 여역이 일기 쉬우며, 이제 바야흐로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때이니, 추곡(秋穀)이 성숙하기 전에는 멈추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제도에 넘치게 짓는 일도 억제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에는 감선 철악하므로 조하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 경(卿)들이 아뢴 것에 따라 악을 쓰라는 명을 내리기 전에 문득 조하를 받으면, 전후에 법을 달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근일 오래 조하를 받지 못하였고 평안도의 여역도 그칠 기약이 없으니 그렇다면 감선 철악하지 말고 조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 영선하는 일은 각처에서 다 멈추고 한두 곳에 있을 뿐이다. 전에 시종·대간이 상소하여 말하였으므로 이미 그 기한을 당겨 정하고 제도에 넘치게 하지 말게 하였다. 임금이 유연(游讌)12752) 하는 곳이라면 곧 철폐해야 하겠으나, 이것은 왕자(王子)·왕녀(王女)가 살 곳을 만드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而久不臨群臣。 臣等意以爲，古之撤樂云者，有災變凶荒之時，則弛懸，君爲之不舉；舉云者，盛饌也，此皆讌享歡樂之事也，恐非謂受朝賀時，前後鼓吹及庭懸也。 今雖撤樂，若用之於臨群臣，則恐不妨也。 若以此爲不安，則陳而不作可也。 營繕之事，侍從、臺諫累上疏論之，然似未可已也。 但方春民間艱苦，以飢食之民赴役，則癘疫恐易興也。 今方謹天戒之時，秋成前停之，何如？ 過制之事，亦當抑制。” 傳曰：“前日則減膳，撤樂，故不受朝賀。 今若依卿等之啓，用樂之命未下，而遽受朝賀，則前後異法。 近日，久未受朝賀，而平安道癘疫，又無寢息之期，然則當勿減膳、撤樂，而受朝賀也。 且營繕之事，各處皆停，而只有一二處耳。 前者，侍從、臺諫上疏言之，故力已令進定其期，而勿使過制矣。 若爲人君遊讌之所，則當卽撤之。 此則爲王子女所居，不得已爲之也。”

	만드는 것이다.” 하였다.	
중종 52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월 29일 (무자) 5번째기사	예조(禮曹)에 전교하였다. “여역은 재변이므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감선 철악하게 하였으나 여역이 그치는 것은 기약이 없고 오래 조정에 임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도 온편치 못하니, 감선 철악하지 말라.”	○傳于禮曹曰：“癘疫爲災，所當警懼，故已令撤樂，減膳矣。然癘疫寢息無期，而久廢臨朝，亦爲未便，其勿減膳，撤樂。”
중종 53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2월 4일 (계사) 1번째기사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이라쇄모(而羅灑毛)를 보내 방물(方物)을 바쳤다.	○癸巳/對馬島主遣而羅灑毛，來獻方物。
중종 53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2월 11일 (경자) 6번째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충청도 관찰사의 장계(狀啓)에 ‘노산군(魯山君)12773)의 후궁(後宮) 김씨(金氏)가 충주(忠州)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했는데, 김씨가 생존했을 때에도 해마다 쌀과 소금 등의 물건을 내렸었고, 노산군 부인 송씨(宋氏)가 졸(卒)하였을 적에는 부의(賻儀)를 내리도록 했었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해마다 쌀과 어물 등의 물건을 내린 일은 곧 김정(金淨) 등 연소(年少)한 무리들이 조정에 있을 때 건의하였기 때문에 한 일이다. 그러나 노산군은 이미 폐위(廢位)된 사람이고, 그의 후궁은 부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부의를 내릴 것이 없다.” 하였다.	○禮曹啓曰：“忠清道觀察使狀啓云：‘魯山君後宮金氏，居于忠州而身死。金氏生時，已令歲賜米鹽等物，而魯山君夫人宋氏之卒，亦令賜致賻，今當何如?’傳曰：“其歲賜米魚等物事，乃金淨等年少輩在朝時，所建請而爲之者也。然魯山君已廢之人，而其後宮，與夫人有間，不當賜別致賻也。”
중종 53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정원에 선온(宣醞)을 내리며 전교하였다. “대비전(大妃殿)께 주물(晝物)을 대접했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내리는 것이	○下宣醞于政院，傳曰：“大妃殿有晝物，故下退膳耳。”

<p>(嘉靖) 4년 2월 28일 (정사) 2번째기사</p>	<p>다.”</p>	
<p>중종 53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3월 9일 (무진) 7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거가(車駕)를 수행한 종재(宗宰)·종2품(從二品) 이상, 병조·도총부·별운검(別雲劍)·대간·홍문관·승정원·주서(注書)·한림을 대주정(大晝停) 때 인견(引見)하고 공궤(供饋)하겠는데, 다만 누상(樓上)【풍양궁루(豊壤宮樓)이다.】 이 좁으므로 종1품 이상은 누상에 앉고 정2품 이하는 누하(樓下)에 앉도록 하라.”</p>	<p>○傳曰：“隨駕宗、宰從二品以上，兵曹，都摠府，別雲劍、臺諫、弘文館、承政院、注書、翰林，當於大晝停，引見供饋矣。但樓上【即豊壤宮樓。】隘狹，從一品以上坐樓，而二品以下坐樓下可也。”</p>
<p>중종 53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3월 29일 (무자) 1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문·무과(文武科)에 급제한 사람들의 유가(遊街)에 지금 술을 금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생원(生員)·진사(進士)는 수가 많으므로 유가를 못하도록 하였지만, 문·무과는 수가 적으니 유가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戊子/禮曹啓曰：“文武科遊街，今方酒禁，何以爲之?” 傳曰：“生員、進士則數多，故勿令遊街，文武科則其數少，使之遊街。”</p>
<p>중종 54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4월 1일 (경인) 1번째기사</p>	<p>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지금 서쪽 변방에 여역(癘疫)이 크게 퍼져 사람들이 거의 모두 죽고, 요사이 는 또한 재변이 많기 때문에 한 병 술도 일체 금단하니, 문·무과(文武科)의 출신(出身)한 사람들의 유가(遊街)를 정지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생원·진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유가를 윤택하지 않은 것이다. 문·무과는 수가 적어 비록 유가하도록 하더라도 별다른 낭비가 없을 것이고, 또한 권장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가하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도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p>	<p>○庚寅朔/臺諫啓前事。 憲府啓曰：“今西邊，癘疫大熾，人物幾盡死亡。近來災變又多，故瓶酒一禁，文武科遊街，請停之。” 傳曰：“生員、進士，其數多，故不許遊街。文武科其數少，雖不令遊街，其糜費必無異矣。且是勸勵之事，故特令遊街耳。餘亦不允。”</p>
<p>중종 54권, 20년</p>	<p>좌의정 이유청(李惟淸)은 아뢰기를,</p>	<p>左議政李惟淸議：“胡椒及特送船事，</p>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4월 28일
(정사) 3번째기사

“호초(胡椒)와 특송선 일은 예조가 승품(承稟)한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호초는 그들이 비록 직접 가지고 올라오더라도 무역(貿易)의 허락 여부는 상께서 짐작하여 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특송선 일은 임신년 약조를 경솔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니, 그들이 비록 억지로 데리고 오려 하더라도 엄중한 말로 굳이 거절하여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우의정 권균(權鈞)은 의논드리기를,

“경림(景林)의 글을 보건대, 표류한 사람들을 쇠환한 것을 큰 공으로 여겨 기필코 바라는 일들을 모두 이루려는 것이니, 이번에 만일 경솔하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뒤에는 지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호초는 국왕(國王)이 무역하는 것이어서 사지 않을 수 없고, 도주(島主)의 특송선은 사신의 요청에 의해 접대한 전례가 있는데, 더구나 이번은 표류한 사람들 쇠환한 것을 구실 삼으니 역시 끝까지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허락할 수는 없으니, 선위사로 하여금 다시 더 반복해서 타일러 그들의 뜻을 시험해보도록 한 다음 다시 의논하여 시행함이 어떠하리까?”

하니,삼공의 의논을 내리면서 이르기를,

“영상의 의논은 약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뜻만 분명히 말하고 호초에 관한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좌상과 우상의 의논은 대략 같은데, 우상의 말이 더욱 합당하기 때문에 그의 의논에 낙점(落點)한 것이니, 어떻게 의논이 된 뜻을 예조에 말해 주고 아울러 선위사에게도 알려 주라. 호초 일은 또한 호조에 말해 주어 값을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禮曹承稟爲當。但胡椒，彼雖親齎上來，許貿與否，在上斟酌耳。特送船事，壬申年約條，不可經變。彼雖強欲率來，嚴辭固拒，使不得率來何如?”
右議政權鈞議：“觀景林之書，以漂流人刷還爲大功，必欲盡遂所欲也。今若輕許其請，後將難支。胡椒，國王之商物，不可不貿，島主特送，因使臣之請，接待有例，況今托稱刷還，亦難終拒，然不可遽許。令宣慰使，更加反覆開諭，以試其意然後，更議施行何如?”
下三公議曰：“領相之議，明言約條，不可變之意，而不及胡椒之事矣。左相、右相之議，大概略同，而右相之言尤當，故落點于其議耳。將此議得之意，言于禮曹，而并諭于宣慰使。胡椒事，亦言于戶曹，令預備其價可也。”

<p>중종 54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5월 3일 (신유) 3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오늘 선위사(宣慰使)의 장계를 보고, 특송선(特送船) 더해주기를 청한 일과 호초(胡椒)의 공무역(公貿易)에 관한 일을 이미 하서(下書)했습니다만, 방금은 장계에 ‘또한 지난달 27일 길을 떠났는데 호초를 도선주(都船主)에게 주어 보냈다.’고 했으니 지금 비록 문이(文移)하더라도 이미 길을 떠나버려 반드시 미치지 못하리라 싶습니다. 또한 왜인(倭人)들이 올라와 진정(陳情)하게 된 다음에 공사(公事)를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회계(回啓)하지 않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p>	<p>○禮曹啓曰：“今觀宣慰使狀啓，特送船加請事與胡椒公貿易事，已下書矣。今來狀啓又云：‘前月二十七日發程，胡椒則給都船主。’而去云，今雖文移想已發程必未及去。且倭人上來陳請後，爲公事，亦未晚，故今不回啓。”傳曰：“知道。”</p>
<p>중종 54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5월 4일 (임술) 5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밤에 헌릉(獻陵) 집사청(執事廳) 마구에 있는 말이 놀라 뛰므로 나가보니, 방안에서 자던 전사관(典祀官) 조익(趙翊)의 구사(丘史)12938) 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옷만 마당에 널려 있었으며 범 발자국이 마당에 있었으니, 이는 반드시 범이 물어간 것입니다. 이에 앞서 받은 전교(傳敎)에 ‘각 능(陵)의 재실(齋室) 안에서 사람이나 가축이 죽게 되면 제물(祭物)을 다시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거행할 제사에 대해, 재실 밖에서 죽은 것이라면 그날로 제사를 거행할 수 있지만, 이는 범에게 물려간 것이어서 재실 안에서 죽었는지 밖에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이는 진실로 변괴이기 때문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규정이 비록 전에 정해져 있지만 이는 변고이다. 또 지난날에 돼지가 능(陵) 【공릉(恭陵)을 말한다.】의 흙을 판 것도 오히려 변이라고 했으니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듣건대 정승들이 모두 본부(本府)에 모였다고 하니,</p>	<p>○禮曹啓曰：“去夜，獻陵執事廳廐馬驚躍，出見則典祀官趙翊丘史等宿於窓內，一人無去處，衣在於庭，庭有虎迹，此必爲虎所攬。前此受敎：‘各陵齋室內人畜死，則改備奠物。’翌日行祭，若死於齋室外，則卽日行祭，然此則爲虎所攬，而死於齋室內外，亦未得知。且此實變，故敢稟。”傳曰：“前規雖定，此則變故。且前者，猪犯陵土【恭陵。】猶以爲變，今何以處之？聞，政丞皆會本府。如不罷仕，卽令檢詳收議而來，若已罷仕，其分遣史官，收議。”</p>

	<p>만일 파사(罷仕)12939) 하지 않았거든 검상(檢詳)으로 하여금 수의(收議)하여 오도록 하고, 만일 이미 파사하였거든 사관(史官)을 나누어 보내 수의하라.” 하였다.</p>	
<p>중종 54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5월 4일 (임술) 6번째기사</p>	<p>영의정 남곤이 의논드리기를, “범이 재실에서 사람을 물어갔으니 이는 진실로 변괴여서 결코 그대로 제사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관(祭官)들도 반드시 마음이 경동(驚動)되었을 것이니, 모름지기 다시 제관을 차임(差任)하고 날을 다시 가려 제사해야 됩니다.” 하고, 좌의정 이유청은 의논드리기를, “무릇 제사에 임박하여 만일 사람이나 가축이 재실 안에서 탈이 나게 된다면 일단코 제사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전사관의 종이 비록 범에게 물려가게 되었지만, 만일 간 곳을 알 수 없다면 이는 반드시 재실 밖에서 죽은 것이니, 제사를 거행해도 무방합니다.” 하고, 우의정 권균은 아뢰기를, “재실 안에서 사람이 범에게 물려가, 그 사람의 생사가 재실 안에서였는지 밖에서였는지를 적실히 알 수 없으니 제사를 거행하기가 미안하고, 제물도 다시 마련해야 하니 물려서 거행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의 의논이 한결같지 않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당초부터, 능소(陵所)가 일찍이 범이 없지 않은 곳이고, 또한 구사(丘史)가 어찌 전사관(典祀官)과 같은 방에서 잤겠느냐? 반드시 밖에서 자다가 범에게 물려간 것이리라 여긴다. 더구나 내일은 보통 때와 같지 않아 곧 단오(端午) 명절이므로 사제가 제사를 그만두기 어렵기에 삼공들이 의논하도록 한 것인데, 모두 변괴라고 여기고 있다. 공릉(恭陵)은 전에도 돼지가 능의 흙을 뚫기에 내가 친제(親祭)했었으니, 이번에도 친제함이 어떨는지를 삼공과 예조 당상을 불러 의계(議啓)하도록 하</p>	<p>○領議政南袞議：“虎攬人於齋室，此實變故，決不可仍行祭享。況祭官等亦必驚動其心矣，須更差祭官，擇他日祭之爲當。”左議政李惟清議：“凡臨祭，若人畜有故於齋內，則斷不可行祭。今者典祀官之奴，雖爲虎所攬，若不知去處，則是必死於齋外，行祭無妨。”右議政權鈞議齋室內，人爲虎所攬，其人生死，在室內外，未能的知，行祭未安。奠物改備，退行何如？”傳曰：“三公之議不一，然予意初以爲，陵所未嘗無虎，且其丘史，豈與典祀官同房而宿乎？必宿於外，爲虎攬去。況明日，非如常時，乃端午名節，勢難廢祭令議三公，皆以爲變故。向於恭陵猪犯陵土，予爲親祭，今亦親祭何如？招三公及禮曹堂上，議啓。”</p>

	<p>라.” 하였다.</p>	
<p>중종 54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5월 6일 (갑자) 1번째기사</p>	<p>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남곤이 아뢰기를, “재정(財政)을 마련하는 길이, 중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모두 소금 전매(專賣)를 하여 이익을 내고, 우리 나라에서는 단지 전토(田土)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써 갑니다. 더구나 사대(事大)하고 교린(交隣)하는 용도가 매우 번다하므로, 호조(戶曹)가 혹 공물(貢物)을 쌀로 환산해서 받아 갖가지로 조치를 해가는데, 국가의 용도가 넉넉지 못하여 겨우 고갈되지 않을 뿐이니, 지금 만일 의외의 쓸 일이 생긴다면 국가의 저축이 이려하여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듣건대, 이번에 일본에서 사신으로 온 왜인(倭人)들이 가진 호초(胡椒)가 8천 9백 근이나 된다는데, 그들이 반드시 모두 공무역(公貿易)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쓸 재정도 넉넉하지 못한데, 외국의 오랑캐가 와서 요구하는 것이 이러하니, 이는 우리 국가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곤란을 받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체 거절하여 실망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모두를 서로 무역하기로 한다면 국가에서 받게 되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교린하는 일은 실망하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한 것인데, 과연 모두를 공무역한다면 폐해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경상도에서 거두어들인 세포(稅布)도 보존한 수량이 해마다 적어지고 있으니 장차는 그들의 요구에 수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p>	<p>○甲子/御朝講, 領事南袞曰: “ 生財之道, 中國則古今皆以榷鹽爲利, 我國則只以土田所出爲用, 況事大交隣, 用度甚煩。 戶曹亦以貢物, 或作米捧納, 多般措置, 而國用不贍, 僅不之絕而已。 今若有意外之用, 則國儲如此, 至爲寒心。 且聞, 今來日本使倭所持胡椒, 多至八千九百斤云, 彼必盡欲公貿矣。 我國財用不贍, 而外夷之來求如此, 是欲使國家, 坐受困窮。 雖不可一切拒之, 以缺其望, 然盡與相貿, 則國家受弊不貲也。” 上曰: “交隣事, 不可使缺望, 故已令該司議處之。 果皆公貿, 則弊必多也。” 袞曰: “慶尙道收稅布所存, 尙少, 年年如此, 將無以應其求矣。”</p>
<p>중종 54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5월 16일</p>	<p>또 오랫동안 계복과 상참(常參)하는 예를 폐했고, 비록 틈틈이 조계(朝啓)하였지만 한두 차례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으니, 마땅히 자주 상참을 받고 조선(朝膳)12958) 을 드신 뒤 또한 계복을 하도록 한다면 거의 적체될 염려가 없게</p>	<p>且久廢啓覆、常參之體, 雖間有朝啓, 不過一二度而已。 宜頻受常參, 朝膳後亦令啓覆, 則庶無留滯之患矣。” 傳</p>

<p>(갑술) 2번째기사</p>	<p>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갓 제도 일은 아뢴 대로 하라. 계복 일은, 이미 상참과 조계를 하고 또 조선을 든 다음 계복을 한다면 일이 매우 번잡하게 될 것이니,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p>	<p>曰：“笠子事，依啓。啓覆則既爲常參，朝啓，而又於朝膳後啓之，則事甚煩數，其依前例。”</p>
<p>중종 54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5월 17일 (을해) 2번째기사 사용원 제조 익양군 이회 등이 함경도 일부에 부과된 쾌포를 다른 물품으로 대신할 것을 아뢰다</p>	<p>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 익양군(益陽君) 이회(李懷) 등이 함경도 관찰사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의계(議啓)하기를, “길주(吉州)·명천(明川)·경성(鏡城)은 지극히 잔약하고 피폐한데, 경성은 더욱 심하기 때문에 그곳에 부과(賦課)하는 쾌포(快脯)를 삼수(三水)·갑산(甲山)에 다 나누어 배정했는데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니, 마땅히 본읍(本邑)에서 산출되는 대구(大口) 한 마리를 쾌포 한 근(斤)으로 치고, 혹은 문어(文魚) 한 마리를 쾌포 두 근으로 치되, 길주·명천은 1~2년을 한도로 하고 경성은 회복될 때까지 대신하여 봉진(封進)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司饗院提調益陽君懷等以咸鏡道觀察使啓本議啓曰：“吉州、明川、鏡城至爲殘弊，而鏡城尤甚。故其所賦快脯，分定于三水、甲山，而猶不能支，宜以本邑所產大口一尾，准快脯一斤，或文魚一尾，准快脯二斤，吉州、明川則限一二年；鏡城限蘇復，代封。”從之。</p>
<p>중종 54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5월 21일 (기묘) 6번째기사</p>	<p>압연관(押宴官) 권균(權鈞)·예조 판서 심정(沈貞)이 아뢰었다. “오늘 일본 국왕의 사신이 신 등에게 말하기를 ‘가지고 온 호초(胡椒)를 지금까지 포구에 두고 올려오도록 하지 않아 허술한 폐단이 있을까 싶으니 시급히 실어오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표류된 사람들을 쇄환(刷還)할 때 특송(特送) 성중(盛重)의 공이 적지 않았으니 올라오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 국왕 때는 세견선(歲遣船)을 단지 5척만 허락하셨는데 더 허락하기 바랍니다. 잡왜(雜倭) 원선(元禪)·시상(時尚) 등도 표류된 사람들을 쇄환할 때 모두 공이 있었으니, 비록 올라오게 하지는 않더라도 바다 건널 때의 식량을 주기 바랍니다.’ 하기에, 신 등이 ‘특송과 세견선 일은 약조가 굳게 정해져 있어 다시 의</p>	<p>○押宴官權鈞、禮曹判書沈貞啓曰：“今日，日本國王使臣謂臣等曰：‘持來胡椒，往今留浦，不令上來，慮有虛踈之弊，請速輸來。且漂流人刷還時，特送盛重之功不小，請許上來，前國王時，歲遣船只許五隻，請加給。雜倭元禪、時尚等漂流人刷還時，亦皆有功，雖不許上來，請給過海糧。’臣等以‘特送及歲遣船事，約條堅定，不可更議。胡椒事，當與該司議啓。’答</p>

	논할 수 없고, 호초 일은 마땅히 해사(該司)와 의논해서 아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之。”
중종 54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6월 5일 (계사) 1번째기사	승정원·예문관·홍문관·시강원(侍講院)에 호초(胡椒)를 내렸다.	○癸巳/賜胡椒于承政院、藝文館、弘文館、侍講院。
중종 54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7월 12일 (기사) 2번째기사	제용감(濟用監)에서 받아들이는 진헌(進獻)하는 인삼은, 수납할 때에 감찰(監察) 등이 점검하다 퇴짜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고을이 다시 마련하여 바치게 됩니다. 다른 도는 말할 것 없거니와, 평안·함경 두 도는 길이 멀므로 왔다갔다하며 다시 마련할 적에 민폐가 매우 많으니, 이뒤부터는 이 두 도에서 진상하는 인삼을 본도(本道) 감사가 직접 점검하여 봉진(封進)하고 감찰이 받게 하지 말도록 하소서. 그리고 제용감 제조가 받을 적에도 점검하여 퇴짜 놓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濟用監所納進獻人參，於其捧納時，監察等率多點退，故各邑改備而納之。他道則已矣，平安、咸鏡兩道，則道路脩遠，往來改備之際，民弊甚多，自今以後，此兩道進獻人參，請令本道監司，親點封進，勿令監察捧之。令濟用監提調監捧，勿點退。
중종 54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7월 22일 (기묘) 4번째기사 상의원이 은의 부족을 아뢰자, 중궁전과 세자궁의 주발만 만들게 하다	상의원(尙衣院)이 아뢰기를, “감선(減膳)할 때의 세자빈(世子嬪)의 밥주발[飯鉢] 셋, 중궁전(中宮殿)의 다완(茶碗) 하나, 세자의 밥주발 하나를 십품(十品) 은(銀)으로 만들어 들이도록 하셨는데, 본원(本院)이 저장한 은이 단지 1백 30냥뿐이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빈의 감선 때의 밥주발은 사옹원(司饗院)이 만들기를 청했는데, 비록 평소 때의 밥주발을 사용하더라도 되니 만들지 말고, 중궁전의 다완 및 세자궁의 밥주발은 곧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니, 다시 들여야 한다.” 하였다.	○尙衣院啓曰：“減膳時，世子嬪飯鉢三、中宮殿茶碗一、世子飯鉢一，令以十品銀造入，而本院所儲銀，只一百三十兩，敢稟。”傳曰：“世子嬪減膳飯鉢，則司饗院請造耳。雖用常時飯鉢，亦可勿造。中宮殿茶碗及世子宮飯鉢，則乃改造之物，改造入之可也。”
중종 54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7월 27일 (갑신) 2번째기사	상의원(尙衣院) 공사(公事)를 내리며 이르기를, “내가 전일에, 제향소(祭享所)의 은 그릇을 공조(工曹)가 가지고 있는 은으로 주조하도록 했었지만, 지금 이 공사에 ‘일체의 잡물(雜物)들을 모자라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일찍이 승전(承傳)을 받았다.’고 한 것은, 내가 일찍이 그	○下尙衣院公事曰：“予於前日，祭享所銀器，令以工曹所藏銀鑄成，而今此公事乃云：‘一應雜物，毋令乏絕，預先準備，曾有承傳。’此，予所未嘗教者

	<p>런 전교(傳敎)를 한 일이 없으니, 서계(書啓)한 연유를 물어보라.”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상의원 관원이 ‘지난날 【폐조(廢朝) 때를 말한다.】 에 그런 승전이 있었기 때문에 서계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월일(月日)을 말하지 않은데다, 내가 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은 것이니,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p>	<p>也，其書啓之。” 由問之政院啓曰：“尙衣院官員則言：‘往時，【廢朝。】有此承傳，故書啓。’ 傳曰：“不具日月，而非予所教，故問之耳，其令改之。”</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嘉靖) 4년) 8월 2일 (기축) 1번째기사</p>	<p>남세준이 아뢰기를, “이처럼 흉년인 때에 사옹원(司饗院)이 2~3일 쓰는 술이 60여 병이나 되니, 일체로 감하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궐 뜰에서 쓰이는 술이, 사신(使臣)이 오갈 때이면 과연 많이 쓰게 된다. 다만 이런 것이 잔치하며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짐작하여 절약해서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 하였다.</p>	<p>世準曰：“如此旱荒時，司饗院二三日所用之酒，多至六十餘瓶，請一切減省。” 上曰：“闕庭用酒，如奉使往復之際，果多用之矣。但此非宴飲，又有爵數，故依舊爲之，然斟酌節用，果爲當矣。”</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嘉靖) 4년) 8월 2일 (기축) 2번째기사 대궐내의 손님들에 대한 술 사용법을 말한다</p>	<p>전교하였다. “대궐에 오가는 손님들에게 쓰는 술은, 여름에는 비록 쓰지 않아도 되지만 겨울에는 약으로 먹는 때이어서 쓰지 않을 수 없으니, 사옹원으로 하여금 수량을 헤아려 쓰거나 혹은 당상관(堂上官)에게만 쓰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시종(侍從)하는 신하들이 오갈 적에는, 일체로 당하관이라 하여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p>	<p>○傳曰：“闕內來往賓客用酒事，夏則雖不用可也，冬則服藥之際，不可不用，其令司饗院，或計數用之，或堂上以上用之，然若侍從之臣往來者，不可例以堂下官而不用也。”</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p>	<p>시(朝市)13075) 를 정지하도록 하고, 쌀과 콩 1백 석씩·종이 2백 권·5승 마</p>	<p>○王子茂山君棕卒，【成宗大王子也。】命停三日朝市，賜粳米豆并一百</p>

<p>(嘉靖) 4년) 8월 2일 (기축) 5번째기사</p>	<p>포(麻布) 60필·백저포(白苧布)와 백면포(白綿布) 각 10필·수면주(水綿紬) 5필·석회(石灰) 60석·진유(眞油) 1섬·밀가루 1섬·꿀 10말을 부의로 내렸다.</p>	<p>石、紙二百卷、正布六十四、白苧布·白木縣各十四、水縣紬五四、石灰六十石、眞油一石、眞末一石、清蜜十斗。</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8월 19일 (병오) 1번째기사</p>	<p>판서 허굉(許碁)이 단자(單子)를 써서 아뢰기를, “일본 사신이 가지고 온 호초(胡椒) 9천 9백 80근, 주홍(朱紅) 1천 8백 80근, 침향(沈香) 2천 1백 88근, 용뇌(龍腦) 28근 등의 물건은 3분의 1만 공무역(公貿易)하도록 하고, 자단향(紫檀香) 1백 50근은 본국에서 나는 것이므로 전부를 무역하지 말고 수우각(水牛角) 1천 개, 대랑피(大狼皮) 10장은 전부를 무역하도록 하소서. 가지고 온 상품을 모두 합쳐 헤아려 보건대 옛 값으로 무역하자면 목면(木棉)이 1천 7백 50동(同) 【50필이 한 동이다.】 이고, 새 값으로 무역하면 목면이 1천 1백 85동입니다. 호초는 옛 값이 헐하고 새 값이 비싸며, 주홍 등의 물품은 옛 값은 비싸고 새 값이 헐하기 때문에 왜인(倭人)들이 다른 것은 옛 값으로 하고 호초는 새 값으로 하기를 청했는데, 호조가 이미 방계(防啓)했으므로 아래서 다시 계달(啓達)하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상께서 공무역을 특별히 윤허하시기 바랍니다.”</p>	<p>判書許碁書單子啓曰：“日本使持來胡椒九千九百八十斤、朱紅一千八百八十斤、沈香二千一百八十八斤、龍腦二十八斤等物，命公買三分之一。紫檀香一百五十斤則以本國所產，故全不買。水牛角一千本、大狼皮十枚，全買之。合以所齎商物，都計之，從舊價貿易，則木縣一千七百五十同，【五十匹爲一同。】從新價貿易，則木縣一千一百八十五同。胡椒舊價輕，而新價重，朱紅等物，舊價重，而新價輕，故倭人等他物則請從舊價，胡椒則請從新價，戶曹已爲防啓矣，自下更爲啓達實難，請自上特許公買。”</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9월 14일 (경오) 1번째기사</p>	<p>장령 장계문(張季文)은 아뢰기를, “탄 및 장죽(長竹)13193) 과 꿀을 모두 앞당겨서 받았는데, 사용한 데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부(本府)가 논계(論啓)하려다가 이미 다 되었다면 더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에 아뢰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p>	<p>掌令張季文曰：“炭及長竹、清蜜皆引納，其用處，未可知也。然不可不推，故本府欲論啓，而以既盡則不得不加捧，故不啓也。”</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p>	<p>호조가 아뢰기를, “납곡을 정곡(正穀)13219) 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마는, 만일 장식(粧飾)으로</p>	<p>○癸未/戶曹啓曰：“納穀，令以正穀納之。若以佩飾不繫雜物，誑誘愚民，</p>

<p>(嘉靖) 4년) 9월 27일 (계미) 1번째기사</p>	<p>차는 쓸데 없는 잡물(雜物)들을 가지고 우매한 민중들을 속이고 유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가 반드시 많게 된다면, 내수사(內需司) 서제(書題)13220) 가 목면(木綿)을 15동(同)이나 가지고 나가 곡식을 무역할 때, 외람한 짓을 하는 폐단이 있을까 싶기 때문에 잡물 가진 자들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고, 납곡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상평창(常平倉)은 아름다운 정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전에 이 법을 개시하여 사들였던 목면이 시령에 쌓여 있는 지 이미 4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곡식으로 교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군자(軍資)가 너무 고갈되어 있으므로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지난날에 1천 석을 가지고 나누어 주려 하다가, 부상 대고(富商大賈)들이 명의(名義)를 빌어 받아 버리고, 민중들에게는 이익이 미치지 못하게 될까 싶기 때문에 명의(名義)를 빌어 받는 짓을 검거(檢舉)하지 못하는 오부(五部)의 관원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13221) 로 논죄(論罪)한다.’는 방(榜)을 게시했더니, 부상 대고들은 법을 두려워하여 받지 않고, 가난한 민중들도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폐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시행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안에만 시행하시렵니까, 경기는 흉년이 너무 심하니 또한 아울러 시행하시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곡식 무역하는 일은 알았다. 또 상평창은 곧 아름다운 정사인데, 또한 경연(經筵)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부상 대고들만 명의(名義)를 빌어 이득을 취하게 되고 가난한 백성은 납곡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세운 것이니, 경기 백성도 납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였다.</p>	<p>取利者必多，而內需司書題，持木綿十五同往貿，恐有猥濫之弊，故令禁持雜物者也，非禁其納穀也，且常平倉，美政也。前開此法，所貿木綿，積在架上，今已四十餘年，尙未換穀，況軍資太竭，至爲可慮。前欲以一千石分給，而慮富商大賈，冒名受之，利不及民。故五部不能檢舉冒受者，論以制書有違律掛榜，則商賈畏法而不受，貧民亦不肯受，以此罷之。然自上若欲行，則行於京中耶？畿甸凶荒已甚，亦竝行之耶？”傳曰：“貿穀事，知道。且常平倉，乃美政，而於經筵，亦有言之者。然富商大賈，冒名取利，貧民不能納，故立法矣。京畿民亦可納也。”</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9월 27일 (계미) 2번째기사</p>	<p>호조가 아뢰기를, “올해는 흉년이 심한데, 전운(轉運)13222) 할 때 써야 할 비용이 많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우선 경창(京倉)의 쌀 1~2천 석으로 도성에만 시험해봄이 어떠리까?”</p>	<p>○戶曹啓曰：“今年荒甚，轉運之際，糜費必多，似不可爲也。姑以京倉米一二千石，試之于都下何如？”傳曰：“竝以京畿來稟，故言之矣。若不竝令</p>

	<p>하니, 전교하기를, “경기에도 할 것인지를 아울러 품해왔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만일 경기도 아울러 납고하도록 하지 않으려면 어찌 기한을 정할 것인 있겠는가? 다만 법을 세웠으니, 민간들이 곡식을 무역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였다.</p>	<p>京畿納之，則豈必定限？但立法，待民之貿可也。”</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0월 3일 (무자) 3번째기사</p>	<p>병조가 아뢰기를, “서소(西所)는 옮길 만한 곳이 없고, 단지 자문감(紫門監) 앞에 빈 땅이 있기 때문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빈 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건축하기는 곤란하니, 내 생각에는 사도시(司禦寺)로 옮기고 싶다. 다만 대궐 안에다 쌀을 저축하려는 것뿐인데 이는 조종조(祖宗朝)의 깊은 뜻이 있는 일이니, 1백여 석(石) 들일 만한 곳이 있는지를 병조에 물어보라.” 하였다.</p>	<p>○兵曹啓曰：“西所無可移處，只有空地在紫門前，故敢稟。”傳曰：“雖有(公)〔空〕地，今時營繕爲難。予意，非欲移司禦寺也，但欲儲米於闕內而已，此，祖宗朝深意也。入百餘石處，有之乎？問于兵曹</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0월 3일 (무자) 4번째기사</p>	<p>병조가 아뢰기를, “대궐 안의 쌀 저장할 만한 곳으로는 춘추관(春秋館)의 담장 밖에 빈 행랑이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수량을 헤아려 들여놓고, 군사를 시켜 수직하도록 할 것을 호조에 말하라.” 하였다.</p>	<p>○兵曹啓曰：“闕內儲米處，有空廊，在春秋館牆外。”傳曰：“知道。量數入置，令軍士守之事，言于戶曹。”</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0월 5일 (경인) 3번째기사</p>	<p>호조가 아뢰기를, “함경도에서 할 무곡에 대해 면포(綿布) 수량을 감하여 20동(同)만 들여보내는 것과 간리(奸吏)가 고되게 하는 것 금단하는 것과, 장차 조관(朝官)을 보내 두량(斗量)하는 일을 다시 공사(公事)로 만들어 아뢰입니다. 벼는 모두 준척(准</p>	<p>○戶曹啓曰：“咸鏡貿穀，減緜布之數，以二十同入送，禁奸吏高重，將遣朝官斗量事，改爲公事以啓。布皆准尺，其地所貴，民必樂貿矣。且司禦寺一年供上外，餘米一百石也，請以此米，</p>

	<p>尺)인데, 그 지역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민간들이 반드시 반가와하며 사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시(司饗寺)의 한 해 공상(供上) 이외에 남는 쌀이 1백 석이니, 이 쌀을 대궐 안에 옮겨다 쌓아놓기 바랍니다. 군자감(軍資監)에는 갠미(粳米)13243) 와 백미(白米)는 없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대궐에 저축하는 쌀은 새 것과 서로 교환해 두어 부패하지 않도록 하되, 사옹원(司饗院)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것을 이미 전교했으니, 호조가 아뢰는 대로 사도시의 남는 쌀로 쌓아두게 하라.”</p> <p>하였다.</p>	<p>移積於闕內。軍資監，則無粳米、白米。”傳曰：“知道。闕內儲米，相爲代換，不使腐朽，而令司饗院看掌事，已傳教矣。依戶曹所啓，以司饗寺所餘米，儲之。”</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0월 6일 (신묘) 1번째기사 대비전에 진상할 것과 내수사에 실어 보낼 물품에 대해 하교하다</p>	<p>전교하였다.</p> <p>“대비전(大妃殿)께 진상할 것 중에서 조미(造米)13244) 를 각각 50석씩 본궁(本宮)으로 실어보내고, 또 진임자(眞荏子)13245) ·진맥(眞麥)13246) 각 30석씩과 녹두(菘荳)·목맥미(木麥米)13247) 각 20석씩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보내라. 왕자녀(王子女)들이 출함(出閣)13248) 할 때 쓸 모든 준비를 내수사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내수사에 저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어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p>	<p>○辛卯/傳曰：“大妃殿進上，中、造米各五十石，輸送于本宮。且眞荏子、眞麥各三十石，菘荳、木麥米各二十石，輸送于內需司。王子女出閣時所用諸具，辦於內需司，而內需司無儲，故令輸送耳。”</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0월 10일(을미) 5번째기사 사옹원 제조 윤희인이 포육에 의한 식중독에 대해 아뢰다</p>	<p>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 윤희인(尹希仁)이 아뢰기를, “지난달 14일에 세자(世子)께서 회강(會講)하고 나서 익위사(翊衛司)에 음식을 내릴 때, 본사(本司)의 관원 조광원(曹光遠) 등이 포육(脯肉)을 먹고서 더러 두통과 배를 앓으며 구토와 설사를 하였고, 하인(下人)들 중에 먹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만일 독이 있는 포육이 아니라면 반드시 독충(毒蟲)이 오줌을 싸서 그런 것일 것이니, 각도에 유시하여 정결하게 말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지극히 놀라운 일이니 각도에 유시를 내리라. 또한 어느 고을에서 공상(供上)한 것이었느냐? 만일 남은 것이 있다면 다시 하인들에게 시험해 보라.”</p>	<p>○司饗院提調尹希仁啓曰：“去月十四日，世子會講後，下膳于翊衛司本司。員曹光遠等食其脯，或痛頭腹嘔泄，下人食者亦然。若非毒肉，則必毒蟲遺溺而然也，請諭各道，精潔乾正。”傳曰：“至可驚愕，其諭各道。且何邑所供耶？若其有餘，更試下人。”</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0월 10 일(을미) 7번째기사 정원이 포육에 대해 독이 없음을 아뢰다</p>	<p>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세자궁(世子宮)에 전일에 쓰다 남은 것은 없고, 같은 때에 공납(貢納)한 포육은 있기에, 하인들에게 시험해 보아도 독이 없었습니다.” 하고, 우부승지 이환(李芑)이 아뢰기를, “조광원은 신의 생질인데, 광원과 함께 포육을 먹고서 아울러 닭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바로 배가 아파 고통한다는 것을 듣고 일찍이 닭고기를 지네가 씹어놓으면 독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지네를 다스리는 약으로 치료하자 닭고기를 전부 토하고서 소생하게 되었었으니, 한갓 포육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포육 일은 추문(推問)할 근거가 없지만, 만일 다른 고기를 섞는다면 마땅히 엄중하게 금단해야 한다.” 하고, 이환에게 전교하기를, “만일 닭고기만 먹었다면 의심할 것이 없지만, 이는 포육도 먹었으니 마땅히 추문해야 한다.” 하였다.</p>	<p>○政院啓: “世子宮前用餘無, 有同時所納之脯, 試人無毒矣。” 左副承旨李芑啓曰: “曹光遠, 臣甥也。 聞, 與光遠同食脯, 患苦之人, 并食鷄肉, 輒腹痛。 曾聞, 雞肉爲蜈蚣爲嚙, 則有毒。 以治蜈蚣之藥救之, 多吐鷄肉得蘇, 恐非徒由脯而然也。” 傳曰: “脯肉事, 推之無據。 若雜他肉, 則所當痛禁也。” 傳于李芑曰: “若止食雞肉, 則無所疑矣。 此則竝食脯肉, 當推也。”</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0월 11 일(병신)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올해는 경기와 평안도가 실농(失農)이 더욱 심하므로 납육(臘肉)13253) 을 제감해야 하는데, 서울 근방의 동쪽과 서쪽에서 타위(打圍)13254) 하는 일을 병조도 그럴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를 두 도의 관찰사에게 유지하라. 또 수령들이 납육을 핑계로 백성을 동원하여 사냥나가는 것은 엄중히 금한다는 것도 아울러 유지하라.”</p>	<p>○傳曰: “今年京畿、平安道失農尤甚。 臘肉減除, 而於京近東西打圍事, 兵曹亦以爲然, 以此諭兩道觀察使。 且守令, 依憑臘肉, 動衆出獵者痛禁事, 竝諭也。”</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p>	<p>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세자(世子)께서 물린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병났다고 하므로 놀라움을</p>	<p>○臺諫啓前事。 諫院啓曰: “世子退饌食者皆病云, 不勝驚愕。 精乾封進事,</p>

<p>(嘉靖) 4년) 10월 14일(기해) 4번째기사 간원이 세자궁의 포육 사건에 대해 담당 관원들을 죄 주도록 건의하다</p>	<p>견디지 못하겠으니, 정결하게 말려서 봉진(封進)하도록 할 것을 【편포(片脯)에 관한 일이다.】 팔도에 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어찌 이렇게 하고 말 수 있겠습니까? 사옹원(司饗院)으로 하여금 어느 도에서 봉진한 것인지를 고찰하도록 하여, 그 도 관찰사의 죄를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또 감선 제조(監膳提調)와 내관(內官)은 잘 살피지 않았고 담당 선부(膳夫)도 조심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죄를 무겁게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궁(世子宮)의 포육(脯肉) 사건은 사옹원 제조가 이미 아뢰었는데, 위에서도 놀람기에 즉시 설리(薛里)를 불러서 물어보니 ‘건물(乾物)을 봉진(封進)하면 한 그릇에다 섞어서 두므로 어느 도에서 봉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였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그 포육을 사람들에게 주어보도록 했었는데, 독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마땅히 사옹원으로 하여금 가져온 데를 추고(推考)하도록 하겠고, 감선 제조와 내관 및 선부도 마땅히 추문하도록 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p>	<p>【片脯也。】諭于八道，然如此重大之事，豈可如此而止哉？令司饗院，考某道封進，治罪其道觀察使爲當。且監膳提調、內官不詳察，所掌膳夫，亦不謹，請重治其罪。”傳曰：“世子宮脯肉事，司饗院提調已啓，自上亦駭。卽招薛里問之則云：‘乾物封進，雜置一器，不知某道封進。’云。令政院，以其脯與人，則無毒云。然當令司饗院，推其所自來也。監膳提調、內官及膳夫，當推之。餘皆不允。”</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0월 16일(신축) 1번째기사 정원이 세자궁에 올린 포육 일에 대해 관원에게 물어 본 결과를 아뢰다</p>	<p>정원이 아뢰기를, “세자궁(世子宮)에 반찬으로 올린 포육(脯肉) 일을 사옹원 제조에게 물으니 ‘표시를 해서 바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릇에다 간수하기 때문에, 어느 도에서 봉진(封進)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했고, 감선 제조(監膳提調)와 내관(內官)에게 물어도 그러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당초에 섞어서 둔다면 추고할 근거가 없겠다. 다만 그날 포육을 먹은 사람이 익위사(翼衛司) 관원만이 아니라, 재상(宰相) 및 시강원(侍講院) 관원도 모두 먹었지만 독이 없었고, 또 정원이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시험해 보아도 독이 없었으니, 이는 매우 괴이한 일이다. 좌부승지 이환(李芑)</p>	<p>○辛丑/政院啓曰：“世子宮進膳脯肉事，問于司饗院提調，則非有標納，而藏之一器，未知爲何道所進也。問於監膳提調、內官，則亦如是云。”傳曰：“初果雜置，則推之無據矣。但其日所食者，非徒翊衛司官員也，至於宰相與侍講院官員，皆食而無毒，政院亦取其餘，試人無毒，此甚怪也。左副承旨李芑啓云：‘恐是鷄肉之毒也。’食鷄肉者，獨曹光遠耶？權憶、權彬亦</p>

	<p>이 아뢰기를 ‘닭고기의 독인 듯싶다.’ 했지만, 닭고기를 먹은 사람이 유독 조광원(曹光遠) 뿐이겠느냐? 권억(權憶)·권빈(權彬) 역시 먹었는지 물어보라.” 하였다.</p>	<p>食之耶? 其問之。”</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嘉靖) 4년) 10월 16일(신축) 3번째기사 좌부승지 이환과 정원 이 포육에 관한 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다</p>	<p>좌부승지 이환(李莞)이 아뢰기를, “닭고기 사건을, 익위사 관원 이인(李麟)에게 물어보니 ‘단지 닭고기만 먹고, 포육은 종에게 주었는데 병이 났으나, 이인 자신은 아프지 않았다.’ 하였고 권억은 ‘포육이 흐물흐물 이상해진 것을 발견하고 먹지 않으려다가 마침 시장한 참이기에 세 조각만 먹고, 나머지를 종들에게 주었는데 종과 상전이 모두 병이 났다.’ 했고, 조광원은 ‘포육과 닭고기를 아울러 먹고 더욱 심하게 앓았다.’ 했습니다.” 하고, 정원이 또 아뢰기를, “그 사람이 포육 때문에 앓은 것이 적실합니다. 적지 않은 진상(進上)이 이렇게 되었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각도가 진상한 것을 한 그릇에다 섞어서 두기 때문에 과연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기가 어렵겠으니, 이제부터는 포육에다 낙인(烙印)을 찍거나 혹은 말리기 전에 표지를 붙이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므로 제조(提調) 및 감선 제조·내관(內官)·선부(膳夫) 등을 추문(推問)하여, 근신하지 않는 조짐을 경각(警覺)시켜야 하는데 정원이, 앞서서 닭고기의 독이라고 아뢰었다가 다음에는 포육의 독이라고 아뢰었고, 또한 번쇄한 말을 진언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애석하도다. 서리가 내리면 얼마 앓아 얼음이 굳게 어는 법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左副承旨李莞啓曰：“雞肉事，問于翊衛司官員，李麟只食雞肉，而以其脯與奴，則病，而麟不病，權憶新見脯肉爛熟異常，欲不食，而但於空腹之餘，喫三片，以其餘與奴，則奴主皆病。曹光遠，脯肉、雞肉竝喫，得患尤甚云。” 政院又啓曰：“此人等以脯肉，患苦的實。不小進上，至於如是，至爲驚愕。各道進上，雜置一器，故果難摘發治罪，請自今，令於脯肉火印，或於未乾前著標。” 【史臣曰：“此事所關甚大，當推提調及監膳內官、膳夫等，以警不謹之漸可也，而政院前啓雞毒；後啓脯毒，又進煩瑣之言何哉？惜乎！履霜堅冰，可不謹哉？”】</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嘉靖) 4년) 10월 17일(임인)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내일과 그 다음날 대내(大內)를 수리할 때, 해사(該司)로 하여금 술을 마련해 군인(軍人)들에게 먹이도록 하라.”</p>	<p>○傳曰：“明日及明明日大內修理時，軍人，令該司備酒饋。”</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0월 26 일(신해) 1번째기사</p>	<p>호조의 공사(公事)를 내리며 일렀다. “당겨서 받는 폐단을, 위에서나 대신들이 모두 불가하게 여기는데, 지금 내섬시(內贍寺)의 백청밀(白淸蜜)13290) 을 앞당겨서 받기를 청했다. 비록 위에서 가져오라 하더라도 없으면 들일 수 없는 것이다. 백청밀은 단지 약으로만 쓰는 것이니, 반드시 남은 것이 있을 것이다.”</p>	<p>○辛亥/下戶曹公事 [曰] : “引納之弊, 自上與大臣, 皆以爲不可。 今請引納內贍寺白淸蜜。 雖自上命納, 無則不須入也。 白淸蜜, 只用於藥耳, 當有遺在矣。”</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0월 26 일(신해) 4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동지(冬至)가 28일인데, 이날은 기신(忌辰)입니다. 전례(前例)에 물膳(物膳)과 꽃을, 더러는 바치지 말도록 했고 더러는 물膳만 날짜를 물려 바치게 했었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바치지 말라.’ 전교하였다.</p>	<p>○禮曹啓曰: “冬至在二十八日, 是日(忌辰) [忌辰] 也。 前例, 物膳及花, 或命勿納, 或物膳。 退日以納, 敢稟。” 傳曰: “勿納。”</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1월 14 일(기사) 1번째기사</p>	<p>우승지 유보(柳溥)가 상의원(尙衣院)의 뜻으로 아뢰기를, “중궁전(中宮殿)의 개조해야 할 그릇의 중량이 30여 냥(兩)이나 되고, 또 반드시 십품은(十品銀)13326) 을 써야 할 것인데 본원(本院) 및 공조에는 모두 없으니, 무역(貿易)해다 쓰게 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저자에서 무역해 오면 물의가 불가하게 여기는데, 제향소(祭享所) 등처의 은그릇을 모두 무역해다 개조하였으니 과연 불가하다. 사옹원(司饗院) 및 공조에 소장한 부서진 은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가하다. 함경도가 비록 올해 조금 풍년들기는 하였지만, 은을 채굴(採掘)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으니, 내년 추수 뒤에 단천(端川)에서 채굴하기로 상의원이 공사(公事)를 만들어 아뢰라.” 하였다.</p>	<p>○己巳/右承旨柳溥以尙衣院意, 啓曰: “中宮殿改造銀器之數, 至三十餘兩, 而必用十品, 則本院及工曹皆無有, 請貿易用之。” 傳曰: “凡貿易于市, 物論以爲不可。 如祭享所等處銀器, 皆貿易而改造, 果爲不可。 其以司饗院及工曹所藏破銀器, 打造可也。 咸鏡道今雖稍稔, 不可起採銀之役。 其於明年秋成後, 採于端川事, 尙衣院爲公事啓之。”</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p>	<p>전교하였다.</p>	<p>○傳曰: “昨見戶曹公事, (門) [則] 請減各司點心。 【不緊官員點心也。</p>

<p>(嘉靖) 4년) 11월 14 일(기사) 2번째기사</p>	<p>“어제 호조의 공사(公事)를 보건대, 각사(各司)의 점심(點心) 【긴요하지 않은 관원들의 점심을 말한다.】 을 감하기 청했었다. 호조가 이처럼 마음을 다해 감하려 하지만, 그 사(司)의 제조(提調)가 만일 도로 주기를 청하게 되면 할 수 없으니, 만일 이런 공사가 있으면 정원이 입계(入啓)하지 말라.” 호조 판서 안윤덕(安潤德) 등이 아뢰기를,</p>	<p>(員) 戶曹如此盡心減省, 而其司提調, 若請還給, 則不可。 若有如此公事, 政院其勿入啓。”</p>
<p>중종 55권, 20년 (1525 을유 / 명 가정 (嘉靖) 4년) 11월 25 일(경진) 6번째기사</p>	<p>“경기 감사의 계본(啓本)에, 각 고을 벼 방출한 것을 수납할 수도 없고 허다한 사람들을 구제할 계책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들의 계획에, 다른 도의 곡식을 전운(轉運)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법씨가 넉넉하게 하고 군자(軍資)가 넉넉하게 하여, 그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데를 보충하는 것이 진실로 편리하고 유익하겠기 때문에, 조목조목 열거하여 서계(書啓)합니다. 풍저창(豐儲倉) 중미(中米)의 남은 수량이 8년은 지탱할 만하고, 광흥창(廣興倉) 명주의 남은 수량이 3년은 지탱할 만하고, 사섬시(司贍寺) 목면(木綿)의 남은 수량이 41년이나 지탱할 만합니다. 2년 상납(上納)할 중미로 조미(糙米)를 마련하고, 2년 상납할 면주(綿紬) 및 2년 상납할 무명으로 쌀을 마련하며, 전세(田稅)를 일시에 수납(輸納)하여 군자(軍資)를 보충하자는 것입니다. 내섬시·내자시(內資寺)·예빈시(禮賓寺)·의영고(義盈庫) 등에서 수납(收納)하는 참기름·들깨·메밀·법유(法油)와 풍저창의 중미 등을 벼로 마련하여 종자를 보충한다면 거의 편리하고 유익할 것이니, 만일 윤택하게 된다면 바라건대 삼공(三公)에게 내려 의논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정부와 의논하라.” 하였다.</p>	<p>○戶曹判書安潤德等啓曰：“京畿監司啓本云：‘各官租散，不得收納，許多人口，賑濟無策。’ 臣等之計，不勞轉運他道之穀，而使種租有裕，軍資有餘，以有餘補不足，允爲便益。 故條列書啓。 豐儲倉中米餘數，可支八年，廣興倉紬餘數，可支三年，司贍寺木綿餘數，可支四十一年。 以二年上納中米，作造米；以二年綿紬布及二年木綿，并作米，田稅一時輸納，以補軍資。 以內贍、內資、禮賓、義盈庫等處所納眞油，荳子、木麥、法油及豐儲倉中米等，作租，補種子，庶爲便益。 如蒙允許，乞下議三公何如？” 傳曰：“其議于政府。”</p>
<p>중종 56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은 곧 상원(上元)13466) 이다. 내관(內官)을 보내 내전(內殿)의 주물(晝</p>	<p>○傳于政院曰：“今日乃上元，內殿晝物退膳，遣內官，令饋臺諫，色承旨亦</p>

<p>(嘉靖) 5년) 1월 15일 (무술) 2번째기사</p>	<p>物)퇴상(退床)을 가져다 대간(臺諫)을 대접하도록 하되, 색승지도 가서 참여하라.”</p>	<p>往參。”</p>
<p>중종 56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3월 7일 (경인) 1번째기사</p>	<p>대가(大駕)13509) 가 중궁(中宮)의 이어소(移御所) 【창덕궁이다.】 에 행행하여 종재(宗宰)13510) ·승지·사관(史官)과 시위(侍衛)하는 장졸 및 각사(各司)의 관원 한 명씩을 대궐 뜰에서 음식 대접했다.</p>	<p>○庚寅/大駕行幸中宮移御所, 【昌德宮】 供饋宗·宰、承旨、史官、侍衛將士及各司一員于闕庭。</p>
<p>중종 56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4월 22일 (갑술) 3번째기사</p>	<p>우승지 정옥형(丁玉亨)이 아뢰기를, “감옥이 비게 되었을 적의 전례를 고찰하건대, 성종조(成宗朝)에 윤계겸(尹繼謙)이 형조 판서일 때 감옥이 비게 되었음을 아뢰니, 당상과 낭관(郎官)을 빈청(賓廳)으로 불러 여섯 승지(承旨)를 시켜 술을 대접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상과 낭관을 빈청으로 불러 승지 및 내관(內官)이 가서 술을 대접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右承旨丁玉亨啓曰: “考空獄前例, 則成宗朝尹繼謙爲刑曹判書時, 以空獄啓之, 命招堂上、郎官於賓廳, 饋酒, 命六承旨對饋云。” 傳曰: “明日, 其招堂上、郎官, 賜酒于賓廳, 承旨及內官, 其往對饋。”</p>
<p>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6월 6일 (정사) 2번째기사</p>	<p>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전 평안 병사 조운손은, 전일 그가 정사(呈辭)할 때 상께서 특별히 잉임(仍任)13603) 할 것을 명했고 또 표리(表裏)13604) 까지 하사했습니다. 또 그 어머니가 있는 곳에도 약이(藥餌)와 식물(食物)을 후하게 지급했으니 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했습니다.</p>	<p>○臺諫啓前事, 又啓曰: “前平安道兵使曹閏孫, 前日因其呈辭, 自上特命仍任, 又賜表裏, 而其母處, 亦以藥餌、食物厚給, 上恩至重</p>
<p>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6월 9일 (경신) 2번째기사 자전의 병을 담당한</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자전(慈殿)13605) 께서 여름이면 매양 불편하셨었다. 근래에는 비위(脾胃)가 좋지 않아서 약간의 부증(浮症)이 있으시다. 약을 보살피는 당상(堂上) 의원 2명, 당하(堂下) 의원 1명, 의녀(醫女) 1명에게 내리는 세 끼 식사는 사옹원</p>	<p>○傳于政院曰: “慈殿, 夏月每不寧。近來脾胃, 不和, 微有浮證。看藥堂上醫一員、堂下一員、醫女一名, 三時宣飯, 令司饗院供饋。湯藥使令, 問其數, 亦令供饋。”</p>

의원들의 식사를 사용원에서 제공할 것을 지시하다	(司饗院)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라. 약을 달이는 심부름군도 그 숫자를 물어서 사용원에서 식사를 제공하게 하라.”	
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6월 9일 (경신) 3번째기사	정원이 대비전(大妃殿)에 문안(問安)하였다. 대비가 전교하기를, “내게는 본디 숙환(宿患)이 있는 데다가 근래 서증(暑症)을 앓아 잠시 편치 않은 것뿐이다. 그런데 모두 와서 문안하니 내 마음이 지극히 불편하다.” 하고, 이어 술을 하사하였다.	○政院問安于大妃殿，傳曰：“予本以宿疾，近又患暑證，暫不寧耳。僉來問安，至爲未安。”仍賜醢。
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6월 23일 (갑술) 1번째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듣건대, 이달 15일 경에 영경전(永慶殿)에 입번(入番)했던 충의위(忠義衛) 이세렴(李世廉)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 죽었기 때문에 끌어냈다고 합니다. 재소(齋所)13619) 에서 멋대로 마시는 것도 이미 안 될 일인데, 너무 마셔 죽기까지 했으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때의 입번(入番) 내관(內官)과 종친(宗親)을 각별히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관과 종친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甲戌/臺諫啓前事。憲府啓：“聞，今月十五日間，永慶殿入番忠義衛李世廉，飲燒酒過度，至死曳出云。縱飲於齋所，已爲不可，今至於過飲致死，甚可驚愕。入番內官及宗親，請各別推考。”傳曰：“內官、宗親事，如啓。餘皆不允。”
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6월 25일 (병자) 2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약방(內藥房)이 ‘대비전의 약을 만드는 데 생 서여(署積)를 넣어야 한다.’ 했다. 그러니 날짜를 정해서 채취하여 올릴 일로 경기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라.”	○傳于政院曰：“內藥房言：‘大妃殿食治，宜用生薯蕷。’云。其刻日採取封進事，下書于京畿觀察使。”
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6월 26일 (정축) 1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의원(內醫院)에서 ‘대비전의 보약을 만드는 데 산 사슴[生鹿]의 꼬리와 혀를 써야 한다.’고 한다. 산 사슴의 진상(進上)은 근래 모두 같음하여 봉진(封	○丁丑/傳于政院曰：“內醫院言：‘大妃殿食治，當用生鹿尾、鹿舌。’云。生鹿進上，近來皆以代封。其於京畿觀察使處，食治生鹿尾、[舌]，俱隨

	進)하고 있으니, 경기 관찰사에게 보약 만드는 데 드는 산 사슴의 꼬리와 혀를 구하는 대로 우선 봉진하도록 하서(下書)하라.”	所得, 今姑封進事, 下書。”
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6월 26일 (정축) 3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제주 3읍에 유행병이 크게 발생해서 전염되어 죽는 사람이 매우 많다 한다. 제주는 다른 도와 비교가 안 되는, 인물과 물산이 적은 바다 가운데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경악스럽다. 계청(啓請)한 약과 필요한 약이(藥餌)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더 마련해서 내려보내게 하라.” 하였다.	傳曰: “濟州三邑, 時氣大發, 傳染致死者甚多, 此非他道之比也。以海外人物數少之地, 今至於此, 事甚驚愕。啓請等藥及可當藥餌, 令該曹, 加磨鍊下送。”
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6월 28일 (기묘) 1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비전의 보약을 만드는 데 드는 산 사슴을 봉진(封進)할 일로 이미 경기도 관찰사에게 하유(下諭)하였다. 그러나 잡지 못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금까지 봉진하지 않고 있는 것일 것이다. 황해도와 강원도에다 급히 민폐없이 잡도록 하되 잡으면 급히 봉진하게 할 일로 하서하라.”	○己卯/傳于政院曰: “大妃殿食治生鹿封進事, 已下諭京畿觀察使, 而必不得捉, 故至今不封進。其於黃海、江原兩道中, 急速無弊捉得, 今姑封進事, 下書。”
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7월 18일 (기해) 6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영산군(寧山君) 이진(李愔)이 종기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므로 이미 내관(內官)과 의원(醫員)을 보냈고, 또 음식물도 보내어 문병하게 했다.	○傳于政院曰: “寧山君愔, 以腫證病苦, 已遣內官及醫員, 且送食物, 以問其病矣。”
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9월 11일 (신묘) 2번째기사	도승지(都承旨) 유보(柳溥)에게 전교하기를, “어떤 여자가 물건을 이고 강가에 오래도록 서 있으니 사유를 물어보라.” 하니, 유보가 즉시 사람을 시켜 물어보게 하였다. 아뢰기를, “남새밭에 심은 수박과 가지가 매우 크고 맛 있어서 바치려고 한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인이 사사로이 바치는 것은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성심으로 가지고 와서 바치려는 것이니 사옹원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라. 그리고 음식을 먹이	傳于都承旨柳溥曰: “有一女戴物, 久立江邊, 其問之。”溥即使人問之, 乃曰: “家圃所種西瓜、茄子甚佳, 欲獻之云。”傳曰: “女人私獻, 不宜受也。然以誠來獻, 其令司饗院受之, 饋酒賞布而遣之。”

	고 베[布]를 상으로 주어 보내게 하라.” 하였다.	
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9월 11일 (신묘) 3번째기사	내금위(內禁衛) 김세적(金世勳)이 꿩 한 마리를 쏘아 맞혔고, 선전관 김윤형(金潤瑩)은 물오리 한 마리를 쏘아 맞혀 상에게 올렸다. 전교하기를, “이들에게 술을 내리고 별조궁(別造弓) 1장(張)씩을 내리라. 꿩과 물오리는 사용원에 내리라.”	○內禁衛金世勳射雉一首，宣傳官金潤瑩射水鴨一首以進，傳曰：“其皆饋酒，賜別造弓一張。雉、鴨下司饗院。
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9월 16일 (병신) 1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우상(右相)이 졸했다는 말을 들으니 애도의 뜻을 금치 못하겠다. 따라서 특별히 부의(賻儀)하겠으니 속히 전례(前例)를 고증해서 아뢰라.” 하고, 이어 3일 간 조시(朝市)를 철폐하라고 명하였다. 정원이 특별히 부의한 전례를 고증해서 아뢰니, 【쌀과 콩이 각각 1백 석(石), 종이 1백 50권(卷), 백정포(白正布) 20필(匹), 백면포(白綿布) 20필, 정포(正布) 50필, 석회(石灰) 50석, 저포(苧布) 10필, 청밀(淸蜜) 1석 10두(斗), 진유(眞油) 3석, 황밀(黃蜜) 30근(斤).】 전교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속히 제급(題給)하게 하라.” 하였다.	傳于政院曰：“今聞右相之卒，至爲痛(憚) [悼]。別致賻，速考前例以啓。”仍命輟朝市三日。政院考別致賻前例以啓，【米太并一百石、紙一百五十卷、白正布二十四、白綿布二十四、正布五十四、石灰五十石、苧布十四、淸蜜一石十斗、眞油三石、黃蜜三十斤。】傳曰：“令該司，斯速題給。”
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10월 8일 (무오) 1번째기사	전교하였다. “내가 지난 밤에 때 아닌 천둥 소리를 듣고 매우 놀랐다. 대저 사람의 일이 잘못되면 천변(天變)이 뒤따르는 것으로 재변은 헛되이 발생하는 법이 없다. 더구나 근래 인심과 풍속이 점점 각박해져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원통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인심이 화목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기운이 천지에 짝 차게 되고 따라서 재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 상하가 다시 더욱	○戊午/傳曰：“予聞，去夜雷動非常，予甚懼焉。大抵，人事失於下，故天變應於上。災不虛生，況近來人心、風俗，日漸薄惡，中外無不冤憫。人心不和，則乖戾之氣，充塞於天地之間，以致災變，上下所當更加修省。當避殿、減膳、撤樂。”

	수성(修省)해야 한다. 나도 피전감선(避殿減膳)하고 철악(撤樂)하겠다.” 정원(政院)에 전교하였다.	
중종 57권, 21년 (1526 병술 / 명 가정 (嘉靖) 5년) 11월 9일 (무자) 2번째기사 상고에 들어놓을 물품을 지시하다	“단목(丹木) 4백 근(斤), 백반(白礬)과 호초(胡椒) 30두(斗), 아청목면(鴉青木 絛) 15필(匹), 호피(狐皮) 50령(領), 이피(狸皮) 70령과 세시(歲時)에 으레 들 여오는 관목면(官木絛)·정포(正布) 각각 3동(同), 정주(鼎紬) 4동 등을 상고(廂 庫)에 입고(入庫)시키게 하라. 동지(冬至) 뒤에는 쓸 데가 많은데 수시로 들여 오면 물론이 일까 싶으므로 세시에 으레 들어오는 물품을 입고시킬 때 한꺼 번에 들여놓게 하려는 것이다.”	○傳于政院曰：“丹木四百斤、白礬并 胡椒三十斗、鴉青木絛十五匹、狐皮 五十領、狸皮七十領及歲時例入官木 絛、正布各三同、鼎紬四同等，令進排 于廂庫。”以冬至後，多有用處，而無 時進排，疑有物論，故以歲時例入，徑 入耳。
중종 58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2월 10일 (정사) 1번째기사	상이 연(輦)을 타고 문묘(文廟)에 이르러 석전제(釋奠祭)를 거행했다. 해돋이 때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몸소 술잔을 들어 먼저 영중총부사(領中樞府事)· 좌우상(左右相)과 시강관(侍講官)에게 내리고, 다음으로 뜰 아래의 유생(儒生) 들에게 술을 내렸다	○丁巳/上輦至文廟，行釋奠祭日出， 上御明倫堂，親執爵，先賜領中樞府 事、左右相及侍講官，次賜儒生等酒于 庭下。
중종 58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3월 10일 (정해) 4번째기사	영의정(領議政) 남곤(南袞)이 졸(卒)했다. 나이는 57세다. 전교하였다. “지금 대신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지극히 애통스럽다. 조참(朝參)·경연(經 筵)·열무(閱武) 등의 일을 아울러 정지하고, 소찬(素饌)을 올리도록 하라.”	○領議政南袞卒。年五十七。傳曰： “今聞大臣之卒，至爲痛悼。朝參、經 筵、閱武等事，並停之，其進素饌。”
중종 58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3월 18일 (을미) 2번째기사	사용원(司饗院)의 단자(單子)를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오는 20일 군사훈련을 할 때 진상(進上)할 생물(生物)을 경기 각 고을로 하 여금 진배(進拜)하게 했다. 그러나 금년에는 경기에 흉황이 들어 민폐가 많을 것이니 진배하지 말게 하고, 사용원은 현재 가지고 있는 대로 적당히 쓰도록 하게 하라	○下司饗院單子曰：“來二十日習陣時， 進上生物，令京畿各官進排云。今年 京畿凶荒，民弊必多，勿令進排，而司 饗院隨其所有，用之可也。”
중종 58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3월 20일	모화관(慕華館)13897) 에서 무인(武人)들의 재주를 시험보였다. 재주가 월등 한 사람은 어전(御前)으로 불러 술을 하사하고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丁酉/閱武于慕華館，觀武才，優等 人招入御前，饋酒，賞賜有差

(정유) 1번째기사	<p>안씨의 공초에는,</p> <p>“저는 지난 3월 초하룻날 오전부터 계속 침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심 때 양전(兩殿)의 별수라(別水刺)를 대비전(大妃殿)의 뜻에 따라 강녕전(康寧殿) 서침실(西寢室)에다 합전(合殿)으로 진선(進膳)했었습니다. 퇴선(退膳)할 때 경빈(敬嬪)이 자기의 방에서 나와 강녕전의 대청 남쪽 분합문 밖에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벗어 비자(婢子)에게 주고 퇴선을 나누어 먹기 위해 빈 그릇을 가지러 시녀(侍女) 돈일(頓逸)·효덕(孝德)·천이금(千伊今) 등과 동침실(東寢室) 동쪽 모퉁이로 함께 왕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다른 내인(內人)들은 다같이 분합문을 닫고 퇴선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p> <p>……</p> <p>김씨의 공초에는,</p> <p>“저는 지난 3월 초하룻날 오전부터 계속 침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심 때 양전(兩殿)의 별수라를 대비전의 뜻에 따라 강녕전 서침실에다 합전(合殿)으로 진선(進膳)했습니다. 퇴선(退膳) 때 경빈(敬嬪)이 자기 방에서 나와 강녕전 대청 남쪽 분합문 밖에 앉아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동침실로 갔습니다. 상계서는 그대로 서침실에 앉아 중궁과 《대학연의》를 강론하셨고, 저도 같이 배우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을 마친 뒤 강녕전 대청으로 나오니 다른 시녀들은 퇴선을 이미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따라 가서 먹었습니다.</p>	<p>安氏供：“女身自去三月初一日午前爲始，仍留寢室次。晝時，兩殿別水刺，以大妃殿之旨，於康寧殿西寢室，合殿進膳。退膳時，敬嬪出自其房，同殿廳中南分閣外來坐。女身則脫衣授婢子，而以退膳分食空器取來事，侍女頓逸、孝德、千伊今等，東寢室東隅進去之時，偕與往來，而女身及他內人等，一時閉分閣，退膳共食施爲次。</p> <p>……</p> <p>金氏供：“女身去三月初一日午前爲始，仍留寢室。晝時，兩殿別水刺，以大妃殿之旨，於康寧殿西寢室，合殿進膳，而退膳時，敬嬪出自其房，來坐於殿廳中南分閣外。俄而，進去東寢室。上仍坐西寢室，與中宮講論《大學衍義》。女身以同學入內。畢講後，出來殿廳中，他餘侍女等退膳竝已畢食，女身隨後來食。</p>
<p>중종 58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4월 10일 (기유) 9번째기사</p>	<p>은기성상노 귀석의 공사에는,</p> <p>“지난 3월,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차비내관(差備內官) 김귀인(金貴仁)</p>	<p>銀器城上貴石供曰：“去三月分，日不記，差備內官金貴仁云：‘有內人謂我曰：「捕生鼠入內則或饋酒，或扇子、</p>

<p>(병진) 5번째기사</p>	<p>이 ‘어떤 나인이 내게 「산 쥐를 잡아가지고 쥘내로 들여오면 술을 주거나 부채나 입모(笠帽)를 상(賞)으로 주겠다.」 하더라.’ 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나는 은기(銀器)를 깨끗이 닦는 일이 긴급한데 어느 겨를에 잡을 수 있겠는가? 네가 잡아 가지고 들여보내라.’고 대답했습니다. 답변할 때 서원(書員) 이춘일(李春日)이 옆에서 내 말을 들었습니다.”</p> <p>하고, 수라간(水刺間) 서원 이춘일의 공사에는,</p> <p>“지난 3월 중궁전(中宮殿)에 수라상을 들여가기 위해 동전(同殿) 수라간에 앉아 있을 때 은기성상노 귀석이 ‘나에게 쥐를 잡아 쥘내로 들여가라고 하지만 어느 겨를에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p>	<p>笠帽中，給賞。」云。’我答曰：‘我則銀器修淨事繁，奚暇捉得乎？汝可捉入事。’答說時，書員李春日，證聽矣。”水刺間書員李春日供曰：“去三月分，以中宮殿舉床差備，同殿水刺間坐在時，銀器城上貴石言曰：‘雖使我捕鼠入內，何暇捉得乎？’云云時，聽知矣。”</p>
<p>중종 58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4월 28일 (갑술) 3번째기사 대사헌 한효현이 봉진하는 물품에 고을 이름을 새기는 것과 관련하여 아뢰다</p>	<p>대사헌(大司憲) 한효원(韓效元)이 아뢰기를,</p> <p>“신이 전에 함경도 감사(咸鏡道監司)로 있을 때 진상(進上)하는 쾌포(快脯)에 고을 이름을 새기게 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랐으나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들으니, 동궁(東宮)의 퇴선(退膳)을 익위사 관원(翊衛司官員)과 하인(下人)에게 내렸는데 이를 먹은 사람들이 모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상계서는 외방에서 틀림없이 삼가지 않은 것이라 여겨 고을 이름을 새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래에는 신 등이 심사 숙고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 때 의당 끝까지 추문해서 다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통으로 여겨 방치했기 때문에 간모(奸謀)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신 등이 이런 일을 아뢰기가 지극히 곤란하지만 늘 마음에 유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大司憲韓效元啓曰：“臣前爲咸鏡道監司時，聞進上快脯，令刻邑名，至爲驚駭，未知厥由。到京詳聞則東宮退膳，下于翊衛司官員及下人，食之者，皆爲氣絕復甦。自上慮必外方不謹，故令刻邑名。近來，臣等無所不計慮而思之，當其時，所當窮推而治之。自上視爲尋常，而棄之，故奸謀連繇而出矣。今而追思之，至爲寒心。臣等以此啓之，極知其難矣，常留于心，故啓之也。”傳曰：“凡封進之物，次知內官及事知內官，同監出授，熟而進膳。其殿內人，猶或可知，然亦進膳而已，他殿人則尤未知之也。前者，外方海</p>

	<p>“봉진(封進)하는 물품은 차지 내관(次知內官)과 사지 내관(事知內官)이 함께 감독하여 내어주는 것을 익혀서 진膳(進膳)하는 것이니, 그 전(殿)의 나인(內人)은 그래도 혹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역시 진膳(進膳)만 할 뿐이다. 따라서 다른 전(殿)의 나인은 더욱 모르는 것이다. 전에 외방(外方)에서 바닷물에 이변(異變)이 있을 때 잡은 물고기를 백성들이 먹고서 해를 당한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실을 말하기에 바닷물에 이변이 있을 때는 그 이변이 없어진 뒤에 봉진하도록 하라는 유지(諭旨)를 내린 일은 있었다. 따라서 포육(脯肉) 역시 외방에서 삼가지 않은 탓으로 잡힌 고기가 들어갈까 의심스러워 고을 이름을 새겨 봉진하도록 하유하였었다. 퇴膳(退膳)의 일은 쥐를 지진 일과는 관계가 없다. 대사헌은 이 점에 대해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뢴 것이리라.”</p> <p>하였다.</p>	<p>惡時所捕魚物，百姓食之，而有傷事。或有言之者，故海惡寢息後封進事，下諭之時亦有矣。其脯肉，亦疑外方不謹，以雜肉入內，故刻邑名封進事下諭矣。退膳事，不干於灼鼠。大司憲有疑於心，故啓之也。”</p>
<p>중종 59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5월 13일 (기축) 5번째기사</p>	<p>따라서 수성(修省)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하여야 하겠기에 급하지 않은 모든 역사(役事)는 일체 정파(停罷)하고, 또 피전(避殿)하여 감선 철악(減膳撤樂)함으로써 재앙을 좀 늦추게 하여야겠다.</p>	<p>故凡不急之役，一切停罷，而又避殿、減膳、撤樂，庶幾少弭災咎矣。</p>
<p>중종 59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5월 25일 (신축) 3번째기사 금주를 명하다. 혼인·상제·노병의 약으로는 허락하다</p>	<p>전교하였다.</p> <p>“근자에 금주(禁酒)를 명하였다. 그러나 활쏘는 곳 및 노병(老病)으로 약을 복용하는 데에는 금하지 말도록 전에 이미 전교하였다. 지금은 궐내(闕內)에서 종제(宗宰)들을 접대할 적에도 아울러 술을 쓰지 않는다. 금후에는 혼인·상제(喪祭)·노병으로 인한 복약 외에는 병주(瓶酒) 가지는 것을 일체 금한다.”</p>	<p>○傳曰：“近者，命禁酒而於射侯處及老病服藥則勿禁事，前已傳教矣。但卽今於闕內，宗宰接待，竝不用酒。今後，除婚姻、喪祭、老病服藥外，持瓶酒一禁。”</p>
<p>중종 59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p>	<p>전교하였다.</p>	<p>○傳曰：“慶會池邊祈雨，第三日乃得雨，其賜香使鞍俱馬一匹，監察馬一</p>

<p>(嘉靖) 6년) 6월 5일 (경술) 2번째기사</p>	<p>“경회루(慶會樓) 못가에서 비를 빈 지 3일 만에 비가 내렸다. 향사(香史)에게는 안장을 갖춘 말 한 필을, 감찰에게는 말 한 필을, 동자 등에게는 쌀 5석(石)을 주라.”</p>	<p>匹, 童子等米五碩。”</p>
<p>중종 59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6월 15일 (경신) 1번째기사 정부가 한재로 피전한 지 오래라고 정전으로 복귀하기를 아뢰다</p>	<p>정부가 아뢰기를, “한재로 하여 피전(避殿)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금 비가 내렸으니 풍년이 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큰 흉년에는 이르지 않겠습니다. 근래 피전으로 하여 오래도록 조회(朝會)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비전(大妃殿) 탄일에 진연(進宴)하는 것은 경사인데 매양 사고로 하여 거행하지 못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정전(正殿)으로 복귀하시고, 예문(禮文)에 따라 진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 연일 비가 내렸고, 양원군(楊原君) 부인이 또 졸(卒)했기 때문에 오래 경연(經筵)을 정지하였었다. 자전(慈殿)의 진연은 탄신일이 한여름철이므로 상전(上殿)이 매양 정지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내가 정전으로 복귀하고 나서 청하도록 하겠다. 다만 재변이 잇달아 발생하는데 피전한 지 오래지 않아 곧 복귀하는 것은 지극히 미안하다. 뒷날 서서히 보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재변을 만나 삼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간단(間斷)이 없다면, 정전에 복귀하더라도 피전과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한창 성하(盛夏)이니 경연(經筵)에 나가시기를 청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조하(朝賀)·조참(朝參) 같은 데는 여러 신하들이 임금의 얼굴을 우러러 뵈옵는 곳이라서 이야말로 중한 일인 바, 오래 폐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전의 진연은 본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한 것이니 편전에서 간소하게 하는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만일 피전하고서 계청(啓請)한다면 상전의 마음이 반드시 편치 못하실 것이니, 정전에 복귀하신 뒤</p>	<p>○庚申/政府啓曰：“以旱災避殿已久。今已下雨，雖不爲豐稔，必不至大凶。近以避殿，久不臨朝。且大妃殿誕日進宴，乃慶事也。每因事故而不舉，至爲未安，請復正殿，依禮文進宴何如?” 傳曰：“近因連日下雨，而楊原君夫人又卒，故久停經筵矣。慈殿進宴則誕日乃盛夏之月，故上殿每命停之。予當復殿而請之，但災變疊出，避殿未久而卽復，至爲未安。後日，徐觀而爲之何如?” 又啓曰：“遇災側身，不必避殿而爲之。戒懼之心無少間斷，則雖復正殿，何異於避殿乎? 今方盛夏，經筵不須請御，至如朝賀、朝參則群臣瞻仰天表，乃是重事，久廢不可。且慈殿進宴，本爲慰悅。於便殿從簡爲之甚當。若避殿而啓請，則上殿必未安心。請復正殿後，啓請。” 傳曰：“大臣所啓是也。當復正殿，而啓請也。”</p>

	<p>에 계청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이 아뢰 바가 옳다. 정전에 복귀하고 나서 계청하도록 하겠다.” 전교하였다.</p>	
<p>중종 59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6월 16일 (신유) 2번째기사</p>	<p>“대비전 탄일 진연에 대해 계청한 바 ‘비록 정전에 복귀하더라도 근래 재변이 줄을 잇고, 더구나 양원군 부인의 서거가 있는 지 오래지 않았는데 풍악을 듣는 것은 미안하다.’ 하시므로 감히 강청하지 못하였다. 탄일에는 별미(別味) 몇 가지를 올릴 내용으로 사옹원(司饗院)에 말하라.”</p>	<p>○傳曰：“大妃殿誕日進宴事，啓請則曰：‘雖復正殿，近來災變連綿。況楊原君夫人之逝未久，聽樂未安。’云，故未敢強請。其於誕日，別進味數事，言于司饗院。”</p>
<p>중종 59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6월 18일 (계해) 1번째기사</p>	<p>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장령(掌令) 이홍간(李弘幹)이 아뢰기를, “신이 충청도에 갔을 때에 들으니, 장원서(掌苑署)에서 금년에 가뭄이 심한 탓으로 과일나무에 전혀 열매가 맺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조(該曹)에 보고하였답니다. 그랬더니, 해조에서는 충청도에 이첩(移牒)해서 각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여 민간에게 상납(上納)하게 했다고 합니다. 금년의 가뭄은 서울만이 아니라 외방도 모두 그러하니 민간에서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회관(都會官)에서는 민간에게서 면포를 거두어 장원서 노자(奴子)에게 주어 방납(防納)14017) 하게 하고 있으니, 지극히 부당한 일입니다. 따라서 수합(收合)하기 전에 하유(下諭)하여 징수하지 말게 한다면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간이 아뢰지 않았다면 외방의 민폐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장원서가 과일나무를 유의하여 배양(培養)하지 않은 탓으로 외방에 복정(卜定)14018) 하여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 지극히 그른 일이다. 추문(推問)하라. 그리고 민간에 복정하지 말게 하라.”</p>	<p>○癸亥/臺諫啓前事，不允。掌令李弘幹啓曰：“臣往忠清道時，聞掌苑署以今年旱甚，果木全不結實，報該曹，行移于忠清道，分定各官，令民間上納。今年旱氣，非獨京中，外方皆然，民間豈易得哉？都會官，收縣布於民間，以給掌苑署奴子，而防納，至爲未便。若於未收合之前，下諭勿徵則民受一分之惠矣。”傳曰：“若非臺諫之啓，外方民弊，予何能知？掌苑署果木，不用意培養，以致卜定外方，貽弊於民，至爲非矣，其推之。且勿令卜定民間。”</p>

<p>중종 59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10월 3일 (정미)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전일 경연에서 정승이 아뢰 뜻은 천금(薦禽)14082) 이 소중하다고 하였다. 이제 만약 답렵(踏獵)으로 이름붙인다면 천금하기에 미안하니 답렵을 타위(打圍)로 고쳐서 천금하는 것이 좋겠다. 천금을 하게 되면 천금하기 전에는 포획물을 할이(割耳)하지 못하는 것이니, 군중(軍中)으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고자 한다.”</p>	<p>○傳曰：“前日經筵政丞啓意，以薦禽爲重而言之。今若以踏獵爲名，則其於薦禽，似未安。其改踏獵爲打圍，而薦禽可也。若爲薦禽則未薦禽前，不可割耳，欲令軍中預知。”</p>
<p>중종 59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10월 9일 (계축) 1번째기사</p>	<p>상이 아차산(峨嵯山)에서 사냥하였는데 새, 노루 8마리, 여우 1마리, 토끼 20여 마리, 꿩 30여 마리를 포획하였다. 상이 주서(注書) 김치운(金致雲)을 시켜서 종묘에 천금(薦禽)하였다.</p>	<p>○(丁丑) [癸丑] /上打圍于峨嵯山，獲禽：獐八口、狐一口、兔二十餘口、雉三十餘首。上遣注書金致雲，薦禽于宗廟。</p>
<p>중종 59권, 22년 (1527 정해 / 명 가정 (嘉靖) 6년) 10월 10일(갑인)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아차산 타위(打圍)에서 새를 잡은 사람이 먼저 할이(割珥)하였기 때문에 두 마리 만으로 천금하였다. 전에는 비록 3~4마리를 가지고 천금하여도 오히려 체천(體薦)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두 마리 만으로 천금하였으니 매우 미안하다. 날씨가 추워서 얼어붙기 전에 청계산(靑溪山)과 홍복산(洪福山)에서 다시 타위하고자 하니, 사복(司僕)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하고 아울러 봉고개(蜂古介)도 살펴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p>	<p>○甲寅/傳于政院曰：“峨嵯山下打圍捉禽人，徑自割耳，只以二口薦之。前者，雖以三四口薦之，猶不得體薦。今則只以二口薦之，至爲未安。日未寒凍前，欲於靑溪山、洪福山中，更欲爲打圍也。其令司僕往審，并審蜂古介可也。”</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1월 1일 (갑술) 1번째기사</p>	<p>중재(宗宰) 2품(品) 이상과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양사(兩司)·시강원(侍講院)과 입직한 병조(兵曹)와 도총부(都總府)의 당상관과 낭관(郎官) 및 사소(四所)의 위장(衛將)과 부장(部長) 등을 대궐 뜰에서 음식을 먹이고 악(樂) 1등을 내렸다. 대비전과 대전에도 함께 선은(宣醞)하였다.</p>	<p>○甲戌朔/宗、宰二品以上，承政院、弘文館、兩司、侍講院，入直兵曹、都總府堂上·郎官及四所衛將·部將等，供饋于闕庭，賜樂一等。大妃殿、大殿，并賜宣醞。</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1월 2일</p>	<p>전교하였다. “왕후(王后)의 과거(寡居)하는 어머니에게는 매년 봄 가을에 쌀과 콩을 아울</p>	<p>○乙亥/傳曰：“王后母寡居者，每年春秋，賜米、太并三十石。世子嬪母，雖無前例，早寡家貧，所當周恤。</p>

<p>(을해) 1번째기사</p>	<p>러 30석(石)을 내리게 되어 있다. 세자빈의 어미는 비록 전례(前例)가 없더라도 일찍 홀로 되어 집안이 가난하여 도와주어야 마땅하니, 쌀과 콩 20석을 매년 봄 가을에 지급하여 주라.”</p>	<p>米、太并二十石，亦於每年春秋題給。”</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1월 3일 (병자) 1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전에는 친경(親耕)한 후에는 으레 주연(酒宴)을 베풀어 위로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정조(正朝)의 회례연(會禮宴)도 정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는 것은 성례(盛禮)이다. 거행하도록 하라.”</p>	<p>○丙子/禮曹啓曰：“親耕後，例爲勞酒宴，前無不爲之時。但今年凶荒，故正朝會禮宴亦停之，何以爲之?” 傳曰：“勞酒宴，乃盛禮也，其爲之，”</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1월 9일 (임오) 1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를 보내 성균관에 선운(宣醞)할 것을 명하였다</p>	<p>○壬午/命遣都承旨，宣醞于成均館。</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1월 15일 (무자) 3번째기사</p>	<p>정원과 홍문관에 선운(宣醞)하였다</p>	<p>○宣醞于政院、弘文館。</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1월 20일 (계사) 4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각사(各司)의 미면(米麪)과 염장(鹽醬)이 만약 오래되어 티끌이 끼면 사람이나 가축이 먹을 수 없으니, 이는 천물(天物)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다. 또 면포(綿布)와 피물(皮物)도 오래 묵으면 역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조종조에서는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시기에 조치하였다. 미면과 장염은 혹 공해(公廩)을 보수(補修)하는 곳에 주고 면포는 양계(兩界) 군사의 납의(衲衣)를 만들 때 주고, 기타 피물도 함께 조치할 내용으로 호조(戶曹)에 말하라.”</p>	<p>○傳曰：“各司米麪、鹽醬，若久爲塵土，則人畜亦不得食，是，暴殄天物也。且絺布、皮物久陳則亦不可用。以此，祖宗朝於可食、可用之時，使之處置也。米麪、鹽醬則或於公廩營繕處題給；絺布則兩界軍士衲衣造作時題給，而他餘皮物，并爲置處事，言于戶曹。”</p>
<p>중종 60권, 23년</p>	<p>정원(政院)이 아뢰기를,</p>	<p>○政院啓曰：“羅嗣宗致賻事考之，則</p>

<p>(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2월 1일 (계묘) 9번째기사</p>	<p>“나사종(羅嗣宗)에게 치부(致賻)한 일을 상고하였더니, 다만 《대전(大典)》에 의해서만 행하였을 뿐 다른 부의는 없었습니다. 또 호조(戶曹)에 물어보았으나 역시 그런 예가 없다고 하였습니다.”</p> <p>하니, 전교하였다.</p> <p>“사손(思遜)에게 관곽(棺槨) 및 쌀·콩 각 16곡(斛), 포(布)·저(苧) 각 10필(疋), 유둔(油菴) 3건(件), 진말(眞末) 1곡(斛), 밀유(蜜油) 각각 7두(斗)씩 별도로 치부하라.”</p>	<p>只依《大典》行之，而無別賻。又問于戶曹則亦無其例云。”傳曰：“其別賻思遜以棺槨及米·豆各十斛、布·苧各十匹、油菴三件、眞末一斛、蜜、油各七斗。”</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2월 5일 (정미) 1번째기사</p>	<p>대마도주(對馬島主)가 연쇄야문(延灑也文)을 보내 방물(方物)을 바쳤다.</p>	<p>○丁未/對馬島主遣延灑也文，來獻方物。</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2월 8일 (경술) 8번째기사</p> <p>이귀령이 세자의 아침 수라의 퇴선 중 일으킨 구토에 대해 아뢰다</p>	<p>이귀령(李龜齡)이 아뢰기를,</p> <p>“문학(文學) 정언호(鄭彦浩)가 정원에 말하기를 ‘세자의 아침 수라의 퇴선(退膳) 중 생치(生雉)와 식해(食醢) 등을 설서(設書) 허항(許沆) 및 하인 6~7인이 먹고 구토를 하기도 하고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현기증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들은 이 말을 듣고 지극히 미안하였습니다. 때문에 감히 여쭙니다.”</p> <p>하니, 전교하였다.</p> <p>“세자궁(世子宮)에서는 전에도 포육(脯肉)을 먹고 현기증을 일으킨 자가 있었다. 그 당시에도 추고했어야 하는데 어느 도(道)에서 봉진(封進)한 것인지 몰랐으므로 하지 못하였다. 그후 끝까지 추문하지 않은 것을 온당치 못하게 여기는 여론(輿論)이 있었다. 이제 이 일도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 물품은 오늘 아침 밖에서 들여다 쓴 것인가, 안에 들여온 지 오래된 것인가, 먹은 자는 이</p>	<p>○李龜齡啓曰：“文學鄭彦浩言于政院曰：‘世子朝水刺退膳生雉、食醢，說書許沆及下人六七人食之，而或嘔吐、或腹痛、或眩昏。’云。臣等聞之，至爲未安，故敢達。”傳曰：“世子宮，前日亦有食脯肉眩昏者。其時亦當推之，而未知某道所封進，故未果也。其後以不窮推爲未便，而有物論。今者此事，亦爲驚愕。此物，今朝自外卽入而用之乎？入內已久乎？食之者只食此物，而他無所食之物乎？且此醢，何道、何官之所封進耶？其卽招薛里，詳問以啓。如此之事，於東宮常有之。若或世子食而如此則甚爲驚愕。都薛里及薛里等，其下禁府推</p>

	<p>것만 먹었고 달리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식해는 어느 도 어느 고을에서 봉진한 것인가? 즉시 설리(薛里)14175) 를 불러 자세히 물어서 아뢰라. 이같은 일이 동궁에서 늘상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세자가 이를 먹었다가 이같이 되었다면 매우 경악할 일이다. 도설리(都薛里)와 설리 등을 금부에 내려 추고하라. 또 나머지 식해를 다른 사람에게 먹여서 시험하라.”</p>	<p>之。且以其餘醢，令他人食之以驗。”</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2월 8일 (경술) 9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p> <p>“동궁의 식해 사건은 지금 궁내에서 추문해 보니 경기(京畿)에서 봉진한 것이라 한다. 평상시 진선(進膳)할 적에는 으레 맛보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은 맛보는 일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일이다. 반감(飯監)14176) 과 상배색(床排色)14177) 을 모두 금부에 내려 추고하라.”</p>	<p>○傳曰：“東宮食醢事，今乃自內推問則京畿封進云。常時進膳，例爲知味，而此則不謹知味，故如此矣。飯監及床排色，并下禁府推之。”</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2월 8일 (경술) 10번째기사</p>	<p>이귀령(李龜齡)이 아뢰었다.</p> <p>“설리를 문초하니, 이 식해는 지난달 16일에 바친 것인데 이달 6일에야 공진(供進)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강원(侍講院)의 하인에게 무엇무엇을 먹었는가를 물으니, 상 위에 있는 것은 다 먹었는데 토한 뒤에 보니 먹은 식해가 날것이고 또 색깔이 붉으므로 이것이 해를 유발시킨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식해를 가지고 와서 시강원의 사령(使令) 8~9인에게 먹게 하였더니, 모두 구토하고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2~3인은 밤새 몹시 앓았습니다.”</p>	<p>○李龜齡啓曰：“招問薛里則此食醢，去月十六日捧之，自今月初六日始供進云。且問侍講院下人食某某物則云：‘床中之物盡食矣。但吐後見之，其所食食醢，生且色紅，故疑此物爲害耳。’且所餘食醢取來，而使院使令八九人食之則皆嘔吐腹痛，其中二三人，終夜深痛。”</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2월 8일 (경술) 13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p> <p>“세자궁(世子宮)에 공상(供上)한 식해는 경기에서 봉진한 것이라 하니, 감사 황맹헌(黃孟獻)과 그 읍의 수령을 아울러 추고하라.”</p>	<p>○傳曰：“世子宮供上之醢，乃京畿封進。監司黃孟獻及其邑守令，並推考。”</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p>	<p>전교하였다.</p>	<p>○傳曰：“世子宮都薛里及薛里、飯監、床排色，已令推之矣。但此醢，</p>

<p>(嘉靖) 7년) 2월 8일 (경술) 14번째기사</p>	<p>“세자궁의 도설리(都薛里)와 설리·반감(飯監)·상배색(床排色)은 이미 추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식해는 담가서 봉진한 즉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지난달 16일에 봉진한 것을 이달 6일부터 공진(供進)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별탈이 없다가 사흘째에 와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였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설리들과 반감은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고하라. 그리고 감사와 수령 또한 이미 추문하라 명하였다. 그러나 감사는 모든 진상물을 범연(泛然)히 봉진하지만 수령【용인 현령(龍仁縣令) 남세평(南世平)이다.】은 봉진할 때 친히 봉인(封印)해야 하는데 신중히 하지 않았으니, 설리보다도 더욱 잘못이다. 금부에 내려 추고하라.”</p>	<p>非即時封進而用之也，乃於去月十六日封進，而自今月初六日始進。無事用之，而至於三日間，乃有如此事，至爲驚愕。薛里等及飯監，先罷後推。且監司及守令，亦已命推矣。但監司則凡進上之物，泛然封進矣，守令【龍仁縣令南世平。】則封進時，所當親封，而不謹爲之，比諸薛里則尤爲非也，其下禁府推之。”</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2월 13일 (을묘) 1번째기사</p>	<p>“남세평(南世平)의 일은 비록 공죄(公罪)로 조율하였으나 쟁젓[雉醢]의 근원은 용인(龍仁) 고을에서 조심하지 않고 봉진(封進)하였기 때문이다. 세자궁의 설리(薛里)는 봉상(捧上)한 것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인데도 맛보는 것을 신중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시켰으니, 남세평도 파직시키지 않을 수 없다. 파직시키라.”</p>	<p>○乙卯/傳曰：“南世平事，雖以公罪照律，然雉醢根原，出於龍仁官，不謹封進所致也。世子宮薛里則只捧納用之而已，猶以不謹知味，命罷，南世平不可不罷，其罷之。”</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3월 5일 (병자) 1번째기사</p>	<p>이날은 대전(大殿)의 탄신일이지만 궁중의 뜰이 젖어서 하례(賀禮)를 중지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각도의 방물(方物)과 하전(賀箋)을 내전에 진헌하였고, 종재(宗宰)들과 승지·사관이 문안드렸다.</p>	<p>○丙子/是日乃大殿誕日，以庭濕，停賀禮。禮曹奉各道方物及賀箋，進獻于內。諸宗、宰及承旨、史官問安。</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3월 10일 (신사) 6번째기사</p>	<p>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재변이 자주 나타나고 연사(年事) 또한 흉년이니, 금주령(禁酒令)을 내리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금주에 관한 일은 전례에 따라 금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p>	<p>○臺諫啓前事。憲府又啓：“災變疊見，年且凶荒，請禁持瓶酒。”傳曰：“禁酒事，其依前例禁之。餘不允。”</p>

<p>중종 60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3월 15일 (병술) 1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세자빈(世子嬪)이 본가(本家)에 이피(移避)하였는데 병의 증세가 완전히 나아 다. 본가에는 쌀 15석(石)을 제급(題給)하고, 장번 내관(長番內官)14242) 박 승은(朴承恩)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하사하라.”</p>	<p>○丙戌/傳曰：“世子嬪移避于本家，而 病證永差，其以米十五石，題給本家， 長番內官朴承恩，賜兒馬一匹。”</p>
<p>중종 61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4월 27일 (무진) 1번째기사</p>	<p>“성균관(成均館)에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 나서 명륜당에 전좌(殿 坐)14374) 하여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제술(製述)14375) 을 하게 하면, 마 치 시험장(試驗場)과 같아 종친(宗親)·재상 및 유생들을 공궤(供饋)할 수 없을 것이니, 유생들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하련대(下輦臺)에 전좌하여, 대사례 (大射禮)14376) 때의 예처럼 장사(將士)·유생·종친 및 재상들을 모두 공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戊辰/傳于政院曰：“於成均館行酌獻 禮後，殿坐于明倫堂，令儒生製述則有 若試場，宗、宰及儒生，不得供饋也。 儒生試畢後，殿坐于下輦臺，依大射禮 例，將士、儒生、宗·宰、竝皆供饋可 也。”</p>
<p>중종 61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6월 17일 (정사)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순변사(巡邊使)가 길을 떠나게 될 때 의복 및 활과 화살을 주어서 보내야 한 다는 것을 전일에 이미 전교했으니 수효대로 미리 마련해야 한다. 길을 떠날 때 대신들과 함께 인견(引見)하고 전송하는 잔치를 하고서 보내고자 한다.”</p>	<p>○傳曰：“巡邊使發行時，衣服及弓箭 授送事，前已傳之，其依數豫備可也。 當於發行時，欲與大臣等引見、餞宴， 而送也。”</p>
<p>중종 61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6월 21일 (신유) 1번째기사</p>	<p>삼공이 아뢰기를, “오는 25일 【대비전(大妃殿)의 탄일(誕日)이다.】 의 진풍정(進豐呈)14473) 과 진연(進宴)을 이미 정지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반드시 재변이 있기 때문에 사 양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풍정을 하는 것은 자전(慈殿)을 위해 하는 일이고, 또한 이 날은 다른 날과 같은 때가 아니라 곧 경사스러운 날입 니다. 살아계실 날을 아끼는 정성이 간절한데다가 또한 효도하는 도리에도 관 계가 있는 일이니, 자전께서는 비록 미안하게 여기시어 정지하도록 하시더라 도 상께서 강청하여 거행하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진풍정에 관한 일은 한 말이 매우 지당하다. 다만 요사이 예조가 와서 품하</p>	<p>○辛酉/三公啓曰：“來二十五日【大妃 殿誕日。】進豐呈進宴，已命停之。 此必以有災變，故爲謙遜而然也。然 所以爲進豐呈者，爲慈殿也。且此日， 非如他時，乃慶節也。愛日之誠懇切， 而亦有關於孝理。慈殿雖以爲未安， 而命停，自上所當強請行之。”傳曰： “進豐呈事，所言甚當。但近日禮曹來 稟，予稟于慈殿，則今有災變，勿爲可 也云，故已命停之。且昭惠王后誕日 則乃在於九月，其時節氣淒涼，故進豐 呈數數爲之矣，今則誕日乃在於三伏之</p>

	<p>기에 내가 자전계 품했더니, 지금 재변이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미 정지하게 한 것이다. 또한 소혜 왕후(昭惠王后)14474)의 탄일은 곧 9월인데 그때는 절후가 서늘하기 때문에 진풍정을 자주 하였지만, 이번은 탄일이 곧 삼복(三伏) 무렵이어서 비록 편복(便服) 차림으로 한가로이 있어도 오히려 더위가 고통스럽다. 만일 진풍정을 한다면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14475) 및 기녀(妓女)들이 궁중(宮中)으로 많이 들어와 훈증한 기운이 응당 평소보다 배나 더할 것이고, 자전께서도 수식(首飾) 및 모든 절차가 또한 많으시므로 서기(暑氣)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으니 강청하여 하는 것은 도리어 효도하는 도리에 합당치 못하다. 이래서 해마다 거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번에도 단지 낮 음식만 올리려 한다.”</p>	<p>間，雖以便服宴處，尙有暑熱之苦矣。若爲進豐呈則內外命婦及女妓等，多入殿中。其薰蒸之氣，應必倍常，而慈殿首飾及凡節次亦多，暑氣不可不慮，強請爲之，反不當於孝理。以此，年年不得行之，而今亦只欲進晝膳矣。”</p>
<p>중종 62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7월 13일 (임오)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오늘의 인견(引見)은 곧 순변사를 위한 것이다. 인견할 때 상(床)을 올린 다음, 도설리(都薛里)14500) 가 잔을 들어 올리면 위에서 친히 들고 마실 적에 순변사가 상시처럼 회배(回拜)14501) 하는 것이 준례이니, 이런 뜻을 미리 순변사에게 말해주라. 또 모화관(慕華館)에서 선은(宣醞)할 때는 좌부승지를 보내라.”</p>	<p>○壬午/傳于政院曰：“今日引見，乃爲巡邊使也。引見時舉床後，都薛里執酌以進，則自上親執以飲，巡邊使如常時回拜之例可也。此意預言于巡邊使。且慕華館宣醞時，其遣左副承旨。”</p>
<p>중종 62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7월 20일 (기축) 4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폐비(廢妃) 【연산군(燕山君)의 폐비이다.】 에게 쓸 것을 준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중미(中米)·조미(糙米)14536) 를 각각 20석과 관목면(官木綿) 1백 필을 주어야 한다.”</p>	<p>○傳于政院曰：“廢妃處，【燕山君廢妃。】 賜給已久。中糙米各二十石，官木綿一百匹，賜給可也。”</p>
<p>중종 62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8월 3일 (임인) 2번째기사</p>	<p>호조가 아뢰기를,</p> <p>“왜인들이 가지고 온 별폭(別幅)에 기록한 상품들은, 당초에 예조가 공무역(公貿易)을 허락하려고 했기 때문에 즉시 각사(各司)에 이첩하여 족한 물품과</p>	<p>○戶曹啓曰：“倭人持來別幅付商物，當初禮曹欲許公貿，故卽移文問于各司不足之物，則他物有餘，而唯胡椒、弓角、硫黃等物，似不足，故欲加貿之</p>

	<p>부족한 물품을 물어보니, 다른 것은 유여하지만 오직 호초(胡椒)·궁각(弓角)·유황(硫黃) 등의 물품이 부족한 것 같았기에 더 무역하려고 했었습니다.</p>	<p>也。</p>
<p>중종 62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8월 13일 (임자)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p> <p>“춘당대(春塘臺) 문정전(文政殿)에 진풍정을 배설(排設)하는 관원 및 서원(書員)·사령(使令)·군인들에게 전례대로 술을 대접해야 한다.</p>	<p>○傳曰：“春堂臺、文政殿，進豐呈排設官員及書員、使令、軍人等，依前例饋酒可也。”</p>
<p>중종 62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8월 14일 (계축) 1번째기사</p>	<p>정만중이 아뢰기를,</p> <p>“얼음 뜨는 군사와 얼음덩이의 장광(長廣)과 후박을 상계서 더 걱정하시어, 군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매우 많은데도 병조에서는 항시 부족해서 걱정합니다. 얼음덩이의 후박은 조종조(祖宗朝)에 작정한 것이어서 만일 절약해서 쓴다면 더 걱정하지 않더라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척수(尺數)를 증가하더라도 만일 관원들이 허수하게 허비하여 쓴다면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올해는 내빙고(內冰庫)와 동(東)·서(西)의 빙고가 모두 고갈되어, 종친(宗親)들은 한 달 동안 받은 얼음이 겨우 1~2덩이 뿐이었으니, 이는 제조(提調)와 해사(該司)가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때문에 조종들의 규모를 고친다면, 이것이 비록 세미한 일이라는 하지만 사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동(東)·서(西)의 빙고를 더 걱정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한 군사를 더 배정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빙고에 더 저장하는 것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계(議啓)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는 지나치게 더워 얼음이 쉽사리 녹아버리기 때문에 동(東)·서(西)의 빙고가 모두 부족하게 된 것이다.”</p> <p>하매, 정만중이 아뢰기를,</p>	<p>萬鍾曰：“藏冰軍士及冰丁，長廣厚薄，自上加定，軍士役處甚多。兵曹常患不足，而冰丁厚薄，亦祖宗朝所定。若節用，則雖不加定，而有餘也。雖加尺量，若官員虛疎費用，則亦何益矣？今年則內冰庫及東、西冰庫，皆爲虛竭。宗親等一朔頒冰，僅受一二丁而已。此在提調與該司，不能檢舉之故也。若以此，改祖宗規模而加定，則此雖細微之事，於事體何如？”上曰：“非謂東、西冰庫加定也，亦非加定軍士也。內冰庫加藏事，使該曹議啓也。今年過燠，冰易消融，故東、西冰庫皆不足也。”萬鍾曰：“臣所啓，非謂東、西冰庫也。內冰庫加藏，亦不可也。該司虛疎，故有不足之弊也。且祖宗朝，宗親、宰相頒冰有制，量用而藏，故冰無不足之弊。今年雖云過燠，如此之燠，古豈無之？宗親監令及宰相、大臣，皆限六月一朔頒冰，</p>

	<p>“신이 아뢰는 말은 동(東)·서(西)의 빙고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빙고에 더 저장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것인데, 해사(該司)가 허술했기 때문에 부족한 폐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조종조에는 종친과 재상에게 내리는 얼음이 제한이 있고 쓸데를 헤아려 저장했기 때문에 얼음이 모자라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비록 지나치게 덥다고 하지만 이런 더위가 어찌 전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종친·감령(監令) 및 재상·대신에게 모두 6월 한 달에 한해서 얼음을 내림은 자못 등급과 경중의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옛적에도 재상들에게는 얼음덩이를 더 준 것인데, 올해는 얼음덩이가 부족하여 비록 더 주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p> <p>하였다.</p>	<p>殊無等級輕重之差，故古者宰相，則加賜冰丁也。今年冰丁不足，雖欲加給，亦不可得矣。”</p>
<p>중종 62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8월 14일 (계축) 2번째기사</p>	<p>또 얼음 저장에 관한 일은, 척수와 중량을 더 작정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동(東)·서(西)의 빙고(氷庫)에 얼음을 더 저장하려 한 것도 아니다. 내빙고(內氷庫)의 얼음덩이는 진풍정(進豐呈) 때 쓸 것 및 장원서(掌苑署)·사옹원(司饗院)의 얼음 사용하는 물건에 날마다 써야 하며 매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조로 하여금 더 저장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량을 저장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수량 2~3백 장보다 더 저장하게 하되, 더 저장할 수량은 해조의 공사(公事)를 기다려보아 하려 한 것이다. 빙고를 더 짓는 일은, 2~3백 장 들어갈 데를 헤아려보아 한 칸이나 혹은 반 칸을 더 지으려 한 것이다. 얼음은 저장해도 이득이 없는 것인데 과다하게 하여 어디다 쓰겠는가? 이런 뜻으로 해조에 물어보라.”</p>	<p>且藏冰之事，非爲尺量加定，亦非加藏冰于東、西氷庫也。以內氷庫冰丁，進豐呈所用及掌苑署、司饗院照冰之物，日用甚關，故欲使該曹加藏也。然非謂多數藏之，欲加於舊數二三百張，而其所加藏之數，則欲待該曹公事，而爲之也。其氷庫加造之事，欲量二三百張所入之地，而加造一間，或半間也。儲冰無益，過多，何用？此意問于該曹。”</p>
<p>중종 62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8월 14일 (계축) 4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p> <p>“오는 9월 9일에 대전(大殿)께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푸시게 되니, 중궁전(中宮殿)은 여자 노인들을 마련하여 술과 고기를 반사(頒賜)하게 하라.”</p>	<p>○傳曰：“來九月初九日，大殿則有養老宴也，中宮殿，則其女老人等磨鍊，頒賜酒肉。”</p>
<p>중종 62권, 23년</p>	<p>전교하였다.</p>	<p>○傳曰：“司饗院所捧永慶殿前排沙器，</p>

<p>(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8월 17일 (병진) 6번째기사</p>	<p>“사용원(司饗院)에서 받은 영경전(永慶殿) 앞에 배설(排設)한 사기(沙器)를 형조로 하여금 맞는지 대보도록 한 것은 각 색장(色掌)의 상언(上言)을 옳게 여겨서가 아니라, 간사한 거짓을 적발하고자 한 것이다. 사용원이 당초에 이미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들여놓았다가 여섯 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바꾸어 들이기로 이보(移報)하였기에 새겨진 표(標)를 고찰하려 한 것이다. 형조가 본사(本司)의 뜻으로 대어보려고 하였다면, 사용원 관원로서는 오히려 즉각 제조(提調)에게 고하고 창고(倉庫)를 열고서 내보냈어야 한다. 이번에 전지(傳旨)에 따라 대어보려고 하자 제조의 창고에 가져다 간수했다고만 대답을 하고 즉시 내보내지 않아 지극히 불가하였으니 사용원 관원을 추고하라.”</p>	<p>使刑曹憑準者，非以各色掌之，上言爲是也。亦欲發其奸僞也。司饗院當初，既無事納之，而及至六朔，始以換納移報，故欲考刻標也。設使刑曹，以其司中之意，欲爲憑準，爲司饗院官員者，猶當卽告于提調，開庫出送。今乃以傳旨，欲爲憑準，以入藏提調之庫答之，而不卽出送，至爲不可。司饗院官員，其推之。”</p>
<p>중종 62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8월 18일 (정사) 8번째기사 문소전·연은전·영경전 앞에 배설하는 사기를 모두 부수어서 파묻게 하다</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제향소(祭享所)에서 쓰는 사기(沙器)가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영경전(永慶殿) 등에는 모두 구리 그릇을 사용하고, 그 앞에 배설(排設)하는 사기는 사용원으로 하여금 들이게 하는 것이다. 신어(神御) 앞에서 쓰는 그릇은 어기(御器)로 사용해도 안 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쓰게 해서도 안 되는데, 창고 안에 흩어놓으면 하인들이 딴 데다 쓸 폐단이 없지 않아 설만(褻慢)하게 되지 않겠는가? 마땅히 한갓진 곳에 묻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만일 완전한 대로 묻으면 몰래 파낼 폐단이 없지 않으니 모두 부수어서 묻게 하라.”</p>	<p>○傳于政院曰：“祭享所所用沙器，易致破碎，故文昭、延恩、永慶等殿，皆用銅器，而其前排沙器，令納于司饗院矣。神御前所用之器，不可爲御器，亦不可用之於多人。散置庫內，則下人不無他用之弊，得無褻慢乎？宜當(理) [埋] 之屏處，然若完具，而埋之，則亦有偷出之弊，皆命破碎而埋之。”</p>
<p>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9월 16일 (을유) 1번째기사</p>	<p>시학(視學)14706) 하고, 성균관(成均館)에 쌀 1백 석(石)을 내렸다.</p>	<p>○乙酉/視學。賜米百石于成均館。</p>
<p>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傳于政院曰：“儒生供饋於明倫堂庭內，只賜一爵事，前日傳教矣。今宜</p>

<p>(嘉靖) 7년 9월 16일 (을유) 2번째기사</p>	<p>“명륜당(明倫堂) 뜰 안에서 유생(儒生)을 공궤(供饋)하되 술 한 잔만을 내리라고 전일 전교하였으나 이번에는 강서(講書)14707) 한 뒤에 하련대(下輦臺)에 전좌(殿坐)하여 의막(依幕)의 전면을 걷고서 유생을 반수(泮水)14708) 안쪽에 벌여 앉히고 석 잔을 내리도록 하라.”</p>	<p>講書後，殿坐于下輦臺，輟依幕前面，使儒生列坐泮水內，賜三爵。”</p>
<p>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9월 24일 (계사) 7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집에서 술을 공궤(供饋)하고자 하니 시위하는 종재(宗宰)·시종(侍從)·대간(臺諫)과 이문(里門) 안에 입시(入侍)한 장사(將士)를 다 공궤해야 하겠다.”</p>	<p>○傳于政院曰：“此家欲饋酒，侍衛宗宰、侍從、臺諫，及里門內入侍將士，皆當饋之。”</p>
<p>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9월 24일 (계사) 9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거동한 집에는 베·쌀 따위 물건을 으레 내려주는 것이니, 이제 중미(中米)·조미(糙米)14758) 모두 각각 25석, 황두(黃豆) 20석, 백목면(白木綿)과 백정포(白正布)14759) 각각 2동(同), 관목면(官木綿)과 관정포(官正布) 각각 2동을 효혜 공주의 집에 보내라.”</p>	<p>○傳曰：“行幸之家，則布米等物，例爲賜給，今以中糙米並，各二十五石，黃豆二十石，白木綿、白正布各二同、官木綿、官正布各二同，送于孝惠公主家。”</p>
<p>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9월 25일 (갑오) 2번째기사 거동 때 음식 장만에 대해 경기 관찰사 김극개가 건의하다</p>	<p>경기 관찰사 김극개(金克愷)가 아뢰기를, “병술년(14764)의 전교에는 개성부(開城府)에 유주(留駐)할 때의 여러 가지 물선은 황해도에 분정하였으나, 주정(晝停)할 때에는 다 봉진(封進)하지 말게 하였는데 올해에는 지응사(支應使)가 대주정(大晝停)·소주정 때에 다 봉진하라고 행이하였습니다. 그 첫날 공상할 물건은 사옹원(司饗院)이 가져가나, 그 뒤로 소주정에서 공상할 물건을 즉시 바쳐서 쓰자면 형세가 미칠 수 없을 것이니, 미리 바쳐서 소주정에서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그 진배(進排)하는 물건을 성중계서 지나치게 많아서 백성에게 폐해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므로 그와 같이 그만두게 하셨으니, 이제는 대주정·소주정에서</p>	<p>○京畿觀察使金克愷啓曰：“丙戌年傳教，則開城府留駐時，各種物膳，分定于黃海道，而於晝停之時，皆勿令封進。今年則支應使，以大小晝停，皆爲封進事行移也。其初日供上之物，則司饗院持去，其後小晝停供上之物，若欲即時捧納而用之，則勢必不及。預納而用於小晝停何如?”傳曰：“其進排之物，成宗以爲過多，而有弊於民，故如此停之也。今則大小晝停進排之物，當觀勢爲之也。水刺所進，雖不過二三味，下人之磨鍊，當如此也。因其時節之所有而酌定，勿使有弊于民</p>

	진배할 물건은 형세를 보아서 해야 한다. 수라에 바치는 것은 두세 가지 음식에 지나지 않더라도 아랫사람이 마련하는 것은 이와 같아야 하니 그 시절에 있는 것에 따라 작성하여 백성에게 폐해가 없도록 하라.”	也。”
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10월 3일 (신축) 4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이 일약 동당(一鶚東堂)14809) 을 보내와 방물(方物)을 바쳤다.	○日本國遣一鶚東堂，來獻方物。
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10월 12일 (경술) 15번째기사	전교하였다. “선전관 남귀년(南龜年)을 보내어 술 1백 호(壺)를 가져가 상군(廂軍)에 속한 부장(部將)들에게 주어 결진(結陣)한 군사에게 고루 먹이게 하라.”	○遣宣傳兵南龜持，持酒百壺，給于屬部將等，均飲結陣軍士可也。
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10월 13일 (신해) 4번째기사	전교하였다. “상군(廂軍)에 속한 군사들에게 어제와 같이 이미 술과 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였거니와, 선전관을 시켜 위장(衛將)·부장(部將)·통장(統將)들에게 가져다 주어 고루 먹이게 하라.”	○傳曰：“廂屬軍士等，依昨日已令，分賜酒肉，使宣傳官持給于衛部將、統將等，使之均飲。”
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10월 15일 (계축) 1번째기사	왕세자가 시강원 설서 허항(許沆)을 보내어 문안하고 물선(物膳)을 바쳤다.	○癸丑/王世子遣侍講院說書許沆問安，進物膳。
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10월 15일 (계축) 4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친제하려 한 지 20여 년인데 이제 비로소 거행할 수 있었고, 또 음우(陰雨)를 염려하였는데 이제 마침 청명(淸明)하여 제사하는 일을 잘 거행하였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성종조에서는 헌관과 집사(執事)에게 다 자급(資級)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태묘(太廟)에서 친제하고 자급을 준 지 오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줄 수 없으니, 헌관과 집사에게 각각 아마(兒馬)14865) 1필(匹)을 주라.	○傳于政院曰：“欲爲親祭二十餘年矣。今始得行，而又慮陰雨。今適淸明，克行祀事，予心卽喜。在成宗朝，獻官、執事，皆爲給資，而今則親祭，太廟給資未久，今不可復爲。其給獻官、執事兒馬各一匹。且人君所經之地，百姓之弊甚多。驪州等六邑，其

	또 임금이 지난 곳은 백성의 폐해가 매우 많으니, 여주 등 여섯 고을은 전조(田租)의 반을 감면하라. 또 여주와 이천 등 고을의 향교에 각각 쌀 30석(石)을 내리고 용인의 향교에 쌀 20석을 내리도록 하라.”	減田租之半。且驪州、利川等官鄉校，各賜米三十石，龍仁鄉校，米二十石可也。”
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10월 16일(갑인) 7번째기사 술을 종친부 등에게 내리다	전교하였다. “주정(晝停)에서 진상하는 술 20호(壺)를 종친부·의정부·홍문관에 나누어 내리라. 사은하지 말라.” 【지응사(支應使)가 대주정에서 으레 물膳(物膳)을 봉진(封進)한다.】	○傳曰：“晝停進上酒二十壺，分賜于宗親府、議政府、弘文館，其勿謝恩。”【支應使於大晝停，例以物膳封進。】
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10월 16일(갑인) 12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노인들이 이미 선운(宣醞)14876) 을 마셨으니, 여주에서 한 대로 일시에 일어나 춤추고 나가게 하라.” 하였다. 노인들이 일어나 춤추고 나가니 시위하던 종재(宗宰)도 차례로 나갔다	○傳曰：“老人等已飲宣醞，依驪州之事，使其一時起舞而出。”老人等起舞而出，侍衛宗宰，亦以次出。
중종 63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10월 25일(계해) 2번째기사	영릉에 거동할 때에 호종(扈從)한 종재(宗宰)와 유도(留都)한 장사(將士)들을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공궤하였는데, 대비전(大妃殿)·대전(大殿)·세자궁(世子宮)에서 각각 술을 내렸다.	○供饋英陵行幸時，扈從宗宰及留都將士于仁政殿庭。大妃殿、大殿、世子宮，各宣醞。
중종 64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윤10월 5일(계유) 4번째기사	전교하였다. “인납(引納)14956) 하는 일은 물의가 그르게 여긴 지 오랬거니와, 당안(唐雁)14957) 은 인납하지 말고 다른 물건으로 대응하라.”	○傳曰：“引納之事，物論非之久矣。唐雁其勿引納，以他物代用。”
중종 64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11월 19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비전(大妃殿)에 춘등(春等)·추등(秋等)으로 진상할 잡물(雜物)이 없다고 내수사(內需司)가 말하니, 곧 비망기(備忘記)로 호조(戶曹)에서 감결(甘結)을 바	○傳于政院曰：“大妃殿春秋等進上雜物，內需司以爲乏盡。宜卽備忘記，捧甘結于戶曹可也。此有前例故言之。

<p>일(정사) 4번째기사 내수사의 물품 부족에 관해 조치하다</p>	<p>치도록 하라. 이것은 전례가 있으므로 말한다. 【비망기에 “조미(糙米)15099) 2백 석(石), 관목면(官木綿)·정포(正布)15100) 각각 5백 필(匹), 태(太)15101) 70석을 내수사로 수송하라.” 하였다.】 또 예전에는 내수사의 노비(奴婢)의 신공(身貢)15102) 을 각 고을의 수령(守令)이 부지런히 받아들여서 내수사로 수송하고, 해유(解由) 때에도 그것을 빙고(憑考)해서 하였으므로 내수사의 저축이 다 없어지게 되지는 않았는데, 근래에는 수령이 전혀 받아들여 수송하지 않으므로 내수사의 저축이 없어 봄·가을의 진상을 할 수 없으니 매우 옳지 않다. 이제부터는 각 고을의 수령의 해유 때에 내수사의 노비의 신공을 받아들인 문기(文記)를 아울러 더욱 밝혀서 빙고할 것을 호조에 말하라.”</p>	<p>【備忘記，造米二百石，官木綿、正布各五百匹，太七十石，輸送于內需司云。】且古者，內需司奴婢身貢，各官守令勤勤捧納，輸送于內需司。於解由之時，亦憑考而爲之，故內需司所儲，不至乏盡。近來，守令專不捧納而輸送，故內需司無所儲，不能爲春秋進上，甚爲不可。自今以後，各官守令解由時，內需司奴婢身貢捧納文記，並爲申明憑考事，言于戶曹。”</p>
<p>중종 64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11월 23 일(신유)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요즈음 보면 날씨가 몹시 추운데, 동빙고(東氷庫)·서빙고(西氷庫)에서 일하는 군인(軍人)들에게 술과 어물(魚物)을 으레 제급(題給)하기는 하나, 전일 듣건대 먹을 수 없는 물건을 제급한다 하니 이것은 매우 옳지 않다. 먹을 만한 물건으로 다시 제급할 것을 해조(該曹)에 말하라. 또 이처럼 날씨가 추울 때에는 입직(入直)하는 군사들에게 으레 빈 섬[石]을 주는 법이다. 이제라도 제급하라.”</p>	<p>○辛酉/傳于政院曰：“近見日候甚爲寒酷，東西氷庫役使軍人處，酒及魚物，雖例爲題給，然前日聞之，以不可食之物題給云。此至爲不可，其以可食之物，更爲題給事，言于該曹。且如此日寒時，則入直軍士等處，例給空石，今亦題給。”</p>
<p>중종 64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11월 23 일(신유) 3번째기사</p>	<p>황감(黃柑)15106) 과 백자주(柏子酒)15107) 를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시강원(侍講院)·독서당(讀書堂)에 나누어 내리고 사은(謝恩)을 그만두라고 명하고, 이어서 어제(御製)의 부(賦)15108) ·송(頌)15109) ·배율(排律)15110) ·율시(律詩) 모두 10수(首)를 내리고 내일까지 각각 지어 바치게 하였다.</p>	<p>○分賜黃柑及柏子酒于承政院、弘文館、藝文館、侍講院、讀書堂，命除謝恩。仍下御題賦、頌、排律、律詩并十首，限明日，令各製進。</p>
<p>중종 64권, 23년 (1528 무자 / 명 가정 (嘉靖) 7년) 11월 23</p>	<p>정청(政廳)15111) 에 별선온(別宣醞)15112) 을 내리고 전교하기를, “오늘의 추위는 훨씬 혹심하니 한껏 취하는 것을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대객 내관(對客內官)이 명을 받고 술 여덟 순배를 굳이 권하되 한 방</p>	<p>○賜別宣醞于政廳，而傳曰：“今日之寒倍酷，莫辭盡醉對客。”內官承命強勸酒八巡，使無一滴之出。凡入政廳之</p>

<p>일(신유) 4번째기사</p>	<p>울도 남기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모든 정청에 들어갔던 인원이 다 한껏 취하여 파하였다.</p>	<p>員，皆極醉而罷。</p>
<p>중종 65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3월 27일 (임술) 4번째기사</p>	<p>종재(宗宰) 1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의빈부(儀賓府)·육조(六曹)의 당상(堂上)과 단(壇) 쌓는 일을 감독한 선공감(繕工監)의 제조(提調)·낭관(郎官)과 선잠제(先蠶祭)15314 의 헌관(獻官)·집사(執事)와 예조(禮曹)의 낭관과 궐내(闕內)에 입직(入直)한 관원들에게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술과 음악을 내렸다.</p>	<p>○宗宰一品以上，議政府、儀賓府、六曹堂上、監築壇繕工、監提調郎官，先蠶祭獻官、執事、禮曹郎官闕內入直官員等，賜酒樂于仁政殿庭。</p>
<p>중종 65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5월 4일 (무술)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내가 본디 이 앓는 증세가 있었다. 그 동안 근치되지는 않았어도 그다지 아프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전보다 배나 아프고, 혹시라도 건드리면 통증을 더욱 견디지 못하겠으니,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의 친제(親祭)를 대신 거행하게 하라. 또 가뭄이 매우 심하므로 피전(避殿)·감膳(減膳)·철악(撤樂)하는 일을 벌써부터 하고 싶었으나 친제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었다. 이제는 두 전(殿)의 친제를 이미 대신 거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날씨를 보건대 또한 비가 올 기미가 없으니, 피전·감膳·철악하는 일로 시급히 승전(承傳)을 받들라.”</p>	<p>○戊戌/傳于政院曰：“予素有齒痛證。頃間雖未殄絕，不爲甚痛，至今日痛倍於前。若或搖動，則疼痛尤不能堪。文昭、延恩殿親祭，其攝行。且旱氣太甚，避殿、減膳、撤樂之事，已欲爲之，以有親祭之事，故迨未能爲之。兩殿親祭今既攝行，且觀日候，亦無雨徵。避殿、減膳、撤樂事，速捧承傳。”</p>
<p>중종 65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5월 7일 (신축) 3번째기사 친신할 과일을 미리 준비하도록 장원서에 명하다</p>	<p>예조의 공사(公事)를 승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p> <p>“지난 겨울이 추워 장원서(掌苑署) 소속인 서울 안의 과일 나무가 동상(凍傷)을 입어 전연 열매가 맺지 않았다. 그래서 종묘(宗廟) 및 각전(各殿)에 친신(薦新)15398 하는 과일을 공상(供上)할 계획이 없다. 장원서는 전례대로 경기·충청·강원·황해 등 도에 봉진(封進)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친신하는 물건은 곧 조상을 위하는 것이어서 전부 줄일 수가 없으니, 다시 마련하여 폐단 없이 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의 과일 나무가 이런 형편인데 외방(外方)의 것인들 유독 동상을 입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를 참작해서 요량해야 한다.”</p>	<p>○下禮曹公事于政院曰：“掌苑署以去冬互寒，署屬京中果木凍傷，全不結實。宗廟及各殿薦新果物，供進無計。依前例令京畿、忠清、江原、黃海等道封進云。薦新之物，乃爲上之事，不可全減。更爲磨鍊，使之無弊封進可也。但京中果木凍傷如此，外方獨不爲凍傷乎? 此可酌量而爲之。”</p>

<p>중종 65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 (嘉靖) 8년) 5월 25일 (기미) 1번째기사</p>	<p>어득장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모든 일에 방언(方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사(各司)에서 쓰는 횡간(橫看)에도 방언이 많습니다. 또 전에 횡간이 없을 때에는 용도(用度)의 다소를 한꺼번에 짐작하여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극증(李克增)이 횡간을 만든 뒤부터는 각사의 진상(進上) 및 공궤(供饋)가 지극히 외쇄(猥瑣)하고 비루하게 되었습니다. 이극증이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일 때에 신이 본 일인데, 쌀 1되로 수반(水飯)을 만들어 유생(儒生) 세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수반이 너무 적자, 술을 창문 북쪽에 걸어놓게 하고 직접 보이는 데서 밥을 지어 공궤(供饋)케 했었습니다. 그때 논자(論者)들이 모두 ‘국가 일에는 곡진하다 하겠으나, 사체에 있어서는 재상답지 않은 듯하다.’ 했습니다. 그가 만든 횡간도 이처럼 외쇄한 것이니, 불행히 중국에서 알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나라를 비루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방에서 공물(貢物)을 상납(上納)할 때의 폐단도 많습니다. 봉상시(奉常寺)가 받는 청밀(淸蜜) 같은 것은, 각 고을에서 많이 실어온 것을 감찰 및 담당 관원이 즉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청밀을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퇴짜를 놓습니다. 오늘 퇴짜맞은 물건도 다음날 감찰 및 본사(本司)의 관원에게 달려가 청탁하면 받아들입니다. 세력이 없는 사람은 청밀이 아무리 좋아도 으레 퇴짜를 놓아 다시 마련하게 하니, 폐단이 매우 큼니다.”</p>	<p>得江曰：“我國百般之事，皆用方言。如各司行用橫看，方言無數。且前者無橫看之時，其用度多少，一時斟酌而爲之。自李克增作橫看之後，各司進上及供饋等事，至爲猥鎖鄙陋。李克增爲成均館大司成時，臣及見之，以米一升作水飯，饋儒生三人，而水飯過少，乃令置鼎于窓北，親見炊飯而供之。其時論者，皆以爲於國事，曲盡則有之。然其事體，則似不似宰相，而其所作橫看，猥鎖至此。幸流入中國，則中國必以我國爲鄙陋矣。 非徒此事，外方貢物上納時，其弊亦多。如奉常寺所納淸蜜，各官數多載來，而監察及色官員，不卽捧納。一樣淸蜜，或納、或退，今時見退之物，後日奔競於監察及本司官員請托，則無事而納。其無勢力，則淸蜜雖好，例爲退送，許令改備，貽弊無窮。”</p>
<p>중종 65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 (嘉靖) 8년) 5월 25일 (기미) 2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아침 경연에서 대사간(大司諫)이 ‘공물(貢物)을 봉납(捧納)할 때 아전들이, 뇌물을 받은 것이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록 물건이 좋더라도 점점</p>	<p>○傳于政院曰：“朝經筵，大司諫以爲貢物捧納時，吏典等受賂則納，不然則雖好物點退，使外吏稽留生弊，爲官員者若明辨，則不爲如此也。不然，委</p>

	<p>할 적에 퇴짜를 놓는다. 이 때문에 외방(外方)의 이속(吏屬)들을 체류(滯留)시키는 폐단이 있게 된다.’ 했다. 관원들이 분명하게 따진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랫사람들에게 말기므로 이런 폐단이 생긴 것이니, 지극히 그르다. 이런 일들을 지금 사헌부가 바야흐로 추찰(推察)한다고는 한다. 그러나 봉상시(奉常寺)에서 받는 청밀(淸蜜)을 바치지 못한 데가 40여 고을이라는데, 어찌 40여 고을의 것이 모두 좋지 못한 것이었겠는가? 아랫사람들이 뇌물을 받느라 그렇게 된 것이다. 봉상시의 행수(行首) 관원 및 담당 관원을 추고하라.</p> <p>그리고 고자(庫子)들이 방납(防納)하는 짓을, 외방(外方)의 폐단을 부리는 원악 향리(元惡鄉吏)15435)의 예에 의해 일벌 백계(一罰百戒)시키도록 하라. 이런 뜻으로 사헌부에 말해 주라. 또, 감찰(監察)이 자상하고 밝다면, 각사(各司)가 청대(淸臺)15436) 할 때 받을 만한 것은 받고 퇴짜놓 만한 것은 퇴짜 놓게 한다면, 이런 폐단을 없앨 수 있다. 그런데 요사이 감찰이 자상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다고 한다. 20여 명의 감찰을 일시에 모두 체직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개만(箇滿)15437) 한 사람 및 추고(推考)받는 관원을, 문무신(文武臣)의 남행(南行)15438) 중에서 점차로 가려서 차임(差任)할 것으로, 내일 정사(政事)할 때에 말해 주라.”</p>	<p>諸下人，以致此弊，至爲非矣。如此事，憲府時方推察云。然奉常寺所納淸蜜，則未納者，四十餘官云。豈四十餘官，盡爲不好乎？下人受賂，以致此也。奉常寺行首官員及色官員，其令推之。且庫子等防納之事，亦依外方作弊元惡鄉吏例，痛治一人，以懲其餘可也。其以此意，言于司憲府。且監察詳明，則各司請臺時，可納者納之，可退者退之，可以無此弊也。近者監察不詳明，故有此弊云。二十餘員，雖不可一時盡遞，然箇滿及被推之員，文、武臣南行中，漸次擇差事，明日爲政時言之。”</p>
<p>중종 65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 (嘉靖) 8년) 6월 3일 (병인) 3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요사이 한재(旱災) 때문에 피전(避殿)하고 있다. 그러나 진위사가 만 리 밖에서 돌아왔고 또한 큰 일을 성취했으니, 각별히 술을 내리고 아울러 서장관(書狀官)도 대접하라.</p>	<p>○傳曰：“近以旱災避殿矣。然陳慰使，自萬里回還，又成大事。其各別賜酒，并饋書狀官。</p>
<p>중종 65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 (嘉靖) 8년) 7월 1일 (갑오)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금년은 한재(旱災)가 더욱 심하여 구황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 호조(戶曹)가 공사로 올린 것을 이미 재가하였다. 전에는 한재가 금년만 못하였어도 줄인</p>	<p>傳于政院曰：“今年旱災彌甚，救荒諸事，則戶曹曾爲公事，已啓下矣。但前此雖不如今年，旱災亦有減省之事。如點心等事，各司以前年稍稔，續續啓</p>

	<p>일이 있었다. 점심(點心)과 같은 등등의 일에 대해 각사(各司)가 지난해 조금 풍년이 들었다는 것으로 예대로 회복해야 된다고 계속 계청(啓請)하였으므로 회복시켰다. 지금은 이미 가을이 되었는데도 가을 추수할 기대를 기필할 수가 없다. 백공(百工)은 모르겠지만 각사(各司)가 계속 복구하기를 계청하여 복구한 것은 호조(戶曹)에서 살펴, 전대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뜻을 호조에 말하라.”</p>	<p>請，皆復其舊。 今年秋節已入， 西成難必。 如百工則已(矣) [矣]， 其各司續續啓請， 復舊之事， 戶曹其當察之， 依前例減省何如？ 此意言于戶曹。”</p>
<p>중종 65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7월 12일 (을사) 1번째기사 호조의 공사대로 각사의 묵은 물품을 처분하게 하다</p>	<p>호조의 공사 【각사(各司)에 오래 묵은 잡물(雜物)을 화매(和賣)하는 일이다.】를 정원(政院)에 내리면서 전교하였다.</p> <p>“여타 오래 묵은 잡물은 공사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그러나 포해(脯醢) 및 주어(酒魚) 등등의 물품은 공사와 관계 없으니, 호조에서 짐작하여 장빙군(藏氷軍) 및 각처의 영선군(營繕軍)에게 분급(分給)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화매(和賣)하는 일은 으레 평시서(平市署)에 위임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의로 기꺼이 화매에 응한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수자를 계산하여 화매한다면 그 폐단이 작지 않을 것이다. 자원(自願)에 따라 화매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저 공무역(公貿易)을 함에 있어 그 폐단이 작지 않다고 한다. 아울러 호조에 말하라.”</p>	<p>○乙巳/下戶曹公事 【各司久陳雜物和賣事。】于政院曰： “他餘久陳之物， 則依公事爲之可也， 但脯醢及酒魚等物， 不爲關係戶曹， 自當斟酌， 分給于藏氷軍及各處營繕軍何如？ 和賣之事， 例委平市署， 而人樂爲之， 則可矣， 計其人數而和賣， 則其弊不小， 從自願爲之何如？ 大抵公貿易之事， 其弊不費云。 并言于戶曹可也。”</p>
<p>중종 65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7월 13일 (병오) 3번째기사 각사의 묵은 물품을 영선군·장빙군 등에 분급하여 주도록 하다</p>	<p>호조가 아뢰기를,</p> <p>“각사(各司)의 오래 묵은 잡물(雜物) 가운데 포해와 어주는 장빙군과 영선군에게 나누어 주라는 일에 대해 전례를 고찰하여 본 바, 입직(入直)한 군사와 모든 공해(公廩)의 영선군과 역군(役軍)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例)에 따라 분급해도 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p> <p>하니, 전교하였다.</p> <p>“이 일은 역지로 전례를 따르고 싶지는 않다. 이런 물품은 의당 수고로움의 다소를 헤아려 분급해야 하는 것으로, 입직하는 군사와 역군은 차이가 있으니</p>	<p>○戶曹啓曰： “各司久陳雜物， 脯醢魚酒， 只饋藏氷軍， 營繕軍事， 考之前例， 則凡入直軍士及公廩， 一應營繕役軍， 皆分饋矣。 當依此例而爲之乎？ 取稟。” 傳曰： “此事非欲強依前例也。 雖如此之物， 當計其勞逸分給。 其入直軍士， 與役軍有異， 且不可遍給。 公廩時方營繕軍及秋成後營繕軍， 與藏氷軍磨鍊分給， 其餘則依該曹公事， 和</p>

	<p>똑같이 분급해서는 안된다. 공해의 현재 영선군(營繕軍) 및 추수한 뒤에 입번하는 영선군과 장빙군에게 분급하도록 문서를 만들라. 그 나머지는 해조(該曹)의 공사에 따라 화매(和賣)하도록 하라.”</p>	<p>賣可也。”</p>
<p>중종 65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7월 14일 (정미) 5번째기사 겨울의 한파로 복숭아가 결실을 맺지 못하며 그 봉진을 중단하게 하다</p>	<p>경기 관찰사의 서장(書狀)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서장【서장은 다음과 같다. “지난 겨울에는 추위가 너무 심하여 도내(道內) 각 고을의 과원(果園)에 과일나무가 모두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숭아나무가 더욱 극심한 동상을 입어서 열매가 열 수 없는 정도입니다. 유월도(六月桃)의 진상(進上)을 첫번째는 봉진(封進)하였지만 두번째는 봉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을 예사(例事)로 계하(啓下)하면, 해조(該曹)가 반드시 진상(進上)을 꺾하게 될 것을 중난하게 여겨 전처럼 3차에 걸쳐 봉진하게 하기 위해 다시 이문(移文)한다면, 틀림없이 백성들이 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해조에 말하고 이 뒤로는 다시 봉진하지 말게 하라.”</p>	<p>○下京畿觀察使書狀于政院曰：“此書狀，【書狀曰：“去冬寒甚，道內各官果園果木，皆爲凍傷，桃木尤甚凍損，不得結實。六月桃進上初度，則封進，二度則未得封進云。”】若以例事啓下，則該曹必以闕進上爲難，責令依舊准三度封進，而更爲行移，則弊及於民必矣。其以此意，言于該曹，此後更勿封進。”</p>
<p>중종 65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7월 16일 (기유) 2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위에서는 정전(正殿)으로 돌아오셨지만 주금(酒禁)은 아직 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우도 병사 송훈(宋勳)과 강원도 감사 이환(李玆) 등의 사연(賜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재변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주금 역시 풀 수가 없다. 북경(北京)에 사는 사신이라면 모르겠지만, 감사와 병사에게는 사연하지 말라.”</p>	<p>○禮曹啓曰：“自上雖復正殿，酒禁則時未罷。慶尙右道兵使宋勳及江原道監司李玆等賜宴，何以爲之？”傳曰：“災變未絕，酒禁亦不罷。若赴京使臣則已矣，監司、兵使則其勿賜宴。”</p>
<p>중종 65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7월 26일 (기미) 1번째기사 호조 판서 신공제·참판 손주가 과일 봉진</p>	<p>호조 판서 신공제(申公濟)와 참판 손주(孫澍)가 아뢰기를, “장원서(掌苑署)의 첩정(牒呈)을 보건대 ‘공안(貢案)에 기록되어 있는 배[梨]가 1만 5천 개이다. 이 가운데 1만 개는 각 고을에서 진봉(進封)하는 것이고 5천 개는 본서(本署) 과원(果園)에 열린 것을 진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웠던 탓으로 과일나무가 전부 얼어서 열매가</p>	<p>○己未/戶曹判書申公濟，參判孫澍啓曰：“見掌苑署牒呈，貢案付生梨一萬五千箇內，一萬箇則各官封進，五千箇則以本署果園結實封進，而今年則去冬沍寒，果木盡數凍傷，不得結實。請於各官，五千箇加數分定云。臣等計</p>

<p>의 어려움을 고하다</p>	<p>열리지 않았으니, 각 고을에 5천 개를 더 분정(分定)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지난 겨울 너무 추웠던 탓으로 과일나무가 얼어버린 것은 경외(京外)가 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분정한 1만 개는 봉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각 고을에 더 분정한다면, 금년엔 각도의 실농(失農)이 더욱 극심하여 구황(救荒)이 바야흐로 급한 때이어서 민폐(民弊)가 있을까 우려됩니다.”</p> <p>하니, 전교하였다.</p> <p>“전에도 이런 물품을 각 고을에 분정하였다가 폐단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연(經筵)에서 말한 바 있다. 지난해의 추위는 근고에 없던 것으로 과일나무가 얼어죽은 것이 중외가 다를 게 없으리라. 아뢴 의견이 지당하다. 이것으로 공사(公事)를 만들라.”</p>	<p>之, 去冬沍寒, 果木凍傷, 京外無異, 元定一萬箇, 尙恐艱難封進, 今又加定, 則今年各道失農尤甚, 救荒方急之際, 思有民弊。” 傳曰: “前此如此之物, 分定各官有弊事, 自上知之, 故已言于經筵也。 去年沍寒, 近古所無, 果木凍死, 京外何異? 啓意至當。 以此爲公事可也。”</p>
<p>중종 66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9월 9일 (신축) 1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 허평(許砬)이 졸(卒)하였다. 전교하였다.</p> <p>“지금 허평이 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지극히 놀랍다. 이 사람은 변방의 실정을 잘 아는 인물로서 조정의 촉망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즉시 전례를 상고하여 특별히 부의(賻儀)하도록 하라. 그리고 평상시라면 조회를 정지하고 철시(輟市)해야 하겠지만 오늘은 중양일(重陽日)15517) 이라서 주물(晝物)15518) 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일찍이 찬성(贊成)을 지냈고 이제 죽었으니, 주물을 하지 말고 소선(素膳)으로 공상(供上)하도록 하라.”</p>	<p>○辛丑/平安道觀察使許砬卒。 傳曰: “今聞許砬身死云, 至爲驚愕。 此人知邊事, 朝廷所推望之人也。 今至於斯, 痛悼不已。 其卽考前例, 別致賻可也。 且如常時, 則自當停朝市矣, 今日重陽日也。 有晝物, 然此人曾經贊成, 而今者死焉。 其勿爲晝物, 而用素膳供上可也。”</p>
<p>중종 66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10월 14일(병자) 1번째기사</p>	<p>사간 이기가 아뢰기를,</p> <p>“신이 전에 보덕(輔德)이 되었을 때도 논박받고 체직되었었는데, 지금 사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관(言官)은 중한 자리이고 또 여론(輿論)이 있으니, 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연은전(延恩殿) 동향 대제(冬享大祭) 때에 백자(栢子)의 빛깔이 나빠 봉상시 참봉(奉常寺參奉)이 추고(推考)받고 있습니다.</p>	<p>○丙子/司諫李嶮啓曰: “臣前爲輔德, 被駁見遞。 今爲司諫, 言官重地。 尤有物論, 不可在職。 況以延恩殿冬享大祭, 栢子色惡, 奉常寺參奉被推,</p>

<p>중종 66권,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 (嘉靖) 8년) 11월 5일 (정유) 2번째기사 헌부에서 신참자를 괴롭히는 폐단, 금육을 사용하는 일 등등으로 사직을 청하다</p>	<p>헌부가 아뢰기를, “대신이 아뢰 감찰·사관(史官)·오부의 참봉과 모든 군사(軍士)의 유가 신참자를 괴롭히는 폐단, 각능에서 금육(禁肉)15580) 을 사용하는 일, 금란리(禁亂吏)가 세력 있는 자는 그대로 두고 세력 없는 자만 잡아와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는 일 등은, 모두 신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문이니, 결코 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폐단은 법사가 알아서 하면 된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두 번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p>	<p>○憲府啓曰：“大臣所啓， 監察、史官、五部參奉、一應軍士之類， 侵虐新來之弊， 各陵， 用禁肉之事及禁亂吏， 有勢則不執， 無勢則執之， 貽弊窮民， 皆臣等失職所致。 決不可在職， 請遞臣等之職。” 傳曰：“如此時弊， 法司但知之而已。 勿辭。” 再辭， 不允。</p>
<p>중종 67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1월 1일 (임진) 1번째기사</p>	<p>대비전(大妃殿)에 진풍정(進豐呈)15601) 을 올렸다. 그리고 중미(中米)15602) 70석(石)과 관정포(官正布)·관목면(官木綿) 각 2백 50필(疋)과 수주(水紬)·정주(鼎紬) 각 1백 필을 대비전에 들이게 하였다.</p>	<p>○壬辰朔/進豐呈于大妃殿。 命進中米七十石， 官正布、官木綿各二百五十匹， 水紬鼎紬各一百匹于大妃殿。</p>
<p>중종 67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1월 10일 (신축) 3번째기사</p>	<p>예조(禮曹)가 아뢰기를, “경기는 흉황(凶荒)이 더욱 극심합니다. 채소(菜蔬)의 진상(進上)을 줄여주고 싶어도 본조(本曹)에서 마음대로 줄이기가 곤란하여 이렇게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경기의 금년 흉황은 상하가 다 알고 있다. 채소라도 줄여주어야만 백성들이 소복될 수 있겠다. 예조와 사옹원(司饗院)은 계획을 세워서 줄이도록 하라.”</p>	<p>○禮曹啓曰：“京畿凶歉人尤甚。 蔬菜進上， 欲令裁減， 而自曹擅減爲難， 今乃啓稟。” 傳曰：“今年畿甸凶歉， 上下非不知也。 雖蔬菜裁減， 然後民庶有蘇復之理。 禮曹與司饗院， 磨鍊蠲減可也。”</p>
<p>중종 67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1월 13일 (갑진) 1번째기사</p>	<p>정언(正言) 채무역(蔡無戮)은 아뢰기를, “신은 내섬시 직장(內贍寺直長)으로 있습니다만, 이곳은 바로 미면(米麪)을 담당한 각사(各司)입니다. 외방에서 세공(歲貢)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종조 때와 다름이 없는데도 유밀(油蜜)·미면(米麪)·잡물(雜物)이 텅텅 비었습니다. 밀가루·참깨·유밀 등을 간혹 야간에 대내(大內)로 들이라고 명하시는데, 이럴 때</p>	<p>正言蔡無戮曰：“臣爲內贍寺直長， 此乃米麪各司。 其外貢所納， 與祖宗朝無異， 而油、蜜、米麪雜物， 今則蕭然一空， 如眞末、荏子、油、蜜等， 或於夜間， 命入于內， 則不得不進排， 而白、清蜜等物， 用之無餘， 移報該曹， 請爲</p>

	<p>는 진상(進上)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밀과 청밀 등의 물품은 남김 없이 다 써버렸습니다. 해조(該曹)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내년 세공을 앞당겨 받아들이자고 요청하였지만, 호조에서도 민폐를 생각하고 요청한 대로 해주지 않으므로 마련해 낼 길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다 썼다는 내용의 단자(單子)를 여러번 정원(政院)에 올렸었습니다. 내섬시는 큰 사(司)입니다. 미면과 잡물은 조종조에서도 쓰지 않은 것이 아니건만 고갈되는 폐단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외공(外貢)은 예와 다름없는데도 지금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은 의혹스럽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다른 때와 달라서 백성들이 굶고 배고픔에 쫓겨 부모와 처자까지도 부양할 수가 없어서 유기(遺棄)시킨 채 먹을 것을 찾아 산골짜기를 헤매는 실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이들을 어떻게 진구(賑救)하겠습니까. 금년의 봄과 여름 동안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실로 고통스러울 것인데 경기 지방이 더욱 극심합니다. 모든 경비와 대내에서 쓰는 물건을 특별히 줄이게 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그러계의 흉년은 금년보다 심하지 않았는데도 각사(各司)가 지탱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금년이야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더욱 유념하셔야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유밀·청밀·황밀 등의 물품은 별로 쓸 데가 없다. 담당 내관(內官)이 다 써버린 것이 사실이라면, 미리 단자(單子)를 계하(啓下)해야 되는 것이다. 나 또한 그 일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예사로 계하했던 것이다. 조종조 적의 일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거론한 바 세금을 앞당겨 받아들이는 일은, 과연 폐단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근래 해사에서 계청하지 않았을 것이다.</p>	<p>引納。戶曹亦計民弊，或不依所報，則出處無由，不得已以盡用事，呈單子于政院。如是者數矣。右寺，乃大司也。米麩雜物，在祖宗朝，亦非不用，而無虛竭之弊。外貢所納，與古無異，而今至於此，臣竊惑焉。況今年非如他時，民迫於饑寒，雖父母妻子，尙不能保，至於遺棄，而就食於山谷間。不知國家，何以能賑救乎？今春夏間，民之生活，誠爲艱苦，而畿甸尤甚。凡經費及內用之物，別令裁省，使不爲民病。去去年，雖不若今年之凶歉，而(各可) [各司] 猶且難支，而況今年乎？尤所當留念也。”上曰：“如油清、黃蜜等物，別無用處，果所掌內官，若盡用，則預以單子啓下，而予亦不能詳知其事，以例啓下矣。祖宗朝事，未能詳知也，所言引納之事，果不能無弊，故近來該司不啓請矣。</p>
<p>중종 67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p>	<p>그리고 사기(沙器)를 구워내는 백점토(白粘土)15722) 를 전자에는 사현(沙峴)이나 충청도에서 가져다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양근(楊根)에서 파다 쓰고</p>	<p>且沙器燔造白粘土，前者或於沙峴，或於忠清道取用。今則又於楊根地掘取，</p>

<p>(嘉靖) 9년) 2월 5일 (을축) 1번째기사</p>	<p>있다. 그런데 사옹원(司饗院)에서는 해마다 당령 수군(當領水軍)을 달라고 계청하는가 하면 병조에서는 그때마다 군인(軍人)이 없다고 아뢰다. 예전에는 사기장(沙器匠)이 실제로 많았으나 지금은 반이나 도망하였다. 당령 수군을 많이 배정할 수는 없으니 50여 명을 항식(恒式)으로 삼아 정급(定給)할 것도 아울러 의논하라.”</p>	<p>而司饗院年年，以當領水軍啓請，則兵曹每以無軍人啓之。古者沙器匠果多，而今則爲半逃亡，當領水軍。雖不能多定，以五十餘名，爲恒式定給事，并議之。”</p>
<p>중종 67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2월 30일 (경인) 4번째기사</p>	<p>사신은 논한다. 정월서부터 이날 <2월 30일> 에 이르기까지 대궐 안에서 사용한 물건 수량을 따져보니, 기름[油] 7석(石), 밀가루[眞末] 10석, 꿀[淸蜜] 10석, 숨[縣子] 2백 50근, 색실[色絲] 1백 50근, 설탕[唐粉]과 침향(沈香) 각각 1백근, 황밀(黃蜜) 2백근, 단목(舟木) 4백근, 여러가지 과실(果實) 24석이며, 다른 물건도 많아서 다 기록하기 어렵다. 《논어(論語)》에 ‘절제 있게 쓰고 백성을 사랑한다.’ 하였고, 《역경(易經)》에 ‘재물을 낭비하지 않으며 백성을 해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대개 사치롭게 쓰면 반드시 재물을 낭비하게 되고 재물을 낭비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롭게 하게 된다.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도(道)는 절제(節制)있게 쓰는 것보다 먼저할 것이 없다. 임금은 그 부가 일국(一國)을 소유하였으니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옷은 진실로 만족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구황(救荒)할 방법이 없는 이 시점에서는 감히 이러한 이름없는 경비(經費)를 내어 창고와 내탕(內帑)을 텅비게 만들고 물력(物力)이 이미 다 없어져서 내세(來歲)의 공물까지 앞당겨 징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되자 유사(有司)가 경비가 말랐다고 아뢰어도 대답하지 않고 쟁신(爭臣)이 공납(貢納)을 앞당기는 폐단을 의논해도 그것을 살피지 않았으니, 먼저 절제 있게 쓰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나 되겠는가.</p>	<p>【史臣曰：“自正月至于日計，內用油七石，眞末十石，淸蜜十石，縣子二百五十斤，色絲一百五十斤，唐粉、沈香各一百斤，黃蜜一百斤，丹木四百斤，各色果實二十四石，他物亦多，有難悉記。《論語》曰：‘節用而愛民。’《易》曰：‘不傷財，不害民。’蓋侈用，則必至於傷財，傷財則必至於害民，故愛民之道，莫先於節用。人主富有一國，肥甘輕煖，固無不足，而當救荒無策之時，敢爲此無名之費，以致庫帑傾匱，物力已屈，至於引徵來歲之貢，民不堪苦。有司啓經費之竭，而不之答，爭臣論引納之弊，而不之省。不先節用，而求欲愛民得乎?”】</p>
<p>중종 68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4월 3일 (임술) 1번째기사</p>	<p>시강원이 아뢰기를, “지난번, 세자의 시선 절목(視膳節目)을 상고하여 회계(回啓)하도록 하교하였는데, 시강원에 등록(膳錄)이 없어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선(視膳)할</p>	<p>○壬戌/侍講院啓曰：“前者世子視膳節目，相考回啓事下教，而侍講院無膳錄，不可考矣。今視膳，雖自內而往來，然御廚則在外，且使外人，知世子</p>

	<p>때에 안에서만 왕래하고 있으나, 어주(御廚)가 밖에 있으니, 외인들로 하여금 세자가 왕래하면서 시선하는 뜻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중(司中)은 요속(僚屬)이므로 물러가 있기가 미안하니 세자가 시선할 때에 문 밖에서 시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세자의 거동은 경솔히 할 수 없으니 부장(部將)이 군사를 거느리되 서연을 베풀 때와 같이 일산(日繖) 하나와 부채[扇] 둘을 문 밖에서 잡게 하고, 부장의 군사 및 익위사(翊衛司)의 입번 관원(入番官員)은 모두 그 아래 죽 늘어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또 지난번 본원(本院)을 혁파(革罷)할 때에 사중(司中)의 문서를 홍문관에 옮겨두었는데, 다시 본사(本司)로 옮겨와야겠습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 “세자가 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날마다 한다면 반드시 서연을 자주 폐(廢)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낮·저녁 이 세 때 가운데 아무 때나 수시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였다. “세자가 시선하는 일은 이미 안에서 하도록 하였거니와, 어주(御廚)가 밖에 있을지라도 지금 계품(啓稟)한 위의거동(威儀舉動)은 해서는 안 된다. 대전(大殿)이 대비전(大妃殿)에 시선할 때도 내관(內官)만을 거느리는데 더구나 세자이겠는가. 이같은 세자의 거동은 대전보다 더 거창한 듯하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부(師傅)에게 다시 의논해서 아뢰어라. 아무 때나 수시로 시선하도록 하는 일과 문서를 상고하여 본사(本司)로 다시 옮겨오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p>	<p>往來視膳之意可也，而司中亦以僚屬退處未安。 當於視膳門外，侍立何如？ 且世子舉動，不可輕率。 部將領軍士，以書筵時例，繖一扇二，亦於門外執之，而部將軍士及翊衛司入番官員，皆於其下，列立何如？ 且前者本院革罷時，司中文書，移置弘文館。 請還移于本司。 ” 又啓曰：“世子視膳，雖職分事，豈不爲美？ 但不可日日爲之。 若日日爲之，則書筵必多廢矣。 或朝或晝及夕三時中，不拘時爲之何如？” 傳曰：“世子視膳，已令自內爲之。 御廚雖似在外，今所啓稟威儀舉動，不須爲也。 如大殿視膳于大妃殿，只率內官而已。 況世子乎？ 世子如此舉動，則似若愈於大殿，不可爲也。 然更議于師傅而啓之。 其視膳不拘時之意及文書相考還司之事，依啓。 ”</p>
<p>중종 68권, 25년</p>	<p>시강원이 사부의 뜻으로 아뢰기를,</p>	<p>○侍講院以師傅意啓曰： “世子舉動，</p>

<p>(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4월 4일 (계해) 2번째기사</p>	<p>“세자의 거동은 경솔히 할 수 없으므로, 세자가 시선(視膳)할 때 요속(僚屬)이 일산과 부채를 잡고 시위하는 질차와 군사들도 문밖에서 시립하는 일을 일체 서연(書筵)의 예(例)에 따라 할 뜻으로 당초에 의논하여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교가 이러하시니 그 계품한 일에 대해서 상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였다.</p> <p>“세자가 시선할 때에 시강원과 익위사(翊衛司)의 관원이 시립하는 일과 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잡인을 금지시키는 일 등은 의당 아뢴 대로 해야 하나, 일산과 부채를 잡히는 등의 일은 해서는 안 된다.”</p>	<p>不可輕率，故其初所議，則世子視膳時，僚屬侍衛繖扇節次及軍士，亦於門外列立之事，一依書筵例爲之之意啓之。今所教如是，則其所啓稟之事，上裁何如？傳曰：“世子視膳時，侍講院、翊衛司官員侍立及部將率軍士禁雜人等事，當依啓爲之，其如繖扇等事，不可爲也。”</p>
<p>중종 68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4월 13일 (임신) 3번째기사</p>	<p>정원이 아뢰기를,</p> <p>“경기 관내의 기민(飢民)들에게 경창미(京倉米) 지급할 일을 호조에 물으니 ‘금년에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쌀 3만여 석을 벌써 나누어 주었다. 종전에는 3만 석을 넘은 때가 없었으나 쌀을 받아 가려는 백성들이 현부에만 정장(呈狀)한 것이 아니라 본조(本曹)15830) 에도 수없이 정장하였다. 그런데 더 지급하려면 쌀이 없기 때문에 동적전(東藉田)15831) 에서 나온 오래 묵은 곡식을 지급했더니 모두가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만일 참으로 굶주린다면 어느 겨울에 좋고 나쁜 것을 가리겠는가. 이는 반드시 부자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경비도 많이 든다. 부득이 더 지급하려면 동적전과 각사(各司)의 오래 묵은 잡곡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합니다.”</p> <p>하니, 전교하였다.</p>	<p>○政院啓曰：“畿甸飢民，加給京倉米事，問于戶曹則曰：‘今年凶荒太甚，故米三萬餘石，已爲分給矣。在前無過三萬石之時，願受之民，非但呈狀于憲府，亦多呈于本曹。若欲加給則無米，故以東藉田久陳之穀，給之則皆不願受。若誠飢餓，則何暇擇之乎？此必富人欲爲興販，而如此爲之耳。經費亦大矣。不得已加給，則以東藉田及各司久陳雜穀，磨鍊分給何如？’”傳曰：“今年凶荒尤甚，依所啓加給可也。”</p>

	“올해는 기근이 너무 심하니 아된 대로 더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중종 68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4월 18일 (정축) 2번째기사	수가(隨駕)하는 제장(諸將) 및 근시(近侍)들을 근정전(勤政殿) 뜰에서 공궤(供饋)하였다.	○供饋隨駕諸將及近侍于勤政殿庭。
중종 68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5월 17일 (병오) 4번째기사 내수사의 단자에 적힌 물품을 내수사로 보내 도록 호조에 하문하다	내수사(內需司)의 단자(單子)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대비전(大妃殿)에 연례(年例)로 진상(進上)하는 것이 모자랄까 염려되기 때문 에 내수사가 이와 같이 계품하였으니, 그 단자에 적힌 물품을 내수사에 보내 주라고 호조에 말하라.” 【단자에 적힌 내용은, 정포(正布)와 목면(木綿)이 각 각 15동(同), 미(米)와 태(太)가 각각 1백 석(石), 찹쌀[粘米]·메밀[木麥]·녹두 [菘豆]·참깨[眞荳]·소록두(小菘豆)·진맥(眞麥)이 각각 20석, 들기름[法油]이 30두(斗)이다.】	○下內需司單子于政院曰：“大妃殿年 例進上，恐其乏絕，故內需司如是啓 稟。其以單子付物，送于內需司事， 言于戶曹。”【正布木綿各十五同，米 太各一百石，粘米、木麥米、菘豆、眞 荳、小菘豆、眞麥、各二十石，法油三 十斗。】
중종 68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6월 12일 (경오) 1번째기사	간원은 아뢰기를, “이수함(李秀咸)이 지난번 봉상시 봉사(奉常寺奉事)로 있을 때 그가 관장한 것이 바로 제사(祭祀)에 쓰는 장(醬)인데, 그가 이 장을 자기집에서만 썼을 뿐 아니라 사중(司中)의 계집종에게 자기집 길쌈을 시키고는 그 품삯으로 이 장 을 주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추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이수함은 제사에 쓰는 장을 자기집 길쌈해 준 댓가로 주었으니, 이는 장죄 (贓罪)를 범한 것이다. 금부로 하여금 추국하도록 하라. 김안로의 일은 윤희 하지 않는다.”	諫院啓：“李秀咸前爲奉常寺奉事，其 所掌，乃祭用之醬。非徒用之於自家， 司中婢子，使爲其家紡績，以醬償價， 至爲駭愕。請推科罪。”傳曰：“李秀 咸，以祭用之醬，給爲紡績之價，此犯 贓罪也。其令禁府推鞫。金安老事， 不允。”
중종 69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8월 17일 (갑술) 4번째기사	자전이 삼공에 전교하였다. “내가 본디 병약한 사람인데 요사이는 질병이 많아 국가를 수고롭게 하고 시 끄럽게 함이 너무도 컸고, 근래에는 자주 이피(移避)하느라 조정(朝廷)에 폐단	○慈殿傳于三公曰：“予本以病人，近 多疾病，致勞擾於國家甚大。近又數 爲移避，貽弊朝廷亦多。主上常時不 能進素膳，予死之後，觀勢勸膳爲當。

<p>자전이 왕 세자의 행소(行素)를 만류하고, 잘 보필하도록 삼공에게 전교하다</p>	<p>을 끼친 것이 또한 많다. 주상(主上)이 평소에도 소선(素膳)을 들지 못하니 내가 죽은 뒤에도 사세를 살펴보고 반찬을 권하는 것이 합당하고, 제사 때에 당해서도 만일 평안하지 못할 적이 있으며 억지로 행소(行素)15942) 해서는 안 되니 대신들이 권면하여 만류해야 한다. 세자도 역시 나이가 어리니 어찌 오래도록 행소할 수 있겠는가? 또한 권해서 중지시켜야 한다. 대신들은 국가의 일에 있어 모름지기 더욱 힘을 다해 보필해야 한다.”</p>	<p>至於祭祀，如有不平之時，不可強行，大臣勉止之。世子亦年少，豈能久行素？亦可勸之。大臣於國家之事，須加戮力輔贊。”</p>
<p>중종 69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嘉靖) 9년) 9월 2일 (무자) 2번째기사</p>	<p>또 대비께서 여러달을 편치 못하시어 내가 오래 시병(侍病)하다가 이제는 대고를 당했으므로, 대신들이 내가 근심하고 시름하다 병이 날까 두려워한 때문에 국가의 큰 계책을 염려하여 아뢰는 것인 듯하나, 난들 어찌 국가의 큰 계책을 염려하지 않겠는가? 성복하기 전에는 죽을 끊었지만 성복한 다음에는 식사를 들고 기운도 정상이다.</p>	<p>且大妃連月未寧，予久爲侍病，今至大故，大臣等恐予憂愁生病，故慮其大計而啓之矣。予亦豈不慮大計乎？成服前則輟粥，成服後則進食，氣且平常矣。</p>
<p>중종 69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嘉靖) 9년) 9월 5일 (신묘) 1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빈전에서 물린 과일과 떡을 산릉(山陵)으로 보내어 군사들을 먹이게 하라.”</p>	<p>○辛卯/傳曰：“以殯殿退果餅，送山陵，供饋軍人。”</p>
<p>중종 69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嘉靖) 9년) 9월 21일 (정미) 3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능(陵)을 지키는 관원에게 사급(賜給)하는 것은 능이 중하기 때문이니 쌀과 콩 섬을 전례에 의해 사급해야 한다. 다만 서리(書吏)들과 같은 것에게 사급하는 것을 어찌 8석이나 되게 하겠는가. 단지 4석만 사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세쇄한 듯하지만 또한 비용을 더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p>	<p>○傳于政院曰：“守侍陵官賜給事，以其陵爲重也。米太石，依前例可給矣，但如書吏等賜給，何至於八石耶？只給四石可也。此似瑣屑，而亦省費之一端，故言之。”</p>
<p>중종 69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嘉靖) 9년) 9월 27일 (계축) 3번째기사</p>	<p>풍수학 도제조(風水學都提調) 정광필(鄭光弼)과 총호사(摠護使) 심정(沈貞) 및 예조 판서 유여림(兪汝霖)과 도승지 황사우(黃士祐) 등이 산릉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오늘 금정(金井)을 열기 시작하여 절반쯤 파들어갔는데 흙이 두텁고 정결하</p>	<p>○風水學都提調鄭光弼、摠護使沈貞及禮曹判書兪汝霖、都承旨黃士祐等，自山陵來啓曰：“今日爲始，開金井，至於半鑿，土厚而精潔，且無水濕之氣，甚爲燥剛，無可疑也。” 傳曰：</p>

	<p>며 또한 물기가 젖어들지도 않아 매우 조강(燥剛)했으니 의심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이어 술을 내렸다.</p>	<p>“知道。” 仍賜酒</p>
<p>중종 69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10월 5일 (신유) 1번째기사 삼공 등이 대행 대비 의 유교(遺敎)를 가지 고 입계하다</p>	<p>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심정, 우의정 이행, 병조 판서 김극성, 좌참찬 조원기, 우참찬 김당, 호조 판서 신공제, 이조 판서 홍언필, 예조 판서 유여림, 형조 판서 박호 등이 대행 대비(大行大妃)의 유교(遺敎)를 가지고 입계하기를, “이 유교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하께서 상(喪)을 치르는 일에 지나치게 상심하실까 걱정하신 뜻입니다. 신들이 궁금(宮禁)의 일을 모르기는 하나, 어찌 전하께서 지나치게 거상하시는 일을 못들었겠습니까? 온 나라 안의 신민이 누구나 놀라 동요하여 다들 안심하지 못합니다. 전하께서는 모름지기 유교의 뜻을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대계(大計)에 유념하소서.” 하니, 비망기(備忘記)16030) 를 내려서 답하기를, “삼가 대행 대비께서 유교하신 뜻을 보니, 망극한 애통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 분부는 대계를 위하여 지나치게 소식(素食)을 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기는 하나 자식의 행실로는 효도보다 큰 것이 없고 상보다 중한 것이 없다. 삼년상(三年喪)은 천하가 다같이 행하는 상례이니, 나에게 병이 없으면 삼년 동안의 소식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아직 발인(發靱)과 졸곡(卒哭) 전이니, 감히 소식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광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위에서 전교하신 뜻은 지극하십니다. 이는 만세에서 통행할 일이며 신들도</p>	<p>○辛酉/領議政鄭光弼、左議政沈貞、右議政李荇、兵曹判書金克誠、左參贊趙元紀、右參贊金璫、戶曹判書申公濟、吏曹判書洪彥弼、禮曹判書俞汝霖、刑曹判書朴壕等，以大行大妃遺敎，入啓曰：“此遺敎，無他意也，殿下行喪之事，恐爲過傷之意。臣等雖未知宮禁之事，豈不聞殿下過爲之事？一國臣民，莫不驚動，而皆未安心。伏願殿下，須遵遺敎之意，毋爲大過，留念大計。” 下備忘記答曰： 伏觀大行大妃遺敎之意，不勝哀痛之至。此敎雖以大計，勿欲過爲行素，然人子之行，孝莫大焉。喪莫重焉。三年之喪，天下之通喪，予若無恙，三年之素，猶可爲之。況未發引、卒哭之前，敢有止素之理乎？ 光弼等再啓曰：“自上傳敎之意至矣，此萬世通行之事也。臣等不勝哀愴之至，然人君以大計爲重也。司饗院進素膳太久，臣等尤爲驚慮而啓之。” 傳曰：“遺敎之意，雖以予常時不能行素，</p>

	<p>지극한 슬픔을 견디지 못하나 임금은 대계를 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사옹원이 소선(素膳)을 너무 오래 바쳤으므로, 신들이 더욱이 놀랍고 염려되어 아웁니다.”</p> <p>하니, 전교하였다.</p> <p>“유교의 뜻은 내가 소식할 수 없으리라 여겨 그러신 것이겠으나, 큰일은 당한 뒤로는 소식을 하여도 병이 없다. 조종조의 일로 보면, 지금 어찌 소식을 그만두자고 의논할 수 있겠는가. 소식하더라도 먹을 만한 것은 먹을 수 있다. 경들은 말하지 말라.”</p>	<p>故如此矣，自遭大事以後，雖行素，亦無恙也。以祖宗朝事見之，今何議止素乎？雖素食，何物不可食乎？卿等勿言。”</p>
<p>중종 69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11월 11일(정유) 3번째기사</p>	<p>오시(午時). 상이 효경전(孝敬殿)에 나아가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고, 신시(申時)에는 창덕궁의 재실(齋室)로 돌아왔다.</p>	<p>○午時，上詣孝敬殿，行夕上食，申時，還于昌德宮齋室。</p>
<p>중종 69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11월 13일(기해) 2번째기사 삼공 등이 빨리 개소(開素)하도록 아뢰다</p>	<p>의정부·육조·중추부·충훈부의 당상들이 문안하고, 삼공 등이 이어서 아뢰기를,</p> <p>“신들이 빨리 아뢰려 했으나 재계·제사·배릉(拜陵)으로 인해 아뢰지 못했습니다. 선왕(先王)의 정제(定制)에 지나치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위에서 소식(素食)을 행하시는 것이 졸곡(卒哭)을 지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듣지 못한 일이거니와 더구나 대비(大妃)의 유교(遺教)가 정녕하시니, 빨리 개소(開素)16092) 하셔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조정은 대계(大計)를 위하여 여러번 말하였으나 소식하는 것이 나에게서 편안하므로 기년(期年)을 넘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선왕의 정제가 이미 그러하</p>	<p>○議政府、六曹、中樞府、忠勳府堂上等問安。三公等仍啓曰：“臣等曾欲速啓，而近因齋祭及拜陵，未即啓之。先王定制，未可過越。上之行素，至過卒哭，古所未聞也。況大妃遺教丁寧，當速開素。”傳曰：“朝廷雖以大計屢言之，行素，於予乃安，故欲過期年爾。然先王定制，既如此，而大妃遺教亦存，故經百日，欲開素也。”三公等更議啓曰：“臣等固知上之誠孝無盡也。然先王定制，不可踰越，而卒哭後行素，古今所無。何不念大妃遺</p>

	<p>고 대비의 유교도 있으므로 1백 일을 지내고 개소하려 한다.”</p> <p>하였다. 삼공 등이 다시 의논하여 아뢰기를,</p> <p>“신들은 위에서 성효가 다하지 않으심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선왕의 정제를 넘을 수 없고 졸곡 뒤에 소식하는 것은 고금에 없는 일인데, 어찌하여 대비께서 유교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교하여 개소하게 하고자 하신 뜻은 졸곡 전에 개소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성체(聖體)를 생각하고 종사(宗社)의 대계를 위한 것이 지극하셨습니다. 위에서 유교를 따르신다면, 빨리 개소하시는 것이 다행하겠습니다. 세자 이하가 소식을 그만두어야 하는 뜻을 어제 예조가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아뢰었을지라도, 위에서 먼저 행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으로서 누가 감히 예문대로 따르겠습니까? 위로는 유교를 따르고 아래로는 세자를 생각하소서. 이것은 신들의 뜻일 뿐 아니라 모든 신하들의 뜻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p> <p>하니, 전교하였다.</p> <p>“성종 때에 있었던 정희 왕후의 국상(國喪) 때에는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의 일은 그때와 다른 듯하다. 그러나 대신이 이토록 여러번 아뢰는데, 성종께서는 어느 때에 육선(肉膳)을 드셨는지 모르겠다. 《정원일기(政院日記)》를 상고하여 아뢰라.”</p>	<p>教之意耶? 遺教, 欲爲開素之意, 在於卒哭前, 則其念聖體、爲宗社大計至矣。若自上, 從遺教, 則速開素幸甚。自世子以下開素之意, 昨日禮曹, 雖依禮文啓之, 而自上不爲先行, 則在下之人, 誰敢從禮文乎? 伏願上從遺教, 下念世子。此非獨臣等之意, 乃大小臣僚之意, 故敢啓。” 傳曰: “成宗朝貞熹王后國喪時, 何以爲之? 今日之事, 似異於其時, 然大臣屢啓至此。不知成宗何時進肉膳乎? 考《政院日記》以啓。”</p>
<p>중종 69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嘉靖) 9년) 11월 13일(기해) 4번째기사</p>	<p>정원이 정희 왕후의 국상 때에 소식을 그만둔 일을 상고하여 입계하니, 【승하한 뒤 석달이 되어 성종이 마침 편찮았으므로, 인수 왕비(仁粹王妃)와 인혜 왕비(仁惠王妃)의 분부로 말미암아 애써 따라서 개소하였으나, 겨우 열흘이 되어 다시 소식하다가 삼우(三虞) 때가 되어서야 다시 고깃국을 들었다.】 전</p>	<p>○政院考貞熹王后國喪時開素事入啓, 【升遐後至三月, 成宗適未寧, 因仁粹王妃、仁惠王妃之教, 勉從開素, 纔及十日復, 已至三虞, 更進內汁。】傳</p>

<p>육식을 다시 시작한다고 전교하다</p>	<p>교하였다.</p> <p>“육선은 내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마는, 조정이 대계에 의거 여러번 아되고 선왕의 정제도 그러하므로 이제 힘써 따르려 한다. 사옹원과 예조에 알리라.”</p>	<p>曰：“肉膳於予心，甚爲未安。但朝廷以大計屢啓，而先王定制亦如是，故今欲勉從。其令司饗院及禮曹知之。”</p>
<p>중종 69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11월 15일(신축) 2번째기사 성종의 전례에 따라 고기를 권하여 개소(開素)하다</p>	<p>종재(宗宰) 종2품 이상을 명초(命招)하여 근정전(勤政殿)의 뜰에서 성종 때의 전례에 따라 고기를 권하여 개소(開素)하게 하였는데, 승지와 사관(史官) 등도 참여하였으며 또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선운주(宣醞酒)16094) 를 내리게 하였다. 삼공 등이 아뢰기를,</p> <p>“듣기로는, 중궁전(中宮殿)에서는 이제까지도 개소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위에서 이미 개소하셨으면 아랫사람은 절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궁전에서 개소하지 않으시는 것은 고례(古例)에 어긋나고 사체에도 어그러지니, 빨리 권하소서.”</p> <p>하니, 전교하였다.</p> <p>“각 전(殿)의 내외가 개소하는 일은 이미 일렀으나 내가 여차(廬次)에 있어 중궁이 개소하였는지 모르므로 중궁에 물었더니 ‘대전(大殿)에서 개소하였다 하여 마음 편히 개소할 수는 없다.’ 하므로, 오늘 다시 말하여 개소하게 하였으니, 경들은 빨리 개소하라.”</p>	<p>○命招宗宰從二品以上于勤政殿庭，依成宗朝例，勸肉開素，承旨史官等，亦與焉。又命內官，賜宣醞。三公等啓曰：“詮聞中宮殿，至今不開素。自上若已開素，則在下之人，自當從之。今中宮殿不開素，有異於古例，亦乖於事體。請速勸之。”傳曰：“各殿內外開素事，已諭之。但予在廬次，未知中宮開素與否，今問于中宮，則乃曰：‘不可以大殿已開素，而安然爲之也。’云，故今日更言之，使開素也。卿等其速開素。”</p>
<p>중종 69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11월 22일(무신) 3번째기사</p>	<p>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다.</p>	<p>○上詣孝敬殿，行夕上食。</p>
<p>중종 70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p>	<p>상이 효경전(孝敬殿)에서 몸소 저녁 상식을 올렸다.</p>	<p>○上親行孝敬殿夕上食。</p>

(嘉靖) 9년 12월 7일 (계해) 2번째기사		
중종 70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12월 19 일(을해)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孝敬殿)에서 몸소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다.	○乙亥/上親行夕上食于孝敬殿。
중종 70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12월 27 일(계미)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몸소 아침 상식을 올렸다.	○癸未/上親行朝上食于孝敬殿。
중종 70권, 25년 (1530 경인 / 명 가정 (嘉靖) 9년) 12월 29 일(을유) 2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몸소 저녁 상식(上食)을 올리고 창덕궁의 재실(齋室)에서 재숙(齋宿)하였다.	○上詣孝敬殿, 親行夕上食, 齋宿于昌德宮齋室。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1월 1일 (병술)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서 몸소 정조(正朝)의 삭제(朔祭)를 지내고 그대로 재실에 머물렀다가 아침 상식을 올렸다.	○丙戌朔/上親行正朝朔祭于孝敬殿, 仍留齋室, 行朝上食。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1월 10 일(을미)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서 몸소 춘향 대제(春享大祭)를 지내고 이어 아침 상식을 올렸다.	○乙未/上親行春享大祭于孝敬殿, 仍行朝上食。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1월 20 일(을사)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다.	○乙巳/上詣孝敬殿, 行夕上食。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3월 3일 (무자)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孝敬殿)에 나아가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다.	○戊子/上詣孝敬殿, 行夕上食。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3월 9일 (갑오)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孝敬殿)에서 한식제(寒食祭)를 몸소 지내고, 아침 상식(上食)을 올렸다.	○甲午/上親行寒食祭於孝敬殿, 仍行朝上食。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3월 26 일(신해) 2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가 주다례를 친행하고 저녁 상식을 올린 뒤 환궁하였다.	○上詣孝敬殿, 親行晝茶禮及夕上食, 還宮。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4월 3일 (정사)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孝敬殿)에서 몸소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내고, 이어 아침 상식(上食)을 올렸다.	○丁巳/上親行夏享大祭于孝敬殿, 仍行朝上食。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4월 7일 (신유)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저녁 상식을 올렸다.	○辛酉/上詣孝敬殿, 行夕上食。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4월 13 일(정묘)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孝敬殿)에 나아가 몸소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다.	○丁卯/上詣孝敬殿, 親行夕上食。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몸소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다. 이어 창덕궁(昌德宮)에서 재숙(齋宿)하였다	○丁亥/上詣孝敬殿, 親行夕上食, 仍齋宿于昌德宮。

(嘉靖) 10년) 5월 4일 (정해) 1번째기사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5월 5일 (무자) 1번째기사	축시(丑時)16234) 에 상이 평상복[常服]을 벗고, 상복(喪服)으로 갈아입은 다음 효경전에서 몸소 단오 대제(端午大祭)를 지냈다. 이어 아침 상식을 올렸다.	○戊子/丑時， 上釋常服反喪服， 親行端午大祭于孝敬殿， 仍行朝上食。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5월 12일(을미)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몸소 주다례(晝茶禮)를 거행하고 이어 저녁 상식을 올렸다.	○乙未/上詣孝敬殿， 親行晝茶禮， 仍行夕上食。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5월 14일(정유) 2번째기사	피전하고 감선하였다.	○避殿、減膳。
중종 70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5월 15일(무술) 2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피전할 때는 향온주(香醞酒)를 내오지 말라. 종재(宗宰)들에게도 술을 공궤하지 말라.”	○傳于政院曰：“避殿時， 勿進香醞， 宗宰亦勿饋酒。”
중종 71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6월 10일(계해) 2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거행하였다.	○上詣孝敬殿， 行晝茶禮。
중종 71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윤6월 20일(임인) 1번째기사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이행, 우의정 장순손이 아뢰기를, “요즈음 비오는 형세가 이러하니 정전(正殿)으로 돌아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가 흠족히 내렸으니, 대신이 와서 아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요즈	○壬寅/領議政鄭光弼、左議政李荇、右議政張順孫啓曰：“近日雨勢如此， 請復正殿。” 傳曰：“雨澤周足， 以此大臣來啓宜也。 但近者災變疊出， 王

	<p>음 재변이 거듭 일어나 도성 안에서 인륜의 큰 변고가 있기까지 했고 또 경산에서도 큰 변고가 있다고 들었다. 이는 모두 교화가 밝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따라서 정전으로 돌아가는 일을 천천히 하려고 한다.”</p> <p>하였다. 광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p> <p>“임금이, 재변을 당하면 반드시 피전 감선(避殿減膳)하여 경계하고 삼가하는 뜻을 보이는 것은 이 또한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정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피전 감선한 것은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흠족히 왔으니, 인륜의 변고 때문에 오래도록 정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재변이 발생했는데도 피전 감선을 회복하는 것은 내 마음에 편치 못한 일이다. 그러나 대신들이 여러번 아뢰었으니, 아뢴 대로 하여야 하겠다.”</p> <p>하고, 이어 술을 내렸다.</p>	<p>城之內，至有人倫大變。又聞慶山，亦有大變。此皆教化不明而然也。復殿等事，欲徐爲之。”光弼等再啓曰：“人君之遇災也，必避殿、減膳，以示其警懼之意，此亦不得已之事也。若久爲不復，則於下人，亦有所難者矣。當初所以避殿、減膳者，以旱乾故也。今者雨澤既足，不可以人倫之變，久不復也。”傳曰：“遇災而復殿復膳，於予心未安，然大臣屢啓，當依啓。”仍賜酒。</p>
<p>중종 71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7월 13일(갑자) 1번째기사</p>	<p>임금이 효경전에 나아가 저녁 상식을 올렸다.</p>	<p>○甲子/上詣孝敬殿，行夕上食。</p>
<p>중종 71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7월 16일(정묘) 4번째기사</p>	<p>임금이 피전 감선하였다.</p>	<p>○上避正殿、減膳。</p>
<p>중종 71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8월 14일(을미) 1번째기사</p>	<p>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저녁 상식(上食)을 올리고, 이어 창덕궁 재실(齋室)로 나아갔다.</p>	<p>○乙未/上詣孝敬殿，行夕上食，仍詣昌德宮齋室。</p>
<p>중종 71권, 26년</p>	<p>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다.</p>	<p>○甲寅/上詣孝敬殿，行夕上食。</p>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9월 4일 (갑인) 1번째기사		
중종 71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9월 15 일(을축)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올리고, 이어 아침 상식을 올렸다.	○乙丑/上詣孝敬殿行望祭, 仍行朝上食。
중종 71권, 26년 (1531 신묘 / 명 가정 (嘉靖) 10년) 10월 2 일(임오)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孝敬殿)16300) 에 나아가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다.	○壬午/上詣孝敬殿, 行夕上食。
중종 72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1월 7일 (병진) 2번째기사	정원이 좌찬성 김당(金瑄)의 죽음을 아뢰니, 전교하였다. “효경전에서의 춘향 대제(春享大祭)을 처음에는 직접 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찬성 벼슬은 대신에 버금가니 내일부터 정조(停朝)·정시(停市)를 하라. 나 도 소식(素食)16401) 을 할 것이다. 제사를 드리기가 미안하니 섭행(攝行)하 도록 하라. 또 특별히 부의하던 예를 상고하여 아뢰라.”	○政院啓左贊成金瑄卒, 傳曰: “孝敬殿春享大祭, 初欲親行, 贊成之職, 亞於大臣, 自明日爲停朝市, 予亦素食, 而行祭未安, 其攝行也。 且考別致轉例以啓。”
중종 72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1월 26 일(을해) 1번째기사	임금이 효경전(孝敬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거행하고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다.	○乙亥/上詣孝敬殿, 行晝茶禮, 仍行夕上食。
중종 72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2월 11 일(경인)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다.	○庚寅/上詣孝敬殿, 行夕上食。
중종 72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임금이 효경전에 나아가 저녁 상식(上食)을 올리고 곧바로 창덕궁(昌德宮)에 돌아왔는데, 이는 한식제(寒食祭)를 행하려는 때문이었다.	○上詣孝敬殿, 行夕上食, 卽還昌德宮。 將行寒食祭故也。

(嘉靖) 11년) 2월 19일(무술) 2번째기사		
중종 72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3월 5일 (갑인) 1번째기사	대전(大殿)의 탄일(誕日)인데 백관의 하례(賀禮)를 정지하였다. 【국훈(國恤) 때 문이다.】 종제(宗宰)와 시신(侍臣)이 문안하니 술을 내렸다. 궐내의 각사(各司) 및 입직한 제장(諸將)과 군사에게 차등있게 술을 내렸다.	○甲寅/大殿誕日, 停百官賀。【以國恤也。】宗宰及侍臣問安, 賜酒闕內, 各司及入直諸將軍士, 皆宣醢有差。
중종 72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3월 8일 (정사)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별제(別祭)를 지내고, 입번(入番)한 종친(宗親) 및 내관(內官)과 하인(下人)들에게 차등있게 술을 내렸다.	○丁巳/上詣孝敬殿, 行別祭。入番宗親及內官下人等, 賜酒有差。
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4월 7일 (을유)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행하고 이어 아침 상식(上食)을 올렸다.	○乙酉/上詣孝敬殿, 行夏享大祭, 仍行朝上食。
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5월 5일 (임자)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단오제를 지냈는데, 세자가 아헌례를 행했다. 상이 이어 아침 상식을 올렸다.	○壬子/上詣孝敬殿, 行端午祭, 世子行亞獻禮。上, 仍行朝上食。
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5월 19일(병인) 2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저녁 상식을 올렸다.	○上詣孝敬殿, 行夕上食。
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5월 23일(경오) 1번째기사	전교하였다. “피전 감선(避殿減膳)할 때에는 이틀에 향온(香醢) 1병 만을 쓰고, 기타 왕래하는 빈객(賓客)에게 공궤할 술은 진배(進排)하지 말게 하라.”	○庚午/傳曰: “避殿、減膳時, 二日只用香醢一瓶, 他餘往來賓客供饋之酒, 勿令進排。”
중종 73권, 27년	상이 효경전(孝敬殿)에 나아가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다.	○壬申/上詣孝敬殿, 行夕上食。

<p>(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7월 26 일(임신) 1번째기사</p>		
<p>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8월 4일 (기묘) 1번째기사</p>	<p>꿩이 근정전(勤政殿)에 들어오자 전직 군사(殿直軍士) 김광필(金光弼)이 잡아 서 올리니, 술을 하사하였다</p>	<p>○己卯/有雉入勤政殿， 殿直軍士金光弼，獲而獻之，賜酒。</p>
<p>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8월 5일 (경진) 1번째기사</p>	<p>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저녁 상식을 올렸다.</p>	<p>○庚辰/上詣孝敬殿，行夕上食。</p>
<p>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8월 7일 (임오) 1번째기사</p>	<p>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송인수(宋麟壽)가 아뢰기를, “임금이 정사를 청리(聽理)하는 곳에 꿩이 날아와 앉은 것은 큰 재이입니다. 하늘이 재앙을 알림이 매우 간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꿩을 잡은 자에게 도리 어 술을 하사하는 등 전혀 괴이하게 여길 줄을 모르니, 하늘을 공경하여 재앙 을 그치게 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심이 지금처럼 완악한 때가 없었 으니 꿩이 궁전에 날아들어온 것도 사람이 일부러 한 짓인가 의심스럽습니 다.” 하니, 상이 일렀다. “당초에 정원이 꿩 잡은 일을 아뢰어 나의 생각에는 꿩이 후원에도 있으 므로 우연히 전(殿)안으로 들어온 것이라 여겼었다. 그러나 정사를 청리하는 곳에 꿩이 날아와서 앉은 것은 과연 이상하다. 단, 옛일을 모르므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뿐이다.”</p>	<p>○壬午/[御]朝講。 掌令宋麟壽曰： “人君聽政之所，飛雉來止，災異之大 者也。 天之譴告，可謂深切，而執雉 之人，反爲賜酒，恬不知怪，非敬天、 弭災之道也。 人心之頑惡，未有如此 時， 飛雉之入殿， 亦恐人爲之所致 也。” 上曰：“當初，政院以捉雉事啓 之，予意以爲，後苑亦常有之，故偶入 於殿內也。 聽政之所，飛雉來止，果 爲殊常。 但不知古事， 初不以爲異 也。”</p>
<p>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p>	<p>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저녁 상식을 올렸다.</p>	<p>○上詣孝敬殿，行夕上食。</p>

(嘉靖) 11년) 8월 21 일(병신) 2번째기사		
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8월 22 일(정유) 1번째기사	상이 대상제(大祥祭)를 의례(儀禮)와 같이 지내고 이어 아침 상식을 올렸다.	○丁酉/上行大祥祭如儀, 仍行朝上食
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8월 23 일(무술) 2번째기사	새 선릉(宣陵)의 수릉관(守陵官)과 시릉관(侍陵官), 옛 선릉(宣陵)의 입번 종친(入番宗親)과 두 능[兩陵]의 참봉(參奉)·내관(內官) 등은 근정전 뜰에서 공궤하고, 모든 차비인(差備人)은 근정전 남문 밖 뜰에서 공궤하라 명하고 차등있게 상을 주었다.	○命饋新宣陵守陵官、侍陵官, 舊宣陵入番宗親, 兩陵參奉、內官等于勤政殿庭, 饋諸差備人于勤政殿南門外庭, 賞賜有差。
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10월 3 일(정축) 1번째기사	상이 효경전에 나아가 의례(儀禮)대로 담제를 행하였다. 세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상이 이어 아침 상식을 올렸다.	○丁丑/上詣孝敬殿, 行禫祭如儀, 世子行亞獻禮。上, 仍行朝上食。
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10월 10 일(갑신) 2번째기사	상이 주다례를 몸소 거행하였고, 또 저녁 상식을 올렸다.	○上, 親行晝茶禮, 又行夕上食。
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10월 22 일(병신) 2번째기사	장순손 등이 또 아뢰기를, “신들이 지금 들으니 ‘진선(進膳)이 차츰 감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연고가 아니고 오향연교탕(五香連翹湯)은 음식의 맛을 없게 만드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차례씩 복용하소서.	順孫等又啓曰: “臣等今聞進膳漸減云。此非他故, 五香連翹湯, 果使飲食不甘之藥也。請於一日用一服。
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10월 26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 소봉(蘇逢)이 세자의 뜻으로 아뢰기를, “오늘은 곧 연안 부부인(延安府夫人)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비위(妣位)임.】의 기일(忌日)이긴 합니다만 상께서 미령하십니다. 지금은 평상시의 경우와	○侍講院司書蘇逢, 以世子意啓曰: “今月, 乃延安府夫人【貞熹王后之妣.】之忌日也, 而上體未寧, 此, 非

<p>일(경자) 2번째기사 시강원 사서 소봉이 고기 반찬을 먹으라 하니 전교하다</p>	<p>다르니 육선(肉膳)을 잡수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p>	<p>如平常之時，請進肉膳。” 傳曰：“知 道。”</p>
<p>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11월 7 일(신해) 1번째기사</p>	<p>세자가 약방 제조(藥房提調)와 의원에게 술을 내렸다. 이는 노고를 치하는 뜻 을 보인 것이다.</p>	<p>○辛亥/世子賜酒于藥房提調及醫員， 以示喜慰之情。</p>
<p>중종 73권, 27년 (1532 임진 / 명 가정 (嘉靖) 11년) 11월 24 일(무진) 1번째기사</p>	<p>황감(黃柑)을 승정원·홍문관·예문관·시강원에 내리고 사은하지 말라고 명하였 다.</p>	<p>○戊辰/賜黃柑于承政院、弘文館、藝 文館、侍講院，命除謝恩。</p>
<p>중종 73권, 28년 (1533 계사 / 명 가정 (嘉靖) 12년) 2월 6일 (기묘) 2번째기사</p>	<p>…그러나 처음보다는 많이 삭았지만 고름이 아직 그치지 않으니, 삼나무 진액 을 쓰고 십선산도 먹어야겠다. 처음부터 복용할 때는 번번이 술에 타서 먹었 다.”</p>	<p>然比初幾消，而濃汁尙不止。杉木脂 可入，十宣散亦可服也。自初每一服， 和酒而服之而已。”</p>
<p>중종 73권, 28년 (1533 계사 / 명 가정 (嘉靖) 12년) 2월 11 일(갑신) 1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내가 여러달 병을 앓다가 이제야 거의 회복이 되었다. 약방 제조와 의원들에 게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좌의정 장순손(張順孫)에게는 숙마(熟馬) 1필(匹) 을 내리고 예조 판서 김안로(金安老), 전 도승지 정옥형(丁玉亨), 상산 도정 (常山都正) 이말손(李末孫)에게는 가자(加資)하고, 【상산 도정이 중기를 처음 앓기 시작한 때 약을 바쳐서 쉽게 곱아 터지게 하였으므로 역시 상을 주도록 하였다.】 의원 하종해(河宗海)는 준직(準職)을 가자하고, 동지 박세거(朴世 舉)와 홍침(洪沈)은 가자와 함께 각기 쌀과 콩 6석(石)씩 내리고, 김상곤(金尙 坤)은 가자와 함께 아마(兒馬) 1필을 내리고, 김수량(金守良)·노한명(盧漢明)</p>	<p>○甲申/傳曰：“予累月未寧，今幾差 復。藥房提調及醫員等，不可不賞。 左議政張順孫熟馬一匹，禮曹判書金安 老、前都承旨丁玉亨、常山都正末孫 加資，【常山都正獻藥於患腫之初，易 至濃潰，故亦在賞列。】醫員河宗海加 資准職，同知朴世舉、洪沈加資，各賜 米太六石，金尙坤加資，兒馬一匹，金 守良、盧漢明，掌務官員等，各兒馬一 匹，醫女大長今、戒今各米太并十五</p>

	과 장무 관원(掌務官員)은 각기 아마 1필씩을 내리고, 의녀(醫女) 대장금(大長今)과 계금(戒今)에게는 쌀과 콩을 각각 15석씩, 관목면(官木綿)과 정포(正布)를 각기 10필씩 내리고, 탕약 사령 등에게는 각기 차등 있게 상을 내리라.”	石、官木綿正布各十匹， 湯藥使令等， 賞賜有差。”
중종 75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 (嘉靖) 12년) 6월 14 일(을유) 2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래 날씨가 서늘하여 경연(經筵)을 열었으나, 오늘부터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다. 삼복(三伏) 사이에는 재상(宰相)이 입시하여 오래 엎드려 있으면 서증(暑症)16839) 이 염려된다. 그리고 시사(視事)16840) 한 다음 피전 감선(避殿減膳)해야 한다. 【하늘을 공경하여 피전하는 것을 어찌 반드시 시사한 다음에 하겠는가. 속히 할 수 있으면 속히 해야 하는데 이 전교는 그 뜻을 모르겠다.】 오늘부터는 날씨를 보아가며 경연을 취품(取稟)하게 하라.”	○傳于政院曰：“頃者日候清涼， 故爲經筵， 今則日候始熱。 三伏之間， 宰相入侍久伏， 暑證可慮。 且視事然後， 可避殿減膳也。 【敬天、避殿， 何必視事然後爲之？ 可以速則速， 此傳教， 未知其意。】 自此觀日候， 經筵取稟可也。”
중종 75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 (嘉靖) 12년) 6월 19 일(경인) 2번째기사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 철악(減膳撤樂)하였다.	○避正殿、減膳、撤樂。
중종 75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 (嘉靖) 12년) 6월 21 일(임진) 4번째기사	경상도 진휼 경차관(賑恤敬差官) 황헌(黃憲)이 복명(復命)하니 상이 이어 인견(引見)하였다. 그리고 심연원(沈連源) 【역시 진휼 경차관인데 먼저 와서 숙배(肅拜)했음.】 도 같이 들어오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구황(救荒)에 대한 일은 계문(啓聞)에 의해 이미 알고 있다. 그대들이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하니, 심연원이 아뢰기를, “당초 신들이 같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목(事目)에 미처 신지 않은 일은 황헌과 함께 의논하여 했고, 각 고을에 이문(移文)하여 흉황이 매우 심한 곳을 먼저 가서 살펴보았고 마을을 드나들면서 진휼하였는데, 백성의 곤궁이 막심했습니다. 용궁현(龍宮縣), 예천(醴泉)의 다인현(多仁縣), 대구(大口)의 하빈현	○慶尙道賑恤敬差官黃憲復命， 上乃引見， 又令沈連源同入。 【亦賑恤敬差官， 先來肅拜。】 上曰：“救荒事， 因啓聞既知之矣， 爾等所自措置何如？” 連源曰：“當初臣等偕行入其境， 事目所未及之事， 與黃憲共議爲之。 移文各官， 凶荒尤甚處， 先往觀之， 出入閭閻以賑之， 民之困窮莫甚。 龍宮、醴泉、多仁縣、大口、河濱縣等處， 村落蕭條， 藁束亦無。 入其室， 則無升斗之穀， 專仰官倉， 以續其命。 言其艱苦， 則可謂於悒。 若仁同則官穀亦且不足， 雖傾倉賑之， 尙未周足， 絕食困

(河濱縣) 등지는 촌락이 쓸쓸하고 짚단도 없었으며 집에 들어가 보면 한 말의 곡식도 없이 오직 관창(官倉)에만 의지해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정상은 눈물겨웠습니다. 인동현(仁同縣) 같은 곳은 관곡(官穀) 또한 부족하여 창고를 다 기울여 구제해도 오히려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끊긴 곤궁한 백성이 도로에 줄지어 누웠었는데 얼굴은 마치 언 배[梨]의 색깔이었습니다. 신이 친히 미식(糜食)을 먹이고 또 미장(米醬)을 주어 진제장(賑濟場)으로 보내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황헌은 아뢰기를,

“모든 일을 심연원과 같이 상의하여 하였습니다. 우도(右道)의 실농(失農)한 군현은 계본(啓本)을 보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도가 거의 실농하였기 때문에 조금 여문 곳이 있다고 하지만 역시 부실합니다. 함창(咸昌)·상주(尙州)·금산(金山)·선산(善山) 등지는 실농이 더욱 심한데 산지에 있는 고을은 약간 먹을 게 있지만 그 나머지 고을은 여문 곳이 없어 흉황이 한결같습니다. 백성이 매우 곤궁하여 드나들며 보았는데 굶어 부황난 자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으며, 비록 관창(官倉)으로 급한 자를 구제하기는 했으나 거리가 60리 길 이어서 목을 빼고 기다리느라 까무러쳤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는 처자식을 데리고 떠돌면서 결식하였는데 이런 자에게는 쌀과 장을 예급(例給)하고, 군현에다 구휼에 진력하여 소생한 다음 가고자하는 곳으로 돌려 보내도록 이문(移文)하였습니다. 김해(金海)·창원(昌原)·고성(固城) 등지는 실농하였지만 어염(魚鹽)의 이익이 있고 또 민간에 저축한 곡식이 있었으며, 수령도 죄를 두려워하여 힘껏 진구하였기 때문에 민생이 약간 생기가 있어 극심한 곤궁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내 양맥(兩麥)16862 이 처음에는 무성하였다가 이삭이 패서 익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문 곳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절반밖에 익지 않았으며 바닷가 고을에는 먹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이 황여헌(黃汝獻)의 사간(事干)을 추고할

悴之民，枕籍道路，其面如凍梨色。臣親以糜食餉之，又與米醬，送付賑濟場以養飼之。” 憲曰：“凡事，與沈連源同議爲之。右道失農郡縣，以啓本觀之，則不多，而一道大概失農，故雖云稍稔處，亦不實。如咸昌、尙州、金山、善山等處，失農尤甚。山縣則稍食，其餘未稔處，凶荒如一，民甚困窮。出入見之，飢餓浮腫而臥者，比比有之。雖仰官倉，以救其急，道里或有二息之程，引頸待哺，絕而復甦。或携妻子，流離道中乞食者，例給米醬。移文郡縣，盡力救必恤，待其蘇復，任其歸處。若金海、昌原、固城等處，雖失農，有魚鹽之利，民間且有儲穀，守令亦畏罪，用力賑救，故民生稍有生道，不至困極。但道內兩麥，初則茂矣，發穗結實時，雨澤不下，故雖有稍稔處，皆爲半實，沿海之官，全無可食之處。臣以黃汝獻事干推考事，徑行大口、慶山、永川等處，僅食其半實矣。慶州、蔚山、東萊、梁山、密陽等處，全未收穫，或放火於田。聞守令之言，百姓欲受倉穀，而戶曹定數之外，雖監司，不得擅自加給，不能賑而救之云，故更欲啓請，而救之也。如此者，全以不得食兩麥之故也。” 連源曰：“左道凶荒，比右道尤甚，其中甚處，十三郡也。雖云未甚失農處，以災傷結卜言之，其凶荒大概如一。如清道、密陽尤甚，村落之間，飢餓小

일로 대구(大口)·경산(慶山)·영천(永川) 등지를 경유하였는 데 그곳에서는 겨우 반만 익은 곡식을 먹었고, 경주·울산·동래·양산·밀양 등지는 전혀 수확하지 못하여 어떤 사람은 밭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수령의 말을 들으면, 백성은 창고 곡식을 받고자 하지만 호조(戶曹)에서 정한 숫자 이외에는 감사라도 마음대로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진구(賑救)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청(啓請)하여 구원해 주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로지 양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고, 심연원은 아뢰기를,

“좌도의 흉황은 우도에 비해 더욱 심했고, 그 중에도 극심한 곳이 13군이었습니다. 그다지 심하게 실농한 곳이 아니라도 재상(災傷)된 결복(結卜)16863)으로 말한다면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청도(淸道)나 밀양 같은 곳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굶주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촌락의 아이에게 미식(糜食)을 주자 조금 소생하였고, 쌀과 장을 주어 목숨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또 버려진 아이는 각 고을 수령에게 데려다 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보증을 서주어 기르게 할 것과 논상(論賞)한다는 내용을 관문(官門)에 방을 붙여서 알리게 하였습니다. 또 백성들이 진휼미(賑恤米)를 먹으면서도 뒷날 관채(官債)의 예가 될까 두려워 불안해 하므로 신이 뒷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깨우쳐 타일렀습니다. 또 백성에게는 먼 앞날의 걱정이 없으므로 음식을 절약하지 못합니다. 기민의 도목장(都目狀)에 의거 인구의 숫자를 헤아리게 하고, 창곡의 곡식을 진휼해 준 시일을 고찰해 보니 마땅히 나머지 식량이 있어야 하는데도 나머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백성에게 ‘굶주리는 자는 많고 관곡은 적은데, 너희들이 절약하여 먹지 않아서 관곡이 없어지면 반드시 굶어죽을 것이니, 절약하여 먹어야 한다’고 호수(戶首)16864)에게 반복하여 타일러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외방 백성의 곤궁이 이에 이른 것은 사채(私債)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채가 없는 까닭은, 오늘날 인심이 간악하여

兒, 不能運身者, 與之糜食, 則稍蘇。又與米醬, 令不絕其命。且遣棄之兒, 令各官守令, 保授願育者, 育養論賞事, 亦於官門, 掛榜知會也。且百姓以賑食之米, 慮後日爲官債之例, 食不以爲安, 故臣以毋慮後患之意, 解諭之。且民無遠慮, 不能節食。乃以飢民都目, 計其口數, 又考倉穀賑給日月, 則其糧當有餘, 而餘存者無幾。臣謂民曰: ‘飢者多, 而官穀少, 汝等食之不節, 官無儲穀, 必將餓死, 擲節食之可也。反覆開諭戶首, 毋令濫食。外方之民, 窮困至此者, 以其無私債也。其所以無私債者, 今之人心奸暴, 當其貸之之時, 甘心食之, 及其還債, 便訴於官曰: ‘官倉所納之穀, 被奪於私債云, 故其有私債者, 只買田土, 以爲一家之資。是以私儲不多, 一邑僅得二三百餘石, 故難補其不足處矣。’ 憲曰: “右道遺棄兒, 無一二歲兒, 而若七八歲兒, 則其父母率而乞食, 猶不能救, 至於流離之際, 與其乞食之器及布帛, 棄而去之, 其兒飢臥路傍。臣餉以糜食, 又與米醬, 送付賑濟場救養之。”

	<p>대여받을 적에는 좋아라고 받아다가 먹고나서는 반환할 때가 되면 관에 호소하기를 ‘관창(官倉)에 납부할 곡식을 사채자에게 빼앗겼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채놀이를 하는 자가 전지(田地)만 사들여 집안의 밑천으로 만들기 때문에 개인의 저축이 많지 않습니다. 한 고을의 곡식이 겨우 2~3백여 석 정도라서 부족한 것을 메우기가 어렵습니다.”</p> <p>하고, 황헌은 아뢰기를, “우도(右道)의 버려진 아이는 1~2세는 없고 7~8세 가량이었는데,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걸식하다가 그래도 구휼할 수가 없어 헤어져야 할 때는 구걸하던 그릇과 포대를 주고는 버리고 갑니다. 그 아이들이 굶주려 길가에 누워 있었으므로 신이 미식(糜食)을 먹이고 또 쌀과 장을 주어 진제장(賑濟場)으로 보내 구원하게 하였습니다.”</p>	
<p>중종 75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嘉靖) 12년) 7월 1일 (임인) 4번째기사 궁중의 빈객을 위한 술제조를 금지하다</p>	<p>정원에 전교하였다. “궁중에 드나드는 빈객들을 대접하기 위한 술은 전부 없애야 하니, 술빚는 쌀을 줄이도록 해조(該曹)에 이르라. 피전 감선(避殿減膳)16874) 하는 것도 재변 때문이요, 빈객을 대접하기 위한 술을 전부 없애는 것도 역시 재변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폐지할 수 없는 일이니, 가을철까지로 기한(期限)을 정하라.</p>	<p>○傳于政院曰：“闕內往來賓客供饋之酒，可以全減，釀酒米減省事，亦言于該曹。避殿、減膳，爲災變也。全減供饋之酒，亦爲災變，則不可長廢，以秋成爲限可也。”</p>
<p>중종 75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嘉靖) 12년) 8월 23일(기사) 2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전(大殿)의 양로연(養老宴)은 다음달 능(陵)을 참배한 뒤에 하고, 중궁(中宮)의 양로연은 여노인(女老人)에게 주육(酒肉)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마련하라.”</p>	<p>○傳于政院曰：“大殿養老，則來月拜陵後可爲之，中宮養老，則磨鍊女老人，以酒肉頒賜可也。”</p>
	<p>상이 황두등(黃豆等)16944) 에서 군대의 무예를 친히 검열하였다. 종 수빙산(壽氷山)이 수박을 바쳤다. 상이 삼공에게 하문하기를, “옛날에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이 있었다. 이제 수박을 바치는 것은 어떤가?” 하니, 삼공이 아뢰기를,</p>	<p>○丁酉/上親闕于黃豆等， 奴壽永山，獻西瓜。上問于三公曰：“古有獻芹之誠，今此之獻何如?”三公啓曰：“古者果有獻芹之誠，受之爲當。”命賞布二</p>

	“옛날에 과연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이 있었습니까. 받는 것이 옳습니까.” 하였다. 배 2필을 상주고 수박은 사옹원에 내리라 명하였다.	匹, 下西瓜于司饗院。
중종 75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 (嘉靖) 12년) 8월 27 일(정유) 5번째기사	충순위(忠順衛) 김영건(金永建)과 유세건(柳世建)이 꿩을 바치니 화살 4개를 내리고 내금위(內禁衛) 이형창(李亨昌)이 새를 바치니 술을 내리게 하였다.	○忠順衛金永建、柳世建獻雉，賜箭四 箇，內禁衛李亨昌獻禽，饋酒。
중종 76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 (嘉靖) 12년) 9월 11 일(경술) 1번째기사	선릉(宣陵)에 친제(親祭)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어가(御駕)가 출발하였다. 도중의 쉬는 곳에서 서과(西瓜)16961) 를 바치는 자가 있었는데, 받아들이다 록 명하였다. 막차(幕次)에 들어가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에 황두등(黃豆等)에서 서과를 바친 자에게 물건을 내렸었으니, 이제도 그 예에 의하여 내리라.” 하였다.	○庚戌/親祭于宣陵。味爽動駕，有獻 西瓜於道次者，命受之入幕次。傳于 政院曰：“前於黃豆等，有獻西瓜者， 給物，今亦依例給之。”
중종 76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 (嘉靖) 12년) 9월 12 일(신해) 1번째기사 초물 바치는 것을 금 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목이(木耳)16962) 를 바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모양은 비슷해도 독이 있는 것도 있고 독이 없는 것도 있다 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랫백성들이 초물(草物)을 가져와 바치는 것이므로 부득이하여 받은 것이 다. 그러나 보통 때는 송이버섯이 아닌 잡목의 버섯은 모두 먹지 않았다. 또 평소에는 백성들이 사사롭게 바칠 수가 없다. 전일 망원정(望遠亭)에서 서과 (西瓜)를 바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16963) 을 취해 받 아들였고, 황두등(黃豆等)에서도 서과를 바치는 자가 있었는데 전처럼 받아들 였으니, 야차(野次)에서 어쩌다가 한 번 바치게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이 렇게 하는 것이 계속되면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바라고 다투어 나와 바쳐 폐단	○辛亥/政院啓曰：“昨日多有獻木耳 者。竊聞之，形雖似，而有有毒者， 有無毒者，敢啓。”傳曰：“下民以草 物來獻，不得已受之，然常時則松蘿 外，雜木耳，皆不進御矣。且在平日， 小民不得私獻。前於望遠亭，有獻西 瓜者，取其獻芹之誠，而受之，黃豆等 亦有獻西瓜者，如前受之。若於野次， 偶一獻之可矣，如是不已，則人皆希望 賞物，爭相進獻，不爲無弊。成宗朝， 亦有如此獻之者，然今則比比有之。 初獻者，固其誠矣，效而獻之者，豈盡 有誠乎？其自今使之勿獻可也。”

	이 없지 않을 것이다. 성종조(成宗祖)에도 이처럼 받치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자가 있다. 처음에 받치는 자는 진실로 정성에서 나온 것이겠으나 이를 본받아 받치는 자야 어찌 모두 정성이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받치지 못하게 하라.”	
중종 76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 (嘉靖) 12년) 10월 16 일(을유) 1번째기사	동이 틀 무렵에 상이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고, 미시(未時)에 연은전에서 시선하였다.	○乙酉/味爽, 上視膳于文昭殿, 未時, 視膳于延恩殿。
중종 76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 (嘉靖) 12년) 10월 29 일(무술) 1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살아 있는 사슴 세 마리를 주서(注書)를 보내어 종묘(宗廟)에 천신하라.”	○戊戌/傳于政院曰: “生鹿三口, 令注書薦于宗廟。”
중종 76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 (嘉靖) 12년) 11월 27 일(을축) 1번째기사 담당 아문에게 술을 준비케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요즘 궐내에서 술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들에게도 내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국기(國忌)로 재계해야 할 날이지만 날씨가 춥고 게다가 또 명일(名日)【동지(冬至).】 이어서 술을 내리려 하니, 담당 아문에게 술 30병을 가져 오게 하라.”	○乙丑/傳于政院曰: “近日闕內不用酒, 大臣亦不饋。 今日雖國忌齋, 而日氣沍寒, 且是名日。【冬至。】欲饋酒, 其令該司, 供酒三十瓶。”
중종 76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 (嘉靖) 12년) 11월 27 일(을축) 2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순장(巡將)과 금화사(禁火司)가 아뢰어 온 것을 보니 어젯밤에 영의정【장순손임.】 집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 하여 중사(中使)로 하여금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그리고 의복(衣服)과 관대(冠帶) 등을 모두 꺼내지 못했다고 하니 그렇게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상민이라도 가궁할 일인데 더구나 수상(首相)이겠는가. 상의원(尙衣院)에서 때맞추어 의복과 대모(帶帽)를 만들어 보내도록 하고 또 쌀과 콩 40석을 하사할 것이며 사은(謝恩)은 하지 말게 하라.”	○傳于政院曰: “今見巡將及禁火司所啓, 去夜領議政【張順孫】家盡燒云。今中使往慰之, 衣服冠帶, 皆不出云。安有如是慘酷之事乎? 常人尙可矜, 況首相乎? 令尙衣院, 及時造給衣服、帶帽, 又賜米豆四十石, 勿使謝恩。”

<p>중종 76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 (嘉靖) 12년) 11월 30 일(무진) 1번째기사</p>	<p>상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객인(客人) 청운(晴雲)과 서당(西堂) 등을 인견하고 술 일곱 순배를 돌린 후 파하였다.</p>	<p>○戊辰/上御勤政殿，引見客人晴雲西堂等，酒行七爵而罷。</p>
<p>중종 76권, 28년 (1533 기사 / 명 가정 (嘉靖) 12년) 12월 9 일(정축) 1번째기사 얼음 저장에 관해 전 교하다</p>	<p>정원에 전교하기를, “요즈음 날씨가 춥고 따뜻한 것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추워졌으니 이때에 얼음 저장하는 일을 예조에 이르라.” 하였다. 정원이 예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관례입니다. 그래서 얼음의 두께가 4촌(寸)이 되어야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음이 두껍지 않으니 우선 아주 춥기를 기다려 비록 4촌이 못되더라도 3촌 5푼(分)만 되거든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p>	<p>○丁丑/傳于政院曰：“近來日候寒煖無常，今則稍寒。及時藏冰事，言于禮曹。”政院以禮曹意啓曰：“藏冰，古例，冰厚四寸，始可藏。今則冰不厚，姑待大寒，雖不至四寸，而三寸五六分，則藏之何如？”傳曰：“知道。”</p>
<p>중종 76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2월 6일 (계유)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공주(公主)와 옹주(翁主)가 대궐에서 나가는 길례(吉禮) 때에 수용(需用)되는 물품이 다 떨어졌으니, 사첨시(司贍寺)에서 오승목면(五升木綿) 20동(同), 정포(正布) 10동, 중미(中米)와 조미(造米) 아울러 70석(石), 콩 30석 등의 물품과 공조(工曹)의 납철(鐵) 1천 근(斤), 상감석(霜甘石) 50근 등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내게 하라.”</p>	<p>○癸酉/傳于政院曰：“公主、翁主出閣吉禮之時，所需之物乏絕。司贍寺五升木綿二十同、正布十同、中造米并七十石、豆三十石等物及工曹鐵一千斤、霜甘石五十斤等，內需寺輸送。”</p>
<p>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윤2월 10일(정미) 1번째기사</p>	<p>건원릉(健元陵)17057) 과 현릉(顯陵)17058) 에 친제(親祭)를 행했다. 상이 돌아오는 길에 대주정(大晝停)하고서 종재(宗宰)들에게 술을 내렸다.</p>	<p>○丁未/親祭于健元陵、顯陵。上還次大晝停，宗宰賜酒，</p>
<p>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傳于政院曰：“坡山府院君別致賻，依愼承善例爲之可也。【米太各一百</p>

<p>(嘉靖) 13년) 4월 14 일(경술) 2번째기사</p>	<p>“과산 부원군에게 할 별치부(別致賻)17106) 는 신승선(愼承善)의 예에 의해 하도록 하라.” 【쌀과 콩 각각 1백 석, 종이 2백 30권, 백정포(白正布) 30필, 여섯 새 백면포(白綿布) 30필, 여섯 새 백면포(白綿布) 30필, 정포(正布) 2동(同), 면포(綿布) 2동, 석회(石灰) 50석, 저포(苧布) 10필, 맑은 꿀과 참기름 각각 2석, 진말(眞末) 2석, 황랍(黃蠟) 70근, 여섯 장 이어 붙인 유둔(油菴) 2부(浮), 각가지 과일 각각 8두씩이다.】</p>	<p>石、紙二百三十卷、白正布三十四、六升白綿布三十四、正布二同、綿布二同、石灰五十石、苧布十匹、清蜜、眞油各二石、眞末二石、黃蠟七十斤、六張付油菴二浮、各色實果各八斗。】</p>
<p>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4월 14 일(경술) 6번째기사</p>	<p>그때 예조 판서 이세좌(李世佐) 등이 ‘비록 국상(國喪)을 만났더라도 산월을 당하면 대신들이 마땅히 육선(肉膳)을 드시게 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번의 상사에는 소선(素膳)17112) 을 오래 하실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 역시 바야흐로 지금 산월이 임박했으므로 오래 소선하실 수 없다고 여겨지니, 상께서 마땅히 짐작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선(素膳)의 진상(進上)은 마땅히 준례대로 각도에 행이(行移)해야 하는데, 다만 어느때에 가서 소선을 그만두게 될지 모르겠습니다.</p> <p>또 임술년에 이세좌 등이 또 ‘산월이 임박했을 때의 복색은 본래 정해진 제도가 있다. 그러나 상사가 진실로 중한 일이지만 해산(解産)도 역시 중한 일이니 마땅히 위에서 임시로 변통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른바 산월이 임박했을 때의 복색에 대해서는 바깥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니니 또한 상께서 짐작하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흘 만에 성복(成服)하는 것은 예에 정해진 법제가 있어 당기거나 물릴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복을 벗는 시일은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어야 한다. 육선(肉膳)에 관한 일은 비록 지금 산월이 임박했지만 어찌 시급하게 의논할 것이 있겠는가.</p>	<p>其時禮曹判書李世佐等以爲：‘雖遭國恤，若值産月，則大臣當進肉膳。況今之喪，行素不可久也。’ 臣等亦以爲：‘今方臨産，不可久爲行素也。’ 自上當斟酌爲之矣。然素膳進上，則當依例行移于各道矣，但未知以何時，而止素膳乎？ 且壬戌年，李世佐等亦云：‘臨産服色，自有定制，然喪固重事，産亦重事，宜自上從權也。’ 所謂臨産服色，非外人所知也，亦宜自上斟酌，而處之也。 第四日成服，禮有定制，不可進退。” 傳曰：“除服日月，宜與大臣同議，而啓之。 肉膳事，今雖臨産，何可遽議也？ 若産後有病，則亦可議進肉膳也，雖産後，若無病，不須進肉也。 素膳封進之事，當依例行移，何可預定日期，而止之乎？”</p>

	만일 해산한 뒤에 병이 생긴다면 의논하여 육선을 올려도 되지만, 비록 해산한 뒤라 하더라도 병이 나지 않으면 고기를 올릴 필요가 없다. 소선을 진상하는 일은 마땅히 준례대로 행이해야 하지만, 어찌 미리 시일을 정하여 그만두게 하겠는가.	
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4월 27 일(계해) 2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소세양이 북경에 갔을 적에 지은 율시(律詩)를 보니 매우 좋다. 중국이 우리 나라를 귀히 여기는 까닭은 이런 문화(文華)가 있기 때문이다. 내일은 소세양을 불러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는 뜻을 이르고, 사옹원(司饗院)으로 하여금 술을 대접하게 하라.”	○傳于政院曰：“今見蘇世讓赴京所製律詩，甚好。中國之所以貴我邦，以其有此文華也。明日招世讓，言予甚嘉之意，使司饗院饋酒。”
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6월 16 일(신해) 1번째기사	좌의정 한효원(韓效元)이 봉심(奉審)하는 일로 영릉(英陵)으로 돌아갔다. 상이 도승지(都承旨)와 중관(中官)17169)에게 명해 제천정(濟川亭)에서 선온(宣醞)하였다.	○辛亥/左議政韓效元以奉審事，歸英陵。上命都承旨及中官，宣醞于濟川亭。
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8월 5일 (기해) 2번째기사 사옹원 제조가 대사례 때와 평상시 연회의 차이에 대해 아뢰다	사옹원 제조가 아뢰기를, “대사례 때에는 대소(大小)의 선미(善味) 두세 가지씩을 차리고, 평상시에는 소선미를 내놓은 다음에 술 다섯 잔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문(禮文)에는, 술잔을 세 번 돌린다고 했습니다. 평사시에 따라서 한다면 다섯 잔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뢰운 일을 예조에게 일러 고례(古禮)를 상고하고 지금의 마땅한 바를 참작케 해서 아뢰게 하라.”	○司饗院提調啓：“大射禮時，大小膳味數三矣。常時小膳後，進五爵，禮文則曰：‘酒行三遍。’云。依常時爲之，則五爵也。何以爲之？”傳曰：“所啓事，言于禮曹，使之考古禮、酌今宜，以啓可也。”
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8월 11 일(을사) 2번째기사 울산 지방의 적수 현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상도 관찰사의 서장(書狀)에, 울산(蔚山) 지방에서 적수(赤水) 현상이 크게 일어나 물고기가 저절로 죽어 떠난다고 하니, 전에도 또한 이와 같은 때가 있었는가? 지금부터 그 도의 어물(魚物)을 봉진(封進)할 때에는 먼저 아랫사	○傳于政院曰：“慶尙道觀察使書狀內，蔚山地赤水蕩發，魚皆自斃浮出云。前者亦有如此之時乎？自今其道魚物封進時，皆先饋下人以試之，知其無毒後進用事，其諭于本道。”

<p>상이 있다하니 어물 봉진시 독이 없음을 확인하라고 유시하다</p>	<p>람에게 먹여 시험을 해서 독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진상하도록 본도에 유시하라.”</p>	
<p>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8월 14 일(무신) 1번째기사</p>	<p>정원이 종묘(宗廟) 헌관(獻官)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종묘의 희생물이 겉으로는 무척 살이 찌고 윤택하지만 도살하고 보니 구더기가 온몸에 가득하고 심지어는 내장에까지도 많습니다. 이런 흉측하고 잘못된 희생을 대제(大祭)에 사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희생물에 이런 구더기가 있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개 노루나 사슴은 이같은 여름에는 속으로 애벌레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이치가 있는 법이니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 문제삼지 말라.”</p>	<p>○戊申/政院以宗廟獻官意啓曰：“宗廟犧牲，外甚肥澤，及其屠剝，白蟲滿身，至於內臟，亦多有之。凶咎之牲，用諸大祭，恐不當。”傳曰：“犧牲有此白蟲，甚非怪事。大抵獐鹿，若於夏月，內必生蜂。此理有之，無怪也。勿問。”</p>
<p>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8월 17 일(신해) 2번째기사</p>	<p>유생들을 궐정(闕庭)에서 공궐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유생들을 궐정에서 공궐하니 비록 먹을 것은 없지만 이 또한 경사스러운 일이다. 술과 음악을 1등급으로 내려 주라. 그리고 중사(中使)17224)와 승지 5인에게는 선온주(宣醞酒)를 내리라. 만약 노유(老儒) 중에 술에 취해서 춤추는 자가 있더라도 이 또한 노인들의 잔치와 다름이 없으니 금하지 말라. 될 수 있는 대로 유생들이 맘껏 즐기고 과하도록 힘쓰라.” 하고, 인하여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대례를 이미 행하고 오늘 그대들을 궐정에서 공궐하여 특별히 술과 음악을 1등급으로 내린다.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니 국가에서 인재를 양육하여 뒷날 쓰고자 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학문에 힘쓰지 않는다고 하니 그대들은 더욱 학문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p>	<p>○饋儒生于闕庭。傳于政院曰：“今日儒生闕庭供饋。雖無所食，是亦慶事。賜酒樂一等，中使及承旨五人，宣醞可也。如有老儒乘醉起舞，此亦無異老人之宴，勿禁，務令儒生，盡歡而罷。”仍敎曰：“大禮已行，今日供饋爾等于闕庭，特賜酒樂一等。學校，風化之原。國家養育人材，欲用他日，近來不務學云。爾等更加勉學。”</p>
<p>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p>	<p>성균관 생원 이백록(李百祿) 등이, 상께서 친히 문묘에 제향한 다음 대사례를 행하고, 쌀 2백 석을 하사하고 또 궐정에서 특별히 술과 음악을 하사하신 데</p>	<p>○成均館生員李百祿等，以上親享文廟，仍行大射禮，命賜米二百碩，又命</p>

<p>(嘉靖) 13년) 8월 18 일(임자) 4번째기사</p>	<p>대해 전(箋)을 올려 감사하였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소왕(素王)17231) 을 배알하고 옹후(熊侯)17232) 를 쏘시니, 혼연히 삼대(三代)의 의례를 보겠습니다. 유생들을 모아 놓고 녹명(鹿鳴)을 노래하게 하니, 구중 궁궐의 은택을 다시 받았습니다. 신들은 문장의 조그만 기교나 학습하고 입으로만 외는 무리들로 유자(儒者)란 이름만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정곡(正鵠)을 못 맞히면 몸을 돌이켜 생각하는 군자의 덕이 없음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성균관에 오시던 날 활 쏘시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활을 쏘는 데는 힘이 아닌 덕을 주로 하시니, 덕성을 양성하심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선비들이 다 사예(射禮)를 익히니, 사를 고무시키는 인덕(仁德)에 모두들 감동하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희들의 영광인 것을, 하물며 성대히 대접해주기를 어찌 감히 바라겠습니까. 구온(九醞)17233) 이 많기도 하고 감칠맛 나니 정중히 술자리를 마련해 주신 은혜에 진하게 젖어듭니다. 오음(五音)이 계속해서 흐르고 음식 맛도 잊게 하는 음악이 번갈아 연주되었습니다. 즐거움은 녹명의 화려한 정경과 같고 덕화는 문왕(文王)의 시절과 같습니다. 천고에 일찍이 없었던 오늘의 대례 행사, 교문(橋門)에서 보고 듣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크나큰 은혜 궁중에서 베푸시니, 더욱 천지(天地)와 같은 자애로움을 느낍니다.”</p>	<p>進闕庭，特賜酒樂，奉箋稱謝。 略曰： 謁素王射熊的，欣瞻三代之儀；列青衿歌鹿鳴，復添九重之澤。 臣等，習雕蟲徒口誦，竊取儒者之名；失正鵠反身求，愧乏君子之德。 何幸臨雍之日，獲觀挾鏃之光。 射不主皮，仰觀德性之養；士皆游藝，咸被鼓舞之仁。 茲惟小子之榮，況敢大舖之望。 九醞多且旨，醞含設醴之恩；五音釋以成，迭奏忘味之樂。 歡同食野之苹，化協在豐之芑。 大禮曠千古，猶幸橋門之觀聽，優渥下九天，益感乾坤之慈惠。</p>
<p>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8월 19 일(계축)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기를, “사방의 유생들이 1만여 명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록된 인원수를 보니 6천 2백 99명이었다. 저번에 공궐한 것은 아무래도 미흡했으니 술과 음악을 하사했다고 할 수 없다. 옛 임금은 중 3만 명을 먹인 적도 있었는데, 이제 다시 유생들에게 공궐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 문(文)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도리에 어긋나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예조에 하문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유생들에게 공궐하는 일은 매우 당연합니다. 다만 27일이나 28일에 출방(出</p>	<p>○癸丑/傳于政院曰：“四方儒生，意謂可至萬餘人，今觀錄名數，乃六千二百九十九也。 向者供饋草草，不可謂賜酒樂也。 古之人君，有飯僧三萬者。 今欲更饋儒生，豈違於右文、興化之道乎？ 此意問于禮曹。” 禮曹啓：“儒生供饋事甚當。 但二十七八日必出榜，五六日間饋之何如？” 傳曰：“二十五日</p>

	榜)하게 될 것이 틀림없으니 25일과 26일 사이에 공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25일에 공궤하도록 하라.”	饋之。”
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8월 20 일(갑인) 5번째기사	영의정 장순손이 의논드리기를, “김이동(金伊同)과 산송(山松) 등을 임금의 약탕(藥湯)과 은술[銀鼎]을 훔친 죄로써 함께 국문(鞫問)하였는데, 산송은 30차례나 형을 받고도 발뺌하고 있 습니다.	○領議政張順孫議：“金伊同、山松等， 以盜御藥湯進銀鼎，竝鞫，山松，三十 次受刑發明。
중종 77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8월 26 일(경신) 1번째기사	또 명하여 유생들을 궐정에서 음식과 술로 공궤하고 여분의 음식은 입직하는 금군(禁軍)과 잡색 군사(雜色軍事)17243) 들에게 나누어 공궤하게 했다.	○庚申/又命儒生等于闕庭，饋以酒食， 餘床，分饋入直禁軍及雜色軍士。
중종 78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9월 10 일(계유) 1번째기사	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고 낮에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 다.	○癸酉/文昭殿朝視膳， 延恩殿晝視 膳。
중종 78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10월 10 일(계묘) 1번째기사	상이 가현(柯峴)에서 타위(打圍)를 참관하였는데 노루 한 마리를 잡았다. 우의 정 김근사(金謹思), 병조 판서 윤임(尹任), 원유사 제조(苑囿司提調) 심순경(沈 順經) 등에게 전교하기를, “오늘의 타위는 오로지 천금(薦禽)을 위한 것이었는데 노루 한 마리밖에 못 잡았고 귀마저 베어졌으니 천금에 쓸 수 없다.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하다. 황 두등(黃豆等)에서 습진하기로 이미 정했으니, 그 군사들을 시켜 사냥해도 되 겠는가? 경중(京中)의 하번 군사(下番軍士)를 다시 동원함은 옳지 못하니, 입 번 군사(入番軍士)만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김근사 등이 회계(回啓)하기를,	○癸卯/上觀打圍于柯峴，獲一獐。傳 于右議政金謹思、兵曹判書尹任、苑 囿司提調沈順經等曰：“今日之事，專 爲薦禽也，而只獲一獐。而又割耳， 不得薦之，心甚未安。黃豆等習陣已 定，以其軍士踏獵可乎？京中下番軍 士，不可再動，只以入番軍士爲之，何 如？”金謹思等回啓：“今之此舉，爲薦 禽也，而不得焉，臣等之意亦未安。 十六日，踏獵于黃豆等宜矣。然可除

	<p>“오늘의 행사는 천금을 위한 것이었는데 잘 안 되었으니 신들의 뜻도 편치 못합니다. 16일에 황두등에서 사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열무(閱武)는 생략하고서 사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 “사냥한다고 하고서 천금을 해도 되겠는가?”</p> <p>하니, 근사가 아뢰기를, “사냥과 타위는 마찬가지로이니 타위 천금을 명목으로 하심이 옳겠습니다.”</p> <p>하였다. 신시(申時)에 창의문(彰義門)을 거쳐 환궁하였다.</p>	<p>閱武，而踏獵也。”傳曰：“以踏獵爲名，猶可以薦禽乎？”謹思啓曰：“踏獵與打圍一也，可名打圍，薦禽(而)〔已〕也。”申時，由彰義門還宮。</p>
<p>중종 78권, 29년 (1534 갑오 / 명 가정 (嘉靖) 13년) 12월 7일(기해) 1번째기사</p>	<p>또 예전에 감귤(柑橘)을 품에 넣은 일(17356)이 있었다. 전번에 대간이 들어왔을 때에 이미 술과 감귤을 내렸었으니, 지금 대신들이 빈청(賓廳)에 들어오면 술과 감귤을 주고 사은하지 말게 하라.”</p>	<p>且古有懷橘之事。前者臺諫入來，已賜酒與柑子。今大臣入賓廳，亦賜酒與柑，除謝恩。”</p>
<p>중종 79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 (嘉靖) 14년) 2월 10일(신축) 1번째기사</p>	<p>궐정(闕庭)에서 문무과(文武科) 창방(唱榜)(17437)을 하고 술과 화개(花蓋)를 하사하였다</p>	<p>○辛丑/唱文武科榜于殿庭，賜酒、花蓋。</p>
<p>중종 79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 (嘉靖) 14년) 6월 26일(을묘) 1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이는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 대죄하지 말라.”</p> <p>하였다. 네 번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고 인하여 술을 내리라고 명하였다.</p>	<p>傳曰：“此非有關之事，勿待罪。”四啓不允，仍命賜酒。</p>
<p>중종 80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 (嘉靖) 14년) 7월 1일(경신) 4번째기사</p>	<p>대사헌 허황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지난달 24일 장원서(掌苑署)에 출근하여 화초와 제기[甌坐] 등의 기구를 점검해보니 하나도 보존된 것이 없었고, 중기(重記)를 조사해 보니 을사년 이후에 기록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중 중국에서 들어온 제기 일부를 가져오게 하였더니 하인이 청니(靑泥)로 만든 국산품 한 개를 가져다가 보이면서 그것</p>	<p>○大司憲許沆來啓曰：“臣前月二十四日，仕進于掌苑署，仍點檢花草及甌坐等器具，一無存者。推見重記，則只乙巳年以後所錄也。使其其中唐甌坐一部而來，則下人以靑泥鄉造一坐，誑示之。凡器，皆名存實無，盡數散在</p>

	<p>이 중국에서 들여온 제기라고 속였습니다.</p> <p>이와 같이 모든 기구가 다 명칭만 있을 뿐, 실물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개인의 집에 흩어져 있으니, 신은 태조조로부터 이 부서를 설치한 뜻으로 보아도 이와 같이 외람된 행위를 해서는 안되다고 여깁니다. 아무리 그 기구들을 가져간 자들이 내놓지 않더라도 전부터 내려오는 기록 문서가 호조의 회계책에 있으니 뒷날 출사할 때에 그 회계책을 가지고 와서 일일이 조사하겠다고 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p>	<p>私家。臣意以爲，祖宗朝以來，既設此司，則不可如是猥濫。雖不納，前在事記，自有戶曹會計冊，則當於後仕取來，一一憑考事語之矣。</p>
<p>중종 80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 (嘉靖) 14년) 7월 22 일(신사)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p> <p>“전에는 잔치 끝에 상 같은 기물이 파괴된 데에 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근년에 와서는 흥년이 들어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병조·도총부·사용원 제조와 시위했던 모든 장수들에게 오는 27일 훈련원에서 연회를 베풀고 1등의 풍악을 내리고 승지와 중사(中使)를 보내어 선온주(宣醞酒)를 내리라.”</p>	<p>○傳曰：“前者宴享後，賜床破費，例也，而近以年險不爲耳。其令兵曹、都摠府、司饗院提調、侍衛諸將等，來二十七日，宴于訓鍊院，賜一等樂，其遣承旨中使宣醞。”</p>
<p>중종 80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 (嘉靖) 14년) 8월 19 일(정미) 2번째기사</p>	<p>상이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갔다. 세자도 들어가 자리에 나아갔다. 영의정 김근사(金謹思) 등이 강서관(講書官) 이희보(李希輔) 등 14인과 유생(儒生)들을 인솔하여 와서 모두 사배(四拜)한 다음, 차례로 들어가서 어전에 줄지어 엎드렸다. 각각 술 한 잔씩을 내려준 다음 경서(經書)를 가지고 논란하게 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파하였다. 대체로 강서관의 물음에 따라 대답하였는데 다만 훈고(訓誥)의 대강만을 더듬어 토론했고, 의리의 근원을 부인하여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혹 다른 사람에게 끼어들어서 한두 마디 말만 늘어놓는 자도 있었고, 혹 나가라고 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급히 일어나 나가는 자도 있었으며, 학생들은 참여하여 듣지 못하였다. 유생들에게 쌀 1백斛(斛)을 주라고 명하고 오시(午時)에 환궁하였다.</p>	<p>○上御明倫堂。世子入就位。領議政金謹思等，率講書官李希輔等十四人及儒生，皆四拜，以次而入，列伏于御前。各賜一爵，執經論難，良久乃罷。大抵講書官，隨問、隨答，祇能探討訓誥之糟粕，未能敷陳義理之淵源，或有介於他人，而只開一二言而已者，又或有使之出去，則言未畢，而遽起者。學生者，亦不得觀聽矣。令賜儒生米一百斛，午時還宮。</p>
<p>중종 80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p>	<p>묘시(卯時) 초에 어가가 출발하자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서 전송하였다. 상은 사령(沙嶺)을 넘어 영서역(迎曙驛)에서 소주정(小晝亭)하</p>	<p>○庚午/卯初，動駕，世子率百官祇送于慕華館。上踰沙嶺，小晝亭于迎曙</p>

<p>(嘉靖) 14년) 9월 12일(경오) 1번째기사</p>	<p>고, 미륵원(彌勒院) 냇가에서 대주정(大晝停)하였다. 고양군(高陽郡)에 사는 백성 두 사람이 산 기러기와 진용(眞茸)을 바치자 명하여 받게 하고 각각 면포(綿布) 한 필씩을 주었다. 미시(未時)에 벽제역(碧蹄驛) 숙소(宿所)에 도착하였다.</p>	<p>驛, 大晝停于彌勒院川邊。 高陽郡居民二人, 獻生雁及眞茸。 命捧之, 各給縣布一匹。 未時, 至碧蹄驛宿所。</p>
<p>중종 80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 (嘉靖) 14년) 9월 13일(신미) 2번째기사</p>	<p>새벽에 어가가 출발하여 광탄(廣灘)에서 소주정하고 이천(梨川)에서 대주정한 뒤 통제원(通濟院) 숙소(宿所)에 이르렀다. 백성 중에 벼·밤·콩·복숭아를 바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각각 면포를 차등 있게 내렸다.</p>	<p>○黎明, 動駕, 小晝停于廣灘, 大晝停于梨川。 至通濟院宿所, 民有獻菘、栗、雉、桃者, 各給縣布有差。</p>
<p>중종 80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 (嘉靖) 14년) 9월 15일(계유) 1번째기사</p>	<p>세자가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황기(黃琦)를 보내어 문안하였다. 【향은(香醞) 25병, 장계(長桂) 2통(桶), 다식(茶食) 4사발을 올렸다.】</p>	<p>○癸酉/世子遣侍講院輔德黃琦問安。 【因進香醞二十五瓶、長桂二通、茶食四盤。】</p>
<p>중종 80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 (嘉靖) 14년) 9월 16일(갑술) 2번째기사</p>	<p>여명(黎明)17595) 에 상이 성균관에 나아가 작헌례(爵獻禮)를 의식에 따라 행하였다. 진시(辰時) 정각에 상이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시제(試題)를 내고 유생들에게 쌀 1백 곡(斛)을 내렸다.</p>	<p>○黎明, 上詣成均館, 行爵獻禮如儀。 辰正, 上御明倫堂, 出試題, 賜儒生米百斛。</p>
<p>중종 80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 (嘉靖) 14년) 9월 18일(병자) 4번째기사</p>	<p>묘시 정각에 상이 경덕궁(景德宮)에 행행하여 노인과 효자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각각 한 자급(資級)씩을 내리고 천인(賤人)들에게는 면포와 술 고기를 차등 있게 내렸다. 잔치가 과한 뒤 태평관으로 돌아왔다.</p>	<p>○卯正, 上幸景德宮, 饋老人及孝子等, 各加一資, 賤人, 給縣布酒肉有差。 宴罷, 還太平館。</p>
<p>중종 80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 (嘉靖) 14년) 9월 19일(정축) 2번째기사</p>	<p>오시 초에 대가가 친경천(親耕川)에 도착하여 대주정(大晝停)하고, 미시 정각에 통제원 숙소(宿所)에 도착하여 양주(楊州)·파주(坡州)·장단(長湍)·고양(高陽)의 노인과 효자들에게 음식을 먹였다.</p>	<p>午初, 大駕到親耕川大晝停, 未正, 到通濟院宿所, 饋楊州、坡州、長湍、高陽老人、孝子。</p>
<p>중종 80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p>	<p>전교하였다. “겸사복(兼司僕) 조천손(趙千孫)이 인왕산(仁玉山) 【도성 안임.】에서 표범을</p>	<p>○乙丑/傳曰: “兼司僕趙千孫, 獲豹於仁玉山【都城中也。】以獻。 此非他</p>

(嘉靖) 14년) 11월 8일(을축) 1번째기사	잡아 바쳤다. 이는 여느 짐승과는 다르다. 상을 주는 한편, 술을 내리고 그 표범은 사옹원(司饗院)으로 보내라.”	禽獸之類也。論賞饋酒，豹則送于司饗院。”
중종 80권,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 (嘉靖) 14년) 12월 3일(기축) 1번째기사	“정월 초하룻날은 종재(宗宰)의 당상(堂上) 이상 및 승정원·홍문관·시강원·예문관의 전원과 병조 및 도총부의 입직(入直) 관원들에게 근정전 뜰에서 1등의 주악(酒樂)을 내리라.”	○己丑/傳曰：“元日，宗宰堂上以上及承政院、弘文館、侍講院、藝文館全數、兵曹、都摠府入直官員等，賜酒樂一等于勤政殿庭。”
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1월 6일(임술) 4번째기사	도승지 남세건(南世建)을 보내어 선온주(宣醞酒)17660) 를 가지고 가서 경변사 심언광을 모화관(慕華館)에서 전송하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렀다.	○遣都承旨南世健，持宣醞，餞警邊使沈彦光于慕華館。
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1월 10일(병인) 1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정승들이 성균관에 가거든 선온(宣醞)하라. 지금 황감(黃柑) 1백 20개, 유감(乳柑) 1백 40개, 동정굴(洞庭橘) 3백 20개를 보내니, 승지는 가서 관각(館閣)의 당상(堂上)에게 나누어주라.” 하고, 또 어비(御批)로 출제(出題)하여 내리면서 일렀다. “봉(封)해 보내어 유생들에게 짓게 한 뒤 과차(科次)를 정하여 아뢰라.”	○丙寅/傳于政院曰：“今日政丞等，往成均館宣醞可也。今送黃柑一百廿箇、乳柑一百四十箇、洞庭橘三百二十箇，承旨往與館閣堂上，分傳可也。”且出給御批製題曰：“封而送之，其令儒生製之，而科次以啓。”
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1월 11일(정묘) 3번째기사	대마도(對馬島) 주(主) 종성장(宗盛長)이 구란요(仇難要)를 보내와서 방물(方物)을 바쳤다.	○對馬島主宗盛長遣仇難要，來獻方物。
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1월 21일(정축)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병은 조리하면서 출사할 수 있다. 풍헌의 장관은 지극히 무거운 임무인데 가벼이 체직할 수 없다. 술을 내려보내라.” 하였다. 세 번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傳曰：“病則可以調理行之矣，風憲長官，至爲重任，不可輕易遞之。賜酒遣之可也。”三辭，不允。
중종 81권, 31년	정원에 전교하였다.	○傳于政院曰：“今於高陽地路傍，有

<p>(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1월 24 일(경진) 2번째기사</p>	<p>“지금 고양(高陽)의 길가에서 붕어를 바친 자가 있고 산 매를 바친 자가 있었 으니, 각기 면포(縣布) 1필(疋)씩 내리라.”</p>	<p>獻鮒魚、有獻生鷹者。 各賜縣布一匹 可也。”</p>
<p>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1월 24 일(경진) 3번째기사</p>	<p>세자(世子)가 보덕(輔德) 김수성(金逵性)을 보내어 문안드리니, 알았다고 전교 하고 술을 먹여 보냈다.</p>	<p>○世子遣輔德金逵性問安。 傳曰：“知 道。 饋酒遣之。”</p>
<p>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1월 24 일(경진) 4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잡은 짐승의 수가 적으니 노루 두 마리를 주서(注書)에게 보내어 종묘 (宗廟)에 천신하게 하라.”</p>	<p>○傳于政院曰：“今日所獲禽獸數少。 以獐二口， 遣注書薦于宗廟。”</p>
<p>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1월 25 일(신사) 3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래 상의원(尙衣院)의 일을 보니 관원(官員)이 삼가지 앎음이 이때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저 백공(百工)을 설립한 것은 대궐에서 쓰기 위함인데, 은기(銀器)를 만드는 일에 대해 지난 3월과 7월에 전교하였고, 지난 10월과 12월 사이에 또 계하 (啓下)17691 하였다. 지난 10월과 12월에 계하한 일은 날짜가 가까우리 변 명할 수는 있겠지만 지난 3월과 7월의 일은 너무 늑장을 부리는 것이다. 요즈음 들으니 관원이 장인(匠人)들을 구사(丘史)로 쓰기도 하고 사사로이 남 에게 빌려주기도 하여 대궐에서 쓸 기물(器物)을 미처 만들어 바치지 못하게 된다니 매우 그르다. 그러니 즉시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게 하라.”</p>	<p>○傳于政院曰：“近來觀尙衣院事， 官 員之不謹， 莫有甚於此時矣。 夫設立 百工者， 爲內用也， 而銀器造作事， 去 三月、七月傳教， 去十月、十二月間， 又啓下。 去十月、十二月啓下之事， 則日近， 猶可言也， 去二月、七月之 事， 則緩慢太甚。 近聞之則官員以其 匠人， 或作丘史， 或私自借人， 致令內 用器物， 未及造納， 至爲非矣。 卽令 下義禁府， 推考可也。”</p>
<p>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傳于政院曰：“今來死鹿皮具內具， 待明日打圍後薦禽， 則不能無傷腐之</p>

<p>(嘉靖) 15년) 1월 27 일(계미) 2번째기사</p>	<p>“지금 잡아온 죽은 사슴은 가죽과 내장을 그대로 보관해 두고 내일 타워한 뒤에 천금(薦禽)한다면 부패할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내일 새벽에 주서(注書)를 시켜 사슴 네 마리를 종묘에 천신하게 하라.”</p>	<p>弊。鹿四具，明曉令注書，往宗廟薦之可也。”</p>
<p>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1월 28 일(갑신)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종묘의 천금은 처음의 사슴 여덟 마리와 또 지금 잡은 네 마리를 곧 주서를 시켜 종묘에 천신하게 해야 한다.”</p>	<p>○甲申/傳于政院曰：“宗廟薦禽，初以鹿八口。今又獲鹿四口，即遣注書，薦于宗廟可也。”</p>
<p>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2월 16 일(신축)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견항진(犬項津) 공사에 중이 3천여 명이나 참가하였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려 하였으나, 반승(飯僧)17705) 하는 혐의에 가까우므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건대 전에도 큰 공사가 있을 적에는 다 음식을 공급하였다. 지금 중도 공사를 위해 참가하였으니 명색은 비록 중이나 사실은 역도(役徒)이므로 그들에게 공급한다 하여도 반승의 경우와는 다르다. 목은 쌀 및 모주(母酒)17706) 와 소금·간장 등은 있어도 쓸데가 없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도청(都廳)에 보내 나누어 공급하게 하라.”</p>	<p>○辛丑/傳于政院曰：“犬項役僧，多至三千餘名。初欲飼之，而近於飯僧，故不爲矣。今更思之，前者有大役，則皆飼之。今來之僧，以役事來到，則名雖爲會，其實乃役徒也。雖飼之，非飯僧類也。久陳米及母酒、鹽醬等物，雖有之，無所用。其令該司，送于都廳。分飼之。”</p>
<p>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3월 11 일(병인) 1번째기사</p>	<p>좌의정 김안로가 말미를 받아 함창(咸昌)으로 내려가니, 도승지 조인규(趙仁奎)로 하여금 강변(江邊)에 나가 선은주(宣醞酒)를 하사하게 하였다.</p>	<p>○丙寅/左議政金安老受由歸咸昌，命都承旨趙仁奎，宣醞江頭。</p>
<p>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3월 21 일(병자) 1번째기사</p>	<p>반석평(潘碩枰)을 호조 참판에, 남세건(南世健)을 승정원 도승지에, 김희열(金希說)을 좌승지에, 황기(黃琦)를 홍문관 전한에, 진복창(陳復昌)을 봉상시 주부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안로가 권세를 휘두를 때 이팽수(李彭壽)가 봉상시 참봉이</p>	<p>○丙子/以潘碩枰爲戶曹參判，南世健爲承政院都承旨，金希說爲左承旨，黃琦爲弘文館典翰，陳復昌爲奉常寺主簿。【史臣曰：“當安老擅權之日，李彭壽爲奉常寺參奉，知安老好(狗灸) [狗</p>

	<p>었는데, 김안로가 개고기 구이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날마다 개고기 구이를 만들어 제공하며 마침내 김안로의 추천을 받아 청현직(淸顯職)에 올랐다. 그 뒤 진복창이 봉상시 주부가 되어서도 개고기 구이로 김안로의 뜻을 맞추어 온갖 요사스러운 짓을 다 하는가 하면, 매번 좌중(座中)에서 김안로가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실까지 자랑삼아 설명하였으나 오히려 크게 쓰여지지 못하였으므로, 남의 구미(口味)를 맞추어 요행을 바라는 실력이 팽수만 못해서 그러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p>	<p>炙],日以(狗炙) [狗炙] 啗之。 竟買安老之薦, 列於淸顯。 復昌繼爲主簿, 又以(狗炙) [狗炙], 諂悅其意, 極盡妖媚, 每於座上, 誇說安老, 能食狗肉之狀, 猶未見顯用。 其適口巧中之能, 人或謂未及彭壽而然也。”】</p>
<p>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4월 8일 (임진) 4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기를, “겸사복(兼司僕) 조천손(趙千孫)이 멧돼지를 잡아와 바쳤으니 술을 내리고 궁방(弓房)17739) 으로 하여금 삼향 전죽(三鄉箭竹) 40개를 지급하게 하라. 바친 멧돼지는 사용원으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라.</p>	<p>○傳于政院曰: “兼司僕趙千孫, 獲猪而來獻。 其令賜酒, 而使弓房, 給三鄉箭竹四十箇。 所獻之猪, 則令司饗院處之可也。</p>
<p>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4월 13일(정유) 1번째기사</p>	<p>사슴 2마리가 송례문 바깥 근처에까지 이르니, 근처에 사는 사람의 사노(私奴)인 강석(姜石)과 김대(金大) 등이 1마리를 잡아다 바쳤다. 이에 전교하였다. “사슴은 사용원(司饗院)에 내리고, 그들에게 술을 내리고 제용감(濟用監)에게 무명을 내리게 하라.”</p>	<p>○丁酉/有二鹿, 至崇禮門外地邊, 近處人私奴姜石、金大等, 捉一口來獻, 傳曰: “以鹿下于司饗院, 饋其人酒, 令濟用監給緜布。”</p>
<p>중종 81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5월 12일(병인) 5번째기사</p>	<p>그리하여 심언광이 1등을 하였고 활쏘는 일도 끝났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선운(宣醞)을 끝낸 뒤에 이름을 불러 상을 주되, 심언광에게는 숙마(熟馬) 1필을, ...</p>	<p>於是彥光居首, 而射事亦畢。 傳于政院曰: “畢宣醞後, 呼名賜給。” 彥光熟馬一匹 ...</p>
<p>중종 82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7월 4일 (정사) 1번째기사</p>	<p>대간에게 호초(胡椒)17804) 3두(斗)씩을 내렸다.</p>	<p>○丁巳/賜臺諫胡椒各三斗。</p>
<p>중종 82권, 31년</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甲申朔/傳于政院曰: “前者齊陵、英</p>

<p>(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8월 1일 (갑신) 1번째기사 타락이 폐단이라 하여 그만두게 하다</p>	<p>“지난번 제릉(齊陵)과 영릉(英陵)에 거동할 때 타락(駝酪)이 폐단이 된다고 하여 그만두게 하였는데 이번에도 그만두라.”</p>	<p>陵行幸時，以駝酪爲有弊，故除之。今亦不進可也。”</p>
<p>중종 82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9월 13일(을축) 1번째기사</p>	<p>“어제의 화재를 보니 매우 놀랍다. 중외(中外)의 재변이 모두 비상하다. 대열은 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때에 어찌 군사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내 뜻도 경들과 같으니 대열 강무하는 일은 중지하라고 각도에 효유하라. 화재를 당한 사람은 지극히 딱하니 미면(米麪)을 지급할 것을 어제 이미 해조에 일렀다.</p>	<p>“昨觀火災，至爲駭愕，中外災變，皆爲非常。教閱雖不可廢，如此之時，豈宜興師動衆？予意亦與卿等同。卽停大閱講武，且諭諸道。被火人民，至爲可矜，米麪題給事，昨已言于該曹，</p>
<p>중종 82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10월 23일(을사) 1번째기사</p>	<p>이번 일도 은혜(恩禮)에 관계되는 것이요, 시초부터가 잔단 일이 아닙니다. 요사이 듣기로는 사옹원에서 지공하는 것이 차츰 전만 못하여 재상들이 종일 입궐하였을 때에도 먹을 수 없는 추악한 음식으로 대접하니 배고플 수 밖에 없습니다. 제조가 검속하는 것은 지당한 일인데, 이것을 인연하여 사송(賜送)을 감소하라고 청한 것은 상의 노여움을 격동시키려 한 것입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어찌 찬물(饌物)의 많고 적은데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때로 물품이 정결하지 못하면 검속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폐조(廢朝)가 홍문관 관원들을 죄주면서 ‘너희들이 「황각(黃角)17880)은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이것은 임금의 은혜를 박하게 여긴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큰 죄를 가했습니다.</p>	<p>此事亦關於恩禮，初非細事。近聞司饗院支供之事，漸不如古，宰相終日入闕，若以麤惡不可食之物，而饋之，則不能無飢矣。提調之檢舉宜矣。因此而請減賜送者，欲激上怒也。下人豈可以饌物之豐薄，爲心哉？或因其不潔，而檢舉，則有矣。廢朝罪弘文館官員曰：‘汝等云：「黃角非人所食。」是以君恩爲薄也。’仍加以大罪。</p>
<p>중종 83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 (嘉靖) 15년) 12월 9일(경인) 1번째기사</p>	<p>김근사가 의논드리기를, “세자가 천사를 접대하여 연향할 때에 쓰는 상(床)을 천사는 붉은 것으로 하고 세자는 검은 것으로 하는 것은 준위(尊位)에 대하여 혐의가 되나, 손님을 공정하는 의리로는 검은 것을 쓰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또 영접 도감(迎接都監)의 낭관을 전에는 혹 정3품 또는 4품인 인원으로 차출하였는데, 이번에</p>	<p>○庚寅/金謹思議：“世子與天使接待宴享時所用床，天使則以朱，而世子則用黑，乃嫌於尊位，而敬客之義，雖用黑，似爲無妨。且迎接都監郎官，前者或以正三品及階四品人員差之，今者無正</p>

는 정3품인 인원은 없고 4품 이상이 사람이 4원(員)뿐이므로 보기에 매몰스러우니, 수직(守職)17924) 4품인 인원에게는 잠시 은대(銀帶)를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원접사 종사관은 전에도 벼슬이 낮은 사람을 차출하여 보냈는데, 이번에는 홍춘경(洪春卿)이 4품으로서 따라갔으니, 다른 인원은 품계를 가차(假借)할 것 없겠습니다. 또 설치하는 물건의 가장자리를 푸르게 물들이는 일은 매우 다급하여 장만하기 어려우므로 자색으로 대용하여도 괜찮을 듯하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을 듯하니, 검은 빛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김안로가 의논드리기를,

“종친과 백관이 잔치를 베풀 때에 천사의 상은 주칠(朱漆)한 것을 쓰고 세자의 잔치상은 검은 것을 쓰면 예에 어그러지는 듯하나, 세자의 상은 검더라도 천사는 붉은 것을 쓰면 일의 체모에 합당하겠습니다. 연향할 때에 사옹원(司饗院)의 가랑관(假郎官) 등이 어전(御前)에서 손님을 접대하는데 각대(角帶)를 띠고 임사(任使)17925) 하면 모양이 없을 듯하므로 임시로 은대를 착용하나, 영접 도감·원접사 종사관 같은 사람들이 그 벼슬에 따라 은대를 띠기도 하고 각대를 띠기도 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러하니, 은대를 가차할 것 없겠습니다. 설치하는 물건의 가장자리를 자색으로 하는 것은 금하는 색이 아닐지라도 천사가 보기에 매우 보기 싫을 것이니 검게 물들인 것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박하여 제때에 미치지 못하므로 어쩔수 없는 사정이라면 차라리 검은 빛을 물들이는 것이 자색보다는 나을 듯합니다.”

하고,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종친과 백관이 청하여 잔치할 때에 천사의 상을 이미 주칠한 것을 썼으면, 세자가 청하여 잔치할 때에만 흑칠한 것을 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모두 주칠한 것을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전에는 천사가 왔을 때에 영접 도감의 낭관과 원접사 종사관을 모두 벼슬이 높은 인원으로 차출하였는데, 이번에는

三品人員，而四品以上者，只四員而已，於瞻視，果爲(理沒) [埋沒]。守職四品人員，姑假給銀帶似當。遠接使從事官，前者亦以秩卑者差遣，而今則洪春卿，以四品隨去，他員不必段(階) [頭]。目鋪陳緞青染事，甚忙窘，(栗) [果] 爲艱備，木紅代用似可。然瞻視似不合，皂色似當。” 金安老議：“宗親百(安) [官] 設宴時，天使床皆用朱漆，而世子宴享床，則皆用黑，似異於禮，世子床雖黑，天使則用朱，允合事體。宴享時司饗假郎官等，御前接賓，帶角任使，似無貌彩，故假着銀帶矣，如迎接都監遠接使從事官，隨其職秩，或銀或角，自古以然，不必假帶。輔陳緞木紅，雖非禁色，天使所見，至爲麤惡，不可不用黑染。若遑迫不及，出於不得已，則寧染皂色，似優於木紅。” 尹殷輔議：“宗親百官請宴時，天使床既用朱染，則世干請宴時，獨用黑漆未安，竝用朱漆似當。在前天使時，迎接都監郎官，及遠接使從事官，皆以秩高人員差之，今則率多秩卑，角帶太半，瞻視(理設) [埋沒]。雖四品以下官，竝假着銀帶爲當。天使鋪陳緞，在前例用青染，今者該司所儲青染絕乏，頭目所給衣服，至分付私染母染之云。在所隨宜。且紅色亦非中朝所禁，如前後大

	<p>거의 다 벼슬이 낮아서 각대가 반을 넘으므로 보기에 매몰하니, 4품 이하의 관원이라도 모두 임시로 은대를 착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천사가 보는 곳에 설치하는 물건의 가장자리를 전례로 보면 푸르게 물들인 것을 썼는데, 이번에는 해사(該司)에 저장된 푸르게 물들인 것이 떨어졌으므로 사사로이 물들이는 여인들에게 나누어주어 물들이게까지 하였다 하니, 편의한 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또 붉은 빛은 또한 중국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니, 천사가 보는 앞뒤 대청(大廳) 같은 곳을 제외한 두목의 각방(各房)에 설치하는 것의 가장자리는 자색을 써도 무방하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자색을 물었는데, 어찌하여 모두 검은 빛을 말하는가? 세자가 잔치할 때에는 전례대로 흑칠한 것을 쓰는 것이 옳으나, 설치하는 것의 가장자리는 자색의 것을 써도 괜찮겠다. 원접사 종사관은 천사가 보는 곳에서 가깝지 않으나, 사용원의 가낭관은 매우 가까우니, 임시로 은대를 착용해야 하겠다.”</p> <p>하였다. 정원이 회계(回啓)하기를, “검은 빛을 거론한 것을 물었더니, 전교는 없었지만 스스로 그 뜻으로 의논하였다 합니다.”</p> <p>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p>	<p>廳天使所見外，頭目各房鋪陳縵，用木紅無妨。” 傳曰：“昨日以木紅問之，何以并論皂色耶？世子宴時，依前例用黑漆可也，鋪陳縵，用木紅亦可。遠接使從事官，則天使所見不近，司饗院假郎官，則甚爲親近，可假着銀帶矣。” 政院回啓曰：“皂色學論事問之，則雖非傳教，而乃自用其意，議之矣。” 傳曰：“知道。”</p>
<p>중종 83권,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嘉靖) 15년) 윤12월 10일(신유) 1번째기사</p>	<p>“당고가 나왔을 때에 사냥하려다가 하지 않은 까닭은 납육(臘肉)17964) 과 정조(正朝)의 물선(物膳)이 쓰기에 넉넉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민폐를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외방(外方)에서 봉진(封進)하는 일차잡물(日次雜物)17965) 은 다 마른 고기이고 날것이 없으므로 사냥하여 쓰려 하였다. 다시 생각하건대 전에는 천사가 백패(白牌)에 따라서 곧 나왔으나, 이번에는 백패가 다시 나왔으니 【백패에 처음에는 사신이 12월 9일에 북경(北京)을 떠난다고 하였다가 16일에 떠난다고 고쳤다.】 그 오는 것을 아직 믿을 수 없다. 올 시기가 멀었으니, 잔치에 쓸 날것을 외방에서 올려보내게 하고 사냥은 하</p>	<p>“唐臯出來時，欲爲踏獵，而不爲者，以其臘肉，及正朝物膳，足用故也。今亦民弊不爲不慮，然外方封進日次雜物，皆乾肉，而無生物，故欲獵而用之耳。更計之，前日則天使隨白牌卽出而來，今則白牌更出，【白牌，初以天使十二月初九日北京發，改以十六日離發。】其來未可信也。來期甚遠，宴</p>

	지 말아야 한다.”	用生物，可令外方上送，而踏獵則可勿爲也。”
<p>중종 83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2월 18 일(정묘) 2번째기사</p>	<p>정원이 아뢰기를, “두목의 수가 매우 많은데 두목이 다 전(殿)에 올라가 상께서 내리시는 술잔을 받으면, 매우 번거로와 주례(酒禮)가 이루어지지 못할 듯합니다. 사옹원에 계하(啓下)된 단자를 보니 ‘별두목(別頭目)에게는 승지를 시켜서 선주(宣酒)18058) 하고 잡두목(雜頭目)에게는 사옹원 제조 등을 시켜서 선주를 나누어 행한다.’ 하였는데, 이 규례에 따르는 것이 온편할 듯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政院啓曰：“頭目之數甚多。頭目皆上殿，親受賜杯，則似甚煩擾，酒禮不得成矣。今觀司饗院啓下單子，別頭目則令承旨宣酒，雜頭目則令司饗院提調等，分行宣酒云。今依此例似便。” 傳曰：“如啓。”</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3월 2일 (신사) 2번째기사</p>	<p>김미가 아뢰었다. “신의 생각에, 술 대접하는 예를 의주에서 거행한 예와 서로 틀리게 한다면 예모에 있어서 손상됨이 있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의주에 나갔던 영위사 오결(吳潔)이 왔을 적에 그곳에서 술 대접한 예를 자세히 물어서 배웠습니다. 천사가 정주에 들어와서 잔치를 차렸을 때 먼저 선위사가 술을 한 잔씩 모두에게 돌리고서 선위(宣慰)하는 말을 마친 뒤에, 신과 원접사가 차례로 술을 돌렸는데, 천사가 술잔 돌리는 사람에게, 처음 술잔을 들 적에 정사(正使) 앞에서 읊을 하고 또한 부사(副使) 앞에서도 읊을 한 다음 다시 정사의 앞으로 나아가 읊을 하고 올리게 하였습니다. 이 예가 의주에서 행한 주례와 달랐는데 통사에게 물어 보니 ‘오늘부터 처음으로 고친 것이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 예만 같지 않았고 그 나머지는 대강 같았는데, 대체로 예모가 공경스럽고 근신하여 거만한 태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신과 원접사가 술잔을 돌릴 때 천사가 또 과반(果盤)을 가져오게 했는데, 통사들의 말이 ‘이도 역시 특별히 공경하고 근신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고 했습니다.”</p>	<p>金慶曰：“臣恐酒禮，與義州所行之禮相違，則有傷禮貌，故義州迎慰使吳潔出來時，詳問其酒禮而學之矣。及天使入定州，設宴之初，宣慰之盃，連進一盃，而宣慰畢後，臣與遠接使，以次行酒。天使令行酒者，初執杯，揖正使前，又揖副使前，復就正使前，揖而進。此禮與義州之酒禮不同，問于通事則曰：‘自今日始改也。’云，唯此禮不同，而其餘，大概相同也。大抵禮貌敬謹，不見倨傲。臣與遠接使行酒時，天使亦命進果盤。通事等曰：‘此亦別致敬謹之意也。’”</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3월 9일 (무자) 1번째기사</p>	<p>상이 우비를 갖추고 모화관(慕華館)에 행행하였는데 【조사(詔使)를 영접하기 위해서이다.】 사신이 비 때문에 오지 않았으므로, 상이 모화관의 서각(西閣)에 나아가 종재(宗宰)와 시신(侍臣)들에게 음식을 내리고 신시(申時)에 대궐로 돌아왔다.</p>	<p>○戊子/上具雨備, 幸慕華館。【迎詔也。】天使以雨不來, 上御館西閣, 饋宗宰侍臣, 申時還宮。</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3월 10일(기축) 5번째기사</p>	<p>사용원 제조 등이 과반(果盤)을 전하에게 올리고 낭관(郎官)【사용원 낭관.】은 과반을 두 사신에게 나누어 올렸다. 제조 세 사람이 찻잔을 받쳐 들고 늘어 서자 상이 일어서니 두 사신은 일어서서 서로 다가갔다. 제조가 각자에게 찻잔을 올리니 상이 정사의 앞으로 나아가 찻잔을 바꾸고 또 부사의 앞으로 나아가 찻잔을 바꾸었는데 찻잔을 바꿀적에 각자 공수(拱手)하였다. 찻잔 바꾸기가 끝나자 각자 자리로 나아가 찻잔을 들고서 서로 다가앉아 차를 마셨다. 과반을 각각 올리니 젓가락을 들어 서로 과일을 맛본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사용원 제조가 전하의 앞으로 나아가 각자의 빈 찻잔을 받아 내왔다.</p>	<p>司饗提調等, 進果盤于殿下, 郎官【司饗院郎官。】分進果盤于兩使, 提調三人, 奉茶鍾列立, 上起立, 兩使亦起立相就。提調各進茶鍾, 上就正使前換鍾, 又就副使前換鍾。換鍾時, 各拱手換鍾畢, 各就座舉鍾相屬。飲茶訖, 果盤各進, 舉筋相示嘗果。司饗提調進殿下前, 各受虛鍾而出。</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3월 10일(기축) 9번째기사 태평관에서 천사에게 하마연을 베풀다</p>	<p>상이 말하기를, “밤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종자(從者)들이 모두 술잔을 다 비우는지 알고 싶으므로 기둥 안으로 불러들여 앉히고 대접하겠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였다. 두 사신의 가인 각 5명이 주정(酒亭)18110)의 북쪽에 나아가 꿇어 앉고 제조가 다섯 잔씩을 은쟁반에 놓아 올리니, 상이 친히 쟁반 한 쪽을 잡고 승지에게 주어 대접하도록 하였다. 두목들이 다 마시고 나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가자, 두 사신이 통사를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들의 가인들을 각별히 몸소 대접하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통사를 보내어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날씨가 더우니 대인들께서 부채를 부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승지들을 나누어 보내어 두 사신에게 각각 취우선(鷺羽扇)을 증정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上曰: “夜已昏暗, 欲知從者盡爵與否, 招坐于楹內饋之。” 兩使曰: “多謝多謝。” 兩使家人各五人, 進跪于酒亭之北, 提調以五盞, 置于銀盤以進, 上親執盞盤隅, 以授承旨饋之。頭目飲訖, 叩頭而出。 兩使遣通事曰: “俺等家人, 各別親饋, 多謝多謝。” 上遣通事告于兩使曰: “日候已暖, 請大人揮扇。” 分遣承旨, 贈鷺羽扇于兩使。 兩使曰: “殿下亦秉扇乎? 俺等受之未安, 然持歸, 他日如見殿下故受之。多謝多謝。” 上令內侍進扇, 而使通事告于兩使曰: “寡人亦揮扇。” 兩使相顧而笑, 舉扇揮之曰: “甚好甚好。”</p>

	<p>“전하께서도 부채를 가지셨습니까? 우리들이 받기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가면 뒷날 전하를 뵙는 것과 같을 것이므로 받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p> <p>하므로, 상이 내시들을 시켜 자신에게도 부채를 가져오게 하고, 통사를 시켜 두 사신에게 고하기를,</p> <p>“과인도 부채를 부치겠습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서로 돌아보고 웃으며 부채를 부치면서 말하기를,</p> <p>“매우 좋습니다.”</p> <p>하였다. 상이 통사를 보내 고하기를,</p> <p>“배신을 시켜 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p> <p>하니, 정사가 이응성에게 물기를,</p> <p>“이른바 배신은 어떤 관원인가.”</p> <p>하니, 이응성이 대답하기를,</p> <p>“영의정이니 곧 이 나라의 수상(首相)입니다.”</p> <p>하였다. 정사가 말하기를,</p> <p>“의주를 보건대 ‘세 번째의 잔은 종친(宗親)이 돌린다.’고 했는데, 지금 영의정이 돌린다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부사에게 말해 보시오.”</p> <p>하여, 부사에게 물었더니 부사가 말하기를,</p> <p>“과연 의주와 다르다. 정사의 말이 옳으니 정사에게 도로 가서 고하십시오.”</p> <p>하였다. 정사가 대답하기를,</p> <p>“당신이 우리들의 뜻을 전하께 가서 고하고 오시오.”</p> <p>하므로, 상이 답하기를,</p> <p>“많지 않은 종자(宗子)들이 마침 모두 병 중에 있으므로 술을 올리지 못하겠기에 영상으로 대신하려는 것입니다.”</p> <p>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上遣通事告曰：“請令陪臣行酒。”正使問應星曰：“所謂陪臣何官?”應星答曰：“領議政，乃一國之首相。”正使曰：“見儀註，則第三爵，乃宗親行酒，而今領議政行酒云，未知其由。爾告副使前。”副使曰：“果與儀註不同。正使之言，正是矣。汝回告正使前。”正使答曰：“汝將俺等之意，回告殿下而來。”上答曰：“不多宗子，適皆有病，故不能行酒，代以領相。”兩使曰：“領議政，一國首相，然亦陪臣，我等立受其酒，則殿下亦起立勞動，心甚未安，我等欲坐受而起敬爲意。汝將此意，回報殿下而來。”上答曰：“陪臣行酒，坐受例也。願大人坐受。”兩使曰：“恐殿下亦起動，故如此云。”領議政金謹思，行酒如儀畢，進初味請筋，兩使請停女樂。上答曰：“國俗所用，去此則禮不獨行，願大人勿却。”兩使曰：“從殿下之命而爲之。”天使遣通事曰：“國王盡一日勞動，俺等亦氣甚困疲，止酒何如?”上曰：“禮未完。陪臣行酒者多，願大人勿止酒。”兩使又遣通事告曰：“姑待一人行酒。俺等當欲回杯。”左議政金安老行酒</p>
--	---	---

	<p>“영의정은 한 나라의 수상이기는 하나 역시 배신입니다. 우리들이 일어서서 술을 받게 된다면 전하께서도 일어서느라 수고로울 것이므로 마음에 매우 미안합니다. 우리들이 앉아서 받겠지만 더욱 공경할 마음을 가질 생각이니, 당신이 이런 뜻으로 전하께 가서 아뢰고 오시오.”</p> <p>하니, 상이 답하기를,</p> <p>“배신이 술을 올릴 적에는 앉아서 받는 것이 준례이니 대인들께서 앉아서 받기를 바랍니다.”</p> <p>하였는데,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전하께서 기동하시게 될까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p> <p>하였다. 영의정 김근사가 의식대로 술을 돌리고 나서 초미(初味)18111) 를 올리고 들기를 청하였다. 두 사신이 여악을 정지하기를 청하므로 상이 답하기를,</p> <p>“나라의 풍속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치워 버리면 예가 초라하여 거행할 수 없으니 대인들께서 물리치지 말기 바랍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전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p> <p>하였다. 천사가 통사를 보내어 말하기를,</p> <p>“국왕께서 하루 종일 수고하셨고 우리들 역시 매우 피곤하니 술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p> <p>“예를 마치지 못하였고 술을 대접해야 할 배신이 많으니 대인들께서 술을 그만 두지 말기 바랍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또 통사를 보내어 고하기를,</p> <p>“우선 한 사람만 술을 돌리게 하고 우리들이 잔을 돌리고 싶습니다.”</p> <p>하였다.</p>	<p>如儀。兩使曰：“今已夜闌，俺等固當回杯。”上答曰：“厭厭夜飲，不醉無歸。”今日初陪兩大人，心欲從容以話，願大人姑待禮完。”正使曰：“既見君子，云何不樂？”多謝多謝。”副使曰：“《詩》云：‘愷悌君子，莫不令儀。’又云：‘既醉而出，并受其福。’三爵不識，矧敢多又。”今日既見殿下威儀之美，酒亦已行三爵，俺等皆醺洽矣。”上答曰：“我有旨酒，嘉賓式燕以又。”多謝多謝。”正使曰：“俺也不能解文，暫解寫字，歸時當寫數三字，以進殿下。”副使曰：“俺則既不解文，又不能解字，然亦豈無心乎？”上答曰：“詩云：‘心乎愛矣，何不謂矣。中心藏之，何日忘之？’兩大人身雖歸於朝廷，若遺手跡於弊邦，則寡人如見兩大人，而思慕之矣。今日陪詔而來，若非聖帝恩命，何緣得見清儀？多感多感。”正使曰：“俺等到此，亦是天幸。一別之後，再逢難期，但兩地之思耳。所謂雲山千里，明月一心者也。”副使曰：“殿下事大之誠至此，皇天保佑，與大明同終始，同休戚，福祿無窮矣。”上曰：“兩大人之教至此，</p>
--	---	---

	<p>좌의정 김안로가 의식대로 술을 돌리고 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잔을 돌려야 됩니다.” 하므로, 상이 답하기를 “《시경》에 ‘흐뭇한 술자리가 밤에 벌어진으니 취하지 않은 돌아가지 못하리라. [厭厭夜飲 不醉無歸]’ 하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두 대인을 모셨으므로 조용히 담화를 나누고 싶으니, 대인들께서는 예를 마칠 때까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시경》에 ‘군자를 만났으니 어찌 즐겁지 않으리. [既見君子 云何不樂]’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부사가 말하기를, “《시경》에 ‘즐겁고 편안한 군자들은 모두가 아름다운 거동을 하시네. [豈弟君子 莫不令儀]’ 하였고, 또 ‘흠뻑 취하여 일어서니 모두 복을 받으리라. [既醉而出 竝受其福]’ 하였고 ‘세 잔이면 곧드레 취하는 걸 하물며 더 마시라 권하겠나. [三爵不識 矧敢多又]’ 했습니다. 오늘 이미 전하의 아름다운 위의를 보았고 또한 술도 이미 세 잔씩을 들어 우리들은 모두 훈훈하게 취해 흡족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시경》에 ‘내게 맛있는 술 있어 좋은 손님 잔치하며 즐기시네. [我有旨酒 嘉賓式燕以又]’ 했습니다. 대단히 감하합니다.” 하였다. 정사가 말하기를, “나는 글을 할 줄은 모르지만 글씨는 조금 쓸 줄 아니, 돌아갈 적에 두서너 글자를 써서 전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부사가 말하기를, “나는 글도 할 줄 모르고 또 글씨도 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어찌 마음</p>	<p>不勝感激，不勝感激。” 兩使曰：“吾等欲回杯。” 卽起立，殿下亦起立相就前。 正使執杯，揖進于殿下，殿下答揖，而執杯，與正使揖，正使答揖。 殿下又與副使揖，副使答揖。 殿下還與正使揖，正使答揖執臺。 殿下舉杯訖，授虛盞于提調。 殿下揖，正使答揖。 請果如儀。 上又請行酒曰：“雖薄酒，請更進于兩大人。” 正使曰：“瓠葉兔首，可酬王公，況今日盛宴乎？” 副使曰：“殿下之酒，旨且多，既又過飲，又請行酒，多謝多謝。” 上答曰：“兩大人俯見寡人之誠，不辭，多謝多謝。” 上執盞勸曰：“滿酌不須辭。” 正使曰：“詩云：‘既見君子，錫我百朋。’ 殿下之誠至此，有醇之酒，不覺至醉。” 上曰：“多謝多謝。” 正使舉酒盡曰：“相逢不飲酒，如此良夜何？多承國王盛意，勉強飲此數杯。” 副使曰：“今日陪殿下，多飲旨酒，如在春風中。” 上曰：“多謝多謝。” 上既行酒訖，又行完杯禮。 兩使令頭目，放砲於簷下。 上曰：“今見貴火，多感多感。” 各謝揖而罷。 兩使送至于中門外，請上乘輜。 上請兩使入內，兩</p>
--	---	--

	<p>이야 없겠습니까?”</p> <p>하니, 상이 답하기를,</p> <p>“《시경》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사랑하거늘 어찌 고하지 않으리. 마음 속에 품고 있거늘 어찌 하룬들 그를 잊으리. [心乎受矣 遐不謂矣 中心藏之 何日忘之]’ 했습니다. 두 대인께서 몸은 비록 조정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만일 수적(手跡)을 폐방(弊邦)에 남겨주신다면 과인이 두 대인을 뵈는 것처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조서를 받들고 오셨는데, 만일 성명하신 황제의 은혜스러운 명이 없었다면 무슨 인연으로 모습을 뵈겠습니까? 한 없이 감격스럽습니다.”</p> <p>하였다. 정사가 말하기를,</p> <p>“우리들이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천행(天幸)입니다. 한 번 작별한 다음에는 다시 만나기를 기필하기는 어렵고 다만 두 지역에서 생각만 하게 될 것이니, 이른바 ‘구름 낀 산은 천 리나 되지만 마음은 하나의 밝은 달 같다.[雲山千里 明月一心]’고 한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p> <p>하고, 부사가 말하기를,</p> <p>“전하께서 사대하는 정성이 이러하시니 황천(皇天)이 보호하고 돕게 되어 우리 대명(大明)과 시종(始終)을 같이하고 휴척(休戚)을 함께 하며 한 없는 복록을 누리실 것입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p> <p>“두 대인의 말씀이 이러하시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p> <p>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우리들이 잔을 돌리고 싶습니다.”</p> <p>하고, 즉시 일어나니 전하도 일어나 서로 앞으로 다가섰다. 정사가 잔을 들어 읊하고 전하께 올리자 전하가 답음하고 잔을 들어 정사에게 주며 읊하니 정사가 답음하였다. 전하가 또 부사에게 주며 읊하니 부사가 답음하였고, 전하</p>	<p>使固請乘轎。上乘轎至大門外，遣通事請大人入館，舉袖而出。上入御室，少頃，車駕還宮，夜已四更三點矣。使承旨黃憲，呈人情物件單子。</p>
--	--	--

	<p>가 도로 정사에게 주며 읍하니 정사가 답음하고 잔대를 들었다. 전하께서 잔을 들어다 마시고 빈 잔을 제조에게 주었다. 전하께서 읍하니 정사가 답음하고 의식대로 과일을 들기를 청했다. 상이 또 술 마시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비록 박주이기는 하지만 다시 두 대인께 올리고자 합니다.”</p> <p>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호엽(瓠葉)·토수(兔首)18112) 로도 왕공(王公)과 수작(酬酢)할 수 있는 법인데 하물며 오늘과 같은 성대한 잔치이겠습니까?”</p> <p>하고, 부사가 말하기를, “전하의 술이 맛있고도 많아 이미 많이 마셨는데 또 술을 마시기를 청하니 대단히 감사합니다.”</p> <p>하였다. 상이 답하기를, “두 대인께서 과인의 성의를 곱어 보고 사절하지 않으시니 매우 감사합니다.”</p> <p>하고, 상이 잔을 들어 권하기를, “가득한 잔을 사양하지 마십시오.”</p> <p>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시경》에 ‘군자를 만나니 많은 재물이 들어온 듯[既見君子 錫我百朋]’ 했습니다. 전하께서 성의가 이러하시어 좋은 술이 있으므로 나도 모르게 몹시 취했습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p> <p>하였다. 정사가 술잔을 들어 다 마시고서 말하기를, “서로 만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런 좋은 밤에 어찌할 것입니까? 국왕의 융숭하신 뜻을 한없이 받았기에 억지로 이처럼 여러 잔을 마셨습니다.”</p> <p>하고, 부사가 말하기를, “오늘 전하를 모시고 맞진 술을 많이 마시고 나니 마치 봄바람 속에 있는 듯</p>	
--	---	--

	<p>합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미 술 마시기를 마치고 나서 또한 종배(終杯)하는 예를 행하니, 두 사신이 두목들을 시켜 처마 밑에서 포(砲)를 쏘게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오늘 귀국의 화포(火砲)를 보게 되어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하고, 각기 사례하는 읍을 하고 파하였다. 두 사신이 중문 밖까지 전송하며 상께 가마에 오르기를 청하므로, 상이 두 사신에게 안으로 들어가기를 청하니 두 사신이 굳이 가마에 오르기를 청했다. 상이 가마를 타고 대문 밖에 이르러 통사를 보내 대인들에게 태평관으로 들어가기를 청하며 손을 들어 보이고 나왔다. 상이 어실로 들어갔다가 조금 지나 거가를 타고 대궐로 돌아왔는데 밤이 이미 사경(四更) 삼점(三點)이었다. 승지 황헌을 시켜 정표(情表)의 물품 단자를 바치게 하였다.</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3월 11 일(경인) 7번째기사</p>	<p>상이 술을 대접하도록 명하니, 사옹원(司饗院) 관원 두 사람이 과반(果盤)을 들고 두 두목의 곁에 서고 도제조(都提調)가 옥술잔을 전하게 올렸다. 전하게서 잔을 들어 승지(承旨)에게 주자 승지가 그 잔을 받아 두목들에게 한 잔씩 대접하였다. 두목들이 재배하고 나갔다.</p>	<p>上命饋酒。司饗院官員，分執果盤于兩頭目之傍而立，都提調進玉杯于殿下，殿下舉杯而授承旨，承旨捧饋頭目各一杯，頭目等再拜而出。”</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3월 11 일(경인) 10번째기사 천사에게 익일연을 베풀고 예물을 주다</p>	<p>과반(果盤)을 내오자 환다례(換茶禮)를 의식대로 거행한 다음, 상이 통사를 보내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 여악을 차리고 과반(果盤)을 올렸다. 상이 술잔 대접을 의식대로 하고 나니, 【의식은 하마연(下馬宴) 때의 것과 같았다.】 천사가 통사를 보내 전하게 말하기를,</p>	<p>進果盤，行換茶禮如儀訖。上遣通事告于兩使曰 … 陳女樂，進果盤，上行酒如儀畢。【儀與下馬宴儀同。】天使遣通事告于殿下曰：“酒曠日暖，請揮扇。殿下先</p>

	<p>“술 기운이 훈훈하고 날씨도 따뜻하니 부채를 부치겠습니다. 전하께서 먼저 부치신다면 우리들도 부치고자 합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p> <p>하였다. 차례로 음식상이 들어오고 걸드리는 것도 각각 의식대로 올렸으며 꽃도 의식대로 올렸다. 상이, 세자가 술 대접하기를 청하여 의식대로 하고 또 종재(宗宰)가 술 대접하기를 청하여 해안군(海安君)18124) 이 술을 대접했다. 상이 통사를 시켜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왕자도 역시 배신이니 대인들께서 앉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그가 비록 배신이기는 하지만 곧 국왕의 아들인데 우리들이 어찌 감히 앉아서 받겠습니까?”</p> <p>하였다. 해안군이 의식대로 술을 따라 대접하고 영의정 김근사, 좌의정 김안로, 우의정 윤은보가 차례차례 의식대로 술 대접을 마쳤다.</p> <p>...</p> <p>두 사신이 통사를 보내 전하께 말하기를, “우상이 술을 준 다음에는 회비(回杯)하고서 그만 두고 싶습니다. 어젯밤의 잔치도 매우 피로했는데 오늘도 오래 잔치를 하였으니 우리들만 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도 매우 피로하실 것입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과인이 두 차례 술을 대접한 다음에 대인들께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p> <p>하였다. 두 사신이 일어나니 상도 일어났다. 정사가 술을 대접하면서 잔대를 잡고 전하께 말하기를,</p>	<p>揮，則俺等欲揮。” 上曰：“依命。”</p> <p>次進饌案，各助進如儀，進花如儀。</p> <p>上請世子行酒如儀，又請宗宰行酒，而海安君【崙。】行酒。 上使通事告于兩使曰：“王子亦是陪臣，請大人坐受。” 兩使曰：“此雖陪臣，乃親王之子，俺等安得坐受？” 海安君酌酒行禮如儀訖。 領議政金謹思、左議政金安老、右議政尹殷輔，以次行酒如儀畢。</p> <p>...</p> <p>兩使遣通事告於殿下曰：“右相行酒後，欲爲回杯而免之。 昨夜之宴甚勞，今日又久宴，非徒俺等欲休，殿下無乃甚勞乎？” 上曰：“寡人再行後，大人行之，未爲晚也。” 兩使起立，上亦起立。 正使行酒，執臺告于殿下曰</p>
--	---	--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3월 12 일(신묘) 5번째기사</p>	<p>식사 때는 통사를 시켜 원접사에게 말하기를 ‘일로(一路)에서 모두 석화(石花)를 제공하기에 서울에 가면 실컷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찌 하여 제공하지 않느냐?’하므로, 원접사가 답변하기를 ‘바닷가의 고을들이 서울과 멀어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인데, 배정한 고을을 지금 추궁하고 있다.’고 하였다 합니다. 관반(館伴)이 신으로 하여금 전계(轉啓)하도록 했습니다.</p>	<p>食時，使通事言于遠接使曰：‘一路皆供石花，意以謂到京，則必飫矣，今何以不供?’遠接使答云：‘海郡遠於京城，未及來矣。卜定郡縣，今方推之矣。’館伴使臣轉啓。</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3월 13 일(임진) 1번째기사</p>	<p>신이 제천정(濟川亭)에서 선위하는 예를 거행하려는데 과반(果盤)이 나오지 않기에 영접 도감(迎接都監)에게 물으니 ‘영접 도감에서는 다만 배 안에서 쓰는 것만 책임을 맡았다.’ 하고, 사옹원에 물으니 ‘사옹원에서는 다만 음식상만 마련했다.’고 하여 서로 미루느라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천사가 배에 오르기를 재촉한 뒤에 예빈시(禮賓寺)가 비로소 과반을 올려와, 신이 선운(宣醞)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매우 지연되었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소서. 천사가 배에 있는 동안 매우 즐거워 하였습니다. 잔치에 배석한 재상들과 두 편으로 나누어 투호(投壺)로 승부를 겨루어 상을 주고 벌주를 마시게 하였는데, 술을 반드시 잔이 빌 때까지 마시며 몹시 즐기다 과했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선운 때 과반을 담당한 관원들을 조옥에 내리어 추문하라.”</p>	<p>但臣於濟川亭上，欲行宣慰禮，而果盤不進，問于迎接都監則曰：‘都監只將舟中之辦。’問于司饗院則曰：‘司饗院只辦饌案耳’，相推移時，而天使促乘船後，禮賓寺始進果盤，臣得行宣醞。其事至爲緩慢，請令該司察之。天使在舟中樂甚，與陪宴宰相，分兩邊以投壺，角勝負，行賞罰杯，飲必倒盃，極歡而罷。”傳曰：“宣醞時，果盤該掌官員等，下詔獄推之可也。”</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3월 13 일(임진) 6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기를, “하마연 때에 내가 천사와 오랫동안 마주 서 있었는데도 과반(果盤)을 내오지 않았고, 술도 내오지 않았었다. 무릇 관원을 두는 뜻은 단지 자리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스리려는 것이다. 완만함이 이려하여 자못 관원을 둔 뜻이 없게 되었으니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관원들을 즉시 조옥(詔獄)에 내리고 그에 대한 죄는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정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근사, 【좌의정 김안로는 노병(老病)으로 예궐(詣闕)하지 못했음.】 우의정 윤은보가 명을 듣고 예궐 하니, 상이 사정전에서 인견(引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傳于政院曰：“下馬宴時，予與天使對立甚久，而不進果盤，且不進酒。凡設官之意，非但備位，欲以治事，而其緩慢至於如此，殊無設官之意。不可不痛治也。當該官員，卽下詔獄，而其罪則與大臣議定。”領議政金謹思、【左議政金安老，痛未詣闕。】右議政尹殷輔，聞命詣闕，上引見于思政殿。上曰：“今欲以改宗系事，言于天使，非無端也。正使職銜，有同修</p>

“이번에 종계(宗系) 고치는 일을 천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까닭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의 직함에 ‘동수대명회전(同修大明會典)’이란 명칭이 있으므로 내일 경회루에서 차리는 잔치 때에 언저리 말하여 떠보고 싶어서이다.” 하니, 김근사가 아뢰기를,
 “천사의 직함이 ‘동수대명회전’을 겸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종계의 일이야 알고 있겠습니까. 지금 시말을 자상하게 써서 주며 지성스럽고 간절하게 청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대명회전》을 다시 편찬하게 된 것도 다행이요, 그일을 맡은 사람이 오게 된 것도 역시 다행이니, 이번에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윤은보는 아뢰기를,
 “우리 나라가 종계 고치는 일을 비록 자주 주청하여 준허(准許)를 받기는 하였지만, 필시 한림원(翰林院)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간절한 성의를 보이며 사건의 시말을 들어 분명하게 말을 하여 청한다면, 거의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을 해준 다음에 다시 자상하게 써서 준다면, 천사가 중국조정에 돌아가 반드시 동료들에게 두루 보이며 특별히 의논할 것 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만일 글로 써서 준다면 자문(咨文) 쓰는 종이에 써주어야 할 것이다. 또 요사이 관사(官司)들이 모두 태만해졌다.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안되는데 하물며 천사를 접대하는 때이겠는가. 그러므로 천사가 왔을 때 조금이라도 태만하거나 완만한 일이 있으면 태형(笞刑) 10대 이상에 처함과 동시에 모두 파직한다는 것을 일찍이 법으로 세워 놓았는데도 온 관사들이 모두 법을 받들지 않는다. 사옹원(司饗院) 관원은 더욱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아 지난 하마연(下馬宴) 때에도 더디고 완만하게 하는 일이 많았다. 또 한강을 유람하는 날에는 선운(宣醞)하는 절차를 각사(各司)가 서로 미루느라 때

《大明會典》之號，故欲於明日慶會樓請宴時，微說其端以試之。” 謹思曰：“天使之職，兼帶同修《大明會典》，但我國宗系之事，豈得知之乎？今詳書首末以贈，而誠懇請之至當。《大明會典》之重修，幸也，掌其事者之來，亦幸也，今不可不請也。” 殷輔曰：“我國以改宗系事，雖數數奏請蒙準，而翰林苑必不得盡知之矣。今若大示惻隱之誠，以其事之首末，明言以請，則庶可從矣。且既言之後，又詳書以給之，則天使還中朝，必周示於同列，而別議之矣。” 上曰：“若欲書示，則書於咨文紙以贈，可也。且近來百司怠慢，雖在常時，已爲不可，而況於天使接待時乎？是以天使時，幸有怠緩之事，則答一十以上，並皆罷職，曾已立法，而百司皆不奉法，司饗院官吏，尤不畏忌。頃於下馬宴時，多有遲緩之事，又於漢江遊觀之日，宣醞節次，各司相推，移時不辦，大損國體。欲於罷職上，加一等而罪之也。大抵近來，怠緩成風，苟且因循，下或陵上，而上不檢下，將至於國非其國，甚可慮也。” 都承旨朴洪鱗曰：“如此之弊，漸致滋蔓，不可不痛治也。昨日遊觀(守) [時]，先致上教慰問之意，次呈弓矢及箭筒，天使喜甚曰：‘當見殿下致謝云’。臣仍欲宣醞，而促進果盤，

가 지나도록 마련하지 않아 국가 체면을 크게 손상하였으니, 파직하는 외에 1등을 더 올려 죄를 주고 싶다. 대저 요사이 태만이 풍습이 되고 구차하고 인순(因循)18132) 하기만 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기도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않아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게 되었으니 매우 염려스럽다.”

하였다. 도승지 박홍린(朴洪麟)이 아뢰기를,
 “이러한 폐단이 점점 번져가고 있으니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유람할 때 먼저 성상께서 위문을 분부하셨다는 뜻을 표한 다음에 활과 화살 및 전통(箭筒)을 내놓으니, 천사들이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마땅히 전하를 뵈고 치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선운(宣醞)하려 하여 과반을 올리라고 재촉하였는데 각사가 전연 들어주지 않아 크게 사체를 잃게 되었으니, 지극히 과오가 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전의 《등록(騰錄)》에 어찌 담당하는 관사가 없겠는가?”

하자, 박홍린이 아뢰기를,
 “선운할 적의 절차는 영접 도감(迎接都監)이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였으니 도감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사옹원이 태만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미 조옥에 내리도록 했었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 예연(禮宴)은 사옹원이 맡아야 하고, 유람 같은 일들은 영접 도감이 맡아야 마땅하겠다.”

하였다. 박홍린이 아뢰기를,
 “사옹원은 예연 때의 것만 말고 이런 연향의 것은 영접 도감이 으레 하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各司全不聽從，大失事體，至爲過甚。”上曰：“前騰錄，豈無該掌之官乎？”洪麟曰：“宣醞時節次，迎接都監可以爲之，而至於如此，都監亦爲非矣。”上曰：“初以司饗院爲緩慢也，故已令下詔獄矣，今聞此言，而更思之，禮宴則司饗院掌之，若遊觀等事，則迎接都監當辦之矣。”洪麟曰：“司饗院，但主禮宴，而如此之宴，則都監例爲之也。”上曰：“此言當矣。且今日禮曹以爲，六曹請宴，欲於慕華館行之云。慕華館，郊外也。豈可以坐次之難，而行宴禮於郊外乎？”

	<p>“그말이 지당하다. 또 오늘 예조가 ‘육조가 초청하는 연향을 모화관에서 거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모화관은 교외(郊外)이다. 어찌 좌석 차례가 난처하다고 하여 예연을 교외에서 거행할 수 있겠는가?”</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3월 13일(임진) 8번째기사</p>	<p>동부승지 박수량(朴守良)이 태평관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오늘 태평관에 나아가 진배(進排)한 잡물(雜物)의 단자(單子)를 내놓으니 천사가 단자를 보고 나서 말하기를 ‘즉히 현명하신 왕의 성의를 보겠습니다. 갖가지 어육(魚肉) 등의 물건을 각각 1개 씩만 가져 오십시오.’ 하기에, 신이 즉시 각각 1개씩 가져다 소반에 담아서 올리도록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이 이외의 것은 모두 해관(該官)에게 주십시오.’ 하였습니다.</p>	<p>○同副承旨朴守良歸自太平館啓曰：“臣今日就太平館，以進排雜物單子呈之，天使見單子訖曰：‘足見賢王誠意也，諸種魚肉等物，各取一箇來。’臣卽令各將一箇，盛於盤以亦進，天使曰：‘此外盡付該官。’</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3월 14일(계사) 6번째기사 경회루에서 잔치를 열고 후원을 산보하다</p>	<p>인정을 표하는 물건 단자를 두 사신 앞에 내놓으니 정사가 말하기를, “예물이 너무 많아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인삼 30여 근은 너무 많으니 줄이시기 바랍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이는 곧 차를 끓이는 삼이니 물리치지 마십시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도 이미 물건을 드렸으니 마땅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장차 술 대접하는 예를 행하려고 꽃【은사화(恩絲花)임.】을 내놓으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꽃【홍도(紅桃) 등의 꽃임.】을 버리지 마시고 섞어서 꽃으시기 바랍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술잔을 돌려 부사의 앞에 이르렀다. 상이 말하기를, “아침에 유사(有司)의 착오로 크게 사체(事體)를 잃게 되어【송희온(宋禧溫)에 관한 일임.】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해당 관원(官員)을 즉시 하옥(下獄)하여 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p>	<p>進人情物件單子于兩使前，正使曰：“禮物太多，不敢受也。且人參多至三十餘斤，請減之。”上曰：“此乃湯茶之參，請勿却。”兩使曰：“俺等亦已獻物，當依命。”上將行酒禮進花，【恩絲花。】兩使曰：“請勿去花而【紅桃等花。】雜插之。”上曰：“唯命。”行酒至副使前，上曰：“朝來有司誤錯，大失事體，【指宋禧溫之事。】不勝惶恐。其該官卽下獄治罪矣。”副使曰：“不敢不敢。俺欲將發此言，殿下先言之，惶恐惶恐。請卽放其該官。”上曰：“罪重，不可輕宥。”副使曰：“然則俺當終夜不坐也。”上曰：“唯命。”卽赦司譯院掌務官，各就坐。又以頭目人情物件單子呈之，正使曰：“笠帽則曾已許之矣，</p>

	<p>“참으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장차 이에 대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전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 매우 황공스럽습니다. 즉시 그 해당 관원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죄가 무거워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들은 밤새도록 앓지 않겠습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p> <p>하고, 즉시 사역원 장무관을 놓아 주었다. 각기 자리에 나아갔다. 또 두목들에게 인정을 표하는 물품 단자를 내놓으니, 정사가 말하기를, “입모(笠帽)18147)는 벌써 이미 주시었으니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둔(油菴)18148)은 단지 주대(奏帶)한 두목 여덟 사람에게만 주고 그 나머지는 주지 마십시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p> <p>하였다. 세자(世子)가 술잔을 돌리고, 사옹원이 또한 고기를 잡아 올리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두목들에게 활과 화살을 주었으면 합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두 편【정사와 부사 두 편이다.】의 두목 각 30인에게만 각각 활 하나 화살 10개씩 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활과 화살을 모두 거두었다가, 회정(回呈)할 때에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p>	<p>不必更給之也。油菴則只給奏帶頭目八人，其餘勿給。”上曰：“依命。”世子行酒，司饗院又捕魚以進，兩使曰：“多謝多謝。”上曰：“請贈頭目以弓矢。”兩使曰：“兩邊【謂正使副使兩邊也。】頭目各三十人，各賜弓一丁，矢十箇可也。然俺等合此弓矢而收之，回程時，見其能射者而給之。”俄而兩使曰：“弓矢無單子，不可受也。”兩使曰：“請於觀火後，行享禮何如？”上曰：“唯命。”因各退小次暫歇。傳于左副承旨姜顯曰：“妓工煩擾，擇留妓二十、工二十，而其餘悉還出之。”上從幕次而出，兩使亦出。上曰：“請移交倚，稍就前坐，而觀火何如？”兩使曰：“依命。”兩使曰：“請出坐簷下而觀之。”即起立出就簷下，不復分東西，而以一行列坐，兩使之坐，在殿下之左。觀火良久，命海安君崙行酒。兩使曰：“請勿行酒禮，而用大杯，各呈以飲何如？”上曰：“唯命。”正使謂廣大火曰：“此乃頭盃火也。”見葡萄火曰：“滿園葡萄一朵紅。”又曰：“葡萄正好，欲飲一杯。”云。酌一大杯而各呈之，上使招李應</p>
--	--	--

	<p>하였다가, 조금 뒤에 두 사신이 말하기를, “활과 화살은 단자에 없으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청컨대 불꽃 놀이를 구경한 다음에 향연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각기 작은 막차로 나가 잠시 쉬었다. 좌부승지 강현에게 전교하 기를, “기녀와 악공들로 번잡하고 시끄러우니 기녀 20명과 악공 20명만 가리어 머 물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도로 내보내라.” 하였다. 상이 막차에서 나오니 두 사신도 나왔다. 상이 말하기를, “교의(交椅)를 옮겨 조금 앞으로 다가가 앉아서 불꽃 놀이를 관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두 사신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말하기를, “처마 아래로 나왔어 관람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일어서서 처마 아래로 나아가 다시 동서를 가리지 않고 한 줄로 줄지어 앉았는데, 두 사신의 자리가 전하의 왼쪽에 있었다. 불꽃 놀이를 한참 구경하다가 해안군(海安君) 이기(李嶠)18149)에게 명하여 술잔을 돌리도록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청컨대 술잔 돌리는 예를 할 것 없이 큰 잔을 각각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정사가 광대화(廣大火)를 일러 말하기를, “이는 곧 두회화(頭盃火)입니다.”</p>	<p>星曰：“此國各種海物，與福建同，但 不會整治，故不適於口。”上曰：“此 處廚子迷劣，皆不能調味。”副使曰： “上大人有調羹手段。”正使笑曰：“俺 有調味方法，當書以呈之。”觀火畢， 還入宴廳。兩使曰：“殿下爲俺等，大 示誠款，請行謝揖。”揖訖，兩使曰： “俺等欲書大字以獻，請於書後，行酒 禮。”上曰：“唯命。”於是，兩使命 左右，取交倚，列置一行，南面而坐， 正使居中，御座在西，副使坐於東，正 使秉大筆，展紙臨卓，招遼東通事康鎮 曰：“擇年少妓二人，秉燭立於卓頭， 又擇年少妓四人，入舞於前。”正使熟 規之曰：“此仙鶴之舞也。”正使見秉 燭之妓，頭上粧花，垂襯於燭曰：“恐 其見燕。”命拔去，蓋欲灼見其面也。 又曰：“此兩妓，長短不相似，改其一 可也。”云。正使睨視執燭之妓，心 不自定，以大筆濡墨，向妓而揮之，墨 濺于妓之衣及面上。且要使妓，久立 於卓頭，秉筆虛揮，將若寫字之狀，而 不卽下筆，弄筆談謔，良久乃已。自 此殿上喧擾雜亂，自上亦無如之何矣。 左右侍從，驚駭罔措。大司憲權輓，</p>
--	--	---

	<p>하고, 포도화(葡萄火)를 보고서는, “만원포도일타홍(滿園葡萄一朶紅)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포도가 정말 좋으므로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하므로, 큰 잔으로 한 잔씩 부어 각각 돌렸다. 상사가 이응성을 불러 말하기를, “이 나라의 갖가지 해산물은 복건(福建)의 것과 같은데 다만 잘 조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에 맞지 않습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이곳의 주자(廚子)18150) 들은 미옥하고 용렬하여 모두 조리(調理)를 잘하지 못합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상대인(上大人)18151) 은 조리하는 솜씨가 있답니다.” 하자, 정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조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글로 써서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불꽃 놀이 구경을 마치고 도로 연향청(宴享廳)으로 들어왔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게 성의를 보이셨으니 사례하는 읍을 하였으면 합니다.” 하였다. 읍이 끝나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큰 글자로 글씨를 써서 드리고 싶습니다. 글씨를 쓴 다음에 술 마시는 예를 거행하였으면 합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니, 이에 두 사신이 좌우 사람들을 시켜 교의(交椅)를 가져다 한 줄로 늘어</p>	<p>因右承旨金臺以啓曰：“今日之事，同僚則未及知之，臣獨以行酒宰相入來而聞之，至爲驚駭。今日之宴，乃禮享也，冒夜而設，已爲非禮。初不禮接，便服登樓，既爲大失。況散步遊觀之事，與宰相爲之，則容或有之，豈可與人君而爲之哉？天子諸侯，大小雖異，其爲君人則一也。亦有朝廷焉，亦有群臣焉，彼安敢與之散步於園林草露之中乎？古今天下，安有如是者也？至於呼妓秉燭，託以書字，翫狎自肆，坐亦不恭。恐終有褻瀆莫大之變也。殿下事大至誠，故接待華使，一從其請，然人君舉止，不可如是。事大雖以誠也，待天使雖致敬也，豈可失禮，而曰以誠以敬哉？今日之事，大失禮儀，天使所行，有同狂生之事。大小臣民，孰不痛憤？自今以後，請以禮接，毋致褻慢甚幸。臣不勝痛憤，不暇與同僚議之，而今敢獨啓之。”答曰：“所啓至當。但上樓之事，則天使先自請之，故不敢辭也，散步後苑之事，前例太監天使時，或有爲之之時，故今亦爲之耳。其命妓秉燭事，予亦以爲未便，而勉行耳。”領議政金謹思、左議政</p>
--	---	---

놓고 남쪽을 향하여 앉았는데, 정사가 가운데에 앉고 어좌(御座)는 서쪽에 있었으며 부사는 동쪽에 앉았다. 정사가 큰 붓을 들고서 종이를 펴놓고 탁자(卓子)에 임하여, 요동 통사 강진(康鎭)을 불러 말하기를,
 “나이 젊은 기녀 두 사람을 가리어 촛불을 들고 탁자 머리에 서도록 하고, 또한 나이 젊은 기녀 네 사람을 가리어 앞으로 들어와 춤을 추게 하라.”
 하였다. 정사가 춤을 눈여겨 보다가 말하기를,
 “이는 선학(仙鶴)의 춤이다.”
 하였고, 정사가 촛불을 들고 있는 기녀의 머리 위에 단장한 꽃이 촛불 가까이에서 디롱거리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불 붙게 될까 싶다.”
 하며, 빼버리도록 명했는데, 대개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려는 것이었다. 또 말하기를,
 “이 두 기녀의 키가 같지 않으니 한 사람을 바꾸어야 하겠다.”
 하고, 정사가 촛불 든 기녀를 흘겨 보며 마음을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여, 큰 붓에 적신 먹물을 그 기녀를 향해 뿌려 기녀의 옷과 얼굴에 먹물이 튀기었다. 또한 그 기녀에게 탁자 머리에 오래 서 있게 하고서 붓을 들고 헛 내들러 마치 장차 글자를 쓰려는 형상만 하고 즉시 하필(下筆)하지는 않았으며, 한참동안 붓을 희롱하기도 하고 농담하기도 하다가 그만 두었다. 이로부터 전(殿)위가 시끄럽고 소란해져, 상계서도 또한 어찌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좌우(左右)의 시종(侍從)들이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사헌 권예(權輓)가 우승지 김미(金璽)를 통하여 아뢰기를,
 “오늘의 사태를 동료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신(臣)만 술 대접할 재상으로 들어와다가 듣고서 지극히 놀랐습니다. 오늘의 잔치는 곧 예를 차리기 위한 연향인데 밤을 무릅쓰고 차린 것부터가 이미 예가 아닌 데다, 처음부터 예로 접하지 않아 편복(便服) 차림으로 경회루에 올랐으니 이미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金安老、右議政尹殷輔、左贊成沈彥慶、吏曹參判許沆等啓曰：“今觀天使所爲之事，多有悖戾，莫如接之以禮而已。女樂之用，只爲成樂，而以至秉燭，又令亂舞。若此不已，終致非常之事。華使雖當款待，只行享禮而已，不須更致繾綣也。明日勤政殿請宴，請竝停之。”答曰：“初不意至於如此也，今至於此，予亦處置之爲難也。明日勤政殿請宴，則當如啓而不爲可也。”輓再啓曰：“臣自初見之，非謂自上誤處之也。但人君於待賓接人之間，其禮不可斯須廢也。臣非不知，自上勉而從之也，但雜亂無序，至於如此，而尙無論啓者，則謂我國有人乎？以今觀之，輕肆如此者，亦知我國之無人也。臣非謂可禁其所爲也，大抵無禮，則非敬也。當初殿下，待之以敬，而一以禮享，則豈至於此乎？”答曰：“自予待之失禮，果如所啓。大臣等亦已言之矣，駭愕之意，上下皆同耳。”謹思等再啓曰：“勢已如此，雖不可遽止，不須強勸也。”答曰：“予意亦不勝其支離也。彼以爲一杯後當罷云，予不更勸也。”正使寫字訖，上卽命退

게다가 산보하며 유람하는 것을 제상들과 하는 것은 혹 있을 수 있지만 어찌 임금과 더불어 할 수 있겠습니까. 천자(天子)와 제후가 비록 대소(大小)는 다르지만 임금인 것은 같습니다. 역시 조정이 있고 또한 못 신하가 있는데 어찌 감히 임금과 더불어 정원 숲의 이슬 속을 산보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 고금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기녀를 불러다 촛불을 잡고 글씨를 쓴다는 핑계로 외설(猥褻)한 것을 멋대로 방자하게 하였고 앉기도 또한 공손하지 못했으니, 마침내는 더할 수 없이 설만한 짓을 하게 될까 싶습니다.

전하께서 사대에 지성스러우시기 때문에 중국 사신 접대를 한결같이 그들의 요청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거지(舉止)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사대를 성의있게 해야 하고 비록 천사(天使) 대접을 공경을 다해 해야 하지만, 어찌 예모를 잃는 것을 성의로써 하고 공경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사태는 크게 예의를 잃은 것으로서, 천사의 소행은 미치광이의 짓과 같습니다. 대소(大小)의 신민(臣民)들이 누가 통분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부터는 청컨대 예로써 접하여 설만해지지 않게 하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신이 통분함을 견딜 수 없기에 미처 동료들과 의논해 볼 사이도 없이 지금 감히 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말이 지당하다. 다만 경희루에 올라간 일은 천사가 먼저 스스로 청했기 때문에 감히 사절하지 못한 것이고, 후원(後苑)에서 산보한 일은 이전 준례가 태감(太監)이 천사로 온 때는 더러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한 하게 된 것이며, 기녀를 시켜 촛불을 들게 한 일은 나도 역시 온당하지 못하다 여기면서도 억지로 한 일이다.”

하였다. 영의정 김근사, 좌의정 김안로, 우의정 윤은보, 좌찬성 심언경, 이조참판 허항 등이 아뢰기를,
 “지금 천사가 한 일을 보건대 패려(悖戾)한 것이 많으니 예로써 접하고 마는

其執燭及入舞等妓，正使曰：“俺則既書之矣，吳天使亦必欲書之也。即令妓還入舞，秉燭如初可也。”遼東通事康鎮，自出而促之，妓等遂還入。輓三啓曰：“一從其所爲，則謂我國有人乎？狎翫妓生等事，皆不忍見。豈可以詔使之言，而一從其非禮之事乎？請以禮待之。”答曰：“未久當罷矣。今後可以知其所爲，而待之耳。”副使寫字訖，上行酒，兩使回杯。禮訖即罷，夜已三鼓矣。謹思等啓曰：“天使多有失儀，至爲痛憤，然明日勤政殿請宴事，今已請之，而又復停之，則彼必發怒，前日款待之事，反歸於虛矣，不如善辭而待之。明日當權辭以告曰：‘今日初欲請宴於勤政殿矣，昨日幸得病，未能起也。今日請行宗宰之宴，而勤政殿則欲於明日行之。’云，以觀其意似當。但此人，非迷劣之人，在中朝，乃清顯者也。若或發怒，則恐其生事也。況明日宴享事，今已言之，而彼亦當來云，似不可停也，臨時暫行成禮似當。”

것만 못합니다. 기녀와 악공을 쓰는 것은 단지 주악(奏樂)을 하기 위한 것이
데, 촛불을 들리기까지 하고 또한 난잡한 춤을 추게 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
을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예삿일이 아닌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
록 중국 사신을 정성껏 대우해야 마땅하지만, 잔치 대접하는 예를 거행하면
그 뿐이고 다시 깊은 정을 표할 것은 없습니다. 내일근정전에서 초청하는 잔
치는 모두 중지하기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당초에 이렇게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나
역시 조처하기가 곤란하다. 내일 근정전에서 초청하는 잔치는 아뢰 대로 거행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권예가 재차 아뢰기를,

“신이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상께서 잘못 조처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임
금은 손님을 대하고 사람을 접하는 동안에 예를 잠시도 폐할 수 없는 법입니
다. 신이 상께서 역지로 따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난잡
하여 질서가 없음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논계하는 사람이 없으
니 우리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번의 일만 보더라도 것처럼 경
솔하고 방자하게 구는 것 또한 우리 나라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 것입니다.
신이 그들의 소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예가 없
으면 공경이 안 되는 법입니다. 당초에 전하께서 공경으로 대우하고 한결같이
예로써 연향을 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내가 대접함이 예를 잃은 것은 과연 아뢰 말과 같다. 대신들도 이미 말을 했
었다. 놀랍게 여기는 뜻은 상하(上下)가 모두 같다.”

하였다. 김근사 등이 재차 아뢰기를,

“사세가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비록 갑자기 그만 둘 수는 없지만 힘써 권할

	<p>것은 없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나의 뜻에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가 ‘한잔 한 다음에는 그만 파하겠다.’고 하였으니, 나도 다시 권하지 않겠다.”</p> <p>하였다. 정사가 글씨 쓰기를 마치자, 사이 즉각 촛불 든 기녀 및 들어와 춤춘 기녀들을 물리치기를 명하니, 정사가 말하기를,</p> <p>“나는 이미 썼지만 오천사(吳天使)도 반드시 쓰고자 할 것이니 바로 기녀들로 하여금 도로 들어와 춤추고 촛불 들기를 아까처럼 해야 합니다.”</p> <p>하자, 요동 통사 강진(康鎭)이 스스로 나가 재촉하니, 기녀들이 드디어 도로 들어왔다. 권예가 세 번째 아뢰기를,</p> <p>“한결같이 그가 하는 대로 따라주면 우리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허물없이 기녀들과 희롱하는 짓 등은 모두 차마 볼 수 없는 일인데, 어찌 조사의 말이라고 해서 한결같이 예가 아닌 짓을 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예로써 대하시기 바랍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오래지 않아 마땅히 파하게 될 것이다. 이 뒤에는 그들의 소위를 알아서 대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부사가 글씨 쓰기를 마치자 상이 술을 돌리니 두 사신이 회배(回杯)했다. 예가 끝나자 즉시 파했는데 밤이 이미 삼경이었다. 김근사 등이 아뢰었다.</p> <p>“천사들이 체모를 잃는 짓이 많아 지극히 통분합니다. 그러나 내일 근정전에서 초청하는 잔치 일은 이미 청한 것인데 다시 정지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화를 내게 될 것이어서, 전일에 정성껏 대우한 일마저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말로 대하는 것만 못할 것이니, 내일은 마땅히 임시 변통의 말로 고하기를 ‘당초에는 오늘 근정전에서 잔치를 대접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우연</p>	
--	---	--

	<p>히도 병이 나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 오늘은 종재(宗宰)의 잔치만 거행하고 근정전에서는 내일 거행하고자 한다.’고 하여, 그들의 뜻을 떠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미욱하거나 용렬한 사람이 아니어서 중국 조정에 있어서는 곧 청현(淸顯)18152) 한 사람들이니, 만일 혹시라도 화를 내게 된다면 일이 생기게 될까 싶습니다. 하물며 내일의 잔치 대접하는 일은 지금 이미 말을 했고 그들 역시 마땅히 오겠다고 했었으므로 정지할 수 없을 듯하니, 그때에 임해서 잠깐 거행하여 예를 이루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3월 15일(갑오) 5번째기사 근정전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p>	<p>상이 술잔을 돌리며 완배(完杯)하기를 청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어제 거듭 현명하신 왕의 훌륭한 뜻을 받아 너무 마셨기에 어제의 취기(醉氣)가 아직 덜 깨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어제 수고하셨기 때문에 완배로 위로해 드렸으면 합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매우 감사 하다고 하였다. 술잔 돌리기가 끝나자 각기 자리에 나아갔다. 인정(人情)을 표하는 물건 단자를 내놓고, 의주(義州)와 정주(定州) 등지에서의 영위(迎慰) 때의 인정 물건 단자도 아울러 내놓으니, 상사가 말하기를, “어제 이미 주시는 것을 받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하시니 미안합니다.”</p> <p>하고, 부사가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이는 준례의 물건이니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p> <p>하니, 상사가 매우 감사하다고 하였다. 세자(世子)가 두 사신에게 술잔을 돌리자, 상이 자리에 나아가기를 청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세자께서 술잔 돌리기를 마치지 못했는데 우리들이 어찌 감히 앉겠습니까?”</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전내(殿內) 두목과 북경(北京) 주대(奏帶) 두목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싶습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수고롭게 그러실 것 없고 조관(曹官)18154) 을</p>	<p>上行酒, 請行完杯, 上使曰: “昨日重承賢王盛意, 過飲而宿醉未醒矣, 然依命。” 上曰: “昨日勞動, 故請以完杯慰之。” 兩使曰: “多謝多謝。” 行酒訖, 各就坐, 進人情物件單子, 義州、定州等處迎慰時, 人情物件單子, 竝呈之。 上使曰: “昨已蒙賜, 今又如此, 未安。” 副使曰: “多謝多謝。” 上曰: “此爲例物, 請勿却。” 上使曰: “多謝多謝。” 世子行酒于兩使訖, 上請就座。 兩使曰: “世子行酒未畢, 俺等何敢坐乎?” 上曰: “殿內頭目及北京奏帶頭目等, 欲饋之以酒。” 兩使曰: “不須勞動, 遣曹官饋之於外廳至當。” 上曰: “留日不多, 請執盃饋之。” 兩使曰: “今日則頭目等, 或有留館者, 明日大平館上馬宴時, 則頭目等俱在矣, 請於其時饋之至當。” 上曰: “昨受多</p>

	<p>보내 외청(外廳)에서 먹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머무를 날이 많지 않으므로 내 손으로 잔을 들어 대접하였으면 합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오늘은 두목들이 더러는 태평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습니다. 내일의 태평관 상마연 때는 두목들이 모두 있게 될 것이니 바라건대 그 때 먹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p> <p>상이 말하기를, “어제 갖가지 귀한 물품을 받았기에 오늘은 답례하고 싶습니다.”</p> <p>하고, 이어 단자를 내놓으니, 【백저포(白苧布) 20필씩임.】 두 사신이 매우 감사하다고 하며 무척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으며, 또 말하기를, “우리 측에서 술잔을 돌릴 적에 마땅히 공경스럽게 사례하겠습니다.” 하였다.</p> <p>...</p> <p>두 사신이 통사 이화중(李和宗)을 보내어 말하기를, “술 대접하시는 예를 이미 다 마쳤으니, 회배(回杯)하였으면 합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내일도 또 일이 있는데 어제의 목은 취기도 깨지 않았습시다. 회배하였으면 합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p> <p>하였다. 당초에 인정 표하는 물건 단자(單子) 세 건을 내놓으니, 두 사신이 받으며 매우 기뻐하는 기색을 나타냈고, 그 단자를 들고선 손을 떼지 않았으며, 손가락으로 물건 목록을 짚어보며 술잔을 돌릴 때까지 단자를 들고 있다가 상의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예물이 매우 많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백저포(白苧布) 각 2필씩과 초삼(綃衫) 각 한 벌씩만 갖겠으니, 그 나머</p>	<p>般貴物, 今欲回奉。” 仍呈單子, 【白苧布各二十四。】 兩使曰: “多謝多謝。” 云, 而甚有喜色。 且曰: “俺等行酒時, 當敬謝。” 云。</p> <p>...</p> <p>兩使遣通事李和宗曰: “酒禮既盡, 請行回杯。” 上曰: “禮未完也。” 兩使曰: “明日亦有事, 而昨日宿醉未醒, 請行回杯。” 上曰: “依命。” 初, 以人情物件單子, 三度進呈, 兩使奉之, 甚有喜色, 執其單子, 不釋於手, 以手指點物目。 至行酒時, 執其單子, 就上前曰: “禮物甚多, 不可盡受。 請只取白苧布各二匹、綃衫各一, 其餘盡付該官。” 上曰: “皆薄物, 不足以奉大人, 然此於禮爲該行之事, 請勿却。” 兩使曰: “多謝。” 云, 而似有喜色。 兩使仍行酒,</p> <p>...</p> <p>上又行酒, 上使曰: “俺等會于王府, 只有今日, 更不得到此, 請欲拜謝。”</p>
--	--	--

	<p>지는 모두 해관(該官)에게 돌려 주십시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모두 하찮은 것이어서 대인들에게 드리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에 응당해야 하는 일인 것이니 물리치지 마십시오.”</p> <p>하니, 두 사신이 감사하다고 하며 기뻐하는 기색이 있는 듯하였고, 이어 두 사신이 술잔을 돌렸다.</p> <p>...</p> <p>상이 또 술잔을 돌리니, 상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왕부(王府)에서 모이기는 단지 오늘 뿐으로서 다시 이 자리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배사하고자 합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진심으로 수고로 우실까 두렵습니다. 각기 읍(揖)을 하였으면 합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왕부에서 배사(拜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각기 재배하는 예를 행하였다. 서로 사양하며 나와 상이 근정전 외문(外門)까지 전송했고, 두 사신이 광화문을 나서자 상이 들어왔다.</p>	<p>上曰：“不敢不敢。 深怕勞動，請各揖。” 兩使曰：“決不敢，決不敢。 今次王府，禮當拜謝。” 上曰：“依命。” 兩使各行再拜禮，相讓而出。 上送至勤政外門，兩使出光化門，上乃入。</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3월 17일(병신) 1번째기사</p>	<p>좌승지 황헌(黃憲)이 아뢰었다.</p> <p>“어제 천사들이 막 잠두(蠶頭)에서 유람할 적에 신이 달려가 문안한 다음에 선온(宣醞)을 내놓으니, 천사가 ‘국왕께서 보내신 것이니 마땅히 실컷 취하도록 마시겠다.’ 하고, 각기 큰 잔으로 마신 다음 정사가 동두목(童頭目)을 시켜 대추를 가져다가 은쟁반 위에 놓고 잔으로 덮고서 몇 개가 안에 들었느냐고 물어, 대답의 맞고 틀림에 따라 상주(賞酒)를 내리기도 하고 벌주를 내리기도</p>	<p>○丙申/左承旨黃憲啓曰：“昨日天使，初遊于蠶頭，臣馳至問安後，呈宣醞，則天使曰：‘國王送之，當期盡醉飲之。’ 各以大盃飲之後，正使令童頭目，取棗子，置諸銀盞臺上，以盞覆之，問其幾箇在內乎？以言之中，不中爲賞罰杯，而到望遠亭，正使以銀杯飲之，</p>

	<p>하다가, 망원정(望遠亭)에 이르러서는 정사는 은잔으로 마시고 부사 이하는 순배(巡杯)로 실컷 마시고는 쓰러졌으므로 신고 돌아왔습니다.”</p>	<p>而副使以下，以巡杯痛飲，倒載而來矣。”</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3월 17일(병신) 3번째기사</p>	<p>상이 모화관에 거둥하여 막차에서 황헌(黃憲)을 불러 묻기를, “어제 천사들의 하는 것이 어떠했는가?” 하니, 황헌이 아뢰기를, “예를 행한 다음에 전하께서 문안하신 뜻을 말하니, 천사가 ‘아침에 모시고 이야기 했는데 또 무슨 문안인가?’ 하였습니다. 신이 또 ‘유람할 때 쓸 술과 음식을 신을 시켜 보내셨다.’ 하니, 천사가 ‘전하께서 술과 음식을 보내셨으니 마땅히 재상들과 더불어 실컷 즐기겠다.’ 하였습니다. 좌의정【김안로(金安老).】이 여악(女樂)을 쓰기를 청하니 만류하고서 남악(男樂)만 허락하였고, 또한 좌의정이 술잔을 돌릴 적에는 큰 은잔으로 하여 잔 속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했습니다. 윤인경(尹仁鏡)이 술잔을 돌릴적에는 천사가 ‘이분의 술 양은 좌상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면서 또한 앞서처럼 권하였고, 김인손(金麟孫)이 잔을 돌릴 적에는 하인을 불러 조금 큰 잔을 가져다 쓰도록 하고서 또 한 병을 가져오도록 하여 친히 부어 다 마시되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부(漁父)에게 고기를 잡도록 하면서 곧바로 잠두(蠶頭)로 내려가 정자선(亭子船)을 타고 내려가며 걸린 금액자(金額字)의 글자 획을 천사가 포폼했습니다. 또 상사가 ‘내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면서, 대추 10개를 가져오도록 하고 또 5개를 더 가져오게 하여 동두목(童頭目)에게 옷소매 속에 넣었다가 꺼내어 잔대 위에 놓고 잔으로 덮도록 했습니다. 처음 번의 것은 7개를 놓았는데, 윤인경이 알아맞추어 말했기 때문에 별주를 마시지 않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마셔야 했으며, 그 다음에는 4개를 놓았는데 상사(上使)가 알아맞추어 말했기에 마시지 않고 그 나머지는 모두 마시며 흐름을 따라 내려가 망원정에 이르렀습니다.</p>	<p>○上幸慕華館，召問黃憲于幕次曰：“昨日天使所爲何如？”憲曰：“行禮後，告殿下問安之意，天使曰：‘朝得侍話，又何問安乎？’臣又告曰：‘遊觀時酒饌，使臣送之。’云爾，則天使曰：‘殿下送酒饌，當與宰相極歡矣。’左議政【金安老。】請用女樂，則止之，男樂則許之。且左議政行酒時，以銀大杯，而杯中無令遺一滴之餘，尹仁鏡行酒時，天使曰：‘此人之酒量，差優於左相。’而勸之亦如右。金麟孫行酒時，呼下人，取差大杯令用之，又令取瓶親酌之，使之盡飲，而不使落一滴。乃令漁父捉魚，而卽下蠶頭，乘亭子船流下，而所懸金額字，天使褒貶字畫矣。且上使言：‘吾有一法’，令取大棗十介，又加取五箇，使童頭目，納諸袖中，潛令出置于盞臺上，覆之以盞。初置七箇，而尹仁鏡適中言之，故不飲，而其餘人，皆飲之。其後置四箇，而上使適中言之，故不飲，而其餘則皆飲。順流而下，至望遠亭，沈彥光不爲行酒，天使言：‘此人酒量，比前人似優。當以大杯，再再行之。’而臣及吳潔，亦皆勸酒於鄭士龍則曰：‘見諸一路，</p>

심언광은 술잔을 돌리지 않았는데, 천사가 ‘이 분의 술 양은 앞서의 사람들보다는 우월한 듯하니 마땅히 큰 잔으로 두세 차례 돌려야 한다.’ 하고, 신과 오결(吳潔)에게도 또한 모두 술을 권하였으며, 정사룡(鄭士龍)에게는 ‘일로에서 보니 술양이 조금 작았었다.’고 하며 작은 잔으로 술을 돌리게 했습니다. 윤인경은 술리 취해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여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 천사가 큰 잔으로 별주를 주었는데, 모두 흠뻑 취하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상사는 덜고 마셨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고 부사 및 재상들은 모두 실컷 취했으며, 오결은 크게 취하여 올 적에 중도에서 말에서 떨어지므로 가마에 태워 데려왔습니다.

두 천사가 신에게 ‘《지지(地志)》를 전하게서 등서하여 주기로 언약했는데 아직까지 등서해 주지 않았고 《등과록》은 또한 자세히 쓰지 않았었다. 내일 길을 떠나기 전에 써 주어야 한다는 뜻을 국왕께 고하라.’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지》와 《등과록》을 재촉해서 써 주어야 한다.”

하므로, 강현이 아뢰기를,
 “《지지》는 이미 모두 썼습니다. 다만 《등과록》은 제술한 사람들의 이름은 그래도 더러 듣고 보고 하여 써 줄 수 있지만 그때의 시관(試官)들은 어디에 의거하여 쓸 수가 없어 매우 곤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망이 있는 사람을 시관으로 써 넣어 주는 것이 무방하다.”

하였다. 황현이 아뢰기를,
 “상사가 술을 마시지 않기에, 신이 진무(鎭撫) 강진(姜鎭)에게 ‘상사가 어찌하여 술을 마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강진이 잘못 듣고서 ‘당신의 나라에서 칭하지 않는데 어떻게 머무르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로 본다면 그들이 필시 우리 나라가 머무르기를 칭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酒量差小’, 使以小杯行酒。尹仁鏡不勝酒困, 出外而復入, 則天使以大杯罰之, 皆極醉大歡。上使則省飲故不醉, 副使及宰臣, 皆極醉, 吳潔大醉, 來時於中路落馬, 以轎子擔來。兩天使謂臣曰: ‘《地志》, 殿下約以書給, 而迄未書給, 《登科錄》又不詳書。明日未發行之前, 書給之意, 告于國王.’ 云。” 上曰: “《地志》與《登科錄》, 催促書給可也。” 姜顯曰: “《地志》, 已盡書矣, 但《登科錄》, 則所製人之名, 猶或聞見書給矣。其時試官, 無據可書, 甚爲難也。” 上曰: “有名望者, 以試官填書給之, 亦無妨也。” 憲曰: “上使不飲, 臣問於鎭撫姜鎭曰: ‘上使何以不飲酒?’ 姜鎭誤聽而答曰: ‘汝國不請, 何以留爲?’ 以此見之, 彼等必以我國, 爲不請留之也。” 上曰: “彼果以我爲不請留也。”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이 과연 우리가 머무르기를 청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였다.</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3월 17 일(병신) 11번째기사 태평관에서 천사들에 게 전별연을 행하다</p>	<p>자리에 앉기를 청하여 다례(茶禮)를 거행하였다. 상이 술잔을 돌리겠다고 청하여 말하기를, “대인(大人)들을 모시게 되는 것이 이때 뿐이니 대인들께서는 잔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감히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즉시 다 마시므로, 상이 말하기를, “매우 고맙습니다.” 하였다. ... 상이 술잔을 돌렸다. 상사가 잔을 들고 말하기를, “이는 곧 서로 작별하는 술이니 다 드시기 바랍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양이 작아서 다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사가 또 말하기를,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니 오늘의 술은 꼭 다 드셔야 합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비록 양은 작지만 말씀대로 다 마시겠습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현왕의 성의를 알겠습니다.” 하였다. 부사가 말하기를, “다 드시기 바랍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양이 작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부사가 다시 말하기를, “이는 곧 서로 작별하는 술이므로 다 드시기 바랍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마땅히 말씀대로 다 마시겠습니다.” 하였다. ... 영의정 김근사가 의식대로 술잔을 돌리고 나자, 상이 천사들에게 말하기를,</p>	<p>請就坐行茶禮。上請行酒而告曰：“陪大人只在此刻。願大人卒酌。”正使曰：“敢不承教?”即飲盡。上曰：“多謝多謝。” ... 上行酒。上使執盞而告曰：“此乃相別之酒，請盡飲。”上曰：“量淺不能盡飲。”上使又告曰：“更會無期，今日之酒，不可不盡飲。”上曰：“雖量淺，當依命盡飲。”上使曰：“足見賢王之誠意也。”副使告曰：“請盡飲。”上曰：“量淺不能飲。”副使再告曰：“此乃相別之酒，請盡飲。”上曰：“當依命盡飲。” ... 領議政金謹思，行酒如儀訖，上告于天使曰：“第三王子，近有病，故連日不參，今日欲進酒。”正使曰：“多謝賢王盛意。”錦原君【齡】行酒如儀訖，天使曰：“國王待之甚厚，故出貴王子見之，多謝多謝。且今日飲酒既多，碧蹄亦遠，不可遲留。俺等欲</p>

	<p>“세째 왕자가 요사이 병고(病故)가 있었기 때문에 연일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술잔을 올리게 하고 싶습니다.</p> <p>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현왕의 성대한 뜻에 감사합니다.” 하였다.</p> <p>금원군(錦原君) 【이영(李齡).】 이 의식대로 술잔 돌리기를 끝내자, 천사들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매우 후대하시는 까닭에 귀중한 왕자를 데려다가 보여 주시는 것이니 매우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술을 이미 많이 마셨고 벽제(碧蹄)까지가 또한 멀어서 지체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술잔을 돌리고 싶습니다.”</p> <p>하고, 이어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다. 정사가 먼저 술잔을 돌리며 잔을 들고 상께 권하기를, “이는 작별하는 잔이니 다 드시기 바랍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양이 비록 매우 작기는 합니다마는 마땅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p> <p>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오늘 서로 작별한 다음에는 꿈 속에서나 서로 만나게 될 뿐,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므로 떠나기가 한스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p> <p>하자, 상이 말하기를, “과인의 심정은 대인들보다 배나 더합니다.”</p> <p>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매우 고맙습니다.”</p> <p>하였다.</p> <p>상이 잔을 들고 상사에게 권하기를, “이는 작별하는 잔이니 다 드시기 바랍니다.”</p> <p>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내가 비록 잘 마시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p> <p>하였고, 부사가 술잔을 돌리며 잔을 들고 상께 권하기를, “현왕께서 우리 대명(大明)과 함께 태평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왕의 후대를 잊을 수 없어 차마 갑자기 떠나지 못하겠습니다.”</p>	<p>行酒。” 仍起立就前，正使先行酒，執盞勸上曰：“此別盃也。請盡飲。” 上曰：“量難至淺，當依命。” 正使曰：“今日相別之後，夢裏相隨而已，更會無期，不堪離恨。” 上曰：“寡人之情，倍於大人。” 正使曰：“多謝多謝。” 上執盞勸上使曰：“此別杯也。願盡飲。” 上使曰：“我雖不能飲，豈敢違命？” 副使行酒，執盞而勸上曰：“願賢王，與大明同享太平之福。且不勝賢王厚待，不忍遽別。” 上曰：“寡人之情，亦如斯。” 副使曰：“今見之後，難再得見，我酒請盡飲。” 上曰：“依命盡飲。”</p> <p>...</p> <p>上告曰：“別懷無盡，更欲進一杯。” 兩使曰：“多謝。請各執一盞，同時飲之何如？” 上曰：“請盡飲。” 兩使曰：“此別杯也，安敢不盡？” 上曰：“多謝多謝。” 正使告曰：“此乃別杯也。殿下亦何不盡飲？” 上曰：“酒量至淺，情雖至深，飲不得也。” 正使曰：“請盡飲。” 上曰：“依命。” 酒畢，各行兩揖。</p>
--	---	---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과인의 심정도 역시 그러합니다.”</p> <p>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이번에 만나본 다음에는 다시 만나게 되기 어려울 것이니, 나의 술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p> <p>하자,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다 마시겠습니다.”</p> <p>하였다.</p> <p>...</p> <p>상이 말하기를, “작별하자니 회포가 한이 없습니다. 다시 한 잔 드리고 싶습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각기 한 잔씩을 들고 동시에 마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다 마시기 바랍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이는 작별하는 잔인데 어찌 감히 다 마시지 않겠습니까?”</p> <p>하자, 상이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하였다.</p> <p>정사가 말하기를, “이는 곧 작별하는 잔인데, 전하께서는 또한 어찌 다 드시지 않으십니까?”</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술 양이 지극히 작아, 정은 비록 한이 없지만 다 마시지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다 드시기 바랍니다.”</p> <p>하자,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p> <p>하였다. 술이 끝나고 각기 두 번씩 읍(揖)을 했다. .</p>	
<p>중종 84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4월 15 일(계해) 2번째기사</p>	<p>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가뭄 기운이 매우 심하니, 무릇 노쇠한 사람이 약으로 먹는 것과 혼인이나 제사 이외에는 한 병의 술을 가지는 것도 일체 금하기 바랍니다.”</p> <p>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憲府啓: “方今旱氣太甚, 凡老病服藥婚姻祭祀外, 持瓶酒, 請一禁。” 答曰: “如啓。”</p>
<p>중종 84권, 32년</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甲子/傳于政院曰: “天使支供, 須京</p>

<p>(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4월 16일(갑자) 1번째기사</p>	<p>“천사에 대한 지공(支供)을 모름지기 서울이나 지방이 한결같이 할 것을 이미 전교했었다. 지금 듣건대 외방에서는 매우 풍성했고 서울에서는 매우 박했다니 이는 사체에 틀린 듯하다. 호조와 예조의 당상들과 사옹원 제조 등을 지금 즉시 명초하여 식품의 그릇 수를 합당하게 헤아려서 작성하여 따로 하나의 책자를 만들되 이름을 《천사지공등록(天使支供騰錄)》이라 하여 영구히 일정한 법식을 삼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릇 수를 정하여 서울과 지방이 많고 적은 차이가 없이 하고 식품도 일정한 가짓수를 두어 이곳과 저곳이 풍성하고 박한 차이가 없게 하여, 외람하게 허비하고 지나치게 거두는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라.”</p>	<p>外如一事，曾已傳教矣，今聞外方則大豐，而京中則甚薄云。此於事體似異，戶、禮曹堂上等及司饗院提調等，今卽命招。其饌品器數，量宜酌定，別成一冊，名之曰：‘天使支供騰錄’，永爲恒式，使器有定數，京外無多寡之異，饌有恒品，彼此無豐薄之殊，以除其濫費過斂之弊可也。”</p>
<p>중종 85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5월 1일 (기묘) 1번째기사</p>	<p>천사가 또 굴[蠣房]을 구워먹는 방법을 부쳐왔다 하니 사옹원(司饗院)으로 하여금 시험해 보게 하라.</p>	<p>天使又以燒蠣房之法，見寄云。令司饗院試之。</p>
<p>중종 85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8월 1일 (정미) 2번째기사</p>	<p>너희들이 더욱 힘써 학문을 권려하여 인재를 양성해 낸다면 어찌 도움이 적겠는가. 특히 쌀·콩 2백 석을 하사하여 양현(養賢)의 자본으로 하고 특별히 대사성에게 한 자금을 더하여 학문을 숭상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니 사양하지 말라.”</p>	<p>爾等更加勉勸學文，作成人材，則豈爲小補哉？特賜米太并二百石，養賢之資，特加大司成一資，以示崇學之意，其勿辭焉。”</p>
<p>중종 85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8월 2일 (무신) 3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올 가을 양로연(養老宴)은 설치하지 말고 술과 고기를 제급(題給)하도록 하라.”</p>	<p>○傳于政院曰：“今秋養老宴勿設，而酒肉題給可也。”</p>
<p>중종 85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9월 10일(병술) 2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기를, “저기 바라보이는 곳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였는데, 정원이 물어보고 회계하기를,</p>	<p>○傳于政院曰：“彼望見處，有人持物而立，是何如人也？”政院問而回啓曰：“中良浦居別侍衛金崇栢家，有霜桃欲進獻云。”傳曰：“細民之物，不宜受</p>

<p>별시위 김승백이 바친 복숭아를 받고 상을 내리다</p>	<p>“중량포(中良浦)에 사는 별시위 김승백(金崇栢)의 집에 서리맞은 복숭아가 있어서 진헌하려 한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세민(細民)의 물품은 받아서는 안 되지만 예전에도 미나리를 먹어 보고 임금에게 바친 자가 있었으니 이는 그 정성을 바치는 것이다. 받아서 사옹원에 내리고 제용감으로 하여금 면포(綿布) 2필을 상주게 하라.”</p>	<p>之，然古有食芹而獻其君者，是獻其誠也。受之而下司饗院，令濟用監，賞綿布二匹。”</p>
<p>중종 85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9월 20일(병신) 1번째기사</p>	<p>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 시선(視膳)하고 저녁에는 연은전(延恩殿)에 시선하였다.</p>	<p>○丙申/朝，視膳于文昭殿；夕，視膳于延恩殿</p>
<p>중종 85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10월 13일(기미) 1번째기사</p>	<p>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일본국(日本國) 대내전(大內殿) 의릉(義隆)의 사송(使送) 송옥 선사(松屋禪師) 등을 인견하였는데, 7작(爵)에 이르러 연회를 과하였고, 차등 있게 선물을 내렸다.</p>	<p>○己未/上御仁政殿，引見日本國大內殿義隆使送松屋禪師等。宴至七爵而罷，賜物各有差。</p>
<p>중종 85권, 32년 (1537 정유 / 명 가정 (嘉靖) 16년) 10월 16일(임술) 1번째기사</p>	<p>상이 전교(箭郊)에서 답렵(踏獵)하였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노루 두 마리를 고례(古例)에 의해 즉시 종묘(宗廟)에 바치라.”</p>	<p>○壬戌/上踏獵于箭郊。傳于政院曰：“獐二口，依古例，卽令薦于宗廟。”</p>
<p>중종 87권, 33년 (1538 무술 / 명 가정 (嘉靖) 17년) 4월 22일(을축) 5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남부(南部) 광통방(廣通坊)의 여염집에서 실화(失火)하여 33가구가 잇달아 불탔으니 매우 애처롭고 측은하다. 매호(每戶)에 각각 쌀 3두 5승과 면포(綿布) 1필 및 묵은 진장(陳醬)과 주육(酒肉)을 내리라.”</p>	<p>○傳曰：“南部廣通坊，閭閻失火，延燒三十三家，至爲哀惻。每戶各給米三斗五升，絁布一匹及舊陳醬酒肉。”</p>
<p>중종 87권, 33년 (1538 무술 / 명 가정 (嘉靖) 17년) 5월 1일(계유) 1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의주(義州)에서 바치는 녹용 등의 공물(貢物)은, 부제학 민제인(閔齊仁)이 목사(牧使)로 있을 적에 그에 따른 폐단을 깊이 알고 아뢰었으니만큼 그가 아</p>	<p>○癸酉朔禮曹啓曰：“義州鹿茸等貢物，副提學閔齊仁曾爲牧使時，深知其弊而啓之，所言至當。但貢案所付之物，本曹擅改爲難。鹿茸、麋茸，醫</p>

된 말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공안(貢案)에 기록된 물건을 본조(本曹)가 독단으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녹용과 미용(麋茸)은 의약(醫藥)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고쳐서는 아니될 것이요, 녹미(鹿尾)와 녹두(鹿頭) 등의 물건은 한 해에 공납(貢納)하는 수량의 많고 적음 및 용도의 요긴하고 요긴하지 아니함을 잘 알지는 못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감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감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모름지기 평안도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어 생산되는 곳을 알아보고 그 편의 여부를 참작한 다음 각각 그 고을에 분정(分定)하게 함이 옳을 듯합니다. 다만 진상(進上)하는 물건 등은 본조가 독단할 것이 아닙니다. 대신과 의논하여 처결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대저 공안에 기록된 각도의 공물이 더러는 지난날에 있던 것이 오늘날에는 없고 더러는 지난날에 없던 것이 오늘날에는 있어 생산되는 바가 일정하지 아니하다. 때문에 내가 진작 생산되는지를 상고하여 있고 없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분란의 폐단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실현하지 못한 것이다. 의주의 녹미와 녹두 등의 물건을 영원히 감하여 주고 다시 다른 고을에 분정한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인정은 반드시 새로 지정한 물건에 불편을 느낄 것이요, 또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이라 하더라도 준비해 온 지가 오래되었으면 그리 깊이 꺼리지 아니하는 법이니, 이제 새삼 그 물건이 있는 곳으로 옮겨 지정할 것은 없다. 더구나 다같은 백성이 아닌가. 고달픈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일은 대신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물선(物膳) 등의 일을 예조와 사옹원(司饗院)이 편의 여부를 같이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그것이 상례이므로 지금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녹용과 미용은 약용에 요긴히 쓰이는 것이니 고칠 수 없겠으나 기타의 물건

藥所關，不可改也。鹿尾、鹿頭等物，一年所納多寡，及用之緊不緊，未之知也，若有餘數則可減矣。然不可永減，須當行關於監司，使之訪問所產，而酌其便否，分定其邑似當。但進上等物，非本曹所擅，議于大臣而處之何如？”傳曰：“大抵各道貢案所付之物，或古有而今無，或古無而今有，所產不一，故予曾欲考其興產與否，改其有無而，慮有紛擾之弊，不果耳。義州鹿尾，鹿頭等物，若永減而定於他邑，則雖易得之物，人情必不便於新定之物矣。且雖難備之物，其爲之也久，則亦不必爲深憚也，今不可分定於有處也。況百姓何有彼我？其所困悴則一也。如此事，雖大臣，何能處之？前者物膳等事，禮曹、司饗院，同議便否以啓，例也，今亦議啓可也。鹿茸、麋茸，則緊用於藥餌，不可改也，其他等物，議減可也。”

	들은 감하여도 되겠다.”	
중종 88권, 33년 (1538 무술 / 명 가정 (嘉靖) 17년) 8월 18 일(무오) 1번째기사	지평 구수담(具壽聃)이 아뢰기를, “각 고을이 중국 사신의 접대를 빙자하여 오종포(五綜布)를 받아들이기 에 이르렀는데 혹은 30여 동을, 혹은 1백여 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것은 몰래 자기집에 실어 내갔습니다. 그래서 본부(本府)에서 바야흐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사신이 오가는 일로(一路)에는 포진(鋪陳)할 모든 기물(器物)도 다 민간에서 염출됩니다. 그런데 한번 사용한 뒤에는 간 곳을 모릅니다. 이것은 번번이 개비(改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기(鑰器) 같은 물품은 쉽게 훼손되는 것이 아닌데 두어 해가 못되어서 또 민간에서 받아들여 개비하므로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물품들은 숫자를 헤아려서 간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돌아간 지가 아직 오래되지 않았으니 거두어 간직해 두었다가 뒷날의 사용에 대비하게 하라. 개비한다면 민폐가 어찌 적겠는가.”	持平具壽聃曰：“列邑憑藉天使支持，至徵以五綜布，或至三十餘同，或至百餘同，其汎濫者，仍以潛輸其家，故府方聞見矣。但天使往還一路，一應鋪陳器物，皆出於民間，而一用之後，不知去處。此不可每每改備，如鑰器等物，不至易毀，而不數年間，又徵于民間改備，其弊不貲。如此等物，計數而藏之何如？”上曰：“天使之歸不久，可收藏之，以待後用。若改備，則民弊豈小哉？”
중종 88권, 33년 (1538 무술 / 명 가정 (嘉靖) 17년) 10월 16 일(병진) 1번째기사 간밤에 비바람이 사나 왔으니 악수를 몰아내 는 장사들에게 구급주 를 보내도록 해사에 이르다	전교하였다. “간밤에 비바람이 몹시 사나왔으니 악수(惡獸)를 몰아내는 장사들 가운데 필시 비바람 때문에 동상에 걸린 자가 많았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구급주(救急酒)를 보내려 했으나 밤이 깊어 미처 이르지 못하였다. 장사에게는 곧 중사(中使)를 보내어 선온(宣醞)할 것이다. 그러나 선온을 어찌 모든 군사에게 두루 미치게 할 수 있겠는가. 구급주를 보내도록 해사에 이르라.”	○丙辰/傳曰：“昨夜風雨甚惡，而惡獸驅逐將士，必罹風雨，凍傷者多矣。予思其勞苦，茲欲遣救急酒，而夜深未及言之也。將士則當遣中使宣醞矣，然宣醞豈可盡及於軍士乎？其遣救急酒事，言于該司。”
중종 88권, 33년	석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엄흔(嚴昕)이 아뢰기를,	○戊辰/御夕講。侍讀官嚴昕曰：“臣

(1538 무술 / 명 가정 (嘉靖) 17년) 10월 28 일(무진) 1번째기사

“신이 경기 어사로 나가 살펴보니 금년 농사가 비록 보통 정도는 된 것 같으나 백성들이 축적해 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초겨울을 당하여 곤궁한 것이 이와 같은데 공사채(公私債)의 독촉을 받고 또 요역(徭役)에 시달리니 기전(畿甸)의 민생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이보다 심한 때가 없습니다. 경영(京營)의 창고에 공납하는 생선은 척촌(尺寸)이 규정에 차지 않으면 받지 않고 생치(生雉)도 혹 깃털 하나라도 빠졌으면 역시 받지 않으므로 부득이 생산지에 가서 사기 때문에 생선 한 마리 값이 목면(木綿) 30여 필에 이르고 꿩 한 마리 값도 20필까지 합니다. 백성이 수령에게 호소할지라도 수령은 백성의 폐단은 헤아리지 않고 다만 일이 생길까만 두려워합니다. 궐내(闕內)에 바치는 물건이 모두 어선(御膳)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송(賜送)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척수에 맞은 다음에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징납(徵納)할 때 어찌 남은 수가 없겠습니까. 경주인(京主人)들 또한 이를 인연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관찰사가 마땅히 검속해야 될 일이니 별도로 하유하여 생선이 척촌에 차지 않고 꿩의 깃털이 떨어지거나 상처가 있다 해도 그대로 봉진(封進)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미처 몰랐던 일이다. 중간에 외람된 짓을 할 폐단이 없지 않으니 이는 마땅히 개혁해야 할 것이다.”

하니, 혼이 아뢰었다.

“옛날 송 인종(宋仁宗)은 한밤중에 양고기가 먹고 싶었으나 마침내 구하여 먹

以京畿御史往見，則今年農事，雖似偶然，民無蓄積之家。今當初冬，其爲窮困如是，而被督於公私債，又侵於徭役。畿甸之內，民生困苦，莫此爲甚。京營庫所納生鮮，不滿尺寸則不捧，生雉或落一羽，則亦不捧。以此不得已質於所產之地，故一魚之價，至於木綿三十餘匹，一雉之價，亦至於二十匹。民生雖訴於守令，而守令不計民生之弊，只恐其生事也。闕內所供之物，非盡入於御膳，或有賜送之物，則不必盡准尺數，然後爲可用也。徵納之際，豈無餘數也，京主人等，亦多因緣作弊也。此觀察使所當檢舉，別爲下諭，雖鮮不滿尺寸，雉有落羽皮傷，許令封進何如?” 上曰：“此所未及知，中間不無泛濫之弊，此所當革也。” 昕曰：“昔宋仁宗，夜半思食羊肉，而竟不求食。此人君所以愛惜民生而然也。民生之弊，自上知之，則豈不惻怛?”

	지 않았으니, 이는 임금이 민생을 아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민생의 폐단을 위에서 안다면 어찌 측은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중종 88권, 33년 (1538 무술 / 명 가정 (嘉靖) 17년) 10월 28 일(무진) 2번째기사 경기에서 봉진하는 평 과 생선에 대한 폐단 을 하유하여 없앨 것 을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경연관이 경기에서 봉진하는 평과 생선에 대한 폐단을 아뢰었는데 아뢴 것이 매우 타당하다. 찬구(饌具)를 어찌 반드시 이같이 해야 하겠는가. 생선은 잘라서 끓이는 것인데 꼭 척수에 맞는 것을 쓸 필요가 어디 있겠으며 평도 완상(玩賞)할 물건이 아니니 가족이 완전해야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런 폐단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여태 개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폐단이 어찌 경기만 그렇겠는가. 외방도 모두 그러하여 폐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서울은 사옹원에서 알아둬야 할 것이니 승전을 받들어 봉행케 하고 외방은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폐단을 없애게 하라.”	○傳曰：“經筵官啓京畿封進雉鮮之弊，所啓至當。饌具豈必如此哉？生鮮必裁截烹飪，則何必用准尺之魚，生雉亦非賞玩，則何必完皮？曾不知此弊，故未及革之，此弊豈但京畿？外方亦必皆然，貽弊必多矣。京中則司饗院所當知之，其奉承傳，外方則下諭觀察使，除弊可也。”
중종 89권, 33년 (1538 무술 / 명 가정 (嘉靖) 17년) 12월 30 일(기사) 1번째기사	황유자(黃柚子)를 정원에 내려주고 ‘동정황유(洞庭黃柚)’라는 제목으로 칠언 율시를 지으라고 명하였다.	○己巳/以黃柚下于政院，命以“洞庭黃柚”爲題，製七言律詩。
중종 89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2월 3일 (임인) 1번째기사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성장(宗盛長)이 수계사야문(愁戒沙也文)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쳤다.	○壬寅/對馬島主宗盛長，遣愁戒沙也文，來獻方物。
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일 (무술) 5번째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세자가 술잔 돌리는 의식을 연습할 때 수행하여 참례하라는 분부는 아침에 이미 받았습니다. 다만 세자 청연(世子請宴)의 연습에는 필선(弼善)도 수행하여 참례하게 되어 있으나 오늘은 세자가 두 번째 잔만을 돌릴 뿐이므로 필선이 맡을 직임이 없습니다. 또 세자가 술잔을 돌릴 때에 시강원 관원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政院啓曰：“世子行酒習儀時，隨參事，朝已傳教矣。但世子請宴習儀，弼善隨參，而今日則世子只行第二爵而已，弼善無所屬之任。且世子行酒時，則侍講院官員，不可在坐，何以爲之？”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일 (무술) 6번째기사</p>	<p>청연(請宴)의 연습을 거행하였다. 황기(黃琦)에게 전교하기를, “보통 예로 말한다면 두 번째 술잔을 돌리는 예를 행하고 나서 계속 잔을 올리기를 청하여 들어주지 않는 경우 중지하는 것이 합당한데, 지금 이 의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회계하기를, “한때의 존경을 나타내는 일이니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윤개(尹漑)가 아뢰기를, “연이어 잔을 올리기를 청하다가 만약 천사가 예문(禮文)에 없는 일이니 옳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명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 옳다.”</p>	<p>○行請宴儀。傳于黃琦曰：“以常禮言之，則既行中杯禮後，請以連進，而不聽然後可止。今爲此儀何如？”回啓曰：“一時尊敬之事也，爲之無妨。”尹漑曰：“請連進，而天使若以爲無禮文之事，不可則(爲) [將] 以何以爲之？”傳曰：“答以依命可也。”</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일 (무술) 7번째기사</p>	<p>술잔 올리는 예가 끝나려고 할 때에 황기가 아뢰기를, “잔을 돌리는 것은 천사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강청할 것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득이 해야 하니, 의식을 연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이번에 하는 것이 옳다.”</p>	<p>○行酒禮將畢，黃琦啓曰：“回杯，天使不欲，則不須強請也，不然則不得已爲之也，爲習儀何如？”傳曰：“於此時可爲也。”</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일 (무술) 8번째기사</p>	<p>왕세자가 두 번째 잔 올리는 의식을 마치자 황기가 아뢰기를, “세자가 술잔을 돌릴 때에 상께서는 천사에게 의당 ‘과인이 앉아서 받아야 하니 대인께서도 앉으시오.’라고 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이 예를 잊어버리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잔치 때에는 이 예를 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p>	<p>○王世子行第二爵儀畢，黃琦啓曰：“世子行酒時，則自上當謂天使曰，‘寡人當坐受，請大人亦坐’云，而今忘不爲此禮。宴享時，則當有此禮，故敢啓。”傳曰：“知道。”</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일 (무술) 9번째기사</p>	<p>정원이 아뢰기를, “당고(唐臯)가 이르기를 ‘배신(陪臣)이 술잔을 올릴 때는 우리들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전하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였으므로 그때에는 옆에서 술잔을 올린 의식이 있었습니다. 공용경(龔用卿)과 오희맹(吳希孟)이 왔을</p>	<p>○政院啓曰：“唐臯謂陪臣行酒，當立俺等之前，則背於殿下云，故其時傍進之儀有之。龔、吳時，亦依此例傍進事，有傳教，而無儀註。今天使，見</p>

	<p>때에도 이 예에 의하여 옆에서 술잔을 올린 사례가 있었는데, 전교(傳敎)만 있었을 뿐 의주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의주를 본 뒤에 비록 가타부타 말이 없었으나 예행 연습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儀註後，雖無可否，而習儀則爲之何如？”傳曰：“如啓。”</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일 (무술) 10번째기사</p>	<p>세자 청연의 의식 연습을 하고 나서 황기가 아뢰기를,</p> <p>“세자가 태평관(太平館)에 이르면 천사는 반드시 중문(中門)에 나와 맞이할 것인데 지금 예행 연습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앉는 자리는, 천사는 북쪽 벽 아래 앉아야 되고 세자는 동쪽 벽 아래 앉아야 되는데, 지금은 가 천사(假天使)18920) 가 전좌처(殿坐處)18921) 와 등을 돌리고 설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여러 순배 술잔을 돌리는 의식을 하게 되면 세자가 오래 서 있게 되어 미안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였다.</p> <p>“천사가 나와 맞이하는 의식은 하는 것이 옳다. 전좌처와 등을 돌리고 서기는 어려우니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서서 단지 술잔 돌리는 의식만 하는 것이 옳다. 잔돌리는 횟수가 많아 세자가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은 안 될 일이니 임시 변통으로 편하게 앉는 것이 옳다.”</p>	<p>○行王子請宴儀。黃琦啓曰：“世子至大平館，則天使必出迎中門矣。今爲習儀何如？且坐位，天使當北壁，世子當東壁，而今則殿坐處，假天使不可背立，何以爲之？且累巡行酒儀，則世子久立未安，何以爲之？”傳曰：“天使出迎之儀，爲之可也。殿坐處背立爲難，則分東西，只爲行酒儀可也。爵數多而世子不可久立，則權宜平坐可也。”</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3일 (경자) 6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세자 청연(世子請宴)의 의주(儀註)에 ‘두 번째 술잔 돌리는 예를 행할 때에 세자가 상사의 잔을 받아 부사에게 나아가 읍을 하고서 도로 상사의 앞에 돌아와 읍을 하고 마신다.’고 되어 있는데 상사에게는 읍을 하지 않고 부사에게 먼저 읍을 하는 것은 온편치 못할 듯하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의주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역시 상사에게 먼저 읍을 한 뒤에 부사에게 나아가 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세자의 말을 들어 보니 의주대로 예를 연습했다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 그것을 시강원(侍講院)에 말하라. 또 세자 청연을 열 때 천사는 북쪽 벽 아래 앉고 세자는 동쪽 벽 아래 앉는 것은 곧 원래 정해진</p>	<p>○傳于政院曰：“世子請宴儀註，謂行中盃禮時，世子受上使之杯，就揖於副使，而還至上使前，揖而飲云。夫不揖於上使，而先揖於副使，似爲不便，故予則雖有此儀註，而亦揖於上使，然後就揖於副使矣，今聞世子之言，依儀註爲習禮云。此不當矣，其言于侍講院。且世子請宴時，天使北壁，世子東壁，此乃元定禮也，至於第二爵行酒時，如他宗宰而回去酒亭，後傍進事，</p>

	<p>에이나 둘째 잔을 돌릴 때에 이르러서는 다른 종재(宗宰)들과 같이 주정(酒亭) 뒤로 돌아가 옆에서 잔을 올릴 일도 아울러 말하는 것이 옳다.”</p>	<p>竝言之可也。”</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4일 (신축) 3번째기사</p>	<p>다례(茶禮)를 마친 뒤에 신이 먼저 영위(迎慰)하는 술 각각 두 잔을 드리고 서로 읍을 하고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이 먼저 술을 올렸는데 금잔[金杯]에 술을 부어 상사에게 올렸더니 상사는 그것을 마시고 난 뒤에 신에게 은잔[銀杯]으로 술을 주었는데 잔대(盞臺)는 잡지 않고 술잔만 주었고, 부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신은 모두 술을 좋아하지 않아 겨우 입에 댔다가 곧 잔을 잡고 읍을 하더니 두목(頭目)에게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술잔에 남은 술을 쏟아 부은 다음 다시 읍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신은 원접사에게 즉시 술을 권하지 않고 또 술을 가득 부어 상사에게 올렸는데, 이는 천사가 원접사에게 술잔을 사양할 것이라 기대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술잔을 받고 술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원접사가 술을 돌린 절차도 그렇게 하고 과하니 시각은 이미 밤중이었습니다.</p> <p>... 정옥형이 아뢰기를,</p> <p>“상사는 온아(溫雅)하며 말수가 적고 부사는 관대하고 활달하며 말이 많았습니다. 상사는 항상 말이 없이 부사를 돌아보는데, 부사는 많은 말을 지리하게 하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수저를 대지 않았고 오직 잣만을 먹었습니다. 또 스스로 작은 그릇을 꺼내 놓고 먹는데 무슨 음식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사가 상사의 침실로 가서 상사는 안쪽에 앉고 부사는 바깥쪽에 앉아 함께 압록시(鴨綠詩)를 지었는데 소매 속에 넣고는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p>	<p>茶禮後，臣先進迎慰爵各二盃，而相揖就坐。臣先出行酒，酌以金杯，進于上使，上使飲畢後，飲臣以銀盃，而不執臺也。副使亦然，兩使皆不好飲，纔至口而卽執盃行揖，令頭目持空器來，而瀉盃中之餘酒，然後更揖而退。臣不卽行酒於遠接使，而又進完杯於上使，欲待讓爵於遠接使，而天使受爵不讓矣。遠接使行酒，亦然而罷，時夜已分矣。</p> <p>... 玉亨曰：“上使則溫雅而寡言，副使則寬闊而多言。上使常不言而顧副使，以副使言多支離，而不知其爲何言也。凡饌物無所下箸，而惟喫栝子，又自出小器而食之，不知爲何物也。明朝，副使就上使寢房，上使坐內，副使坐外，共做鴨綠詩，而入袖不出云。”</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6일 (계묘) 9번째기사</p>	<p>신이 술을 올렸는데 두 잔을 올리자 금잔[金杯]은 물리치고 은잔으로 신에게 술을 주었고, 부사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원접사가 술잔 올리는 일을 끝내고 난 뒤 신들이 다시 술을 들자고 청하자 천사는 밤이 이미 깊었고 또 정신이 피곤하다고 사양하고 단지 넉 잔만을 받아 마셨습니다. 신들이 다시 술을 권했으나 천사는 많이 마셨다고 사양하므로 원접사와 더불어 술을 나누었습니다.</p>	<p>臣行酒，行兩盃，退金杯，而以銀盃飲臣，副使亦然。遠接使行酒畢，臣等更請行酒，天使辭以夜深神疲，只酌四杯，傳飲於坐。臣等更請行酒，天使辭以飲多，與遠接使各行酒。</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7일 (갑진) 4번째기사</p>	<p>평양 영위사 정순봉(鄭順朋)이 복명하니, 상이 사정전에서 인견하였다. 정순봉이 아뢰기를, “초3일 천사가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신은 먼저 들어가 있다가 재배례를 행하고 인하여 전하의 문안을 드렸더니 두 사신이 ‘상면하여 사례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영위연을 베푸는데 신이 먼저 상사에게 술 두 잔을 올렸습니다. 무릇 주례(酒禮)에는 연달아 두 잔을 올린 뒤에 반드시 올린 사람에게 술잔을 돌리는 법인데 신이 이미 두 잔을 올린 뒤에도 상사는 술잔을 돌릴 의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신이 또 부사에게 술잔을 드리자 상사의 생각에는 신이 단지한 잔만을 올렸다고 생각해서인지 이화종을 불러 ‘영위사가 몇 잔을 올렸는가?’고 물었습니다. 이화종이 ‘이미 두 잔을 올렸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상사가 ‘영위사가 부사에게 예를 끝낸 뒤에 내가 잔을 돌리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부사에게 술 올리는 예를 끝내자 상사는 은잔에 술을 따라 잔대(盞臺)를 잡고 신에게 마시라 하였습니다. 부사가 잔을 되돌릴 때에는 잔대를 잡지 않고 권했습니다.</p>	<p>○平壤迎慰使鄭順朋復命，上引見于思政殿。順朋曰：“初三日天使入平壤，臣先入，行再拜禮，因進曰：‘殿下問安’，兩使曰：‘當面謝’云。設迎慰宴，臣先進二杯於上使。凡酒禮，連進二杯然後，必有回杯，而臣既行二杯後，上使猶無回杯之意，臣又進爵於副使。上使意謂臣只行一杯，而招問李和宗曰：‘迎慰使行幾杯?’和宗答曰：‘已行兩杯。’上使云：‘迎慰使行禮於副使，然後俺當行回杯’云。臣行酒既畢，上使酌以銀杯，執臺而飲臣。副使則回杯時，不執臺也。</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0일(정미) 9번째기사 상이 세자와 함께 친</p>	<p>상이 작은 소여(小輿)를 타고 관(館)의 중문 밖에 이르러 소여에서 내리니 두 사신이 중문 밖에 나와 맞이하였다. 조사는 동쪽 협문(夾門), 상은 서쪽 협문을 통해 서로 사양하며 들어갔다. 읍하고 자리에 앉아 답례를 끝낸 뒤 기악(妓樂)이 막 들어오려 할 때, 상이 통사를 시켜 청하기를, “지금 연회를 거행하는데 여악(女樂)을 쓸까 합니다.”</p>	<p>○上乘小輿，至館中門外下輿，兩使出迎中門外。詔使由東俠，上由西俠，相讓而入，相揖而坐，行茶禮畢，妓樂方進。上令通事請曰：“今行宴禮，請用女樂。”兩使曰：“依命。”上行酒，</p>

<p>사의 연회에 참가하다</p>	<p>하니, 두 사신이 명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상이 술을 돌리면서 완배례(完杯禮)를 청하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피곤해서 거행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완배례를 거행하지 못하면 예가 완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하므로, 두 사신은 명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상이 완배례를 마치고 이르기를, “《시경》에 ‘위의가 겹으로 풍기는 것은 마음에 덕이 넘친 걸세.’라고 했는데, 지금 두 대인의 위의를 보니 덕이 속에 쌓여 있음을 알겠습니다. 성제의 은혜로운 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대인의 위의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오늘 전하를 모시게 되니 이것은 천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였다. 세자가 술 드리는 예를 마치고 난 뒤 상이 통사를 통해 청내(廳內)에서 두목들에게 음식 먹일 것을 청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하인은 감히 올라올 수 없습니다. 또 전하께 인사를 드리지도 않았으니 더욱 올라오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청하기를, “두목관(頭目官)은 대인을 모시고 먼 길을 왔으니 주인이 손님을 공경하는 예에 따라 진실로 이같이 해야 합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하인이 한 두 사람만이 아니니 손수 음식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또 하인들은 대례(大禮)를 감당할 수도 없으니 관원에게 명하여 별청(別廳)에서 음식을 먹이게 하십시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허락을 받지 못했으니, 경사(京師)에서 온 두목에게라도 직접 먹이고 싶습니다</p>	<p>請行完杯禮，兩使曰：“勞動，不須行。”上曰：“不行完杯，則禮不完。”兩使曰：“依命。”上行完杯畢，上曰：“抑抑威儀，維德之隅。”今見兩大人威儀，可知德之積於中矣。不有聖帝恩命，何能得見大人之威儀？”正使曰：“今日陪侍殿下，亦是天恩。多謝。”世子行酒畢，上遣通事，請饋頭目於廳內，兩使曰：“下人不敢上來，且時未叩頭於殿下，尤不敢上來。”上又請曰：“頭目官，陪大人遠來，主人敬賓之禮，固當如是。”兩使曰：“下人非一二，不可親饋，且下人不敢當大禮。請命官，饋于別廳。”上曰：“既不得命，請親饋京來頭目。”兩使曰：“然則叩頭後饋之。”又遣通事告曰：“頒詔時，天日晴好，而頒詔後小雨，天亦感於殿下之誠意。且殿下今日極勞。”上曰：“天晴頒詔之時，亦是皇恩。陪侍佳賓，不知倦勞。”兩使曰：“俺等陪茲殿下飲，亦不知勞。”上請陪臣行酒，又請坐受，兩使曰：“儀註內，陪臣行酒，皆起立，禮也，而何以云坐受乎？”李應星曰：“大人起立，則殿下亦起立，故龔、吳時，始定坐受權</p>
--------------------	--	--

	<p>다.”</p> <p>하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들이 인사를 드린 뒤에 먹이십시오.”</p> <p>하였다. 사신이 또 통사를 보내 고하기를, “조서를 반포할 때에는 하늘이 맑았었는데, 조서를 반포한 뒤에는 비가 조금 내리니 하늘도 전하의 성의에 감동한 것입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께서 오늘 매우 피로하시겠습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 “조서를 반포할 때 날씨가 청명했던 것 또한 황제의 은혜입니다. 훌륭한 손님들을 모시고 있으니 피곤한 줄을 모르겠습니다.”</p> <p>하므로,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도 전하를 모시고 술을 마시니 역시 피로한 줄을 모르겠습니다.”</p> <p>하였다. 상은 배신(陪臣)들이 술 올릴 것을 청하고, 또 앉아서 잔을 받드라고 청하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의주(儀註)에, 배신이 술을 올릴 때는 모두 일어나는 것이 예라고 했는데 어찌 앉아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이응성이 아뢰기를, “대인께서 일어서시면 전하 또한 일어서셔야 하기 때문에 공·오 대인 때에 처음으로 앉아서 받는 임시 예를 정했습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예는 존귀한 이를 따른다고 한 말이 옳은 듯합니다.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p> <p>하였다. 이에 해안군(海安君) 이기(李嵵)와 금원군(錦原君) 이영(李嶺)의 술 올리는 예가 끝나자, 두 사신이 청하기를,</p>	<p>宜之禮。” 兩使曰：“禮統於尊，其言近是。依命。” 於是，海安君嵵、錦安君〔錦原君〕嶺，行酒畢。 兩使請曰：“今日禮多，而賓主同勞，且有後日之會，請罷宴。” 上曰：“《詩》云：‘有兔斯首，砲之燔之。君子有酒，酌言獻之。’ 今日不腆之禮，正是敬朝廷敬大人之誠，請勿亟罷，以待禮完。” 正使曰：“‘卜其晝，未卜其夜。’ 今夜向深，勞亦已極。請止酒。” 副使曰：“厭厭夜飲，不醉無歸。俺等既醉既飽，請止之。” 上曰：“行酒未畢，夜亦未深，姑待禮完何如？” 兩使曰：“然則只許一人行酒而罷。” 上曰：“依命。” 上令承旨，各呈羽扇于兩使曰：“日氣曠暖，敢此奉呈。” 兩使曰：“此扇欲不受，只見殿下之誠，受之。請起謝。” 上曰：“一羽之輕，有何謝乎？” 兩使曰：“若起謝，則殿下反勞動，宴罷後當謝。” 上令承旨，又呈禮物單于兩使曰：“薄物，請勿却。” 兩使曰：“一路延接等事，極優於禮，今日又受大禮，欲謝不能。承此禮物，厥數優多，不當受之。且以頒詔而來，又安敢受乎？” 上曰：“其交也以道，其</p>
--	---	--

	<p>“오늘은 예가 많아 손이나 주인이 함께 피곤합니다. 또 후일의 모임이 있으니 연회를 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상이 말하기를,</p> <p>“《시경》에 ‘토끼를 잡아다가 털 벗겨 구워 왔소. 술 여기 있으니 이 잔을 어서 받으시오.’라 하였는데, 오늘 이 변변치 못한 예는 바로 조정을 공경하고 대인을 공경하는 정성이니, 이 자리를 속히 파하지 마시어 예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p> <p>하므로, 정사가 말하기를,</p> <p>“옛말에 ‘잔치를 밤까지 계속해서 즐겨서는 안 된다.’ 했는데 오늘은 밤이 이미 깊었고 또한 매우 피곤하니 술을 중지하시기를 청합니다.”</p> <p>하고, 부사는 말하기를,</p> <p>“《시경》에 ‘실컷 마시는 밤술 안 취하곤 못 돌아가리.’라 했는데, 우리들은 이미 취하고 배불렀으니 그만 그치기를 청합니다.”</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p> <p>“술잔 돌리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밤 또한 깊지 않았으니 잠시 예가 완전하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그렇다면 한 사람만 술을 돌리도록 허락하고 파하지요.”</p> <p>하므로, 상이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상이 승지를 시켜 두 사신에게 각각 깃달린 부채를 올리면서, 말하기를,</p> <p>“날씨가 더워지므로 감히 이것을 드립니다.”</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이 부채는 받지 않고 싶으나 다만 전하의 성의를 생각해서 받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사례하겠습니다.”</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p>	<p>接也以禮，孔子受之，願大人勿却。”</p> <p>副使曰：“當受其中之可受，以表殿下之誠意。”上固請勿却，兩使曰：“若固却，則還爲不恭，請行謝禮。”上曰：“薄物，何謝之有!”兩使曰：“不可不謝。”於是，行謝揖。領議政尹殷輔行酒畢，上令承旨，呈贈頭目物件單子，兩使曰：“一路贈物，亦已太多，今又優贈，是愛其主及其使，尤謝。”招李應星謂曰：“俺等困倦，請罷宴。”上曰“進大(繕) [膳] 後罷，何如?”兩使曰：“然則速進而速罷可也。”於是進大膳，上再行酒如儀畢曰：“兩位困倦，不得從容陪坐，多恨。”兩使曰：“多謝”，相揖而出，兩使送至中門外，相讓久之，上還入御室，少頃還宮。</p>
--	--	--

	<p>“가벼운 깃털 부채 하나에 무슨 사례란 말씀입니까.”</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만약 일어나서 사례하게 되면 진하게서 도리어 수고로우실 것 같으니, 연회가 과한 뒤에 사례하겠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승지를 시켜 예물 단자(禮物單子)를 두 사신에게 드리면서 말하기를,</p> <p>“변변찮은 물건이지만 물리치지 마십시오.”</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일로의 영접 등의 일에서 매우 후한 예를 받았고, 오늘 또 대례(大禮)를 받았으니 그에 대한 사례도 다할 수가 없는데, 이 예물까지 받으면 그 수량이 너무 많으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서를 반포한 뒤에 어찌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p> <p>하므로, 상이 말하기를,</p> <p>“도로써 사귀고 예로써 접대하여 주는 물건은 공자도 받는다고 했으니, 대인께서는 물리치지 마십시오.”</p> <p>하였다. 부사가 말하기를,</p> <p>“그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아 전하의 성의에 보답하려 합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p> <p>“굳이 청하오니 물리치지 마십시오.”</p> <p>하므로,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만약 굳이 물리친다면 도리어 불공하겠기에 사례를 하고자 합니다.”</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p> <p>“변변찮은 물건에 무슨 사례하실 것이 있겠습니까.”</p> <p>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사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	---	--

	<p>하고, 읍하여 사례하였다. 영의정 윤은보의 술 돌리는 예가 끝나자 상이 승지를 시켜 두목들에게 주는 물품의 단자를 올리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일로에서 증정한 물품도 이미 많은데 지금 또 이렇게 많이 주시니 이는 ‘주인에 대한 사랑이 그 하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고, 이응성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들이 피로하여 연회를 과했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선(大膳)을 올린 뒤에 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두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속히 올리고 속히 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이어 대선을 올리고, 상이 다시 의식대로 술 돌리기를 마친 뒤에 말하기를, “두 분께서 피곤하시다니 모시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매우 감사하다고 하고 서로 읍하고 나왔다. 두 사신은 중문 밖까지 나와 전송하는데 한참 동안 서로 읍양하였다. 상이 다시 어실(御室)에 들어가 조금 있다가 환궁하였다.</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1일(무신) 8번째기사 상과 사신이 술자리를 함께하고 물품을 선사하다</p>	<p>두 사신이 술을 그만하자고 청하기를, “뒤에 다시 만날 것인데 오늘은 많이 마셨으니 중지하였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이미 술 돌리기를 허락하시고서, 금방 과하기를 청하십니까.?” 하므로, 두 사신이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상이 술을 돌리고 나서 서로 사양하면서 나왔다. 두 사신은 중문 밖까지 나와 전송하고 상은 다시 어실로 들어갔다.</p>	<p>兩使請止酒曰：“後必會面，今日飲多，請止。”上曰：“既許行酒，請行酒而罷。”兩使曰：“依命。”上行酒後相讓而出，兩使送至中門外。上還入御室。</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2</p>	<p>상이 통사를 시켜 청하기를, “못에 고기가 있으니 대인들께서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매우 좋다고 하였다. 사옹원(司饗院)에 명하여 못 북쪽에서</p>	<p>上令通事請曰：“小池有魚，幸大人觀漁。”兩使曰：“甚善。”命司饗院，回艇於池北，爲良久捕魚之狀，兩使就</p>

일(기유) 4번째기사

배를 띄우라 하고 한참 동안 고기를 잡게 하였다. 그러자 두 사신이 못으로 다가가 구경하고 상도 따라갔다. 가랑청(假郎廳) 최사립(崔斯立)이 물고기를 쟁반에 담아 받들고 나왔는데 물고기는 아직도 펴펴 뛰고 있었다. 두 사신이 즐거워하며 보고는 조금 있다가 놓아주라 명하고 돌난간을 내려다 보았다. 이렇게 하기를 두 차례 한 뒤, 상이 통사를 시켜 말하기를,
 “대인들께서 누각에 올라 관람하시겠습니까?”
 하니, 두 사신이 즐거워하며 승락하였다. 이에 상은 서쪽 사다리로 올라가고 두 사신은 동쪽 사다리로 누각에 올라가 즉시 자리에 앉지 않고 사방을 두루 돌아보며 동산의 숲을 바라보기도 하고 못물을 내려다 보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담소하니 상이 따라다녔다. 간단한 기악(伎樂)으로 작은 잔치를 베풀었는데 영의정 윤은보 등이 술을 돌리고 얼마 있다가 누각 아래로 내려왔다. 덕양군(德陽君)18942) 이 의식에 따라 술을 올렸다. 두 사신이 통사를 불러 말하기를,
 “지금 여러 왕자들의 술 돌리는 것을 보니 모두들 단아하고 무게가 있는데, 지금 술잔을 돌린 왕자는 더욱 영특해 보이고 용모가 단정하며 실수없이 예절에 딱 맞습니다. 진하게서 우리들에게 앉아서 잔을 받으라 명하셨기 때문에 앉아서 받기는 했습니다만 실례가 많았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변변찮은 아이를 대인들께서 칭찬하여 주시니 매우 고맙습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여러 왕자들이 모두 이와 같으니 이는 참으로 ‘인후(仁厚)한 공자들’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였는데, 두 사신이 말하기를,

池觀之，上隨之。假郎廳崔斯立，捧出魚盤，魚猶跳躍。兩使喜觀，俄而命放之，俯石欄而觀之。如是者再。上令通事請曰：“大人幸觀樓上乎？”兩使樂肯。於是，上由西梯，兩使由東梯上樓，不卽就坐，周步四徧，或望見園林，或俯見池水，良久笑語，上隨行。略抄工妓，設小酌，領議政尹殷輔等行酒。俄而，還至樓下，德陽君行酒如儀。兩使招通事謂曰：“今見諸王子行酒，皆雅重，而今行酒王子，尤表致穎悟，容貌端正，中禮無失。殿下命俺等，坐受其爵，故俺等依命坐受，而恐多失禮。”上曰：“稚劣小子，大人稱之，多謝。”兩使曰：“諸王子皆如是，眞所謂振振公子也。”上曰：“不敢當。”兩使曰：“國王過謙。”仍請散步後苑曰：“恐殿下勞動，俺等當獨往。”上曰：“無可觀之處，然大人往，則寡人安敢不從？”兩使喜聞曰：“勞動勞動。”於是，出遊後苑，至序賢亭，兩使謂通事曰：“名亭以序賢，所謂序賓以賢也。”至一綠陰亭下，有水田數頃，兩使名之曰“觀稼亭。”又至花林之下，名之曰“錦林。”還至樓

	<p>“국왕께서 너무 피곤하실까 염려되니 우리들끼리 가겠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말하기를, “보실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인들께서 가신다면 과인이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두 사신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런 수고까지 하시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후원으로 유람하러 나가 서현정(序賢亭)에 이르러 두 사신이 통사에게 말하기를, “정자 이름을 서현(序賢)이라고 한 것은 ‘화살을 맞힌 수에 따라 손님의 차례를 정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녹음이 우거진 정자 아래 이르러 논 두어 경(頃)이 있자 두 사신은 관가정(觀稼亭)이라 이름 붙이고, 또 화림(花林) 아래에 이르러 금림(錦林)이라 이름을 붙였다. 경회루로 돌아오니 상이 승지 등을 시켜 두 사신에게 예물을 드렸다. 두 사신이 집어 들고 함께 보다가 말하기를, “연이어 후한 예물을 주시니 지금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다만 받을 수 있는 것은 《황화집》·장식한 활·활통[箭筒]·과녁[侯]·화살뿐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변변찮은 토산물을 받으신들 무어 해로울 것이 있습니까. 인삼은 차 등속이고, 샷갓[笠]은 우구(雨具)이며, 종이·붓·먹은 문방구이니 대인들께서는 물리치지 마십시오.” 하였다. 두 사신이 답하기를, “일로에 차가 없을 수는 없으나 어찌 30근이나 되는 인삼을 차로 다 쓰겠으며, 종이·붓·먹도 이미 받은 것이 많으니,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는 문화의 나라로 인재가 매우 많으니 등과록(登科錄)을 보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말하기를,</p>	<p>下, 上令承旨等, 進禮物於兩使, 兩使手執竝觀曰: “連受厚禮, 今何敢當? 只可受者, 《皇華集》、粧弓、箭筒、侯箭而已。” 上曰: “不腆土物, 受之何傷? 人參, 茶物也; 笠子, 雨具也; 紙筆墨, 文房之友也。願大人勿却。” 兩使答曰: “一路不無茶也, 而況三十筋, 豈茶參耶, 紙筆墨, 受之者已多, 不可更受。但此邦文獻之地, 人材最多, 欲觀《登科錄》。” 上曰: “《登科錄》則依命, 請竝勿却禮物。” 兩使曰: “國王誠意至此, 安敢辭? 多謝。” 時日將暮, 上請觀火, 移坐于池邊階上, 簇子蒲萄等火, 一時俱發。兩使相與嘆曰: “此乃人之所爲耶?” 上請行酒, 兩使答曰: “觀火而徐飲何如?” 俄而, 兩使以夜深求退, 上行酒, 相與相讓而出, 送至中門而還。</p>
--	---	---

	<p>“등과록은 명령대로 하겠으니 예물도 아울러 물리치지 마십시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국왕의 성의가 이러하시니, 어찌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고맙습니다.” 하였다. 날이 저물어 상이 불꽃 구경을 청하여 못가 계단 위로 자리를 옮겼다. 족자(簇子)18943)·포도(蒲萄)18944) 등 불꽃이 일시에 터지니 두 사신이 서로 감탄하면서,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인가.” 하고, 상이 술을 들라고 청하자 두 사신이 답하기를, “불꽃을 구경하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윽고 두 사신이 밤이 깊었다고 물러나려 하니, 상이 술을 돌리고 서로 사양하면서 나와 중문까지 전송하고 돌아왔다.</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4 일(신해) 7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15일이 나라의 기일인데 위에서는 애초에 천사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대신이 나라의 기일은 천하가 모두 같으니 알려도 무방하겠다고 하므로 천사에게 말하였다. 상마연은 이미 13일에 거행하였다. 천사가 내일 친히 하직을 고하러 온다고 하는데, 형편상 거절할 수 없기에 경회루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음악을 동원하는 것은 천사를 위하여 베푸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15일이 기일인 줄은 천사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소식(素食)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대선·소선의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천사가 이미 정성스런 물품을 보내고 내일 알성 후에 온다고 하는 것은, 천사의 생각에는 필시 제사가 끝난 것이라고 여겨서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관을 보내 대신에게 의논하라.”</p>	<p>○傳于政院曰：“十五日國忌，自上初不欲言于天使，而大臣以爲國忌，天下所同，告之無妨，故告于天使，上馬宴已進行十三日矣。天使明日，欲親來告辭，勢不可拒，故欲相會於慶會樓。凡動樂，爲天使設也，今何以爲之？十五日有忌，天使已知之矣，予可以素食乎？然有大小膳節次，何以爲之？天使既送素物，明日謁聖後欲來者，其意必以爲祭後故也。此意遣史官，議于大臣。”</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4</p>	<p>영의정 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천사가 하직을 고하려고 온다면 경회루에서 만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p>	<p>○領議政尹殷輔等啓曰：“天使欲來下直，則慶會樓相會，何妨之有？但十五日國忌，天使已知之矣，樂則不可舉</p>

<p>일(신해) 9번째기사 경회루 연회때에 음악 사용을 금하고 소찬으 로 하는 문제를 삼공 에게 의논케하다</p>	<p>까. 다만 15일은 나라의 기일이고 천사도 이미 알고 있으니 음악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자리에는 고기 반찬을 쓰겠지만 상의 앞에는 소찬(素饌)을 써야 하며 대선과 소선 또한 써서는 안됩니다. 또 간절한 말로 천사에게 말하기를 ‘마침 친기(親忌)를 당하여 대인들께서 누추한 곳에 왕림하셨는데도 완전한 예를 행하지 못하여 지극히 황송합니다.’라고 한다면 합당할 듯합니다.”</p> <p>하니, 전교하였다.</p> <p>“알았다. 다만 음악을 쓰는 일은 전례를 상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대선과 소선을 쓰지 못하나, 천사의 자리에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온편치 못하다. 다만 천사에게만 쓰고 나는 쓰지 않는다면 예식의 분위기를 맞추는 데에 천사가 몹시 난처할 것이다. 소찬으로 대선과 소선을 할 수 있는가? 내일 다시 삼공에게 의논하라.”</p>	<p>也。天使處用肉饌，上前用素饌，而大小膳，亦不可爲也。且以懇切之辭，言于天使曰：‘適有親忌，承大人枉臨陋止，而不得完禮，至爲惶恐’云，似當。”傳曰：“知道。但舉樂事，則當考前例發落。予則不用大小膳，而天使處亦不用，甚爲未安，只用於天使，而予不用，則有助進之禮，天使必難之矣。以素饌爲大小膳乎？明日更議于三公。”</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6 일(계축) 2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기를, “세자가 술을 올리는 것이 옳겠으나 술을 올리려면 부득이 반열의 앞에 서야 되는데, 반열의 앞에 서게 되면 천사가 교자를 타고 지나가기가 온당치 못할 것이고, 만약 교자에서 내리게 되면 상이 계단 위에 서 있게 되어 역시 온당치 못하다. 그러므로 세자는 나오지 않기로 이미 결정하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천사를 전별하는 날 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온당치 못하다. 술을 올린 뒤에 반열의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속히 사부(師傅)에게 의논하라.”</p> <p>하였는데, 시강원이 아뢰기를, “술을 올린 뒤에 반열의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p> <p>하니, 그렇게 하라고 전교하였다.</p>	<p>○傳于政院曰：“世子行酒可矣，而行酒，則不得不出班首，出班首，則天使乘轎過去未便。若下轎則自上立階上，亦未安也，故世子不出，事已定矣。然更思之，餞天使之日，世子之不出，至爲未便。行酒後，不出班首何如？速議于師傅。”侍講院啓曰：“行酒後不出班首，似爲無妨。”傳曰：“可。”</p>
<p>중종 90권, 34년</p>	<p>대간이 아뢰기를,</p>	<p>○臺諫啓曰：“今日餞宴，世子進爵後，</p>

<p>(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4월 16 일(계축) 5번째기사 상과 세자와 백관이 천사를 전송하다</p>	<p>“오늘 전별연에서 세자가 술을 올린 뒤 백관을 거느리고 반열의 앞에 서는 것이 상례(常禮)인데, 단지 술잔만 올리고 전송하지 않는 것은 예모에 합당하지 않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세자가 전송하지 않는 것은 정유년의 예이다. 아된 뜻이 옳으니 전송하도록 하라.”</p> <p>하였다. 두 사신이 청하기를, “지금 작별하려 하며 정은 한이 없으나 길을 떠나려 하니 할 일이 바쁩니다. 예를 줄여 간소하게 하였으면 합니다.”</p> <p>하니, 상이 분부대로 따르겠다 하고, 이어 배신이 술을 올리겠다고 청하여 만류하였다. 지중추부사 윤세호(尹世豪), 우참찬 정옥형(丁玉亨), 순원위(淳原尉) 조의정(趙義貞)이 술을 올리자 두 사신이 술을 그만하자고 청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들께서는 한 순배 돌리는 예를 마저 마치시지요.”</p> <p>하니, 두 사신이 명을 따르겠다고 하여 우찬성 윤임(尹任)이 술을 올리고 대선(大膳)을 올렸다. 상이 또 한 잔을 더 하자고 청한 뒤에 서로 읍하고서 길을 사양하며 나와 문 밖 계단 위에서 또 술 한 잔 하기를 청하였다. 두 사신이 계단을 내려서자 상도 계단을 내려와 두세 번 서로 읍한 뒤 상이 계단을 오르자 교자를 탔다. 상은 계단 위에서 있고 두 사신은 교자를 멈추고 서로 손을 들어 먼저 떠나라고 오래도록 사양하다가 나갔다. 세자의 반열 앞에 이르자 두 사신은 교자에서 내려 배례(拜禮)하였다. 백관의 반열 앞에 이르니 백관은 모두 절을 하고 두 사신은 답례로 읍하면서, 우리들 때문에 수고가 많다고 하였다.</p>	<p>率百官立班首，爲常禮也。只進爵而不祇送，於禮貌不合。”傳曰：“世子之不祇送，丁酉年例也，所啓之意至當，祇送可也。”兩使請曰：“今將臨別，情則無窮，但當登途，行事忽忽，請殺禮從簡。”上曰：“依命”，仍請陪臣行酒以留之。知中樞府事尹世豪、右參贊丁玉亨、淳原尉趙義貞行酒，兩使請止酒。上曰：“願大人完一杯之禮。”兩使曰：“依命。”右贊成尹任行酒，進大膳後，上又請行一爵而後，相與揖讓而出，至門外階上，又請行一爵。兩使下階，上亦下階，相揖再三，上陞階，兩使乘轎。上立階上，兩使停轎，舉袖相讓，久之乃出。至世子班次，下轎行拜禮，至百官班次，百官皆拜，兩使對揖曰：“以俺等之故，多致勞動。”</p>
<p>중종 90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p>	<p>음식 차리는 것만 보더라도 중국 사람의 음식은 그릇 두어 개에 불과한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여섯 사람이 먹을 만큼 음식을 차리니 비용이 많이 들지</p>	<p>以飲食饌具觀之，唐人所食，不過數器，而我國之人，常兼五六人之饌，費</p>

<p>(嘉靖) 18년) 4월 24 일(신유) 1번째기사</p>	<p>않겠는가. 사옹원(司饗院)에서 진상하는 그릇은 비록 보통 쓰는 그릇처럼 작게 만들지는 않더라도 오늘날 쓰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천사에게 지공(支供)하는 음식을 보건대 남는 것이 많으니 이후로 산정(算定)할 때에는 그 수량을 조금 줄여서 민폐를 제거하라.”</p>	<p>用不亦甚乎? 司饗進上之器, 雖不如常器之小, 而不使如今時所用之大可也。又觀天使支供之饌, 多有餘數。今後卜定之時, 稍減其數, 以除民弊。”</p>
<p>중종 91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7월 26 일(신묘) 1번째기사</p>	<p>삼공이 아뢰기를, “피전(避殿)하고 감선(減膳)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가을철로 접어든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각도에 내린 비도 모두 흠족하다고 하니 정전(正殿)으로 돌아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전을 피한 것은 한재 때문만 아니라 성변(星變)【혜성(彗星)이 밤에 나타나고 태백(太白)이 낮에 보였다.】도 있기 때문이다. 내린 비는 비록 흠족하다 하나 천변이 그치지 않는 한 아직은 정전에 돌아갈 수 없다.” 하였다. 다시 아뢰니 윤허하였다.</p>	<p>○辛卯/三公啓曰: “避殿減膳既久, 秋節之入, 亦已久矣。各道雨水, 亦皆周足云, 請復正殿。” 傳曰: “避殿, 非徒爲旱災矣, 亦爲星變也。【彗星夜出, 太白晝見。】雨水雖曰周足, 災變不絕, 不可復正殿也。” 再啓, 允之。</p>
<p>중종 91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8월 29 일(계사) 2번째기사</p>	<p>또 변방의 장수가 저들을 접대하는 것은 본디 정해진 법이 있는데, 지금은 풍성하고 사치하기에 힘쓰고 백성들의 폐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잔치는 매양 회령부(會寧府)에서 하는데, 감사와 병사 앞에 상(床)을 놓고, 우후(虞候)·부사(府使)·도사(都事)·평사(評事) 등의 상은 그 다음이요, 중추 첨지(中樞僉知) 등의 앞에는 모두 사주상(四注床)을 늘어 놓고, 그밖의 어육(魚肉)같은 음식도 여기에 맞추어서 냅니다. 소주(燒酒)는 거의 70여 동이나 되는데, 그 상의 비용은 나라의 잔치 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잔치가 끝날 때쯤 헤서는 과일과 어육을 거두어서 주고, 또 사기(沙器)·염두(鹽斗)·석자(席子)·포자(布子) 등 물건을 예물(禮物)이라 일컬어 그 추장(酋長)에게 넉넉히 주는데, 이것이 모두 민간에서 나오니 백성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 잔치 때 쓰는 술은 한 말의 좁쌀을 민간에 나눠주고 사람 수를 따져서 각각 한 병씩을 거둡니다. 까닭에 궁한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사다가 바칩니다. 또 돼지를 민간에 독촉하여 받기 때문에 백성들이 혹은 소를 끌고 가서 비밀히 저들에게서 바꾸어 바치</p>	<p>且邊將之接待彼人, 自有定規, 而今則務爲豐侈, 不計民弊矣。彼人宴享, 每於會寧府爲之。監司、兵使前, 設大卓床, 虞候、府使、都事、評事床次之, 中樞、僉知等處, 皆以四注床排設, 而其他魚肉供饋之物, 稱是。燒酒幾至七十餘盆, 其床費, 無異於國之宴禮。及其宴罷, 撤果與魚肉而給之, 又以沙器、鹽斗、席子、布子等物, 稱爲禮物, 而優給其酋長。此皆出於民間, 民其支當乎? 且宴時所用之酒, 以斗粟散於民間, 而計人口各徵一瓶, 故窮民輾轉貿納, 又督豬於民間, 故民或</p>

	기도 합니다. 회령(會寧)뿐이 아니라 각진(各鎭)이 모두 그렇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 폐단을 없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인들을 접대하는 물건을 풍성하고 사치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감사에게 하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일렀다. “변방 대비책은 대신들과 의논해서 조치하겠다.”	以牛隻，潛易於彼人而納之，非徒會寧。各鎭莫不皆然，此弊不可不革也。野人饋餉，勿爲豐侈事，下諭于監司何如？”上曰：“大抵備邊之策，當議于大臣而處之也。”
중종 92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10월 8일(임신) 1번째기사 유지를 내릴 때 국수와 떡 같은 음식을 내지 못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가 근친(覲親) 【인(寅)의 아버지 송지한(宋之翰)이 그때 철원 부사(鐵原府使)로 있었다.】을 하기 위해 강원도로 내려갔는데, 감사 정순봉(鄭順朋)이 식물(食物)을 제급(題給)할 때 국수와 떡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모두 백성들의 피땀에서 나온 것이니, 유지(有旨)를 내릴 때 이런 식물은 지급하지 말라는 일도 아울러 하유하라.”	○壬申/傳于政院曰：“礪城尉【宋寅.】以覲親，【寅父之翰，時爲鐵原府使.】下去江原道，而監司鄭順朋，食物題給時，麪餅則不當給也。此無非出於民之膏血。有旨時，此等物，勿題給事，并下諭。”
중종 92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10월 16일(경진) 2번째기사	정원이 천점(泉帖)에서 큰 사슴 3마리 사냥한 것을 입계(入啓)하니, 전교하였다. “즉시 사관(史官)에게 명해 종묘(宗廟)에 올리게 하라.”	○政院以泉帖所獵大鹿三頭入啓，傳曰：“卽命史官，薦于宗廟。”
중종 92권, 34년 (1539 기해 / 명 가정 (嘉靖) 18년) 11월 16일(기유) 1번째기사	굴 여섯 통과 어제시(御製詩) 10수(首)를 정원에 내면서 일렀다. “이 굴을 승정원·홍문관·시강원·예문관·사헌부·사간원에 나누어 주고 시를 지어 올리게 하라. 양사(兩司)는 짓지 않아도 된다.”	○己酉/以柑子六桶，及御題十首，下于政院曰：“以此柑子，分賜于承政院、弘文館、侍講院、藝文館、司憲府、司諫院，其製詩以進，兩司則不製可也。”
중종 93권, 35년 (1540 경자 / 명 가정 (嘉靖) 19년) 3월 9일	상이 경회루(慶會樓) 아래로 나아가 마아습진(兒習陣)을 관람하고 ‘도원(桃源)’이라는 율시(律詩)의 시제(詩題)를 내어 입시한 종재(宗宰)들 이하 모두에게 지어 바치게 하였다. 송순(宋純) 등 9인이 입격(入格)하였으므로 차등 있	○辛丑/上御慶會樓下，觀馬兒習陣，出題桃源律詩，令入侍宗宰以下製進。宋純等九人入格，賞賜有差。還宮後，

<p>(신축) 1번째기사</p>	<p>게 상을 내렸다. 환궁(還宮)한 뒤에는 또 입시한 신하들에게 후원(後苑)을 두루 구경하게 하고, 신하들이 머무를 때마다 선운주(宣醞酒)를 내렸다. 모두들 잔뜩 취하여 더없이 즐기다가 나왔다.</p>	<p>又令入侍之臣，遍觀後苑，隨其所止，輒賜宣醞，咸極醉飽，盡歡而出。</p>
<p>중종 93권, 35년 (1540 경자 / 명 가정(嘉靖) 19년) 5월 11일(임인) 3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p> <p>“법사가 지금 술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한재(旱災)가 절박하여 상하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실정이므로 식견이 있는 자는 사제(私第)에 있더라도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종친(宗親)이나 무식(無識)한 사람은 깊숙한 방안이니 누가 알라 하여 연락(宴樂)은 하지 않을지라도 술을 마시는 경우는 없지 않으리라. 서인(庶人)들은 노병(老病)에 약으로 쓰기 위해 술을 빚더라도 집이 깊숙하질 못해서 쉽게 발각되어 죄를 입게 되지만, 사대부나 종친들로서 깊숙한 방안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자들은 도리어 죄를 받지 않게 되니,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다. 각별히 규찰할 것을 헌부에 이르라.”</p>	<p>○傳曰：“法司時方禁酒，然近來旱災切迫，上下遑遑，有識者雖在私第，必不爲盃酒，如宗親及無識之人，以爲深室之中，人不得知，雖不宴樂，不無盃酒，庶人則雖老病救藥，家室淺露，易至被罪，士大夫宗親等，深室中多爲盃酒者，反不蒙罪，此甚不當。各別糾察事，言于憲府。”</p>
<p>중종 93권, 35년 (1540 경자 / 명 가정(嘉靖) 19년) 8월 3일(임술) 2번째기사</p>	<p>언필이 아뢰기를,</p> <p>“은(銀)의 조공을 면제하여 달라고 요청한 일이 언제 있었는지 신이 몰랐는데 얼마전 승문원(承文院)에서 합좌(合坐)할 때 그곳 《등록(騰錄)》을 조사하여 보니, 바로 선덕(宣德)19415) 4년(19416) 세종조였습니다. 그때 은은 우리나라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주청하며 면제를 받았습시다. 선덕황제가 요구했던 물품을 보면 그때에 우리 나라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금그릇 10여 개와 은그릇 10여 개를 1년안에 여러 차례 바치는데다 또 불시에 은 2~3백 냥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생선·소금·건어물(乾魚物) 및 요리에 능숙한 여인 8~9명, 음률을 아는 여인 8~9명까지도 징수하였으니 이런 때가 언제 또 있었겠습니까? 매우 놀랍습시다. 지금은 이와 같은 폐단은 없으나 대간이 아뢰었던, 은의 조공이 다시 생길까 걱정된다는 말은 매우 타당합니다. 신들은 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니 잘못이 큼니다.</p>	<p>彥弼曰：“銀貢請免事，臣未知何時爲之，頃於承文院合坐時，考其騰錄，乃宣德四年世宗朝也。以銀非我國之產，奏請免之。觀宣德皇帝徵索之物，其時我國，何以堪支乎？金器十餘，銀器十餘，一年之內，累度貢獻，而又不時索銀二三百兩，且魚鹽乾魚物，及熟饌女人八九名，知音女人八九名，亦且懲納。安有如此之時乎？至爲駭愕。今則無如此之弊，然臺諫所啓，恐銀貢復出之言甚當。臣等未及計之，至爲非矣。</p>

<p>중종 94권, 35년 (1540 경자 / 명 가정 (嘉靖) 19년) 12월 27 일(갑신) 2번째기사</p>	<p>황감(黃柑) 한 통을 대간청(臺諫廳)에 내리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난번 대간이 합사(合司)하면 술을 하사한 예가 있으니, 이 황감을 대간에 나누어 주고 도승지(都承旨)는 가서 술을 하사하라.” 정원에 전교하였다.</p>	<p>○以黃柑一桶，下于臺諫廳。仍傳于政院曰：“前者臺諫合司之時，或有賜酒之例。以此黃柑，分賜于臺諫，而都承旨往接賜酒可也。”</p>
<p>중종 94권, 35년 (1540 경자 / 명 가정 (嘉靖) 19년) 12월 28 일(을유) 2번째기사</p>	<p>“오늘은 매우 춥다. 의정부가 와서 모였기 때문에 술을 하사한다. 내관(內官)이 접대하겠지만 승지(承旨)도 접대해야 한다. 지금 황감 한 통을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라. 영상(領相)은 오지 않았지만 역시 나누어 보내야 한다.”</p>	<p>傳于政院曰：“今日極寒，政府來會，爲賜酒，而內官雖爲對客，承旨亦可接待也。今以黃柑一桶，分賜大臣，而領相不來，亦可分送也。”</p>
<p>중종 94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1월 1일 (무자) 1번째기사</p>	<p>상이 망궐례(望闕禮)19517) 를 행할 때 왕세자가 수반(隨班)하였다. 상이 근정전에 나아가니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전(箋)19518) 을 올려 축하하였다. 대내(大內)로 돌아와 곡연(典宴)19519) 을 베풀고, 전교하였다. “오늘 종재(宗宰)들에게 공궐(供饋)할 때 승지(承旨)들이 각기 선은(宣醞)19520) 의 술잔을 돌리게 하라.”</p>	<p>○戊子朔/上行望闕禮。王世子隨班。上御勤政殿，世子率百官，進箋陳賀，還大內，行曲宴。傳曰：“今日宗宰供饋時，承旨等，各傳宣醞盃。”</p>
<p>중종 94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1월 1일 (무자) 2번째기사</p>	<p>이날 종재들과 모든 부마(駙馬), 그리고 시종(侍從) 및 제장(諸將) 모두가 머리에 꽃을 꽂고 각기 반열에 나아가 모두들 선은을 실컷 마셨으니, 이는 상의 분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열 가운데서 술을 잘 마시는 이를 골라 그에게 술잔을 돌리게 하였다. 선은이 여러 순배 돌자 혹 술에 취하여 엎어진 이도 있었고 또는 취해서 자는 사람도 있었다. 해가 기울어서야 연회를 마치고 사은(謝恩)한 다음 모두 물러나왔다.</p>	<p>是日宗宰諸駙馬侍從及諸將等，皆插花，各進班次，宣醞皆盡飲，以有上教故也。諸班中，抄其能飲者，使之行酒，宣醞累巡，或有醉倒者，或有醉睡者，日昃而罷，即謝恩而退。</p>
<p>중종 95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5월 15 일(경자) 2번째기사 헌부가 진상의 방법에 대하여 아뢰다</p>	<p>헌부가 아뢰기를, “함경도의 고기잡이 하는 해정(海丁)19689) 은 다 내수사(內需司)에 속해 있으므로, 각 고을에서는 진상(進上)하는 어물(魚物)을 잡을 곳이 없습니다. 각 고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민간에서 내도록 요구하므로 가난한 백성이 값을 가지고 내수사에서 사서 바치는데, 내수사가 그 이익을 독점하여 때를 타서</p>	<p>○憲府啓曰：“咸鏡道捉魚海汀，皆屬內需司，各官進上魚物，無處捕捉，各官不得已責出民間，窮民持價質納。內需司如獨專其利，乘時索價，一魚之直，或至米十斗。以此民不聊生，漸至逃散云。本道居民等，訴冤者亦多，</p>

	<p>값을 요구하므로 고기 한 마리의 값이 쌀 열 말까지도 가니, 이 때문에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여 점점 달아나 흩어지게 된다 합니다. 본도에 사는 백성들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도 많으므로 본부가 공문을 보내어 해정의 수를 살펴보았더니, 각 고을의 내수사에 속한 해정이 모두 스물 아홉 군데입니다. 백성이 함께 잡아서 진상에 이바지하도록 허가하여, 백성이 작은 혜택이나마 입을 수 있게 하소서.”</p> <p>하니, 답하였다.</p> <p>“함경도의 고기잡이하는 해정이 이렇게 많이 내수사에 속한 것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 내수사가 잡는 것은 모자라지 않고 민간에서 진상하는 것은 긴요하니, 백성도 함께 잡는 것을 허가하도록 하라.”</p>	<p>故本府行移，考海汀之數，則各官內屬海汀，凡二十九處。請許令民分捉，以供進上，使民得蒙一分之惠。” 答曰：“咸鏡道捉魚海汀，多屬內需司，如此者，予所不知之事也。內需司之捉不闕，而民間進上事繁，許民分捉可也。”</p>
<p>중종 95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5월 25일(경술) 1번째기사</p>	<p>저번에 서울의 각사(各司)에서 오래 묵은 곡식과 염장(鹽醬)을 싼값으로 팔도록 허가하였는데, 이것은 황정(荒政)에 합당한 일입니다. 본조(本曹)가 마련한 것은 예빈시(禮賓寺)의 묵은 메밀이 1천여 섬이나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쓸데가 없으니, 염장(鹽醬)과 아울러 굶주리는 백성에게 주면 구제하여 살리는 것이 크겠습니다.”</p>	<p>以京各司久陳穀及鹽醬，許令輕價和賣，此合於荒政之事也。本曹磨鍊，則禮賓寺久陳蕎麥米，至千餘石。此於國家無用，竝鹽醬以給飢民，則其爲救活大矣。”</p>
<p>중종 95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6월 13일(무진)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황해도의 경계가 중국에 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어서 타도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금년의 농사가 매우 염려된다. 그러니 삼명일(三名日)19730)에 진상하는 방물(方物)은 내년의 탄일(誕日)까지는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옳다.”</p>	<p>○戊辰/傳于政院曰：“黃海道，境連上國之路，非他道之比，而今年農事，至爲可慮。三名日進上方物，限明年誕日，勿封進可也。”</p>
<p>중종 96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11월 2</p>	<p>또 돼지가 병들어 죽는 일에 대해서는 신들도 걱정이 됩니다. 중대한 제물(祭物)로 쓸 희생이 이처럼 많이 죽으니, 이는 막대한 재앙이라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소의 전염병[牛疫]은 치료할 방법이라도 있지만 돼지는 치료할 방법이</p>	<p>且猪口病斃之事，臣等亦爲憂悶。不小犧牲之用，如此多斃，此莫大之災，至爲驚愕。牛疫則猶或方法以治之，</p>

<p>일(갑신) 3번째기사</p>	<p>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죄 지은 왜인(倭人)을 압송해 온 왜인에게 어제 본조(本曹)에서 음식을 접대하였는데, 왜인이 말하기를 ‘종태랑(宗太郎)은 변방 장수의 문서만을 가지고 왔고, 우리는 예조의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어째서 태랑과 같은 대접을 하는가.’라고 하기에 ‘종태랑은 죄인을 많이 압송해 왔기 때문에 특송사(特送使)의 관례에서 차감(差減)했을 뿐이니 모두 우대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p>	<p>如猪則無方可治，未知何以爲之？且罪倭狎來倭人，昨日饋享于本曹，而倭人自言曰：‘宗太郎，只持邊將了書契而來，吾等則持禮曹書契而來，與太郎接遇，同禮何也？’答曰：‘宗太郎，多押罪人而來，故差減於特送之例，而已皆優待之事也’云。</p>
<p>중종 96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11월 4 일(병술) 5번째기사 제사에 쓸 희생물이 죽어가므로 각사에서 한 두 마리씩 나누어 기르게 하다</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예조에서 올린 단자(單子)를 보니 희생(犧牲)이 또 14마리나 죽었다 한다. 중대한 제사에 쓸 희생이 며칠 사이에 이토록 많이 죽으니 참으로 큰일이다. 전에 경기 감사(京畿監司) 【임백령(林百齡).】의 서장(書狀)을 보니 ‘광주(廣州)에서 소·양새끼·돼지가 많이 죽으므로 의원(醫員)을 시켜 약을 주어 치료하게 하였더니, 소는 혹 죽기도 하지만 돼지나 양 새끼는 전혀 죽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약으로 치료하면 살릴 수도 있다. 또 한 곳에서 많이 기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 각사(各司)에서 한 두 마리씩 나누어 기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뜻을 예조에 말하라.”</p>	<p>○傳于政院曰：“見禮曹單子，犧牲又斃十四口。不小祭用犧牲，不多日之內，多斃至此，誠非細故。前見京畿監司【林百齡。】書狀，廣州牛隻羔猪，多致故失。令醫員齋藥救療，牛則或死，而猪與羔羊，則全不死云。以藥救之，則亦可救也。又一處多養，故如此也。各司分養一二口何如？以此言于禮曹可也。”</p>
<p>중종 96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11월 5 일(정해) 3번째기사</p>	<p>정원이 예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태평관(太平館)에 옮겨 기르고 있는 돼지 75마리는 모두 살아났고, 개인의 우리로 옮겨 기른 돼지는 90마리 가운데 50마리가 죽고 40마리는 아직 살아 있는데 한창 치료 중입니다.</p>	<p>○政院以禮曹意啓曰：“大平館移養猪七十五口，皆得生存。私場移養猪九十口，而病斃者五十，其餘四十尚存，而時方救療。</p>
<p>중종 96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11월 9 일(신묘) 1번째기사</p>	<p>윤은보와 윤인경이 의논드리기를, “모든 국가와 교제할 때에 중국과의 관례를 따라 술 대신 차를 마시면 간편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제각기 풍속이 있는 것이니 서로 만나</p>	<p>○辛卯/尹殷輔、尹仁鏡議：“凡干交際，依中原例，代酒以茶，似爲便益。但國各有俗，言語相接間，細瑣之事，不必一一苟同。中華、我國，自有會</p>

	<p>이야기할 때에 자잘한 일까지 꼭 하나하나 구차히 서로 같게 할 것은 없습니다. 중국과 우리 나라는 본래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는 관례가 있어 흉년이 들면 병술[壺酒]까지도 금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새로이 관례를 만들 것이 없습니다.</p> <p>…</p> <p>이어서 정원에 전교하였다.</p> <p>“차[茶]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대신은 새로운 관례를 만들 것이 없다고 의논하였다 하니 팔도(八道)에 하서(上書)할 때 금주(禁酒) 사항만 말하라.</p>	<p>飲之禁，如遇凶年，則至禁壺酒，不須肇開新例。</p> <p>…</p> <p>仍傳于政院曰：“用茶事，大臣議以爲，不可開新例云。八道下書時，只言禁酒可也。</p>
<p>중종 96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11월 13일(을미) 1번째기사</p>	<p>진휼청(賑恤廳)의 공사(公事)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p> <p>“이 공사를 보니 누룩의 매매를 엄하게 금하자고 하였다. 만일 드러내 놓고 시장에 내다 마구 판다면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체로 술을 빚는 것은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고사(古事)나 술을 경계하는 글을 보면 술은 제사를 위해서 만드는 음식인데, 뒤에 와서 마시는 것을 숭상하여 문란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허비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갈수록 더하니, 보통 때라도 옳지 못한 일인데 더구나 흉년이 든 때이겠는가. 몰래 서로 매매하는 것을 법사(法司)로 하여금 금하게 한다면, 이를 금지하는 아전들이 그것을 핑계로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잡아다 관에 고발하여 매를 때리기도 하고 벌금을 물리기도 하는 폐단을 일으킬 경우 그 해가 많을 것이다. 누룩의 매매를 엄금하려면 여염에 널리 알려야 하니 방(榜)을 붙여 알게 하라. 품계가 높은 아문(衙門)과 육조(六曹)에 소속된 각사(各司)에서 술을 물쓰듯 하여 노복들이 이로 인해 생업을 잃게까지 되었다는 말도 사실이다. 주모(酒母)를 많이 정하는 것은 본래 법으로 금지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받들어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폐습이 생긴 것이니 적발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본래 이런 법이 있는데</p>	<p>○乙未/以賑恤廳公事，下于政院曰：“觀此公事，欲痛禁麴市。若顯然出市放賣，則禁斷宜也，大抵酒之作，非爲飲也，觀古事及戒酒文，則乃爲祭祀設也。末流崇飲，至於迷亂，不計虛費，日就於甚。在常時猶爲不可，況於凶歉之歲乎？潛相買賣者，若遽令法司禁之，則禁吏依憑作弊，橫捉無辜，告官而或笞或贖，則其害多矣。欲痛禁麴市，則不可不廣曉閭閻，掛榜知會，且秩高衙門，及六曹小各司，用酒如水，以致典僕失所，此言是也。酒母多定，本有法禁，下不奉行，故弊習如是，當摘發痛治也。本有此法，而不奉行者，已有責矣，掌務官皆推考可也。”【“凶歲糜費之弊，惟酒尤甚。各官則酒庫</p>

	<p>도 받들어 시행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으니 장무관(掌務官)을 모두 추고하라.”</p> <p>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흉년에 곡식을 허비하는 폐단으로는 술을 빚는 것이 가장 심합니다. 각 관청에는 주고(酒庫)를 혁파하도록 이미 하유하였고, 경중(京中)의 영접하고 전송하는 곳에서도 모두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풍화(風化)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품계 높은 각 아문과 육조에 소속된 각사에서는 주모(酒母)를 많이 정하여, 재앙을 만나 근신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때에 술을 물쓰듯 하여 조금도 경계하거나 금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각 관아의 가난한 노복(奴僕)들 중에는 생업을 잃는 자가 많으니 매우 불편하지 못합니다. 각 관청 주고(酒庫)의 관례대로 모두 일체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는 법사(法司)가 적발하여 장무관이 매우 엄하게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p> <p>금주령(禁酒令)이 엄밀한 듯하지만 여염에서는 여전히 술을 빚고 있으니 온갖 계책을 생각해 보아도 금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성의 각 시장에는 누룩을 파는 데가 7~8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것이 7~8백 문(門)이 되며 그것으로 술을 빚는 쌀은 천여 석에 이를 것이니, 그 낭비가 참으로 염려됩니다. 누룩을 못 팔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재물을 유통시키는 길도 영원히 금지할 수는 없으나, 이같은 흉년에는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시서(平市署)에 명하여 명년 가을까지만 누룩의 매매를 일체 엄금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革罷事，已曾下諭，京中迎餞處，并一禁矣。王都，四方表準，風化所先。秩高各衙門，及六曹小各司，多定酒母，雖遭謹災遑遑之時，用酒如水，小無戒禁。貪殘典僕，以此失業者頗多，至爲未便。依各官酒庫例一禁，違者令法司摘發，掌務官痛治爲當。禁酒之令，雖似嚴密，閭閻釀醞〔醞釀〕猶舊。百計思量，禁斷甚難。都下各市賣麴處七八，一日所賣，大概不下七八百門，其所釀米，幾至千餘石。其爲糜費，誠爲可慮。禁麴之令，近於迂闊，通財之路，又不可永防，當此非常凶歉，不可不禁。令平市署，限明年秋成，一切痛禁麴市何如?】</p>
<p>중종 96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p>	<p>대신에게 전교하였다.</p>	<p>○己亥/傳于大臣曰：“祭祀，國之大事。犧牲雖不肥臚，猶不合祭祀，況</p>

<p>(嘉靖) 20년) 11월 17일(기해) 1번째기사</p>	<p>“제사는 나라의 대사(大事)이기에 희생(犧牲)이 살지지 않은 것만도 제사에 적합하지 못한 것인데 더구나 계속해서 병들어 죽는 것이겠는가. 근래에는 옮겨서 기르고 있지만 병이 전염되어 많이 죽으니, 어찌 그 이유가 없겠는가. 이는 반드시 제사에 정성을 다하지 못한 소치이다. 모든 제향관(祭享官)과 제구(祭具)에 삼가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일이 있는지 다시 더욱 살피도록 하라.</p>	<p>相繼自斃乎? 近者雖移養, 染疫多死。豈無其故? 此必祭祀不能誠敬之所致。凡享官及祭具, 不謹不潔之事, 更加察之。</p>
<p>중종 96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11월 17일(기해) 3번째기사</p>	<p>또 대마 도주에게 상으로 줄 물건의 단자(單子) 【도주에게는, 면포 1백 필, 정포 50필, 쌀과 콩 80석, 표피(豹皮) 2장, 호피(虎皮) 2장, 네장 불이 유둔(油菴) 2부(浮), 두장 불이 유둔 2부, 계(桂) 3각(角), 다식(茶食) 3각, 소주 20병, 건치(乾雉) 1백 마리, 갓 1석, 꿀 4말. 대관(代官)에게는, 면포 40필, 정포 30필, 쌀과 콩 30석, 네장 불이 유둔 1부, 두장 불이 유둔 1부, 계 3각, 다식 1각.】 와 약속 단자(約束單子)를 가지고 아뢰었다.</p>	<p>又以賞賜島主單子, 【島主處, 綿布一百匹、正布五十四、米豆并八十碩、豹皮二張、虎皮二張、四張付油菴二浮、二張付油菴二浮、桂三角、茶食三角、燒酒二十瓶、乾雉一百首、栢子一碩、清蜜四斗。代官處, 綿布四十四、正布三十四、米豆并三十碩、四張付油菴一浮、二長付一浮、桂一角茶食一角。】 及約束單子啓曰</p>
<p>중종 96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11월 29일(신해)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진흙사 양연이 아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각 관청에서 채소와 과일을 달마다 천신(薦新)하기 위하여 종전대로 많이 봉진(封進)하기 때문에 백성이 그 폐해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는 1차 천신 외에는 1년을 기한으로 반감(半減)하거나 전감(全減)하라는 내용으로 사옹원(司饗院)에서 속히 서계(書啓)하도록 하라.</p>	<p>○傳曰: “賑恤使梁淵所啓, 京畿各官菜蔬及果實, 因月令薦新, 因循多數封進, 故民受其弊云。自今一次薦新外, 當限年, 或半減、或全減, 速令司饗院書啓。</p>
<p>중종 97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12월 1일(임자) 1번째기사</p>	<p>정원(政院)에 전교(傳敎)하였다. “구황 경차관(救荒敬差官)19921) 을 내려보내는 일은 이미 정해졌거니와, 만일 내려가서 민간의 흉년을 구제할 때, 상수리[橡實]와 채소(菜蔬)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데와 구할 수 없는 데를 구분하지 않고 반드시 일체 제정(齊整)하려고 하면 도리어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다. 형편을 보아 처리하여 폐단이 없게 할 것을 경차관(敬差官)이 내려갈 때 말해 주라.”</p>	<p>○壬子朔/傳于政院曰: “救荒敬差官下送事已定, 若下去而民間救荒, 如橡實菜蔬等物有無, 必欲一切齊整, 則反有其弊。隨便處置, 使之無弊事, 敬差官下去時, 言之。”</p>

<p>중종 97권,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 (嘉靖) 20년) 12월 29 일(경진) 4번째기사 혼인 때 사치를 금단 하는 규정</p>	<p>‘신부(新婦)가 시부모를 뵈는 적에 술은 1분(盆), 안주는 5그릇, 따라 가는 여자 종은 3인, 남자 종은 10인으로 한다.’고 하였고, ... 대군이나 제군의 부인이 전하께 조현할 때는 조울반을, 왕비께 조현할 때는 단수반(殿脩盤)19994) 을 올리는데, 찬품은 3가지 과를 넘지 않는다. 대군과 제군이 부인의 부모를 뵈는 적에는 찬품이 5가지 과를 넘지 않는다. ... 공주와 옹주가 시아버지를 뵈는 적에는 조울반(棗栗盤)을 올리고 시어머니를 뵈는 적에는 단수반(殿脩盤)을 올린다. 조현(朝見)한 다음에 종친(宗親)이나 여러 존장(尊長)의 집에 뵈러 갔을 때에 그 사위를 대접하는 찬품은 5가지 과를 넘지 않는다. ... 신부가 시아버지를 뵈는 때는 조울반을 올리고 시어머니를 뵈는 적에는 단수반 (殿脩盤)을 올린다. 조울반(棗栗盤)이 없으면 시과(時果)19996) 로 대신하고 단수반이 없으면 건육(乾肉)으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목을 거듭 밝히 어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新婦謁舅姑，酒一盆，肴饌五器，從婢 三人，奴十人；註， ... 大君諸君夫人朝見， 殿下用棗栗盤朝 見， 王妃用殿脩盤， 饌品不過三果。 大君諸君， 見夫人之父母， 饌品不過五 果， ... 公主、翁主見舅， 用棗栗盤， 見姑， 用 殿脩盤。 朝見後， 見宗親諸尊長， 家 禮， 壻饌品不過五果， ... 婦見舅， 用棗栗盤， 見姑， 用殿脩盤， 棗栗無則用時果， 殿脩無則用乾肉。 此條申明舉行何如？</p>
<p>중종 97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 (嘉靖) 21년) 2월 26 일(정축) 1번째기사 진휼청이 충청도 진휼 경차관 임호신의 계본 에 의하여 건의하다</p>	<p>진휼청(賑恤廳)이 충청도 진휼 경차관 임호신(任虎臣)의 계본에 의하여 회계 하였다. 그 대략에, “이 도는 실농(失農)이 다른 도에 비해 더욱 심하여 공사(公私)가 가지고 있 는 곡식이 이제는 바야흐로 고갈되게 되었으니, 미리 조치하지 않았다가 하루 아침에 다 떨어져버린다면 온 지경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 법이 없겠습니다. 계본 내용의 사연을 가지고 과연 호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 하여 상확(商確)해서 마련해 보건대, 도내(道內)의 가흥(可興)·아산(牙山) 두 창고에다 올해에 받아들인 세입(稅入)의 수가 겨우 5만여 석이 되는데, 충주</p>	<p>○丁丑/賑恤廳因忠淸道賑恤敬差官任 虎臣啓本回啓， 略曰：“同道失稔， 比 他道尤甚， 公私儲穀， 今方垂竭。 不 預措置， 一朝乏盡， 則闔境飢民， 無術 可活。 啓本內辭緣果然。 與戶曹同 議， 商確磨鍊， 則道內可興、牙山兩 倉， 今年所捧稅入數， 纔滿五萬餘石。 以忠州等六官， 飢民救荒四千石， 戶曹 已曾啓稟以給， 國用尤緊， 今又優給，</p>

	<p>(忠州) 등 여섯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할 4천 석을 호조가 이미 계품(啓稟)하여 내주었습니다.</p> <p>국가에서 쓸 것은 더욱 긴요하니 이제 또 더 주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한 도의 굶어 죽은 시체가 장차 구렁에 뒹굴 형편인데 보고만 있고 구제하지 않는 것은 차마 못할 일입니다. 충주·괴산(槐山)·제천(堤川)·진천(鎭川)·청안(淸安)·음성(陰城) 등 여섯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가흥창(可興倉)에 받아 놓은 군자(軍資)인 조미(糙米)20155) 1천 석을 더 주고, 직산(稷山)·천안(天安) 온양(溫陽)·평택(平澤) 등 네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아산창(牙山倉)에 받아 놓은 풍저창(豐儲倉)의 조미 2천 석을 제급(題給)20156) 합니다.</p> <p>그 나머지의 전라도 부근의 실농한 각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각각 그 근방의 금산(錦山)·여산(礪山)·용안(龍安)·함열(咸悅)·고산(高山)·옥구(沃溝)·임피(臨陂) 등 고을의 쌀과 콩을 원래 저축하고 있는 양의 다소(多少)에 따라 차등 있게 감하여 마련한 것이 도합 쌀이 9천 석이고 콩이 2천 석이니, 이것들을 호조(戶曹)로 하여금 옮겨다가 나누어 주게 합니다. 도로가 조금 먼 각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들 중 직접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각각 부근의 같은 도의 각 고을 쌀과 콩을 차례차례로 옮겨다 줍니다.</p>	<p>勢所難行。然一道饑孳，將至填壑，坐視不救，亦所不忍也。忠州、槐山、堤川、鎭川、淸安、陰城等六官飢民，則以可興倉所捧軍資條糙米一千石加給；稷山、天安、溫陽、平澤等四官飢民，則牙山倉所捧豐儲倉條糙米二千石題給；其餘全羅道附近失農各官飢民等，各以其傍近錦山、礪山、龍安、咸悅、高山、沃溝、臨陂等官米太，隨其元儲多少，差減磨鍊，合米九千石、太二千石等，令戶曹推移分給。其道路稍遠各官飢民，不得親受者，則各以附近同道各官米太，次次移給爲當。</p>
<p>중종 97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嘉靖) 21년) 3월 19일(기해) 3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이제 경상상도 경차관(慶尙上道敬差官) 이해(李滌)의 서장【*】을 보니 매우 한심하다. 낙동강의 수위가 낮아 수로로 운반할 수 없으며 백성들이 성주(星州)로 직접 가서 곡식을 인수해 오려 해도 거리는 멀고 인수하는 곡식은 적으므로 차라리 굶주림을 참을지언정 인수하려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p>	<p>○傳于政院曰：“今觀慶尙道上道敬差官李滌書狀，至爲寒心。洛東江水淺，不能漕運，民欲往受穀於星州，則道里遠而受穀少，故寧忍飢死，而不願往受，救荒鹽菜，亦以水淺不能運，則民之饑餓迫矣，予甚惻焉。其令該司，</p>

	다. 구황 염채(救荒鹽菜)20182) 마저도 강물의 수위가 얕기 때문에 운반하지 못한다고 하니 백성의 굶주림이 절박한 것이다. 내 마음에 측은하니 해사로 하여금 각별히 조치할 일을 속히 마련하여 아뢰게 하라.”	各別措置事，斯速磨鍊以啓。”
중종 97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 (嘉靖) 21년) 3월 23 일(계묘) 1번째기사	대마도주가 원사야문(源沙也文)을 보내어서 양전(壤奠)20183) 을 바쳤다.	○癸卯/對馬島主，遣源沙也文，來獻壤奠。
중종 98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 (嘉靖) 21년) 4월 10 일(경신) 1번째기사	공조 참의 유희진(柳希軫)이 그가 찬(撰)한 《대동시림(大東詩林)》과 《대동연주시격(大東聯珠詩格)》을 위에 바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젊었을 때부터 찬집(撰集)한 것입니다.” 하었는데, 전교하였다. “술을 내리라. 찬집(撰集)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니, 힘을 쓴 것이 우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숙마(熟馬) 한 필을 내리라.”	○庚申/工曹參議柳希軫，以其所撰《大東詩林》、《大東聯珠詩格》進上，仍啓曰：“臣自少時所撰集也。”傳曰：“其賜酒。撰集，非一朝一夕之事，用力不偶然也。其賜熟馬一匹。”
중종 98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 (嘉靖) 21년) 5월 4일 (갑신) 1번째기사 세자가 시선때에 서있는 것은 전례라고 세자 사부가 아뢰다	세자 사부(世子師傅) 등이 아뢰기를, “동궁이 시선(視膳)할 때에 시위(侍衛)하는 것은 전례가 그러하니, 위에서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세자의 시선은, 밖에서 돌아와 들어왔으면 시강원(侍講院)과 익위사(翼衛司)가 다 배시(陪侍)해야 하겠으나, 안에서 나와서 시선할 경우에는 조종 때에는 내관만을 거느렸기에 의논한 것이다. 전례가 그렇다면 전례대로 하는 것이 옳다.”	○甲申/世子師傅等啓曰：“東宮視膳時侍衛，前例如此，此在上裁如何耳。”傳曰：“世子視膳，自外環旋入來，則侍講院、翼衛司，皆可侍陪，若自內出而視膳，則祖宗朝，只率內官，故議之矣，前例如此，則依前例可也。”
중종 98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 (嘉靖) 21년) 5월 6일	경기 관찰사 신거관(愼居寬)의 서장에 말하기를, “과주(坡州) 등 7~8고을은 지금 백성이 먹을 것이 떨어져 죽음이 아침저녁	○京畿觀察使愼居寬書狀曰：“坡州等七八邑，民方絕食，死亡迫在朝夕，忍視不救，甚爲慘惻。京倉穀四千石許，

<p>(병술) 2번째기사</p>	<p>에 닥쳐 있는데도 차마 보면서도 구제하지 못하니 매우 가엾습니다. 경창(京倉)의 곡식 4천 섬을 더 제급(題給)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였다. “전일에 경기 관찰사가 치계하여 경창의 곡식을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두 번 전교하였으나 호조가 방계(防啓)하였는데, 이제 또 치계하였으니, 짐작하여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호조에 말하라.”</p>	<p>加題給何如?” 傳曰: “前日京畿觀察使馳啓, 請給京倉, 再爲傳教, 而戶曹防啓也。 今又馳啓, 無奈斟酌給之可乎? 言于戶曹。”</p>
<p>중종 98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嘉靖) 21년) 5월 26일(병오) 1번째기사</p>	<p>일본국의 사자 안심 동당(安心東堂)이 방물(方物)을 바쳤다.</p>	<p>○丙午/日本國使安心東堂, 來獻方物。</p>
<p>중종 98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嘉靖) 21년) 윤5월 21일(경오) 1번째기사</p>	<p>내장(內藏)된 일본국 서계 등록(日本國書契贍錄)을 영의정 윤은보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제 내장된 등록을 상고해 보니 태종(太宗) 때부터 성종(成宗) 때까지 별폭(別幅)에 은함(銀盒)·은우(銀盃) 등의 물건이 적혀 있으니, 은 그릇은 예로부터 가져왔던 것이다. 이를 보면 우리 나라와 일본은 형제국으로서 우호가 아주 두터웠었다.</p>	<p>○庚午/以內藏日本國書契贍錄, 下于領議政尹殷輔曰: “今考內藏贍錄, 則自太宗朝, 以至成廟時, 別幅有銀槩銀盃等物, 則銀器, 自古齎來也。 故本國於日本, 作爲兄弟, 隣好極厚。</p>
<p>중종 98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嘉靖) 21년) 6월 29일(무신) 3번째기사</p>	<p>위접관 유진동이 당관(唐官)이 써서 올린 소폭지(小幅紙)를 가지고 아뢰기를, “당관이 말하기를 ‘이는 강진(康鎭)이 청한 물건이다.’ 하였는데, 원래의 뜻은 실로 나누어 갖고자 해서입니다.” 【마안(馬鞍)·연면(硯面)·자주(紫紬)·녹주(綠紬)·소도(小刀)를 구청(求請)하고, 청견(淸絹) 16필, 단자(段子) 7필을 매매하고, 인삼(人蔘)·흑마포(黑麻布)·백저포(白苧布)를 무역하고자 하였다.】 하니, 예조 판서 김안국에게 전교하기를, “당관이 재배(再拜)한 후에 멀리 온 노고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3대인(大人)의 안부를 묻는 것이 어떠한가? 먼저 3대인의 안부부터 물으면 위로하는 뜻이 완만해질 듯하다.”</p>	<p>○慰接官柳辰全, 以唐官書呈小幅紙, 啓曰: “唐官云: ‘此是康鎭之物也。 然原其意, 則實欲分之也。’ 【求請馬鞍、硯面、紫紬、綠紬、少刀, 買賣青絹十六匹、段子七匹, 欲買人蔘、黑麻布、白苧布。】 傳于禮曹判書金安國曰: “唐官再拜後, 先問勞苦遠來, 次問三大人寒暄何如? 先聞大人寒暄, 則於慰勞之意, 似緩矣。” 安國回啓曰:</p>

	<p>하였는데, 김안국이 회계하기를, “도사(都司)가 보낸 사람이니, 먼저 대인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노고를 위로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천사가 왔을 때에는 두목(頭目)이 하사주를 마신 후에 일어나 읍하면 위에서는 전좌(殿坐)에서 소매를 들어 답한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하겠는가?”</p> <p>하므로, 김안국이 아뢰기를, “당관은 걸터앉지 못하고 일어서서 마실 것인데, 상께서는 불가불 답을 해야 하니 전좌에서 소매를 들어 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였다.</p>	<p>“都司所送之人，先問大人，而次問勞苦似當。”傳曰：“知道。天使時頭目，飲賜酒後作揖，則自上殿坐舉袖矣。今亦如此爲之乎？”安國啓曰：“唐官不能踞坐，既出而立飲，則自上不可不答，殿坐舉袖，於禮合矣。”</p>
<p>중종 99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 (嘉靖) 21년) 8월 9일 (병술) 1번째기사</p>	<p>상이 선릉에 나아가 친히 제사지냈는데 세자(世子)가 수행하였다. 길에서 백고(白菰)와 서과(西果)를 바친 자가 있었는데 이를 사옹원(司饗院)에 내리라고 명하고, 또 해사(該司)에게 베[布]를 지급하게 하였다</p>	<p>○丙戌/上詣宣陵親奠，世子隨之。路有獻白菰、西果者，命付司饗院，又令該司給布。</p>
<p>중종 99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 (嘉靖) 21년) 8월 9일 (병술) 2번째기사</p>	<p>상이 제천정(濟川亭)에 나아가 대가(大駕)를 호종한 종재(宗宰)들에게 선온(宣醞)하라고 명하고, ‘동정(洞庭)’이라는 글제를 내어 신하들에게 칠언 율시(七言律詩)로 지어 바치게 하였다. 김안국(金安國)과 신광한(申光漢)이 함께 삼하(三下)를 받았는데, 각각 별조궁(別造弓) 1정(丁)씩을 하사하고 사은(謝恩)하지 말라고 하였다.</p>	<p>○上還御濟川亭，命宣醞扈駕宗宰，出御題‘洞庭’七言律詩，令諸臣製進。金安國、申光漢，俱爲三下，各賜別造弓一丁，命勿謝。</p>
<p>중종 99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 (嘉靖) 21년) 8월 24일(신축) 1번째기사</p>	<p>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중국 관원을 접견하는 예에는 과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서서 사주(賜酒)를 마시고 서서 사물(賜物)을 받다가 하면 심지어 태평관(太平館)에서 선온(宣醞)을 내릴 적에도 서서 마셨으며 예모(禮貌)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p>	<p>○辛丑/御朝講。領事尹殷輔曰：“唐官接見之禮，果爲甚難。立飲賜酒，立受賜物，至於太平館宣醞時，亦立飲而不爲禮貌。</p>
<p>중종 99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p>	<p>청주(淸州) 사람이 밭 가운데서 웅기가 조금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파보니, 웅기 속에서 은으로 만든 불상(佛象) 네 개가 나왔으므로 관(官)에 진고(進告)</p>	<p>○庚戌/淸州人於田中，見陶甕微露，掘之則甕內，有銀尊四坐，告于官，觀</p>

<p>(嘉靖) 21년) 9월 3일 (경술) 1번째기사 청주에서 은불상이 나오자 술잔으로 만들어 하사하게 하다</p>	<p>하였다. 관찰사 송겸(宋謙)이 진상(進上)하니, 전교하였다. “지금 이 물건을 보니 고물(古物)이다. 따라서 국용(國用)에는 합당하지 않다. 전에 조종조에서는 이런 것으로 옥배(玉杯)나 기타 다른 술잔을 만들어 홍문관과 독서당에 하사하였었다. 이 은불상으로 술잔을 많이 만들어 승정원·예문관·독서당·시강원에 나누어 하사하라.”</p>	<p>察使宋謙上進。傳曰：“今見此器則古物也。於國用不當。前者祖宗朝，或以玉杯及他酒器，賜給弘文館讀書堂矣。以此銀尊，多造酒器，分賜承政院、藝文館、讀書堂、侍講院。”</p>
<p>중종 99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 (嘉靖) 21년) 9월 15일(임술) 2번째기사</p>	<p>상이 1백 세 이상의 노인에게 차등 있게 주육(酒肉)을 내렸다.</p>	<p>○上賜百歲以下老人酒肉，有差。</p>
<p>중종 99권,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 (嘉靖) 21년) 11월 12일(무오) 5번째기사</p>	<p>세자 시강원 보덕(世子侍講院輔德) 정원(鄭源)이 세자에게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월 19일 본원에 입직하였다가 마침 병이 들어 다음날 조강(朝講)에 입시하지 못하였는데, 곧 내관(內官)을 보내 존문(存問)하시고 따라서 주약(酒藥)을 주셨으니 매우 각별한 은전을 내리셨습니다.</p>	<p>○世子侍講院輔德鄭源上書于世子曰：去十日十九日，入直本院，適值病患，翌日朝講，未得入侍，卽蒙遣內官存問，仍賜酒藥，特出于常。</p>
<p>중종 100권, 38년 (1543 계묘 / 명 가정 (嘉靖) 22년) 3월 2일(병오) 1번째기사</p>	<p>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고 저녁에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다.</p>	<p>○丙午/朝，視膳文昭殿；夕，視膳延恩殿。</p>
<p>중종 100권, 38년 (1543 계묘 / 명 가정 (嘉靖) 22년) 5월 17일(경신) 1번째기사 질병이 번지니 전죽으로 구원하게 하다</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오부의 질병 구료하는 곳에 대한 적간 단자를 보니, 북부(北部) 유학(幼學) 조방우(趙邦祐) 집의 비자(婢子)가 나와서 ‘질병은 차도가 있지만 구원하여 먹일 사람이 없어 기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한다. 온 집안이 몸져 누워 있으면 반드시 구원하여 먹일 자가 없을 것이다. 별도로 양식을 마련하지는</p>	<p>○庚申/傳于政院曰：“今觀五部救病處摘奸單子，北部幼學趙邦祐家婢子，出而言曰：‘病雖向差，救食無人，氣力困憊。爲合家病臥，則必無救食者。雖不可別賜糧料，豈無以饘粥救之之事乎?’見此一人，餘可知矣。京城則戶</p>

	못하더라도 어찌 전죽(饘粥)으로 구원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 한 사람만 보아도 나머지는 알 수 있다. 서울에서는 호조가, 외부에서는 수령이 병세를 살펴 편의에 따라 구원하여 먹이게 할 것으로 승전(承傳)을 받들라.”	曹，外方則守令，看審病勢，隨宜救食事，捧承傳。”
중종 101권, 38년 (1543 계묘 / 명 가정 (嘉靖) 22년) 9월 3일 (갑진) 1번째기사	독서당(讀書堂)20618) 에 선운(宣醞)20619) 하고 오율(五律)로 어제(御題)를 내려 지어 바치게 하였다.	○甲辰/宣醞于讀書堂， 賜御題五律，令製進。
중종 101권, 38년 (1543 계묘 / 명 가정 (嘉靖) 22년) 9월 5일 (병오) 2번째기사	창경궁(昌慶宮)의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권정례(權停例)로 양로연(養老宴)을 행하였다. 양인(良人)인 늙은이에게는 한 자급(資級)을 주도록 명하고 천인(賤人)에게는 각각 면포 두 필을 내렸으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술과 고기를 제급(題給)하였다. 늙은이들이 크게 취하도록 마시고 부축되어 나갔으니, 그토록 성대한 은영(恩榮)은 일찍이 없었다.	○以權停例，行養老宴于昌慶宮明政殿庭。 良老人命加一資，賤人各賜綿布二匹，其不參宴者，題給酒肉。 老人等飲至大醉，扶携而出，恩榮之盛，視古無比。
중종 101권, 38년 (1543 계묘 / 명 가정 (嘉靖) 22년) 11월 17일 (정사) 2번째기사	단목(丹木)20714) 은 간품을 다 하였고 쟁점은 호초(胡椒)20715) 에 있을 뿐이니, 굳이 청하여 마지않거든 적당한 수를 더 사서 먼 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丹木則已盡看品，其所爭只在胡椒，若強請不已，量數加質，以慰遠人之心何如?”
중종 101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월 29일 (무진) 1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가 접때 감기가 들어 해수증(咳嗽症)을 얻어서 오래 시사(視事)하지 못하였다. 조금 나아서 경연(經筵)을 열었더니, 그날 마침 추워서 전의 증세가 다시 일어났다. 의원(醫員) 박세거(朴世舉)와 홍침(洪沈) 및 내의녀(內醫女) 대장금(大長今)과 은비(銀非) 등에게 약을 의논하라고 이미 하유(下諭)하였거니와, 이 뜻을 내의원 제조에게 이르라. 또 중화(中和)【2월 1일.】의 주물(晝物)【특별히 바치는 어선(御膳).】도 멈추라.”	○戊辰/傳于政院曰：“予頃者感寒，得咳嗽證，久未視事，故少差而爲經筵，其日適寒，前證復發。 醫員朴世舉、洪沈及內醫女大長今、銀非等議藥事，曾已下諭也， 此意言于內醫院提調。 且中和【二月初一日。】晝物，【別進御膳】亦可停矣。”
중종 101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승지(承旨)·주서(注書)·사관(史官) 등이 선정문(宣政門) 밖에 가서 문안하니, 문안하지 말라고 전교하고, 이어서 전교하였다.	○承旨、注書、史官等，詣宣政門外問安，傳曰：“勿問安。” 仍傳曰：“醫員

<p>(嘉靖) 23년) 1월 29일(무진) 2번째기사</p>	<p>“의원 둘, 의녀 둘, 탕약 사령(湯藥使令) 둘 등에게 선반(宣飯)20812) 을 먹이라고 내의원에 이르라.”</p>	<p>二、醫女二、湯藥使令二等， 饋宣飯事，言于內醫院。”</p>
<p>중종 102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2월 4일 (계유) 1번째기사 동궁이 내의원 제조 및 의원과 사관에게 술을 내리다</p>	<p>내의원 제조가 상의 병세를 물었다. 【이날 전교가 없었기 때문에 의녀 등이 나와서 “지난 밤에는 발에까지 땀이 났으므로 열기가 조금 내리고 두통과 천식도 줄어들었다.”고 했다.】 동궁(東宮)이 내의원 제조 및 의원과 사관(史官)에게 술을 내렸다.</p>	<p>○癸酉/內醫院提調問上體證候。【是日不傳教，故醫女等出語曰：“去夜汗出至於足，故熱氣似減，頭痛、喘證亦減。”云。】東宮宣醞于內醫院提調及醫員、史官。</p>
<p>중종 102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2월 5일 (갑술) 1번째기사</p>	<p>내의원 제조가 아뢰기를, “오늘 약을 상의한 일이 있어 감히 문안드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열은 조금 내린 듯하나 해소는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병세는 나아가는 듯하니 약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요즘 약을 많이 복용하여 음식 맛을 모르겠어서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윤은보(尹殷輔) 등이 다시 아뢰기를, “해소가 그치지 않으니 약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삼소음(參蘇飲)20813) 은 곧 위를 열어 입맛을 돋우는 약이니 잠자리에 들 때 한 번 드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 약을 들이라고 답하였다</p>	<p>○甲戌/內醫院提調啓曰：“今日有議藥事，故敢問安。”答曰：“熱則似減，而咳嗽不止。然大勢向歇，停藥似可。近多服藥，飲食無味故云。”尹殷輔等再啓曰：“咳嗽不止，藥不可停。參蘇飲乃開胃進食之藥，臨臥時一進爲當。”答曰：“此藥可進。”</p>
<p>중종 102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2월 6일 (을해) 1번째기사</p>	<p>내의원 제조가 아뢰기를, “올리던 약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중지하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드렸기 때문에 문안드립니다.”</p>	<p>○乙亥/內醫院提調啓曰：“止所進之藥，【小柴胡湯。】以他藥改進，故問安。”答曰：“昨日臨臥時，進加縮砂、杏仁、桑白皮、五味子參蘇飲，則</p>

	<p>하니, 답하였다.</p> <p>“어제 잠자리에 들 때에 올린 축사(縮砂)·행인(杏仁)·상백피(桑白皮)·오미자(五味子)를 가미한 삼소음을 들었더니 밤중이 지나자 전신에 땀이 나고는 병세가 약간 가벼워지고 해소도 조금 줄었다.”</p>	<p>夜半後滿身汗出，大概向歇，而咳嗽亦稍減矣。”</p>
<p>중종 102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嘉靖) 23년) 3월 8일 (병오)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어제 본 차자에 대해 대략은 답을 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이번 일의 실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때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그렇게 만들었다고 여기는 것이다.</p> <p>조의정의 가화(家禍)는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옹주가 해산(解産)한 뒤에도 음식 먹는 것이나 기운이 평소와 같았었는데, 불숙(不淑)20855) 하던 날에 이르러서는 국을 마시고 소변(小便)을 보다가 그대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채 인사 불성(人事不省)이 되었던 것이다.</p>	<p>○丙午/傳于政院曰：“昨觀筮子，大概答之矣。外間不得詳知此事之實，故以爲予乘一時之怒而致然也。義貞家禍，非一朝一夕也。翁主自解妊之後，食飲氣候如常，及其不淑之日，飲羹而小便，仍仆不起，不省人事。</p>
<p>중종 103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嘉靖) 23년) 5월 2일 (기해) 1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p> <p>“빈풍(飊風) 칠월편(七月篇)은 곧 주공(周公)이 성왕(成王)20970) 으로 하여금 농사 짓기가 가난함을 알게 하려고 지은 시이다. 그러므로 옛적의 임금들이 더러는 병풍을 만들어 좌우에 놓아 두고 항상 살펴보고서 민간(民間)의 간고(艱苦)를 갖추 알았던 것이다.”</p> <p>하고, 특별히 활과 화살을 내렸으며 또 술을 내렸다.</p>	<p>傳曰：“《飊風七月篇》，乃周公欲使成王知稼穡艱難而作也。是故古之人君，或作屏置諸左右，常觀省，備悉民間艱苦也。”特賜弓箭，且賜酒。</p>
<p>중종 103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嘉靖) 23년) 5월 15일(임자) 2번째기사</p> <p>세자가 생강을 동궁 관원들에게 내리고 수서를 내리다</p>	<p>세자(世子)가 생강(生薑)을 요속(僚屬)21019) 들에게 내리고 이어 수서(手書)를 내렸다.</p> <p>“내가 《논어》에 공자의 음식에 대한 절도를 기록한 것을 보니 ‘생강을 끊지 않고 먹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구복(口腹)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정신을 소통시키고 구취(口臭)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제군자(諸君子)는 공자를 사모하는 사람들로써 비록 말단인 음식 같은 것에 있어서도 반드시 법을 취하고 있을 것이기에 지금 이 채소를 시장원(侍講院)에 보내는 것이니, 한 번 맛보는 것이 어떻겠는가?”</p>	<p>○世子賜生薑于僚屬，仍下手書曰：予觀《論語》記夫子飲食之節，有曰：“不撤薑食。”此非爲口腹，但爲通神明、去穢惡故然也。諸君子動慕夫子者，雖於飲食之末，必有取法焉。今以是菜，送于院中，一嘗何如？</p>

<p>중종 103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5월 28 일(을축)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국가의 큰 일은 제사와 전쟁인데, 전쟁에 관한 일은 지금 바야흐로 강구(講求)하고 있다. 제사에 관한 일은 매우 해이되어, 제단(祭壇)·제물(祭物)·기구(器具) 같은 것을 지난날에는 매양 관원을 보내 적간했기 때문에 자못 공경스럽게 하고 근신해서 하는 뜻이 있었는데, 오래되자 도로 태만해졌다. 전례대로 좌부승지 홍서주(洪敘疇)와 홍문관 전한 나숙(羅淑)을 동적전(東籍田)에, 동부승지 나세찬(羅世纘)과 홍문관 부응교 김천우(金天宇)를 서적전(西籍田)에 나누어 보내 적간하게 하고, 각 능(陵)·전(殿)의 모든 제기(祭器)와 관복(冠服)도 또한 순찰해 보고 아뢰게 하라. 특별히 시종(侍從)들을 보낸다면 반드시 범연히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내관(內官)을 보내지 않는 것이니, 이런 뜻도 아울러 알라.”</p>	<p>○乙丑/傳于政院曰：“國之大事，在祀與戎，戎事則今方講究矣。祀事至爲解弛，如祭壇及祭物器具，往者每遣官摘奸，故頗有敬謹之意，久則還爲怠惰，依前例其遣左副承旨洪叙疇、弘文館典翰羅淑于東，同副承旨羅世纘、弘文館副應教金天宇于西，分往摘奸，各陵、殿凡祭器冠服，亦巡審以啓。特遣侍從，必不偶然，故不遣內官，此意竝知悉。”</p>
<p>중종 103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6월 20 일(정해) 2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 【유관(柳灌).】의 서장(書狀)을 정원에 내리고 일렀다.</p> <p>“이제 현장에서 잡힌 권인좌는 의금부에 내리라. 금은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니, 화장(和匠)을 불러서 보게 하라. 여느 때에도 상의원(尙衣院)에서는 납약(臘藥)에 금을 쓰고 제향소(祭享所)의 금은기(金銀器)를 개조(改造)할 때에도 금은을 쓰는데, 은은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나, 금은 늘 저자에서 사는 것이니, 이제 상의원에 두라.”</p>	<p>○下平安道觀察使【柳灌】書狀于政院曰：“今現捉權仁佐，下義禁府，金則未能的知云，招和匠見之可也。常時尚衣院，臘藥時用金，祭享所金銀器改造時，亦用金銀，銀則我國所產，若金則常買諸市上，今可置于尙衣院。”</p>
<p>중종 103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6월 24 일(신묘) 2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효정 옹주(孝靜翁主)의 집은 녹(祿)을 받지 못하여 3년의 상(喪)을 이어가기 어렵다 하니, 봄·가을에 쌀·콩 각각 30석(石)을 내려서 제사의 비용을 도우라.”</p>	<p>傳于政院曰：“孝靜翁主之家，不得受祿，而難繼三年之喪云。春秋，其賜米、太各三十石，以助祭費。”</p>
<p>중종 104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7월 25 일(임술)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순변사는 내가 인견하러 하였으나, 요즈음 마침 사고가 있어서 하지 못하였다. 이제 바야흐로 왜노를 거절하였으므로 남방의 일이 매우 염려스러우니,</p>	<p>傳于政院曰：“巡邊使，予欲引見，而近適有故，未得爲耳。今方拒絕倭奴，南方之事，深爲可慮，防備諸事，另加措置之意，更爲傳教，而賜酒可也。”</p>

	모든 일을 특별히 더 조치하라는 뜻을 다시 전교하고 술을 내리도록 하라.”	
중종 104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9월 15 일(신해) 1번째기사	상이 길가에 물건을 가지고 꿇어앉은 사람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상세히 묻기를, “저들은 무엇을 하는 자인가?”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문밖에 사는 백성이 진상(進上)하려고 왔습니다.” 하니, 【생률(生栗)·상도(霜桃)·붕어·산 기러기·산 계·산 노루를 가진 자 모두 여섯 사람이었다.】 전교하였다. “교외(郊外)와 같은 경우가 아닌데 감히 진상하겠다고 말하는 자는 상을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물러가게 하라.”	上望見路邊有人持物而跪者， 詳問曰：“彼何爲者耶？” 政院啓曰：“門外百姓，欲進上而來也。” 【或持生栗、霜桃、鮒魚、生雁、生蟹、生獐者， 凡六人。】 傳曰：“非如郊外， 而敢言進上者， 是不過希賞耳， 其令退去。”
중종 104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9월 29 일(을축) 1번째기사	정순봉이 아뢰기를, “제향(祭享)에 음복(飲福)이 있는 것은 예(禮)입니다. 삭망(朔望)이라면 모르되 대제(大祭) 때에는 음복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는 거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명산(名山)·대천(大川)의 제사 때에 다 음복하였으므로 봉상시(奉常寺)의 술 맛이 좋았는데, 이제는 제관(祭官)이 으레 제사 뒤에 빨리 과하려고만 힘쓰고 음복하지 않으므로, 예를 폐기하고 다하지 않을 뿐더러 술 맛도 단속할 방도가 없습니다. 신이 죄를 입었다가 조정에 돌아온 뒤에 지난해 선잠제(先蠶祭)에 차출되었을 때에 음복하는 예를 베풀게 하였더니 봉상시의 종[奴]들 중에 그 절차를 아는 자가 없었으니, 이 예가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전에는 과연 음복하는 예가 있었는데 요즈음은 거행하지 않으니, 예조(禮曹)가 살펴야 할 일이다.”	順朋曰：“祭享之有飲福禮也。 如朔望則已， 大祭則固當飲福， 而今不爲之。 古者雖名山大川祭， 皆爲飲福， 故奉常寺酒味亦美， 今則祭官例於祭後， 務欲速罷， 不爲飲福， 非但禮廢不講， 酒味亦無檢舉之方。 臣被罪還朝後， 往歲差先蠶祭， 令設飲福之禮， 奉常寺奴子等， 無有知其節次者， 此禮之廢久矣。” 上曰：“往時果有飲福之禮， 近不爲之， 此禮曹所當察也。”
중종 104권, 39년	정원에 전교하기를,	○傳于政院曰：“經筵， 大司憲啓以爲：

<p>(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9월 29일(을축) 2번째기사</p>	<p>“경연에서 대사헌이 아뢰기를 ‘모든 제사 뒤에는 음복이 있어야 마땅한데 요즘은 폐기하고 거행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어찌하여 거행하지 않는지, 아 된 뜻을 예조에 말하라. 또 의논할 일이 있으니, 정부(政府) 전수와 육경(六卿)·판윤(判尹)을 명소(命召)하라.”</p>	<p>“一應祭後，宜有飲福，而近廢不爲。”云，何以不爲乎？以啓意言于禮曹。且有議事，政府專數、六卿、判尹，命召可也。”</p>
<p>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0월 6일(신미)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세자가 《강목(綱目)》 21198) 을 이미 다 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강(侍講)한 요속(僚屬)들에게 연향하는 것은 전례가 있으니 《강목》을 강하기 시작한 뒤의 당상(堂上)·낭관(郎官) 등 전후 관원을 오는 15일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궤향(饋餉)하는 것이 옳다.”</p>	<p>○辛未/傳于政院曰：“世子，《綱目》今已畢讀云。然則其侍講僚屬燕享，自有前例，《綱目》始講以後堂上。郎官、前後官員，來十五日於明政殿庭饋餉，可也。”</p>
<p>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0월 24일(기축) 3번째기사 내의원 제조 홍언필 등이 문안하고 처방과 진맥을 청하자 허락하다</p>	<p>내의원 제조 홍언필·강현·윤원형 등이 문안하고 이어 아뢰기를, “상의 증세는 진실로 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냉기 때문에 이렇게 되셨으니 반충산(蟠葱散)을 복용하심이 마땅할 듯합니다. 대소변이 평소와 다른 것도 하부에 냉기가 쌓여서 그런 것이니 소금과 총백(葱白)21207) 을 주머니에 담아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의녀가 비록 들어가서 진맥하나 천박한 식견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세거(朴世舉)로 하여금 진맥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반충산을 즉시 지어서 들이라. 소금과 총백은 지금 붙이고 있는 중이니 다시 증세를 보아 의원으로 하여금 진맥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정부·육조·한성부 당상과 사헌부·사간원이 문안을 드리니, 위에서와 같이 답하였다.</p>	<p>○內醫院提調洪彥弼、姜顯、尹元衡等問安，仍啓曰：“上證固爲無傷。但以冷氣至於如此，進服蟠葱散爲當。大小便不如常，亦下部積冷而然，以鹽與葱白，盛于袂袋，熨治何如？且醫女雖入診，然以淺見，何能知之？請令朴世舉診脈。”傳曰：“(蟋) [蟠] 葱散即可劑入。鹽葱，則今方用熨，當更觀證勢，令醫診脈。”政府、六曹、漢城府堂上、司憲府司諫院問安，答與上同。</p>
<p>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0월 27</p>	<p>약방 제조가 아뢰기를, “하도(下道)가 오래도록 불통하여 비록 다른 약을 썼지만 역시 효험이 없으십</p>	<p>○藥房提調啓曰：“下道久不通，雖用他藥亦無效。通幽湯，近所不用，然安玆以爲見效甚多云，而所入藥材，亦</p>

<p>일(임진) 5번째기사</p>	<p>니다. 통유탕(通幽湯)은 근래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마는, 안현(安玳)의 말로는 효험이 매우 많다고 하며 들어가는 약재 또한 해로울 것은 없으니 한 번 시험해 보소서. 야간에 반송산을 세 차례까지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수라를 전연 못 드시는 때에 약의 복용이 너무 과하신 듯하여 매우 미안합니다. 아침과 저녁에만 복용하소서.”</p> <p>하니, 답하였다.</p> <p>“알았다. 통유탕을 지어서 들여오라.”</p>	<p>皆無傷，請一試用。夜間進(璠)〔蟠〕葱散，至於三服云，今當全不進膳之時，用藥似過，至爲未安。請止於朝暮進服。” 答曰：“知道。通幽湯，劑入可也。”</p>
<p>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0월 28 일(계사) 6번째기사</p>	<p>의원 홍침(洪沈)·박세거(朴世舉)가 내전에 들어와 진찰하고 나와서 말하기를 ‘상의 옥체가 피곤하고 허약하실 뿐 별로 아픈 곳이 없다. 소마죽(蘇麻粥)과 피마자유(蓖麻子油)를 드려야 한다.’ 하였다.</p>	<p>○醫員洪沈、朴世舉入內診候而出口：“上體困弱，別無痛處，蘇麻粥、蓖麻子油進服。”云。</p>
<p>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0월 30 일(을미) 1번째기사</p>	<p>또 아뢰기를, “서과(西果)도 심열을 치료하는 데 좋은데 갈증이 나실 때 조금씩 드셔야지 과다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과다하게 드시면 해롭습니다. 또 진사오령산(辰砂五苓散)도 심열을 다스리니 조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p>	<p>又啓曰：“西果亦治心熱口渴，如以點點進御，不可過多。多則有害。且辰砂五苓散亦治心熱，劑之何如?” 傳曰：“知道。”</p>
<p>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1 일(병신) 2번째기사</p>	<p>내의원 제조 【홍언필·강현(姜顯)·윤원형(尹元衡).】 및 참의 안현(安玳) 【약리(藥理)를 알기 때문에 항상 출시하여 동참했다.】 이 문안을 드리고 이어 아뢰기를, “지황전(地黃煎)의 화제(和劑)를 어제 들었으나 약재를 점검해 보니 양의사(兩醫司) 【전의감(典醫監)과 혜민서(惠民署).】 에는 남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전에 듣건대, 황주(黃州)와 봉산(鳳山)에는 지황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니 땅이 얼기 전에 20여 근을 급히 채취하여 올리도록 전지(傳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內醫院提調【洪彦弼、姜顯、尹元衡】及參議安玳【解藥理，故亦常仕同參。】問安仍啓曰：“地黃煎，昨日劑入，而考藥材，則兩醫司【典醫監、惠民署。】無遺在云。前聞黃州、鳳山多產地黃，未凍前，二十餘斤，急速採取上送事，有旨何如?” 傳曰：“如啓。”</p>

	하니 아뢰는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5 일(경자) 5번째기사	의원 박세거·홍침·유지번(柳之蕃)이 들어가 진맥하고 나와서 지번이 정원에 말하였다. “증세가 약간 덜하십니다. 다만 왼손의 심간맥(心肝脈)이 약간 부(浮)하고 삭 (數)하나 오른손 맥은 평상시와 같으십니다. 심열과 갈증이 아직 없어지지 않 았으므로 소시호탕을 들였습니다. 또 전혀 수라를 못 드시고 율무죽만 드십니 다. 매화탕(梅花湯)과 상지다(桑枝茶)도 열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드립니다.”	○醫員朴世舉、洪沈、柳之蕃入診而 出， 之蕃言于政院曰：“證候大概向 歇。 但左手心肝脈， 微浮而數， 右手 脈如常。 心熱口渴證猶未殄， 故進小 柴胡湯。 且全不得進膳， 只御薏苡粥 而已。 梅花湯桑枝茶， 可以治熱， 故 常御。” 云。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16 일(신해) 7번째기사	보덕 이약해(李若海) 등이 김승보를 불러 동궁의 기거에 대해 물으니 대답하 기를, “된 죽이건 묽은 죽이건 전혀 들지 않으십니다마는, 기후는 평안하신 듯합니 다.” 하였다. 또 묻기를, “거처하시는 곳이 춥지는 않은가?” 하니, 대답하였다. “기거하시는 곳은 온기가 있습니다. 전(奠)을 드릴 때는 밖에 나가셨다가 마 치고 나면 돌아오십니다.”	○輔德李若海等招金承寶， 問東宮起 居， 對曰：“饋粥全不進之， 但氣候則 似平。” 且問居處無乃冷薄乎？ 曰： “起居處有溫氣。 若奠時則出外， 畢則 還次。”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17 일(임자) 6번째기사 정원이 세종의 유교에 따라 자전과 세자에게 죽 드시기를 청하다	정원이 세종의 유교(遺敎) 【유교에 ‘세자는 깊숙한 궁중에서 성장하여 거처와 음식이 보통 사람과 다르니 상을 당한 다음날에는 죽을 먹고 3일 후부터는 밥을 먹도록 하라.’ 하였다.】 를 써서 올리며 아뢰었다. “대신이 죽을 드시도록 권하는 것은 전례이며 정원 또한 계청(啓請)했기 때문 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대체로 대내와 세자는 거처와 음식이 보통 사람과 다르니, 그것은 거처와 음식의 습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들으니 세 자께서는 최근 약수발을 하시느라 오래도록 찬선(饌膳)을 드시지 못했는데,	○政院書啓世宗遺敎【遺敎曰：“世子 生長深宮， 居處飲食， 異於平人， 遭喪 翌日食饋粥， 三日後食食。”】 于慈殿 曰：“大臣已請勸粥， 前例， 政院亦有 啓請， 故敢達。 大抵大內及世子， 居 處飲食， 異於常人， 蓋居處飲食， 習性 有異故也。 臣等聞世子近以侍藥， 久 不進膳， 而今又遭此大故， 情雖罔極，

	이번에 또 상을 당했으니 인정으로 보면 망극하지만 마땅히 원려(遠慮)하시어 우선 억지로라도 드셔야 합니다. 또한 찬선을 드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자전께도 아뢰오니 이것은 조정의 뜻입니다.”	當爲遠慮，先自強進。 且以不可不進之意，達于慈殿，此朝廷之意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17 일(임자) 11번째기사 홍언필·윤인경 등이 세자에게 다시 죽 들 기를 청하다	홍언필·윤인경·임권·윤원형·임열(任說) 등이 홍교문(弘教門) 밖에서 고명을 열어 보고 도로 대내에 들어왔다. 홍언필·윤인경이 홍교문 밖에 나아가 죽을 권하는 일로 동궁에게 청하였다. 김승보가 나와서 말하기를, “재삼 간청해도 끝내 따르지 않으시다가 이어 ‘대신이 여러 차례 고하니 매우 미안하다. 다만 상께서 한창 미령하실 때에 백방으로 도모했으나 끝내 효험을 보지 못하고 이같은 대변(大變)을 당했으니, 비록 죽을 들려고 해도 무슨 마음으로 넘기겠는가.’ 하셨습니다.” 하니, 홍언필 등이 김승보에게 말하였다. “모름지기 주야로 굳이 청해서 드시도록 권하라.”	○洪彦弼、尹仁鏡、任權、尹元衡、任說等，於弘教門外，開視誥命，而還諸大內。 洪彦弼、尹仁鏡，詣弘教門外，以勸粥事，請于東宮。 金承寶出而言曰：“再三懇請，終不肯從。 乃曰：‘大臣累告，至爲未安。 但方上未寧之時，百端圖猝，而竟不見效，遭此大變，雖欲進粥，亦何心下咽乎?’” 彦弼等語承寶曰：“須晝夜強請勸進。”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18 일(계축) 2번째기사 세자빈이 편치 못하여 의원을 부르고 세자가 죽을 들겠다고 말하다	홍언필 등이 승언 내관(承言內官) 등을 청하여 고하기를, “세자께서 죽도 전혀 드시지 않아 비록 여러번 청해도 끝내 따르지 않으신다 하니 신들의 근심을 이루 상달할 수 없습니다. 예부터 누군들 상을 당하지 않은 임금이 있었겠습니까? 모름지기 국가의 종묘와 사직을 염려하여 억지로라도 죽을 드시도록 간절히 상달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또 빈(嬪)이 병환이 나서 열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오래도록 찬선(饑膳)을 드시지 않은 때문입니다. 의당 의녀(醫女)를 불러서 들어가 진찰하게 해야 하고, 또 약물을 드시는 일도 아뢰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승언 내관이 동궁의 뜻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대신이 여러번 청하고 자전께서도 여러 차례 하교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들겠습니다.”	彦弼等請承言內官告曰：“聞世子全不進粥，雖爲累請，終不肯從，臣等憂悶之意，難以上達。 自古人君，孰不遭喪？ 須以國家宗社爲念，強進饘粥事，懇達幸甚。 且嬪違豫有熱云，此亦久不進膳所致。 宜召醫女入診，且進藥物事，詮達可也。” 承言內官以東宮意還曰：“大臣累請，慈殿亦累教，故予今進粥矣。”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상이 조·석전과 상식(上食)을 거행하였다.	○丙辰/上行朝、夕奠，上食。

(嘉靖) 23년) 11월 21 일(병진) 1번째기사		
中宗 105卷, 39年 (1544 甲辰 / 명 가정 (嘉靖) 23年) 11월 21 日(丙辰) 3번째기사 사용원 제조 윤임이 찬선드시기를 청하다	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 윤임(尹任) 등이 아뢰기를, “예문을 상고하니 ‘3일 후에 찬선(饌膳)을 든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성복(成服)한 뒤인데도 찬선을 드시지 않으니 인정과 예문에 모두 지나쳐서 신하들이 모두 민망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司饗院提調尹任等啓曰：“考諸禮文，三日後進膳云，今乃成服之後，而不爲進膳，情禮皆過，群臣咸憫，故敢啓。”傳曰：“知道。”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22 일(정사)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丁巳/上行朝、夕奠，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23 일(무오)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戊午/上行朝、夕奠，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24 일(기미)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己未/上行朝、夕奠，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25 일(경신)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庚申/上行朝、夕奠，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辛酉/上行朝、夕奠，上食。

(嘉靖) 23년) 11월 26 일(신유) 1번째기사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27 일(임술)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壬戌/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28 일(계해)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癸亥/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1월 29 일(갑자)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甲子/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1 일(을축) 1번째기사	상이 삭전(朔奠)과 상식을 행하였다.	○乙丑朔/上行朔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2 일(병인)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행하였다	○丙寅/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3 일(정묘)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행하였다	○丁卯/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행하였다	○戊辰/上行朝、夕奠, 上食。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4 일(무진) 1번째기사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5 일(기사)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행하였다	○己巳/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6 일(경오)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행하였다	○庚午/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7 일(신미)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행하였다	○辛未/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8 일(임신)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행하였다	○壬申/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9 일(계유)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행하였다	○癸酉/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10	비가 왔다.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행하였다.	○甲戌/雨。 上行朝、夕奠, 上食。

일(갑술) 1번째기사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11 일(을해)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행하였다	○乙亥/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12 일(병자)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행하였다	○丙子/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13 일(정축)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丁丑/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14 일(무인)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戊寅/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15 일(기묘)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己卯/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15 일(기묘) 6번째기사	“재(齋)를 베푸는 일은 자전께서 하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막 아뢰었다. 요사스러운 여승이란 곧 잡된 부류가 아니고 선왕(先王)21234)의 후궁(後宮)으로서 자전께 조문(弔問)하고 죽(粥)을 권하러 들어왔다가 즉시 나가고 지금은 없다. 곡하는 일은 자전으로부터 윤희를 받았고 제사를 폐한 일은 대군의 창진이 빈전 가까이서 낮기 때문에 자전께서 더욱 어렵게 여기신다. 내	答曰: “設齋之事, 疑是慈殿所爲, 故今方啓請。 妖尼則非雜類也, 先王後宮, 以慈殿弔喪勸粥入來, 卽已出去, 今不在矣。 哭臨事, 蒙允于慈殿, 廢祭事, 則大君瘡疹, 發于殯側, 故慈殿,

	가 간곡하게 아뢰는 중이나 역시 매우 민망할 뿐이다.”	尤以爲難。 予方懇達不已， 亦爲憫極。”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16 일(경진) 1번째기사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庚辰/上行朝、夕奠，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17 일(신사)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辛巳/上行朝、夕奠，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18 일(임오)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壬午/上行朝、夕奠，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19 일(계미)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癸未/上行朝、夕奠，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20 일(갑신)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甲申/上行朝、夕奠，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21 일(을유)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乙酉/上行朝、夕奠，上食。
중종 105권, 39년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丙戌/上行朝、夕奠，上食。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22 일(병술) 1번째기사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23 일(정해)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丁亥/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24 일(무자)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戊子/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25 일(기축)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己丑/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26 일(경인)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庚寅/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27 일(신묘)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辛卯/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28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壬辰/上行朝、夕奠, 上食。

일(임진) 1번째기사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29 일(계사)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癸巳/上行朝、夕奠, 上食。
중종 105권, 39년 (1544 갑진 / 명 가정 (嘉靖) 23년) 12월 30 일(갑오)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甲午/上行朝、夕奠, 上食。

2. 인종실록 기사자료집

인종실록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일(을미) 1번째기사 삭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리다	상(上)이 삭전(朔奠)1) 을 지내고 상식(上食)2) 을 올렸다. 【이에 앞서는 삭망전(朔望奠)과 별제(別祭)3) 를 대군(大君)4) 이 부스럼을 앓았기 때문에 지내지 않다가 이때부터 다시 지냈다.】	○乙未朔/上行朔奠, 上食。【前此朔望奠及別祭, 以大君瘡疹, 廢而不舉, 至是復行。】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일(병신)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朝夕奠)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丙申/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3일(정유)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丁酉/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4일(무술)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戊戌/上行朝、夕奠, 上食。

1번째기사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5일(기해)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朝夕奠)을 지내고 상식(上食)을 올렸다.	○己亥/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6일(경자)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朝夕奠)을 지내고 상식(上食)을 올렸다.	○庚子/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7일(신축)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辛丑/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8일(임인)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壬寅/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9일(계묘)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癸卯/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0일(갑진)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甲辰/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乙巳/上行朝、夕奠, 上食。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1일(을사) 1번째기사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2일(병오)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丙午/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3일(정미)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丁未/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4일(무신)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戊申/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4일(무신) 4번째기사 정원이 임금의 곽하는 위치에 관해 서계하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뢰 뜻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예문(禮文)은 그러하더라도 동쪽은 수라간(水刺間)에 가까와 예찬(禮饌)을 올리느라 드나드는 곳이므로 권의에 따라 서계에 설치 한 것이다. 이제 고쳐 설치하면 드나들기가 편리하지 못한 것이니 고치지 않아도 무방하겠다.” 하였다.	傳曰: “啓意, 予已詳知。 但禮文雖如此, 而東則近於水刺間進饌出入之處, 故從權而設於西階矣。 今若改設則出入未便, 雖不改無妨。”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5일(기유) 1번째기사	상이 삭전(朔奠)을 지내고 상식(上食)을 올렸다.	○己酉/上行望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정원이 《예경(禮經)》에서 베껴 써서 【*】 아뢰기를,	○政院抄書《禮經》

<p>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5일(기유) 4번째기사</p>	<p>“근래 바깥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위에서 전혀 찬선(饌膳)을 드리지 않아 애통으로 인한 수척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데, 신들이 지난번 삭망전(朔望奠) 때 보건대, 위에서 잘 걷지도 못하고 옥색(玉色)도 전만 못하셨습니다. 신들이 목도한 바로는 바깥의 말이 헛되지 않은 듯하여 슬프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저 아버지의 상을 치를 때에 그 애통한 정은 위아래가 다 같은 것입니다만 제왕의 효도는 서민과는 다릅니다.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주인으로서 지나치게 슬퍼하여 목숨을 손상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왕의 제례(制禮)와 조종의 유교(遺教)는 【 세종(世宗)의 유교를 가리킨다. 처음에 보인다.】 다 종사(宗社)의 대계를 위하여 후세를 위한 알맞은 제도를 만든 것이니 어찌 먼 앞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큰일이 있는 때를 당하여 옥체가 지나치게 손상되시니 조정 상하가 다 망극해 합니다. 바라건대 선왕의 알맞은 제도를 힘써 따르시어 찬선을 들고 조리하소서. 이것은 《예경》의 말로 위에서 평소 강론하시던 것입니다마는, 경황 없는 중에 어찌 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껴 써서 들이니 위에서는 이것을 살펴 슬픈 정을 조금 억제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아된 뜻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였다.</p>	<p>啓曰：“近來外人傳言，自上全不進膳，哀毀大過。 臣等頃於朔望見之，自上不能行步，而玉色不如前。 以臣等目視，則外間之言，似不虛矣，臣等哀憫罔極。 大抵執親之喪，其爲哀痛之情，則上下皆然矣，然帝王之孝，與匹夫不同。 爲宗廟社稷之主，而不可過毀傷性。 故先王之制禮與祖宗之遺教，【指世宗遺教。 見初。】皆爲宗社大計，而爲後世之中制，豈非遠慮也哉？ 今當大事之時，而玉體過傷，朝廷上下，咸爲罔極。 伏望勉從先王之中制，而進膳調保。 此《禮經》之言，自上平時所講論者。 但哀遽之際，豈能盡記乎？ 故抄書以入， 自上監此， 而少抑哀情。” 傳曰：“啓意，予已詳知。”</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6일(경술) 1번째기사</p>	<p>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p>	<p>○庚戌/上行朝、夕奠，上食。</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p>	<p>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p>	<p>○辛亥/上行朝、夕奠，上食。</p>

24년) 1월 17일(신해) 1번째기사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7일(신해) 2번째기사	좌의정 윤인경(尹仁鏡)과 좌찬성 성세창(成世昌)이 아뢰기를, “위에서 애통망극해 하는 정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병환이 위독하실 때에도 곁에서 오래 모시느라 찬선(饌膳)을 드신 적이 없는데 대고(大故)를 당하여서는 애통해 하심이 예도에 지나쳐 이제까지 찬선을 드시지 않는다 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제왕의 효도는 여느 사람과 다르고 또 예문(禮文)에도 ‘애통해 하여 수척한 것이 중도에 지나친 것은 군자가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어진 사람은 감히 중도에 지나치지 않게 하고 불초한 자는 중도에 미치게 하여 예문에 맞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큰 효도이니 종사(宗社)의 대계를 위하여 애써 찬선을 드소서. 신들의 뜻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조정의 뜻이 다 그러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가 별로 예도에 지나치게 한 일이 없는데 이제 아뢰는 사연을 들으니 매우 부끄러움을 느낀다. 마땅히 생각하여 부응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다.	○左議政尹仁鏡、左贊成成世昌啓曰：“自上哀憫罔極之情，曷有窮已？但大行大王疾革時，侍側亦久，而未嘗進膳，及至大故，哀毀過禮，至今尚未進膳云，至爲驚愕。帝王之孝，異於常人，且禮文云，毀瘠過中，君子不取，故使賢者不敢過，不肖者有以企及，惟與禮合。斯爲大孝，伏願爲宗社大計，勉強進膳。非但臣等之意，舉朝皆然也。”答曰：“予別無過禮之事，今聞啓辭，殊增感極。當思有以副之。”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8일(임자)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壬子/上行朝、夕奠，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19일(계축) 1번째기사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癸丑/行朝、夕奠，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甲寅/行朝、夕奠，上食。

24년) 1월 20일(갑인) 1번째기사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1일(을묘) 1번째기사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乙卯/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1일(을묘) 2번째기사 좌의정 윤인경 등이 찬선을 들 것을 권하 다	좌의정 윤인경 등이 아뢰기를, “전에 듣건대 전혀 찬선을 드시지 않는다 하므로 찬선을 드시기를 청하였던 것인데 마땅히 생각하여 부응토록 하겠다고 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도 찬선을 드시지 않는다하니 다들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애통이 지나쳐 종사의 대계를 생각하시지 않으시니 신들은 더욱 민망합니다. 세종 대왕의 유교(遺敎)는 정리와 예문을 참작하여 만든 권제(權制)이므로 대대로 모두 지켜 왔는데, 지금은 애통해 하여 수척하신 것이 예도에 지나쳐 중도를 따르지 않으므로 ‘수척하되 목숨을 잃게 하지 않고 수척하되 몸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에 어긋납니다. 선왕의 제례(制禮)를 지킴으로써 종사의 대계를 생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이 망극한 화(禍)를 만났으므로 애통해 하여 수척한 것이 예도에 지나치더라도 마음에 미흡한데, 더구나 무슨 지나치게 애통해 한 일이 있기에 아뢰는 말을 여러번 듣게 되는가. 놀랍고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은 밖에 있으므로 천안(天顏)을 우러르지 못하였으나 보름날 배제(陪祭)55) 할 때에 시종(侍從)들이 ‘상의 옥체가 매우 쇠약하여 걸음도 전만 못하다.’ 하기에, 놀랍고 염려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애통 망극하신 정이 그지없기는 하시지만 선왕의 제례는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문에	○左議政尹仁鏡等啓曰: “前者伏聞全不進膳, 故啓請進膳, 而傳曰當思副之。及今尙未進膳云, 咸用憫念。自上哀痛太過, 不爲宗社大計, 臣等尤憫焉。世宗大王遺敎, 參酌情禮, 以爲權制, 世皆遵守, 而今則哀毀過禮, 不循中制, 有違毀不滅性、毀不危身之語。願遵先王制禮, 爲宗社大計。” 答曰: “予遭此罔極之禍, 雖哀毀過禮, 猶未足於心。況安有過哀之事, 而累聞啓辭? 不勝驚愧。”又啓曰: “臣在外, 未嘗望見天顏, 望日陪祭侍從等言: ‘上體甚爲憊弱, 步履亦不如前。’云, 不勝驚慮。自上哀痛罔極之情, 雖無紀極, 然先王制禮, 不可不遵。禮文有 ‘居喪有疾, 飲酒食肉, 病止復初之言, 苟有疾, 酒肉猶可用, 何況於進膳乎? 伏願爲宗社大計, 勉強進膳。”答曰: “反覆進言, 尤爲惶懼。

	<p>‘상중(喪中)에 있을 때에 병이 생기면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되 병이 나오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진실로 병이 생기면 술과 고기도 쓸 수 있거든 더구나 찬선을 드시는 것이겠습니까. 삼가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애써 찬선을 드소서.”</p> <p>하니, 답하기를, “반복하여 진언하니 더욱 황공하다. 따르도록 하겠다.”</p> <p>하였다. 윤인경 등이 또 대비(大妃)에게 아뢰기를, “듣건대 주상께서 애통해 하여 수척한 것이 도에 지나쳐 기운이 아주 쇠약하시다 합니다. 신들이 아뢰지 않더라도 위에서 옥체를 보호하시는 데에 그 방도를 극진하게 하실 것이지만 발인(發引)할 날짜가 촉박한데 조금이라도 편찮으신 데가 있으면 일이 더욱 당혹스럽게 될 것이니, 찬선을 드시도록 권하여 반드시 옥체의 강녕을 보전하게 하소서. 상전(上殿)의 말씀은 위에서도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p> <p>하니, 대비가 답하기를, “나도 매번 사람을 시켜 찬선(饌膳)을 권하고 드시는 음식이 있으면 가져오게 하여 살펴 보는 등 매양 유념하고 있다. 지난번 감기로 말미암아 자못 기침기가 있으므로 곡전(哭奠)을 거행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거행하여 마지않으니, 나도 민망하고 염려스럽다.”</p> <p>하였다.</p>	<p>當從之。” 仁鏡等又啓于大妃曰：“伏聞主上哀毀過〔度〕，氣極憊弱云。臣等雖不啓達，自上保護上體，必極其方，然發引日迫，小有失寧，事益蒼黃，伏願勸勉進膳，須保上體康寧。上殿之言，上必聽從矣。” 大妃答曰：“予亦每令人勸膳，若有所進之物，則令取來視之，每每留念，而頃因日寒，頗有喘嗽之氣，故請勿行哭奠，而行之不止，予亦憫慮。”</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2일(병진) 1번째기사</p>	<p>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p>	<p>○丙辰/上行朝、夕奠，上食。</p>
<p>인종 1권, 1년(1545)</p>	<p>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p>	<p>○丁巳/上行朝、夕奠，上食。</p>

<p>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3일(정사) 1번째기사</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3일(정사) 2번째기사 부제학 송세형 등이 옥체를 잘 보존할 것을 청하다</p>	<p>여느 사람도 상중에 애통이 지나치면 비위(脾胃)에 울울증이 생겨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데 위에서는 매우 추운 때를 당하여 약시중을 오래 하였고 또 큰 변을 만나셨으니, 신들은 망극하신 가운데에 옥체가 섭생(攝生)을 잃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셨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예도를 참작하여 찬선(饌膳)을 드시고 때때로 약도 드시어 성체를 보중하심으로써 큰 효도를 잘 끝마치소서. 또 양암(諒陰) 중에 계실 적에 급하지 않은 일이 어지러이 모여들어 상청(上聽)을 번거롭히는 것은 상제(喪制)에 마음을 다하는 데 있어 실로 방해되는 것이 있으니, 졸곡 전에는 긴요한 공사(公事)이외의 잡다한 일은 우선 출납하지 마소서.”</p> <p>하니, 답하기를, “대비전(大妃殿)에서 늘 권면하시고 대신들도 재삼 간청하니 나도 어찌 생각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는 과연 음식 먹기를 조금 싫어한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더 들고있다. 그런데 관중(館中)이 다시 이렇게 진언하니 다시 애써 따르도록 하겠다. 공사의 출납에 대해서는 말한 것이 매우 마땅하다.”</p> <p>하였다.</p>	<p>凡人在喪疾之中，過於哀傷，則脾胃(憂) [受] 病，以至於不能飲食，自上當苦寒之極，侍藥日久，又遭大變，臣等恐罔極之中，玉體失攝，而不自覺也。請酌禮進膳，時御藥物，保攝聖體，以終大孝。且諒陰之中，凡不急之事，紛紜填委，悉煩上聽，其於專心喪制，實有所妨，請卒哭前，緊關公事外，細瑣之事，姑勿出納。” 答曰：“大妃殿，每常勸勉，大臣亦再三懇請，予亦豈不念乎？頃果差厭食物，今則進膳有加。而館中，復此進言，當更勉從。公事出納，所言至當。”</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4일(무오) 1번째기사</p>	<p>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p>	<p>○戊午/上行朝、夕奠，上食。</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4일(무오)</p>	<p>임신년(68) 8월에 궐정(闕庭)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고, 6월에 승의전(崇義殿)에 관원을 보내어 소뢰(小牢)로 제사하였는데 승의전은 곧 고려 왕씨(王氏)의 사당이다. 주계(酒戒)를 지어 못 신하에게 내려서 경계하게</p>	<p>壬申八月，行養老宴于闕庭，六月，遣官以小牢，祀崇義殿，殿即高麗王氏之廟也。命製酒戒，賜臣工以警之</p>

3번째기사	<p>하셨다.</p> <p>.....</p> <p>갑오년(81) 8월에 대사례(大射禮)82) 를 거행하였다. 을미년(83) 8월에 개성부(開城府)에 행행하여 제릉(齊陵)84) 에 제사하셨으며 이튿날 행학(幸學)하여 취사(取士)하고 쌀 1백斛(斛)을 내렸다. 경자년(85) 여름에 크게 가물었으므로 산천(山川)에 두루 빌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자 왕이 연(輦)86) 을 버리고 여(輿)에 타고서 햇볕을 쬐며 친히 풍운단(風雲壇)에 나아가 비시니, 드디어 사흘 동안 비가 내렸다.</p>	<p>.....</p> <p>甲午八月，幸學行大射禮。乙未八月，幸開城府，祭齊陵，翌日幸學取士，賜米百斛。庚子夏大旱，徧禱山川不雨，王去輦乘輿，曝日親禱于風雲壇，遂得三日雨。</p>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5일(기미)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己未/上行朝、夕奠，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5일(기미) 2번째기사	옥체를 잘 보전하여 선왕께서 부탁하신 뜻에 부합하는 것이 곧 큰 효도이므로 신들이 삼가 세종 대왕의 유교(遺教)를 써서 아뢰니, 이 유교를 보고 억지로나마 권제(權制)를 따르시어 고깃국을 조금 들고 자미(滋味)를 돋움으로써 종사의 대계를 생각하시는 것이 신들의 더없이 큰 바램입니다.”	調保玉體，以副先王付托之意，斯爲大孝，臣等謹以世宗大王遺教書啓，願覽此遺教，曲從權制，少御肉汁，助其滋味，爲宗社大計，臣等不勝大願。”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6일(경신)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庚申/上行朝、夕奠，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6일(경신) 2번째기사	더구나 지난해에는 흉년이 더욱 심하여 백성에게 양식이 없는데 오도의 병사가 식량을 싸가지고 와서 진을 치고 시위하면서 십여 일을 지내게 되면, 그 폐단을 어찌 이루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민망해 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옥체가 수척하신 것이 매우 심하니 종사의 큰 근심이 이보다 중한 것이 없습니다.”	況前歲凶歉尤極，民無見糧，而五道兵士，贏糧來赴，布陣侍衛，至經旬月，則其弊何可勝算乎？臣等之憫，非止此也。玉體羸瘠已甚，宗社大憂，莫重於此。”
인종 1권, 1년(1545)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辛酉/上行朝、夕奠，上食。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7일(신유) 1번째기사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8일(임술)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壬戌/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월 29일(계해)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癸亥/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일(갑 자)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甲子朔/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일(갑 자) 4번째기사 좌의정 윤인경 등이 옥체 보전을 위해 조 석전만은 지낼 것을 청하다	또 하현궁하는 날에는 밤을 무릅쓰고 친히 거행하실 것이므로 그 전에 조리 하고 보전하는 방도를 극진히 하셔야 할 것인데 하루에 다섯 번 곡림(哭臨)하 신다 하니, 신들은 민망하고 염려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석전(朝夕 奠) 외에 세 때의 상식(上食)은 친히 지내지 마소서.”	且下玄宮日, 冒夜親行, 其前調保, 須 極其方, 而一日之內, 五度哭臨云, 臣 等不勝憫慮。 朝、夕奠外, 三時上食, 請勿親行。”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乙丑/上行朝、夕奠, 上食。

24년) 윤1월 2일(을축) 1번째기사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일(을축) 2번째기사	<p>홍언필이 이어서 아뢰기를, “병근(病根)이 처음 났을 때에 약을 써서 고침으로써 병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의 옥체가 피로하여 원기가 내상(內傷)되었으므로 찬선(饑膳)을 드시지 못하는데도 곡림(哭臨)을 거두시지 않으니, 온 조정이 모두 놀라고 민망해 함은 물론 신은 더욱 황공스럽습니다. 상중에 있더라도 병을 고치지 않을 수 없는데, 모든 병의 치료는 초기에 방지하기에 달려 있으니, 의원에게 명하여 들어와 진맥하게 하고 그 증후를 살핀 뒤에 증세에 맞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천안을 보지 못하고 신도 밖에 있으므로 이렇게 계달하는 것인데 매우 미안합니다. 빨리 의원에게 명하여 들어와 진찰하게 하소서. 병이 중하게 되면 약이 효험이 없을까 염려됩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아된 뜻은 알았다. 그러나 나에게 다른 증세는 없고 상중이어서 피곤할 뿐인데 어찌하여 진찰까지 하겠는가. 어제 정부가 입계하였을 때에 이미 일렀는데 이제 진찰한다면 아마도 보고 듣는 사람이 놀랄 것이니 더욱 미안하다.”</p> <p>하였다. 홍언필이 또 아뢰기를, “이제 탕약은 쓰지 않더라도 비위(脾胃)는 미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산릉에 친히 거동할 경우 범야(犯夜)할 때도 있는 것이어서 더욱 황공하니 적당한 약을 드소서.”</p> <p>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p>	<p>彦弼仍啓曰：“凡病根，在於始發之時，用藥治之，使不至於疾病爲善。上體疲弱，元氣內傷，故不能進膳，而哭臨不輟，舉朝無不驚憫，臣益惶恐。雖在憂，不可不治病，凡病之治，在於防始，命醫入診，審其證候而後，可進適證之藥。群臣未見天顏，臣亦在外，如此啓達，甚爲未安。幸亟命醫入診。若疾至於重，則恐藥無效。”</p> <p>答曰：“啓意知悉。予無他證，而只於憂中疲憊而已，何至診候？昨日政府入啓時，曾已言之，今若診候，則恐驚動見聞，尤爲未安。”</p> <p>彦弼又啓曰：“今雖不用湯藥，脾胃不可不預治。且山陵親幸，亦有犯夜之時，尤爲惶恐，請進所當之藥。”</p> <p>答曰：“知道。”</p>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3일(병인)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丙寅/上行朝、夕奠，上食。
인종 1권, 1년(1545)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丁卯/上行朝、夕奠，上食。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4일(정묘) 1번째기사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5일(무진)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戊辰/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6일(기사)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己巳/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7일(경오)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庚午/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8일(신미)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辛未/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9일(임신) 1번째기사	크게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壬申/大雨雪風。 上行朝、夕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9일(임신) 1번째기사	또 아뢰기를, “상의 옥체가 매우 수척하시니 창덕궁(昌德宮)으로 이어(移御)하여 조리하시고 조전(朝奠)과 아침 상식(上食)은 친히 올리지 마소서.”	又啓曰: “上體甚爲羸瘠, 願移昌德宮調保, 朝奠、朝上食, 願勿親行。” 答曰: “發引日迫, 何以言移御乎? 朝奠

<p>신) 2번째기사</p>	<p>하니, 답하기를, “발인할 날이 가까왔는데 어찌하여 이어하라고 하는가. 조전과 아침 상식에 대해서는 나에게 병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朝上食，予無病證，何可不爲乎？”</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0일(계 유) 1번째기사</p>	<p>상이 낮 상식을 올리고 석전을 지냈다.</p>	<p>○癸酉/上行晝上食及夕奠。</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0일(계 유) 2번째기사 대사간 이윤경 등이 올린 찬선을 들 것 등 을 청하는 차자</p>	<p>삼년의 통상(通喪)이 천자까지 다 같이 하는 것이지만 그 슬픔과 음식의 절도에는 진실로 서민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민은 하는 일이 없으니 소식(蔬食)하고 몹시 슬퍼하여도 되겠으나, 임금은 하루에 만기(萬機)를 돌보느라 정신을 쓰는 것이 매우 큰데 더구나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이겠습니까. 처음 죽었을 때에는 어쩔줄 몰라 하고 장사지내고 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심정에 강쇄가 있는 것이고, 기년(期年) 동안 한없이 슬퍼하고 삼년 동안 근심하는 것은 슬픔에 강쇄가 있기 때문이니, 성인의 제도는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을 해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p> <p>순(舜)임금을 대효(大孝)라 일컫고 무왕(武王)·주공(周公)을 달효(達孝)라 일컫는데, 순임금·무왕·주공이 고수(瞽瞍)159) 와 문왕(文王)의 상(喪)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여 병이 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저 효(孝)란 선대의 뜻을 잘 잇고 선대의 사업을 잘 계승하는 것인데, 슬픔 때문에 몸을 상하게 되면 몸도 보전하지 못할 처지에 어떻게 선대의 뜻을 잘 잇고 선대의 사업을 잘 계승하겠습니까. 뜻을 잇고 사업을 계승하지 못하는 자를 효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p> <p>사마공(司馬公)이 ‘부모의 상중에 있는 자가 소사(素食)가 목에 넘어가지 않아 병이 날 염려가 있으면 고깃국·포(脯)·젓갈과 약간의 고기로 입맛을 돋우어야</p>	<p>然則三年通喪，雖達於天子，其哀戚飲食之節，固不得與匹夫同也。匹夫無所事，則雖蔬食飲(血) [水] 可也，人君一日萬機，勞神(渴) [竭] 精者甚大，況加之以過戚耶？始死遑遑，既葬望望，情有殺也；期悲哀，三年憂，哀有殺也。蓋聖人之制，不以死傷生也。舜稱大孝，武王、周公稱達孝，未嘗聞舜、武、周公，因瞽瞍、文王之喪而過哀致疾也。夫孝者，善繼人之志，善述人之事者，若因哀致傷，則身且不保，何有於善繼善述？不能繼述者，其可謂孝乎？司馬公曰：“居父母之喪者，若素食不能下咽，恐成疾者，可以肉汁及脯醢，或肉少許，助其滋味。”當喪得疾，則食肉以已疾猶可，況節哀以就中，以保吾孝耶？</p>

	한다.’ 하였으니, 상을 당하여 병이 나면 고기를 먹어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가한데, 하물며 슬픔을 절제하여 중도에 맞게 하여 나의 효도를 보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1일(갑술) 1번째기사	상이 낮과 저녁 상식(上食)을 올리고 석전(夕奠)을 지냈다.	○甲戌/上行晝夕上食及夕奠。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2일(을해) 1번째기사	상이 낮과 저녁 상식을 올리고 석전을 지냈다.	○乙亥/上行晝夕上食及夕奠。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3일(병자) 1번째기사	상이 낮과 저녁 상식을 올리고 석전을 지냈다.	○丙子/上行晝夕上食及夕奠。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3일(병자) 2번째기사	우의정 성세창이 세 번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고 술을 내렸다.	○右議政成世昌辭職至三，不允，仍宣醞。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4일(정축) 1번째기사	상이 낮과 저녁 상식을 올리고 석전을 지냈다.	○丁丑/上行晝夕上食及夕奠。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5일(무	큰 바람이 불었다. 상이 의식대로 망전(望奠)을 지냈다.	○戊寅/大風。 上行望奠如儀。

인) 1번째기사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6일(기 묘) 1번째기사	상이 낮과 저녁 상식을 올리고 석전을 지냈다.	○己卯/上行晝夕上食夕奠。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6일(기 묘) 3번째기사 산릉의 일꾼을 공궤하 라고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는 19일에 술 1백동이, 쌀 50섬, 콩 30섬, 장(醬) 50섬, 소금 30섬을 산 릉(山陵)의 일꾼에게 공궤하라고 각사(各司)에 미리 이르라.”	○傳于政院曰：“來十九日，以酒百 盆、米五十碩、太三十碩、醬五十 碩、鹽三十碩，供饋山陵役軍事，預諭 各司。”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7일(경 진) 1번째기사	상이 낮과 저녁 상식을 올리고 석전을 지냈다.	○庚辰/上行晝夕上食夕奠。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8일(신 사) 1번째기사	상이 낮과 저녁 상식(上食)을 올리고 석전(夕奠)을 지냈다	○辛巳/上行晝夕上食夕奠。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0일(계 미) 1번째기사	상이 낮과 저녁 상식을 올리고 석전을 지냈다.	○癸未/上行晝夕上食夕奠。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1일(갑	상이 낮과 저녁 상식을 올리고 석전을 지냈다.	○甲申/上行晝夕上食夕奠。

신) 1번째기사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2일(을 유) 1번째기사	상이 낮과 저녁 상식을 올리고 석전을 지내고 아울러 명정(銘旌)을 고친 일을 고하였다.	○乙酉/上行晝夕上食, 於夕奠, 兼告 改銘旌。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2일(을 유) 2번째기사	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상시제(上諡祭)를 지냈다.	○政府率百官, 行上諡祭。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3일(병 술) 1번째기사	상이 낮과 저녁 상식을 올리고 석전을 지냈다.	○丙戌/上行晝夕上食夕奠。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4일(정 해) 1번째기사	상이 낮과 저녁 상식을 올리고 석전을 지냈다.	○丁亥/上行晝夕上食夕奠。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5일(무 자)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戊子/上行朝、夕奠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5일(무 자) 4번째기사	영중추부사 홍언필 등이 아뢰기를, “이제 들어가 진찰한 의원의 말을 듣건대 상의 옥체에 원기가 매우 허약하다 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오늘까지 찬선을 들지 못하여 이렇게 허약하게 되셨으니 조정이 모두 몹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領中樞洪彥弼等啓曰: “今聞醫員入 診之言, 上體元氣, 甚爲虛弱云。 自 前年十月至今日, 不能進膳, 以致如此 虛弱, 朝廷, 咸極憂慮。
인종 1권, 1년(1545)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己丑/上行朝、夕奠上食。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6일(기축) 1번째기사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7일(경인)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庚寅/上行朝、夕奠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8일(신묘)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辛卯/上行朝、夕奠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29일(임진)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壬辰/上行朝、夕奠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30일(계사) 1번째기사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癸巳/上行朝、夕奠上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일(갑오) 1번째기사	상이 삭전(朔奠)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甲午朔/上朔奠, 上食。
인종 1권, 1년(1545)	상이 조석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렸다.	○乙未/上行朝、夕奠, 上食。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2일(을미) 1번째기사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4일(정유) 2번째기사	. 평위전(平胃煎)184) 을 달여 바쳤으니, 또한 다시 드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안에 의원을 불러들여 진찰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평위전은 이미 두 합(榘)을 다 먹고 세 합째도 반쯤을 먹었는데 혀바늘이 생겼다. 아마도 열이 치받친 탓인 듯하여 요즈음은 멈추고 있다. 의원은 내일 사이에 들어와 진찰하도록 하라.” 하였다.	煎進平胃煎，亦更御何如？今日間，請令醫入診上候。” 答曰：“平胃煎，已盡服二榘，三榘亦服之幾半，而舌上生刺。恐熱所致，故近則停之。醫則明間入診，可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4일(정유) 3번째기사	당초 대행 대왕께서 미령하실 때에 전하께서는 약시중을 들며 근심하느라 오래 찬선을 드시지 않았고, 대고(大故)를 당하여는 애통해 하여 수척하신 것이 예의와 법도에 지나쳐서 옥체가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비위(脾胃)의 증세가 있는 것을 조야(朝野)에서 듣고 누구나 다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當初大行大王未寧之時， 殿下侍藥憂悴，久不進膳，及至大故，哀毀過禮，玉體瘦弱。 且有脾胃證，朝野聞之，莫不驚惶。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5일(무술) 2번째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이제 의원들이 들어가 진찰한 데 대한 말을 듣건대, 위의 심폐(心肺)와 비위의 맥이 다 손상되어 천안이 수척하고 찬선을 드시는 일을 전폐하셨다 합니다. 따라서 궁중에서 조섭하더라도 견디실 수 없을까 염려되는데, 더구나 40여 리의 길을 범야하여 왕래하느라 풍한을 무릅쓰면 병이 나실 것이 틀림없으니, 아흐렛날의 거동은 결코 하실 수 없습니다.	○政府啓曰：“今聞醫等入診之言，知上心肺脾胃脈俱傷，天顏瘦瘠，全廢進膳。 雖在宮中調攝，尙恐不能支持，況於四十餘里之途，犯夜往還，觸冒風寒，生病必矣，九日之幸，決不可爲也。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7일(경자) 1번째기사	내의(內醫) 박세거(朴世舉) 등이 들어가 진찰하니, 상의 폐와 비위의 맥이 모두 허약하고 신맥(腎脈)도 미약하며 얼굴에 혈색이 없고 수척하였다. 혀바늘이 돋아서 찬선을 들지 못하였으며 기운이 쇠약하여 잠을 잘자지 못하고 때때로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렸다.	○庚子/內醫朴世舉等入診， 上心肺脈俱虛，腎脈微弱，面無血色羸瘠。 舌上生刺，不能進膳，氣弱寢睡不穩，有時煩悸。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7일(경자) 1번째기사	홍언필이 아뢰기를, “의원들이 상세히 진찰하니, 위에서는 얼굴빛이 초췌할 뿐이 아니라 병의 증	○洪彦弼啓曰：“醫等詳悉診候，則上非徒顏色(樵) [樵] 悴，病證已生，寢

24년) 2월 7일(경자)
2번째기사
홍언필이 고깃국을 들
것을 청하다

세까지 이미 생겨서 잠을 잘자지 못하고 심기가 답답하고 열이 나서 때때로 놀라고 두근거리신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 않아 인음(引飮)185) 하시겠고 인음하면 부증(浮證)이 따라서 발생하게 될 것이니, 신은 놀랍고 염려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상이 이미 극도에 달하여 의약은 효험이 없으니, 타락(駝酪)186) 은 조금 차서 심열(心熱)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이 약물은 고깃국과 같은 것이 아니니 오늘부터 드소서. 또 소식(素食) 중에는 염장(鹽醬)만이 기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 음식을 드실 때에 늘 드소서.” 【내시(內侍) 박한중(朴漢宗)이 홍언필에게 ‘위에서 초상 때부터 전혀 염장을 들지 않으므로 내시들이 혹 들도록 권하면 위에서는 숟가락을 입에 가까이 대고는 내가 먹고 있지 않느냐고 하였으나 역시 들지 않는다.’ 하였다.】

하니, 답하기를,
“이렇게 망극한 때에 맥도가 어찌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약과 염장은 아뢰 대로 하라. 타락은 봐서 들겠다.”

하였다. 언필이 또 아뢰기를,
“상체로 보아 곧 중한 증세가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온갖 약을 써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니 부득이 고깃국을 드셔야 조금쯤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락은 고깃국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위장에 자양을 주어 윤택하게 하고 심열을 제거하는 것이니 빨리 드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상의 증세가 지극히 중하여 놀라고 두근거리는 것이 점점 심해지신다 하는데, 여기에서 더하면 끝내 구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약의 힘으로 고칠 수 없으면 고깃국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거듭 이렇게 말하니, 더욱 미안하다. 타락에 관한 일은 이미 다 일렀다.”

하였다. 자전이 약방(藥房)187) 에 전교하기를,
“지난번 주상께서 기후가 편찮으시므로 약방이 진맥하고 약을 지어 바쳐서

睡未穩，心氣煩熱，有時驚悸。不久當引飮，引飮則浮證隨發，臣不勝驚慮。傷損已極，醫藥無效，駝酪微寒，治去心熱，且是藥物，非肉汁之類，請自今日進御。且素中，唯鹽醬可以持氣，請於進御時，常常進御。” 【內侍朴漢宗告于彥弼曰：“上自初喪，全不進鹽醬，內侍等或有勸進，則上以匙近口曰，予不食乎？然亦不進。”】 答曰：“如此罔極之時，脈度其何能不至如此乎？藥及鹽(醫) [醬]，如啓。駝酪，當觀而進之。” 彥弼又啓曰：“上重證必發於頃刻，雖用百藥，亦無奈何，不得已用肉汁然後，庶可少保。駝酪非肉汁類，而滋潤腸胃，治去心熱，不可不亟進。且上證至重，驚悸漸甚，過此則終必不救。非藥力可治，肉汁不可不進。” 答曰：“再再如此言之，尤爲未安。駝酪事，已盡言之。” 慈殿傳于藥房曰：“頃者，主上氣候不平，故藥房，診脈進藥，似有稍平，而近日氣候不平，視前爲甚，祀事尙多，將無一日之閑，恐爲勞動重傷也。他餘事，予當自內請止之，肉汁亦欲勸之，而卒哭前，恐爲驚動，故未敢。” 彥弼回啓

	<p>조금 회복하신 듯하였다. 그러나 근일에는 기후가 편찮은 것이 전보다 심하고 사사(祀事)가 아직 많아서 하루도 한가한 날이 없으니, 아마도 노동으로 인하여 매우 손상될 것 같다. 다른 일은 내가 안에서 청하여 말리고 고깃국도 권하려 하나, 졸곡(卒哭) 전에는 놀라실 듯하므로 감히 못하고 있다.” 하였다. 언필이 회계(回啓)하기를,</p> <p>“오늘 비로소 위의 기후가 극도로 손상되신 것을 알았습니다. 육선(肉膳)에 대한 일은 내일 조정이 모여서 계청(啓請)하겠으니 자전께서도 드시도록 간곡히 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타락은 위에서 형세를 보아서 드시겠다고 하셨으니 자전께서 모름지기 오늘 드시도록 권하소서.” 하니, 답하기를,</p> <p>“제사에 참여하지 마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일 대신 등이 다시 계청하라. 고기를 권하는 일은 아마도 졸곡 전에는 따르시지 않을 듯하다. 타락은 육선과는 다른 것이니 나도 안에서 간곡히 청하겠다.” 하였다.</p>	<p>曰：“今日始知上候極爲傷毀。肉膳，明日朝廷，當會啓請，亦自慈殿，須懇請進。駝駱，自上以爲觀勢而進之，請自慈殿，須於今日勸進。” 答曰：“勿參祀事，明日大臣等，更啓請之。勸肉事，恐於卒哭前不從。駝駱則非肉膳之比，予亦內自懇請焉。”</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8일(신축) 1번째기사</p>	<p>정부가 아뢰기를,</p> <p>“듣건대 성체가 날로 수척해 가고 맥도가 날로 잘못되어 가시니 지금 고치지 않으면 큰 증세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들로서 부모가 살았을 때에 섬기고 죽었을 때에 장사하는 데에는 몇몇한 예(禮)가 있는 것이나 상(喪)을 당하여 통곡하고 슬퍼하는 데에도 그 분수가 있으므로 성인(聖人)이 절충하여 슬픔으로 생명을 잃는 데까지 이르지 않게 하였으니, 슬픔으로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은 효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늙은 자와 병든 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되 병이 나오면 곧 그만두게 한 것입니다.</p> <p>제왕의 효도로는 순(舜)과 문왕(文王)만한 이가 없어서神明(神明)까지 감동시켰으나 손상이 예도에 지나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성정대로 효도를 극진히 하되 예도로 절제하지 않았기에 손상이 지나쳐 극도</p>	<p>○辛丑/政府曰：“伏聞聖體羸毀日甚，脈度日非，失今不治，將有大證。人子之於父母，生事死葬，雖有經禮，衰麻哭踊，亦有其數，聖人折衷，哀不至於滅性，毀而傷生，不可爲孝。是以老者病者，飲酒食肉，病差卽止。帝王之孝，莫若大舜、文王，至於感格神明，未聞有毀傷過禮之事。今殿下循性盡孝，不節以禮，過毀之極，必得重病，以舜、文王爲不足法歟？世宗，我東方未有之大聖，斟酌禮權之中，以爲</p>

	<p>에 이르렀으므로 반드시 중병을 얻게 되실 것이니 순과 문왕을 본받을 것이 못된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세종(世宗)은 우리 동방에 다시 없는 큰 성인이신데 예제의 권도를 짐작하여 만세에 바뀌지 않을 유교로 남기셨고 열성(列聖)이 서로 이어받아 어기지 않고 지키셨는데 이제 와서 전하께서만 사람들의 뜻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니, 세종과 열성을 본받을 것이 못된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p> <p>그렇게 하신다면 종사는 어디에 의탁하고 백성은 어디에 의지하며, 하늘에 계신 열성의 명령이, 나에게 후사(後嗣)가 있어서 기업(基業)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려 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도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바라건대 권제(權制)를 애써 따라 위기(胃氣)를 조리하고 고요한 창덕궁(昌德宮)에 이어(移御)하여 심기를 편안하게 하시고, 우제와 졸곡은 모두 친히 거행하시는 것을 멈추도록 명하소서. 그리하여 안심하고 고요히 조리함으로써 제왕으로서의 효도를 다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내 기후가 이제는 회복되었다. 이제 아뢴 사연을 보았는데, 어찌 이제 이러한 말 【육선(肉膳)을 들라는 말을 가리킨다.】 을 듣게 될 줄 생각하였겠는가. 더욱 애통하기 그지없다. 동궁은 내가 전부터 있던 곳이므로 마음이 편안한데 어찌 창덕궁과 다를 것이 있겠는가. 우제와 졸곡은 기후를 보아가면서 이따금 섭행(攝行)하게 할 것인데 어찌하여 감히 미리 스스로 거행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대신 등이 다시 아뢰니, 답하기를, “내 뜻은 이미 다 일렀다.”</p> <p>하였다. 대신 등이 자전에게 청하기를, “신들이 듣건대 자전께서 찬선을 권하고 보호하기를 범연하게 하시지 않는다 하니, 온 나라의 신민이 누구인들 기쁘고 위안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다시</p>	<p>萬世不易之教，列聖相承，遵守不違，以至於今。殿下獨違輿情，不曾遵守，以世宗列聖爲不足法歟？若然則宗社何托，生民何寄，列聖在天之靈，其肯曰予有後不棄基？殿下何不思之甚耶？請勉從權制，以調胃氣，移御昌德宮閑靜之處，以平心氣，虞祭、卒哭，並命停親行。安心靜調，以盡帝王之孝。”</p> <p>答曰：“予氣今則平矣。今見啓辭，豈料於今已聞如此之言乎？【指肉膳之言。】尤爲哀痛罔極。東宮，是予曾處之地，心以爲平，豈有異於昌德宮乎？虞祭、卒哭，觀氣之如何，間間攝行，何敢預自爲不行乎？”大臣等再啓，答曰：“予意已盡言之。”大臣等請於慈殿曰：“臣等聞，自慈殿勸膳保護，非偶然爲之，一國臣民，孰不忻慰？豈待臣等更請而後爲之？然更須懇勸肉汁，且不可不移御昌德宮，中殿亦不可不移處近地，監視進膳。凡此調護，專保慈殿。”答曰：“虞祭不參、肉汁・駝駱事，昨終日極勸而不從，肉汁則下玄宮後欲勸，中宮則主上移御時，亦移在近地監膳耳。近間不欲移御，姑勿請之何如？”尹仁鏡啓曰：“臣今當往</p>
--	--	---

	<p>청하기를 기다려서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다시 고깃국을 간곡히 권하셔 야 하겠습니다. 또 창덕궁으로 이어하지 않을 수 없고 중전(中殿)도 가까운 곳으로 옮겨 있으면서 찬선을 드시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이 조리고 보호하는 일은 오로지 자전께 달려 있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우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고깃국·타락에 관한 일은 어제 종일 극진히 권하였나 따르시지 않는다. 고깃국은 하현궁 뒤에 권하려 하고, 중궁은 주상께서 이어하실 때에 또한 가까운 곳에 옮겨 있으면서 찬선을 살피게 할 것이다. 근간에는 이어하려 하시지 않으니 잠시 청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p> <p>하였다. 윤인경이 아뢰기를, “신은 이제 산릉에 가야 하므로 윤희받고서 물러가기를 바랍니다.”</p> <p>하였는데, 답하기를, “내가 어찌 범연하게 생각하여 따르지 않겠는가.”</p> <p>하니, 윤인경이 물러 나왔다. 성세창이 아뢰기를, “위에서 지나치게 슬퍼하여 쇠약해지셨으므로 조정이 매우 민망하여 감히 청하였습니다만 또한 이미 늦은 것입니다. 모름지기 유념하여 받아들여소서.”</p> <p>하니, 답하기를, “내 뜻은 이미 다 일렀다.”</p> <p>하였다. 성세창이 아뢰기를, “아랫사람의 심정은 일각이 급합니다마는 내일 대례(大禮)가 있기 때문에 감히 다시 아뢰지 않겠습니다.”</p> <p>하고, 드디어 물러갔다. 이때가 오시(午時)가 좀 못되었다.</p>	<p>山陵，願聞兪音而退。” 答曰：“予豈偶然計而不從乎？” 仁鏡退出，成世昌啓曰：“自上過哀羸弱，朝廷憫極敢請，今亦已緩矣。請須留念採納。” 答曰：“予意已盡言之。” 世昌曰：“在下人之情，一刻爲急，但明日有大禮，故不敢更啓。” 遂退，時日未午矣。</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8일(신축)</p>	<p>또 상중에 병이 나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 스스로 육물(肉物)을 가져다가 먹어서 목숨을 보전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제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모가 남겨준 몸은 손상시킬 수 없고 부모의 상을 마치지 않</p>	<p>又有人方在喪中，疾病得發，自度其不能支持，自取肉物而食之，以全軀命，此非自愛其身也，誠以父母遺體，不可</p>

<p>3번째기사</p>	<p>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이것을 달리(達理)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왕의 효도는 필부와는 현격히 다른 것인데 어찌 필부의 말절을 따라 중대한 부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예기(禮記)》에 ‘보는 것이 밝지 않고 듣는 것이 밝지 않고 걷는 것이 바르지 않고 슬픔을 모르게 되는 것을 군자가 병통으로 여기므로 병이 생기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 하였고, 또 ‘거상하는 예(禮)는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되 병이 나오면 처음으로 돌아간다. 상(喪)을 견디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였으며, 사마광(司馬光)도 ‘부모의 상중에 소식(素食)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오래되어 수척한 끝에 병이 날 것이 염려되는 자는 고깃국과 포(脯)·식혜 또는 고기를 조금 먹어 입맛을 돋구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병세가 드러나기 전에 병이 날 것이 염려되기만 하여도 이렇게 하는데 더구나 중한 증세가 이미 드러났으니 빨리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毀滅，父母之喪，不可不終也。故君子謂之達理。況帝王之孝，與匹夫懸殊，豈可循匹夫之末節，不思所托之重乎？《禮》曰：‘視不明，聽不聰，行不正，不知哀，君子病之。故有疾，飲酒食肉。’又曰：‘居喪之禮，有疾則飲酒食肉，疾止復初。不勝喪，乃比於不慈不孝。’司馬光亦曰：‘居父母之喪者，若素食不能下咽，久而羸憊，恐成疾者，可以肉汁及脯醢，或肉小許，助其滋味。’病勢未著，惟恐成疾，尙且如此，況重證已發，可不急救乎？</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0일(계묘) 1번째기사 내의원 제조 등이 우유를 드실 것을 권하다</p>	<p>내의원 제조 등이 아뢰기를, “상의 옥체가 몹시 쇠약하고 몹시 손상되시어 약으로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열(心熱)이 이미 일어났는데 다른 증세가 또 일어날까 염려스러워 신들은 몹시 민망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전에 아뢰 타락(駝酪)을 이제는 반드시 드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타락은 자전께서 누차 전교하시었고 제조 등도 누차 말하므로 따르다.” 하였다.</p>	<p>○癸卯/內醫院提調等啓曰：“上體極弱極傷，非他藥餌之所能治。心熱已生，恐又生他證，臣等不勝憫極。前啓駝酪，今須進御。”答曰：“駝酪，自慈殿累有傳教，提調等累言，故從之。”</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0일(계묘) 2번째기사</p>	<p>정부(政府)·중추부(中樞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의 전수가 아뢰기를, “어제 신들이 천안을 우러러 보니 전혀 전일의 용모가 아니시었습니다. 이는 2~3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해 10월 병구완하시던 때부터 찬선을 드시지 않았고 대고(大故) 뒤에 애통해 하여 수척하신 것이 상도(常度)</p>	<p>○政府、中樞府、六曹、漢城府全數啓曰：“昨日臣等仰見天顏，全非前日之容。此非二三日間所致也，自前年十月侍病之時，己不進膳，大故之後，</p>

<p>정부 등이 육선을 드실 것을 권하다</p>	<p>에 지나치셨으므로 이렇게 되신 것이니, 권제에 대한 일은 따르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은 조정이 말하고 자전께서도 분부하시고 약방(藥房)도 누차 청하였으므로 이제 타락을 들겠다고 허락하였다. 상중에 편찮은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놀라운 말을 진달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달리 조보(調保)할 식물(食物)이 절로 있을 듯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p> <p>하였다. 대신 등이 자전에게 청하기를, “상의 옥체가 극도로 허약하시어 다른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신들에게 내리신 자전의 분부에 ‘하현궁 뒤에 고깃국을 권하려 한다.’ 하였으나, 위에서는 심증(心證)189) 이 이미 발생하였는데 다른 증세가 또 발생할까 염려되니 오늘 안에 육선(肉膳)을 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전께서 간곡히 청하여 드시도록 권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는가. 몰래 국에 타서 권하려 하니 조정에서도 힘을 다하여 권하도록 하라.”</p> <p>하였다. 대신 등이 네 번 위에 아뢰어 권제를 따르도록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종실(宗室) 흥원군(興原君) 이선(李璿) 등 1백여 인이 다시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p>	<p>哀毀過於常度，故至於如此，權制事，不可不從。” 答曰：“舉朝言之，慈殿有教，藥房亦累請，故今已許進駝駱。喪中雖有不平之氣，何遽以此驚愕之言進乎？予意以爲自有他餘調保之物，更勿言。” 大臣等請于慈殿曰：“上體極爲虛弱，非他藥所能治。前者下慈教于臣等曰：‘下玄宮後，欲勸肉汁’。上心證已發，恐又生他證，不可不於今日內勸肉膳。請自慈殿，懇請勸進。” 答曰：“予何敢忽？欲以密和於羹而勸之，朝廷亦盡力勸之可也。” 大臣等四啓于上，請從權制，不從。宗室興原君璿等百餘人亦再啓，不從。</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0일(계묘) 3번째기사 대신 등이 육선을 드시도록 권하라고 자전</p>	<p>대신 등이 자전에게 다시 청하기를, “권제를 따르는 일에 대해 은 조정이 간절히 아뢰었으나 윤택받지 못하였습니 다. 자전께서 재삼 친히 청하신다면 반드시 따르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 다. 신들이 또한 자전께서도 육선을 드시도록 권해야 하겠으나 상의 옥체가 몹시 상하시어 일각이 급하므로 우선 대전(大殿)께만 청하는 것입니다.”</p> <p>하니, 자전이 답하기를,</p>	<p>○大臣等更請于慈殿曰：“從權事，舉朝懇啓，未蒙俞允。若慈殿，再三親請，則必無不從。臣等亦當勸進慈殿，而上體極傷，一刻爲急，故姑請於大殿。” 慈殿答曰：“勸肉事，亦豈偶然爲之？和之於羹而勸之，亦拒不從，予</p>

<p>에게 칭하다</p>	<p>“고기를 권하는 일 또한 범연하게 하는 것이겠는가. 국에 타서 권하여도 물리치고 따르시지 않으니 나도 매우 민망스럽다. 다시 권하려 하니 조정에서도 종일 간절히 권하라. 나로 말하면 주상과 같은 예가 아닌데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대신 등이 또 위에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내시 저한동(諸漢全)이 대신에게 ‘타락은 이미 들어갔으나 들지 않았다.’고 고하였다.】 대간과 홍문관도 권제를 따를 것을 극력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p>	<p>亦深悶。 欲更勸之， 朝廷亦可終日懇請。 若予等， 非如主上例， 何敢爲此計乎?” 大臣等又啓于上， 不從。 【內侍諸漢全告于大臣曰：“駝酪已入， 而不御矣。”】 臺諫弘文館亦啓以勉從權制， 不從。</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1일(갑진) 1번째기사 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고깃국을 드시라고 권하다</p>	<p>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이제 전하께서 비맥(脾脈)이 미약하여 찬선을 드시지 못하는데 심맥(心脈)이 또 허약하여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세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는 오로지 신기(腎氣)가 주장이 되므로 신기가 허약하면 온갖 병이 이를 틈타 발생하는 것이니 행여 위태로와지기 전에 음식을 조절하고 노일(勞逸)을 절제하여 마음을 편안히 하고 고요히 거처하여 수양하여도 고칠 수 없을까 염려되는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사람의 뜻을 굳이 물리치고 소절(小節)을 굳게 지켜 필부의 일을 달갑게 여긴 채 반성하지 않으십니까.</p> <p>우리 세종(世宗)께서 후대의 임금이 상례(常禮)만을 꼭진히 지켜서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을 미리 걱정하여 알맞은 제도를 강구하여 만세에 바뀌지 않을 큰 권제(權制)를 만드셨으니, 이것이 바로 전하께서 오늘날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전하께서 하늘에 계신 영령을 대함에 있어 늘 슬하에 있으면서 조상의 가르침을 듣는 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성명(聖明)한 자질로써 올바른 학문을 배우셨는데 제왕으로서의 큰 효도는 생각하지 않고 심정대로 따르는 소례(小禮)를 굳게 지키십니다. 대신은 전하의 팔다리이고 대간은 전하의 눈귀이니 팔다리와 눈귀를 버리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이 칭하여도 따르지 않고 대간이 간쟁해도 따르지 않고 모든 백관이 대궐에 머물러 함문(閤門)에서 아뢰어도 전하께서 더욱더 따</p>	<p>○甲辰/政府率百官啓曰：“今殿下脾脈弱， 而不能進膳， 心脈虛， 而煩悸又作。 男子專以腎氣爲主， 腎氣虛弱， 則百病乘之， 幸其未至於危， 和調飲食， 節宣勞逸， 安心靜處以養之， 猶恐其不可救， 奈何殿下固拒群情， 堅守小節， 甘爲匹夫之行而不之顧也? 我世宗預憂後王， 曲守經禮而不回， 講求中制， 爲萬世不易之大權， 此正殿下今日戒也， 殿下對越在天， 常如人子之在膝下聞祖訓也。 殿下以聖明之資， 得學問之正， 不計帝王之大孝， 固守循情之小禮。 大臣， 殿下之股肱; 臺諫， 殿下之耳目。 廢股肱耳目， 爲全人者， 未之聞也。 大臣請之而不從， 臺諫爭之而不從， 百官相與守闕而扣閣， 殿下愈不從焉， 則殿下誰與爲國歟? 臣等見殿下在過毀危困之地， 未蒙俞允， 而</p>

	<p>르지 않으시니 전하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시겠습니까.</p> <p>신들은 전하께서 바야흐로 지나치게 수척하여 위태하고 괴로운 처지에 계신 것을 보고도 윤휴받지 못하였으므로 의리상 물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미 나타난 병을 살피시어 뒷날의 후회가 되지 말도록 사람들의 뜻을 쾌히 따라 빨리 윤휴를 내리소서. 또 이제 듣건대 자전께서 친림(親臨)하여 고깃국을 권하려 하신다 하니, 자전의 분부는 더욱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p> <p>하였다. 대신 등이 또 자전에게 아뢰기를,</p> <p>“어제 자전께서 육선을 드시도록 권하셨으나 허락받지 못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자전께서 먼저 스스로 드신 뒤에 권하신다면 주상께서 반드시 따르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부터 졸곡(卒哭)이 지금처럼 먼 때가 없었으니 먼저 육선을 드시고 나서 주상께도 권하소서.”</p> <p>하였는데, 계(啓)가 미처 들어가기 전에 자전이 대신 등에게 하교하기를,</p> <p>“오늘 내가 친히 가서 간절히 권하여 허락받았으니 조정에서는 이를 알라.”</p> <p>하였다. 대신 등이 회계하기를,</p> <p>“신들이 분부를 듣고 그지없이 감격하여 눈물이 납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오늘 가서 허락을 받았으니 나도 감격스럽고 위안이 된다.”</p> <p>하였다. 윤인경 등이 회계하기를,</p> <p>“이제 허락받았더라도, 박절하기 때문에 마지못하여 잠시 허락하셨다가 오래 지 않아서 곧 그치신다면 또한 보탬이 되지 않을 듯하니 반드시 자전께서 먼저 드신 뒤에 권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반드시 애써 드실 것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내가 친히 가서 권하여 드시게 되었으니 이 뒤에 어찌 다시 고치실 리가 있</p>	<p>義不可退處也。伏願殿下，察已形之疾，勿爲後日之悔，快從輿情，早賜俞音。且今聞慈殿親臨，將勸肉膳，慈殿之教，尤不可不從。”大臣等又啓於慈殿曰：“昨日自慈殿，勸進肉膳不得請云。慈殿若先自進而後勸，則主上未必不從。自前卒哭，未有如今時之遠也，請先進肉膳，以勸主上。”啓未及入，慈殿下教于大臣等曰：“今日予爲親到，懇勸得請，朝廷知之。”大臣等回啓曰：“臣等聞教，感泣罔極。”答曰：“今日爲來得請，予亦感慰。”仁鏡等回啓曰：“今雖得請，若因迫切，不得已暫時肯許，而不久即止，則亦恐無益，必自慈殿，先進而後勸，則自上亦必勉爲之。”答曰：“予親來勸之，得見進御，此後豈復有更改乎？若予等，豈計卒哭遠近，身且無病，何敢爲如此計耶？”大臣等啓曰：“慈殿親臨勸肉，自上勉從，朝廷不勝哀賀。但慈殿前，自上勸進，何如？過百日，又過十五日有餘，不可不勸進。”答曰：“當以此意，啓于慈殿，但恐不能得請，朝廷亦可啓請。”</p>
--	---	--

	<p>겠는가. 나로 말하면, 어찌 졸곡이 멀거나 가까운 것을 헤아릴 수가 있겠으며 몸에도 병이 없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대신 등이 아뢰기를, “자전께서 친림(親臨)하여 고기를 권하시어 위에서 애써 따르셨으므로 조정이 눈물 겹도록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다만 자전께서는 상께서 드시도록 권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백 일이 지나고 또 15일이 넘었으니 드시도록 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이 뜻을 자전께 아뢰겠다마는 허락받지 못할 듯하니 조정에서도 아뢰어 청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1일(갑진) 2번째기사 대신 등이 찬선을 드시도록 권하라고 자전에게 청하다</p>	<p>대신 등이 자전에게 아뢰기를, “자전께 대전(大殿)을 위하여 찬선을 권하시는 것과 대전께서 자전을 위하여 찬선을 권하시는 것이 그 뜻에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자전께서는 드시지 않는다면 대전께서도 반드시 안심하고 드시지 못할 것입니다. 자전께서는 스스로 병이 없다고 하실지라도 춘추가 또한 높으시니 조정의 뜻을 애써 따르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 “나의 일은 주상과 다르다. 주상께서는 병의 뿌리가 이미 드러났으니 종사(宗社)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고 군주가 오래도록 소식(素食)할 수 없는 것은 예부터 그러하였으므로 권하여 허락받았다. 나로 말하면, 정현 왕후(貞顯王后)의 상(喪) 때에 조정과 위에서 권하였으므로 겉으로는 따르는 듯이 하였으나 속으로는 스스로 3년간 소식 하였는데 이제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조정에서는 굳이 청할 것 없다.”</p> <p>하였다. 익양군(益陽君) 등이 종실(宗室)을 거느리고 또한 권제를 애써 따를</p>	<p>○大臣等啓于慈殿曰：“慈殿爲大殿勸膳，大殿爲慈殿勸膳，其意有何異乎？慈殿若不進御，則大殿必不安心進御。慈殿雖自以爲無病，春秋亦高，朝廷之意，不可不勉從。” 答曰：“予事異於主上，主上則病根已發，大關於宗社，人君之不可久素，自古爲然，故勸而得請矣。 若予則貞顯王后之喪，朝廷及自上亦勸之，而外若從之，內自行素，至於三年，今何敢爲如此事乎？ 朝廷不須強請。” 益陽君等率宗室，亦啓勉從權制，慈殿答之如前。</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1일(갑진) 3번째기사 대신 등이 찬선을 직 접하다</p>	<p>것을 아뢰었으나 자전의 답은 전과 같았다. 대신 등이 아뢰기를, “이제 의원의 말을 들으니 ‘전에 없던 증세가 이제 나타났는데, 폐맥(肺脈)이 약하고 잦으며 소변도 붉고 흐리다.’고 합니다. 증세가 매우 가볍지 않으므로 의약은 보탬이 되지 않고 음식으로 고치는 것이 급합니다. 자전의 분부에 ‘위에서 애써 따른다고는 하여도 타락은 아직 들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자전께서 친림하여 청하시어 이미 애써 따르기로 허락하고도 실은 따르시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사체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대간과 시종은 모두 신들이 들어가 찬안을 빚고 친히 찬선을 살피기를 바라는데, 근년에는 대신이 이렇게 한 일이 없으므로 위에서 망설이시나 예전 신하는 혹 침실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니 또한 안 될 것이 없겠습니다. 상의 옥체에 증세가 가볍지 않으니, 모쪼록 애써 따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고깃국과 타락은 청한 대로 하겠다.” 하였다.</p>	<p>○大臣等啓曰：“今聞醫言：‘在前所無之證，今已出矣，肺脈微數，小便赤濁。’云。證勢極爲非輕，醫藥無益，食治爲急。慈殿之教，自上雖曰勉從，而駝酪尙不進御。慈殿親臨請之，已許勉從，而實不從之，此於事體，爲何如也？臺諫、侍從，皆欲臣等入望天顏，親自視膳，近年無大臣如此之事，故自上留難，古之人臣，或入臥內，亦無不可。上體證勢非輕，請須勉從。” 答曰：“肉汁、駝酪，當依請爲之。”</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2일(을사) 2번째기사</p>	<p>하니, 답하기를, “고깃국을 내가 탕(湯)과 찬물(饌物)에 타서 들이게 하였으니 상시에 찬선을 권하는 것을 나도 어찌 범연하게 하였겠는가. 날마다 친히 가서 권하지는 못하더라도 늘 사람을 시켜 가서 권하여 마지 않고 있다. 주상께서 편안하신 뒤에야 한 나라가 모두 편안한 것인데 내가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대신과 사관(史官)에게 술을 공궤(供饋)하게 하였다.</p>	<p>答曰：“肉汁，予令於湯中饌物，交和以進，常時勸膳，予亦豈偶然爲之？雖未能日日親往勸之，常常使人往勸不已。主上安然後，一國學安，予何敢忽諸？”仍饋大臣及史官酒。</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3일(병오) 1번째기사</p>	<p>대사헌 송인수(宋麟壽)와 대사간 이윤경(李潤慶)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소절(小節)을 굳게 지켜 병을 숨기고 찬선을 물리치는 것이 이토록 극에 달하시니 안팎이 막혀 사람의 마음이 위의(危疑)스러워합니다. 임금과 신하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데 임금에게 병이 있는데도 신하가 모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대신이 면대를 간청하여 두 번 아뢰었으나 두 번 다 물리친 채</p>	<p>○丙午/大司憲宋麟壽、大司諫李潤慶等啓曰：“殿下固守小節，諱疾却膳，至於此極，內外隔絕，群情危疑。君臣猶父子也，君父有病，而臣子不知可乎？大臣懇請面對，再啓而再拒，不察</p>

	<p>간절한 뜻을 살피시지 않으시니, 신들은 서운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선왕(先王) 때에는 종척(宗戚)을 연대(延對)하여 수라(水刺)를 돕게 하는 제도가 있었으니, 종척의 중신(重臣)을 사옹 제조(司饗提調)로 삼아 날마다 번갈아 입시하여 찬선을 드시는 여부를 살펴 상의 옥체가 회복되시기를 기다리게 하소서. 또 내의(內醫)를 시켜 날마다 들어가 진찰하여 증세가 있는 대로 곧 다시 하게 하시기를 지극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 “권제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어제 대신의 의견에 답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종척을 연대하는 일은 선왕 때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 해도 어찌 이것으로 나의 음식 먹는 것을 살피게 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p>	<p>懇迫之情，臣等不勝缺望。我先王朝，延對宗戚，有副水刺之制，請以宗戚重臣，爲司饗提調，輪日入侍，視進膳與否，以俟上體平復。且令內醫逐日入診，隨證隨治，不勝至願。” 答曰：“從權事，不過於昨日答大臣之意。對宗戚事，先朝雖有此制，何可以此驗予之食否?”</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3일(병오) 4번째기사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육선을 드실 것을 청하다</p>	<p>홍문관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전하께서 상을 당한 이래로 지나치게 수척하여 병이 이미 나셨으므로 신하들이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권제 따르기를 청하였고 자전께서도 친림하여 간절히 권하시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육선(肉膳)을 올려도 아직 드시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제 대신의 아람에 대해 이미 드셨다고 답하시고 자전께서 물으셔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p>	<p>○弘文館上筭，略曰： 殿下自喪疾以來，過於毀瘠，疾病已生，群臣爲宗社大計，請從權制，慈殿爲之親臨懇勸，乃得蒙允。而旋聞雖舉肉膳，尚未進御，而昨日大臣之啓，猶答以已御，慈殿之問，亦對如是。</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4일(정미) 2번째기사 자전이 약방에 전교하다</p>	<p>자전이 약방에 전교하기를, “주상의 기후가 여전하다. 수라는 어제부터 조금 더하시나 육선(肉膳)으로 말하면 ‘기운이 평상한데 어떻게 감히 고기를 먹으면서 졸곡제(卒哭祭)를 지낼 수 있겠는가.’고 답하신다. 전에 며칠은 탕에 타서 드셨으나 요즈음은 이것도 드시지 않는다.”</p> <p>하였다. 약방 제조 등이 회계하기를, “위에서 분부하신 것과 자전께서 분부하신 것이 이처럼 각각 다릅니다. 비위</p>	<p>○慈殿傳于藥房曰：“主上氣候如前，而水刺自昨稍加，然以肉膳，則答云：‘氣平何敢食肉，而猶行卒哭祭乎?’前者數日於湯中，交和以進，近則此亦不進耳。” 藥房提調等回啓曰：“上教與慈殿之教，如此各異，脾胃證，積漸而發，則至於難救，唯用肉汁然後可治。</p>

	<p>의 증세가 쌓여서 드러나게 되면 고치기 어렵게 되는데 고깃국을 써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조정의 근심은 일각이 급하니 자전께서 힘껏 드시도록 권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전에 친히 가서 권하고 또 탕에 타서 들게 하였는데, 주상께서는 졸곡하고 탈취(脫衰)한 뒤에 권제를 따르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친히 가는 것을 더욱 미안하게 여기시니, 나도 몹시 민망하다.”</p> <p>하였다.</p>	<p>朝廷憂憫，一刻爲急，請自慈殿極力勸進。” 答曰：“前者親往勸之，亦於湯中交和以進，主上以爲卒哭脫衰後欲從權，以我親往，尤爲未安，予亦悶極。”</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4일(정미) 5번째기사</p>	<p>상중에 고기를 먹는 것은 슬픔을 잊어서가 아니고 바로 병 때문에 약을 먹는 것인데, 유독 성명(聖明)하신 전하께서 종사를 위하여 따르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p>	<p>居憂食肉，非所以忘哀，乃爲病而服藥也，以殿下聖明，獨不能爲宗社俯就之乎？</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16일(기유) 1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근일에는 기후가 평상하고 음식도 여느 때와 같으니, 칠우제(七虞祭)·졸곡제(卒哭祭) 등은 친히 지내야겠다.”</p>	<p>○己酉/傳于政院曰：“予近日氣平，飲食如常，七虞、卒哭等祭，當親行。”</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20일(계축) 1번째기사 정원이 졸곡제 후의 상식을 친행하지 말도록 청하다</p>	<p>정원이 아뢰기를, “위에서는 졸곡제 뒤에 이어서 상식(上食)을 올리려 하시나, 밤에 노동하시고 또 이어서 상식을 올리면 반드시 다른 증세를 유발시킬 것이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지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전에도 우제 뒤에 상식을 올리려 하였으나 조정이 내가 조리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지내지 않았다. 이제는 기후가 평소와 같다. 어찌 스스로 헤아리지 않고서 지내려 하겠는가.”</p>	<p>○癸丑/政院啓曰：“自上欲於卒哭祭後，仍行上食，夜又勞動，又仍行上食，則必生他證， 臣等之意， 以爲不可行。” 傳曰：“前於虞祭後，亦欲行上食，而朝廷欲予調保，故不行。 今則氣候平常。 豈不自度料，而欲行乎？”</p>

	하였다.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20일(계축) 2번째기사	대간과 홍문관이 의원으로 하여금 상의 기후를 진찰하게 하고 또 아침 상식을 올리지 말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기후가 평소와 같으므로 대신과 대간이 여러번 청하여도 따르지 않는 것이다.”	○臺諫、弘文館請令醫入診上候，且勿行朝上食，答曰：“氣平，故大臣、臺諫累請，而不從矣。”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21일(갑인) 2번째기사 삼정승이 아침 상식을 친히 올리지 말것을 청하다	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유관, 우의정 성세창이 아뢰기를, “위에서는 아침 상식을 친히 올리려 하시나 이제 이미 졸곡제를 친행하셨으니 상식은 어찌 뒷날에도 없겠습니까. 상의 옥체가 지극히 쇠약하시니 지내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제 제사를 지내더라도 기후에 불편한 데가 없다. 상식은 뒷날에도 있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나 한 번도 지내지 못한 것이 지극히 미안하므로 이제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어서 올리려 한다.” 하였다.	○領議政尹仁鏡、左議政柳灌、右議政成世昌啓曰：“自上欲親行朝上食，今已親行卒哭祭矣。上食豈無他日？上體極爲羸弱，請勿行。”答曰：“今雖行祭，氣無不平。上食，非不知有後日，而一不得行，至爲未安，今欲少留於此，仍行之。”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21일(갑인) 4번째기사	이성군(利城君) 이관(李慣) 등이 종실(宗室) 2백여 원(員)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오늘 신들이 바라보건대 천안이 매우 수척하여 혈색까지 없으시니 근심스럽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졸곡이 이미 지나고 큰일이 이미 끝났으므로, 고기를 드실 것을 전에 이미 계청하였고 위에서도 애써 따르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드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민망히 여겨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미 권제를 따랐어도 낮빛이 이러하니 나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 어찌 따르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관(慣) 등이 다시 아뢰기를,	○利城君慣等率宗室二百餘員啓曰：“今日臣等共望天顏，極爲毀瘠，至無血色，憂憫罔極。卒哭已過，大事已畢，進肉事，前已啓請，自上以爲勉從。而未見有進御，斯以爲憫敢啓。”答曰：“已從權而顏色如此，予亦不知其故也。豈爲不從乎？”慣等再啓曰：“上教雖如此，而外人未能知其實，請親入視膳。”答曰：“不信予言，再再言之如此，至爲未安。雖不入見，亦無不從。”

	<p>“위의 분부는 이러하더라도 외인(外人)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친히 들어가 찬선(饌膳)을 살피게 하여 주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내 말을 믿지 않고 되풀이하여 이렇게 말하니 매우 미안하다. 들어와 보지 않아도 따르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p> <p>하였다.</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21일(갑인) 5번째기사</p>	<p>박세거(朴世舉)·홍침(洪沈)·유지번(柳之蕃) 등이 들어가 진찰하였다. 상의 심맥(心脈)·폐맥(肺脈)·신맥(腎脈)과 수척하고 찬선들기를 좋아하지 않는 등의 증세는 모두 전과 같았고, 다만 간맥(肝脈)이 조금 긴장하고 비맥(脾脈)·위맥(胃脈)에 조금 내약(內弱)한 증세가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비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므로 평위전(平胃煎)·십미백술산(十味白朮散)195) 을 바쳐야 한다고 하였다.</p>	<p>○朴世舉、洪沈、柳之蕃等入診，“上心、肺、腎脈與瘁瘦不喜進膳等證，竝如前，但肝脈稍緊，脾胃脈微有內弱，此必脾胃不得蘇復故也，宜進平胃煎、十味白朮散。”</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21일(갑인) 6번째기사</p> <p>약방 제조가 음식을 잘 드셔야 한다고 아뢰다</p>	<p>약방 제조가 아뢰기를,</p> <p>“이제 진찰한 의원의 말을 듣건대 비위가 매우 허약한 것이 전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비위는 모든 장기(臟器) 중에서 중요하거니와 오행(五行)은 토(土)에 의지하여 살고 모든 장기는 비위에 의지하여 사는데, 지금 시기를 잃고 조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중한 증세를 유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전에 아뢰신 식치(食治)의 방도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보다 나올 수 없으니 드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전에 아뢰신 식치하는 일은 곧 아뢰신 대로 하였거니와 이제는 더욱 애써 들겠습니다.”</p> <p>하였다.</p>	<p>○藥房提調啓曰：“今聞診醫之言，脾胃極爲虛弱，如前不減。脾胃重於諸臟，五行以土爲資生，諸臟以脾胃爲資生，失今不調治，則必生重證。前所啓食治之方，良藥無過於此，請進御。”答曰：“前啓食治事，卽依啓爲之，今則尤當勉進。”</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22일(을묘)</p>	<p>자전이 답하기를,</p> <p>“조정이 조정의 구례(舊禮)에 의거하여 말하니 따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미안하지마는, 여러해 동안 모시다가 하루아침에 이 큰 변고를 당하였으니 죽지는</p>	<p>慈殿答曰：“朝廷據祖宗舊例而言之，不從至爲未安，但累年侍衛，一朝至此大變，雖不能死，何忍食肉乎？”</p>

2번째기사	못하더라도 어떻게 차마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22일(을묘) 3번째기사	익양군(益陽君) 이회(李懷)가 여러 종실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어제 위에서 권제를 따르겠다고 전교하셨으나 신들은 그 실행이 없으실까 염려됩니다. 졸곡이 이미 지났고 위의 육맥(六脈)196) 이 허약하신데 이제 고기를 드시지 않으면 약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들어가 면대하여 그 실상을 알게 하소서.” 하니,	○益陽君懷率諸宗室啓曰：“昨日自上傳曰從權，而臣等恐無其實。卒哭已過，上六脈虛弱，今不進肉，則非藥可救，請入面對，以知其實。”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23일(병진) 2번째기사 헌부가 의정부의 탄일 진하도 정지시킬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탄일(誕日)의 진하를 외방은 이미 멈추라고 명하셨으나 의정부의 진하는 아직 멈추라고 명하시지 않았으므로 내외의 조처가 달라서 매우 불편하지 못하니, 정부의 진하도 아울러 멈추라고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憲府啓曰：“誕日進賀，外方則已命停之，議政府進賀，則時不命停，內外有異，甚爲未便。政府進賀，請竝命停。”答曰：“如啓。”
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24일(정사) 1번째기사 조정에 육선을 먹도록 전교하였는데, 별선은 때문에 대신들이 논란 을 벌이다	종재(宗宰) 1품 이상과 승정원·홍문관·사헌부·사간원의 전수가 부름을 받고 함문(閣門) 밖에 나아가니, 상이 윤인경(尹仁鏡) 등에게 전교하기를, “자전과 온 조정이 나에게 권제를 따르도록 권하므로 내가 이미 애써 따랐거니와, 나는 조정도 개소(開素)197)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모이게 한 것이다.” 하였다. 윤인경 등이 사례하고 이어서 내시(內侍) 박한중(朴漢宗)에게 말하기를, “위에서 참으로 권제를 따르시느지를 잘 모르고서 신들이 개소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니, 박한중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부터 수라를 드십니다.”	○丁巳/宗宰一品以上及承政院、弘文館、司憲府、司諫院全數，承召詣閣門外，上傳于尹仁鏡等曰：“慈殿及舉朝勸予從權，故予已勉從，予欲朝廷亦開素，故今令來會。”仁鏡等謝之，仍言于內侍朴漢宗曰：“未審上從權之實，而臣等開素爲何如?”漢宗曰：“自今朝水刺進御矣。”左議政柳灌笑曰：“今而後無疑矣。”饗人遂舉肉床，朴漢宗執筋勸大臣等，仁鏡以下皆執肉食之，遂行宣醞。禮爵訖，將行別宣醞，大

	<p>하였다. 좌의정 유관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의심이 없겠다.”</p> <p>하였다. 용인(饗人)198) 이 드디어 고기 상(床)을 올렸는데, 박한중이 것가락을 잡고 대신 등에게 권하니 윤인경 이하가 다 고기를 집어먹고 드디어 선은(宣醞)을 행하였다. 예작(禮爵)이 끝나고서 별선은(別宣醞)을 돌리려 할 때에 대사헌 송인수(宋麟壽)와 대사간 이윤경(李潤慶)이 윤인경 등의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오늘은 개소할 뿐인데 별선은을 돌려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평시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승이 멈추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가 아뢰어 멈추겠습니다.”</p> <p>하였다. 유관이 승지 원혼(元混)에게 묻기를, “이 술이 어제 계하(啓下)된 물목(物目)에 기록된 술인가?”</p> <p>하니, 원혼이 그렇다고 답하고, 박한중이 말하기를, “술은 넉넉합니다.”</p> <p>하였다. 이윤경이 말하기를, “술이 모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일이 평시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멈추려는 것입니다.”</p> <p>하니, 유관이 기색이 좋지 않은 채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위의 명이 이미 이러하다면 【별선은은 대개 위의 뜻이었다.】 승전색(承傳色)이 어떻게 감히 뜻대로 멈출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이에 송인수와 이윤경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아뢰겠습니다.”</p> <p>하고, 드디어 물리가 아뢰기를, “오늘 개소를 명하셨으므로 선은하셨으나 아울러 별선은을 두세 차례나 돌리면 평시와 다를 것이 없어서 변례(變禮)의 뜻이 아주 없어질 것이니, 선은을</p>	<p>司憲宋麟壽與大司諫李潤慶，前就尹仁鏡等言曰：“今日只開素而已，何必行別宣醞乎？如是則無異平時，政丞若欲不止，則我等欲啓而止之。”柳灌問于承旨元混曰：“此酒，昨日啓下物目所載之酒乎？”混曰：“唯。”朴漢宗曰：“酒則有餘用之矣。”李潤慶曰：“非謂酒不足，事無異於平時，故欲止。”柳灌色不悅，久之曰：“上命既如是，則【別宣醞，蓋上意。】承傳色安敢任意止之？”於是麟壽、潤慶曰：“我等當啓。”遂退啓曰：“今日命開素，故爲宣醞矣，并行別宣醞，至於再三，則無異平時，殊無變禮之意，請勿(若)行宣醞。”答曰：“平時則豈止於二三盃乎？今則止於此而已。”方麟壽等啓請止之，未有發落，而仁鏡等行別醞不止，又麟壽等啓曰：“臣等以別宣醞未便啓之，則宜待於成命而後，或行與止，而一邊啓之，一邊行酒如恐不及，此由臺諫輕故也。酒至於臣等，則決不可參飲，請遞臣等之職。”【元混、任說，以臺諫所啓，目而譏笑之，混至於變色勃然。】答曰：“別宣醞既命承旨行之矣，時無止之之命，故如此行之也，非</p>
--	---	--

	<p>돌리지 말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평시라면 어찌 두세잔에 그치겠는가. 지금은 여기에 그칠 뿐이다.”</p> <p>하였다. 바야흐로 송인수 등이 아뢰어 멈추기를 청하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인경 등이 별선운을 멈추지 않고 행하므로 또 송인수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별선운이 온편하지 못함을 아뢰었으면 의당 성명(成命)을 기다린 뒤에 행하거나 멈추거나 해야 마땅할 것인데, 한편에서는 아뢰고 한편에서는 마치 미처 못할 듯이 술을 돌리니, 이것은 대간이 경시된 때문입니다. 술이 신들에게 이르러도 결코 참여하여 마실 수 없으니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원혼과 임열(任說)이 대간이 아뢰는 것을 지목하여 비평하고 비웃었으며, 원혼은 낮빛을 바꾸어 밝은 성을 내기까지 하였다.】</p> <p>하니, 답하기를,</p> <p>“별선운은 이미 승지에게 명하여 돌리게 하였거니와, 멈추라는 명이 없으므로 그와 같이 돌린 것이니, 대간을 경시한 것이 아니다. 사직하지 말라.”</p> <p>하였다.【윤인경 등이 대간이 아뢰어 멈추도록 청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므로, 송인수가 이윤경을 돌아보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대간이 이미 아뢰었으면 명을 기다린 뒤에 마신들 무슨 못 미칠 것이 있기에 감히 이렇게 하는가? 조금이라도 대간을 마음에 두었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일마다 그렇게 할 것이니 그 근원을 터 줄 수 없다.’ 하니, 이윤경이 웃음을 머금고 동렬(同列)을 돌아보며 함께 언론했다. 이윽고 송인수가 ‘우리는 함께 마실 수 없으니 사피해야 할 형세이다.’ 하니, 이윤경이 그러자고 하였다. 송인수가 ‘승지도 어찌 술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피해야 하겠다.’ 하고, 드디어 이윤경 등과 함께 일어나서 나갔다. 이 계(啓)가 있을 때에 남세건(南世健)·윤개(尹漑)·신영(申瑛)·한숙(韓淑)이 곁에 있었는데, 다들 서로 돌아보며 실색(失色)하면서 정</p>	<p>輕臺諫而爲之。 其勿辭。”【仁鏡等見臺諫啓請止之，猶行自若，麟壽顧謂潤慶曰：“此何事耶？臺諫既啓，則待而後飲，有何不及而敢爾耶？若小有臺諫，則何敢爲此事乎？此則小事，若事事皆然，則其源不可開也。”潤慶飲笑，顧與同列言論。 既而麟壽曰：“吾等不可參飲，勢當辭避。”潤慶曰：“唯。”麟壽曰：“承旨亦安得行酒乎？然吾等先避。”遂與潤慶等起出，有是啓。 時，南世健、尹漑、申瑛、韓淑在傍，皆相顧失色，怪政丞不止。 及聞麟壽言，尹漑尤以爲然，乃曰：“果是果是。”飲笑而已。 及麟壽等辭出，酒至尹漑，漑飲退笑曰：“腹飢，何用不飲？吞下之物，有何妨乎？兩司既退，人口減，飲次易至矣。”云，蓋嘲大臣等也。】仁鏡等見臺諫辭職，始停酒，啓曰：“今日賜臣等酒，承傳色畢宣醞後，承旨一人出行別宣醞，而臺諫啓請止之。 臣等之意以爲，自上有止之之命然後當止，而今臺諫至於辭職，臣等待罪。”答曰：“承旨別行酒，既命爲之，而尙無新命，何必待罪？安心畢行可也。”麟壽等三啓曰：“自上</p>
--	---	---

승이 멈추지 않은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송인수의 말을 듣고는 윤개가 더욱 당연하게 여겨 ‘과연 옳다. 과연 옳다.’ 하였으나 웃음을 머금을 뿐이었다. 송인수 등이 사퇴하여 나가고는 술이 윤개에게 돌아오니, 윤개가 마시고 물러나서 웃으며 ‘배가 고프는데 어찌하여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식물(食物)이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양사(兩司)가 물러갔으니 사람의 입이 줄어들어서 마실 차례가 쉽게 돌아오겠다.’ 하였는데, 대개 대신들을 비웃은 것이다.】 인경 등이, 대간이 사직하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술마시는 것을 멈추고 아뢰기를,
 “오늘 신들에게 술을 내리시어 승전색이 선운(宣醞)을 끝낸 뒤에 승지 한 사람이 나와 별선운을 돌렸는데 대간이 멈출 것을 계청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위에서 멈추라는 명이 계셔야 멈추는 것이라고 여겼으나 이제 대간이 사직까지 하니 신들은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승지가 별선운을 돌린 것은 이미 명하여 하게 한 것이고 아직 다른 명이 없었는데, 대죄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안심하고 술 돌리는 것을 끝내도록 하라.”
 하였다. 송인수 등이 세 번째 아뢰기를,
 “위에서 이미 고기를 권하셨는데 고기를 권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운 한 잔으로도 위의 뜻이 간절하심을 이미 알았는데 두세 잔에 이르면 이는 평시와 같은 것이 되고 또 취하게 됩니다. 제 시기가 아닌 때에 취하는 것은 예문에 어긋나므로 논집(論執)하였으나 신들이 논한 것이 헤아릴 것도 못되므로 승지가 선운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여느 때에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대간이 논집하면 우선 결정을 기다린 뒤에 시행하는데, 신들이 그 자리에서 논집하고 있는데도 강행하였으니, 신들이 대간으로 있으면서 무상(無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체직시켜

既勸肉，勸肉則聞命矣。宣醞一爵，已知上意懇倦，至於二三爵，則有似平時，且及於醉。醉於非時，有乖禮文，故論執，而臣等之論，不足爲輕重，故承旨宣醞不止。常時雖小小事，臺諫論執，則姑待發落然後施行，而臣等論執在坐，而強以行之，臣等在臺諫無狀故如此，不可在職，請遞。” 答曰：“予意已盡言之。勿辭畢行。” 麟壽四啓曰：“臺諫時方論執，則政院姑停其事，而待發落可也。今者左承旨元混不待發落，強行宣醞，不有臺諫，非徒事體有妨，後弊無窮，請罷。別宣醞非其時，請速命停。” 答曰：“承旨非任意爲之，以予之命而爲之，此豈不有臺諫？以爲後弊無窮，則未可知也。別宣醞二三杯，有何妨乎？大行大王朝貞顯王后卒哭，命承旨四人及內官行禮，今則數不及於彼時，勿辭速入畢行。” 仁鏡等三啓曰：“宣醞既訖，臺諫必不入參，無臺諫，臣等不可獨行，別宣醞，請命停。” 答曰：“兩司何敢不入？更行之可也。” 麟壽等五啓曰：“承旨宣醞，非其時故，臣等既以不合於禮啓之，臣等決不可參飲。臣等參

	<p>주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내 뜻은 이미 죄다 이렀다. 사피하지 말고 술 돌리는 것을 끝내라.”</p> <p>하였다. 송인수가 네 번째 아뢰기를,</p> <p>“대간이 바야흐로 논집하고 있으면 정원은 우선 그 일을 멈추고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좌승지 원혼은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운을 강행하였으니 대간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는 사체에도 방해가 될 뿐더러 뒤폐단도 끝이 없을 것이니,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별선운은 제 시기가 아니니 빨리 멈추라고 명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승지는 제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명에 따라 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대간을 업신여긴 것이겠는가. 뒤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 별선운 두세잔이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대행 대왕(大行大王) 때에는 정현 왕후(貞顯王后)의 졸곡에 승지 4인과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행례(行禮)하였는데, 이제는 수효가 그때에 미치지 못한다. 사피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술 돌리는 것을 끝내라.”</p> <p>하였다. 윤인경 등이 세 번째 아뢰기를,</p> <p>“선운은 이미 마쳤습니다. 대간이 반드시 들어와 참여하지 않을 것인데 대간이 없이 신들만 별선운을 행할 수는 없으니, 멈추도록 명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양사가 어찌 감히 들어가지 않겠는가. 다시 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송인수 등이 다섯 번째 아뢰기를,</p> <p>“승지가 선운한 것이 제 시기가 아니므로 신들이 이미 예에 맞지 않는다고 아뢰었으니, 신들은 결코 함께 마실 수 없습니다. 신들이 정례(情禮)를 참작하여 아뢰었는데도 이토록 굳게 물리치니 서운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빨리</p>	<p>酌情禮而啓之，牢拒至此，不勝缺望。請速命停。臺諫時方論執，政院不待發落而強行，臺諫未及稟決，而事已施行，豈無後弊？請勿留難速罷。”仁鏡等四啓曰：“臺諫非徒不入，請罷承旨，何必畢行宣醞？請命勿行。在前先王《實錄》，卒哭後，實錄廳堂上、郎官差出，今可磨鍊，天使回還後設局。初喪則三公例坐政院，今則公事已爲出入，院相無可爲之事，自今請勿坐。”答臺諫曰：“別宣醞非其時，予非不知，但請朝廷宗宰，只行一爵，似爲埋沒，故爲之。非承旨之過，實予之過，豈可罷職？勿行宣醞。”答大臣曰：“宗宰爲一杯酒，久坐於冷地，至爲未安，未行之酒，勿行。院相《實錄》事，如啓。”臺諫啓曰：“凡臺諫論啓之事，政院不待發落而如此，則居喉舌之地，稱有成命，而排抑正論者，未必不由此啓之也。臣等之所謂後弊無窮者此也。元混之失，所關非輕，請速罷職。中朝以我國，爲禮義之邦，優待異於他國，近來門禁太甚，待之無異隸子。謀利之徒，以買賣爲事，不計羞辱，此實依憑公貿易，恣行私買，而辱</p>
--	---	--

	<p>멈추라고 명하소서. 대간이 바야흐로 논집하고 있는데 정원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강행하였으므로 대간이 미처 품결(稟決)받기도 전에 일은 이미 시행되었으니, 어찌 뒤폐단이 없겠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빨리 파면시키소서.”</p> <p>하고, 윤인경 등이 네 번째 아뢰기를,</p> <p>“대간이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승지를 파면시키기를 청하고 있으니 선운을 돌리는 것을 끝내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돌리지 말라고 명하소서. 전에는 선왕(先王)의 실록(實錄)을 위하여 줄곡 뒤에 실록청(實錄廳)의 당상(堂上)·낭관(郎官)을 차출하였으니, 이제도 마련하였다가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국(局)을 설치해야 하겠습니까. 초상(初喪)에는 삼공이 으레 정원에 좌기(坐起)199) 하였으나 이제는 공사(公事)를 이미 출납하므로 원상(院相)은 할 일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좌기하지 말도록 하소서.”</p> <p>하니, 대간에게 답하기를,</p> <p>“별선운은 체 시기가 아닌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마는, 조정의 종재(宗宰)들에게 한 잔만을 돌리도록 청하는 것은 매몰할 듯하므로 그렇게 하였다. 이는 승지의 잘못이 아니라 실로 나의 잘못인데 어찌 과직시킬 수 있겠는가. 선운을 돌리지 말도록 하라.”</p> <p>하고, 대신에게 답하기를,</p> <p>“종재가 한 잔의 술 때문에 찬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지극히 미안하나 아직 돌리지 않은 술은 돌리지 말라. 원상과 실록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p> <p>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p> <p>“무릇 대간이 논계한 일에 있어서 정원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하였으니 후설(喉舌)의 지위에 있으면서 성명(成命)이 있었음을 핑계삼아 정론(正論)을 배척하고 억제하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시작되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들이 이른바 뒤폐단이 끝이 없다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p>	<p>及朝廷。若無公質，則私質之禁，亦易，請自今書冊藥材外，一切勿質，以雪國家之恥。況三年內，綵物珠玉，無急用之處，尤不可質也。” 答曰：“元混事，予意盡言之。中朝貿易綵物珠玉外，書冊、藥材、弓角，國用不得已之物，可質也。”</p> <p>【史臣曰：“今日之事，大臣入對天顏，上御肉而後退食可也。不然，雖有上命肉，不可食也，今只聞內侍之言，徑自食肉飲酒，(晏) [然] 晏行禮，大臣之過，固大矣。爲臺諫者，亦不可循大臣所爲，安然就席，食肉飲酒，而麟壽以有識之人，明知君上不曾進御，先自執肉，大臣之別行宣醞，何以誅乎? 宜其言之不能見重。至於迭相啓奏，煩擾無已，有同兒戲，惜哉!”】</p>
--	--	--

	<p>원혼의 잘못은 관계되는 바가 가뻓지 않으니 빨리 파직시키소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로 여겨 너그러이 대우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달랐는데 근래는 문금(門禁)이 매우 심하여 달자(獐子)와 다름없이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피하는 무리가 물건 매매하는 것만을 일삼아 부끄럽고 욕되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데, 이것은 실로 공무역(公貿易)을 빙자하여 사무역(私貿易)을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욕이 조정에 미치는 것입니다. 공무역이 없다면 사무역을 금지하는 것도 쉬울 것이니, 이제부터는 서책(書冊)·약재(藥材)이외의 것은 무역하지 말아서 국가의 수치를 씻으소서. 더구나 삼년 안에는 채단(綵緞)·주옥(珠玉)을 급히 쓸 곳이 없으니 더욱 무역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원혼의 일에 대해서는 내 뜻을 다 일렀다. 중국에서 무역하는 것은 채단·주옥을 제외하고 서책·약재·궁각(弓角) 등 국용(國用)에 부득이한 물건은 무역하라.”</p> <p>하였다.</p> <p>사신은 논한다. 오늘의 일은, 대신이 들어가 천안(天顏)을 대하여 위에서 고기를 드는 것을 본 뒤에 물러나와 먹었어야 옳았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명이 있더라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내시의 말만 듣고 스스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태연하게 행례(行禮)하였으니, 대신의 잘못이 진실로 크다. 대간으로서도 대신이 하는 대로 따라서 태연히 자리에 나아가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서는 안 되는데, 송인수는 유식한 사람으로서 임금이 진어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도 먼저 스스로 고기를 집었으니, 대신이 별선온을 돌린 것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 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번갈아 아뢰어 번거롭기 그지없던 것으로 말하면 어린 아이의 장난과 같았으니 애석하다</p>	
인종 1권, 1년(1545)	경사전에 거동하여 주다례(晝茶禮)를 지내고 저녁 상식을 올렸다.	○庚申/幸景思殿, 行晝茶禮及夕上

<p>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2월 27일(경신) 1번째기사</p>		<p>食。</p>
<p>인중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3월 1일(계해) 1번째기사</p>	<p>상이 경사전(景思殿)에 나아가 삭전(朔奠)을 지냈다.</p>	<p>○癸亥朔/上詣景思殿，行朔奠。</p>
<p>인중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3월 11일(계유) 1번째기사</p>	<p>상이 의식대로 정릉(靖陵)에 배알하고 능에 올라 슬피 살피고 또 배곡(拜哭)하였다. 왕후의 능에 오르려 할 때에 찬례(贊禮) 임권(任權)이 찬도(贊導)할수 없음을 아뢰고 물러가니, 참판(參判) 정만중(鄭萬鍾)이 대신하였다. 수릉관(守陵官) 정세호(鄭世虎)와 시릉관(侍陵官) 임세무(林世茂)에게는 가자하고 옷을 주었으며, 참봉(參奉) 및 내관(內官)도 한 자급을 올렸고 아래로 차비인(差備人)과 입번(入番)한 수릉군(守陵軍)에 이르기까지 각각 쌀과 베를 내렸다.</p>	<p>○癸酉/上拜靖陵如儀，上陵哀省亦拜哭。將上王后陵，贊禮任權啓不能贊導而退，參判鄭萬鍾代之。加守陵官鄭世虎、侍陵官林世茂，資給衣襲，參奉及內官，亦加一資，下至差備人及入番守陵軍，各賜米布。</p>
<p>인중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3월 15일(정축) 1번째기사</p>	<p>상이 경사전(景思殿)에 나아가 친히 망전(望奠)을 지내고 이어서 아침 상식(上食)을 올렸다.</p>	<p>○丁丑/上詣景思殿，親行望奠，仍行朝上食。</p>
<p>인중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3월 18일(경진) 1번째기사</p>	<p>상이 경사전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지내고 이어서 저녁 상식을 올렸다.</p>	<p>○庚辰/上詣景思殿，行茶禮，仍行夕上食。</p>
<p>인중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3월 18일(경진) 2번째기사</p>	<p>근래 나라에 대상(大喪)이 있었고 중국 사신도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경기(京畿)의 백성은 곤궁이 극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상(進上)하는 일에 대해 아래에서 아뢰기는 미안합니다마는, 형세가 어려운 것을 보고서 감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물(魚物)과 소선(素膳)은 각 고을 중에 생산되는 곳도 있고 민간에서 거두기도 하는데 각포(各浦)에서는 수군(水軍)에게서 거둡니다.</p>	<p>近來國有大喪，天使又將出來，畿甸之民困極。進上之事，自下啓之未安，但觀其勢難，未敢容默。魚物與素膳，各官或有產處，或徵之民間，各浦則徵之水軍。今年水軍極困，此事，令司</p>

	<p>올해는 수군이 매우 곤궁하니 이 일에 대해서는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를 시켜 적당히 헤아려 줄이게 하소서. 경기만이 아니라 팔도(八道)가 다 그러하니,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여 민폐(民弊)를 물어서 구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饗院提調量減。非徒京畿如此，八道皆然，下書于觀察使，訪問民弊，救之爲當。</p>
<p>인종 1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3월 20일(임오) 2번째기사</p>	<p>대간이 아뢰기를, “즉위하신 뒤에 한 번도 시사(視事)하지 않으셨으므로 상하가 막혀서 사람들의 심정이 답답해 합니다. 세종 대왕께서는 27일 안에 의려(倚廬)에서 시사하셨으니 어찌 뜻이 없었겠습니까. 또 이제 이미 가뭄의 재앙이 들어 밀보리가 죄다 타 죽었으니, 민생이 매우 가엾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어긋난 다음에 하늘의 재앙이 위에서 응하는 것이므로 신하들을 접견하여 면대해서 재앙이 오게 된 까닭을 논하고 재앙을 그치게 할 도리를 강구해야 할 것이니, 빨리 시사하소서.</p>	<p>○臺諫啓曰：“卽位後一不視事，上下阻隔，群情悶鬱。世宗大王，二十七日內，視事於倚廬之中，豈無其意？且今旱災已成，兩麥盡爲焦傷，民生至爲可哀。人事失於下，然後天災應於上，所當接見群臣，面論致災之由，講究消弭之道，請速視事。</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1일(계사) 1번째기사</p>	<p>상이 친히 경사전(景思殿)에서 삭제(朔祭)를 지내고 이어서 아침 상식(上食)을 올렸다.</p>	<p>○癸巳朔/上親行朔祭于景思殿，仍行朝上食。</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2일(갑오) 2번째기사</p>	<p>또 근래 경사전(景思殿)의 삭제(朔祭)를 친히 지내고 번번이 이어서 아침 상식(上食)을 올리시나, 이제 밤이 짧은 때에 한꺼번에 두 가지를 거행하시면 옥체를 피로하게 할 듯합니다. 더구나 중국 사신이 올 때에는 예모(禮貌)가 매우 많은데 상께서 기후가 전보다는 나으실지라도 원기가 아직 허약하시니, 아침 상식이나 주다례(晝茶禮) 같은 일은 따로 다른 날에 지내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정전을 피한 것이 대행 대왕(大行大王) 때의 일이기는 하나 지금의 가뭄도 재변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으니, 내 생각으로는 서둘러 정전을 회복할 것은</p>	<p>且近來景思殿朔祭親行，每仍行朝上食，今當夜短之時，一舉兩行，恐勞上體，況當華使之來，禮貌甚多，上候雖視前稍歇，元氣尙虛，如朝上食晝茶禮等事，別以他日行之何如？”答曰：“避殿雖大行大王時事，而今茲之旱，不可謂無災，予意以爲，不必汲汲於復正殿也。雖或復殿，平排之設，有何妨於禮貌乎？且景思殿朔祭後，不行上食，</p>

	없겠다. 혹 정전을 회복하더라도 평배(平排)로 설치하는 것이 무슨 예모에 방해되는 것이 있겠는가. 또 경사전의 삭제 뒤에 상식을 지내지 않고 환궁(還宮)하기가 미안하므로 지낸 것이다. 뒤에는 참작하겠다.” 하였다.	而還宮未安，故行之。 後則當斟酌。”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5일(정유) 1번째기사	상이 경사전(景思殿)에서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냈다.	○丁酉/上行夏享大祭于景思殿。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8일(경자) 4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충청도 서천(舒川)에 있는 모지언(毛知堰)의 논을 갈아먹는 정세순(丁世純) 등이 여러 해 동안 방축(防築)하여 임자년(301)의 양전(量田)302) 때에 전안(田案)에 등록 하였는데, 강장손(康長孫)이라는 자가 뒤미치어 독[堰] 밖의 묵은 땅 1백 결(結)303) 을 받아 입안(立案)304) 의 일(一)자에 두 획을 더 그어 3백 결로 만들어 내수사(內需司)에 바치니 내수사가 군사를 내어 방축하고는 강장손이 술수를 쓴 입안에 따라 독안의 오래 갈아먹던 백성의 논까지 아울러 측량하였으므로 백성의 원망이 매우 심합니다. 공론이 발론된 지가 오래되었으며 또 이제 정세순 등이 본부(本府)에 정소(呈訴)하였는데, 이것은 국가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므로 지극히 아름답지 못하니, 그 도의 관찰사를 시켜 다시 분간하여 백성의 원망을 풀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수사에 물은 뒤에 답하겠다.” 하였다.	○憲府啓曰：“忠清道舒川毛知堰水田耕食者丁世純等，積年防築，壬子年量田時，錄於田案，而康長孫稱名者，追受堰外陳地一百結，立案內，一字上加二畫，作三百結，進上于內需司，發軍防築。 以康長孫用術立案，并打堰內久遠耕食民田，民怨太甚，發於公論久矣。 且今丁世純等呈訴于本府，此國家與民爭利，至爲不美。 請令其道觀察使改分揀，以伸民怨。” 答曰：“問于內需司後答之。”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10일(임인)	상이 경사전(景思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지냈다.	○上詣景思殿，行晝茶禮。

3번째기사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11일(계묘) 1번째기사</p>	<p>송인수는 아뢰기를, “세력이 강한 것을 믿고 겸병(兼并)하는 것은 법이 다스러야 할 것인데, 서천(舒川)의 제언(堤堰)은 정세순(丁世純) 등이 조세를 거두고 갈아 먹게 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강장손(康長孫)이 빼앗으려 온갖 꾀를 부려 제언 곁의 1백 결(結)의 전지(田地)를 절수(折受)312) 하여 두 획을 더하여 3백 결로 만들어 정세순의 전지를 침입하였습니다. 정세순이 세 번 득신(得伸)313) 하였으므로 강장손의 계책이 궁하여지고 나니, 또 짐짓 내수사(內需司)의 중 철금(哲金)에게 팔고 철금은 또 옮겨 진상(進上)하였으므로, 세 번 득신한 전지인데도 빼앗기고 대신 갈아 먹을 전지가 없으니, 그 억울함이 막심합니다. 사간(司諫) 곽순(郭珣)이 군수(郡守)로 있을때 친히 이 송사를 다스렸고, 감사(監司) 정만중(鄭萬鍾)도 문서를 만들어 서울로 올려보냈으나 아직도 신원(伸冤)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산업(產業)은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으므로 가슴 아프고 불쌍하기가 형용할 수 없고, 내수사가 간사하고 교활하게 빼앗으려 꾀했던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지체 없이 시원하게 결단 하소서.”</p>	<p>。” 麟壽曰：“恃强兼并，法所當治，而舒川堤堰，丁世純等收稅耕食已久，而康長孫謀奪，百計折受堰傍百結之田，加二畫爲三百，侵入世純之田。世純三度得伸，長孫之計已窮，則又故賣於內需司奴哲金，哲金又轉而進上，以三度得伸之田而見奪，無以代食，則其冤莫甚。司諫郭珣爲郡守時，親聽此訟，監司鄭萬鍾亦成冊上京，而猶未伸冤。貧民產業，專在於此，傷惻難形，而內需司奸巧謀奪，其狀已露，請快決無留。”</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15일(정미) 3번째기사</p>	<p>영의정 윤인경(尹仁鏡)이 아뢰기를, “신은 오늘 차출되어 경사전(景思殿)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무릇 제례(祭禮)는 반드시 먼저 향(香)을 올린 뒤에야 잔을 올리는 것인데, 오늘 제사 때에 집사(執事) 두 사람이 잔을 들어 바치는데 신이 공경하고 삼가는 처지에 몰려서 스스로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다만 집사가 바치는 데로 따라 마침내 향을 올리는 일을 잔을 올리는 일보다 뒤에 하였으니, 이것은 집사가 먼저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신의 잘못이 더욱 무겁고, 제향(祭享)에서 예절이 어긋난 것은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므로 황공하여 대죄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領議政尹仁鏡啓曰：“臣今日差祭于景思殿。凡祭禮，必先奉香而後，方可奠爵。今日之祭，執事二人，執爵而進，臣迫於敬謹之地，不自詳察，但因執事之進，遂使上香，後於奠爵，此雖執事先誤，臣之失尤重，祭享禮愆，誠非細故，惶恐待罪。” 答曰：“果似失禮，然敬謹之際，忘却所致。不須待罪。”</p>

	<p>“과연 예절에 어긋난 듯하나 공경하고 삼가는 사이에 잇은 탓이다. 그러니 대죄할 것은 없다.” 하였다.</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18일(경술) 2번째기사</p>	<p>국법이 국상(國喪) 3년 안에는 술을 쓰면 안 되거니와 더구나 이제 가뭄의 재앙이 극도에 이르러 상께서 정전(正殿)을 피하고 찬선(饌膳)을 줄이며 근심하고 애쓰시는 것이 지극한데, 각사(各司)가 술을 쓰는 것은 한결같이 전과 같고 여염에서도 모여서 마시는 일이 많으며 외방(外方)에서는 음식을 차려서 잔치하여 술을 마시는 것이 평일과 다름이 없고 풍악만을 쓰지 않을 뿐이니, 상사(喪事)를 삼가고 재앙을 경계하는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이제부터 술을 금하라는 영을 일체 엄하게 하여 전지(傳旨)를 받들어 중외(中外)에 이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당물의 무역을 금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궁중에서 당물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일은 감히 유의하지 않겠는가. 술을 금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다만 제사와 늙고 병든 사람이 약으로 먹는 것을 이에 얽매어 일체 금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p>	<p>國法，三年內用酒，已爲不可，況今旱災已極，自上避殿減膳，憂勤至矣，而各司用酒，一如前時，閭閻之間，亦多聚飲。至於外方，則設饌宴飲，無異平日，唯不用樂耳，甚非謹喪警災之意。請自今，一嚴禁酒之令，奉傳旨諭諸中外。” 答曰：“唐物禁貿事如啓。宮中不用唐物事，敢不留意？禁酒事，如啓至當。但如祭祀、老病服藥，不可拘此而一禁也。”</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24일(병진) 2번째기사 대간이 색승지·도승지의 추고를 청하다</p>	<p>대간이 아뢰기를, “무릇 경비(經費)로 쓰는 잡물(雜物)의 출납은 반드시 정원(政院)을 거쳐 해조(該曹)·해사(該司)에 계하(啓下)하여 수입을 헤아려 지출해야만 일이 올바르게 되고 낭비가 지나친 폐단이 없을 것이므로, 선왕 때에 대간이 감결(甘結)379)을 그르게 여겨서 일체 승전(承傳)을 받들 것을 계청(啓請)하여 윤허를 받았 습니다. 이제 사옹원 설리(司饗院薛里)380)가 중국 사신의 연향(宴享) 때의 별선(別膳)에 쓰는 잡물을 정원에 고하지 않고 몰래 사사로이 아뢴 것은 지극히 놀라우므로 해조에 물었더니 예전에는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등록(騰</p>	<p>○臺諫啓曰：“凡經費雜物出納，必由政院啓下，該曹該司量入爲出，然後事得其正，而無橫費猥濫之弊。故先王朝，臺諫以甘結爲非，一切奉承傳事，啓請蒙允。今者司饗院薛里，天使宴享時別膳所用雜物，不告政院，隱然私啓，至爲駭愕，問諸該曹，則古無此例。以膳錄，憑考啓下單子，清蜜所</p>

	<p>錄)에서 계하단자(啓下單子)를 빙고(憑考)하니, 청밀(淸蜜)은 쓰는 것이 지극히 적는데 계청은 30두(斗)나 되고 표고(藁古)는 탕수(湯水)에 쓸 뿐인데 5석(碩)이나 되고 다른 물건도 이와 비슷하며 혹 등록에 없는 물건도 지나친 수를 계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공비(公費)에 핑계대어 훔쳐 쓸 생각을 하였는데 정적(情迹)이 나타난 것이 지극히 간교하니, 추고하여 엄중히 다스리소서. 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것이 정원을 거치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도 곧 아뢰어 바로잡지 아니해서 승전을 받들지 않고 감결을 받도록 했으니 또한 매우 그릅니다. 색승지(色承旨)·도승지(都承旨)를 추고하소서. 이번에 쓰이는 잡물은 해사에 내려 적당한 수를 마련하여 낭비가 없게 하여 간사하고 외람한 것을 막으소서.”</p> <p>하니, 답하기를, “중국 사신의 별선에 쓸 잡물의 수량은 전례와 같고 정원에 고하지 않는 것도 전례라 하므로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였으나 감히 수량을 줄이지 못하였다. 남아 있는 단자를 보고서는 줄이려고 하였으나 마침 오늘 습의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하였다. 아뢴 뜻이 지극히 마땅하므로 해사를 시켜 적당한 수를 마련하게 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겠다. 설리·승지 등은 추고할 것 없다.”</p> <p>하였다.</p>	<p>用至小，而啓請至於三十斗，藁古只用於湯水，而至於五碩，他物稱是，而或有謄錄所無之物，亦濫數啓請。托於公費，以爲盜用之計，情迹現著，極爲奸巧，請推考重治。 政院在出納之地，既知其不由政院，而不卽啓正，不奉承傳而奉甘結，亦甚非矣。 色承旨、都承旨請推。 今此所用雜物，請下該司，量數磨鍊，使無橫費，以杜奸濫。” 答曰：“天使時別謄雜物數，是前例；不告政院，亦是前例云，故以爲過多，而不敢減數。 及見遺在單子，欲減下之，而適今日習儀，故未及爲之。 啓意至當，故令該司量數磨鍊事如啓。 薛里、承旨等，不須推之。”</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24일(병진) 3번째기사</p>	<p>정원이 예조(禮曹)·연접 도감(延接都監)의 뜻으로 아뢰기를, “두목지휘(頭目指揮) 추맹신(鄒孟臣)이 은 4전(錢)을 통사(通事)에게 주어 산사슴과 산 노루를 사 오게 하였으므로 【장차 사제(賜祭)에 쓸 것이다.】 감히 아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해사(該司)와 삼공(三公)이 의논하여 조치하라.”</p> <p>하였다.</p>	<p>○政院以禮曹、延接都監意啓曰：“頭目指揮鄒孟臣，以銀四錢給通事，令買得生鹿生獐而來，【將爲賜祭之用也。】敢啓。” 傳曰：“該司三公，議而處之。”</p>
<p>인종 2권, 1년(1545)</p>	<p>정원이 아뢰기를,</p>	<p>○政院啓曰：“天使當於二十八日入來，</p>

<p>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24일(병진) 5번째기사 정원이 주다례를 멈출 것을 아뢰다</p>	<p>“중국 사신이 28일에 들어올 것인데, 오늘 습의(習儀)에 상께서 종일 노동하시고 또 내일은 주다례(晝茶禮)를 지내실 것입니다. 사신을 접대하는 절목(節目)이 많으므로 이제부터 각별히 조보(調保)하셔야 하고 각사(各司)가 할 일도 많이 있으니, 내일의 주다례는 멈추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의 주다례에 내가 무슨 노고가 있겠는가. 중국 사신이 오면 이 예를 오랫동안 폐지할 것이므로 틈을 타서 하려고 한 것이다. 다만 담당 장례관(掌禮官)이 어찌 그 예를 행하지 않겠는가. 과연 아된 바와 같으니 멈추도록 하라.” 하였다.</p>	<p>而今日習儀，上終日勞動，又明日行晝茶禮。天使接待節目爲多，繼自今各別調保，各司所爲之事，亦多有之，明日晝茶禮，請停何如？”傳曰：“明日晝茶禮，予何勞焉？天使來則久廢此禮，故欲乘間爲之耳。但該掌，豈無所爲？果如所啓，停行可也。”</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25일(정사) 1번째기사 정원에 제물에 관해 전교하다</p>	<p>정원에 전교하기를, “산 사슴과 산 노루는 이제 구할 수 없으니, 사옹원에 살아 있는 것이 있으면 주고, 없거든 경기 감사를 시켜 편의한 대로 바치게 하라. 은전(銀錢)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두목(頭目)에게 말하라.”【이것은 영의정 윤인경(尹仁鏡)과 우의정 성세창(成世昌)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하였는데, 정원이 아뢰기를, “사옹원에 산 노루는 있으나 사슴은 없습니다. 또 각 고을에 이미 이 제사를 위하여 노루와 사슴을 분정(分定)하였으나 다 죽고 산 것이 없다 합니다. 사제 낭관(賜祭郎官)이 사사로이 말하기를 ‘개성부(開城府)의 경덕궁(慶德宮)384) 에서 기르는 산 노루가 있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져다가 쓰라.” 하였다.</p>	<p>○丁巳/傳于政院曰：“生獐、生鹿，今不可得，若於司饗院有新腥者，給之，若無則令京畿監司，隨便進供。銀錢不可捧之意，言于頭目。”【此領議政尹仁鏡、右議政成世昌之議也。】政院啓曰：“司饗院有生獐，而鹿則無之。且於各官，已爲此祭，分定獐鹿，而皆死無生者云。賜祭郎官私言曰：‘開城府慶德宮，有畜養生獐。’云。”傳曰：“取而用之。”</p>
<p>인종 2권, 1년(1545)</p>	<p>유관 등이 다시 아뢰기를,</p>	<p>灌等再啓曰：“承聞傳教，孰不感激？</p>

<p>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27일(기미) 3번째기사</p>	<p>“전교를 듣고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상께서 이미 권제를 따르셨다 하는데 권제를 따르신 지 오래 되어도 상의 옥체가 날로 점점 쇠약하여 가시니, 더욱 미안합니다. 온갖 약과 방문이 육미(肉味)보다 좋은 것은 없으니 쾌히 온 나라 신민의 희망을 따르소서.”</p>	<p>但自上以爲既從權制，則從權久矣，而上體日漸衰弱，尤爲未安。百藥千方，不如肉味之良，請快從一國臣民之望。”</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1일(임술) 2번째기사 정원이 중국 사신의 요구를 아뢰다</p>	<p>정원이 영접 도감(迎接都監)의 뜻으로 아뢰기를, “상사가 약을 달이는 은기(銀器)를 들여오라고 재촉하므로 우리 나라는 은이 나는 곳이 아니므로 혹 약을 달일 때에도 늘 돌솥을 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연향(燕饗)에 쓰는 것이 다 은기인데 과연 바칠 수 없느냐고 하니,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약을 달이는 모든 기구를 연향에 쓰는 은기로 적당한 수를 주어 노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p>	<p>○政院以迎接都監意啓曰：“上使促入湯藥銀器，答以‘弊邦非產銀之地，或至湯藥，常用石鼎’，則曰：‘此處燕饗所用皆銀器，果未可納乎？’云，何以對之？”傳曰：“湯藥凡具，以燕饗所用銀器，量數給之，勿使至於怒也。”</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1일(임술) 3번째기사 연향하는 일에 대해 전교하다</p>	<p>전교하였다. “연향하는 곳에서 반드시 금은기(金銀器)를 상용(常用)하는 것은 고례(古例)이다. 다만 후사(後使)가 더욱 탐욕하다 하니, 이 뒤로는 주기(酒器)로 써야 할 것만을 대강 마련하고 금은기를 많이 내지 말라. 이 뜻을 해조(該曹)에 말하라.” 사신은 논한다. 익일연(翌日宴) 때에 상사가 통사(通事)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마련한 금은이 다 내게 주는 물건인가? 전에도 이러한 예가 있었는가?’ 한 것을 도승지 이명규가 사사로이 듣고서 승전색(承傳色)을 통하여 그 연유를 은밀히 아뢰게 하였다. 상께서는 반드시 ‘국용(國用)은 모두가 백성의 힘에서 나온 것이며, 은이라는 물건은 또한 중국에서 금하는 것이다. 번왕(藩王)이 조사(詔使)를 대우하는 예로 말하면 본디 정성을 쓰지 않는 것이 없겠으나, 우리 나라의 토산은 한정이 있고 백성의 힘이 장차 다하려 하니 어찌 하겠는</p>	<p>○傳曰：“燕饗處，必以金銀器爲常用，古矣。但聞後天使，尤爲貪黷云，今後則只以酒器可用者，爲之草設，勿多出金銀器。此意言于該曹。” 史臣曰：“翌日宴，上使謂通事曰：‘此設金銀，皆是惠我之物乎？前有此等例’云。都承旨李名珪私聞之，因承傳色，微達其由。上必以爲國用，無非民力，銀之爲物，亦所以有禁於中國者也。以藩王待詔使之禮言之，則固無所不用其誠，而其如我國之土產有限，民力將竭何？裁自聖慮，斷有是</p>

	가.'라고 생각하시어 성려(聖慮)에서 결단하여 이 명이 있었으니, 또한 모두가 백성을 넉넉하게 하고 나라를 넉넉하게 하려는 뜻이다.	命, 亦無非足民裕國之意也。”】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2일(계해) 5번째기사 제물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제물(祭物) 중에 쓰지 않게 되어서 새끼 노루가 아직 살아 있다 하니, 【사신이 사제하려고 은(銀)으로 개성부(開城府)에서 사 왔으나 마침 쓰지 않았으므로 오래도록 살 수 있었다.】 이것은 산으로 돌려보내어 다시 살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빨리 놓아 주라.”	○傳曰: “祭物之餘, 有兒獐不至於用, 而今猶得生者云, 【天使欲私祭, 以銀兩貿來於開城府, 而適不用, 故久能生存.】 此則還于山林, 以開再生之路, 得無可乎? 其亟放之.”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3일(갑자) 1번째기사 상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위로연을 거행하다	상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위연(慰宴)을 거행하였다. 상이 중문(中門) 안에 이르니, 양사(兩使)가 처마 밖에서 나와 맞이하여, 서로 사양하며 들어갔다. 읍(揖)이 끝나고서, 상이 고하기를, “부왕이 살았을 때에 조정(397)의 두터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또 특별히 두 대인(大人)을 차출하여 증시(贈諡)·사제(賜祭)하고 아울러 부물(賻物)도 보내시니, 지하에 있는 부왕의 영(靈)이 아마도 알고 감동할 것입니다. 황제의 은혜가 망극하여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양사가 답하기를, “황상(皇上)께서 부음(訃音)을 듣고서는 놀랍고 슬퍼하여 특별히 우리를 보내어 조제(弔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귀국에 와서 폐해를 매우 많이 끼쳤는데도 도리어 전하의 정사(情賜)를 특별히 거둬 받게 되었으니, 어떻게 감사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고하기를, “두 대인이 특별히 사제(私祭)를 베푸셨으므로 더욱이 놀랍고 감사함을 견딜 수 없으니 예배(禮拜)하겠습니다.” 하니, 양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 왔으니 대행 전하(大行殿下)를 위하여 친히 술 한 잔을 올리는 것이 의리에 매우 합당한데, 어찌 감히 절을 받겠습니까?”	○甲子/上幸太平館行慰宴。 上至中門內, 兩使自簷外出迎, 相讓而入。揖罷, 上告曰: “父王在世時, 多受朝廷厚眷, 今又特差兩大人, 贈諡賜祭, 兼致賻物, 父王地下之靈, 想應知感。皇恩罔極, 說不能盡。” 兩使答曰: “皇上聞訃驚悼, 特遣俺等弔祭之。俺等到貴國, 十分多弊, 而反承殿下之情賜, 殊至於累累重重, 何謝如之?” 上又告曰: “兩大人別設私祭, 尤不勝驚謝, 請行禮拜。” 兩使曰: “俺等到此, 爲大行殿下, 親奠一酌, 於義甚合, 何敢受拜禮?” 仍舉手曰: “不敢不敢。” 上再請曰: “欽差大人動勞尊體, 親祭亡父, 幽明共受其賜, 不可不拜。” 兩使曰: “然則摠拜可也。” 上拜, 兩使亦拜。 上又告曰: “昨日大禮, 【即賜諡, 賜祭等禮.】 陋邦之人, 不閑禮

	<p>하고, 손을 들며 말하기를,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다시 청하기를 “흠차 대인(欽差大人)398) 이 존체(尊體)를 노동하여 친히 망부(亡父)를 제사 하시어 유명(幽明)이 함께 그 은혜를 받았으니, 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양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모두 절하면 되겠습니까.” 하여, 상이 절하고 양사도 절하였다. 상이 또 고하기를, “어제 대례(大禮)【곧 사시·사제 등의 예이다.】 때에 누방(陋邦)의 사람이 예모(禮貌)에 익숙하지 못하여 반드시 착오가 있었을 것이므로 매우 황공합니다.” 하니, 양사가 말하기를, “군신(君臣)이 공경하고 예의(禮義)가 조화되었으니 집사(執事)할 때에 어찌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이어 사례하기를, “오늘 아침에 또 승지를 보내어 물건을 많이 주셨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더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다 하찮은 물건인데 구태여 사례하십니까. 더욱 미안합니다.” 하고, 각각 자리에 앉아 주례(酒禮)를 행하였다. 상이 두목(頭目)에게 술을 내리겠다고 청하니, 양사가 말리며 말하기를, “전에 잔을 내리신 것【곧 하마연(下馬宴) 때의 일이다.】도 예(禮)가 이미 충분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다시 청하기를, “두목들은 대인을 모시고 멀리 왔고, 또 제사 때에 힘든 일을 하였으니【두목</p>	<p>貌, 必有所錯, 心甚惶汗。” 兩使曰: “君臣恪恭, 禮義鏗鏘, 執事之際, 有何或愆?” 仍謝曰: “今朝又遣承旨, 多與物件, 實增愧感。” 上曰: “俱是薄物, 敢爾謝耶? 尤爲未安。” 各就坐行酒禮。 上請賜頭目酒, 兩使止之曰: “前蒙賜爵, 【卽下馬宴之日。】禮已足矣, 不可再煩。” 上更請曰: “頭目等陪大人遠來, 且服勞於祭祀之時, 【頭目等自辦祭物, 至於賜祭之日, 亦皆從事。】寧可不慰?” 俄而頭目十餘人入跪, 上舉袖致謝曰: “近有辦物助祭之事, 不其勞乎? 多謝。” 頭目等咸叩頭飲畢而退。 兩使請止酒, 上曰: “昨亦不得侍話, 今請從容坐待禮完。” 兩使曰: “連日設宴, 非但俺等大困, 殿下亦必勞傷。 況情雖無窮, 禮不可無節。” 因固辭, 上從之, 相讓而出, 入御室。</p>
--	--	---

	<p>들이 스스로 제물을 장만하고 사제(賜祭)하던 날에도 다 종사하였다.】 어찌 위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잠시 후에 두목 10여 인이 들어와 꿇어앉으니, 상이 소매를 올려 치사(致謝)하기를,</p> <p>“요즈음 물건을 장만하여 제사를 도운 일이 있었는데, 수고롭지는 않았는가? 매우 감사하다.”</p> <p>하였다. 두목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술을 마시고 나서 물러갔다. 양사가 술을 그만 하기를 청하니, 상이 말하기를,</p> <p>“어제도 모시고 이야기하지 못하였으니, 오늘은 조용히 앉아서 대접하여 예(禮)를 다하겠습니다.”</p> <p>하였다. 양사가 말하기를,</p> <p>“날마다 잇달아 잔치를 베푸시니, 우리가 매우 피곤할 뿐 아니라 전하께서도 반드시 노상(勞傷)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정은 그지없더라도 예절에는 절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p> <p>하고는 곧이 사양하므로 상이 그대로 따라서, 서로 사양하며 나와 어실(御室)로 들어갔다.</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4일(을축) 1번째기사</p> <p>천신에 쓸 동산의 과일 일을 잘 돌보도록 전교하다</p>	<p>동산(東山)【곧 후원(後苑)이다.】의 여러 가지 과일을 장차 익기를 기다려서 천신(薦新)399) 하려 하는데, 오늘의 잔치【중국 사신을 위하여 경회루(慶會樓)에 청하여 잔치하였다.】 때에 하인이 어지러이 드나들어 혹 밟아 다치고 부러질 것이 염려되니, 병조와 의금부를 시켜 검찰하라.”</p>	<p>○乙丑/(得) [傳] 曰: “東山【即後苑。】雜果, 將欲待熟而薦新, 今日之宴, 【爲天使請宴慶會樓。】恐下人紛亂出入, 或致踏破傷折, 其令兵曹、義禁府, 檢察之。”</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p>	<p>상사(上使)가 사사로이 물건을 18~19건(件)이나 바치고【금단(錦段)·사라(紗羅)·견초(絹綃) 등의 폐백이다.】 이어서 통사에게 말하기를,</p>	<p>○上使有私自進上之物, 多至十八九件, 【如錦段、紗羅、絹綃等幣。】仍</p>

<p>24년) 5월 4일(을축) 2번째기사 상사가 사사로이 물건을 바치다</p>	<p>“세자(世子) 【왕을 봉하는 조사(詔使)가 미처 오지 않았으므로 세자라고 불렀다.】 께서 장차 무엇으로 나에게 보답할 것입니까?” 하고는 곧 두목(頭目)들을 시켜 궐하(闕下)에 가져다가 바치게 하니, 상이 명하여 받아들이고 드디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바친 물건을 결코 받기만 할 수 없으니, 으레 우리 나라에서 얻기 쉬운 물건으로 회봉(回奉)해야 하겠다마는, 그 수량을 열 곱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도 바라는 바에 차지 않아서 그가 더 노여워할 것이다. 이 뜻을 해관(該官)에게 말하라. 또 여기에 온 두목을 친히 볼 수 없으니, 날날이 술을 내려서 보낼 것인가? 전의 일을 살펴 보면 또한 관례가 있을 듯하다.” 하였다. 우승지 송기수가 회계하기를, “이는 양사의 두목이 다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상사의 두목만이 물건을 가져와 바친 것일 뿐인데 반드시 바치는 물건을 가져온 자이기 때문에 ‘네가 가상하다.’ 하여 친히 나아가 상주신 것을 부사(副使)가 듣는다면, 아마 전하께서 재리(財利)를 앞세우고 사교(私交)를 기뻐하여 특별한 대우를 하신 것으로 여길 듯합니다. 더구나 조사(詔使)를 위하여 바야흐로 큰 잔치를 베풀려 하는데 오히려 그 하인을 먼저 접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것이 어떠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사실 그와 같이 말은 하였으나 돌이켜 생각하니, 아뢴 뜻이 지극히 마땅하다.” 하였다,</p>	<p>宣言於通事等曰： “世子【封王詔使，猶未及來，故以世子稱之。】將何以報我爲？” 卽令頭目輩，持進于闕下，上命納之，遂傳于政院曰：“天使進獻之物，決不可虛受，例當以我國易得之物回奉，但非十倍其數，則恐未滿所欲，而彼徒增怒耳。此意言于該官。且來此頭目，未可親見，一一賜酒送乎？考前事，亦似有例。” 右承旨宋麒壽回啓曰：“此非兩使頭目皆來，只其上使頭目，持來進獻物者耳，若必以領來進獻物者，謂汝可嘉，親臨賞與，使副使聞之，則抑恐以殿下，急於財利，喜其私交，而有以異也。況爲詔使設大宴，方有所待，而尙可以先接其下人乎？臣不敢知此何等禮？” 傳曰：“予固云云，反而思之，則啓意至當。”</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4일(을축) 4번째기사</p>	<p>경회루(慶會樓)에 청하여 잔치하였다. 양사(兩使)가 이르니, 상이 문 【경회루(慶會樓) 남문(南門).】 밖에 나가서 서로 사양하며 들어와, 경회루 아래에 이르러 각각 읍(揖)하고 자리에 앉아 다례(茶禮)를 행하고, 다례가 끝나고서 드디어 행주(行酒)하였다. 상이 부사에게 고하기를,</p>	<p>○請宴于慶會樓，兩天使至，上出門外，【慶會南門。】相讓而入，至樓下，各揖就坐，行茶禮畢，遂行酒。上告副使曰：“今聞下人，誤奉陽繖，以致</p>

경회루에 청하여 잔치하다

“이제 듣건대, 하인이 양산을 잘못 받들어서 대인(大人)의 모자를 떨어지게 하였다 하니, 놀랍고 두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해관(該官)과 하인은 마땅히 처벌하겠으나, 매우 황공합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매우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존교(尊敎)는 그러하시나, 잘못된 것이 매우 크므로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부사가 굳이 청하기를,

“일이 이처럼 관계없는데도 구태여 사신의 간청을 거절하십니까. 역시 황공합니다.”

하므로, 상이 마지못하여 따르겠다고 답하였다. 양사가 상이 행주하는 것을 보고 함께 거들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천자의 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어진 전하의 용모를 뵈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근일 잇달아 큰 잔치를 베풀고 또 상사(賞賜)를 많이 내려 주시니, 어진 왕의 은혜가 뼈에 사무칩니다. 또, 귀국의 예모(禮貌)와 문장(文章)이 환히 빛나서 볼 만하고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직무를 근심하여 힘쓰니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사례하기를,

“소방(小邦) 사람들은 대체(大體)를 모르므로 반드시 소홀한 것이 많았을 것인데, 도리어 존교를 받으니,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도승지 이명규에게 명하여 각각 예연 증물 단자(例宴贈物單子)를 바치게 하니, 상사는 매우 감사하다고 말하고, 부사는 말하기를,

“너무 많아서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전일에 내리신 것도 이미 넉넉하였습니

大人落帽，不勝驚恐。該官與下人，則當罪之，然惶恐惶恐。”副使曰：“千萬稠人之中，不能容其手足而致然也，豈其有情？請殿下寬赦。”上曰：“尊教則然矣，而所失甚大，不可不罪。”副使固請曰：“事之不關如此，而猶敢拒使臣之鄙懇耶？亦惶恐。”上不得已答以從之。兩使見上行酒，相與贊曰：“俺等不是天子之命，則那得承接賢殿下之容？千萬多幸。近日連設大宴，又多賞賜，賢王之惠，感銘于骨。且貴國禮貌文章，煥然可觀，大小臣僚，恪謹職事，深用嘉之。”上謝曰：“小邦之人，不知大體，必多疎慢，反承尊教，不敢當不敢當。”仍命都承旨李名珪，各呈例宴贈物單子，上使曰：“多謝。”副使則曰：“太多，不敢受。前日有賜，亦已足矣。”【前有屢贈，亦皆不受，所受者，唯筆硯書畫。】

	<p>다.” 하였다. 【전에 여러번 준 것도 다 받지 않았고, 받은 것은 붓·벼루·글씨·그림 뿐이었다.】</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5일(병인) 1번째기사 상이 부사를 위한 전 별연을 베풀다</p>	<p>상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부사(副使)를 위한 전별연(餞別宴)과 상마연(上馬宴)402) 을 거행하였다. 【 부사가 먼저 바삐 돌아가므로 상마연에 미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날 아울러 거행하였다.】 부사가 이르니, 상이 관(館)의 대문 밖에 나가 맞이하였다. 서로 사양하며 들어와 대청에 이르러 각각 자리에 앉았다. 다례(茶禮)가 끝나고서, 상이 행주(行酒)할 때에 고하기를, “대인(大人)의 문장(文章)과 예법(禮法)을 우러러 마지않습니다. 여러번 머물기를 권하여도, 황제의 명 때문에 외방(外方)에 오래 지체할 수 없다고 사양하시므로, 감히 굳이 청하지 못합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미천한 몸이 귀국에 이르러 성례(盛禮)를 볼 수 있었던 것만도 만족한데, 또 어진 전하께서 여러번 큰 잔치를 베풀고 혹 내신(內臣)을 보내어 환대하는 뜻을 많이 보이셨으니, 감사하고 황공하기가 아울러 지극합니다.” 하였다. 상이 두목(頭目)에게 술을 내리겠다고 청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아랫사람들은 다 평상복을 입었으므로 감히 올라올 수 없는 형세이고, 또 전일에 술을 많이 내려 주셨으니 오늘 다시 내리실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다시 청하기를, “두목 등의 관원은 다 대인을 모시고 멀리 왔고 이제 또 작별에 임하였으니, 술 한 잔을 다시 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부사가 명에 따르고는, 곧 일어서서 사음(謝揖)하고 이어서 갈길이 바쁘다고 술을 그만두기를 청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오늘의 잔치는 오로지 대인을 전별하기 위하여 베풀 것이니, 술 한 잔을 더 하소서. 고자(孤子)의 간청입니다.”</p>	<p>○丙寅/上幸慕華館， 行副天使餞宴兼上馬宴。【副使先急回程，無暇及於上馬宴，故此日兼行。】副使至，上出館之大門外迎之。相讓而入，抵大廳，各就坐。茶禮畢，上行酒時告曰：“大人文章禮法，景仰無已。再三勸留，而以帝命不可久滯於外辭之，故不敢固請耳。”副使曰：“微生到貴國，得見盛禮足矣，又承賢殿下屢設大宴，或遣內臣，多示款待之意，感懼兼極。”上請賜頭目酒，使曰：“下人皆着褻衣，勢不敢上來，且於前日，多蒙賜酒，不必今日更行之。”上再請曰：“頭目等官，皆是陪大人遠來，今且臨別，不可不更導一杯。”使乃依命，即起立謝揖，仍以行忙，請止酒。上曰：“今日之宴，專爲別大人設也，願加一杯。惟孤子是懇。”(遂)[遂]令都承旨李名珪，[呈]別贈單子曰：“行驢之禮，古矣。前此朝廷大人之來，亦無有不受其薄贈去者，請勿却。”使曰：“凡入之心，有萬不同，辭受取予，亦自有</p>

	<p>하였다. 드디어 도승지 이명규를 시켜 별증 단자(別贈單子)를 바치게 하고 말하기를, “물품으로 전별하는 예(禮)는 고례(古例)입니다. 이에 앞서 조정의 대인이 왔을 때에도 하찮은 선물이나마 받지 않고 간 이가 없으니 물리치지 마소서.”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무릇 사람의 마음은 전혀 같지 않은 데가 있고, 사양하고 받아들이고 갖고 주는 데에도 절로 도리가 있으니, 어찌 반드시 전례를 끌어내고 상례를 따라서 굳이 의리가 아닌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다시 청하기를, “변변치 못한 물건은 다만 고자(孤子)의 하찮은 정성을 나타내려는 것일 뿐인데, 대인이 일체 받지 않는 것은 아마도 예의(禮儀)가 물건에 미치지 못하는 탓일 것이니, 도리어 더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소생(小生)은 당초에, 차라리 전하에게 죄를 지을지언정 명예와 절개를 더럽혀서 천자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였으므로 혹 사양하기도 했는데 이제 전하의 분부가 이토록 간절하니, 감히 간략하게 그 한물을 받아 후의에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역시 붓과 벼루 등 약간만을 받아 갔다.】</p>	<p>道， 豈必援例循常， 以強其非義之事乎？” 上更請曰：“不腆物件， 只欲表孤子之微誠耳， 大人一切不受， 想是儀不及物之所致， 反增慙恐。” 答曰：“小生初意， 以爲寧得罪於殿下， 不欲污毀名節， 以辱天子之命， 故有或辭焉， 今承殿下之教丁寧至此， 敢不略從其一二， 以謝厚意？” 【亦只受其筆硯若干去。】</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5일(병인) 3번째기사</p>	<p>대간이 아뢰기를, “부사는 오늘 떠나갔고, 상사가 머무르는 것은 오로지 무역 때문이니, 무역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진상(進上)한 물건 【상사의 일은 어제의 기사에 나타난다.】 도 재촉하여 기한을 정해서 그 값을 정하게 하여, 다음 사신이 오기 전에 떠나갈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황제의 부증(賻贈)과 사신이 바친 물건은 유사(有司)에게 맡겨서 못사람의 의심을 풀어야 하겠습니다. 또 들건대, 어제 진상한 물건을 가져온 두목을 친히 보려 하</p>	<p>○臺諫啓曰：“副使今日發還， 上使之留， 專爲貿易， 貿易之事， 不可少緩。 且進上之物， 【上使事見昨日。】 亦當促令刻期， 以定其價， 後天使未來之前， 使得發還。 皇帝賻贈及使臣所進之物， 當付諸有司， 以快群疑。 且聞昨日， 欲親見進上齋持頭目， 以政院之</p>

	<p>시다가 정원(政院)의 아뢰에 따라 멈추셨다 합니다. 군주의 거동은 작은 것일 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으니 예관(禮官)에게 물어서 정해야 합니다. 누가 전하를 위하여 이런 잘못된 일을 계획하였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환시(宦寺)가 함부로 전례를 끌어대어 전하를 그르친 것일 것이니, 마음이 아픔을 견딜 수 없습니다. 빨리 그 사람을 금부에 내려 추문하라고 명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부증은 흠사(欽賜)한 물건이므로 대비전(大妃殿)에 진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가 짐작하여 처리하겠다. 사신이 바친 물건은 아직 무역할 값을 맞추지 않았고 일도 혼란스러우므로, 곧 처리하지 못하였다. 두목을 보려 한 일은, 등록(謄錄)에 기록되어 있으니 어찌 환시를 가까이하여 그 말을 따랐을 리가 있겠는가.”</p> <p>하였다.</p>	<p>啓, 停之云。 人君舉動雖小, 不可輕易, 當問禮官以定之。 誰爲殿下, 畫此過舉? 此必宦寺, 妄引故例, 以誤殿下, 不勝痛心。 請速命下其人于禁府而推之。” 答曰: “賻贈, 乃欽賜之物, 大妃殿進上, 不可不爲, 予當斟酌處之。 使臣所進之物, 時不市準, 事亦紛擾, 未卽處置耳。 欲見頭目事, 著在謄錄矣, 豈有親宦侍, 以從其言之理乎?”</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8일(기사) 1번째기사</p>	<p>상이 태평관에 거동하여 친히 상마연(上馬宴)을 거행하였다.</p>	<p>○己巳/上幸太平館, 親行上馬宴。</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8일(기사) 2번째기사 우부승지 송세형이 사신이 요구한 물건에 대해 아뢰다</p>	<p>상이 어실(御室)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우부승지 송세형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요구한 물건 【가죽·비단·동은(銅銀)·안마(鞍馬) 및 의류·식기 용품 따위가 이루 셀 수 없이 많았다.】 을 단자(單子)에 써서 친히 가서 바쳤더니, 중국 사신이 그 수량을 가리키며 마음에 매우 부족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이 물건들은 모두 모자라니 도로 가져가도록 하라.’ 하고 물리쳐 받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단자를 들여오라고 명하여 그 물건의 수량을 살피고 나서 송세형에게 전교하기를, “이 증급단자(贈給單子)를 보면 모든 물건 중에 수량을 줄인 것이 혹 많기도</p>	<p>○上入御室方就歇, 右副承旨宋世珩啓曰: “臣以天使求請之物, 【如皮幣、銅銀、鞍馬、服食、器用之類, 不可勝數.】 書諸單子, 親往呈之, 則使指點其數, 心甚少之曰: ‘此物箇箇不足, 還可持去。’, 退而不受, 將何以處之?” 上命入單子, 閱其物數了, 仍傳于世珩曰: “觀此贈給單子, 則凡物有減數者或多, 宜未滿其欲也。 更可加數磨鍊</p>

	<p>하니 마땅히 그 욕심에 차지 않을 것이다. 다시 수량을 더하여 마련하여 주도록 하라. 또, 임시 변통의 말로 사과하여 그의 노여움을 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고, 곧 예조 판서 윤개를 명소(命召)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윤개가 곧 의논하여 아뢰기를,</p> <p>“이제 중국 사신에게 말하기를 ‘조사(詔使)가 여러번 폐방(弊邦)에 오기는 하였으나, 사례감 근시 노공(司禮監近侍老公) 【곽사(郭使)가 사례감 태감(司禮監太監)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은 이전에 온 적이 없었거니와, 고자(孤子)가 비로소 뵈 수 있어 천안(天顏)404) 을 뵈 듯하니, 분부를 받들려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마는, 폐방은 바다 구석에 치우쳐 있어 나라가 작고 백성이 가난하며 토산물도 적으므로, 대인(大人)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나타냈으나 일이 마음과 같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존교(尊敎)를 기다리겠는가. 본토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면 구할 길이 없고 변변치 못한 토산물은 저축된 것이 넉넉하지 못하며 유사(有司)도 점검을 잘못하여 곤한꺼번에 응하지 못하니,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견딜수 없다. 고자(孤子)가 받은 것이 매우 많고 【진상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승지·내시·통사 등도 여러번 존혜(尊惠)를 받았으니, 후의에 매우 감사한다.’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임시로 변통하는 말을 하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기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의논한 것이 바로 내 뜻에 맞는다.”</p> <p>하고, 드디어 송세형을 시켜 다시 단자를 가지고 가서 수량을 더한 것을 보이고 아울러 이 의논대로 말하게 하였더니, 사신이 기뻐하며 말하기를,</p> <p>“귀국에 바야흐로 일이 많으니 나도 어찌 폐단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까. 다만 우리 북경에 들어가면 으레 좌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므로 이렇게 번거롭</p>	<p>以給之。且設爲權辭而致謝焉，毋使增彼之怒則幸矣。” 卽命召禮曹判書尹漑議之，漑乃議啓曰：“今當說于天使曰：‘詔使雖屢臨弊邦，而司禮監近侍老公，【郭使乃司禮監太監故云。】前此不曾來矣。孤子始得拜見，悅拜天顏，其欲承奉之心，寧有紀極？而弊邦僻在海隅，國小民貧，地產亦薄，爲大人竭力表誠，而事不如心。不然則何待尊教？非本土所產之物，得之無由，不腆土產之物，所儲不敷，有司亦失於點檢，未卽一齊答應，不勝愧懼。孤子蒙賜甚多，【有進上物件故云。】承旨、內侍、通事等亦屢蒙尊惠，深謝厚意。如是爲之權辭，則足以慰悅其心。” 傳曰：“所議正合予意。” 遂令世珩，更將單子去，以示其加數，而并以此議道之，則使喜曰：“貴國方多事，俺亦豈不知有弊乎？第以入我皇京，例有左右之求索，故如此煩瀆，而連承一一應惠，尤謝百拜。” 卽以彩段若干贈世珩。 世珩復命， 追啓曰：“天使所贈，臣固知義不可受，而強辭不聽，不得已而受來，至爲惶恐。” 傳曰：“人以情與之，何敢却之？是無傷也。”</p>
--	--	--

	<p>게 하였는데 잇달아 날날이 응하여 주시니 더욱이 감사하여 백배(百拜)합니다.”</p> <p>하고, 곧 채단(彩緞) 약간을 송세형에게 주었다. 송세형이 복명(復命)하고, 뒤이어 아뢰기를,</p> <p>“중국 사신이 주는 것을 신이 의리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 굳이 사양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므로 마지못하여 받아 왔으니, 지극히 황공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사람이 정으로 주는 것을 어찌 굳이 물리치겠는가. 이는 해로울 것이 없다.”</p> <p>하였다.</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10일(신미) 1번째기사 상이 사신의 전별연을 거행하다</p>	<p>상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친히 곽 사신의 전별연(餞別宴)을 거행하였다. 상이 관(館)의 서쪽에 있는 작은 막차(幕次)에 머물러 쉬다가, 사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 곧 대문 밖에 나가 맞이하고, 서로 읍양(揖讓)하며 들어가 대청(大廳)에 이르렀다. 사신이 절하고 사례하기를,</p> <p>“여러 번 상사(賞賜)를 받은 것이 백봉(百朋)406) 뿐이 아니니, 마음에 새겨 느낀 것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p> <p>하니, 상이 답배(答拜)하고 말하기를,</p> <p>“모두가 하치않은 물건인데, 무슨 사례할 것이 있겠습니까.”</p> <p>하고, 각각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신 다음 상이 행주(行酒)하기를 청하니, 사신이 말하기를,</p> <p>“전하께서 노동하실 것이 염려됩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p> <p>“오늘은 전별하는 잔치인데, 감히 술 한 잔으로 정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사신이 명대로 따르고, 이어서 청하기를,</p> <p>“거느렸던 통사 차윤성(車允成)·최세협(崔世協)은 다 그 공로에 보답하지 않</p>	<p>○辛未/上幸慕華館， 親行郭天使餞宴。 上止于館之西小次歇焉， 聞天使至， 卽出大門外迎之， 相與揖讓而入， 至大廳， 使拜而謝曰：“累承賞賜， 不啻百朋， 銘感曷極？” 上答拜曰：“都是薄物， 何謝之有？” 各就坐啜茶畢， 上請行酒， 使曰：“恐殿下勞動。” 上曰：“今日乃離亭之宴， 敢不以一杯， 更達微誠乎？” 使依命， 仍請曰：“所率通事車允成、崔世協， 皆不可不報其功勞， 李和宗亦素所相善， 而功則倍之， 故欲令陞職。 幸殿下勿以爲煩， 曲從鄙懇。” 上曰：“爵人於朝， 與衆共之， 古人所云， 必有以也。 我豈可獨擅？ 雖命之， 恐防啓也。” 使曰：“賞罰， 人君所制， 夫誰敢沮之？” 上不得已，</p>

	<p>을 수 없고, 이화종(李和宗)도 본디 서로 친한 사이인데 공로는 훨씬 더하므로, 승직(陞職)시키기를 바랍니다. 번거롭게 여기지 말고 제 간청을 들어 주소서.”</p> <p>하니, 상이 말하기를,</p> <p>“사람을 조정에서 벼슬시키는 것은 못사람과 함께 한다는 옛사람이 한 말은 반드시 그 만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 혼자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명하더라도 방계(防啓)할 듯합니다.”</p> <p>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p> <p>“상벌(賞罰)은 군주가 결단하는 것인데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p> <p>하니, 상이 마지못하여 삼공(三公)에게 수의(收議)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윤인경, 우의정 성세창이 의논하여 아뢰기를,</p> <p>“중국 사신의 청은 으레 따랐으니 이미 따르겠다고 하였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차운성·최세협은 다만 본사(本司)【사역원(司譯院).】의 준직(準職)을 주어야 하겠고 이화종은 선왕 때부터 중국에서 공을 세운 것이 많고 술업(術業)에도 정통하다 하니, 이제 가자(加資)하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그 의논대로 시행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p> <p>“전에 장 사신(張使臣)【곧 먼저 간 행차의 사신 장승헌(張承憲)이다.】이 떠나던 날에도 박청(朴菁)을 가자할 것을 간절히 말하였는데, 내가 내내 잊지 않고 있다. 그를 증질(增秩)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잠시 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곧 개어 햇빛이 내려 하자, 중국 사신이 갈길이 바쁘다고 술을 그만두기를 청하여 두세 번에 이르니, 상이 굳이 권하기 어려워서 마지못하여 따랐다. 예(禮)가 파하고 나서 상이 고하기를,</p> <p>“성천자(聖天子)의 총명(寵命)이 아니면 어찌 사례감 노공(司禮監老公)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황제의 은혜가 그지없음에 더욱 감격합니다.”</p> <p>하니, 사신이 말하기를,</p>	<p>命收議于三公。 領議政尹仁鏡、右議政成世昌同議啓曰：“天使之請， 例必從之， 既曰從之， 則又不可改也。 車允成、崔世協， 只可以本司【司譯院】準職授之， 李和宗則自先朝， 多有所建功於中原， 而術業亦云精通， 今雖加資， 似或無妨。” 上依施其議， 仍傳曰：“前者張天使發還之日，【即先運天使張承憲。】亦以朴菁加資事， 懃懇言之， 予嘗不忘于懷矣。 并此增秩可也。” 俄而陰雨乍晴， 日色將開， 天使以行忙， 請止酒， 至于再三， 上難於強勸， 亦不得已而從之。 禮既罷， 上告曰：“不是聖天子之寵命， 那能得見司禮監老公？ 益感皇恩之罔極。” 使曰：“多謝” 遂與揖讓而出， 至大門外， 上又告曰：“今日別後， 再逢無由， 殊不堪悠悠悵悵。 酷暑長途， 好歸去無恙。” 使曰：“不揆庸鄙， 言及於此， 尤謝。” 遂辭去。</p>
--	---	---

	<p>“매우 감사합니다.” 하고, 드디어 서로 음양하며 나갔다. 대문 밖에 이르러, 상이 또 고하기를, “오늘 헤어진 뒤에는 다시 만날 길이 없으니, 유달리 서운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몹시 더운 먼 길에 탈 없이 잘 돌아가십시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저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더욱이 감사합니다.” 하고, 드디어 작별하고 떠났다.</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11일(임신) 1번째기사 상이 모화관에 거둥하 여 중국 사신을 맞이 하다</p>	<p>상이 모화관에 거둥하였다가, 중국 사신이 이르니 【사례감 태감(司禮監太監) 장봉(張奉)·내관감 태감(內官監太監) 오유(吳猷)가 왕을 봉하는 조명(詔命) 때문에 사명을 받들고 왔다.】 상이 먼저 환궁하여 근정전(勤政殿)의 서계(西階) 아래에 있는 작은 악차(幄次)에 머물러 기다렸다. 중국 사신이 대궐에 들어올 때에 용정(龍亭) 【용정 안에 조칙(詔勅)이 안치되었다.】 이 전도(前導)하였는데, 상이 서계 아래에 있는 지영위(祇迎位)에 나가 서서 국궁(鞠躬)하였다. 중국 사신이 전상(殿上)에 올라와 바야흐로 반조(頒詔) 【조서(詔書)는 다음과 같다.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조(詔)한다. 짐(朕)은 하늘의 명명(明命)을 받들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서정(庶政)에 하는 것은 반드시 모두 구장(舊章)에 따라, 봉작(封爵)을 내리는 법에 있어서도 해내(海內)·해외(海外)의 차이를 둔 적이 없다. 죽은 조선 국왕 성휘(姓諱)는 전에 세작(世爵)을 받아 동방을 번수(藩守)하여 조공을 성실히 닦아 온 지 3기(紀)인데, 요즈음 배신(陪臣)이 부음(訃音)을 고하고 예부(禮部)가 습봉(襲封)을 청하였다. 그래서 작토(爵土)는 속한 바가 있어야 하므로, 이제 왕의 아들 휘(諱)를 조선 국왕으로 봉하여 뒤이어 국정(國政)을 맡게 한다. 본국(本國)의 모든 신민은 교령(教令)을 받들어 왕을 도와 자신을 닦고 행실을 삼가서 우리 왕법(王法)을 따라 강토(疆土)를 화평하게 하여 능히 선대의 유업(遺業)을 이으면, 태평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조시(詔示)하여 모두 알게 한다.”】 할 때에</p>	<p>○壬申/上幸慕華館， 天使至，【司禮監太監張奉、內官監太監吳猷，以封王詔命奉使來。】 上先還宮，止于勤政殿西階下小幄次候之。 天使入闕，龍亭前導，【有詔勅置于龍亭中。】 上出立西階下祇迎位鞠躬。 天使上殿，方頒詔，【“奉天承運皇帝詔曰： 朕奉天明命，主宰寰宇，凡推行乎庶政，必卒循乎舊章，其於錫封之典，未嘗以海內外而有間焉。 故朝鮮國王姓諱，往膺世爵，藩守東方，職貢各修，粵逾三紀，邇者陪臣告訃， 禮部以襲(對) [封] 請。 念茲爵土， 宜有攸屬， 今封王之世子諱，爲朝鮮國王，嗣理國政。 本國大小臣民， 其悉奉教令以佐王， 修身謹行， 遵我王度， 輯寧疆境， 克紹先緒， 庶共享太平之休。 故茲詔示， 俾咸知悉。”】 上率百官奉詔。 禮畢， 還入幄</p>

	<p>상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봉조(奉詔)하였다. 예가 끝나고서 도로 악차에 들어가 중국 사신이 물러나와 동계(東階) 위에 서기를 기다렸다가, 상이 서계로 해서 올라가 서로 읍양(揖讓)하며 전(殿)의 북관으로 들어갔다. 상이 고하기를,</p> <p>“조정이 소방(小邦)을 우대하여 부왕이 살아 계실 때에도 은혜를 받은 것이 많았는데, 이제 홍서(薨逝)하셨어도 사신을 보내어 조제(弔祭)하고 또 고자(孤子)의 몸에 특별히 책봉하여 고명(誥命)하시니, 황제의 은혜가 거듭 많아 애감(哀感)이 그지없습니다.”</p> <p>하니, 양사(兩使)가 말하기를,</p> <p>“조정에서 늘 동방에 어진 임금이 있다 하였는데, 갑자기 홍서를 당하여 부음을 듣고 놀라움과 슬픔이 여느 일보다 훨씬 더하여 특별히 우리를 보내서 왔습니다.”</p> <p>하였다. 다례(茶禮)를 거행하고 나서 양사가 사관(舍館)에 물러가 쉬겠다고 청하자 상이 머무르기를 권했으나 되지 않아서 말하기를,</p> <p>“대인(大人)이 먼저 가시면 고자가 뒤따라 가서 다시 만나겠습니다.”</p> <p>하니, 부사(副使)가 말하기를,</p> <p>“옥체가 노고를 더하실까 염려됩니다.”</p> <p>하고, 정사(正使)는 말하기를,</p> <p>“이것이 예입니다.”</p> <p>하고는 드디어 나갔다. 상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동하여 친히 하마연(下馬宴)을 거행하였다. 잔치가 준비되고 나서 상이 어실(御室)에서 나와 소련(小輦)을 타고 관(館)의 중문(中門)으로 내려가니, 양사가 이미 먼저 나와서 기다렸다. 이어서 서로 사양하며 연차(宴次)로 들어가 각각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나서, 상이 먼저 행주(行酒)하고 양사도 각각 차례로 행주하였다. 술 마시기를 마치고 양사가 술을 그만두기를 청하여 말하기를,</p>	<p>次，待天使退立於東階上，上由西階陞進，相與揖讓，而入殿之中央。上告曰：“朝廷優待小邦，父王在世時，曾亦受賜多矣，今既薨逝，猶遣使弔祭。又於孤子之身，特冊封誥命，皇恩稠疊，哀感罔極。”兩使曰：“朝廷常以爲東方有賢王，事忽不諱，聞諱驚悼，有倍尋常，特遣俺等來耳。”既行茶禮了，兩使請退歇于舍館，上勸留不得，乃曰：“幸大人先往，孤子當隨進更作會。”副使曰：“恐玉體添勞。”正使曰：“是禮也。”遂辭出。上幸大平館，親行下馬宴。宴既設，上自御室出乘小輦，下于館之中門，則兩使已先出待之矣。仍與相讓而入于宴次，各就坐啜茶畢，上先行酒，兩使亦各以次行之。飲訖，兩使請止酒曰：“天氣盛熱，殿下大勞，何必至於禮完？此亦足見賢殿下厚意。”上曰：“初會欽差大人于宴席，禮不可輕罷，請再行酒後罷之。”兩使依命，遂固請止之，上不得已辭出，兩使尾之，乃於中門外，相揖而罷。</p>
--	---	---

	<p>“날씨가 몹시 덥고 전하께서 매우 피로하신데, 어찌하여 반드시 예(禮)를 완전히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으로도 어진 전하의 후의를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p> <p>“연석(宴席)에서 흠차 대신(欽差大人)을 처음으로 만났으므로 예를 가벼이 그 만들 수 없으니, 다시 행주한 뒤에 그만두소서.”</p> <p>하였다. 양사가 명을 따르고, 드디어 그만두기를 굳이 청하자, 상이 마지못하여 작별하고 나가니, 양사가 뒤따라 나가 중문 밖에서 서로 읍하고 헤어졌다.</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12일(계유) 2번째기사 상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익일연을 행하다</p>	<p>상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친히 익일연을 거행하였다. 상이 연(輦)에서 내려 걸어서 중문에 가니, 양사(兩使)가 이미 문 밖에 마중나왔다. 서로 읍양(揖讓)하며 들어가 대청에 이르렀는데, 양사가 말하기를,</p> <p>“어제 노동하셨고, 이제 또 영림(榮臨)하시니, 후사(厚賜)에 더욱 감사합니다. 사배(謝拜)하겠습니다.”</p> <p>하니, 상이 그대로 따르고서, 각각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나서 드디어 행주(行酒)하였다. 예(禮)가 아직 끝나기 전에 양사가 말하기를,</p> <p>“어진 전하께서 우리들을 대우하는 데에 참으로 정성과 공경을 아울러 다하시니, 감명이 뼈에 사무쳐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매우 더워서 전하를 모시고 오래 앉아 있기가 미안하니 술을 그만두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p> <p>“어제 서로 조용히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오히려 한스러운 마음을 품었는데, 대신(大人)은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술 한 잔을 더 드십시오.”</p> <p>하였다. 양사가 명을 따르고는 그만두기를 굳이 청하니, 상이 마지못하여 그 청을 따랐다. 잔치가 파하고 나서 드디어 서로 사양하며 나가, 또 중문에서 각각 읍하고 작별하였다.</p>	<p>○上幸太平館，親行翌日宴。上下輦步及中門，則兩使已出迎門外矣。相與揖讓而入，至大廳，兩使曰：“昨既勞動，今又榮臨，益感厚賜。請行謝拜。”上從之，各就坐啜茶畢，遂行酒。禮未完，兩使曰：“賢殿下待俺等，實有誠與敬之兼盡，感銘至骨，不知所云。但日氣極熱，陪殿下久坐未安，請止酒。”上曰：“昨日未得從容相奉，猶用懷恨，大人何遽爲出此言也？請更進一杯。”兩使依命，仍強請止之，上不得已從其請。宴既罷，遂與相讓而出，又於中門外，各揖而辭之。</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13일(갑술) 1번째기사 사신이 당물을 바치다</p>	<p>양사(兩使)【 장봉(張奉)·오유(吳猷).】가 두목(頭目)을 보내어 당물(唐物)을 바쳤다. 사라능단(紗羅綾緞)같은 것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 모두가 많은 값을 요구할 밀천이었다. 상사(上使)가 또 청구하는 갖가지 물건을 단자(單子)에 적어서 낸 것은 물건이 매우 지나치게 많아서, 국용(國用)을 죄다 털더라도 일일이 맞추기가 어려웠다.</p>	<p>○甲戌/兩天使【張奉、吳猷。】遣頭目，進獻唐物。如紗羅綾段，多不可數，而摠是索高價之資也。上使又以求請各種之物，錄諸單子而呈來，則物其太濫，雖傾盡國用，難以一一應之矣。</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16일(정축) 2번째기사 대마도주가 사자를 보내오다</p>	<p>대마도주(對馬島主)가 사자(使者)를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p>	<p>○對馬島主遣使來獻土宜。</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17일(무인) 1번째기사 중국 사신을 경회루에 청해 잔치하다</p>	<p>중국 사신을 경회루(慶會樓)에 청하여 잔치하였다. 중국 사신【 장봉(張奉)·오유(吳猷).】이 이르니, 상이 경회루 남문 아래 섬돌에 나가 양사(兩使)와 함께 서로 사양하며 들어와 읍(揖)하고 나서 각각 자리에 앉아 드디어 행주(行酒)하였다. 양사가 말하기를, “성대한 잔치를 잇달아 베풀어 하치않은 사람을 위로하시니 깊이 감사합니다. 더구나 어원(御苑)의 아름다운 누(樓) 아래에서 특별히 접대하여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경치가 마치 선경(仙境) 같습니다. 이토록 분수에 넘치니 더욱이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사례하기를, “누추한 곳이라 볼 만하지 못하고 또 고자(孤子)는 상(喪)을 당하였으므로 여기에 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인(大人)을 위하여 대강 박례(薄禮)를 갖추었는데 영림(榮臨)을 하시고 게다가 칭찬하시니, 감사함과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p>	<p>○戊寅/請宴天使于慶會樓。天使至，【張奉、吳猷。】上出慶會南門下階，與兩使相讓而入，揖罷各就坐，遂行酒。兩使曰：“連設盛宴，以慰鄙人，足爲銘感。況於御苑瓊樓之下，特賜寵接乎？風光物色，宛若仙境。僭分至此，尤不敢當。”上謝曰：“淺陋之地，不足觀也，且孤子丁憂，不當來斯。今日爲大人，略備薄禮，而得承榮臨，反加稱美焉，不堪感愧之交至。”兩使曰：“通事崔世瀛、洪謙等，十分勤謹，晝夜服勞，厥功非細，不可不報，請賜恩級。”上答曰：“通事等</p>

	<p>하였다. 양사가 말하기를, “통사 최세영(崔世瀛)·홍겸(洪謙) 등은 매우 부지런하고 근신하여 밤낮으로 일에 힘썼으니 그 공로가 작지 않습니다. 보답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은급(恩級)을 내리소서.”</p> <p>하니, 상이 답하기를, “통사들이 대인을 위해 일에 힘쓴 것은 그 직분인데 어찌 노고가 있겠습니까 마는, 존교(尊敎)를 어기기 어려우니 애써 따르겠습니다.”</p> <p>하고, 이어서 도승지 이명규에게 전교하기를, “선후의 중국 사신들이 통사들의 가자(加資)를 청하는 데에 어찌 뜻이 없겠는가. 거절하여 허락하지 않으면 빈객을 존경하는 뜻에 어긋날 듯하니 내일 정사(政事)에 하비(下批) 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어전 통사(御前通事) 이응성(李應星)이 그 연유를 양사에게 전하니, 양사가 기뻐서 사례하기를, “술 한 잔으로 전하에게 치사(致謝)하겠습니다.”</p> <p>하고, 곧 두목(頭目)을 시켜 술을 따르게 하였다. 마시고 나서 상이 사음(謝揖)을 청하니, 양사가 명을 따르고 이어서 술을 그만두기를 청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한나절 모신 것으로는 정의(情意)가 오히려 흠족하지 못하니 고자(孤子)가 다시 술 한 잔을 올리겠습니다.”</p> <p>하니, 양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크게 노동하실 것이 염려됩니다.”</p> <p>하였다. 상이 다시 행주하고 행주가 끝나고서 상이 남문 밖까지 나가 섬돌을 내려서니 양사가 상께 섬돌에 오르기를 청하였다. 상이 굳이 사양하였으나 양사가 오래 서서 굳이 청하므로 상이 마지못하여 섬돌에 오르니, 양사가 또 상이 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 교자를 타겠다고 청하므로 상이 두 번 사양하다가</p>	<p>服事大人，乃其職分，安有其勞，然重違尊敎，勉強從之。”仍傳于都承旨李名珪曰：“先後天使，請賜通事等加資，豈無其意？若拒而不許，恐非尊賓之意，明日政下批可也。”御前通事李應星，傳布厥由於兩使，兩使喜謝曰：“請以一杯，致謝於殿下前。”卽令頭目斟酒。飲訖，上請謝揖，兩使依命，仍請止酒。上曰：“半日奉晤，情猶未洽，孤子請更進一杯。”兩使曰：“恐殿下大勞動。”上遂再行酒畢，上出至南門外下階，兩使請上登階。上固讓，兩使久立強請，上不得已陞階，兩使又請，上入門後乘轎，上辭謝再三，勉從。</p>
--	--	---

	따랐다.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20일(신사) 1번째기사	상이 창경궁(昌慶宮)에 거둥하여 경사전(景思殿)에서 친히 주다례(晝茶禮)를 지내고 이어서 대비전(大妃殿)에 문안하였다.	○辛巳/上幸昌慶宮， 親行晝茶禮于景思殿， 仍問安于大妃殿。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25일(병술) 1번째기사	상이 중국 사신을 근정전에 청하여 잔치하였다.	○丙戌/上請宴天使于勤政殿。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26일(정해) 1번째기사	동부승지(同副承旨) 이문건(李文楗)이 아뢰기를, “신이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러 태평관에 가서 보니, 저자 사람들이 많이 관반(館伴) 앞에 가서 호소하기를 ‘호조(戶曹)가 해달피(海獺皮)를 사서 바치라고 독촉하는데, 이것은 시중(市中)에 늘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바야흐로 찾아도 얻지 못하니, 하늘에 사무치도록 근심되고 답답하다. 쉽게 얻을 만한 다른 물건이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장만할 수 있겠으나,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자한 마음이 있다면, 실로 차마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대체로 해달은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중국 사신에게도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는데 【상사(上使) 장봉(張奉)이 해달피를 절실히 요구하여 우리 나라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라고 답하였으나, 그대로 요구하여 마지않으므로 해사(該司)를 시켜 장만하여 주게 하였는데, 호조는 시중에서 바치도록 독촉하였다.】 어찌하여 반드시 없는 물건을 강요하여 백성을 이토록 극도로 괴롭혀야 하겠습니까. 중국 사신에게 여러 가지로 해명해 말하여 이 일로 우리 백성을 괴롭히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저자 사람들이 몹시 불쌍하니, 왜인(倭人)이 개시(開市)한 뒤에 사도록 하	○丁亥/同副承旨李文楗啓曰：“臣以天使問安往太平館， 見有市人等， 多赴懇於館伴前曰： ‘戶曹促令質納海獺皮， 而此非如市中常存之物， 方求無得， 極天憂憫。 若他可易得之物， 則雖至賣家， 尙容備之， 其何說之辭?’， 至於垂涕。 儻有仁心， 實所不忍。 大抵海獺， 非本土所產， 而既於天使處， 亦以不產答之， 【上使張奉切求海獺皮， 雖答以非土產之物， 而猶索之不已， 故令該司備給， 而戶曹督納于市中。】 何必強其所無之物， 而侵苦百姓， 至此極乎? 請百端解說於天使， 而勿爲此舉以病吾民。” 傳曰：“市人等事， 至爲哀矜， 倭人開市後質之。” 【日本國使臣， 亦寓館有日， 而以國中多事， 時未開

	라.” 하였다. 【일본국의 사신도 관소(館所)에 들어 있는 지 여러 날인데, 나라 안에 일이 많아서 아직 개시하지 못하였다.】	市。】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29일(경인) 1번째기사	중국 사신을 경회루에 청하여 잔치하였다.	○庚寅/請宴天使于慶會樓。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29일(경인) 3번째기사	전후의 중국 사신이 청구한 물건이 수량이 너무 많고 나라의 저축은 다하여 잇달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이 때때로 내탕(內帑)436) 을 내어서 응하여 그 바라는 것을 힘써 채워 주도록 하였으므로 내탕도 거의 다 써 버렸다.	○上以前後天使求請之物， 太多其數， 而國儲已竭， 不能連支之故， 時出內帑以應之， 務充其欲， 內帑亦幾蕩盡。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6월 1일(임진) 1번째기사	상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친히 상마연(上馬宴)을 거행하였다. 양사(兩使)가 중문(中門)에 나와서 맞이하니, 상이 함께 서로 읍양(揖讓)하며 들어가 각각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나서, 드디어 수작(酬酌)하는 예(禮)를 행하였다.	○壬辰朔/上幸太平館， 親行上馬宴。 兩使出迎于中門， 上與之相讓而入， 各就坐啜茶畢， 遂行酬酢之禮。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6월 2일(계사) 1번째기사	상이 모화관에 거둥하여 친히 전별연을 거행하였다. 중국 사신이 이르니, 상이 관문(館門) 밖에 나가 맞이하여 서로 읍양하며 들어가 각각 자리에 앉아서 먼저 차를 마신 다음에 행주(行酒)하였다. 주례(灑禮)가 끝나기 전에, 양사가 날은 저물고 갈길은 바쁘다고 굳이 잔치를 과하기를 청하자, 상이 두세 번 머무르기를 권하다가 마지못하여 그 청을 따르니, 드디어 서로 읍양하며 나가 때문에 이르러 양사가 말하기를,	○癸巳/上幸慕華館， 親行餞宴。 天使至， 上於館門外出迎， 相與揖讓而入， 各就其坐， 先啜茶次行酒。 酒禮未完， 兩使以日晚行忙， 強請罷宴， 上勸留再三， 不得已而從其請， 遂與之揖讓而出， 至于大門， 兩使曰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6월 12일(계묘)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 사신 안심 동당(安心東堂)441) 이 그 국왕의 뜻으로 말하기를 ‘김안국(金安國)이 우리 나라에 충성하였는데, 이제 죽었다 하니 슬픔을 견딜 수 없	○癸卯/禮曹啓曰： “日本使臣安心東堂， 以其國王之意言曰： ‘金安國忠於我國， 而今聞亡矣， 不勝痛悼， 將欲致

1번째기사	<p>다. 장차 치제(致祭)하려고 제구(祭具)를 가지고 왔는데, 허락받을 수 있겠는가?’ 하기에 본조(本曹)가 말하기를 ‘국왕의 명으로 제사를 지내려 하더라도 이는 사제(私祭)인데, 제사는 사사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더니, 왜사(倭使)가 말하기를 ‘제사는 이미 지낼 수 없겠고 그 집에 물건을 보내 줄 수도 없겠는가?’ 하고는 소향(燒香) 2근과 호초(胡椒) 1백 근을 내어 보이며 전해 달라고 재촉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김안국이 살아 있다면 순순히 받을 리가 없겠으나, 이제 이미 그렇지 않으니, 자제(子弟)에게 보내 주어 회사(回謝)하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호초 따위 물건은 마땅히 김안국의 집에 주어 왜사에게 알게 해야 한다.” 하였다.</p>	<p>祭，爲持祭具來，其可得請耶?’ 本曹止之曰： ‘雖以國王之命欲設祭行之，是亦私祭，祭固不可私也。’ 云爾，則倭使曰： ‘祭則既不可得行矣，又不可有贈物於其家乎?’ 仍出示燒香二斤、胡椒百斤，促令傳付，何以處之? 若使安國生存，則必無安而受之之理，而今既不然矣，請付與子弟，俾有回謝。” 答曰：“胡椒等物，宜給安國家，使倭使知之。”</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6월 17일(무신) 2번째기사</p>	<p>대간이 통사·내관 등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통사 차운성(車允成)·최세협(崔世協)은 남몰래 올려 달라고 청하여 꺼림없이 법도를 어긴 것이 박청(朴菁) 등과 다름이 없으니, 모두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이웃 나라를 접대할 즈음에는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일의 득실에도 국가의 경중이 관계됩니다. 이제 왜사(倭使)가 호초(胡椒) 따위의 물건을 가져와서 김안국(金安國)을 제사하려 하고, 또 그 글에 김안국이 일본에 대하여 크게 충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 사람중에 어찌 일본에 충성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핑계하여 지칭한 것은 실로 대단히 속이고 간사한 것입니다.</p>	<p>○臺諫啓通事、內官等事， 憲府又啓曰：“通事車允成、崔世協，陰請陞職，泛濫無忌，亦與朴菁等無間，請竝還收成命。 接待隣國之際，一言一事之得失，而國家輕重係焉。 今者倭使齎胡椒等物，欲祭金安國，且其書，至以安國於日本爲大忠云，我國之人，豈有忠於日本者? 而托以爲名者，其實至詐且譎。</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6월 18일(기유) 1번째기사</p>	<p>상이 경사전(景思殿)에 나아가 주다례(晝禮茶)를 지내고 자전(慈殿)에게 문안하였다. 자전이 수가(隨駕)한 시종(侍從)·제장(諸將)에게 술을 먹이고 또 시종에게 호초를 넣은 흰 주머니를 내렸다.</p>	<p>○己酉/上詣景思殿，行晝茶禮，問安于慈殿。 慈殿饋酒隨駕侍從、諸將，又賜侍從盛胡椒素囊子。</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p>	<p>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홀로 아뢰기를, “근래 국가에 일이 많아서 경기의 백성이 폐해를 받는 것이 더욱이 심한데,</p>	<p>○臺諫啓前事， 憲府獨啓曰：“近來國家多事，畿甸之民，受弊尤甚，雖有減</p>

<p>24년) 6월 22일(계축) 2번째기사</p>	<p>조세를 감면하라는 명이 계셨더라도 유사(有司)는 으레 연분(年分)의 등급으로써 조금 줄일 뿐이니, 백성이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노고에 지치고 농사를 그르친 끝에 있을 곳을 잃고 유리(流離)하게 되었는데, 백성의 곤궁이 모두 이토록 극도에 이르게 된 것을 상계서 어찌 죄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회복시키는 일을 바빠 해야 하겠으나 달리 구제할 계책이 없으니, 경기에서 진상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적당히 감면하여 곤궁한 백성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경기의 백성을 위하여 이처럼 아뢰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진상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내년 가을 곡식이 성숙할 때까지 적당히 줄이라.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p> <p>하였다.</p>	<p>稅之命，有司例以年分等第，而差減之，民之受賜則甚少。勞頓廢農之餘，將至於失所流離，民生窮困，一至此極，自上豈能盡知之乎？蘇復之舉，在所當急，而他無可救之策，京畿進上雜物，請量宜蠲減，使窮民受一分之惠。”答曰：“爲畿甸之民，啓之如此，予甚嘉之。進上雜物，可限明年秋成量減。餘不允。”</p>
<p>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6월 26일(정사) 5번째기사</p>	<p>유지번(柳之蕃)·홍침(洪沈)은 나와서 말하기를, “상의 옥체가 이제는 조금 낮고 열도 잠시 내려 미음을 드시며 ‘이것이 왜 이리 찬가.’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열이 날까 염려되므로 약시중은 떠나지 않습니다.”</p>	<p>柳之蕃、洪沈出言曰：“上體今則稍歇，熱亦暫退，少御米飲曰：‘此物何其冷也？’然恐或有復熱之患，故猶不離侍藥耳。”</p>

	하였다.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6월 27일(무오) 2번째기사	【 박한종(朴漢宗)이 말하기를, ‘상의 증세는 대개 덜하신 듯하여, 오늘 새벽에는 죽을 드시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간밤의 일에 아랫사람들이 경동(驚動)하였을 것이다.」 하시니,	【朴漢宗曰：“上證大概似歇，今曉進御湯粥，仍傳曰：‘去夜之事，下人必爲驚動。’”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6월 27일(무오) 8번째기사	윤인경 등이 어침(御寢)의 중문(中門) 밖까지 곧바로 들어가 오래 머물렀다가, 윤임을 시켜 청심원(淸心元)을 탄 소시호탕(小柴胡湯)455) 한 복(服)456) 을 받들고 먼저 들어가서 대신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정상을 아뢰게 하였다. 상의 말소리가 낭랑하게 밖에까지 들리더니 잠시 후에 내시가 의관(衣冠)을 찾아서 들어갔다.	仁鏡等直入至御寢中門外久住，令尹任奉和淸心元小柴胡湯一服先入，仍啓大臣等在近地狀。天語之聲，〔琅〕然聞外，俄而內侍索衣冠而入。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6월 29일(경신) 4번째기사	지번과 세거가 상이 상기(上氣)의 증세를 일으키실 것이 염려되어 소시호탕(小柴胡湯)을 드시기를 굳이 권하였더니, 상이 굳이 물리치며 ‘유 주부(柳主簿)는 어찌하여 굳이 권하는가? 박세거도 소활(疎闊)한 사람이라 하겠다. 내 병이 어찌 이 약을 마시고 곧 낫겠는가.’ 하였다.	之蕃、世舉恐或發上氣證，強勸進小柴胡湯，則上牢拒之曰：“柳主簿何強勸也？朴世舉亦可謂疎闊人矣。予病，豈爲飲此藥而卽愈乎？”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7월 3일(계해) 1번째기사	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유관이 대비전(大妃殿)에 아뢰기를, “중전께서 지나치게 슬퍼하여 전혀 미음을 드시지 않는다 합니다.	○癸亥/領議政尹仁鏡、左議政柳灌啓于大妃殿曰：“中殿過哀，全不進粥飲云。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7월 3일(계해) 2번째기사	이어서 중전에게 아뢰기를, “나라의 운수가 이렇게 되어 중종의 상에 소상을 지내기 전에 또 일이 있습니다. 이제 듣건대 전혀 미음을 드시지 않는다 하니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생명을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중종의 상 때부터 산릉(山陵)과 중국 사신의 일에 백성의 생계가 탕진되었으므로 대행왕께서 병환이 위독하신데도 ‘백성이 마침내 어떻게 되겠는가?’ 하셨습니다. 중전께서는 비록 스스로 아끼지 않더라도,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保重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조종(祖宗)의 유	今聞全不進粥飲，如此則必至傷生。自中宗之喪，山陵及天使之役，民生蕩盡，故大行王病革，亦曰：‘生民終何如也？’中殿一身，雖不自惜，爲民生自保何如？祖宗遺教亦云：‘初喪翌日飲粥，三日進水刺，’況今上殿力勸，豈不可從？

	교(遺敎)에도 ‘초상 이튿날에 죽을 마시고 사흘째에는 수라를 들라.’ 하였거니와, 더구나 이제 상전께서 힘껏 권하시는데,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7월 3일(계해) 3번째기사	영의정 윤인경·좌의정 유관이 대군(大君)에게 아뢰기를, “조종의 유교에, 초상 이튿날에 미음을 들라 하셨는데, 이제 이미 사흘째 되는 날이니, 미음을 드소서.” 하니, 답하기를, “망극한 중이나 나라의 일을 생각하여 따르겠다.” 하였다.	○領議政尹仁鏡、左議政柳灌啓大君曰：“祖宗遺敎，初喪翌日粥飲云，今已第三日，請進粥飲。”答曰：“罔極之中，念國事從之。”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7월 3일(계해) 4번째기사	윤인경 등이 회계하기를, “신들이 감히 찬선(饌膳)을 드시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미음을 드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대행왕께서 초상에 지나치게 슬퍼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신 것은 중전께서 친히 보신 바이고 신들이 애통해 하는 바입니다. 대행왕께서도 상전의 분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르셨으니, 상전의 분부를 거역하지 말고 애써 미음을 드소서.” 하였다.	仁鏡等回啓曰：“臣等非敢望進膳，欲以粥飲進之。大行王初喪過哀，故竟至於此，中殿之所親見，臣等之所哀慟也。大行亦於上殿之敎必從，請毋拒上殿之敎，勉進粥飲。”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7월 5일(을축) 4번째기사	사신은 논한다. 이때 중전에게 구역하는 증세가 있어서 호초(胡椒)를 씹으려 하였으나, 대내(大內)에 저축된 것이 없어서 약방(藥房)에 영을 내려 바치게 하였다. 아,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한 번 씹을 호초의 저축이 없었으니, 사사로이 저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다. 대행왕의 덕이 지극하다.	【史臣曰：“時，中殿有嘔證，欲啖胡椒，內無所儲，下令藥房進之。嗟呼！以一國之主，無胡椒一啖之儲，其不爲私藏，因是可見。大行王之德，其至矣乎！”】

3. 명종실록 기사자료집

명종실록 기사모음집

출처	내용	원문
<p>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7월 7일 (정묘) 2번째기사 윤인경 등이 대행왕의 어선 진어 문제로 승전색·도설리의 처벌을 청하다</p>	<p>윤인경·유관이 대전(大殿)에게 아뢰기를, “듣건대 대행왕(大行王)께서 6월 초부터 미령(未寧)하시어 20여 일 동안 어선(御膳)을 들지 않았고 위중한 지경에 이른 뒤에야 신하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승전색(承傳色)과 도설리(都薛里) 등은 어선의 진어 여부를 알고 있었을 것인데 신들이 누차 물었는데도 진어하신다고 대답하면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외간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금부(禁府)에 내려 추국하게 하소서.”하니, 대왕대비가 답하기를,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 6월 3일부터 대행왕이 전혀 음식을 진어하지 않아 중전(中殿)이 친히 진어를 권하려고 대내에서 수라를 만들어 올렸으니, 밖에 있는 내관(內官)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하였다.</p>	<p>○尹仁鏡、柳灌啓大殿曰：“聞大行王，自六月初未寧，不進膳二十餘日，及至危重，然後群下知之。其時承傳色、都薛里等，可知進膳與否，而臣等屢問，答以進御，諱而不言，使外間不知，請下禁府推之。”大王大妃答曰：“天使回程後，自六月初三日，大行王專不進食，中殿親欲勸膳，自內辦進水刺，在外內官等，其何能知之?”</p>
<p>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7월 15일(을해) 1번째기사 윤인경 등이 감선하지</p>	<p>원상 윤인경 등이 아뢰기를, “어제 비망기에 의하면, 재변은 공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인사를 닦아서 하늘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감선까지 하려 하셨으니, 신들은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옛날 주 성왕(周成王)이 어린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자 소공(召公)이 경계하기를 ‘왕이 처음 왕위를 계승하여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적에 선을 익히면</p>	<p>○乙亥/院相尹仁鏡等啓曰：“昨日備忘記以爲，災不虛生，當修人人，以答天意，而至欲爲之減膳，臣等無任感激。昔周之成王，以幼沖嗣位，召公戒之曰：‘若生子，罔不在厥初生，自貽哲</p>

말 것을 청했으나 불
운하다

선하게 되어 절로 철명(哲命)을 받게 되는 것과 같다. 이제 하늘이 철명을 줄 것인가, 길흉을 줄 것인가, 장구한 역년(歷年)을 줄 것인가는 지금 임금의 처음의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주상께서도 어리신 나이로 보위를 계승하시어 새로 큰 명을 행하심에 있어 반드시 덕(德)부터 새롭게 하신 연후에야 가능한 것인데, 전교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신다면 하늘이 철(哲)과 길(吉)과 역년(歷年)을 명하심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대저 재변은 공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부르는 것이니, 위에서 내가 보위를 계승한 처음에 무슨 과실이 있기에 재변의 발생이 이에 이른단 말인가?’ 하시면서 항상 이로써 근신하고 두려워하신다면, 실로 종사와 신민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변을 만난 다음에야 경계하실 것이 아니라 평상시 보고 듣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마땅히 사전에 경계하셔야 합니다. 평시에도 이와 같이 하고 재변을 만나서도 이와 같이 해서 근신하고 두려워함으로써 그 덕을 날로 새롭게 하여 마지않으신다면, 장차 괴기(乖氣)로 인한 재이도 없으려니와 재변이 도리어 상서가 될 것인데 또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예로부터 임금이 재변을 만나서도 소홀하게 여기고 덕으로 이겨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난망에 이르러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았으니, 어찌 크게 두려워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근신하여 몸을 닦으려면 빨리 덕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감선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이 진실로 평상시가 아니고 바야흐로 의려(倚廬)16) 중에 계시므로 진어하시는 것이 소사(蔬食)뿐인데 여기서 어찌 더 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에서 이미 감선하실 뜻을 두셨다면 감하지 않더라도 감한 것과 다름없는 성대하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한결같이 바꾸지 않으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은 알았다. 대저 근일 태백(太白)이 낮에 나타나고 해와 달의 무리가 연속 그치지 않고 있으니, 어린 나이로 대위를 계승한 처음을 당하여 더욱 놀랍고 두려워 조처할 바를 모르겠다. 감선하는 일은 알

命。今天其命哲命吉凶命歷年，知今我初服。’今主上，亦以幼冲嗣位，新服厥命，其必惟新厥德而後，庶乎可矣，而傳教亦如此。苟爲如此存心，則天之命哲命吉命歷年，皆在於此矣。大抵變不虛生，惟人所召，自上以爲‘予之嗣位之初，有何所失，而致有災變，一至於此乎?’常以此戒謹恐懼，則實宗社臣民之福。然不唯遇災然後可戒，雖在平時不睹不聞之中，亦當先事而戒之。平時如此，遇災如此，惟勤惕若，日新不已，則將無乖氣之致異，而災亦轉而爲祥，又何患乎?自古人主，遇災而忽之，無德以勝之，故終至於亂亡而不悟者多矣，豈不大可畏乎?慎厥身修，不可不疾敬德。若減膳事，此固非如常時，方在倚廬之中，其所進御，止於蔬食而已，則又何以有減於斯乎?然自上既有此減膳之意，則雖不減，猶其盛心也。請終始此心，念念勿替，則不勝幸甚。”答曰：“啓意知道。大抵近日太白之見，日月之暈，亦連仍不止，方此幼冲嗣位之初，尤爲驚懼，罔知所措。減膳事知道。”李彦迪、權機仍啓曰：“金國光則有大

	<p>았다.”하였다. 이언적(李彦迪)·권벌(權穰)이 이어 아뢰기를, “김국광(金國光)은 왕실에 큰 공로가 있고 그 인품도 원상을 감당할 만하였습니다. 신들은 용렬한 자질로 어리신 주상께서 집정하시는 처음에 역시 원상이 되어 대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 지극히 황공스럽고 미안합니다.”하니, 답하기를, “대신이 어찌 범연히 헤아려 아뢰었겠는가. 더 힘쓰도록 하라.”</p>	<p>勳勞於王室，而其爲人，亦堪爲院相矣。臣等以庸劣之資，當幼主即政之初，亦爲院相，而從大臣之後，至爲惶恐未安。” 答曰：“大臣亦豈偶爾計而啓之乎？更加勉焉。”</p>
<p>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8월 1일 (신묘) 1번째기사 영의정 윤인경 등이 왕대비에게 기력을 회복할 것을 아뢰다</p>	<p>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유관(柳灌)이 왕대비에게 아뢰기를, “어제 내시와 의녀(醫女)를 내보내라 명하셨는데 의녀가 없으면 내간(內間)의 안부를 들을 수가 없으니 때때로 출입하게 하소서. 또 죽을 간혹 드신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것으로 옥체를 보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상을 당한 지 한 달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간병(看病)하실 때부터 기력이 크게 상하셨으니 모름지기 대행 대왕의 유교(遺敎)를 따르고 백성들을 유념하여 옥체를 보중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신들은 민망스럽고 염려됨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아뢰옵니다.”하니, 답하기를, “지금 내 기력이 안정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외부인을 드나들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불편하거든 불려도 될 것이다.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아 죽을 먹을 뿐이다.”하였다.</p>	<p>○辛卯朔/領議政尹仁鏡、左議政柳灌啓王大妃曰：“昨日命出內侍、醫女，無醫女則內間安否，不可得聞，請令時時出入。且粥飲雖或進之，豈可以此支保？非徒已踰一月，自初侍病，氣已大傷，須從大行王遺教，念其民事，勉進軟飯，自保何如？臣等不勝悶慮，敢啓。” 答曰：“今則予氣平矣，何必使外人出入乎？不平則可招矣。食不易下，故進粥矣。”</p>
<p>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8월 8일 (무술) 1번째기사 나숙 등이 곡에 나가는 여가에 경연에 나갈 것을 아뢰다</p>	<p>홍문관 부제학 나숙(羅淑) 등이 아뢰기를, “학문의 도는 덕행을 우선으로 하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어리신 몸으로 대위(大位)를 계승하여 학문이 급하기 때문에 부득이 졸곡(卒哭) 전에 경연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중에 계시니 정성을 다해 슬퍼하여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학문의 큰 근본입니다. 다만 춘추가 어리고 기가 허약하여 하루 다섯 차례 모두 곡(哭)하여 상례(喪禮)를 다하는 도리를 못하니 그것도 미안한데 만약 경연에 나가시느라 마침내 곡을 폐하게 된다면 이는 경연을 중히 여기고 곡에 나가는 일은 도리어 부수적인 일이 되니 본말이 전도되어 학문의 도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곡에 나아가시는 여가에 때때로 경연에 나아가도록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평소에 내가 원기가 허약하여 초상의</p>	<p>○戊戌/弘文館副提學羅淑等啓曰：“學問之道，德行爲先，今殿下幼沖嗣位，學問爲急，故不得已卒哭前開講。然方在草土，所當盡誠致哀，期於無憾，此學問之大本。只以年幼氣弱，未得日五哭臨，以盡喪禮，已爲未安，若御經筵而遂廢哭臨，則是所重在於經筵，而哭臨反爲餘事，本末顛倒，大乖學問之道。請於哭臨餘暇，時御經筵。” 答曰：“常時予以元氣微弱，於初喪大</p>

	<p>큰 예를 일일이 예문대로 따를 수 없어 진실로 미안하다. 곡에 나아가는 일 및 경연을 아뢰는 대로 하겠다.”하였다. 【하루 다섯 차례 곡한다는 것은 아침 저녁의 전(奠)과 아침 저녁의 상식(上食)과 낮의 다례(茶禮) 때를 말한다.】</p>	<p>禮，不能一一依禮文爲之，固爲未安。哭臨及經筵，依啓爲之。”【所謂五哭臨，朝·夕奠、朝·夕上食、晝茶禮時也。】</p>
<p>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8월 12 일(임인) 3번째기사 예조가 일본 사신이 갖고 온 물품에 대해 무역을 허락할 것을 아뢰다</p>	<p>예조가 아뢰기를, “일본국 사신이 화의를 청하러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일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청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돌아가게 되자 포(浦)에 머물러 둔 호초(胡椒)·단목(丹木)·침향(沈香)·용뇌(龍腦) 등의 물품을 무역하려 한다고 합니다. 무역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호조에 하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바라던 일을 이미 이루지 못했는데 가지고 온 물건마저 팔지 못하게 하면 박대가 너무 심하니 수량을 헤아려서 무역을 허락하여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가하다. 이 내용을 원상(院相)과 호조에 말하라.”하였다.</p>	<p>○禮曹啓曰：“日本國使臣，以請和來，故初不言他事，及不得請，今將發還，則以留浦胡椒、丹(本) [木]、沈香、龍腦等物，欲爲貿易云。貿易當否，請問戶曹。”傳曰：“所望之事既不成，所齎之物，亦不得賣，則薄待已甚，量數許貿，可解其意。此意言于院相、戶曹。”</p>
<p>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8월 14 일(갑진) 1번째기사 윤인경 등이 일본국 사신의 무역을 허락할 것을 청하니 윤험하다</p>	<p>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유관이 아뢰기를, “어제 예조가 아뢰는 일본 사신의 무역건을 지금 호조와 함께 의논했는데, 이른바 호초 등의 물품은 국가의 비축을 참작하여 수량을 헤아려 무역함이 마땅합니다.”하니, 아뢰는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甲辰/領議政尹仁鏡、左議政柳灌啓曰：“昨日禮曹所啓日本使臣貿易事，今與戶曹同議，所謂胡椒等物，當計國儲，量數貿易。”答曰：“如啓。”</p>
<p>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8월 18 일(무신) 1번째기사 약방 제조 윤인경·임</p>	<p>원상(院相) 좌의정 유관 및 승지·사관(史官) 등이 경회문에 나아가 문안을 드리고, 약방 제조(藥房提調) 영의정 윤인경과 호조 판서 임백령(林百齡)이 계속해서 이르러 문안을 드렸다. 이어 자전에게 아뢰기를, “어제 저녁 하교에 ‘내일 아침에 강권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리(薛里)의 말을 들으니 조반에 이미 소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조반에 소찬을 중지하소서.”하니, 상이 이르</p>	<p>○戊申/院相左議政柳灌及承旨、史官等，詣慶會門問安，藥房提調領議政尹仁鏡、戶曹判書林百齡，繼至問安。仍啓慈殿曰：“昨夜教曰：‘明朝當強勸。’而今聞薛里之言，早飯已備素膳</p>

<p>백령 등이 문안하고 자전과 상의 병에 대해 의논하다</p>	<p>기를, “문안은 알았다.”하고, 자전이 답하기를, “이제 저녁 대신이 여러 번 청하느라 물러가지 않으므로 마음에 미안하여 권도를 따르도록 억지로 권하였으나 지금까지 따르지 않으니 매우 민망하다. 조반에는 억지로라도 권하겠다. 상의 설사 증세는 어제보다는 약간 줄었다.”하였다. 윤인경 등이 자전에게 아뢰기를, “어린 나이에 지금까지 소찬을 드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증세는 다른 약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권도를 따르신다면 쉽게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께서 강권하신다면 어찌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억지로라도 권하소서.”하고, 대전에게 아뢰기를, “종사의 대계를 어찌 생각지 않을 수 있으며, 자전의 간곡하신 권유 또한 어찌 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속히 권도를 따르소서.”하고, 또 유지번(柳之蕃)으로 하여금 들어가 진찰하게 하였다. 자전만이 답하기를, “내가 힘껏 권하려고 했으나 주상께서 쉽게 따르지 않으시니 어찌 근심이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따르시도록 권하려 한다. 의원은 들어가도 좋으나 다만 아침 기운이 매우 냉랭하니 해가 뜬 뒤 늦게 진찰해야 한다.”하였다. 또 자전에게 아뢰기를, “상의 옥체가 극도로 쇠약하시니 신들은 지극히 민망스럽습니다. 춘추가 어리시어 실로 소찬을 드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신들이 이미 의논은 했으나 일찍 아뢰지 못했으니 죄 또한 큼니다. 상의 증세는 약으로 다스릴 수 없고 반드시 권도를 따르셔야 하는데 자전께서 권하시는 것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반드시 분명히 알고 난 뒤에야 물러가려 합니다.”하니, 답하기를, 【자전이다.】 “지금 억지로 권하는 중이다. 따를 것인지의 여부를 본 뒤에 대신들에게 알릴 것이니 우선 기다리라.”하였다.</p>	<p>云。請於早飯開素。”上曰：“問安知道。”慈殿答曰：“昨夜大臣，累請不退，未安於心，欲強勸從權，而至今不從，深用悶焉。當於早飯強勸。上之病證，視昨頗減耳。”仁鏡等啓慈殿曰：“幼沖之時，至今行素，日已久矣。此證不可以他藥得效，從權則可以易治。自慈殿強之，則豈有不從？請爲宗社大計，強勸之。”啓大殿曰：“宗社大計，豈可不念，上殿懇勸，亦豈可不從？請速從權。”又令柳之蕃入診。慈殿獨答曰：“予欲力勸，而上不易從，豈不憂悶？欲期於必從而勸之。醫則可入，但朝氣頗冷，俟日晚當診。”又啓慈殿曰：“上體極弱，臣等極悶。春秋尙少，固非行素之時，臣等已議而不早啓，罪亦大矣。上證不可以藥治之，必須從權，自慈殿勸之，則豈可不從？臣等必欲知之而後退。”答【慈殿。】曰：“今方強勸，見其從否，當告大臣，姑待之。”</p>
<p>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8월 18 일(무신) 2번째기사</p>	<p>자전이 윤인경 등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대계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조정 또한 이렇게까지 하니 마음이 더욱 절박하다. 조반 때에 권하니 말씀하기를 ‘중종의 상례에도 일일이 소선(素膳)을 실행하지 못하여 이번에는 예문에 따라 실행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22일 대기(大忌)가 지난 후에</p>	<p>○慈殿傳于仁鏡等曰：“予豈不念大計？朝廷又至如此，心爲尤切。早飯時勸之，則曰：‘中宗之喪，未得一一行素，今欲依禮行之矣，事至於是，欲過二十</p>

<p>자전이 윤인경 등에게 상에게 육선을 올리는 일에 대해 하고하다</p>	<p>따르려 합니다.’ 하였다. 그 말씀이 이와 같아서 차마 강권할 수가 없으니 아침에 육선을 올리고 천천히 권유하려고 한다.”하였다. 인경 등이 회계하기를, “신들이 어찌 범연히 헤아리고 아뢰었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비위(脾胃)가 매우 중요한데 매우 허약하다 하니 지극히 염려됩니다. 국기일은 아직도 며칠 남았고 병은 반드시 대단하지 않을 때 먼저 다스려야 하므로 일각이 급하니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상중에 권도를 따르는 데 어찌 기일을 넘기는 것에 구애되어 차마 권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작은 사랑입니다. 속히 권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자전이다.】 “나 역시 어찌 범연히 헤아렸겠는가. 대행왕이 빈전에 있는 달수도 많지 않고 주상의 말씀도 준엄하여 차마 강권할 수가 없다. 아침에 육선을 올려 권하려고 한다.”하였다.</p>	<p>二日大忌而從之.’ 其言如是, 不忍強之, 將於朝進膳, 欲徐徐勸之.” 仁鏡等回啓曰: “臣等豈偶然計而啓乎? 一身, 脾胃爲大, 今聞脾胃甚弱, 至爲悶慮。 國忌尙隔數日, 病必先治其微, 一刻猶急, 不可少緩。 喪中從權, 何拘於過忌, 自上不忍勸之云? 是小慈也。 請速勸之。” 答【慈殿。】曰: “予亦豈偶然計乎? 大行在殯, 月數不多, 上言峻絶, 不忍強之。 欲於朝進膳勸之。”</p>
<p>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8월 18일(무신) 3번째기사 의원 유지번이 들어가 진찰하다</p>	<p>의원 유지번이 들어가 진찰하고 아뢰기를, “설사가 나는 것은 속이 비고 냉하기 때문인데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니 조금 덜하다고 해서 믿을 것이 못됩니다. 15세 전의 혈기는 80세 이후와 같으니 결코 소찬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하고, 나와서 윤인경 등에게 고하기를, “전하의 설사 증세는 어제보다 덜하시고 갈증 또한 감해지셨습니다.”하였다.</p>	<p>○醫員柳之蕃入診啓曰: “痢證之發, 由內虛冷, 或發或止, 不可恃其稍減。 十五歲前血氣, 與八十後同論, 決不可行素。” 出而告仁鏡等曰: “上之痢證, 視昨稍減, 渴證亦減。”</p>
<p>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8월 18일(무신) 6번째기사 자전과 윤인경 등이 육선을 드실 것을 청하다</p>	<p>자전이 윤인경 등에게 전교하기를, “아침 육선을 올릴 때 극진하게 권하니 부득이 좃기는 하였으나 역시 많이 드시지는 않았다. 지금부터 점차 권하겠다.” 하고, 대전이 인경 등에게 전교하기를, “선왕께서 빈전에 계시고 49일도 되기 전에 이렇게 권도를 따르는 것은 매우 미안하나 자전과 조정에서 이렇게까지 권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졸곡 안에 나를 위하여 외방에서 육선을 진상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니 우선 경기로 하여금 구하는 대로 봉진(封進)케 함이 가하다.”하였다. 인경 등이 대전에게 아뢰기를, “권도를 따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조정이 감격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세종(世宗)께서 태종(太宗)</p>	<p>○慈殿傳于仁鏡等曰: “朝進膳時極勸之, 則雖不得不從, 亦不多進。 當從此漸勸。” 大殿傳于仁鏡等曰: “先王在殯, 時未過七七日, 如此從權, 極爲未安, 慈殿與朝廷勸之至此, 不得不從矣。 但卒哭內, 爲予使外方, 封進肉膳, 甚不可, 姑令京畿, 隨所得封進可也。” 仁鏡等啓大殿曰: “伏聞從權,</p>

	<p>의 초상에 권도를 따르셨으며, 세조(世祖)께서 대군으로서 세종의 초상에 역시 권도를 따르셨으며,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승하하셨을 때에도 성종(成宗)께서는 겨우 1개월 2일 만에 권도를 따르셨으니, 이는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고 조종조로부터 그러했습니다. 이미 권도를 따르다 해도 마음으로 미안해 하신다면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세종과 성종께서는 동방의 성인이신데도 그렇게 하셨으니 미안하게 여기지 마소서. 외방에서 봉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하교대로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윤인경 등에게 답하기를, “조종조 때의 사례는 비록 이와 같으나 이번에는 상을 당한 것이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빈전에 계신 달수도 얼마 되지 않으므로 매우 미안하다. 자전과 조정의 뜻을 따라 마지못해 이와 같이 하나 미안한 뜻은 어찌 끝이 있겠는가.”하였다.</p>	<p>朝廷感喜。我世宗從權於太宗之初喪，世祖爲大君，於世宗初喪亦從權，貞熹王后昇遐，成宗纔經一月二日而從權，此非今日爲始，自祖宗爲然。雖已從權，心若未安，則何益？世宗、成宗，東方聖人也，而亦爲之，毋以爲未安。不令外方封進事，當如教。”上答仁鏡等曰：“祖宗時例雖如此，今則遭喪非一，而時方在殯，月數不多，至爲未安。勉從慈殿朝廷之意，而不得已如此，未安之意何極乎？”</p>
<p>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8월 18일(무신) 7번째기사 줄곡 전에는 대소 일차에 어부·응패가 바치는 것을 감하게 하다</p>	<p>전교하였다.“줄곡 전에는 경기로 하여금 대소(大小) 일차(日次)에 어부·응패(鷹牌)가 바치는 것을 반으로 줄이게 하라. 또 외간(外間)에서 번잡하게 사사로이 바치지 못하게 하라. 【이때 아랫사람들이 황계(黃雞)와 부어(鮒魚)가 이질에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와서 바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교가 있었다.】”</p>	<p>○傳曰：“卒哭前，令京畿大小日次漁夫、鷹牌所納(咸) [減] 半。又令外間，勿紛擾私獻。”【時，有下人聞黃雞、鮒魚爲痢證之藥而來獻者，故有是教。】</p>
<p>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8월 20일(경술) 1번째기사 원상·승지·사관이 문안하고 자전에게 소선을</p>	<p>원상(院相)·승지·사관 등이 경회문(慶會門)에 나아가 문안을 하니, 답하기를, “지난밤에는 이질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기분도 평상시와 같다. 이후로는 문안하지 말라.”하였다. 윤인경·유관 등이 자전에게 아뢰기를, “대전의 이질이 비록 차도가 있으나 진맥한 의원은 비위의 맥이 아주 약하다고 하니 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일(忌日)인 22일에 【정현 왕후(貞顯王后)의 기일이다.】 또 소찬을 드시면 다른 증세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조종조의 일을 고찰</p>	<p>○庚戌/院相、承旨、史官等詣慶會門問安，答曰：“去夜痢證不作，氣候如常，後勿問安。”尹仁鏡、柳灌啓慈殿曰：“大殿痢證雖差，醫員診脈者以爲，脾胃脈極弱云，不可不善調。二十二日忌，【貞顯王后忌辰。】若又行素，</p>

<p>듣지 말게 할 것을 청하다</p>	<p>해 보면, 성종께서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초상이 난 지 겨우 1개월 2일 만에 권도를 따르셨으나 10여 일 뒤에 문종(文宗)의 기일이므로 다시 소찬을 드시려고 하자, 이때 두 대비께서 승지를 보내 청하시기를 ‘비위 증세는 다른 약을 쓸 수 없는데 이제 다시 소찬을 드시면 반드시 큰 병이 생길 것입니다.’ 하여 소찬을 드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전께서 모름지기 이 뜻을 미리 알아 대전께 고하여 소찬을 드시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이 기일은 6~7세부터 성의를 다해 왔으니, 이 때문에 근일 대신이 청하는 데도 쉽게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대신이 말한 것을 힘써 말해 보겠다.”하였다. 윤인경 등이 또 아뢰기를, “신들이 어찌 범연히 헤아리고 아뢰었겠습니까. 몸에서 비위가 주가 되는데 그 맥이 아주 약한 상태에서 며칠 동안 권도를 따르다가 곧바로 소찬을 드시면 반드시 비위가 크게 상할 것입니다. 어리신 춘추에 50일 동안이나 소식을 드셔서 이미 극도로 쇠약해졌으니 자전께서 힘써 권하신다면 어찌 감히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하고, 대전께 아뢰기를, “명일부터 소식을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신들은 너무 민망하여 자전께 아뢰었습니다. 춘추가 어리시어 실로 예문대로 따를 수가 없는데, 하물며 50일 동안 소식을 드시어 비위가 극도로 약해지었음이겠습니까. 지금 만약 잘 조리하지 못하신다면 약을 쓰기가 어려울 듯합니다.”하니, 자전이 답하기를, “대신의 뜻으로 강권하려고 한다.”하고, 대전이 답하기를, “자전께서 염려하시고 대신이 강권하니 제사를 거행한 뒤에 따르겠다.”하였다.</p>	<p>則恐生他證。考祖宗舊事，則成宗於貞熹王后初喪，纔經一月二日而從權，後十餘日，有文宗忌，還欲行素，時兩大妃遣承旨請曰：‘脾胃證不可用他藥，今反行素，則必生大病。’以此俾不得行素。上殿須預知此意，告于大殿，俾勿行素。”答曰：“於此忌，自六七歲，盡誠爲之，近於大臣之請，不易從者，爲此忌也。然以大臣所言，當力言之。”仁鏡等又啓曰：“臣等豈偶然計而啓乎？一身，脾胃爲主，其脈極弱，若數日從權，而旋即行素，則脾胃必重傷矣。幼沖之年，五十日行素，已至極弱，上殿力勸，則豈敢不從？”啓大殿曰：“伏聞自明日行素，臣等深悶，啓慈殿矣。春秋尙少，固不可依禮，況五十日行素，脾胃極弱。今不善調，則恐難用藥。”慈殿答曰：“以大臣之意，欲強勸耳。”大殿答曰：“慈殿動念，大臣強勸，當於行祭後從之。”</p>
<p>명종 2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10월 11</p>	<p>상이 주다례(晝茶禮)는 친림하고 조전(祖奠)은 친행하지 않았다. 【전날 윤인경·이기 등이 친림하지 말 것을 주청하였다.】</p>	<p>○庚子/上親臨晝茶禮，不親行祖奠。【前日尹仁鏡、李芑，請勿親臨。】</p>

<p>일(경자) 1번째기사 주다례를 친림하고 조 전은 친행하지 않다</p>		
<p>명종 2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10월 17 일(병오) 1번째기사 강원도 관찰사 김홍윤 이 배사하니 구황에 힘쓸 것 등을 명하다</p>	<p>강원도 관찰사 김홍윤(金弘胤)이 배사(拜辭)를 하니, 전교하였다.“올해 농사가 심히 부실하여 인민이 지극히 염려되니 구황하는 일에 힘을 다해 조치하여 민생을 소복(蘇復)시키는 데에 유념하고, 포핍(褒貶) 때에는 수령을 엄격히 다스려 침탈하지 못하도록 경은 힘쓰라.”</p>	<p>○丙午/江原道觀察使金弘胤拜辭，傳曰：“今年農事，不實甚矣，人民至爲可慮，救荒之事，務極措置，以蘇復民生爲念，褒貶之時，嚴治守令，使不得侵漁，卿其勉哉。”</p>
<p>명종 2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 (嘉靖) 24년) 10월 28 일(정사) 6번째기사 윤인경 등이 권도를 따라 육류를 드실 것 을 아뢰다</p>	<p>홍언필·윤인경·이기 등이 아뢰기를, “이제 이미 줄곡을 지냈으니 이는 여느 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주상께서 어리시고 대왕대비께서 수렴 청정하시어 온 나라 생민의 바람과 조종의 대업(大業)이 다 이에 매여 있으니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점점 많아져 기력이 전과 같지 않아서 혹 질병이 나실까 염려되니 행소(行素)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왕대비께서 강녕하신 뒤라야 조정이 믿을 데가 있고 나라가 걱정이 없게 됩니다. 권도를 따라 육류를 드소서.”하니, 답하기를, “국상이 중첩되어 중종의 소상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매우 미안하다. 그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언제나 질병은 원기가 허약한 데서 납니다. 국상이 중첩되어 행소하신 지 너무 오래 되었으므로 원기가 반드시 부실하실 것이라고 조정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국사가 벌써 이와 같아 주상께서 꼭 하셔야 될 일이 매우 많으니, 하루라도 더 행소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개소(開素)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중종의 소상이 임박하였는데 미안한 일을 어찌 차마 따르겠는가.”하였다. 대전께 아뢰기를, “대왕대비께서 행소하신 지 벌써 오래되어 원기가 반드시 허약하실 것입니다. 고기를 권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자전께서 미안하다</p>	<p>○洪彥弼、尹仁鏡、李芑等啓曰：“今已卒哭，此非如常時。主上幼冲，大王大妃垂簾聽政，一國生民之望，祖宗艱大之業，皆係於此，所關最重。且年歲漸異，氣力不同，恐生疾病，不可行素。必大王大妃康寧，然後朝廷有所恃，國事無虞。請從權進肉。”答曰：“國喪重疊，中宗小祥未過，予甚未安，故不從。”再啓曰：“常時疾病，生於元氣虛弱，國喪重疊，行素太久，氣必不實，朝廷憂懼。國事既如此，而上之所當爲者極多，一日行素，尤爲未安。請開素。”答曰：“中宗小祥臨迫，未安之事，安忍從之？”啓于大殿曰：“大王大妃行素已久，氣必虛弱，</p>

	<p>는 뜻을 간극하게 전교하였으므로 감히 억지로 아뢰 수 없다.”하였다. 대왕 대비전에 아뢰기를, “국상이 중첩되어 행소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었으므로 원기가 반드시 허약하여졌을 것입니다. 중병이 나실까 염려되어 조정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고례(古禮)이니 개소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기후(氣候)가 여전한데, 내가 어찌 개소하겠는가.”하였다.</p>	<p>請勸肉。” 答曰：“慈殿未安之意，丁寧傳教，不敢強啓。” 啓于王大妃殿曰：“國喪重疊，行素太久，氣必虛弱。恐生重病，朝廷憂懼。此亦古禮，請開素。” 答曰：“氣候如常，予安忍爲?”</p>
<p>명종 5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1월 4일(정사) 1번째기사 삼경에 경사전에 나가 답제를 지내다</p>	<p>답제(禫祭)를 지냈다. 삼경(三更)에 상이 백포에 익선관을 쓰고 오서대(烏犀帶)를 띠고 소연(素輦)을 타고 경사전(景思殿)에 나아갔다. 사경에 상이 옥색포(玉色袍)를 갖춰 입고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곡하며 네 번 절한 뒤 재전(齋殿)에 나아가 예조 판서 신광한(申光漢)에게 전교하기를, “겉옷[表衣]은 마땅히 현포(玄袍)로 바뀌어야겠지만 속옷[裏衣]도 길복(吉服)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모르겠다.”하니, 광한이 회계(回啓)하기를, “속옷도 길복으로 바뀌어야 마땅하나 밤 공기가 싸늘하니 속옷은 바꾸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하고, 윤인경(尹仁鏡)과 이기(李芑)가 아뢰기를, “예(禮)는 구차스레 할 수 없는 것이니 길복과 흉복이 반반이란 온당치 못합니다.”하였는데, 상이 현포로 갈아입고 곡하면서 의식대로 예를 행하였으며, 예를 마친 뒤 재전으로 돌아와서 소복(素服)으로 갈아입었다. 해뜰 무렵에 상이 경사전에서 아침 상식(上食)을 드리고 곧바로 영모전(永慕殿)으로 가서 별다례(別茶禮)를 행한 뒤에 환궁하였다. 백관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진하하였다.</p>	<p>○丁巳/行禫祭。三更，上具白袍、翼善冠、烏犀帶，御素輦，詣景思殿。四更，上具玉色袍，出就拜位，哭，行四拜禮訖，權就齋殿。傳于禮曹判書申光漢曰：“表衣則當易玄袍，不知裏衣亦易吉乎?” 光漢回啓曰：“裏衣亦當易吉，但夜氣寒冷，裏衣則雖不易之亦可。” 尹仁鏡、李芑啓曰：“禮不可苟簡，吉凶相半未安。” 上易玄袍以出，哭行禮如儀禮畢，上還齋殿，反素服。日出，上行朝上食于景思殿，仍詣永慕殿，行別茶禮後還宮。百官以時服陳賀。</p>
<p>명종 5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2월 1일(계미) 1번째기사</p>	<p>홍문관 교리 이원록(李元祿)이 사장(辭狀)523) 을 올리고 흥덕현(興德縣)에 있는 병든 어머니의 병문안을 떠나려 하니, 상이 밀감 40개를 하사하면서, 노모(老母)에게 주라고 하였다.</p>	<p>○癸未朔/弘文館校理李元祿呈辭狀，將覲病母于興德縣，上，以黃柑四十顆賜之曰：“往遺爾老母。”</p>

<p>홍문관 교리 이원록이 어머니의 병문안을 이유로 사직하자 밀감 40개를 하사하다</p>		
<p>명종 5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3월 7일(무오) 1번째기사 주장에 나가자 시강관 민전이 구황의 계획에 유념하라고 하다</p>	<p>상이 주장에 나아갔다. 시강관 민전(閔荃)이 아뢰었다. “근래에 천도(天道)가 몇몇한 바를 잃어서, 온화해야 할 봄철에 찬 바람이 그치지 않고 농사철에 비가 오래도록 오지 않아서 백성들의 희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대저 근년의 흉황은 천고(千古)에 없던 바이어서 백성들이 극도로 곤궁하게 되었는데, 금년은 또 부역에 조발(調發)되는 일이 많아서 피폐(疲弊)함이 지난날의 배나 됩니다. 일찍이 보니, 백성들은 양맥(兩麥)을 수확해야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 날씨가 이와 같으니 어찌 그 생명(生命)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외방의 수령들은 조정의 명령이 없으면 다 잊어버린 채 구황(救荒)할 계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신축·임인년의 큰 흉년에 있어서 선왕【중종(中宗)이다.】께서 백성의 곤궁을 가엾게 여기시어 사신을 보내어 그 수령의 구황 여부를 살피게 하였는데, 신도 명을 받들고 경기(京畿)에 가서 보니 그 백성을 돌볼 줄 아는 자가 적었습니다. 신이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를 골라서 상달(上達)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바야흐로 경창(京倉)을 풀어서 구제하고 있었는데 선왕께서 가급(加給)할 것을 특명하여, 기전(畿甸)의 백성들이 실로 약간의 혜택을 받았습니니다. 지금 도하(都下)에서는 무명 1필의 값이 쌀 한 되에 지나지 않으니, 먼 곳의 군사(軍士)로서 서울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장차 무엇으로 식량을 바꿔 먹겠습니까. 구황할 계획에 특히 유념하소서.”</p>	<p>○戊午/上御書講。 侍講官閔荃曰：“近來天道失常，春和之月，寒風不止，農作之時，雨勢久絕，民望絕矣。大抵近年凶荒，千古所無，民極困瘁，而今年又多調發之役，疲弊倍於前日。嘗見民生以兩麥之成得活，而今者日候如此，豈保其生乎？外方守令，若無朝廷之令，皆付之相忘，而不思救荒之策。往在辛丑、壬寅年間大饑，而先王【中宗。】惻念民窮，遣使察其守令救荒與否，而臣承命往審京畿，則知其惠鮮者寡矣。臣發其尤甚者，上達治罪。其時方發京倉而賑之，先王特命加給，畿甸之民，實受一分立惠矣。今者都下木綿一匹之直，不過升米，遠方軍士之留京者，將何物易粟而食乎？救荒之策，別加留念焉。”</p>
<p>명종 5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3월 17일(무진)</p>	<p>전교하였다.“요즈음 해와 달의 빛을 보니 가뭄의 징조가 많이 있다. 어제 경기 관찰사의 서장(書狀)을 보니, 가평군(加平郡) 일대에 눈이 내려 들에는 세 치, 산에는 여덟 치나 쌓였다고 하였다. 3월의 눈은 실로 큰 재변이다. 양맥</p>	<p>○戊辰/傳曰：“近觀日月之色，甚有旱徵。昨見京畿觀察使書狀，加平郡下雪，野則三寸，山則八寸云。三月之</p>

<p>1번째기사 가뭄의 징조가 있어 구학을 수리하고 천맥 을 깨끗이 하라고 전 교하다</p>	<p>(兩麥)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민생(民生)의 구황(救荒)이 매우 어렵다. 지금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이른 것 같으니, 구학(溝壑)을 수리(修理)하고 천맥(阡陌)을 깨끗이 하게 하려 한다. 그것을 대신에게 말하라.”</p>	<p>雪，實爲大災。 兩麥已不實，民生救荒極難。 若祈雨則似早，欲令修溝壑淨阡陌。 其言于大臣。”</p>
<p>명종 5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3월 25일(병자) 1번째기사 영모전에 나가 아침 상식과 별다례를 행하 다</p>	<p>상이 영모전(永慕殿)에 나아가 아침 상식(上食)과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p>	<p>○丙子/上詣永慕殿， 行朝上食別茶禮。</p>
<p>명종 5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3월 26일(정축) 1번째기사 가뭄이 심하여 음주를 금하도록 전교하다</p>	<p>전교하였다. “이제 날씨를 보니 비올 징조는 전혀 없다. 내가 매우 근심하고 공구 수성(恐懼修省)하면서 한 때도 해이한 적이 없었는데도 재변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내가 덕이 없어 위로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해서일 것이다. 지금은 국恤(國恤) 중에 있으니 자연 유연(遊宴)은 없을 것이나, 가뭄의 징조가 너무 심하니 노약자나 환자가 복약(服藥)하는 것 이외에 음주(飲酒)하는 일은 일체 금하라.”</p>	<p>○丁丑/傳曰：“今見日候。 頓無雨徵。 予甚憂悶，恐懼修省，無一時少弛，而災變如此，必由予之薄德，不能上格于天也。 今在國恤，自無遊宴，然旱徵太甚， 老病服藥外， 一切禁酒。”</p>
<p>명종 5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3월 28일(기묘) 1번째기사 조강에 나가자 동지경 연사 임권이 정치에 힘쓸 것과 한세진의</p>	<p>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동지경연사 임권(任權)이 아뢰었다. “재변이 잇달아 나타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도 한재(旱災)가 가장 절박합니다. 봄철은 이미 다 지나가고 여름철이 곧 이르게 되었는데 아직도 비가 오지 않아서 전혀 파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곡식을 심지 않고 수확할 수는 없는 것이니 백성의 살아갈 길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이나 불은 매우 흔한 것인데 여염(閭閻)에는 샘과 우물이 말라 버렸으니 어찌 이와 같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위에서는 마땅히 그 정치의 잘못된 곳을 살피고 아</p>	<p>○己卯/上御朝講。 同知經筵事任權曰：“災變之疊見 莫甚於今時。 其中旱災，尤爲切迫。 春月已盡，夏節將至，而尚不下雨，專不付種。 穀不可不種而穫，民之爲生極難矣。 水火至賤，而閭閻之間，泉井枯渴，安有如此時乎？ 自上當察其政治之闕失，自下亦</p>

<p>일을 아뢰다</p>	<p>래에서도 또한 근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감히 편안할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온 백성들이 바야흐로 급급하고 황황하여 아침저녁 사이를 보전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조정은 한가하고 안일하여 별로 조처할 뜻이 없으니, 신은 위로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는 일에 부지런한 실상이 없고, 아래로는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이 없음이 걱정됩니다. 충분히 진념하시어 재앙을 막는 길을 삼으시면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또 신이 의금부 당상이 되어서 보니, 전 고양 군수(高陽郡守) 한세진(韓世珍)은 관곡(官穀)을 처치(處置)한 데가 없다고 하여 헌부의 논박을 당하여 지금 금부에 수계(囚繫)되어 있습니다. 고양의 창고에 남은 곡식을 번고(反庫)한 계본도 이제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니 관청에 비축되어 있는 백미(白米)와 중미(中米)가 도합 2백여 석(石)이어서, 다 없어진 데에 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사(法司)가 아뢴바, 그가 자기 집으로 실어갔다는 것은 이것으로써 발명(發明)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계본에는 그 회계상의 영축(盈縮)의 수(數)를 말하지 않고 다만 창고에 남아 있는 수량만을 기록하여서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조의 연말 회계(年末會計)를 상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본관(本官)에서도 다시 그 초사를 살펴보니 소위 80여 석 내에 40여 석은 진구(賑救)에 썼습니다. 건기(件記)를 가져다가 상고하면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금부가 세진을 조율(照律)하는 일로 취품(取稟)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자기 집에 실어갔다고 하나 번고(反庫)하니 남은 저장곡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니 추고하지 말라.’ 하였다. 당시의 여론(輿論)은, 세진이 논박(論駁)을 받은 것은 진복창(陳復昌)의 혐원(嫌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p>	<p>有憂恤之心，不敢暇豫可也。今則四方之民，方汲汲遑遑，恐不保朝夕，而朝廷暇逸，別無所措之意，臣恐上無敬天勤民之實，下無愛君憂國之誠也。十分軫念，以爲禦災之道，幸甚。且臣爲義禁府堂上見之，前高陽郡守韓世珍，以官穀無處置，被憲府之啓，方繫禁府。高陽留庫之穀反庫啓本，今已到矣。據此計之，則官廳所儲白米、中米并二百餘石，似不至竭盡也。然法司所啓，馱輸其家之事，不可以此發明。但其不濫用之狀，可以權度也。啓本不言其會計盈縮之數，而只錄留庫之數，似不分明矣。然考諸戶曹年終會計，則可以知之。且於本官，亦可更考其招辭，所謂八十餘石內，四十餘石，則施於還上，四十餘石，則用於賑救。取件記考之，則亦可知之。” 【厥後禁府，以世珍照律事取稟，傳曰：“雖曰馱輔其家，反庫則多有贏餘云。勿推。”時議以爲，世珍被論，出於陳復昌兼怨云。】</p>
<p>명종 5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p>	<p>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전교하기를, “각 전(殿)의 향온(香醞)은 3일에 한 향아리씩 올리는 이외에는 올리지 말고</p>	<p>○癸未/上御朝講。傳曰：“各殿香醞，每三日一缸外勿進，各名日進上餅，亦</p>

<p>26년) 4월 2일(계미) 1번째기사 가뭄에 따라 각 전의 향은과 떡을 감하다</p>	<p>각 명일(名日)에 진상하는 떡도 감하라.” 하였는데, 한재(旱災)로 인한 것이다.</p>	<p>減之。”因旱災也。</p>
<p>명종 5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5월 4일(갑인) 2번째기사 경기 감사 정유선이 창고를 열어 진휼할 것을 청하여 허락하다</p>	<p>경기 감사 정유선(鄭惟善)이 장계(狀啓)하기를, “도내 각 고을의 지난해 농사가 모두 흉작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비록 조금은 수확하였지만 모두 공사(公私)의 빚을 갚아 버린 까닭에 집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양맥(兩麥)이 익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올봄에 또 한재(旱災)를 만나, 가을보리는 익어가고는 있지만 실하지 못하고, 봄보리는 아직 이삭이 패지 못한 채 가뭄에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잘 익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백성들의 생활이 몹시 어렵게 될 것입니다. 창고를 열어 진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근래 해마다 흉작으로 각 고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곡식의 반가량이 민간에 흩어져 있습니다. 또 잡곡(雜穀)도 종자와 구식(口食) 등의 명목으로 이미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민(飢民)을 구휼할 계책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방도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동·서적전(東西籍田)에 저장된 것 중에서 자성(棗盛)에 합당하지 않은 정갈하지 못한 묵은 곡식을 부근의 각 고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타의 각 고을 백성들에게는 또 경창(京倉)의 2만 석을 조절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서장을 보니 민생이 지극히 애처롭다. 이대로 진구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지난해 흉년이 들었는데 올해도 가뭄이 기승을 부리니 앞으로 보리농사며 벼농사가 크게 흉작이 될 것이다. 유선이 창고의 곡식을 풀어 주린 백성을 구휼하고자 한 것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간흉들이 권력을 천단하여 국사(國事)가 이미 글러졌고 무고한 사람들이 잘못 죄에 걸려들어 원기(冤氣)가 가득찼으니 정치가 재앙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해마다 연이어 지는 흉년이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p>	<p>○京畿監司鄭惟善狀啓曰：“道內各官，去年農事，專不豐稔。民生縱有所收，皆納於公私債，故家無所儲。兩麥之成，指日而待，今春又值旱災，秋麩則今雖向熟而不實，春麩則時未發穗而焦傷。今雖得雨，成熟難期，民之生活，至爲艱矣。當發倉賑救，而近因連歲兇荒，各官倉穀，爲半散在民間。又於雜穀種子，口食等處，已盡分給。飢民救活，百計無策。請以東西籍田所儲，棗盛不合陳雜之穀，題給於附近各官之民，其他各官人民，又以京倉二萬石，量給何如？”傳曰：“觀此書狀，民生至爲可矜。依此賑救可也。”</p> <p>【史臣曰：“去歲兇歉，今年亢旱，將大無麥禾。惟善之欲發粟賑飢，蓋出於不得已也。奸兇擅權，國事已非，無辜橫罹，冤氣充斥，人事足以召災。其連歲凶荒，豈無所以乎？”】</p>

<p>명종 5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5월 17일(정묘) 1번째기사 영모전에 나아가 아침 상식과 별다례를 행하다</p>	<p>상이 영모전(永慕殿)에 나아가 아침 상식(上食)과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p>	<p>○丁卯/上詣永慕殿， 行朝上食別茶禮。</p>
<p>명종 5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5월 21일(신미) 1번째기사 조강에서 대비가 수렴 청정하여 병든 군사를 구료하고 황해도로 진휼토록하다</p>	<p>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대왕대비께서 수렴(垂簾)하고 함께 정사를 듣고는 전교하기를, “군사들 중에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군사들이 병이 들면 의원을 시켜 진맥케 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황해도 산간 지방이 지난 해의 심한 흉작으로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해채(海菜) 따위로 살아간다고 한다. 감사에게 하유하여 그 도의 곡식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경창(京倉)에서 가져다가 진구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p>	<p>○辛未/上， 御朝講。 大王大妃垂簾同聽政， 傳曰：“軍士多有病死云。 軍士有病， 則令醫員診脈， 擇其同類之可信者， 使之除番， 盡心救療可也。” 又傳曰：“黃海道山郡， 因去年凶荒， 百姓皆流移， 海採資生云。 下諭監司， 其道之穀不裕， 則以京倉之穀， 移轉賑救之。”</p>
<p>明宗 5卷, 2年(1547 丁未 / 명 가정(嘉靖) 26年) 5月 25日(乙亥) 1번째기사 진휼사 민제인의 청으로 사족도 보통 사람처럼 진제장에서 구제토록 하다</p>	<p>진휼사(賑恤使) 민제인(閔齊仁)이 아뢰기를, “사족(士族)으로 진휼해야 할 사람은 각 부(部)에서 으레 한성부(漢城府)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리저리 보고하고 계달(啓達)하는 사이에 반드시 사망자가 생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곧바로 진휼청에 보고하게 하여 때 맞춰 구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전에 진제장(賑濟場)에서는 혹 중앙 부서에서 잘못이 없나 살피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원들이 죄책을 당할까 두려워 밥을 먹으려고 모여든 백성들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여 마치 죄지어 잡혀온 사람처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려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편의대로 구제하게 하여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하면 어</p>	<p>○乙亥/賑恤使閔齊仁啓曰：“士族當賑者， 各部例必報于漢城府。 傳報啓達之際， 必有死者。 請如常人例， 直報于廳， 趁時賑救何如？ 前者賑濟場， 或有內擲奸之時， 官員等， 恐有罪責， 聚食之民， 使不得出入， 有如拘繫。 然故雖輾轉溝壑， 不肯就食云。 便易賑救， 使得任意何如？” 傳曰：“如啓。”</p>

<p>명종 5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5월 28일(무인) 8번째기사 사간원에서 황여헌 등의 사면을 취소하기를 청하였으나 불허하다</p>	<p>똥졌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간원이 아뢰기를, “하늘을 감응시켜 재앙을 풀게 하는 데에는 그것대로의 도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책망하고 반성 수양하는 것으로 우선해야 하고 지엽적인 의식에 얽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사면은 양민을 해치고 간사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므로 평시에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늘을 감응시켜서 재앙을 풀려고 하신다면 이 어찌 오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뭄 때문에 혹시 억울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중외에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비록 성상께서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여 모든 방법을 다 시행해보려는 뜻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요행스럽게 벗어나고 억울한 자가 풀려나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재앙을 부르는 것이니 어떻게 재앙이 풀리겠습니까. 형옥에 만일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빨리 신리하여, 오랫동안 묶여 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일체 풀어주어 도리어 억울하게 되는 길을 열어야겠습니까. 성묘조에 재앙이 들자 옥송이 지체된 것을 염려하여 해당 관리들을 명하여 기한을 정하고 판결하게 하니 억울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마땅히 조종을 본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 하필 사면하려고 하십니까. 속히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장오(贓汚)는 죄 중에서도 무거운 것입니다. 기왕에 이미 죄안이 작성되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진소(陳訴)에 의해 가볍게 다시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황여헌은 죄가 뚜렷이 드러나 【울산(蔚山) 수령으로 있을 때 관물(官物)을 남몰래 빼냈고, 또 국곡(國穀)을 꺼내어 같은 고향 사람에게 사사로이 주어 소를 사게 하였다가 파직되어 돌아오면서 그 소를 추심하여 가져와 자기의 물건을 만들었다.】 그때 자백을 받아 죄를 정하였습니다. 세월이 벌써 오래되었으니 이제 그 사간들을 다시 심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간들이 만일 승복하지 않으면 무죄인 사람들을 어떻게 자주 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사간들이 분명하게 말을</p>	<p>○諫院啓曰：“應天弭災，自有其道。當以責躬修省爲先，不可規規於文爲之末。況赦者，賊良民惠姦(宄) [宄]，雖在平時，尙不可妄下。欲以此爲應天弭災，不亦迂乎？今以旱災，慮其冤枉，命赦中外。此雖聖上遇災恐懼，靡所不爲之意。然有罪者幸而免，抱冤者不得伸，則此固名災之道，豈得以弭災乎？大抵刑獄之間，如有冤枉，當速伸理，無使淹滯。豈宜不辨是非，一切肆赦，反開冤枉之路乎？成廟朝，因有災軫獄訟之滯，乃命該官，定限決折，無有鬱抑。此誠美意。如不得已，當法祖宗。何必用赦乎？請速還牧成命。贓汚罪之重者。既已錄案，則豈可以其人陳訴，輕易更改乎？黃汝獻所犯顯著，【作宰蔚山時，偷取官物，又出國穀，私與同鄉人，使之買牛，及其罷歸，還推其牛，以爲己物。】其時取服定罪。歲月已久，今不可更推其事干。事干若不承服，無罪之人，豈可數多刑訊乎？借令事干發明，已定之贓罪，又豈可以事干之招，追改乎？此路一開，後弊無窮。請亟牧成命。朴</p>
---	--	---

	<p>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한 장죄를 또 어떻게 사간들의 공초에 의해 뒤따라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길이 한번 열리면 뒷페단이 끝이 없습니다. 빨리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박원겸은 감사(監司) 【황맹헌(黃孟獻).】의 뜻에 영합하여 잘못 무고한 사람을 참혹하기 그지없게 죽였으므로 지금까지도 듣는 사람이 분하고 원통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전일 서용하려던 때에 대간이 과거의 일을 논계(論啓)하였습니다. 오늘날 다시 거두어 서용함은 옳지 않습니다.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하니, 답하기를, “비록 의식에 지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재앙을 만나 무엇이나 최대한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서이다. 황여헌은 곧바로 형신하여 자백을 받았으니 대신들이 어찌 우연한 생각에서 말하였겠는가. 박원겸은 대신들이 아뢴 대로 거두어 서용하도록 하라고 이미 명하였으니 다시 개정할 수 없다.”하였다.</p>	<p>元謙，逢迎監司【黃孟獻。】之意，枉殺無辜之人，極爲慘酷，至今聞者，莫不憤惋。故前日敍用之時，臺諫既已論啓，今不可復爲牧斂。請還牧成命。”答曰：“雖文具之事，亦不可不爲。此遇災無所不用其極故也。黃汝獻，直加刑訊而取服，大臣豈偶然計之而言之乎？朴元謙，以大臣所啓，既命牧斂。不可更改。”</p>
<p>명종 6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7월 9일(무오) 1번째기사 호조 판서 정세호의 건의로 황해도 구황미를 반감하여 조운토록 하다</p>	<p>호조 판서 정세호(鄭世虎)가 아뢰기를, “황해도의 기민(飢民)을 진구(賑救)하는 일로 인하여 군자감의 곡식 4천 섬을 지금 옮겨가려 하는데, 그 도의 도사(都事) 이건(李楸)이 조운(漕運)으로 실어갈 일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신이 불러 물어보았더니, 말하기를 ‘감사 【이해(李滢).】가 나중에 보낸 서장(書狀)의 내용은 옮겨가기를 청한 뜻은 아니었다……’ 하였습니다. 지금 올곡식은 익어서 백성이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경창(京倉)의 곡식을 외방으로 수송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수재가 매우 많이 났으므로, 내년에는 그 지역도 마땅히 진구해야 할 것입니다. 4천 섬에서 반을 감하여 실어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당초에는 구황(救荒)하는 일이 긴급하였으므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올곡식이 거의 익었으니, 아뢴 대로 반을 감하여 조운하라.”하였다.</p>	<p>○戊午/戶曹判書鄭世虎啓曰：“以黃海道飢民賑救事，軍資監穀四千碩，今將移轉，而其道都事李楸，以漕運領去事上來。臣招問之，則曰：‘監司【李滢。】後書狀，非請其轉移之意也。’云云。今者早穀向熟，民將得食，以京倉之穀，轉送于外，極爲重難。而且今年水災甚多，明年則此處亦當賑救。請於四千碩，減半轉運何如？”傳曰：“當初以救荒緊急，故如此矣。今則早穀幾熟，依所啓減半漕運可也。”</p>
<p>명종 6권, 2년(1547)</p>	<p>검상(檢詳) 김주(金澍)가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황해도의 산중 고을에는</p>	<p>○己未/檢詳金澍以三公意啓曰：“黃海</p>

<p>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7월 10일(기미) 1번째기사 삼공의 건의로 황해도 구황미 수송을 정지하다</p>	<p>작년에 흉년이 심하였으므로 본도(本道)의 감사가 계청(啓請)하여 경창의 곡식으로 구황하고자 하여 두 차례나 청하였습니다. 이에 이번에 곡식을 수송하여 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올곡식과 늦곡식이 다 익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농사철에 멀리까지 와서 많지 않은 곡식을 받아가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굳이 수송할 필요가 없겠습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道山郡，去年飢甚，故本道監司，啓請京倉穀，欲以救荒，再度請之。今將移轉以救之矣。今者早穀晚穀，皆將成熟。而民於農時，自遠來受其不多之穀，亦爲有弊，不須移送。”傳曰：“如啓。”</p>
<p>명종 6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7월 20일(기사) 1번째기사 밀양 수산제의 국둔진이 물에 잠겨 군인들에게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해 논의케 하다</p>	<p>전교하였다. “이번에 경상 감사 임호신의 계본(啓本)을 보니, 밀양 수산제(守山堤)의 국둔전(國屯田)의 화곡(禾穀)이 물에 잠겨 손상되었으므로 농사지는 군인들에게 곡식을 거둔다고 하는데, 지금 바야흐로 실농한 때에 그렇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구황하는 뜻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니,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p>	<p>○己巳/傳曰：“今見慶尙監司任虎臣啓本，則密陽守山堤國屯田，禾穀水沈損傷，徵穀於耕治軍人，今方失農之時，如是徵之，則殊乖救荒之意，令大臣議啓。”</p>
<p>명종 6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8월 1일(기묘) 1번째기사 진휼청의 건의로 이달까지 동·서 진제장을 열도록 하다</p>	<p>진휼청(賑恤廳)이 아뢰기를, “서(西)·동(東)의 진제장(賑濟場)을 전례(前例)에 의하여 과장(罷場)하기를 청하였지만 올곡식이 지금 익기는 하였으나 사족(士族)들은 반드시 곡물(穀物)이 외부에서 들어온 다음에야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달을 한하여 진구(賑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己卯朔/賑恤廳啓曰：“西、東賑濟場，請依前例罷場，而早穀今雖成熟，士族人則必待穀物，自外方入來，然後可以生活。限今月賑救何如?”傳曰：“如啓。”</p>
<p>명종 6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9월 9일(정사) 1번째기사</p>	<p>상이 영모전에 나아가 담제(禫祭)를 행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경사전(景思殿)에서 담제를 행한 뒤에 이어서 아침 상식(上食)을 올렸었다. 이번에도 그 예(禮)를 행하고자 하니, 대신에게 묻도록 하라.”하니, 삼공이 아뢰기를, “예(禮)는 인정(人情)을 절제하는 것인데 선왕(先王)께서 만드신 것입니</p>	<p>○丁巳/上詣永慕殿，行禫祭，傳于政院曰：“前者景思殿禫祭後，因行朝上食。今亦欲行此禮，其問于大臣。”三公啓曰：“禮節人情，先王之所制</p>

<p>영모전에 가서 담제하고 시선하다</p>	<p>다. 전번에 경사전에서 비록 그 예를 행하였으나, 그때는 인종(仁宗)의 상사(喪事)를 마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행하더라도 비록 방해될 것은 없으나 이것은 예가 아닙니다.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는데, 【중종(中宗)의 담제 후에 친히 별다례(別茶禮)를 행할 때에는 간하지 아니하고, 인종(仁宗)의 담제 후에 별다례를 행하고자 한 것은 중지할 것을 간하였다. 어떤 때는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대신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전교하기를, “그러면 시선(視膳)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p>	<p>也。前者景思殿，雖行此禮，其時則仁宗喪事未畢。爲之雖不妨，然此非禮也。請勿行何如？”【中廟禫祭後，親行別茶禮則不諫，仁廟禫祭後，欲行別茶禮則諫止。或行或不行，大臣之意，未可知也。】傳曰：“然則視膳可也。”</p>
<p>명종 6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9월 27일(을해) 1번째기사 시강관 이황이 외방의 시장을 열도록 하라고 청하다</p>	<p>시강관 이황(李滉)이 아뢰었다. “외방의 시장(市場)은 백성들이 장사에만 치중하고 도적도 번성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를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반드시 시장을 통하여 교역하여 이를 바탕으로 살아 가는데, 지금 또 시장을 금하면 백성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살아 갈 수 있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금년에 재해를 당한 곳에는 벼가 모두 썩었고 밭곡식도 폭풍과 냉우(冷雨)의 피해를 입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흉년이 든 해에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 서로 도와가며 급한 것을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일체 금한다면 백성들이 매우 괴로울 것이니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정월부터 질이 나쁜 베[布]를 금하게 하였는데, 금하는 자체는 진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짠 베가 나온 다음에야 전의 질이 나쁜 베를 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목화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새로 짠 베가 있겠습니까. 만약 금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시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그 법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법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니, 우선은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乙亥/上御朝講。侍講官李滉曰：“外方場市，民多逐末，盜賊亦繁，故國家禁之。今者凶荒已極，民間交易有無，必賴場市以相資，今又禁場市，民何以資活？臣見今年被災之處，禾穀盡爲腐傷，田穀亦爲暴風冷雨所傷，民無所食。自前荒歲，亦不禁場市，使之相資以救急。當此凶年，一切禁之，則民甚病焉，勿禁何如？且自來年正月，命禁惡布，禁之固當也。但有新織之布，然後可禁前日麤惡之布。今年木花專無，豈能有所新織乎？若禁之，則民何以資生乎？知其必不能行而不去其法，是使民玩法也，姑勿禁之何如？”</p>
<p>명종 6권, 2년(1547</p>	<p>전교하기를, “대신들이 정전으로 돌아가기를 계청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다</p>	<p>○丙子/傳曰：“大臣啓請復正殿，故從</p>

<p>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9월 28일(병자) 1번째기사 정전으로 돌아가 복선과 동악하는 것이 편치 못하다고 하다</p>	<p>마는, 금년의 재변은 너무도 참혹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복선(復膳)과 동악(動樂)은 내 마음에 편하지가 않으니, 전지를 받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정원이 회계하기를, “어제 대신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정전으로 돌아가면 반찬을 줄이거나 음악을 철폐할 수 없는 것은 전례도 그러하였거니와 더구나 조하(朝賀) 등의 예(禮)에는 음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그러한 뜻으로 입계하라.’고 하였습니다만, 어제는 밤이 깊어서 즉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정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나 대신의 계청으로 인하여 억지로 따르는 것이다. 금년은 재변이 매우 참혹한데, 복선하고 동악하면 내가 어찌 감히 마음이 편하겠는가.”하였다.</p>	<p>之。但今年災變慘酷，反覆思之，復膳動樂，於予心未安，勿捧傳旨可也。” 政院回啓曰：“昨日大臣共議曰：‘復正殿則不當減膳、撤樂，前例亦然，(兄) [況] 朝賀等禮，亦不得已用樂，令以此意入啓。’ 而昨因夜深，未即啓之。” 傳曰：“復正殿，亦爲不可，而因大臣啓，勉從之矣。今年災變，極爲慘酷，復膳動樂，予何敢安?”</p>
<p>명종 6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9월 29일(정축) 1번째기사 예조에서 회맹제와 문묘제의 친행에 대해 아뢰다</p>	<p>예조가 아뢰기를, “오는 윤9월 13일에는 마땅히 회맹제(會盟祭)를 행하고 이튿날은 연회(宴會)를 행해야 합니다. 다만 17일에는 마땅히 문묘제(文廟祭)를 친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4일은 곧 산재일(散齋日)이 되므로 연회를 행할 수 없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음복(飲福)을 하는 것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문묘제는 다시 날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물려서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교하였다.</p>	<p>○丁丑/禮曹啓曰：“來閏九月十三日，當行會盟祭，翼日行宴。但十七日當親行文廟祭，則十四日乃散齋之日，不可行宴，祭天飲福，亦不可退。文廟祭改卜日何如?” 傳曰：“退行可也。”</p>
<p>명종 6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윤9월 1일(기묘) 2번째기사 삼공이 복선과 동악을 청하자 회맹제 때 음악을 허락하다</p>	<p>사인(舍人) 이탁(李鐸)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정전(正殿)으로 돌아가시면 으레 반찬을 줄이거나 음악을 철폐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은 이미 정전으로 돌아가셨는데도 아직까지 반찬을 줄이시고 음악을 철폐시키시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또 즉위하신 이후로 군신(群臣)의 조하(朝賀)를 받지 않으셨는데, 군신의 조하를 받게 되면 부득이 조하를 받을 때에 음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복선(復膳)하고 음악을 쓰는 것이 마음에 편하지가 않다. 회맹제에 음복할</p>	<p>○舍人李鐸以三公意啓曰：“復正殿，則例不減膳撤樂，今者既復正殿，而尙減膳撤樂，至爲未安。且自即位後，未朝群臣，朝群臣則受賀時，不得不用樂。” 傳曰：“復膳用樂，未安於意。會盟祭飲福時，用樂可也。” 三公固請用樂，上乃許之。</p>

	<p>때는 음악을 써도 좋겠다.” 하였는데, 삼공이 음악 쓰기를 굳이 청하자, 상이 이에 윤택하였다.</p>	
<p>명종 6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12월 3일(경술) 1번째기사 자전과 함께 수렴하고 잇달은 재변에 따라 대신들의 중론을 듣다</p>	<p>대왕 대비가 사정전에 나아가 수렴하고, 상 역시 주렴 밖에 나아갔다. 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이기, 우의정 정순봉, 판중추부사 허자(許磁), 좌찬성 민제인(閔齊仁), 우찬성 황헌(黃憲), 좌참찬 심연원(沈連源), 우참찬 임권(任權), 공조 판서 윤사익(尹思翼), 형조 판서 정사룡(鄭士龍), 호조 판서 정세호(鄭世虎), 이조 판서 김광준(金光準), 대사헌 송겸(宋謙), 대사간 유진동(柳辰全), 부제학 원계검(元繼儉)이 돌아와 동서로 부복하였다. 자전이 하교하기를, “올해는 흉년이 크게 들어 걱정이 끝이 없는데, 해의 이변이 또한 이러하다.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하는 것인데, 덕이 없는 내가 어린 주상을 보도하면서 잘못된 일이 많기 때문에 천변이 이에 이른 것이다. 옛날 역사에 세 해가 한꺼번에 나타난 일과 다섯 해가 한꺼번에 나타난 일은 있지만 해처럼 생긴 것이 정양(正陽)에 서로 접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이것은 매우 심한 재변이다. 옛날에 엄자릉(嚴子陵)이 황제의 배 위에다 발을 얹자 즉시 하늘이 이변을 보였다. 그러니 지금의 재변도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조정의 중론(衆論)을 듣고자 하니 숨김 없이 다 말하라.” 하였다. 윤인경이 아뢰기를, “지금의 해의 변괴를 《천문지(天文誌)》에서 상고해 보았지만 이런 예가 없어 그 징응(徵應)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문지》에 이르기를 ‘해는 중앙(衆陽)의 정(精)으로 임금을 상징한다.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그 허물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하늘이 임금을 사랑하여 잘못을 견고하는 것이니, 임금이 공구 수성하면 재변을 상서(祥瑞)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상께서 즉위하신 후에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만일 잘못이 있었다면 신들이 대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마땅히 아뢰었을 것이지, 어찌 위에서 묻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상께서 청정(聽政)을 함께 하였으니 더욱 실</p>	<p>○庚戌/大王大妃御思政殿垂簾，上亦御于簾外。領議政尹仁鏡、左議政李芑、右議政鄭順朋、判中樞府事許磁、左贊成閔齊仁、右贊成黃憲、左參贊沈連源、右參贊任權、工曹判書尹思翼、刑曹判書鄭士龍、戶曹判書鄭世虎、吏曹判書金光準、大司憲宋堧、大司諫柳辰全、副提學元繼儉入伏于東西，慈殿教曰：“今歲凶荒太甚，憂慮罔極，日變又如斯。人事失於下，則天變應於上，予以薄德，輔導少主，心多謬誤，故天變至此。古史有三日竝見，五日同出，而未聞如日之狀者，相接于正陽，其爲變甚矣。昔者嚴子陵，加足於帝腹，一刻之間，天卽示異。當今之變，必有其由矣。欲聞朝廷衆論，悉言無隱。”尹仁鏡曰：“今此日變，憑考《天文誌》，則無相同之事，不可識其徵應矣。但其誌曰：‘日者衆陽之精，人君之象。人君有瑕，則必露其慝，以告示焉。’大抵天心仁愛人君，謹告其所失，而人君能恐懼修省，則轉災爲祥矣。主上卽位之後，</p>

	<p>덕(失德)한 바가 없습니다.</p> <p>《천문지》에 또 이르기를 ‘도가 있는 나라에는 해와 달이 빛이 나고, 해와 달이 빛나면 임금이 길(吉)하고 창성하며 백성이 편안하다.’ 하였습니다. 지금의 해의 변괴가 이에 이른 것은 음기(陰氣)가 성하여 양(陽)을 침해하는 징조입니다. 무릇 음기가 성한 것을 옛날 사람들이 혹 논하기를 ‘소인이 군자를 능멸하거나 이적(夷狄)이 중국(中國)을 침략할 징조이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용병(用兵)할 징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신은 태어난 지가 이미 오래여서 세상 일을 익히 보았습니다. 옛일들이 점차 변해가고 인심이 착하지 못하며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심지어 군신(君臣) 상하의 분수를 모두 모릅니다. 유생들의 의논 역시 더러 조정에서 행해지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임금이 권강(權綱)을 총람(總攬)한다면 정령 가운데 무슨 폐단될 일이 있겠습니까. 상께서 권강을 위에서 총람하여 조정 상하의 분수를 정정당당하게 하여 아래로 옮겨지지 않게 한다면 그 나머지 작은 폐단은 걱정할 것이 못되며 음이 양을 침해하는 재변 역시 그런 응험이 없게 될 것입니다.”</p> <p>하니, 자전이 답하기를,</p> <p>“권강을 총람하라는 말이 참으로 옳다. 이번의 재변이 이러하여 하늘의 뜻이 참혹한데 어찌 까닭이 없이 그렇겠는가. 전에 구언(求言)하는 전교를 내렸는데도 조정 상하가 생각을 말하여 상달한 자가 없어 상이 다만 공구 수성할 뿐이었다.”</p> <p>하였다. 이기가 아뢰기를,</p> <p>“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기강을 세우는 일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기강을 세우는 요점은 형벌이나 위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하의 분수를 정정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공과 육경에서 아래로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그 지위를 뛰어넘지 않고 각자 자기 직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은 상하의 분수가 거꾸로 되어 육경은 삼공의 일을 하고, 사대부가</p>	<p>少無所失之事，若有所失，則臣等在大臣之列，所當啓之，奚待上問？自上亦同聽政，尤無失德也。 誌又曰：‘日月行有道之國則光明，日月光明，則人君昌吉，百姓安寧。’ 今之日變，至於如此者，乃陰氣盛而侵陽之徵也。 凡陰氣盛者，古之論者，或以爲：‘小人陵君子，夷狄侵中國之徵。’ 或以爲：‘用兵之象。’ 小臣生歲已久，見時世亦熟。 古事漸變，人心不善，風俗不美，至於君臣上下之分，皆不知之。 儒生之議論，亦或有行於朝廷之上，誠非細故也。 人君總攬權綱，則政令之間，何有弊事乎？自上收攬權綱於上，使朝廷上下之分，井井堂堂，毋使下移，則其餘小弊，不足慮也，侵陽之變，亦無其應矣。” 慈殿答曰：“總攬權綱之言，誠是也。 今之災變如此，其慘酷天意，豈無所由而然乎？前下求言之教，朝廷上下，無有言其所懷而上達者，自上但自恐懼修省而已。” 李芑曰：“人君爲國，莫大於立紀綱。 立紀綱之要，非以刑罰威之也，但能使上下之分，井井堂堂，則自三公六卿，下至大夫、士，不越其位，而各盡其職矣。 今者上下</p>
--	---	---

육경의 일을 하여 차례를 넘어 위를 침해하니, 어떻게 그 직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폐단은 폐조(廢朝) 때부터 있어 왔는데, 중종(中宗)께서는 사람들을 자애(慈愛)하여 간하는 말을 물흐르듯이 따랐으며 사람을 쓰는 방법을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이 잘 인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침내는 조정이 세 차례 변란을 겪었습니다. 사대부·유생에서 홍문관·대간·시중에 이르기까지 학문의 힘으로 그 기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의기(意氣)만을 앞세웠기 때문에 비단 나라 일을 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자기 몸까지 보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처음의 재질(才質)은 아름다웠다 하겠지만 마침내 한 일이 그러했으니 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근래에는 조정의 일이 날로 잘못되어 정사(政事)가 대부에게 있으니, 나중에 가서는 배신(陪臣)이 나라의 명(命)을 잡을 것입니다. 그 폐단은 사대부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 각기 자기가 국법을 세우고 자기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번 조광조(趙光祖)가 정사를 할 때 신이 조광조에게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 비록 정승이 되더라도 도(道)를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어찌 다스려질 이치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요즈음에는 육조의 공사(公事)와 대간의 아픔을 위에서 따르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이는 신처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삼공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라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종조 때 홍문관이 대간을 공격하였는데 성종께서 다소 노기(怒氣)를 띠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정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냐?’ 하셨습니다. 대저 홍문관은 논사(論思)하는 자리로 그 직임은 문한(文翰)이며 때때로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중종 때부터 인물을 진퇴시키는 권한을 오로지 홍문관이 갖게 되었는데, 연소한 사람은 본디 노성(老成)한 사람 들처럼 노련하지가 못합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40세에 불혹(不惑)한다.’ 하였으니, 안자(顔子)나 민자건(閔子騫) 같은 재주라도 반드시 노성한 후에야 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之分顛倒，六卿爲三公之事，士大夫爲六卿之事，越次而上侵，何能各盡其職乎？此弊自廢朝有之，中宗慈仁愛人，從諫如流，用人得道。然而在下之人，不能善導，故終使朝廷三變焉。士大夫及儒生，至如弘文館、臺諫、侍從之輩，無學問之力，以變化其質，自以意氣爲賢，故非徒不能爲國事，終使其身，亦未保全而見敗。其初才質則可嘉，而其終所爲如此，實可惜也。近來朝廷之事日非，政在於大夫，其未必爲陪臣執國命矣。其弊不過在大夫士之列者，各自立國法而自毀之也。向者趙光祖爲政，臣謂光祖曰：‘汝若爲如此，雖爲政丞，必不能行其道也。爲國家事者，安有如此而能成治化乎？’且在今時，六曹公事及臺諫所啓，自上多有不從，如臣愚劣，在三公之位，故國事若是也。成宗朝弘文館駁擊臺諫，成宗微有怒色曰：‘汝等欲干預政事乎？’夫弘文館乃論思之地，其任則文翰，而有時訪問矣。自中宗朝，進退人物之權，專在弘文館，年少之人，固不如老成之諳練矣。孔子曰：‘四十而不惑。’雖如顔、閔之才，必至老成而

또 윤인경이 아뢰 ‘권강을 총람하라.’는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권강을 총람하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부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받들어 정령(政令)이 행해지게 됩니다. 지금 금주령(禁酒令)을 이미 내렸는데, 사대부들이 잔치하면서 술을 마시고 음악을 울리는 것이 풍년인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국법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멋대로 하는 것이니, 기강이 무엇을 말미암아서겠습니까. 낭청은 당상의 말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인(舍人)과 검상(檢詳)은 정승(政丞)의 낭청인데도 심지어 정승의 말을 거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로 보아도 기강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강을 닦는다면 어찌 이처럼 완만하겠습니까.”

하였다. 자전이 답하기를,
 “아뢰 말이 지당하다. 위아래가 각기 그 도를 다하면 어찌 행하여지지 않는 일이 있겠는가. 지금은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어 조금의 은혜라도 입히기를 생각하여 사헌부에서 바야흐로 병술[瓶酒] 갖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런 때를 당하여 멋대로 연회를 하는 것은 필시 연소한 사람이 국법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하였다. 정순봉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어린 나이에 즉위하시니, 사방 사람들이 그 다스림을 바라는 마음을 어찌 한시라도 잊겠습니까. 별로 실덕(失德)하신 일이 없는데 재변이 이러하니, 이는 다른 까닭이 있어 그런게 아니라 조정의 사체가 거꾸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저 권강은 마땅히 임금에게 있어야지 아래로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권강을 아랫사람에게 빼앗긴 듯한데 이렇게 되어서도 다스려 지기를 바란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성종 때에는 위에서 기강이 섰기 때문에 명분이 발라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두려워하고, 육조는 정부(政府)를 두려워하고, 소각사(小各司)는 육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전도된 일이 많아 재상은 재상의 일을 하

後道成也。且仁鏡所啓總攬權綱之言，誠是也。總攬紀綱，則上以使下，下以承上，政令可行也。今者酒禁之令已下，而士大夫宴飲動樂，無異豐時。是不畏國法，而恣行也，紀綱何由而立乎？郎廳不行堂上之言。至如舍人、檢詳，乃政丞之郎廳也，政丞之言，時不舉行，以此見之，可知無紀綱也。少能修舉紀綱，則何以如此緩慢乎？”

慈殿答曰：“所啓之言至當。上下各盡其道，則安有事之不行乎？今者百姓飢饉，思欲俾蒙一分之惠，而司憲府方禁持瓶酒。當此之時，恣行宴樂者，是必年少之人，不畏國法而然也。”鄭順朋曰：“主上以幼沖卽位，四方之人，佇見其治化，豈頃刻而忘乎？別無失德之事，而災變如此，是無他，朝廷事體顛倒故也。大抵權綱，當在於君上，而不可下移。今之權綱，似奪於下，如是而望其化之成，亦難矣。成宗朝，紀綱立於上，故名分井井，下人畏上之人，六曹畏政府，小各司畏六曹。是以朝廷無事。今則不然，事多顛倒，而宰相不得爲宰相之事，下人皆越次論事，治化何自而成乎？”李芑曰：“古語

	<p>지 못하고, 아랫사람들이 모두 차례를 건너뛰어 일을 의논하니, 치화(治化)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p> <p>하고, 이기가 아뢰기를,</p> <p>“옛말에 이르기를 ‘한 나라에 삼공이 있으니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하였습니니다. 지금은 사람마다 다 삼공인 셈입니다. 신은 듣건대 정사가 대각(臺閣)에 있으면 어지러워진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정사는 유생들이 모두 도모하려고 하니, 사리로 보아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자전이 답하기를,</p> <p>“나라의 기강이 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하의 분수가 문란한 것인데, 매양 바로잡으려 하지만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다.”</p> <p>하였다. 허자가 아뢰기를,</p> <p>“삼공이 ‘권강을 총람해야 한다.’고 아뢰는 말이 지당합니다. 참으로 권강을 총람한다면 음특(陰慝)이 소멸되고 양숙(陽淑)이 자랄 것입니다. 음특이 소멸되고, 양숙이 자라면 조정에는 명분이 정정 당당하게 됩니다. 금년의 흉황(凶荒)은 전고에 없던 바인데 위에서 진홀하는 일에 마음을 써 하교하심이 측달(惻怛)하기 때문에 법사에서 금주령을 내려 연락 유연(宴樂游衍)을 하지 못하게 계청하였습니다. 그러니 백료(百僚)들이 각자 법을 지켜 서로 두려워하고 삼가는 것이 옳은데, 전혀 법을 두려워 하지 않고 조금도 거리낌없이 연음(宴飲)하고 유락하기를 풍년이 든 때처럼 하고 있습니다. 법사가 비록 금란(禁亂)하는 서리(胥吏)를 내보내더라도 시종이나 대간들이 모여 연회하는 곳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을 무너뜨린 것이 시종에서 비롯되어 다 무너진 것입니다.</p> <p>또 정유년부터 탐욕스런 풍속이 크게 일어나 비록 《법전(法典)》은 있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아서 사대부들 사이에도 가림 주구가 그치지 않고, 나라에서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법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장리(贓吏)에 대한 법</p>	<p>云: ‘一國三公, 吾誰適從?’ 今時則人人皆爲三公矣。 臣聞政在臺閣則亂, 今時之政, 儒生皆欲謀之, 其於事理何如乎?” 慈殿答曰: “國綱不張, 故上下之分紊矣。 每欲矯之, 而未得其要也。” 許磁曰: “三公所啓總攬權綱之言, 至當。 苟能總攬權綱, 則陰慝消而陽淑長矣。 陰慝消而陽淑長, 則朝廷之上, 名分井井堂堂矣。 今歲凶荒, 前古所無, 自上憂念賑恤之事, 下教惻怛, 故法司啓請行禁酒之令, 毋得宴樂游衍。 百僚師師, 交相畏忌可也, 專不畏法, 少無所忌, 宴飲遊樂, 無異豐年。 法司雖出禁亂之吏, 如侍從、臺諫會宴之處, 則不敢入。 是則毀國家之法者, 皆自侍從而盡毀之也。 且(句) [自] 丁酉年, 貪風大振, 雖有法典, 不以介意, 士大夫之間, 求斂無已, 國亦不之禁。 國法不重, 故贓吏之法, 亦不嚴, 或欲謀免而發明。 若此, 則法有土崩之勢, 竟無奉行之人矣。” 慈殿答曰: “酒禁禁亂之吏, 無勢者則捉課, 有名朝士會處, 則不得窺見。 此皆侍從、臺諫, 不從人君之令而然也。 朝廷贓吏之法不嚴, 故百姓不支, 而漸</p>
--	--	---

	<p>역시 엄하지 않아 혹 모면하려고 발명(發明)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이 토봉 와해되어 마침내는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자전이 답하기를, “금주령을 단속하는 서리가 세력 없는 자는 잡아 처벌하고 이름 있는 조사(朝士)들이 있는 곳은 살펴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모두 시종과 대간들이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장리(贓吏)에 대한 조정의 법이 엄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탱하지 못하고 점차 떠돌게 되니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는가.” 하였다. (생략)</p>	<p>至流離矣，何以爲國？”閔齊仁曰：“近來奢侈成風，賤孽及市隸，皆以錦綉珠玉裹身，士大夫之家，婚姻之時，亦極侈靡，非錦繡珠玉則不爲。雖託貿易，求索無厭，故守令不獲已應答備送，是乃剝割于民也。且紀綱不立，故人心不和，自致災變。若政令問過誤之事，則自上深察而修舉，庶紀綱自立矣。修德之要，莫若以仁德爲本。”黃憲曰：“百官懶慢，無如此時，而況上下相混，賤妨貴下陵上，皆由於等威不明也。其漸至於弑父與君，是實可懼。中宗慈仁愛士，從諫如流，誠賢聖之主也。但不明於好惡是非，故朝廷累變。必好惡是非明於上，然後朝廷上下，同寅協恭，情意相孚。今者在朝之臣，不知上之好惡是非，故傍觀而不爲國事也。至如尹任所爲，人孰不知？其所以不言者，歷見中宗朝四十年翻覆之事，故咸懷憂懼保身之計也。誠由是非好惡不明，今日爲是，明日爲非，今日以爲君子，明日以爲小人之故也。可謂中宗之培養，得其道乎？”慈殿答曰：“尹任幾危宗社之時，在朝列者，所當憤激除亂，而皆懷疑畏，是豈美事</p>
--	--	--

		<p>乎？今欲培養士氣者，使節義之臣，不顧其身，盡心國事也。”沈連源曰：“今者公道不行，私事實多，至於進退人物之際，豈能光明正大乎？致如此之變無怪矣。使公道昭明，發號施令，一出於光明正大，則紀綱自立，上下各盡其道，陰邪之氣，自爾消滅矣。”任權曰：“今人心不順，年運不豐，（冊）〔凡〕事大不如古。感召災變，豈無其由？孔子曰：‘君君，臣臣，父父，子子。’自上盡其道，而卿相以下，皆得君子而用之，則其人必盡心竭力，布昭公道，紀綱自立矣。若有一毫私念，則雖欲使人奉行，必不可得矣。法令又非制下之道也。頃者慮下人之緩慢，頻數摘奸，臣意以為恐妨大體也。大公至正之道，自上而下，則紀綱立而萬事舉矣。”慈殿答曰：“政令雖下，而京外懶慢成風，專不承法，故不得已行摘奸矣。”權曰：“總攬權綱之事，以仁厚之德，為基業，然後國脈可以延長矣。”尹思翼曰：“今之日變，雖未可知其某事之應，但朝廷之上，自三公六卿，至百執事，各有所職，而近來有陵上之風，紀綱掃地。奢侈成風，百姓</p>
--	--	---

		<p>艱難，流亡爲盜，豈不寒心哉？”鄭士龍曰：“今者紀綱解弛，朝廷之事，廢墜者多。自上若欲振起，須先立其紀綱也。然其要不必別立他法也。政府統六曹，六曹摠小各司，則自然有體統，而事易治矣。”金光準曰：“頃者人心，多誤而稍定。外間豈無反側之人乎？若有之，則耳目之官及大臣，自然啓之矣，須加詳察焉。自上於政事之間，少無過舉，雖古之聖王，何以加此？但外方守令，不能擇差，故率皆貪婪，以侵漁爲事。《書》曰：‘百姓困窮，天祿永終。’伏願省察焉。且朝廷乏人，莫甚於此時。邊將有闕，亦無可擬，故以訓練院都摠府官員，欲注擬，則或被論，或老耗，如破東而補西。武班之人，須及膂力方強之時用之，故不計資格日月久近，乃可以得人矣。古者京官重而外任輕，故文官不欲爲外任矣。今則文官求外任者，躬請於門庭，或捧簡而來請，廉恥之道，掃地盡矣，至爲寒心。盡心於國事者，惟南行之官而已。”宋堯曰：“今者紀綱不立，上下紊序。若至公無私，如天之無私覆，地之無私載，日月之無私</p>
--	--	--

		<p>照，則上行下效，朝廷正四方正萬民正，何患乎紀綱之不立哉？近聞耳目之官所啓，如貴近宦寺之事，則自上留難，而雖得蒙允，不能無勉強從之，恐有一毫不公之私意也。” 柳辰全曰：“日變如是，固當察之於朝廷之上，而兵象亦不可不慮也。古人曰：‘有備無患。’須於此時，備盡兵禦可也。兵使、水使之軍官，先知武才之實，然後帶率甚當，而近來以簡札充之，</p>
<p>명종 6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12월 17일(갑자)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지방 곡물을 모리하는 자들을 추고하라고 하다</p>	<p>헌부가 아뢰기를, “진휼청 사목(賑恤廳事目) 가운데, 각 고을의 사저곡(私儲穀)과 서울에서 베풀하는 인원(人員)의 농소(農所)에서 나는 곡식을 관에 들이고 원하는 것으로 대가(代價)를 치루어 주는 것을 허락한 것은 그 경내(境內)의 곡식으로 기민(飢民)을 살리고자 해서입니다. 그런데 경중(京中)에서 모리(牟利)를 하는 무리들이 비싼 값을 받고자 하여 외방의 곡물을 운반하는 배를 중도에서 가로막고는 모두 사들여 경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 경중의 곡물도 많이 사들여 베풀하는 인원의 가노(家奴)라고 가탁하여 호조의 공문을 받아가지고는 배나 육로로 운반하여 각관에 바치고 있습니다. 또 물화(物貨)를 많이 싣고 각도로 가서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하여 승두(升斗)로 무역하여 사저라 칭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하의 곡식 값이 올라 1되 값이 배 3필에까지 이르고, 외방의 곡물 역시 바닥 나서 봄철이 되면 시장에는 쌀 한 톨 없게 되어 배를 끼안고 죽기만을 기다릴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면서 곡식을 바친 자는 부(府)에서 마야호로 조사하고 있으니, 외방 각 고을에서도 원래 살던 사람 이외에 경상(京商)으로서 공문을 가</p>	<p>○憲府啓曰：“賑恤廳事目內，各官私儲穀及京從仕人員農所穀，許令納官，從願給價者，欲以其境內所有穀納之，以活飢民也。京中牟利之徒，欲受重價，外方船運穀物，要於中路，遮截販賣，使不得入京。且京中穀物，亦多質取，假托從仕人員家奴，冒受戶曹公文，船輸陸運，納于各官。又多載物貨，分往各道，眩誘愚民，質取升斗，稱爲私儲，以逞取利之謀。都下穀貴，一升之直，已至三四，外方穀物，亦匱竭，若至開春，市無粒米，人將抱布待死，誠非細故。京居納穀人，則府方推之矣。外方各官元居人外，京商持公文下去者，令各道監司，無遺捕捉，</p>

	<p>지고 내려온 사람은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빠짐없이 붙잡아 추고하여 치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곡물은 모두 관에서 몰수하고, 이미 납부한 곡물 역시 값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호조의 관리들이 사목의 본뜻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공문을 주어 이런 폐단을 일으켰으니, 매우 그릅니다. 함께 추고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경상으로서 곡식을 바친 자를 치죄해야 한다고 아뢴 뜻은 지당하다. 당초 법을 만들 때 곡식을 납부하는 법만 세우고 폐단을 방지하는 방책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틈타 것처럼 이익을 꾀하는 것이다. 이제 만약 관에 납부한 곡식을 한결같이 값을 주지않고 죄를 준다면 그들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인데 억울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대신들에게 수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호조 관리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p> <p>하였다. 대신들이 의논드리기를, “당초에 폐단을 방지하는 계책을 만들지 않았으니, 지금 별도로 법을 세워 죄를 줄수는 없습니다. 경상이 이미 납부한 곡식은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당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推考治罪。其所收合穀物，請竝沒官，已納穀物，亦勿給價。戶曹官吏，非不知事日本意，而乃給公文，致有此弊，至爲非矣。請竝推考。”答曰：“京商人納穀者治罪事，啓意當矣。當初立法之時，只設納穀之法，不立防弊之策，故乘時射利者如此。今若納官之穀，一皆不給其價，從而罪之，則是亦天民，不無冤悶。當議于大臣而處之。戶曹官吏事如啓。”大臣等議以爲：“當初不立防弊之(之)策，今不可別立法而罪之。京商已納之穀，還給其人至當。”從之。</p>
<p>명종 6권, 2년(1547 정미 / 명 가정(嘉靖) 26년) 12월 18일(을축)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각도의 곡식을 모리하는 자들의 처벌을 청했으나 불허하다</p>	<p>헌부가 아뢰기를, “경상으로서 곡식을 납부하는 자들이 때를 틈타 이익을 독점하는 폐단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어 봄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점차 금단(禁斷)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관에서 몰수하지 않더라도 그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각도로 하여금 낱알이 붙잡아 추고하여 치죄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당초에 법을 세우지 않았다가 이제 만약 죄를 준다면, 그들 역시 하늘의 백성인데 억울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했으니, 치죄할 것 없다.”하였다.</p>	<p>○憲府啓曰：“京商納穀人等，乘時牟利，冒濫之弊，及於貧民，未至開春，已不聊生。此而不懲，漸難禁斷。雖不沒官，其罪則不可不懲，請令各道，一一捕捉，推考治罪。”答曰：“初不立法，今若罪之，則是亦天民，不無冤悶。故已與大臣議定，不須治罪。”</p>

<p>명종 7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1월 5일(임오) 2번째기사 삼공·육조 판서와 수령의 잉입, 조운, 역로 등의 일을 의논하다</p>	<p>전교하기를, “농사철 이전의 정사(政事)에서 체직될 수령들은 법사(法司)가 아뢴 대로 이미 체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다만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만일 개만(箇滿)이 되어 농사일이 한창 바쁜 때에 체직시킨다면 더욱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추성(秋成) 이전까지로 한정하라. 다른 수의(收議)할 일도 많으니, 대신을 불러서 의논하라.” 하였는데, 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이기(李芑), 우의정 정순봉(鄭順朋), 병조 판서 상진(尙震), 호조 판서 정세호(鄭世虎), 이조 판서 김광준(金光準)이 아뢰기를, “농사철 이전에 체직될 수령에게 기한을 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6월이면 농사의 풍흉(豐凶) 여부를 대략 알 수 있으니 6월에 체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사철 이전에 체직할 경우에는, 춘분(春分) 이전까지의 복무 일수(服務日數)를 계산해서 개만이 된 사람은 체직하되 구황이 긴급한 곳은 체직하지 말아야 하는데, 구황이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경기(京畿)의 경우에는 체직하여야 합니다. 도둑을 잡은 수령은 공(功)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부득불 상을 주어야 하는데, 자궁(資窮)이 된 사람일 경우 상가(賞加)725) 하는 것은 너무 중할 듯하니, 그 다음가는 상으로 논하여 그가 체직될 때 품계를 올려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함흥(咸興) 고을의 진상(進上)과 도회(都會)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곳 감사의 서장(書狀)에 의거해서 해야 합니다. 책(冊)을 간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선 중지하였다가 후년(後年)에 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각도(各道)의 문신 수령(文臣守令)을 열읍(列邑)에 나누어 보내 교회(教誨)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문관(文官)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 형편상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전라도에서 바치는 조세(租稅)를 아산창(牙山倉)으로 옮겨 받아들이는 일에</p>	<p>○傳曰: “農前政, 應遞守令, 以法司所啓, 已命勿遞, 但不爲定限。 若至箇滿而農務方殷時遞之, 則尤爲有弊, 限秋成事前。 亦多有收議之事, 其召大臣議之。” 領議政尹仁鏡、左議政李芑、右議政鄭順朋、兵曹判書尙震、戶曹判書鄭世虎、吏曹判書金光準啓曰: “農前應遞守令限定事, 若六月則農事實不實可知, 六月遞之。 農前春分前, 日數計之, 箇滿者遞, 救荒急處勿遞, 救荒雖急, 京畿則可遞。 捕盜守令, 不無其功云, 則不得不蒙賞, 若資窮者, 則賞加似重, 論以之次之賞, 遞時陞品何如? 咸興官進上都會事, 依監司書狀爲之。 印冊事, 時方減省, 待後年印之爲當。 各道文臣守令, 分授列邑教誨事, 文官有數, 勢不得施之。 全羅道貢稅, 牙山倉移納事, 南道漕轉, 非但其來已久, 亦學操舟之術, 今不可輕改。 量田事, 守令與隣邑守令, 相參爲之後, 各別遣京官審察之事, 戶曹爲事目爲當。 漕船致敗處徵穀事, 趁時不得拯出, 故雖或拯出, 四五月之間, 日候甚熱, 一二日之間, 腐不可食。 分徵水邊居民, 雖似曖昧,</p>
--	---	---

대해서는, 남도(南道)에서 조운(漕運)해운 유래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배[舟]를 조종하는 기술을 배우는 일이기도 하니 지금 선뜻 그 전례를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양전(量田)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령들이 각기 인읍(隣邑)의 수령과 더불어 서로 참작해서 한 다음에 각별히 경관(京官)을 파견하여서 자세히 살필 일로 호조(戶曹)에서 사목(事目)을 만드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운선(漕運船)이 침몰하거나 파선되었을 경우 그 손실된 곡식을 징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침몰된 곡식은 그 즉시 건져 낼 수 없기 때문에 혹 뒤늦게 건져 낸다 하더라도 4~5월 사이에는 기후가 매우 더워 하루 이틀 사이에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변(水邊)의 거주민에게 나누어 징수하는 것이 비록 억울한 일이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곡(國穀)을 이 때문에 징수하지 않는다면 일이 매우 허술하게 됩니다. 배가 파선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니, 전례대로 수변의 거주민에게서 징수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생략)

然國穀若以此不徵，則甚爲虛疎。致敗之時不多，依前徵之無妨。良才、樂生、迎曙下三道驛子入居事，本驛之人，勢不可支，故初以爲之。且依接處，作舍以給事，年年隨作隨撤，不可爲之。蘇復之策，在於察訪，皆不可施。軍額日減事，朝廷時方憂慮。冒屬忠贊衛及向化多在，時方推刷，欲充其額，他無可措之事。如此而不得充額，然後更爲議處。軍籍事，非如量田之例，若推刷於此，則便移於他處，勢不可輕易爲之。守令歲抄分明，則雖不別爲軍籍可也。步兵價事，鹽稅布各邑所存者少，而步兵之數則多，不可施之。七站事，法立不久，水鐵匠有田地土着者充定，監司更加推刷定之，今不可以此輕改也。”三公又啓曰：“兩界守令，祖宗朝只給衙祿。申允武爲兵曹判書時，始付軍職。軍職有數，故守門將者，晝夜勤苦守直，而不得付祿者，三十餘人，請依祖宗朝兩界守令勿給祿，只給衙祿。忠贊衛遞兒，只五六，故或有終身不得受祿者，或有得受於十年之外者，請減省何如？”答曰：“一依議得爲之。忠贊衛遞兒永

		減未便，限凶年權減可也。”
<p>명종 7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1월 8일(을유) 1번째기사 조강에 나가자 동지경연사 임권이 수령들이 구황에 힘쓰게 하라고 하다</p>	<p>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임권(任權)이 아뢰기를, “지난해는 매우 흉황(凶荒)하여 화곡(禾穀)만 부실했을 뿐 아니라, 목화(木花)는 종자(種子)도 없게 되었고 잠종(蠶種) 역시 절멸되어 버렸습니다. 농업(農業)과 잠업(蠶業) 두 가지를 다 실패하여 의식(衣食)의 근원이 모두 고갈되었으니 백성들의 곤궁함을 알 만합니다. 게다가 역질(疫疾)까지 발생하여 경성(京城)이 가장 심한 형편이니, 국가에서 백성을 진휼하는 것은 참으로 각별히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방 수령들은 자봉(自奉)에만 급급하고 백성 구제하는 일은 매우 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미 감사에게 위임하여 그들을 규찰하도록 하였습시다마는, 또한 시종(侍從)이나 대간(臺諫)을 의당 파견하여, 추종(騶從)을 줄이고 여항(閭巷)에 드나들면서, 혹 구황에 힘쓰지 않는 수령이 있으면 그 중에 더욱 심한 자를 적발해서 곧바로 아뢰어 파출(罷黜)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따른 영송(迎送)의 폐단쯤은 따질 것이 못 되니, 각별히 유념하소서. 그리고 평소 정원(政院)에 내리는 술은 매일 5병(瓶)씩인데, 그 밖에 또 끌어다 쓰는 것이 끝이 없어 한 달에 2~3백 병까지 쓰므로 1년 동안에 무려 천여 병에 이르고 있으니, 외람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의 물품은 본디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이처럼 남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은 가장 근밀(近密)한 곳인데도 이러한데 더구나 천리 밖의 수령들이 주식(酒食)을 허비하는 것이야 어찌 이루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같은 흉년에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목숨도 보존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수령들이 여전히 연락(宴樂)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금주(禁酒)할 일을 외방에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또 아뢰기를, “사람은 하루에 두 끼를 먹지 않으면 주리는 법인데, 지금 백성들은 하루에</p>	<p>○乙酉/上御朝講。 同知經筵事任權曰：“前年凶荒，非徒禾穀不實，木花無種，蠶種亦絕。 農桑之事兩失，衣食之源俱竭，生民之困窮可知。 且癘疫之發，在京城尤熾，國家之賑恤，誠非偶然，而字牧者，厚於自奉，薄於恤民。 國家已委監司而糾察之，亦當遣侍從、臺諫，出入之人，減其騶從，出入閭巷，脫有守令，不謹於救荒，則拔其尤甚者，而直啓罷黜，未爲不可。 迎送之弊，不足計也，別加留念焉。 且政院常時日下之酒，一日五瓶，而又引用無厭，一朔之用，至二三百瓶，一年之內，多至千餘瓶，猥濫莫甚。 國物自有恒數，而濫用如是。 政院近密之地，而尚且如此，況四方千里之外，守令之糜費酒食，何可勝數？ 如此荒歲，百姓不給朝夕之命，而守令之宴樂，猶舊可乎？ 禁酒之事，下諭外方何如？” 又曰：“人情一日不再食則飢，而今之民不得一時之食，草食亦至於絕矣，父子兄弟流離者相續。 愚臣念此，寢不安席。 《書》曰：‘民非后，罔克</p>

	<p>한 끼도 먹지 못하는 실정인데다 초식(草食)마저 다 떨어진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부자 형제(父子兄弟)가 서로 헤어져 떠도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신은 이 정상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 같아 잠자리가 편치 못합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서로 바로잡아서 살아갈 수 없으며,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온 천하에 임금 노릇을 할 수 없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사해(四海)가 곤궁하면 천록(天祿)이 영영 끊어지리라.’ 하였으니, 상께서 의당 두려워하셔야 할 일입니다.”</p> <p>하였다.</p>	<p>胥匡以生；后非民，罔以辟四方。’ 又曰：‘民惟邦本。’ 又曰：‘四海困窮，天祿永終。’ 在上所當惕念者也。”</p>
<p>명종 7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1월 14일(신묘) 1번째기사</p> <p>사헌부에서 구황 경차관의 폐해를 아뢰고 정지를 청했으나 불허하다</p>	<p>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구황을 하기 위해 경차관을 명하여 보내는 것이 어찌 옛일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겠습니까. 이는 실로 굶주린 백성을 몹시 측은하게 여겨 부지런히 구휼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비록 경관을 보내기는 했지만, 대개 수많은 열읍(列邑)의 벽촌(僻村)까지 직접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수령들은 견책(譴責)을 면하기 위해 몰래 식염(食鹽)을 동·서(東西)로 이리저리 옮겨 놓아 점고(點考)에 대비하고, 경관이 지나간 뒤에는 그 식염을 다시 모두 환수(還收)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다른 마을로 밥을 빌어먹으러 나간 자가 있으면 그 빈 집이 경차관의 눈에 땄까 염려하여 즉시 그 집을 헐어버리고 집터를 깨끗이 닦아 놓아서 마치 사람이 살던 데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자기 집을 다시 찾아온 사람도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 버리므로 백성들이 모두 ‘경차관이 백성을 진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을 괴롭힌다.’고 한다 합니다. 더구나 흉황으로 인한 고통은 역리(驛吏)들에게 더욱 심합니다. 한번 경관을 영송(迎送)하고 나면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하게 될 것이니, 이런 때에는 사행(使行)이 번다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경차관의 행차를 간략하게 하라고 하더라도 종자(從者)와 사환(使喚) 등 데리고 가는 인마(人馬)가 모두 열씩은 충분히 될 것이니, 이 수가 열읍</p>	<p>○辛卯/憲府啓曰：“今欲救荒，命遣敬差官，豈但因循古事？實是勤恤惻怛之美意。然前者雖遣京官，許多列邑村落僻遠之處，多不能親到。爲守令者，欲免譴責，潛將食鹽，東西轉移，以備點考，過境之後，轉皆還收。民有就食他村者，則恐爲敬差官所見，卽撤其家，平治基址，若非人居。然還集者亦無所依，故民皆曰：‘敬差官，非救民，乃病民也。’ 況荒饑之極，驛吏尤甚。一經送迎，僵屍相望，當此之時，使命之行，益不可煩多也。敬差官之往，雖令簡約，而從人伴尙所騎人馬，將不下十餘，以是傳食列邑，其一日支供所費，足活飢民數十。各道救荒之責，專委監司，別加措置，詳計留穀之</p>

	<p>(列郡)에 옮겨 다니며 먹을 경우 이들에게 하루 동안 지공(支供)할 비용을 가지면 굶주린 백성 수십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 도의 구황하는 책임은 오로지 감사(監司)에게 맡겨 특별히 조치를 하여 남아 있는 곡식 수량을 자세히 헤아리고 굶주린 백성을 세밀히 파악하여 제때에 진구해서 온전하게 모두 구할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도사(都事)로 하여금 종자를 간소하게 데리고 아주 궁벽한 시골까지도 드나들면서 만일 굶어 죽은 송장이 있거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떠도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일이 아뢰어서 그곳 수령을 파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경차관을 따로 보내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실지 혜택을 입을 것이고, 폐단 역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니 경차관을 보내지 말아서 소요스러운 폐단을 제거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사행(使行)이 왕래하는 데 대한 폐단을 어찌 헤아리지 않았겠는가. 다만 근래에 완만한 풍습이 이미 이루어져서 경중(京中)의 관리도 조정의 명령을 잘 봉행(奉行)하지 않는 터인데 더구나 천리 밖 수령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지금 한창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때 속히 경관을 보내 궁벽한 시골까지 드나들면서 살피게 하면 곧 죽어가는 백성이 어찌 혜택을 입지 않았겠는가. 경관을 보내는 일은 굳이 고칠 것은 없다.”하였다.</p>	<p>數，審知飢困之民，趁時賑救，使得全活。又令都事，簡其趨從，雖窮村僻巷，無不出入，如有餓殍流離者，一一啓罷守令，則雖不別遣敬差官，民蒙實惠，弊亦可祛，請勿遣，以除騷擾之弊。”答曰：“往來之弊，豈不計之？但近來慢習已成，京中尙不奉行，況千里之外乎？今方民生飢死之時，當速送京官，出入窮村僻巷，則將死赤子，豈不蒙惠？不須改之。”</p>
<p>명종 7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1월 19일(병신) 1번째기사 각도의 물선을 감면토</p>	<p>전교하기를, “지난해 각도(各道)의 물선(物膳)을 감제(減除)할 때에 함경도의 청어(靑魚)와 과어(瓜魚)는 친신(薦新)할 것 이외에는 금년까지 전감(全減)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이것을 봉진(封進)해 왔다. 이것으로 본다면 모든 공사(公事)가 중도에 막혀서 백성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관(各官)의 공물도 이미 호조로 하여금 양감(量減)하게 하였는데, 이것 역시</p>	<p>○丙申/傳曰: “前年各道物膳減除時, 咸鏡道靑魚、瓜魚薦新外, 限今年全減, 而今乃封進。以此見之, 凡公事中滯, 而民不得蒙惠, 可知也。各官貢物, 已令戶曹量減矣, 無乃類此而不</p>

<p>록 했음에도 봉진하자 더욱 견감토록 하다</p>	<p>혹 저 일처럼 감(減)하지 않고 기민(飢民)들에게 독책하여 바치도록 하고 지나 않은지 물어 보도록 하라. 그리고 각사(各司)에 남아 있는 물품 중 앞으로 1~2년 동안 지공(支供)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더 견감(蠲減)할 일을 해조(該曹)에 말해 주라.”하였다. 이때 팔도에 흉황이 극심하여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하였으나 진구할 대책이 없었다. 늘 구황 정사를 염려한 나머지 이 전교가 있었으니, 백성을 진휼하려는 뜻이 지극하다 하겠다.</p>	<p>減，責辦於飢民乎？其令問之。且各司遺在之物，可以支供一二年者，加蠲減事，言于該曹。”是時凶荒太甚，八道皆然，餓殍相望，賑救無策。每軫宵旰之慮，而有是教，其恤民之意至矣。</p>
<p>명종 7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1월 21일(무술) 1번째기사 진휼사 민제인의 건의로 동·서 진제장과 상평창을 열게 하다</p>	<p>진휼사(賑恤使) 민제인(閔齊仁)이 아뢰기를, “경성(京城)의 사족(士族)들이 태반이나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휼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떠도는 백성이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동·서(東西)의 진제장(賑濟場)을 열어서 구휼하소서. 또 듣건대 시중에 쌀이 매우 귀하다 하니, 상평창(常平倉)을 속히 열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戊戌/賑恤使閔齊仁啓曰：“京城中士族家，殆半飢餓，故時方賑濟矣。閭里間流離之民，比來漸多，請設東西賑濟場救之。且聞市上米穀甚貴云，常平倉請速開給。”傳曰：“皆如啓。”</p>
<p>명종 7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1월 25일(임인) 2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윤원로의 별치부 정지와 부마의 추고를 정지하라고 건의하다</p>	<p>간원이 아뢰기를, “죄인 윤원로에게 별치부(別致賻)를 명하신 것은 악(惡)을 징계하는 뜻을 전혀 잃은 것입니다.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부마가 창기 집에서 잠깐 일은 조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 조정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것은 이미 부당합니다. 또 죄줄 근거도 없는데 억지로 금주령(禁酒令)으로 분부하시니, 이것은 정도(正道)가 아니어서 성정(聖政)에 누가 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자전(慈殿)께서 거듭 하교하셨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윤원로의 일은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아뢰니 윤택하였다.</p>	<p>○諫院啓曰：“罪人尹元老，命別致賻，殊失懲惡之義。請還收成命。駙馬宿娼，非朝廷所關，而使朝廷治之，已爲不當。又罪之無據，強以酒禁之令爲教，竊恐似涉非正，有累聖政。”答曰：“慈殿再三教之，亦不畏戢，故令朝廷治之。元老事，不允。”後累啓，依允。”</p>
<p>명종 7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1월 25일(임인) 2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윤원로의 별치부 정지와 부마의 추고를 정지하라고 건의하다</p>	<p>좌찬성 민제인이 실록청 당상·종부시 제조·판의금부사를 사퇴하니, 실록청 당상을 체직하라고 명하였다. 제인이 이어서 아뢰기를, “진휼 등의 일은 상께서</p>	<p>○戊申朔/左贊成閔齊仁辭實錄廳堂上、宗簿寺提調、判義禁府事，命遞實</p>

<p>27년) 2월 1일(무신) 1번째기사 좌찬성 민제인이 체직을 청하고 군량으로 진흥하는 일을 아뢰다</p>	<p>매우 진념하고 계시는데, 소신이 상의 뜻을 몸받으려는 마음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오부(五部)의 관원은 친히 지시하여 보냈고 관령(管領) 등도 모두 친히 보고 지시하였습시다마는, 관원은 비록 마음을 다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랫사람 가운데 어찌 범람한 일이 전혀 없겠습니까. 전에 전교를 보건대, 굶주린 백성이 혜택을 입지 못할까 염려하셨으므로 더욱 황공스럽습니다. 그런데 진제장에 취식(就食)하는 사람은 50여 인뿐인데, 성중(城中)에 굶주린 사람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취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황해도에 유랑하는 백성 중 죽은 자가 매우 많다고 하기에 신이 본도(本道)의 감사에게 이문(移文)하였는데 아직 회보(回報)가 오지 않았습니다. 양계(兩界)가 비록 농사는 실패했다 하지만, 신이 일찍이 보건대 저축해 놓은 군량(軍糧)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뒷날의 군량 문제를 비록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것으로 우선 목전의 급한 상황은 충분히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황해도는 본디 쌓아 놓은 곡식이 없으니 저 유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신은, 속히 경곡(京穀)을 옮겨가면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자 삼감(軍資三監) 곡식의 원수(元數)는 50여만 석이지만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썩거나 축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옮겨 가면 근본이 탕갈될 것이니 참으로 먼 앞날을 경영하는 계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전의 일은 사뭇 급한데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어찌 뒷날 쓸 일을 생각해서 목전의 급한 백성들을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지난해의 흉황은 근고에 없던 것이다. 굶주린 백성들이 즐비하게 죽어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몹시 측은한 마음이 더해진다. 지금 경이 자상하게 아뢴 구황책(救荒策)이 매우 가상하다. 곡식을 옮겨가는 일은, 뒷날 대신이 예궐(詣闕)할 때에 경도 들어와서 호조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라.” 하였다.</p>	<p>錄廳堂上。 齊仁仍啓曰：“賑恤等事，自上軫念至矣，小臣欲體上意，豈有極乎？ 五部官員，親自教送，管領等亦皆親見教之，官員雖有盡心者，而下人豈盡無汎濫之事乎？ 頃見傳教，慮有飢民，不得蒙惠，尤爲惶恐。 賑濟場聚食之人，只五十餘人，城中飢餓之人，豈止此乎？ 其不就食，未知其所以然。 且聞黃海道，流民死者甚多，臣移文于本道監司，時不回報矣。 兩界雖曰失農，臣曾見之，軍糧積儲有餘。 故他日軍糧，雖不可不計，亦足以救目前之急。 黃海道則本無儲穀，流移之民，將何以救之？ 臣意若速移轉京穀，則庶可救活，而軍資三監之穀，元數五十餘萬碩，歲月已久，豈無腐朽虧欠之數乎？ 以此移轉，根本虛竭，誠非經遠之謀。 然目前之事方急，而更無他條，豈計後用而不救乎？” 傳曰：“前年凶荒，近古所無。 每聞飢民，顛死溝壑，輒增痛惻。 今卿詳啓救荒之策。 至爲可嘉。 移轉事，後日大臣詣闕時，卿亦入來，與戶曹議定。”</p>
---	--	--

<p>명종 7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3월 9일(갑신) 1번째기사 문소전의 조선과 연은 전의 석션을 살피다</p>	<p>상이 문소전(文昭殿)의 조선(朝膳)을 살피고, 연은전(延恩殿)의 석선(夕膳)을 살폈다.</p>	<p>○甲申/上視朝膳于文昭殿， 夕膳于延恩殿。</p>
<p>명종 7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3월 17일(임진) 2번째기사 소대하자 참찬관 주세 봉이 성안 사람들의 굶주림에 대해 아뢰다</p>	<p>상이 참찬관 주세봉을 소대하니 주세봉이 아뢰었다. “신이 며칠 전 출사(出仕)할 때 영추문(迎秋門) 밖에 허기진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승지(承旨)의 말 앞에서 큰 소리로 배고픔을 하소연하다가 땅에 쓰러져 기절하였습니다. 하인(下人)을 시켜 불러 보게 하였으나 기식(氣息)이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에게 죽을 먹이게 하였더니 기맥(氣脈)이 소생하는 듯 하였습니다. 서울 안에도 기민이 이와 같으니, 천리의 밖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 또 들으니 어느 마을에, 부모가 굶어서 누워 있자 그 아들이 곁에서 지키고 있다가 죽게 되자 그 옷을 벗겨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은 그 옷을 팔아 밥을 사먹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 굶어서 병든 사람을 자주 적간하자, 간교한 아전은 죄책(罪責)을 받을까 걱정하여 밤을 틈타 산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까지 한다 하니, 이런 따위의 일은 차마 들을 수도 없습니다.”</p>	<p>○上召對。 參贊官周世鵬曰：“臣頃日仕進時，迎秋門外，有一飢人，於承旨馬前，高聲訴飢，仆地悶絕。 使下人呼之，氣已絕矣。 令其里人，飲以醬水，似有氣脈。 輦轂之下，飢民若此，千里之外，蓋可想矣。 臣又聞之，里中有父母飢臥，其子守之，及其將死，脫其衣出去，蓋欲賣食也。 且飢病之人，頻數摘奸，奸吏恐被罪責，至有乘夜轉曳生人者云。 此等事，不可忍聞。”</p>
<p>명종 7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3월 18일(계사) 3번째기사 삼공들과 숙의 간택· 일본 사신 접대·구휼 등의 일을 논의하다</p>	<p>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이기(李芑), 우의정 정순봉(鄭順朋), 진휼사 민제인(閔齊仁), 호조 판서 정세호(鄭世虎), 참판 조언수(趙彦秀), 참의 원혼(元混)이 부름을 받고 빈청에 나와서 자전계 의계(議啓)하기를, “지금 국상(國喪)을 지낸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후사(後嗣) 둘 길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숙의(淑儀) 간택(揀擇)은 시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신들이 계청(啓請)하는 까닭은, 꼭 금년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지금 경외(京外)에 금혼(禁婚)하도록 미리 알려두었다가, 내년(明年)에 가서 맞아 모시면 예</p>	<p>○領議政尹仁鏡、左議政李芑、右議政鄭順朋、賑恤使閔齊仁、戶曹判書鄭世虎、參判趙彦秀、參議元混承召詣賓廳，議啓于慈殿曰：“今過國恤已久，當廣繼嗣。 淑儀揀擇，不可失時。 臣等之所以啓請者，非以爲必於今年爲之。 當預曉京外禁婚，明年間</p>

(禮)에도 맞을 것입니다.”하니, 답하기를, “근래에 국사에 어려움이 많고 흉황이 몹시 심하며 주상의 나이도 어린 까닭에 그 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된 대로 하는 것이 옳다. 또 근래 기근이 몹시 심하여 저축한 곡식이 거의 다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려하고 있는데 재변이 거듭 일어나니, 매우 한심스럽다. 전일 충청도를 구황할 의논이 한결같지 않은 까닭에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민전의 서계를 보니, ‘백성은 모두 굶주려 거의 죽게 된 지경인데 특별히 진구하여 밤낮으로 조치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국가의 용도에 합당하지 않은 곡식을 금강(錦江) 하류(下流)로 옮겨서 진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대신에게 의논하는 것이다.”하였다. 삼공 등이 의계하기를, “지난번에 민전이 충주·아산 양창에서 받아들인 전세(田稅)를 기민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였으나, 국가에서 쓰는 경비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서계를 보니 그 뜻은 매우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마 시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이나마 연명하던 사람들은 지금 반드시 모두 굶주릴 것이고, 그때 굶주리던 사람들은 지금 반드시 모두 죽었을 것이다.’ 하였으니, 과연 이렇다면 감사 혼자만 어찌 듣지 못했겠습니까. 외방의 일을 조정도 이미 다 아는데, 더구나 한 도(道)의 감사이겠습니까. 평상시에 여역(癘疫)으로 죽은 사람도 날날이 다 첩보(牒報)하는데, 이처럼 굶어죽는 백성을 수령이 어찌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겠으며, 감사는 어찌 서장(書狀)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국가에 3년을 먹을 저축이 없는 데다가 경창(京倉)과 상평창(常平倉) 등 구황하는 곳은 한 군데가 아니므로, 국가의 저축이 더욱 모자랍니다. 가령 수송(輸送)을 한다면 운반하는 사이에 기민에게 끼치는 폐단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서계에서는 비록 ‘열흘이면 운반할 수 있다.’ 하였습시다마는, 어떻게 열흘 동안에 운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강 하류의 고을은 곧 임천(林川)·한산(韓山)·부여(扶餘)·석성(石城)·정산(定山)·공주(公州)입니다. 이 6~7읍의 백성이 과연 이처럼 굶어

入侍, 則於禮得矣。” 答曰: “近來國事多艱, 凶荒太甚, 主上年且幼沖, 故不暇慮此矣。 依啓可也。 且近來飢饉太甚, 儲穀虛竭, 罔知所爲, 憂慮之際, 災變疊作, 極爲寒心。 前者忠清道救荒之議不一, 故不得爲之, 今見閔荃書啓, 民生盡飢濱死, 別爲賑救, 日夜措置之意安在哉? 以不合國用之穀, 可於錦江下流, 移轉賑救。 故今日議于大臣矣。” 三公等議啓曰: “前者閔荃, 請以忠州、牙山兩倉所捧田稅, 欲分給飢民, 而國用經費, 不可不計, 故皆不施行。 今見書啓, 其意甚當。 然此亦恐不得施也。 其時稍得連命者, 今必盡飢, 其時飢者, 今必盡斃云, 果若此, 監司豈獨不聞乎? 外方之事, 朝廷既皆盡知, 況監司爲一道之主乎? 常時癘疫死亡之人, 莫不一牒報, 則如是飢死之民, 守令豈不報于監司, 監司豈不爲之書狀乎? 國無三年之蓄, 加以京倉與常平倉, 救荒處非一, 故國儲尤爲不裕。 假使輸送其移轉之際, 飢民之弊, 何可勝言? 其書啓雖曰: ‘旬日可運’, 豈於旬日可能運轉乎? 錦江下流之邑, 乃林川、韓山、扶餘、石城、

죽는 지경이라면, 감사도 반드시 곡식을 옮겨서 구할 것입니다. 어찌 차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전의 서계의 뜻으로 특별히 감사에게 하유하기를 ‘백성의 굶어 죽는 일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구활하지 않는가.’라고 하소서. 이 뜻으로 명하시는 것은 옳지만, 곡식을 운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하였다. 삼공이 또 아뢰기를, “수령을 장벌(杖罰)하라고 한 간원의 뜻은 수령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진휼청 사목(賑恤廳事目)은 비록 이와 같지만, 옛부터 수령을 장벌한 일이 없습니다. 감사에게 내리는 교서(敎書)에서 통훈(通訓) 이하에 대해서는 비록 직단(直斷)하라고는 하였으나 장벌로 처벌한 때가 있었음을 들어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구황을 하지 않은 수령은 날날이 문서에 기록해 두었다가, 교체되어 올 때에 좌천시키어 군수(郡守)는 판관(判官)으로, 판관은 주부(主簿)로, 현감(縣監)은 직장(直長)으로 강등하소서.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구수담(具壽聃)이 아뢰, 공비(公費)로 회음(會飲)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는 일은, 《후속록(後續錄)》에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모두 파출한다.’ 하였으니, 이는 법에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요즘 이 법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간이나 시종들은 법을 범하더라도 감히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사(法司)가 듣는 대로 일일이 적발하여 죄를 다스린다면 자연히 금지될 것입니다. 한지원(韓智源)이 아뢰, 이조와 홍문관의 관원으로 사장(師長)의 직을 겸차(兼差)하라는 일은, 그 뜻은 좋습니다. 다만 중종조의 무인년간에도 이렇게 겸차를 해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으니, 이 일은 아마 시행해서는 안될 듯 합니다. 학교의 일은 만일 상께서 지성으로 좋아하시어 유생(儒生)에게 전강(殿講) 및 정시(庭試)를 자주 보이신다면, 자연히 진작되어 흥기될 것입니다.”하니, 답하기를, “모두 의논한 대로 하라. 다만 충청도의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의논한 것이 이와 같으나, 나의 뜻은 이렇다. 백성이 곧 다 죽어가는데도 만일 구제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진구하는 뜻

定山、公州也。此六七邑之民，果若此其飢死，則監司亦必移粟而救之。豈忍坐視而不爲之慮乎？今以閔荃書啓之意，另諭于監司曰：‘民之飢死，至於此極，何不救活乎？’以此教之則可矣，移轉則不當。”三公又啓曰：“守令杖罰事，諫院之意，欲使守令盡心也。賑恤廳事目，雖曰如此，古無杖罰之事。監司敎書，通訓以下，雖曰直斷，亦未聞決杖之時，今不可爲也。但不能救荒尤甚守令，一一置簿，遞來時左遷，郡守則降判官，判官則降主簿，縣監則降直長。古亦有此例也。具壽聃所啓公辦會飲嚴禁事，《後續錄》，‘如有現捉者，皆罷黜。’云，此不可謂無法，而近不遵行。如臺諫、侍從之人，則雖犯法，而不敢禁。若法司隨所聞一一摘發治罪，則自然禁戢矣。韓智源所啓，以吏曹、弘文館官員，兼差師長之職者，其意則善矣。但中宗朝戊寅年間，亦如此兼差，別無其效，此事恐不可施行也。學校之事，若自上，至誠好之，儒生殿講及(廷) [庭] 試頻數爲之，則自然振作而興起矣。”答曰：“皆如議。但忠清道救民

이 어디에 있겠는가. 서울의 일로 보더라도 조석으로 명령을 내어도 거의 따르지 않는데, 더구나 외방이겠는가. 하서하여도 법을 받들지 않는 것은, 곧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믿음을 받지 못한 까닭이니, 반성하여 자책(自責)할 뿐이다. 이달 안에 미곡(米穀)과 염장(鹽醬)을 그 도(道)에 옮겨서 굶주림이 더욱 심한 곳을 구활하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면 감사가 어찌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보리와 밀이 익을 무렵까지 구활할 수 있을 것이다. 함경도를 구활할 일은, 나의 뜻은 이미 다 말하였다. 경성(京城) 안도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니, 궁벽한 시골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반드시 윗사람의 뜻을 잘 받들어 구활하지 않을 것이다. 어사(御史)와 도사(都事)를, 도를 나누어 보내서 순시하게 하려 하니, 작은 폐단은 따질 것이 없다. 다시 의논하라. 정부(政府)는 곧 모든 관사(官司)의 우두머리이니, 만일 대신들이 국사에 마음을 다한다면 아랫사람으로서 어찌 받들어 거행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하니, 삼공이 회계하기를, “충청도 감사의 기민에 대한 계본(啓本)을 지금 진홀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홍주(洪州)는 실농(失農)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는데도 기민이 어른·아이 모두 8천 9백여 명이나 되고, 공주(公州)는 몹시 실농하였는데도 기민이 겨우 3백여 명뿐이니, 백성의 굶주림은 금강 하류의 고을만이 아니라, 안 그런 곳이 없습니다. 금강 하류 지역을 보면 임천(林川)은 기민이 1백여 명에 불과하고, 한산(韓山)도 이와 같으며, 부여(扶餘)도 많지 않습니다. 올해의 기근은 충청도만이 아니라, 팔도가 모두 그렇습니다. 신들이 지금 대신의 반열에 있으니, 어찌 하룬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본도의 각 고을에 곡식을 옮겨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의 관적(官糶)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 경내의 백성도 두루 구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다른 고을로 옮겨갈 것이 있겠습니까. 또 흥양(興陽) 관창(官倉)의 묵은 곡식의 수는 3천 6백여 석인데, 보관되어 있는 것은 겨우 6백여 석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계청하여 이를 꺼내서 진구하려고

事, 所議(始) [如] 是, 予意則以爲民將盡斃, 若不救濟, 其爲別欲賑活之義安在? 以京中事觀之, 朝夕出令, 而多不從之, 況外方乎? 下書而不奉法者, 此乃上不取信於下之故也, 徒反躬自責而已。 今月內, 以米穀及鹽醬, 移轉其道, 救活尤甚處。 若有不足, 監司豈不爲措置乎? 庶於兩麥成熟間, 有所救活矣。 咸鏡道救荒事, 予意已盡言之。 京城之內, 尙不能一一救之, 其窮村僻巷, 雖有餓死之人, 必不爲奉行上意而賑活也。 欲以御史與都事, 分道而巡視, 小弊不足計也。 其更議之。 政府乃百司之長也, 若大臣盡心國事, 則下何有不奉行者乎?” 三公回啓曰: “忠淸道監司飢民啓本, 今下于賑恤廳。 臣等竊聞之, 洪州不甚失農, 而飢民壯弱, 并八千九百餘名, 公州尤甚失農, 而飢民只三百餘名, 則民之飢餓, 非但錦江下流之邑也, 無處無之。 以錦江下流見之, 林川飢民, 不過一百餘名, 韓山如是, 扶餘亦不多。 今年飢饉, 非獨忠淸道, 八道皆然。 臣等今在大臣之列, 豈得一日安心乎? 本道各官, 不能移粟救之者, 前年官糶, 俱

한다면 조치할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신들이 지금 하교를 받고서 다시 의논해 보니, 의당 시종(侍從)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날로 파견하여 감사와 함께 적간해서 그 실상을 정확히 알아내도록 하는 한편 호조로 하여금 정돈하여 기다리게 한다면 전세(田稅)를 실은 참선(站船)도 제 시기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기민이 도하(都下)에 많이 있으니 먼저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지방의 백성은 내달 사이에도 경창(京倉)의 곡식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 국곡(國穀)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마 안 될 듯합니다. 함경도의 구황에 대한 일은, 윤인경이 지난번 의득했을 적에도 이미 아뢰었습니다. 다시 감사에게 하유하여 본도에 저축되어 있는 곡식을 옮겨 구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삼공과 예조가 함께 의계하기를, “일본의 전산전(畠山殿)은 이미 지난 경자·을사 연간에는 신사(信使)를 통해오다가 그 뒤에는 전혀 다시 오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접대를 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접대함에는 예전부터 합당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되니 그 도서(圖書)를 조사하여 확실하면 허가해야겠습니다. 별시의 초시를 그 고을에서 거행하는 일은, 아된 대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된 대로 하라. 충청도는 경관(京官)을 파견하여 구황하는 절차를 살피되, 심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심하면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장계(狀啓)를 올리고 이미 옮겨온 곡식으로 힘을 다하여 구황하는 것이 옳다. 함경 감사에게는 하유하기를 ‘구황하는 모든 일을 혹시라도 조심해 하지 않다가 적간으로 드러나면 그 수령만 죄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도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라.”하였다.

未捧納，其境內之民，猶不能周救，況推移他邑乎？且興陽官倉所儲舊穀之數，三千六百餘石，其所存，只六百餘石矣。監司請出此，欲爲賑救，則不無措置之事也。臣等今承下教，而更議之，當以侍從之人，即日發遣，與監司摘奸，的知其實，一以令戶曹整齊而待之，則田稅所載站船，亦可及來矣。況飢民多在於都下，亦不可不先救也。京畿之民，來月間，亦可加給京倉，而國穀不裕，恐未能也。咸鏡道救荒事，仁鏡前於議得時，亦已啓之。更諭于監司，以本道所貯之穀，推移救之何如？”三公及禮曹同議啓曰：“日本畠山殿，已去庚子、乙巳年間通信使，其後絕不更來，非我國不待而然也。其接待，古有其例。然不可以其言取信，察其圖書，若的實則聽許。別試初試，爲鄉舉事，依所啓亦當。”答曰：“皆如啓。忠淸道則發遣京官，觀其救荒節次，若不甚則已矣，甚則仍留馳啓，以已推移之穀，盡力救活可也。咸鏡道監司處，其諭之曰：‘救荒諸事，若或不謹，現發於摘奸，則非但罪其守令，監司、都事，亦當不饒也。’”

<p>명종 7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3월 23일(무술) 2번째기사 평안 어사 유잠의 서 계에 따라 구황에 따 른 폐단이 없도록 하 라고 전교하다</p>	<p>전교하였다. “평안도 어사 유잠(柳潛)의 서계를 보니, 본도의 수령은 전지(田地)가 없는 백성에게 조곡(糶穀)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한 것도 먼지와 흙이 섞이어 백성들이 먹지를 못하고 많이들 곤핍하여 죽었다 한다. 이 말을 들으니, 애처로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 당초에 이미 이와 같은 실정을 알았으므로, 각도에 경차관을 파견하여 마을을 출입하면서 구하게 하려 하였으나, 조정의 의논이 옳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곤궁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특별히 구황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함중(咸從) 백성 김맹권(金孟權)이 먼지와 흙이 섞인 곡식을 꾸어준 것으로 도사(都事)에게 제소(提訴)하였는데, 본읍의 수령【윤한(尹澣).】이 도리어 성을 내어 전세(田稅)를 바치지 않은 것을 빙자하여 감사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서 이내 옥(獄)에 수감하고 형신(刑訊)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감사 역시 이 일을 분간하지 않았다. 아랫사람의 제소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 같은 때에는 당연히 백성의 고통을 제거하는 데 힘써서 오로지 구황하는 데 뜻을 두어야 할 것인데, 이 같은 폐단을 다스리지 않았으니 옳겠는가. 도사는 당초 그런 실상을 알고서도 역시 그 억울한 일을 심문하지 않았다. 이 한쪽 일을 가지고 보건대 각 도의 민원(民怨)을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감사에게 하서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하라. 오늘은 재계(齋戒)하는 날이지만, 백성을 구하는 일이 급한 까닭에 이처럼 하유하니, 백성을 구하는 등의 일은 재계를 따지지 말고 즉시 아뢰어라.”</p>	<p>○傳曰: “見此平安道御史柳潛書啓, 本道守令, 於民之無田土者, 不給糶穀, 其所給者, 亦雜塵土, 民不能食, 多致困斃。 聞之不勝哀慘。 當初已知如此, 故欲遣敬差官于各道, 使之出入村巷而救之, 朝議以爲不可, 故不送矣。 今者民困至此, 另加救荒之意安在? 且咸從百姓金孟權, 以所糶塵土之穀, 訴諸都事, 本邑守令【尹澣.】反爲發怒, 托以不納田稅, 瞞報監司, 仍囚牢獄, 至於刑訊, 監司亦不爲分揀。 下人所訴, 雖不可盡信, 然如此之時, 所當務祛民瘼, 專意救活, 而若此之弊, 尙不能釐可乎? 都事初知其實, 亦不問其誣枉。 舉此一隅觀之, 各道民怨, 可勝道哉? 下書監司, 使無此弊。 今日乃齋戒, 而救民事急, 故下之如此, 救民等事, 勿計齋戒, 輒卽啓之。”</p>
<p>명종 7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3월 25일(경자) 3번째기사 영의정 윤인경에게 구 황을 제대로 못한 수</p>	<p>경상 좌도 어사(慶尙左道御史) 송찬(宋贊)의 서계【청하현(淸河縣)의 백성은 오로지 송피(松皮)와 산나물 등으로 어렵게 연명(連命)하고 있고, 영천군(榮川郡)의 민간이 굶주리는 모습은 지극히 참혹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쓰러져 있고, 버려진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슬프게 울부짖습니다.】를 영의정 윤인경에게 내리며 이르기를,</p>	<p>○下慶尙左道御史宋贊書啓【淸河縣民專(少) [以] 松皮山菜等物, 艱難連命, 榮川郡民間飢困之狀, 極爲參酷, (者弱) [弱者] 相與枕藉, 有棄小兒, 到處嗷嗷。】于領議政尹仁鏡曰: “自前年, 已知凶荒, 故既諭以預措之意,</p>

<p>령을 장별로 다스리도록 하다</p>	<p>(중략)</p>	<p>近又朝夕下書，無一人奉行者。當初若送敬差官于各道，使之出入村巷以救之，則豈至如此乎？守令杖罰事，朝議以爲不可，降資及附軍職等法，專不畏憚。祖宗朝豈偶然計，而用杖罰乎？自今欲杖其尤甚者。” (중략)</p>
<p>명종 8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5월 1일(을해) 4번째기사 함경 어사 이무강의 서계에 따라 경성을 구제하고 길주 목사를 파직토록 하다</p>	<p>함경도 어사(咸鏡道御史) 이무강(李無疆)의 서계(書啓)를 정원(政院)에 내리면서 일렀다.“함경도는 서울에서 멀고 또 오랑캐의 지경과 연접하여 있다. 평소 북쪽을 근심하는 내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저축해 두었던 곡식은 이미 다하고 신곡(新穀)이 아직 익지 않았으므로 나의 걱정하는 마음이 그지 없다. 내가 전에 농사를 권장하고 기근을 구제하라는 일로 감사(監司) 【이명규(李明珪).】에게 하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더구나 함흥(咸興)은 감사가 있는 곳이라, 필시 특별한 조처와 보살핌을 베풀어 백성들의 원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전지가 목혀 있고 기민이 더욱 심하다고 한다. 이를 보면 심력을 다해 봉직한 충성이 없음을 알 수 있으니 나는 몹시 실망이 된다. 그리고 경성(鏡城)의 거민들이 일찍이 이전곡(移轉穀)을 받았으나 또한 부족하다고 한다. 지금 다시 침착하여 제때에 구제하도록 아울러 하유하라. 또 길주(吉州)는 관가의 저축이 많았는데, 이를 하리에게 위임하였으니 그 소홀함이 더욱 심하다. 목사 이제남(李弟男)을 파직하라.”</p>	<p>○下咸鏡道御史李無疆書啓于政院曰：“咸鏡一道，遠於京城，且連胡境。尋常北顧之念，爲如何哉？舊儲已盡，新穀未登，予懷罔極。予於前日，以勸農救飢事，下書監司【李明珪。】非一再矣。而咸興乃其所居之地，意必另加措撫，使民無冤，今聞田野未闢，飢民愈甚。以此見之，殊無盡心奉行之效，予甚缺望。鏡城居民，曾受移轉之穀，而亦爲不足云。今更量宜，及時移賑事，並諭之。吉州官儲猶多，而委諸下吏，其慢尤甚。牧使李弟男罷之。”</p>
<p>명종 8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5월 5일(기묘) 2번째기사 곡식이 떨어진 개성에</p>	<p>전교하였다. “지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송순(宋純)의 계본(啓本)을 보니 ‘양맥(兩麥)이 이미 익었기 때문에 본부(本府)의 기민은 그 일가에서 분부(分付)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게 하고 타읍에서 온 유민(流民) 또한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하겠는데, 다만 의지할 데 없는 백성은 차마 해산하여 보낼 수 없어서 그대로 구제해주고 싶으나 곡식이 떨어져 지탱할 방법이 없으므로 진</p>	<p>○傳曰：“今見開城留守宋純啓本：‘兩麥已登，故本府飢民，分付其族，使之護恤，他邑流民，亦皆送還鄉土，但無辜之民，不忍散遣，欲仍賑救，而穀盡無策，請撤賑濟場。’云。無辜之民，</p>

<p>경창의 묵은 곡식을 보내도록 논의케 하다</p>	<p>제장(賑濟場) 철폐를 청한다.’고 하였다. 의지할 데 없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갑자기 해산하여 보내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다. 경창(京倉)의 묵은 곡식을 필요한 만큼 운반하여 가을까지 구제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진휼청에 이르라.”</p>	<p>其數幾何? 今遽散遣, 誠不可忍。 其以京倉陳穀, 量數轉移, 限秋賑救之意, 言于該曹及賑恤廳。”</p>
<p>명종 8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5월 16일(경인) 3번째기사 평안도에 전염병이 돌아 감사에게 진곡을 주어 구황케 하다</p>	<p>전교하였다. “평안도 평양(平壤)·중화(中和)·자산(慈山)·삼등(三登)·순안(順安)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죽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내 마음이 몹시 아프다. 굶주림이 극심하여 병에 걸리자마자 죽곤 한다. 이 어찌 전염병 때문 만이겠는가. 속히 감사에게 하서하여 열읍(列邑)으로 하여금 진곡(賑穀)을 주어 온전히 살리게 하라.”</p>	<p>○傳曰: “平安道平壤、中和、慈山、三登、順安, 癘疫熾發, 人多致死, 予甚慘怛于懷。 飢餓之極, 得病便死。 豈但癘疫之所致? 斯速下書于監司, 令列邑, 官給賑穀, 使之全活。”</p>
<p>명종 8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5월 20일(갑오) 1번째기사 문소전에서 조선, 연은전에서 석선을 살펴다</p>	<p>상이 문소전(文昭殿)에서 조선(朝膳)을, 연은전(延恩殿)에서 석선(夕膳)을 살펴었다.</p>	<p>○甲午/上視朝膳于文昭殿, 夕膳于延恩殿。</p>
<p>명종 8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5월 22일(병신) 2번째기사 배사하는 경기 감사 김인손을 인견하다</p>	<p>경기 감사 김인손(金麟孫)이 배사하니, 전교하였다. “지금 양맥(兩麥)이 익어서 기민 중에서 전지를 가진 자는 이를 의지해 살 수 있으나, 전지가 없는 자는 처음과 다름이 없으니 이 어찌 불쌍하지 않은가. 경은 열읍을 돌아다니며, 특별히 수령들을 경계하여 끝까지 구제하도록 하라.”</p>	<p>○京畿監司金麟孫拜辭, 傳曰: “今者兩麥已熟, 飢民有田土者, 可資以活, 其無田土者, 與初無益, 寧不矜惻? 卿巡歷列邑, 另加申勅守令, 使終救活。”</p>
<p>명종 8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5월 22일(병신) 2번째기사 배사하는 경기 감사 김인손을 인견하다</p>	<p>좌찬성 민제인(閔齊仁)이 아뢰기를, “소신이 지금 진휼사(賑恤使)가 되어 과거의 규정을 살펴보니, 진제장(賑濟場)은 대개 5~6월에 모두 철폐하였습니다.</p>	<p>○左贊成閔齊仁啓曰: “小臣方爲賑恤使, 考諸前規, 則賑濟場, 或於五六月,</p>

<p>27년) 5월 29일(계묘) 3번째기사 좌찬성 민제인의 건의로 7월까지 진제장을 열도록 하다</p>	<p>지금 국고의 저축도 넉넉지 못하여 낭비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굶주린 사람들이 길에 널렸습니다. 지금 만약 진제장을 철폐하면 그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연명할 곳을 잃게 됩니다. 조정과 의논하여 다음 달까지 철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사족(士族)으로서 굶주린 자와 자신의 힘으로 구식(求食)할 수 없는 과부 등에 대하여 각별히 구제하라고 하고하시기에 오부(五部)를 방문해 보니 그 수가 몹시 많습니다. 비록 6월에 진제장을 철폐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7월까지 구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국곡(國穀)이 빌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으니 어찌 국곡을 따져 구제하지 않겠는가. 진제장은 비록 6월 후에 철폐하더라도 사족 및 과부 등은 7월까지 구제하도록 하라.”하였다.</p>	<p>例皆撤罷。今則國儲不敷，似不可浪費，但飢餓之人，相望於道。今若罷場，則飢困之民，將無所延活。當與朝廷共議，限開月不罷也。且士族飢餓者及寡婦等，不得自手求食，各別賑濟事有教，故訪問于五部，則厥數孔多。雖六月罷場，而此人等限七月賑救何如? 傳曰：“國穀之虛竭，雖不可不慮，百姓將盡飢死，豈計國穀而不救乎? 場則雖於六月後罷之，士族人及寡婦等，依所啓限七月賑救。”</p>
<p>명종 8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5월 26일(경자) 3번째기사 대왕 대비전, 왕대비전에서 시선하다</p>	<p>상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 및 왕대비전(王大妃殿)에서 시선(視膳)하였다.</p>	<p>○上視膳于大王大妃殿及王大妃殿。</p>
<p>명종 8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6월 1일(갑진) 1번째기사 관곡을 토지가 있는 자는 3분의 2, 없는 자는 면제하도록 하다</p>	<p>정월에 전교하였다. “어제 충청 감사【나세찬(羅世纘).】의 장계를 보니 ‘양맥은 익을 때쯤해서 모두 베어서 먹어버렸으며, 올벼는 아직 익기 전이라 매우 염려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때에 관곡(官穀)을 독촉해 받아들이면 백성들이 반드시 유리하게 될 것이다. 토지가 있는 자에게는 3분의 2만 받아들이고 토지가 없는 자에게는 받아들이지 말도록 속히 하서하여 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에 알리도록 하라.”</p>	<p>○甲辰朔/傳于政院曰：“昨見忠清道監司【羅世纘.】狀啓：‘兩麥臨熟，刈食已盡，早穀未登之前，至爲可慮。’云。如此之時，督徵官糶，民必流離。其有田土者，徵三分之二，無田土者，勿徵事，斯速下書，使之申移各邑。”</p>
<p>명종 8권, 3년(1548)</p>	<p>상이 문소전과 연은전에 시선(視膳)하였다.</p>	<p>○己亥/上視膳于文昭、延恩兩殿。</p>

<p>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7월 26일(기해) 1번째기사 문소진과 연은전에서 시선하다</p>		
<p>명종 8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9월 3일(을해) 1번째기사 조강에서 참찬관 주세붕이 지방의 곡식을 서울로 옮겨 비축하기를 청하다</p>	<p>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참찬관 주세붕이 아뢰었다. “지난번 원주(原州)의 굶주린 백성을 경창(京倉)의 쌀을 옮겨다 진구(賑救)하였으니 상의 구휼하시는 뜻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으니, 모래와 돌을 섞어서 지급하였으므로 민생들은 다만 주상이 간절히 진구하는 정성만 알았을 뿐이고 생활을 의지하고 목숨을 이어갈 실속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영급(領給)한 관원은 이미 추문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백성이 실속 없는 곡식을 받았는데 지금 만약 그것을 징수한다고 하면 진실로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가려서 견감하여 준다면 실속 있는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사(京師)란 사방의 근본이니 먼 지방의 곡식을 점차 옮겨다가 비축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압록강(鴨綠江)의 물이 넘쳐 성책(城柵)이 파괴되었습니다. 지난해의 수재(水災)는 평양(平壤)이 더욱 심하였는데 지금 또 이와 같습니다. 송(宋)나라 때 변경(汴京)에 큰 수재가 있자 이강(李綱)이 병란(兵亂)의 징조라고 말했다가 이 때문에 죄를 받았는데 마침내는 병화(兵禍)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말대로라면 여러 진(鎭)의 성책이 많이 침몰한 것은 특이한 일이니, 유념하소서.”</p>	<p>○乙亥/上御朝講。參贊官周世鵬啓曰：“頃者原州飢民，以京倉米，移轉賑之，自上救恤之意至矣。而竊聞雜以沙石充給，故民生，但知上惻怛賑救之誠，而無有資活連命之實，其時領給官員，已推矣。飢民既受無實之穀，而今若還徵，則是實欺民。分揀蠲減，可蒙實惠矣。且京師，四方之根本，漸運遠地之穀，以爲儲備何如？且鴨綠江水漲溢，城柵破毀。前年水災，平壤尤甚矣，今又如此。昔汴京有大水之災，李綱以爲兵亂之兆，以此被罪，卒有兵禍。果如斯言，列鎭城柵，多被沈沒，此異事也，伏願留念焉。”</p>
<p>명종 8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11월 2일(계유) 1번째기사 성균관·내자시·장원서 관원의 사진과 공궤의</p>	<p>성균관(成均館)·내자시(內資寺)·장원서(掌苑署)를 적간하여 관원의 사진(仕進)과 공궤(供饋)의 사치를 조사하였다.</p>	<p>○癸酉/摘奸于成均館、內資寺、掌苑署，察官員之仕進及供饋之豐侈。</p>

사치를 적간하다		
<p>명종 9권, 4년(1549 기유 / 명 가정(嘉靖) 28년) 1월 2일(계유) 3번째기사</p> <p>예조에 외방 노인의 공궤 등을 관에서 마련할 것을 명하다</p>	<p>정원에게 전교하였다. “외방 노인의 공궤(供饋)에 대한 일은 서울의 예에 따라 관(官)에서 마련하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지 말게 하라. 상직(賞職)과 사물(賜物)도 서울의 예에 따라 마련하도록 예조에 이르라.”</p>	<p>○傳于政院曰：“外方老人供饋事，依京中例，官自辦備，勿責出民間。賞職及賜物，亦依京中例磨鍊事，其言于禮曹。”</p>
<p>명종 9권, 4년(1549 기유 / 명 가정(嘉靖) 28년) 1월 9일(경진) 1번째기사</p> <p>아침에 문소전에서 시선하고 저녁에 연은전에서 시선하다</p>	<p>상이 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고, 저녁에는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다.</p>	<p>○庚辰/上視朝膳于文昭殿，夕膳于延恩殿。</p>
<p>명종 9권, 4년(1549 기유 / 명 가정(嘉靖) 28년) 1월 17일(무자) 1번째기사</p> <p>조강에서 신광한이 흉년이 들어 민생과 국고가 고갈되었음을 아뢰다</p>	<p>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지경연사 신광한(申光漢)이 아뢰기를,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생민(生民)들은 곤궁에 허덕이고 국고(國庫)는 고갈되었습니다. 2~3년 이래 비단 삼농(三農)만 부실했을 뿐 아니라 면화(綿花)마저 절핍(絕乏)되었습니다. 요즈음 시장의 쌀값이 조금 싼 것은 풍년이 들어서가 아니요, 외방 사람들이 의복(衣服) 혹은 신역(身役) 때문에 저축해 두었던 곡식을 모두 털어서 면포와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엔 백성들에게 면포를 바치고 쌀을 받아 가게 함으로써 그 목숨을 보존하게 하였습시다만, 지금은 백관들에게 지급할 녹미(祿米)도 오히려 부족하니, 상평창(常平倉)에서 이미 사들였던 면포를 풀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쌀을 바치고 면포로 바꾸어 가게 한다면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부상 대고(富商大賈)가 이익을 독차지하여 민간의 곡식이 모두 그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될 터이니, 그</p>	<p>○戊子/上御朝講。知經筵事申光漢曰：“近因凶荒，生民困瘁，國儲虛竭。數三年來，非徒三農不實，綿花絕乏。頃日市上米價稍賤者，非歲之稔也，外方之人，或爲衣服，或因身役，罄所儲之穀，來貿綿布故也。去歲聽民納布受米，以保其命，今則百官頒祿，尚且不裕，宜散常平已買之布，從民願納米相易，則可以救民。若失此機，則富商大賈，獨專其利，民間之穀，盡入其手，他日阻飢，民無所資，而國</p>

	<p>렇게 되면 후일 기근이 더욱 혹심할 경우 백성들은 의지할 것이 없게 되고 국가도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생략)</p>	<p>亦無如之何矣。” 執義洪曇啓曰：“祖宗朝重六曹，故選爲郎官，則人以爲榮，必滿三十朔，然後陞遷。以此郎官之闕蓋寡，人不得皆爲是職。今則不然，吏曹任情不公，門蔭爲郎官者，亦可久任，而求補外郡，依願卽授。臨闕填員，苟充者多。銓曹非不知其不可，而拘於人情，以至於此，自今郎官，必滿朔數而遞之。凡新擬郎官之望者，時或下問人物之賢否，自郎官而遞者，亦時下問朔數之滿否，則吏曹亦不敢任情苟擬矣。”</p>
<p>명종 10권, 5년(1550) 경술 / 명 가정(嘉靖) 29년) 3월 25일(기축) 1번째기사 아침에 문소전에서 시선하고, 저녁에 연은전에서 시선하다</p>	<p>상이 아침에 문소전에서 시선하고, 저녁에 연은전에서 시선하였다.</p>	<p>○己丑/上, 朝視膳于文昭殿, 夕視膳于延恩殿。</p>
<p>명종 10권, 5년(1550) 경술 / 명 가정(嘉靖) 29년) 5월 26일(기축) 2번째기사 황무로 보리와 밀이 손상을 입은 곳에 관</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들으니 보리와 밀이 황무(黃霧)에 손상을 입어 백성들이 장차 굶주리게 될 것이라 한다. 팔도 감사에게 하서(下書)하여 피해가 더욱 심한 곳은 도사(都事)로 하여금 곧 가서 살펴보게 하고, 엄격히 수령들을 신칙하여 봉납(捧納)할 관채(官債)를 잘 참작해서 해주고 외람되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p>	<p>○傳于政院曰：“今聞兩麥損傷於黃霧，民將艱食云。下書八道監司，被災尤甚處，令都事劃卽往審，嚴勅守令，捧納官債，務要斟酌，使不得猥濫。”</p>

채를 참작하여 줄 것을 명하다		
명종 10권, 5년(1550) 경술 / 명 가정(嘉靖) 29년) 8월 14일(을해) 1번째기사 아침에 문소전에서 시선하고 저녁에 연은전에서 시선하다	상이 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고, 저녁에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다.	○乙亥/上視朝膳于文昭殿， 夕膳于延恩殿。
명종 11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2월 20일(무인) 1번째기사 대왕 대비전·왕대비전에서 시선하다	상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과 왕대비전(王大妃殿)에서 시선(視膳)하였다.	○戊寅/上視膳于大王大妃殿及王大妃殿。
명종 11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2월 28일(병술) 1번째기사 문소전과 연은전에서 시선하다	상이 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고 저녁에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다.	○丙戌/上視朝膳于文昭殿， 夕膳于延恩殿。
명종 11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4월 18일(병자) 1번째기사 문소전에서 조선을, 연	상이 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고, 저녁에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다.	○丙(午) [子] /上視朝膳于文昭殿， 夕膳于延恩殿。

<p>은전에서 석션을 시선하다</p>		
<p>명종 11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4월 23일(신사) 1번째기사 주장에 나가자 지경연사 김광준이 기민의 상황을 말하다</p>	<p>상이 주장(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사(知經筵事) 김광준(金光準)이 아뢰었다. “신이 진휼사(賑恤使)가 되어 취식(就食)하는 기민(飢民)을 친히 보았는데, 다 피곤하고 쇠잔한 사람들로써 비록 구제하여 살려주어도 쓸 곳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굶어 죽는 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쌀과 콩을 섞어 먹여 굶어죽지 않게만 하였습니다. 대체로 한 곳에 취식하는 자가 혹은 1백 20~1백 30명, 혹은 70~80명이었습니다.”</p>	<p>○辛巳/上御晝講。 知經筵事金光準曰：“臣爲賑恤使，親見就食之飢民，皆疲癯殘疾之人，雖救活無所用者也。然不忍目前之飢餓，故以米豆相雜而饋之，使不至於飢死而已。大抵一場就食者，或百二三十，或七八十矣。”</p>
<p>명종 11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4월 29일(정해) 1번째기사 조강에서 특진관 송세형이 군자창의 곡식, 저축, 종묘 중수 등을 말하다</p>	<p>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송세형(宋世珩)이 아뢰었다. “전자(前者)에는 군자창(軍資倉)의 저축된 양곡이 1백만여 석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50만 석인데다가 일찍이 백성에게 흠어준 곡식이 거의 2만 5천 석이나 되고 남아 있는 것은 거의 다 진부(陳腐)한 것이어서 국용(國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것을 사용하고 새 것을 저축하는 것이 국가의 본의(本意)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어 줄 때 쌀이 혹 조금만 묵었으면 백성들이 받아가지려 하지 않아서 3~4곳의 창고를 연 뒤에야 받아갔기 때문에 신이 친히 품질을 살펴보면서 나누어 주었는데, 다른 고을의 백성들은 받아갔으나 적성(積城)·연천(漣川)·양지(陽智)·통진(通津)·김포(金浦) 등 다섯 고을 백성들은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기근에 허덕인다면 어찌 쌀의 좋고 나쁜 것을 가릴 겨를이 있겠습니까. 또 그곳 백성들이 불공(不恭)한 말을 많이 하면서 관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느리고 온 수령을 이미 추고하였습니다. 신이 전자에 종묘를 중수(重修)하는 일로 인하여 살펴 보니, 기둥과 들보가 썩은 것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대체로 아조(我朝)가 이곳에 도읍을 창건한 지가 거의 2백 년이나 되었으므로 공해(公廩)와 궁궐(宮闕)이 이와 같지 않은</p>	<p>○丁亥/上御朝講。特進官宋世珩曰：“前者軍資倉所儲百餘萬石，今僅五十萬石，而曾散之穀，幾二萬五千石矣，其遺在者，亦皆陳腐，不合於國用。是以用舊蓄新，是乃國家之本意也。頃者分給之時，米或少陳，則民不肯受，至於開三四庫，而後受之，故臣親自看品而給之。他邑之民則受去，而積城、漣川、陽智、通津、金浦五邑之民，不受。誠若飢饉，則豈暇擇米之精麤乎？且其民等，多發不恭之言，罵辱官員，故其領來守令，既已推之矣。臣前者因宗廟重修而見之，則棟樑腐毀者過半。蓋我朝建都于此，幾二百年，公廩、宮闕，無不如此。若</p>

	<p>것이 없는데, 만약 장마가 져서 빗물이 스며든다면 일시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궁(泮宮)을 수리하고 비궁(闕宮)을 복구하는 등의 일은 아무리 흉년이 라 해도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중요이겠습니까. 《춘추(春秋)》에 ‘세실(世室)의 지붕이 허물어졌다.’고 기록한 것은 오래도록 수리하지 않은 것을 나무란 것입니다. 모름지기 속히 봉심(奉審)하여 수리해야 하겠습니까. 정업원(淨業院)은 중창(重創)하는 등의 일은 허비(虛費)만 될 뿐인데 그만둘 수 없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을 중하게 여 기시어 마땅히 해야 할 곳에 쓰신다면 다행하겠습니다.”</p>	<p>雨水則將一時頽圯矣。 如其修泮宮復闕宮， 雖凶年， 不可不舉。 況於宗廟乎？ 《春秋》書 ‘世室屋壞’， 譏久不修也。 須速奉審而修理。 如重創淨業等事， 徒爲虛費而已， 是不可已乎？ 伏願殿下， 以勞民爲重， 而用之於所當爲者， 幸甚。”</p>
<p>명종 11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6월 4일(신유) 2번째기사 자전이 승정원에 선운 을 내리다</p>	<p>자전이 정원에 선운(宣醞)하며 일렀다. “아침에 상품을 내려주고 이제 또 술을 내려주는 것은, 경사가 비상하기 때문 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다.”</p>	<p>○慈殿宣醞于政院曰：“朝下賞物， 今 又賜酒者， 慶事非常， 故聊示予喜意而 已。”</p>
<p>명종 11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6월 19일(병자) 1번째기사 대왕 대비전·왕대비전 에서 시선하다</p>	<p>상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과 왕대비전(王大妃殿)에서 시선(視膳)하였다.</p>	<p>○丙子/上視膳于大王大妃殿及王大妃 殿。</p>
<p>명종 11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6월 23일(경진) 1번째기사 봉상시 제조 이기 등</p>	<p>봉상시 제조(奉常寺提調) 이기·임권이 아뢰기를, “전일 문소전(文昭殿)의 기명 (器皿)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신들이 자세히 의논 계청하여 즉시 윤허를 받 아 완(椀)·보아(甫兒)·종자(鍾子) 등을 횡간(橫看)에 따라 차례로 개조하였습니 다. 그런데 이번에 문소전의 제조(提調) 등이 또 탕완(湯椀) 12개를 개조하고 나머지는 다 옛것을 그대로 쓰겠다고 청했다 합니다. 대저 신자(臣子)의 마음</p>	<p>○庚辰/奉常寺提調李芑、任權啓曰： “前以文昭殿器皿過大， 臣等詳議啓請， 即蒙允下， 椀及甫兒、鍾子等， 依橫 看， 次次改造， 而今者殿提調等， 又請 改湯椀十二， 餘皆仍舊云。 大抵臣子</p>

이 문소전의 기명을
제도에 맞춰 작게 만
들기를 청하다

에 조선(祖先)을 위해 풍후(豐厚)하게 하고자 함이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다만 천지(天地)의 생물(生物)이 스스로 정수(定數)가 있으므로 과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인이 제작할 때 반드시 정한(定限)을 두었던 것입니다. 주공(周公)이 《주례(周禮)》에 그 한제(限制)를 정하였으니 정(鼎)·조(俎)·등(鬮)·두(豆)와 같은 것도 각기 규구(規矩)와 척촌(尺寸)의 한계를 둔 것은 수용해 들어가는 수량을 무제한 남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자(王者)는 천하를 집으로 삼으니 그 자봉(自奉)함에 있어 비록 천하의 아름다움을 다 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바 없을 것인데 공봉하는 제구에도 정한을 둔 것은 모두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뜻인 것입니다. 향사(享祀)의 도리는 요컨대 성경(誠敬)에 있는 것이고, 선수(膳羞)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이 과대한 것을 고치고자 함은 조종의 옛 제도를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磁器) 등속은 국가에서 정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인들이 임의로 구워 만든 것인데 말세의 사치 풍조로 인하여 다투어 풍대(豐大)한 것을 숭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와서는 자기는 깨어지기가 쉽다 하여 유기(鑪器)로 대신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유사(有司)가 그 체양(體樣)을 줄일 줄을 모르고 자기의 형체 그대로 만들어서 과대(過大)하기가 여전합니다. 이 제기가 만약 선왕이 정한 제도이던가 혹은 옛날 성현이 제작한 것이라면 고쳐서는 안 될 이치가 있겠지만, 요즈음 말속의 폐단과 장인의 제작을 그대로 사용하여 무궁한 폐단을 초래하고 있으니 횡간의 옛규정에 따라 고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근년에 거듭 기근이 들어 온갖 물건이 떨어져서 이제는 모든 공진(供進)이 다 민력(民力)에서 나오는데 폐가 이에 이르렀는데도 굳이 지키고 고치지 않는다면 후일에 더 불어나고 퍼져서 마침내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기명이 작으면 남는 물건을 두기가 어렵다 합니다. 신들이 조종의 옛 규례를 자세히 상고해 보니, 모든 제사에 공진하는 물품은 항상 여유가 있게 한다는 것은 그 수량을 있는 대로 다 담는 다는 것이

之心, 爲祖先欲致豐厚, 豈有窮已? 但天地生物, 自有定數, 不可過濫, 故聖人制作, 必有定限。周公於《周禮》, 定爲限制, 如鼎、俎、鬮、豆, 各有規矩尺寸, 容入之數, 不可無限制而濫用故也。王者以天下爲家。凡所自奉, 雖極天下之美, 無所不足, 而供奉之具, 亦有定限, 皆所以敬天愛民之意也。凡享祀之道, 要在誠敬, 不在膳羞之豐盛。臣等欲改過大者, 非所以欲改祖宗舊制也。磁器之類, 國家非有定規, 乃匠人任意燔造, 而末世奢侈, 爭尚豐大, 而及其後也, 磁器易破, 代以鑪器, 當時有司不知裁損體樣, 仍磁器之形而過大如前。此器若先王定制, 或古先聖賢之制作, 則有不可改之理矣, 今者乃仍末俗之弊, 匠者之造而致有無窮之弊, 則改依橫看舊規, 有何不可? 近年飢饉荐臻, 百物凋耗, 凡所供進, 皆出民力。弊至於此, 而膠守不改, 則末流滋蔓, 終無以救之矣。又以爲器皿體少, 則剩餘之物, 置之爲難云。臣等詳究祖宗舊規, 凡祭供之物, 常有餘裕, 非謂盡其數入盛也。凡物必有精麤, 元數有餘, 然後方可擇

	<p>아닙니다. 모든 물품에는 반드시 정(精)한 것과 추(麤)한 것이 있는 법인데 원수(元數)에 여유가 있어야만 그 정하고 아름다운 것은 골라서 공진하고 그밖의 추말(麤末)한 것과 버린 찌꺼기는 제수(祭需)에 섞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남는 물건은 간 곳을 묻지도 않으며 또한 둘 곳도 마련하지 않는다 하니 그 정규(定規)의 본의를 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정성을 드리고 공경을 다한다 함은 기명의 과대나 제수의 풍후(豐厚)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컨대 심신(心神)을 전일하게 하여 정결(淨潔)하게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다만 반완(飯椀)·탕완(湯椀) 12개만 고치고 나머지는 다 예전대로 한다면 일반 탕완은 체제가 아주 달라서 향사의 예절에 더욱 불편하지 않게 될 것이니, 다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일체 조종조형간의 옛 규정에 따라 차례로 개조하여 만세의 무궁한 폐단을 제거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제사는 성경을 위주로 하고 일체 선왕의 옛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뢴 바가 마땅하다. 다만 전자에 반탕(飯湯)의 자완(磁椀)은 과대한데 장(醬)은 매우 조금 넣기 때문에 맛이 알맞지 않다고 하기에, 반탕의 자완만을 개조하게 하였을 뿐이다. 담은 제물을 그릇에 알맞게 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 만약 자완을 다 개조한다면 남는 제물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것을 다른 데 쓰기는 미안하다. 거듭 헤아려 보았으나 다른 자완까지 다 고칠 수는 없다.”하였다.</p>	<p>其精美而供進，其他麤末除滓，不雜於祭需，故剩餘之物，不問去處，亦不爲置處，則定規本意，於此可知。 臣等竊意，致誠致敬，不在器皿過大，饌膳豐厚，要在專一心神，致其潔淨而已。 今只改飯、湯椀十二，餘皆仍舊，則一般湯椀，體制殊異，享祀之禮，尤爲非便，不可不盡改。 令該曹，一依祖宗朝橫看舊規，次次改造，以除萬世無窮之弊。” 傳曰：“祭以誠敬爲主，而一依先王舊規，所啓當矣。 但前者，以飯湯磁椀過大，而所入之醬甚少，以此味不適中云，故但令改造飯湯磁椀耳。 所盛之物，與器適中，其來已久。 今若盡改磁椀，則物多剩餘，未安於他用。 反覆計之，不可盡改他椀。”</p>
<p>명종 12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8월 28일(계미) 1번째기사 문소전에서 조선을, 연은전에서 석선을 시선하다</p>	<p>상이 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고, 저녁에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다.</p>	<p>○癸未/上視朝膳于文昭殿， 夕膳于延恩殿。</p>

<p>명종 12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10월 25일(기묘) 1번째기사 문소전에서 주다례를 올리다</p>	<p>상이 문소전에서 주다례(晝茶禮)를 올렸다.</p>	<p>○己卯/上視晝茶禮于文昭殿。</p>
<p>명종 12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10월 26일(경진) 2번째기사 연은전에서 주다례를 올리다</p>	<p>상이 연은전(延恩殿)에서 주다례를 올렸다.</p>	<p>○上視晝茶禮于延恩殿。</p>
<p>명종 12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12월 3일(병진) 1번째기사 성균관에 선운을 내리고 어제(御題)를 내려 글을 지어 올리게 하다</p>	<p>승지를 보내어 성균관 유생들에게 선운(宣醞)하고 어제(御題)를 내려 글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반궁(泮宮)에 황감(黃柑)을 내린 데 대한 부(賦)였다.】</p>	<p>○丙辰/遣承旨，宣醞于成均館儒生，下御題，令製進。【錫泮宮黃柑賦。】</p>
<p>명종 12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12월 18일(신미) 1번째기사 예조의 건의로 물가의 여러 고을에 이문하여 얼음을 뜨게 하다</p>	<p>예조가 아뢰기를, “금년은 대한(大寒)이 이미 지나고 입춘(立春)이 다가오는데도 한강에 얼음이 없어 서울에서는 장빙(藏氷)하지 못할 듯하니, 물가에 있는 여러 고을에 이문하여 음지의 얼음 언 곳을 찾아서 얼음을 떠서 간직하고 대기하게 하소서.”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p>	<p>○辛未/禮曹啓曰：“今年大寒已過，立春將近，而漢江無氷，京中恐不得藏氷。請行移水邊各邑，求陰地合氷處，伐藏以待之。”傳曰：“可。”</p>

<p>명종 12권, 6년(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12월 22일(을 해) 3번째기사 양 대비전에서 시선하 다</p>	<p>상이 양 대비전에서 시선(視膳)하였다.</p>	<p>○上視膳于兩大妃殿。</p>
<p>명종 13권, 7년(1552) 임자 / 명 가정(嘉靖) 31년) 1월 17일(경자) 2번째기사 모든 절물을 봉진할 때 천신을 먼저 봉진 하도록 하다</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하는 감귤(柑橘) 중에 진상(進上)하는 것이 먼저 도착하고 천신(薦新)으로 쓰이는 것은 뒤에 도착한다. 그러므로 으레 먼저 도착한 진상품을 나누어 천신에 쓰게 된다. 지금부터는 모든 절물(節物)을 봉진할 때 천신을 먼저 봉진하도록 팔도 감사에게 하서하라.”</p>	<p>○傳于政院曰：“濟州封進柑橘，進上則先到，薦新則後到，故例以先到進上，分封薦新矣。今後凡節物封進時，先封薦新事，八道監司處下書。”</p>
<p>명종 13권, 7년(1552) 임자 / 명 가정(嘉靖) 31년) 1월 18일(신축) 1번째기사 대왕 대비전과 공의 왕대비전에서 시선하 다</p>	<p>상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과 공의 왕대비전(恭懿王大妃殿)에서 시선(視膳)하였다.</p>	<p>○辛丑/上視膳于大王大妃及恭懿王大妃殿。</p>
<p>명종 13권, 7년(1552) 임자 / 명 가정(嘉靖) 31년) 1월 25일(무신) 1번째기사 낮에 문소전에서 시선 하다</p>	<p>상이 낮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였다.</p>	<p>○戊申/上視晝膳于文昭殿。</p>

<p>명종 13권, 7년(1552) 임자 / 명 가정(嘉靖) 31년) 1월 26일(기유) 1번째기사 연은전의 주다례를 살 피다</p>	<p>상이 연은전(延恩殿)의 주다례(晝茶禮)를 살폈다.</p>	<p>○己酉/上視晝茶禮于延恩殿。</p>
<p>명종 13권, 7년(1552) 임자 / 명 가정(嘉靖) 31년) 3월 19일(신축) 1번째기사 아침에 문소전에서 시 선하다</p>	<p>상이 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였다.</p>	<p>○辛丑/上視朝膳于文昭殿。</p>
<p>명종 13권, 7년(1552) 임자 / 명 가정(嘉靖) 31년) 10월 23일(임 신) 1번째기사 함경도에서 나는 산 청어와 과어의 진상을 감하다</p>	<p>상이 함경도에서 나는 산 청어(靑魚)와 과어(瓜魚)의 진상을 감하라 명하였는데, 이준경(李浚慶)의 아뢰에 의한 것이다.</p>	<p>○壬申/上命減咸鏡道生靑魚、瓜魚進上。 因李浚慶所啓也。</p>
<p>명종 13권, 7년(1552) 임자 / 명 가정(嘉靖) 31년) 12월 25일(계 유) 3번째기사 황해도의 석화와 봉진 을 감하도록 명하다</p>	<p>황해도(黃海道)의 석화(石花) 봉진(封進)을 감해 주라고 명하였다.</p>	<p>○命減黃海道石花封進。</p>
<p>명종 13권, 7년(1552)</p>	<p>경기에서 봉진하는 생자하(生紫蝦)를 반감(半減)하라 명하였다.</p>	<p>○乙亥/命半減京畿封進生紫蝦。</p>

<p>임자 / 명 가정(嘉靖) 31년) 12월 27일(을해) 1번째기사 경기에서 봉진하는 생자하를 반감하도록 명하다</p>		
<p>명종 16권, 9년(1554) 갑인 / 명 가정(嘉靖) 33년) 3월 6일(병오) 2번째기사 사헌부가 금주령을 시행할 것을 아뢰다</p>	<p>헌부가 아뢰었다. “재이(災異)가 겹쳐 나타나니 금주령(禁酒令)을 시행하소서.”</p>	<p>○憲府啓曰：“災異疊現，請行禁酒之令。”</p>
<p>명종 16권, 9년(1554) 갑인 / 명 가정(嘉靖) 33년) 3월 12일(임자) 1번째기사 공의 왕대비전에서 시선하다</p>	<p>상이 공의 왕대비전(恭懿王大妃殿)에서 시선하였다.</p>	<p>○壬子/上視膳于恭懿王大妃殿。</p>
<p>명종 16권, 9년(1554) 갑인 / 명 가정(嘉靖) 33년) 5월 3일(임인) 1번째기사 성균관에 어제(御題)를 내려 율부(律賦)를 짓게 하고 제생을 시험하게 하다</p>	<p>성균관에 어제(御題)를 내려 율부(律賦)를 짓게 하고 대제학 정사룡(鄭士龍) 등에게 명하여 제생을 시험하게 하였으며, 도승지(都承旨)를 보내어 선온(宣醞)하고 아울러 유생(儒生)들에게도 음식을 내리게 했다. 이어서 전교하였다.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요 현사(賢士)가 거쳐 나오는 곳인데 근래에는 날로 문란해지고 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고무진작하지 못한 결과이기는 하나 또한 제생들이 공부를 게을리 하기 때문이기도 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그러니 너희 제생들은 학업에 힘써 국가에서 배양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p>	<p>○壬寅/下御題律賦于成均館，命大提學鄭士龍等，往試諸生，遣都承旨宣醞，并餽儒生等。仍傳曰：“學校，風化之源，賢士之關，而近來日益頹靡。是雖在上之人，不能鼓舞振作之所致，亦由諸生，惰於講學，良用寒心。爾諸生，勉勵學業，以副國家儲養之意。”</p>

<p>명종 16권, 9년(1554) 갑인 / 명 가정(嘉靖) 33년) 5월 26일(을축) 1번째기사 사학의 유생에게 어제 로 시험보이고 선운을 내리다</p>	<p>사학(四學)의 유생을 성균관(成均館)에 모아놓고 정사룡(鄭士龍)·이준경(李浚慶)·채세영(蔡世英)에게 명하여 어제(御題)로 시험보이게 하고, 우승지(右承旨) 이탁(李鐸)을 시켜 선운(宣醞)을 가지고 가서 먹이게 하였다.</p>	<p>○乙丑/會四學儒生于成均館，命鄭士龍、李浚慶、蔡世英，試以御題，令右承旨李鐸，齎宣醞往饋之。</p>
<p>명종 17권, 9년(1554) 갑인 / 명 가정(嘉靖) 33년) 7월 14일(임자) 2번째기사 호조에서 서울의 곤궁 한 사족들에 대한 구 제책을 아뢰다</p>	<p>호조가 아뢰기를, “올해는 지난해보다 흉황이 심하여 구황할 모든 일을 미리 앞당겨 조치해야 하니, 먹을 수 있는 곡식 잎·채소 잎·산삼(山蔘)·길경(梗梗)·해채(海菜) 같은 것들을 제때에 거두어 모아 가을과 겨울에 대비하도록 할 것을 우선 행이(行移)하고, 서울의 사족(士族) 중에 굶주리는 사람들은 우선 추수 때까지 기다려 보고 겨울과 봄 동안에는 소속 부(部)1590) 로 하여금 듣고 보는 대로 구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p>	<p>○戶曹啓曰：“今年凶荒，甚於往年，求荒諸事，預先措置，可食穀葉、菜葉、山蔘、苦梗、海菜等物，趁時收儲，以禦秋冬事，爲先行移。京中士族飢餓之人，亦姑待秋成，冬春間使屬部，聞見賑求何如?” 傳曰：“知道。”</p>
<p>명종 17권, 9년(1554) 갑인 / 명 가정(嘉靖) 33년) 9월 9일(정미) 1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 권철이 실농한 고을의 공물과 잡역을 감해 줄 것을 아뢰다</p>	<p>경상도 관찰사 권철(權轍) 【사람됨이 침착하고 곧으며 말이 적었고 일에 임해서는 치밀하여 관리로서의 행정을 잘 하였다.】이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농사는 밭곡식이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초가을부터 굶주리는 백성이 많아 다른 도로 떠도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비록 흉년이였다고는 하지만 밭곡식이 모두 여물어 창고의 저축이 여유가 있었고, 사사로이 곡식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또한 많았기 때문에 온 도의 백성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신이 호조에서 올봄에 진구한 곡식 수량을 고찰해 보니, 각 고을 창고에 저축한 것 이외에도 별례(別例)로 조치한 쌀과 콩이 모두 9만 3천 5백 80여 석이었는데, 올해에는 창고가 고갈되고 사유 저축도 모자라, 재물을 생산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을 갖가지로 헤아려 보아도 계책이 없습니다. 올해의 구</p>	<p>○丁未/慶尙道觀察使權轍【爲人沈重寡言，臨事縝密，善於吏治。】啓曰：“本道農事，田穀不實，故初秋民多飢餓，流移他道者甚衆。前年雖曰不實，田穀皆稔，而倉儲有裕，私穀願納者亦多，故得救一道之民。臣於戶曹，考其今春賑救穀數，則各官倉儲外，別例措置等米豆并九萬三千五百八十餘石，而今年則倉庫虛竭，私儲亦乏，生財救民之道，百計無策。今年救荒，臣恐</p>

	<p>황은, 신의 생각에는 지난 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납곡(納穀)·초식(草食)·자염(煮鹽) 등의 일을 호조가 이미 계하여 예비하라는 것으로 행이 했었습니다마는, 어찌 초식만으로 만백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p> <p>(생략)</p>	<p>尤難於去年也。 納穀、草食、煮鹽等事，戶曹已啓下行移預備矣，豈徒以草食，能活萬民之命乎？</p>
<p>명종 17권, 9년(1554 갑인 / 명 가정(嘉靖) 33년) 12월 25일(신묘) 1번째기사 문소전에서 시선하다</p>	<p>상이 낮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하였다.</p>	<p>○辛卯/上視晝膳于文昭殿。</p>
<p>명종 17권, 9년(1554 갑인 / 명 가정(嘉靖) 33년) 12월 26일(임진) 2번째기사 연은전에서 시선하다</p>	<p>상이 낮에 연은전에서 시선하였다.</p>	<p>○上視晝膳于延恩殿。</p>
<p>명종 18권,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2월 22일(정해) 1번째기사 문소전에서 조선을 살피고 연은전에서 석선을 살피다</p>	<p>상이 문소전(文昭殿)에서 조선(朝膳)을 살피고, 연은전(延恩殿)에서 석선(夕膳)을 살폈다.</p>	<p>○丁亥/上視朝膳于 文昭殿，夕膳于延恩殿。</p>
<p>명종 18권, 10년(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4월 17일(신사) 1번째기사 문소전에서 시선하다</p>	<p>상이 문소전(文昭殿)에서 아침에 시선(視膳)하였다.</p>	<p>○辛巳/上視朝膳于文昭殿。</p>

<p>명종 18권, 10년 (1555 을묘 / 명 가정 (嘉靖) 34년) 4월 27 일(신묘) 1번째기사 구황이 끝났으니 서울 의 진제장 혁파와 진 홀 관리 설치를 진홀 청에서 아뢰다</p>	<p>진홀청(賑恤廳)이 아뢰기를, “각 도의 흉년 구제할 곡식을 거의 다 운반했고, 양맥(兩麥)이 이제는 여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울 안의 동서 진제장(東西賑濟場)을 혁파하고, 진홀청의 낭청(郎廳) 한 사람과 호조의 낭관 한 사람이 항시 호조에 사진(仕進)하여 서로 의논해서 조치하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p>	<p>○辛卯/賑恤廳啓曰: “各道救荒之穀, 轉運殆盡, 而兩麥, 今將成熟。京中東西賑濟場, 請罷, 賑恤廳郎廳一人及戶曹郎官一人, 常仕戶曹, 相議措置。” 答曰: “如啓。”</p>
<p>명종 19권, 10년 (1555 을묘 / 명 가정 (嘉靖) 34년) 8월 11 일(계유) 1번째기사 문소전에 아침 시선을 하고, 연은전에 저녁 시선을 하다</p>	<p>상이 문소전(文昭殿)에 아침 시선(視膳)을 하고 연은전(延恩殿)에 저녁 시선을 하였다.</p>	<p>○癸酉/上視朝膳于文昭殿, 夕膳于延恩殿。</p>
<p>명종 19권, 10년 (1555 을묘 / 명 가정 (嘉靖) 34년) 9월 24 일(병진) 1번째기사 문소전에 아침 시선을 하고 연은전에 저녁 시선을 하다</p>	<p>상이 문소전(文昭殿)에 아침 시선(視膳)을 하고 연은전(延恩殿)에 저녁 시선을 하였다.</p>	<p>○丙辰/上視朝膳于文昭殿, 夕膳于延恩殿。</p>
<p>명종 19권, 10년 (1555 을묘 / 명 가정 (嘉靖) 34년) 11월 6 일(정유) 2번째기사</p>	<p>상이 저녁에 문소전(文昭展)에 시선(視膳)하였다.</p>	<p>○上視夕膳于文昭殿。</p>

문소전에 시선하다		
<p>명종 19권, 10년 (1555 을묘 / 명 가정 (嘉靖) 34년) 11월 7 일(무술) 1번째기사 저녁에 연은전에 시선 하다</p>	<p>상이 저녁에 연은전(延恩殿)에 시선하였다.</p>	<p>○戊戌/上視夕膳于延恩殿。</p>
<p>명종 22권, 12년 (1557 정사 / 명 가정 (嘉靖) 36년) 1월 16 일(경오) 1번째기사 승정원과 홍문관에 선 운주를 내리다</p>	<p>승정원과 홍문관에 선운주(宣醞酒)를 내리고 인하여 어제(御題) 【율시(律詩).】 를 내린 다음 지어 올리도록 명하였다.</p>	<p>○庚午/宣醞于承政院、弘文館，仍下御題，【律詩。】命製進。</p>
<p>명종 22권, 12년 (1557 정사 / 명 가정 (嘉靖) 36년) 3월 20 일(계유) 1번째기사 헌부가 금주를 명하도 록 아뢰다</p>	<p>헌부가 아뢰기를, “지난해 경기와 서울 근처에 모두 수확이 없어 백성들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서울의 어려움도 극심해서 집집마다 저축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도 사치하는 풍습에 젖어 이 춘궁(春窮)에도 주식(酒食)을 허비하면서 날마다 잔치하고 노는 자가 즐비하니 엄히 금단치 않을 수 없습니다. 노병(老病)으로 인해서 먹는 자 이외에 술병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법을 신명(申明)하여 일체 금하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癸酉/憲府啓曰：“前年畿甸及近京之道，皆爲失收，民食不敷，都下艱窘亦甚，家無甌石之儲，而狃爲侈靡之習，當此窮春，糜費酒食，日事宴遊者，比比有之，不可不嚴加禁斷。老病服藥外，持瓶酒者，諸申明一禁。”答曰：“如啓。”</p>
<p>명종 22권, 12년 (1557 정사 / 명 가정 (嘉靖) 36년) 3월 21 일(갑술) 1번째기사 아침에 문소전에서 시</p>	<p>상이 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고 저녁에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다.</p>	<p>○甲戌/上視朝膳于文昭殿，夕膳于延恩殿。</p>

선하다		
명종 22권, 12년 (1557 정사 / 명 가정 (嘉靖) 36년) 5월 11 일(계해) 5번째기사 저녁에 연은전에서 시 선하다	상이 저녁에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다.	○上視夕膳于延恩殿。
명종 23권, 12년 (1557 정사 / 명 가정 (嘉靖) 36년) 8월 20 일(경자) 1번째기사 아침에 문소전에서 시 선하다	상이 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였다.	○庚子/上視朝膳于文昭殿。
명종 23권, 12년 (1557 정사 / 명 가정 (嘉靖) 36년) 8월 23 일(계묘) 1번째기사 아침에 연은전에서 시 선하다	상이 아침에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다.	○癸卯/上視朝膳于延恩殿。
명종 23권, 12년 (1557 정사 / 명 가정 (嘉靖) 36년) 9월 21 일(신미) 3번째기사 재변이 있어 시선의 행차를 정지하고 동향 대제를 집행할 것을	전교하였다.“근래에 여러 재이가 끊이지 않아서 서울에는 가을 우레의 변이 있고 위주에는 쇄독이 날리는 이변이 있어 마음속으로 늘 지극히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혜성이 서방에 나타났으니, 마음이 마치 깊은 못에 빠진 듯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정원은 이를 알라. 오는 24일에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에 시선(視膳)하려던 행차는 정지하고, 오는 10월 6일 종묘(宗廟)의 동향대제(冬享大祭)를 집행할 것을 예조에게 말하고, 내일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서 삼공과 영부사를 부르라.”	[○] 傳曰: “近來衆災連縣, 京師有秋雷之變, 義州有飛甕之異, 心常憂懼之至, 今又彗星, 見於西方, 心若墜淵, 罔知所措。 政院知悉。 來二十四日, 文昭、延恩殿視膳行幸, 其停之。 來十月初六日, 宗廟冬享大祭攝行事, 其言于禮曹。 明日待開門, 招三公、領

명하다		府事。”
<p>명종 23권, 12년 (1557 정사 / 명 가정 (嘉靖) 36년) 9월 22 일(임신) 1번째기사 재변으로 인해 정전을 피하고 음식을 줄이는 일을 의논하다</p>	<p>심연원·상진·윤개·윤원형이 명을 받들어 들어왔다. 전교하기를, “근래에 여러 재화가 끊이지 않아 서울에는 가을 우레의 변이 있고, 평안도에서는 독이 날리는 변괴가 있어 마음으로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이제 또 혜성이 곤방(坤方)에서 나타났으니 마음이 마치 깊은 못에 빠진 듯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내가 면대하여 효유하고자 하는데 오늘 마침 재계(齋戒)가 있어 하지 못하겠고, 피전 감선(避殿減膳)하고자 한다.”하였다. 연원 등이 회계하기를, “근간에 재변이 보통이 아니니 신들은 매우 미안합니다. 상께서 피전 감선하여 천변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당합니다.”하니, 아뢴 뜻을 알았다고 답하였다. 연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모두 용렬한 사람으로 정승의 자리에 욕되게 있어서 재변이 거듭 일어나게 했는데 또 혜성의 비상한 변이 있으니 신 같은 무리들은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속히 체직하라는 명을 내리셔서 천변을 그치게 하소서.”사신은 논한다. 상께서 별의 변괴로 인하여 대신을 명초(命招)한 것이 사피(辭避)하는 말을 듣고자 해서이겠는가. 재변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아뢰지 않고 한갓 사양이나 하면서 책임이나 때우니, 대신이 임금을 바르게 하는 뜻이 아니다. 하니, 답하기를, “재변은 헛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르는 바이다.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 외람되게 왕통과 대업을 이어 받았으므로 잘못된 것이 많아 이 같은 재변을 오게 한 것이다. 대신들이 무슨 용렬함이 있어서 이러하겠는가.”하였다. 거듭 사직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p>	<p>○壬申/沈連源、尙震、尹漑、尹元衡，承命以來。傳曰：“近來衆災連綿，京師有秋雷之變，西邊有飛甕之怪，心常憂懼之際，今又彗星見於坤方，心若墜淵，罔知所措。予欲面諭，而今日適以齋戒未果。欲避殿、減膳矣。”連源等回啓曰：“近間災變非常，臣等至爲未安。自上避殿、減膳，警懼天變至當。”答曰：“啓意知道。”連源等又啓曰：“臣等俱以庸劣，忝在相位，以致災變連綿，又有彗星非常之變。如臣之輩，不可在位。請速命遞，以弭天變。”</p> <p>【史臣曰：“自上因星變，命招大臣者，其欲聞辭避之言乎？不以消災弭變之道啓之，而徒爲虛讓，以塞其責，非大臣格君之義也。”】</p> <p>答曰：“災不虛生，由人所召。予以否德，叨承丕緒，闕失頗多，致此變異也。大臣有何庸劣，而如是哉？”再辭不允。</p>
<p>명종 24권, 13년 (1558 무오 / 명 가정</p>	<p>상이 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고 저녁에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다.</p>	<p>○丙寅/上視朝膳于文昭殿，夕膳于延恩殿。</p>

<p>(嘉靖) 37년) 1월 17일(병인) 1번째기사 아침에 문소전에서 시선하고 저녁에 연은전에서 시선하다</p>		
<p>명종 24권, 13년 (1558 무오 / 명 가정 (嘉靖) 37년) 1월 20일(기사) 3번째기사 예조가 칙사에게 찬품을 베푸는 일을 아뢰다</p>	<p>예조가 아뢰기를, “칙사가 나올 때에 일로(一路)에서 지대(支持)하는 찬품(饌品)을 편의에 따라 수량을 더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영의정·관반(館伴) 등이 모여서 의논하였는데, 다들 ‘각처의 영위연(迎慰宴) 때에 뜰에 벌여 놓을 물膳(物膳)은 이미 약간 더 베풀게 하였고 서울에 들어온 뒤의 찬품은 서울과 외방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크게 관계 없을 듯하니, 이제 수량을 더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또 전일 원접사(遠接使)가 내려갈 때에 찬품도 편의에 따라 더 베풀라고 전교하셨으나, 전에 이미 지대 상정 사목(支持詳定事目)을 인쇄하여 반포하였으므로 외방의 각 고을은 상정의 수에 따라서 장만하였습니 다. 그것이 크게 결함이 있는 일도 아닌데 이제 편의에 따라 더 베풀게 한다면 사람들이 국가의 호령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례가 되는 폐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찬품은 한결같이 상정에 따르고 다시 더 장만하지 말라는 뜻을 원접사와 세 도(道)의 감사와 개성 유수(開城留守)에게 하서하시 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뒤에 윤원형 의 의논에 따라 사목을 적용하지 않고 구례(舊禮)에 따라 찬품을 더 베풀었다.】</p>	<p>○禮曹啓曰：“勅使出來時，一路支持饌品，隨宜加數當否，領議政、館伴等會議，皆以爲：‘各處迎慰宴時，庭排物膳，則已令從略加設，入京後饌品，則雖有京外之少異，似不大關，今不可加數。’且前日遠接使下去時，饌品亦隨宜加設事傳教，前既印頒支持詳定事目，外方各官，依詳定之數備之。今者無大關虧損之事，而使之隨宜加設，不但國家號令，人無所取信，濫觴之弊，亦不可勝言。饌品一依詳定，勿復加備之意，請下書于遠接使及三道監司、開城留守處何如？”傳曰：“如啓。”【後尹元衡之議，不用事目，依舊例，加設饌品。】</p>
<p>명종 24권, 13년 (1558 무오 / 명 가정 (嘉靖) 37년) 5월 17일(갑자) 1번째기사</p>	<p>상이 아침에 문소전에서 시선(視膳)하고 저녁에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다.</p>	<p>○甲子/上視朝膳于文昭殿，視夕膳于延恩殿。</p>

<p>아침에 문소전에서 시 선하고, 저녁에 연은전 에서 시선하다</p>		
<p>명종 24권, 13년 (1558 무오 / 명 가정 (嘉靖) 37년) 7월 27 일(임신) 1번째기사 혜성이 나타난 일로 정전을 피하고 음식을 줄이라고 전교하다</p>	<p>전교하기를, “혜성이 나타났더니 내 마음이 미안하다. 삼공을 명소(命召)하 라.”하니, 영의정 상진 등이 빈청(賓廳)으로 나아갔다. 전교하기를, “지난밤에 혜성과 같은 별이 있었지만 무슨 별로 단정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오늘밤에 관찰(觀察)해 보니 혜성이 분명했다. 해마다 이처럼 성변(星變)이 있으므로 조 심스럽고 두려워 몸들 바를 모르겠다. 피전 감선(避殿減膳)하여 경계하고 두 려워하는 뜻을 간직해야겠다. 그러니 상하(上下)가 모두들 수성(修省)하여 하 늘의 꾸지람에 응답하라.”하니, 상진 등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재변을 만나 자 두려워하시어 피전 감선하시겠다는 분부를 아래에서 계청(啓請)할 것도 없 이 하셨으니 성상의 성의가 지극합니다. 이제 하늘을 감동시켜 재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재변이 생기는 것은 정승이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들은 모두 무상(無狀)한 자들로서 직책을 이행하지 못함이 심했 으니 직에 있기 미안합니다.”하였는데, 답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하나의 이 치이니 현미(顯微)의 사이가 없는 것이다. 내가 보잘것없는 몸으로 과람하게 도 왕업(王業)을 이어받아 잘못된 정치가 많아서 재변이 잇따르게 된 것이다. 경들이야 어찌 직책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 미안하게 여기지 말고 과인의 몸을 힘써 보필(輔弼)하라.”하였다.</p>	<p>○壬申/傳曰: “有彗星云, 予心未安。命召三公。” 領議政尙震等詣賓廳。傳曰: “去夜, 有星如彗星, 而未知定爲某星, 今夜候察, 則彗星的實。年年有如此星變, 兢惶罔措。欲避殿、減膳, 以存警懼之意。上下交修, 以答天譴。” 震等啓曰: “自上遇災而懼, 避殿、減膳之教, 不待在下之啓請, 聖誠至矣。可以感天弭災矣。大抵災變之出, 由於輔相之非人。臣等俱以無狀, 失職甚矣, 在職未安。” 答曰: “天人一理, 顯微無間。予以眇末, 叨承丕緒, 多有闕政, 以致災變之連綿。卿等有何失職乎? 勿爲未安, 輔勉寡躬。”</p>
<p>명종 24권, 13년 (1558 무오 / 명 가정 (嘉靖) 37년) 11월 26 일(기해) 2번째기사 정원에 선운하고 시를 지어 올리게 하다</p>	<p>정원에 선운(宣醞)하고 이어 어필(御筆)로 시 제목(題目) 【‘주 무왕(周武王)’이 란 제목의 칠언 배율(七言排律) 10운(韻), ‘온지인한(溫知人寒)’이란 제목의 칠 언 율시(七言律詩), ‘납리봉춘(臘裏逢春)’이란 제목의 오언 율시(五言律詩)이 다.】을 써서 내리며 지어 올리도록 하였다.</p>	<p>○宣醞于政院, 仍以御筆, 書下詩題, 【“周武王” 七言排律十韻, “溫知人寒” 七言律, “臘裏逢春” 五言律。】命製進。</p>

<p>명종 25권, 14년 (1559 기미 / 명 가정 (嘉靖) 38년) 1월 28 일(경자) 1번째기사 문소전에서 아침 시선 을 하고, 연은전에서 저녁 시선을 하다</p>	<p>상이 문소전에서 아침 시선(視膳)을 하고 연은전에서 저녁 시선을 하였다.</p>	<p>○庚子/上視朝膳于文昭殿，夕膳于延恩殿。</p>
<p>명종 26권, 15년 (1560 경신 / 명 가정 (嘉靖) 39년) 5월 1일 (병인) 1번째기사 가뭄 때문에 술을 금 하다</p>	<p>가뭄 때문에 술을 금하였다.</p>	<p>○丙寅朔/以旱禁酒。</p>
<p>명종 26권, 15년 (1560 경신 / 명 가정 (嘉靖) 39년) 10월 25 일(정사) 1번째기사 김명윤이 상중에 고기 를 권한 것에 대해 전 을 올려 사은하다</p>	<p>이조 판서 김명윤이 아뢰기를, “소신이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성은(聖恩)을 입어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김명윤이 상중에 있었는데 상이 연로(年老)하다 하여 고기를 권하였다.】 어제 충훈들을 위로할 때에 특별히 중사(中使)·승지(承旨)를 보내시고 또 주악(酒樂)을 내리셨으니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리하여 전(箋)을 올려서 사은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사은하는 전을 보고 경의 아름다운 뜻을 알았다. 경만이 기구(耆舊)로서 훈로(勳勞)에 참여하였으므로 내가 아름답게 여겼었다. 전에 고기를 권하고 어제 주악을 내린 것은 모두 고사(古事)를 따른 것이니 경은 사은하지 말라.”하였다.</p>	<p>○丁巳/吏曹判書金明胤啓曰：“小臣在草土中，得蒙聖恩，常懷兢惕，【明胤在憂服，上以年老勸肉。】昨日忠勳慰訪時，特遣中使、承旨，又賜酒樂，聖恩罔極。仍進箋以謝。”傳曰：“觀卿謝箋，識卿美意。惟卿以耆舊參勳勞，予嘗嘉焉。前者勸肉饌，昨日賜酒樂，皆循古事也。卿宜勿謝。”</p>
<p>명종 26권, 15년</p>	<p>상이 소대하고, 입시한 경연관들에게 인화문(仁和門)의 내랑(內廊)에서 술을</p>	<p>○己酉/上召對，賜酒入侍經筵官等于</p>

<p>(1560 경신 / 명 가정 (嘉靖) 39년) 12월 18일(기유) 1번째기사 소대하고 입시한 경연관들에게 술을 내리다</p>	<p>내렸다. 어제를 내리며 【율시(律詩)이다.】 지어 올리라고 명하고 초를 내렸다.</p>	<p>仁和門內廊。下御題，【律詩。】命製進，賜燭。</p>
<p>명종 27권, 16년 (1561 신유 / 명 가정 (嘉靖) 40년) 7월 13일(신축) 1번째기사 열무정에 나아가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유생들에게 제술 시험을 보이다</p>	<p>상이 열무정(閱武亭)에 나아가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또 유생들에게 제술 시험을 보였다. 【삼공·육경·시신(侍臣)·양사(兩司)·시강원이 참여하고 가선(嘉善)·통정(通政)이 또한 더러 참여하여 80여 명이나 되었다. 화사(畫師)로 하여금 그 광경을 그리게 하고 정유길(鄭惟吉)로 하여금 서문을 지어 먼저 그림 아래에 쓰게 하였다. 그리고 입시한 신하들로 하여금 자기 뜻에 따라 시를 지어 차례로 나와 화축(畫軸)에 쓰고 직함과 성명을 기록하게 하였다. 또 어제(御題) 두 수(首)를 내어 정응두(丁應斗) 이하 모두에게 지어 올리라 명하였다. 술 잘 마시는 자를 뽑아 서로 권하며 취할 때까지 마음껏 마시라 명하였다. 무신(武臣)들은 앞에서 활쏘기를 하였는데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마음껏 즐기고 배불리 먹었다.】</p>	<p>○辛丑/上御閱武亭，宴群臣，且試儒生製述。【三公、六卿、侍臣、兩司、侍講院及嘉善、通政亦或與焉，凡八十餘人。令畫師圖形，而命鄭惟吉製序，先寫於圖下，遂令入侍之臣，隨意製詩，以次進前，書於畫軸，俱記職銜、姓名。又出御題二首，令丁應斗以下皆製進。抄善飲者，而命曰相勸痛飲，期於盡醉。武臣則射的於前，賞賜有差，極歡而罷日已晡矣。】</p>
<p>명종 28권, 17년 (1562 임술 / 명 가정 (嘉靖) 41년) 3월 13일(정유) 1번째기사 헌부가 가뭄이 심하므로 술병을 지니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다</p>	<p>헌부가 아뢰기를, “금년 봄의 기근은 전에 비해 더욱 심하고, 바야흐로 농사철인데 가뭄 또한 심합니다. 그러니 노병(老病) 때문에 약으로 먹어야 되는 경우나 활터를 제외하고는 술병을 지니는 것을 일체 금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해마다 술을 금하는 것이 관례처럼 된 일이지만 한 시대의 기상을 삭막하게 할 수는 없다. 관서(關西) 지방에 가뭄의 징조가 보인다고는 하나 다른 지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이미 하유하여 물어보고 있는 중이니, 술을 금하는 것은 다시 말을 들어 본 뒤에 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하였다.</p>	<p>○丁酉/憲府啓曰：“今春凶荒，比前尤極，農務方殷，旱氣亦甚。請老病服藥、射侯處外，持瓶酒者一禁。”答曰：“年年酒禁，例爲之事，而一世氣象，不可索莫。關西一道，雖有旱徵，他道則未知，故已下諭問之矣。酒禁，更言後，爲之無妨。”</p>
<p>명종 28권, 17년 (1562 임술 / 명 가정</p>	<p>영의정 상진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고 이어 술과 음악을 내렸다. 【상진은 강직하고 방정한 절조(節操)가 없고 시속의 흐름에 따라 적당히 처신하니, 식</p>	<p>○賜領議政尙震几杖，仍賜酒樂。【震，無剛方正直之節，好隨俗低昂，</p>

<p>(嘉靖) 41년) 10월 19일(경오) 2번째기사 상진에게 궤장을 하사하고 술과 음악을 내리다</p>	<p>자들이 흉을 보았다. 상진이 평안 감사로 있을 때 윤원로(尹元老)가 각 주현(州縣)에 혼수품을 요구하니, 상진은 자그마치 명주 두 바리를 실어 보냈으므로 청의(淸議)에 용납되지 못하였다. 그가 정승이 되어서는 심통원과 사돈을 맺고 척리(戚里)들과 체결하였다. 상진은 나이 67~68세에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몇 년 후면 임금께서 나에게 궤장을 내리실 것이다. 일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니, 너희들은 아무 물건을 보내라……’ 하였고, 또는 통사(通事)들에게 부탁하여 연경(燕京)에 가서 비단을 사오게 하였으며, 자기 집 밖에 현아(縣衙)의 공터가 있었는데 자기 소유로 만들어 연회 장소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너물로 받아들인 소와 그릇이며 재물과 양곡 등 온갖 물건을 이루 기록할 수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크게 연회를 열었는데 차림의 풍성함이 일찍이 없었던 바였다. 여러 날만에 연회를 파하였는데 봉상 정(奉常正) 임여(任呂)가 술독을 지키고, 대교(待敎) 성수익(成壽益)이 손에 물푸레나무 몽둥이를 들고 문을 지키니, 서리(胥吏)들이 ‘판사(判事)가 술독을 지키고 한림(翰林)이 문을 지키고 있으니, 영상(領相)의 연회가 성대하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였다.</p>	<p>識者短之。 尹元老求婚需於州縣， 震爲平安監司， 多與紬帛， 至滿二馱， 遂不容淸議。 其爲相也， 又與沈通源爲婚家， 與戚里相締。 震年近六十七八， 謂人曰：“吾數年後， 必有几杖之賜。 事當預備， 須送某物”云云。 又托通事， 貿綵錦于燕京。 墻外有一縣邸基， 要入己， 擬爲供張之地， 牛隻、 器皿、 財穀、 雜物賂遺之數， 不可勝記。 及是大設供具， 其盤排之豐， 前所未有， 累日乃罷。 奉常正任呂守樽所， 待敎成壽益手握水青木把門， 吏胥相謂曰：“判事司樽， 翰林守門， 領相之宴， 可謂盛矣。”】</p>
<p>명종 28권, 17년 (1562 임술 / 명 가정 (嘉靖) 41년) 10월 19일(경오) 3번째기사 과천 현감 윤근수가 배사하니 술을 내리라고 명하다</p>	<p>과천 현감(果川縣監) 윤근수가 배사(拜辭)하니 상이 술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윤근수가 현감으로 나가게 된 것은 지난번 야대(夜對) 때 바른말을 한 죄 때문이다. 그의 말을 채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물리쳐 조정에 있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에 대한 대우가 너무 박하다. 비록 술을 내리고 위로의 말을 하였으나 어찌 진실이라 하겠는가.</p>	<p>○果川縣監尹根壽拜辭， 上命賜酒。 【史臣曰：“根壽之出爲縣監， 以夜對讜言之罪。 不惟不採其言， 又擯之， 不使容於朝， 上之所以待之者薄矣。 雖賜酒溫諭， 其可信乎?”】</p>
<p>명종 28권, 17년 (1562 임술 / 명 가정</p>	<p>광평군(光平君) 김명윤(金明胤)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고, 이어 술과 음악을 내리었다. (생략)</p>	<p>○丁丑/賜光平君金明胤几杖， 仍賜酒樂。</p>

<p>(嘉靖) 41년) 10월 26일(정축) 1번째기사 광평군 김명윤에게 궤장을 하사하고 술과 음약을 내리다</p>		<p>【史臣曰：“明胤，年則多矣，德何有焉？使優老褒德之典，謬及於冥頑無類之人，其可乎？明胤，少歲則僞飾言語，圖薦於賢良之科，中年則累變蹤跡，隴斷於名利之場，晚節則托身權奸，反覆於尹元衡、李樑之門，而其在乙巳，謀參勳籍，誣告鳳城君，使不得其死者，實迺通天之惡也。嗚呼！負罪如此，而年踰七十，至蒙几杖之賜，禍淫之理安在，誅惡之典何施？”】</p> <p>【史臣曰：“明胤，爲人變幻不測，乘時附勢，猶恐不及，貪功樂禍，無所不至。‘老而不死，是謂賊’，而反受賜杖之禮，可勝惜哉！”】</p>
<p>명종 28권, 17년 (1562 임술 / 명 가정 (嘉靖) 41년) 10월 26일(정축) 2번째기사 비현각 앞뜰에서 술을 내리고 납촉 1매씩 하사하다</p>	<p>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날씨가 매우 차므로 정원과 옥당에게 내정(內庭)에서 술을 내리고자 하니, 홍문관 제학 【이양.】 과 예문관 제학 【오상(吳祥).】 을 함께 부르라.”하고, 비현각(丕顯閣) 앞뜰에서 술을 내렸다. 술을 다 마시자 각각 납촉(蠟燭) 1매씩을 하사하였다.</p>	<p>○傳于政院曰：“今日天寒甚嚴。政院、玉堂，欲別賜酒於內庭。弘文館提學、【李樑】藝文館提學，【吳祥.】 竝招可也。” 乃賜酒於丕顯閣前庭。飲訖，各賜蠟燭一枚。</p>
<p>명종 29권, 18년 (1563 계해 / 명 가정 (嘉靖) 42년) 9월 25일(경자) 1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작고하신 왕세자의 3년 동안의 감선(監膳)을 주상(主喪) 【강섬(姜暹).】 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庚子/禮曹啓曰：“卒王世子三年內監膳，以主喪【姜暹.】 爲之何如？” 傳曰：“如啓。”</p>

<p>예조에서 왕세자의 감선을 주상 강섬에게 맡기도록 청하다</p>		
<p>명종 30권, 19년 (1564 갑자 / 명 가정 (嘉靖) 43년) 11월 23일(임술) 1번째기사 입직 군사에게 하사할 물품을 진배토록 명하다</p>	<p>정원에 전교하였다.“술과 어물(魚物)을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진배(進排)토록 하라. 제용감(濟用監)이 소장한 유의(襦衣) 38벌도 진배토록 하라.”【이때 날씨가 매우 추워 상께서 특별히 입직한 군사들이 주리고 추울 것을 염려하여 술과 어물을 그들에게 대접토록 명하고, 빈한하여 옷이 없는 자에게는 유의를 하사하니 사람마다 감격하여 기뻐하였다.】</p>	<p>○壬戌/傳于政院曰：“酒與魚物，令各該司進排。 濟用監所藏襦衣三十八件，亦進排。”【時日候寒嚴，自上特念入直軍士寒餒，命饋酒與魚物，其寒無衣者，賜以襦衣，人皆感悅。】</p>
<p>명종 31권, 20년 (1565 을축 / 명 가정 (嘉靖) 44년) 4월 8일(갑술) 2번째기사 대신 등이 죽을 권하다</p>	<p>대신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애써 죽을 드소서.”하니, 답하기를, “망극한 가운데 어찌 감히 3일 안에 죽을 먹겠는가.”하였다. 대신 등이 또 아뢰기를, “종사의 중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자전의 유교(遺敎)에 상의 원기(元氣)를 보양하는 것으로써 신들에게 명하셨으니, 상께서 신들의 청을 힘써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하니, 답하기를, “3일 동안 먹지 않는 것은 예인데, 어찌 감히 죽을 먹겠는가.”하였다. 대신 등이 청하니, 상이 애써 따랐다.</p>	<p>○大臣等啓曰：“請勉進粥。” 答曰：“罔極之中，安敢三日內食粥乎？ 大臣等又啓曰：“宗社之重，不可不念。 況慈教以保養主上元氣，命于臣等，自上不可不勉從臣等之請。” 答曰：“三日不食禮也。 何敢食粥乎？” 大臣等強請，上勉從之。</p>
<p>명종 31권, 20년 (1565 을축 / 명 가정 (嘉靖) 44년) 4월 10일(병자) 1번째기사 삼공 및 동사반 2품</p>	<p>삼공 및 동서반(東西班)의 2품 이상이 아뢰기를, “3일이 이미 지났으니 수라를 드소서.”하니, 답하기를, “3일이 지나갔으나 아직도 성복(成服)을 하지 않았으니, 죽을 먹는 것도 오히려 편치 못한데, 하물며 밥을 먹겠는가. 윤희하지 않는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들이 아뢰는 바는, 오늘날 생긴 일이 아니라 조종조의 유사(遺事)를 상고해 보니 다 이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예부</p>	<p>○丙子/三公及東西班二品以上啓曰：“三日已過，請進食。” 答曰：“三日雖過，時未成服，食粥尚爲未安。 況進食乎？ 不允。” 又啓曰：“臣等所啓，匪今斯今，考祖宗朝遺事，皆有此例，</p>

<p>이상이 수라를 청하다</p>	<p>터 수상(守喪)이 여느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은 진실로 임금의 일신은 종묘와 사직의 중함이 매여 있으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후(哀候)2816) 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께서 상례(喪禮)를 고집하시다가 지존의 몸이 혹 건강을 상하게 된다면 일국 신민의 근심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사의 중함을 생각하여 신들의 청을 따르소서.”하니, 답하기를, “성복(成服) 후 식사를 들도록 하겠다.”하였다. 대신 등이 굳이 청하니 힘써 따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p>	<p>自古人君守喪，與凡人不同者，誠以人主一身，繫宗廟社稷之重。不如是，無以保護哀候也。今自上固執喪禮，至尊之體，幸致愆和，則一國臣民之憂，不可勝言。伏望，克念宗社之重，勉從臣等之請。” 答曰：“成服後，當進食。” 大臣等強請，答曰。“當勉從。”</p>
<p>명종 31권, 20년 (1565 을축 / 명 가정 (嘉靖) 44년) 4월 12일(무인) 1번째기사 정원이 수라 들기를 권하다</p>	<p>정원이 아뢰기를, “조종조의 전례를 상고해 보았더니, 국상 이튿날에 죽을 들고 사흘 만에 수라를 드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지금 위에서 슬퍼하심이 예도에 지나치어 사흘이 지나도 오히려 수라를 들지 않으시니, 일국 신민이 줄이고 답답한 마음이 망극합니다. 또 금일은 풍기(風氣)가 험악하니, 만일 곡위(哭位)에 일찍 나가시면 혹시 상함이 있으실까 염려됩니다. 원컨대 위에서 짐작하여 성궁(聖躬)을 보호하시어 신민의 소망에 부응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정이야 망극하지만 위에서 어찌 수라를 억지로나마 들지 않겠는가. 내 기운이 평안하면 곡임(哭臨)을 폐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근년 이래로 심기(心氣)가 허약하니, 만일 풍우(風雨)가 험악한 날이면 또한 어찌 짐작하여 하늘에 계시는 영혼의 평일 호양(護養)하신 뜻에 부응하지 않겠는가.”하였다.</p>	<p>○戊寅/政院啓曰：“考祖宗朝前例，翌日進粥，三日進膳，例也。今自上哀毀過禮，過三日猶未進膳，一國臣民，煎爛罔極。且今日風氣險惡，若早出哭位，則恐或有傷。伏願自上斟酌，保護聖躬，以副臣民之望。” 傳曰：“情雖罔極，自上豈不勉強進膳乎？予氣平安，則所當不廢哭臨，而近年以來，心氣虛弱，若風雨險惡之日，則亦豈不斟酌，以副在天之靈平日護養之意乎？”</p>
<p>명종 31권, 20년 (1565 을축 / 명 가정 (嘉靖) 44년) 4월 12일(무인) 4번째기사</p>	<p>영평 부원군(鈴平府院君) 윤개(尹漑)와 영부사(領府事) 이준경(李浚慶)이 정부대신과 함께 아뢰기를, “성복(成服)이 이미 지났으니 지금 이후의 곡임은 비록 아침·저녁 상식(上食)에라도 반드시 날마다 임할 것이 없으며, 또 날씨가 고르지 아니하거나 혹 비</p>	<p>○鈴平府院君尹漑、領府事李浚慶與政府大臣啓曰：“成服已過，今後哭臨，雖於朝夕上食，不必日日爲之。且日候不調，或風雨險惡之時，自上宜斟酌</p>

<p>영평 부원군 윤개 등이 곡임에 관하여 아뢰다</p>	<p>바람이 험악할 때에는 위에서 마땅히 짐작하여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전례가 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하니, 답하기를, “내 마음이 망극하니, 기운이 편안할 때이면 어찌 감히 곡임을 폐하겠는가. 다만 내 기운이 허약하므로 우선 경들의 소청을 힘써 따르겠다.”하였다.</p>	<p>爲之。此亦有前例，故敢啓。” 答曰：“予心罔極，氣安之時，則豈敢廢哭臨乎？但予氣虛弱，姑勉從卿等之請。”</p>
<p>명종 31권, 20년 (1565 을축 / 명 가정 (嘉靖) 44년) 4월 27일(계사) 1번째기사 약방 제조 심통원 등이 육선을 권하다</p>	<p>약방 제조 심통원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상의 옥체가 편치 못하시어 비위(脾胃)가 크게 상하시고 심열(心熱)이 부동(浮動)하시며, 용안(龍顏)이 수척하여 병의 증후가 이미 나타나셨다.’ 하니, 신들은 답답하고 염려스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상의 일신은 중사와 신민의 의탁하는 바인데 어찌 스스로 아끼지 않으시고, 상례(喪禮)를 굳이 지켜 슬픔이 너무 과도하시어 이에 이르십니까? 바라건대 깊이 생각하시어 슬픔을 절제하고 육선(肉膳)을 드시어 약을 쓰지 않고 병환이 나으시기를 목표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하니, 답하기를, “초상중에 기운이 평상시와 같지 않은 것은 형세가 당연하다. 그러나 원기는 편안한 듯하니, 어찌 어선(御膳)을 애써 들지 않겠는가. 아뢴 뜻은 알았다.”하였다.</p>	<p>○癸巳/藥房提調沈通源等啓曰：“臣等伏聞，上體愆和，脾胃大傷，心熱浮動，龍顏瘦瘠，病候已著云，臣等不勝憫慮。伏念，聖上一身，宗社臣民之所寄托，何不自惜，固守喪禮，哀戚大過，以至於此乎？伏望，深思熟慮，節哀進膳，期於勿藥，不勝幸甚。” 答曰：“初喪之中，氣不如常，理勢然也。然元氣則似安，豈不勉進御膳乎？啓意知道。”</p>
<p>명종 32권, 21년 (1566 병인 / 명 가정 (嘉靖) 45년) 1월 9일 (신축) 1번째기사 주다례와 석상식을 문덕전에서 행하다</p>	<p>상이 친히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문덕전에서 행하였다.</p>	<p>○辛丑/上親行晝茶禮，夕上食于文德殿。</p>
<p>명종 32권, 21년 (1566 병인 / 명 가정 (嘉靖) 45년) 2월 1일</p>	<p>호조가 아뢰기를, “사포서(司圃署)에 남아 있는 산삼(山蔘)과 길경(苦蕒)이 자못 많으니 금년분의 외공(外貢)을 견감하소서.”하고, 사포서 제조가 아뢰기를, “채소류는 부패하여 오래 저장할 수 없으니 외공을 징납(徵納)하게 하소서.”</p>	<p>○癸亥朔/戶曹以司圃署山蔘苦蕒遺在頗多，請蠲今年條外貢。司圃署提調又啓，以菜物腐毀，不可久儲，請徵納</p>

<p>(계해) 1번째기사 호조가 산삼과 길경이 많으니 외공을 견감할 것을 아뢰다</p>	<p>하였다. 호조가 또 아뢰기를, “외공은 본색으로써 상납하지 않고 각 고을의 관리가 혹 미포로써 절가(折價)하여 사주인(私主人)에게 도급(都給)하므로 해마다 쓰고 남은 미포(米布)가 사주인의 집에 쌓여 있습니다. 이같이 큰 흉년을 만나 이미 청감한 사실을 외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 이전 처럼 징납하게 한다면 백성에게 신임을 잃을 뿐 아니라 남아 있는 물품을 다시 사용할 시기가 없게 될 것이니 외공을 징납하지 마소서.”하니, 윤허하였다.</p>	<p>外貢。 戶曹又啓: “外貢非以本色上納, 各官之吏, 或以米布折價, 都給私主人, 逐年用餘米布, 積在於主人家。 當此極凶之年, 已爲請減, 外方之民, 皆已知之。 今若仍舊徵納, 則非徒失信於民, 餘裕之物, 更無可用之時。 請勿徵外貢。” 允之。</p>
<p>명종 33권, 21년 (1566 병인 / 명 가정 (嘉靖) 45년) 7월 23일(임자) 1번째기사 사인이 문덕전의 아침 상식을 친히 행하는 것을 연기하도록 청하다</p>	<p>사인(舍人)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문덕전(文德殿)에 아침 상식(上食)을 친히 행할 것을 전교하셨는데, 단, 출궁시는 비록 일러서 서늘하겠지만 환궁시는 더위가 한창 극성일 것이므로 매우 미안스러운 일입니다. 서늘한 가을이 머지 않으니, 물려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더위가 아직도 극성이니 아뢴 뜻이 온당하다. 그러나 중중께서는 효경전(孝敬殿)에 다니실 때 혹한과 폭서로 폐한 적이 없었는데, 나는 대단치 않은 병이 빈번히 발생하여 문덕전을 자주 다닐 수 없으므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 마땅히 그대로 행할 것이다.”하였다.</p>	<p>○壬子/舍人, 以三公意曰: “文德殿朝上食親行事, 傳教矣。 但出宮時雖早, 而還宮則暑熱方盛, 極爲未安。 涼秋未遠, 退行何如?” 傳曰: “暑熱尙存, 啓意當矣。 然中廟幸孝敬殿, 不廢隆寒盛暑, 而予則微恙頻煩, 不能數幸文德殿, 常懷未安之心矣。 當仍行矣。”</p>
<p>명종 33권, 21년 (1566 병인 / 명 가정 (嘉靖) 45년) 7월 26일(을묘) 1번째기사 진사 성운에게 약과 음식물을 내리도록 하유하다</p>	<p>정원이 아뢰기를, “진사(進士) 성운(成運)이 병을 얻어서 곧바로 올라오지 못한다 합니다. 이는 바로 특별히 부른 사람이니 약을 보내주어 치료하여 올라오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취품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내 병이 쾌차하지 못하여 정신이 혼매하므로 이 일을 말하려고 하다가 미처 말하지 못하였는데, 아뢴 뜻이 온당하다. 상당한 약을 지어 보내어 조리할 것을 감사와 성운에게 하유하라. 그리고 병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제급(題給)할 것도 아울러 감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p>	<p>○乙卯/政院啓曰: “進士成運得病, 趁未上來云。 此乃特召之人, 無乃送藥治療, 使之上來乎? 取稟。” 傳曰: “予疾未快, 心神茫昧。 此事欲言, 而未及言之, 啓意當矣。 相當藥劑, 送加調理事, 監司及成運處下諭。 且病中可食之物題給事, 竝諭于監司。”</p>
<p>명종 33권, 21년</p>	<p>상이 창덕궁(昌德宮)에 거둥하여 문덕전(文德殿)에서 친히 주다례(晝茶禮)를</p>	<p>○癸亥/上幸昌德宮, 親行晝茶禮于文</p>

<p>(1566 병인 / 명 가정 (嘉靖) 45년) 10월 6일(계해) 1번째기사 창덕궁에 거둥하여 문덕전에서 친히 주다례를 거행하다</p>	<p>거행하였다.</p>	<p>德殿。</p>
<p>명종 33권, 21년 (1566 병인 / 명 가정 (嘉靖) 45년) 10월 23일(경진) 1번째기사 평상시가 아니니 술을 적게 마시도록 전교하다</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니 【국휼(國恤)을 말하는 것이다.】 마땅히 술을 적게 마셔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요즘같이 천변이 있는 때에 근시(近侍)의 임무를 띠고 있는 자 【좌승지 이희검(李希儉)이다.】 가 술에 취하여 판부(判付)를 쓸 수 없기에 이르렀었으니, 사체에 온당치 못하다. 날씨가 차가와 어한주(禦寒酒)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금후로는 적게 마셔야 될 것이다.” 【희검은 마침내 이 일로 정사(呈辭)하여 체직되었다.】</p>	<p>○庚辰/傳于政院曰：“今非平時，【言國恤也。】所當省飲，而況近有天變，時爲近侍之任者【左承旨李希儉也。】醉酒，至不能書判付，事體未穩。日氣寒冷，防寒之酒，不可廢，然今後則省飲可也。【希儉，竟以此呈辭以遞。】</p>
<p>명종 34권, 22년 (1567 정묘 / 명 가정 (嘉靖) 46년) 3월 22일(정축) 1번째기사 문덕전에 나아가 주다례와 저녁 상식을 올리다</p>	<p>상이 문덕전(文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저녁 상식(上食)을 올렸다.</p>	<p>○丁丑/上詣文德殿，行晝茶禮。夕上食。</p>
<p>명종 34권, 22년 (1567 정묘 / 명 가정 (嘉靖) 46년) 4월 1일</p>	<p>상이 문덕전(文德殿)에 나아가 삭제(朔祭)와 별제(別祭)를 겸하여 지내고 이어 아침 상식을 올렸다.</p>	<p>○丙戌朔/上詣文德殿於朔祭，兼行別祭。仍行朝上食。</p>

<p>(병술) 1번째기사 문덕전에 나아가 삭제 와 별제를 겸하여 지 내고 아침 상식을 올 리다</p>		
<p>명종 34권, 22년 (1567 정묘 / 명 가정 (嘉靖) 46년) 6월 12 일(을미) 4번째기사 근정전에서 음복례를 행하다</p>	<p>상이 근정전에서 음복례(飲福禮)를 행하였다.</p>	<p>○上行飲福禮于勤政殿。</p>